제주역사 자료총서 1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Ⅲ

- 肅宗代 -

(上)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이번에《승정원일기》제주기사(숙종대)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절실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왕대별《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 정리한 소중한 성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작업 성과물을 왕대별로 묶어서 책자로도 발간하였는데, 올해는 효종대와 현종대에 이어 세 번째로《승정원일기》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성과를 담았습니다.

본서에 소개된《승정원일기》의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효종대(159건)와 현종대(330건)에 비하면, 거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제주 관련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가 163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승정원일기》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역사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제주 목민관들의 인사와 추고, 치죄, 유배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공마와 체임진상마에 관한 마정 기록, 제주 진휼곡의 논의 및 운송과 관련된 진휼 문제, 제주 표류인 송환과 같은 표류 기사, 어사 시재와 직부전시 등의 과거와 관련한 기사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제주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출·정리된《승정원일기》제주 관련 기사들은 원문과 함께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입니다. 이번 출간서적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원문 1차사료를 쉽게 해독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함으로써 제주학의 전문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홍기표, 김일우,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에 참여해주신 김새미오, 이진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홍기표 선생님께서 해제 및 출간, 교열 작업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 손수 번거로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승정원일기》제주기사 번역자료집 후속편 발간을 비롯해서 제주역사 기초사료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해 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였다. 이 작업에는 제주학 연구 및 역주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낸 전공자 4인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첫 성과물로《승정원일기》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발간하였다. 총 158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시기《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 39건의 4배에 달했다. 그 후 2018년에는 두 번째 성과물로《승정원일기》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를 발간하였다. 총 330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시기《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 38건의 거의 10배에 달했다.

본서는《승정원일기》제주기사 역주 사업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효종대와 현종대에 뒤이어 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의 역주이다. 총 1,059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6), 대정(109), 정의(115), 탐라(28)의 순이었다. 단일 기사에 두 개 이상 주제어가 들어간 중복된 경우는 총 69건이었다. 이 경우는 하나의 기사로 처리했으며, 중복된 사례는 ( ) 안에 표시해 두었다. 추자 기사는 1건 검색되었으나 지명이 아닌 식물 열매를 지칭한 내용이어서 제외하였다. '제주' 기사가 거의 4/5에 해당되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대정'과 '정의' 기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승정원일기》숙종대 제주기사는《조선왕조실록》숙종대 제주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숙종대 제주 기사를 검색한 결과《승정원일기》는 1,059건인데 비해《숙종실록》은 163건,《숙종보궐정오》는 5건에 불과했다. 예컨대 '제주' 기사는 876건vs145건, '정의' 기사는 115건vs16건, '대정' 기사는 109건vs15건이었다.《승정원일기》의 제주 관련 기사 분량이《조선왕조실록》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승정원일기》의 내용이《조선왕조실록》보다 제주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조선왕조실록》과《승정원일기》의 숙종대 제주기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제주기사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濟州	旌義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1675 (숙종 원년)	9	1			(1)	10(1)
1676 (숙종 2년)	3				(1)	3(1)
1677 (숙종 3년)	4					4
1678 (숙종 4년)						
1679 (숙종 5년)	4	1(1)				5(1)
1680 (숙종 6년)	5					5
1681 (숙종 7년)	3	(1)	(1)			3(2)
1682 (숙종 8년)	6	(1)	(1)			6(2)
1683 (숙종 9년)	9	(1)	(1)			9(2)
1684 (숙종 10년)	1					1
1685 (숙종 11년)	2					2
1686 (숙종 12년)	2					2
1687 (숙종 13년)	1					1
1688 (숙종 14년)					1	1
1689 (숙종 15년)	4			(1)	(1)	4(2)
1690 (숙종 16년)	1					1
1691 (숙종 17년)	2					2
1692 (숙종 18년)			1			1
1693 (숙종 19년)	4	1				5
1694 (숙종 20년)	5	(1)	1(1)			6(2)
1695 (숙종 21년)	3					3
1696 (숙종 22년)	1	1				2
1697 (숙종 23년)			1			1
1698 (숙종 24년)						

구 분	濟州	旌義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1699 (숙종 25년)	1					1
1700 (숙종 26년)	2		1			3
1701 (숙종 27년)	9					9
1702 (숙종 28년)	2		2			4
1703 (숙종 29년)	8	1(1)	(2)		(1)	9(4)
1704 (숙종 30년)	1				2	3
1705 (숙종 31년)	3	(1)	(1)		(1)	3(3)
1706 (숙종 32년)	6					6
1707 (숙종 33년)	2					2
1708 (숙종 34년)	2					2
1709 (숙종 35년)	1					1
1710 (숙종 36년)	2				1	3
1711 (숙종 37년)	1					1
1712 (숙종 38년)	2					2
1713 (숙종 39년)	6	(1)	(1)			6(2)
1714 (숙종 40년)	1					1
1715 (숙종 41년)	1					1
1716 (숙종 42년)	13	(2)	(1)		1(2)	14(5)
1717 (숙종 43년)	5				(1)	5(1)
1718 (숙종 44년)	1				1	2
1719 (숙종 45년)	6	(1)				6(1)
1720 (숙종 46년)						
부록; 묘지문					1	1
부록; 행장	1				(1)	1(1)
합 계	145	5(11)	6(9)	(1)	7(9)	163(30)

[표 2]《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 현황

(※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濟州	旌義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1674 (숙종 즉위년)	3	1	0	0	0	4
1675 (숙종 원년)	41	2	0	0	0	43
1676 (숙종 2년)	27	5(1)	4(6)	0	(1)	36(8)
1677 (숙종 3년)	13	0	3(1)	0	0	16(1)
1678 (숙종 4년)	14	3	0	0	0	17
1679 (숙종 5년)	33	3(2)	4	0	0	40(2)
1680 (숙종 6년)	32	0	6	0	0	38
1681 (숙종 7년)	28	2	1(2)	0	0	31(2)
1682 (숙종 8년)	26	1	0	0	0	27
1683 (숙종 9년)	10	0	0	0	0	10
1684 (숙종 10년)	27	2	2(2)	0	0	31(2)
1685 (숙종 11년)	20	0	0	0	0	20
1686 (숙종 12년)	18	3	1(2)	0	0	22(2)
1687 (숙종 13년)	22	0	0	0	0	22
1688 (숙종 14년)	21	0	0	0	0	21
1689 (숙종 15년)	44	5(2)	2(1)	0	0	51(3)
1690 (숙종 16년)	16	0	0	0	(1)	16(1)
1691 (숙종 17년)	18	0	3	0	0	21
1692 (숙종 18년)	8	2(1)	(1)	0	0	10(2)
1693 (숙종 19년)	15	30(2)	0	0	(1)	45(3)
1694 (숙종 20년)	31	1	3(1)	0	(1)	35(2)
1695 (숙종 21년)	0	0	0	0	0	0
1696 (숙종 22년)	23	4	0	0	0	27

구 분	濟州	旌義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1697 (숙종 23년)	13	3	12(1)	0	0	28(1)
1698 (숙종 24년)	3	0	2	0	0	5
1699 (숙종 25년)	6	4	0	0	0	10
1700 (숙종 26년)	12	1	2	0	0	15
1701 (숙종 27년)	18	(3)	1(3)	0	0	19(6)
1702 (숙종 28년)	10	5	4	0	0	19
1703 (숙종 29년)	26	1(5)	4(6)	0	(2)	31(13)
1704 (숙종 30년)	36	2	3	0	1	42
1705 (숙종 31년)	19	1	2(1)	0	1	23(1)
1706 (숙종 32년)	14	2	0	0	0	16
1707 (숙종 33년)	20	0	2(1)	0	0	22(1)
1708 (숙종 34년)	13	0	0	0	(1)	13(1)
1709 (숙종 35년)	18	1(2)	0	0	1	20(2)
1710 (숙종 36년)	11	0	1	0	(1)	12(1)
1711 (숙종 37년)	13	3(1)	1(2)	0	0	17(3)
1712 (숙종 38년)	14	0	(2)	0	1	15(2)
1713 (숙종 39년)	28	3(1)	3(1)	0	(1)	34(3)
1714 (숙종 40년)	15	0	2(1)	0	0	17(1)
1715 (숙종 41년)	23	(1)	0	0	4	27(1)
1716 (숙종 42년)	30	1(1)	2(1)	0	3(1)	36(3)
1717 (숙종 43년)	11	0	0	0	0	11
1718 (숙종 44년)	2	1	1	0	7	11
1719 (숙종 45년)	25	0	2(1)	0	0	27(1)
1720 (숙종 46년)	6	(1)	0	0	0	6(1)
합 계	876	92(23)	73(36)	0	18(10)	1,059(69)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는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제주 최초의 서원인 '귤림서원(橘林書院)'의 사액(賜額) 과정을 소개한 기사이다. 1682년(숙종 8) 6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유생들의 사액 청원에 대해 처음 해당부서에서는 반대하여 허락하지 않았지만,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석주(金錫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액 허가가 이루어졌다.

> "가만히 들으니, 제주 유생들이 네 신하의 서원에 대해 사액을 청하는 문제로 멀리서 와서 상소를 올렸는데, 해조(該曹)에서 첩설(疊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입계(入啓)하여 윤허 받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중략) 또한 향사하는 4인으로 말하자면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 대사헌 송인수(宋麟壽),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 참판 정온(鄭蘊) 입니다. 이 네 신하는 모두 문학과 명절(名節)이 있었는데, 본디 사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다 밖 사람들도 또한 존경하고 사모하여 향사하는 곳을 만들어 표준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의 주현(州縣)에 부산하게 중첩으로 설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1703년(숙종 29) 8월 7일 기사에 영의정 신완(申琓)이 해외명산인 한라산이 사전(祀典)에 누락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실어야 한다는 건의가 처음 등장한다. 결국 한 달 뒤인 동년 9월 5일 기사에 의하면 사전에 수록되어 치악산의 예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였다.

> "대신들의 의견을 아뢴 일로 전교하시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궐(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지금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제례(祭禮)와 축문식(祝文式)은 치악산(雉岳山) 등의 제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형편상 합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숙종대 제주 인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76년(숙종 2)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의 인구는 대체로 3만 남짓이며, 바로 전해에 발생한 대흉년 때문에 1만여 명이나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인 1694년(숙종 20) 11월 8일 기사에 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인구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온 섬이 비록 세 고을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이 협소한 데다 인민(人民)도 적다. 민호(民戶)의 수는 합하여 거의 8,850여 호에 이르고, 민구(民口)의 수는 남녀(男女)와 장약(壯弱)을 합하여 거의 44,820여 구이다."

또한 세공마의 운송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84년(숙종 10) 7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세공마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0일 이전까지였다. 그 이유가 1688년(숙종 14) 8월 3일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일찍이 전에는 제주에서 공마(貢馬)를 올려 보내는 것이 8,9월 풀이 다시든 때여서 죽게 할까하는 근심이 많이 있었다. 때문에 효종 때 이래로 특별히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하고, 여러 차례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후에는 매번 7월 안에는 거의 다 올라왔다."

제주 세공마 운송시 육지 여러 군현의 선적들이 제주로 향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689년(숙종 15) 7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호남 지역에서 제주 세공마 운송을 위해 제주로 배를 보내야 했던 지역은 순천, 장흥, 광양, 나주, 영광, 무장, 진도 등 일곱 곳이었다.

"제주마를 세공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도 각 읍이 삼가 거행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배를 늦게 댄 순천 · 광양 등의 읍과 사공의 수를 적게 보낸 장흥 · 영광 · 무장 · 광양 · 진도 · 순천 등 읍의 담당 아전들을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고, 배를 처음부터 대지 않은 나주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호남 지역의 여러 배들이 제주 세공마를 운송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적재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의 큰 배가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음도 확인된다. 1708년(숙종 34)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송정규(宋廷奎)의 상소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대개 육지 읍의 배들은 비록 매 척에 35필까지이지만, 제주의 큰 배는 7,80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숙종대《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본다.《승정원일기》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누면 각각 693건, 190건, 127건, 49건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네 분야는 다시 1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기록된 사실을 살펴보았다. 정치는 인사(356), 사법(167), 유배(131), 역모(16), 행정(14), 군사(9)의 6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마정(116), 공물(65), 조세감면(9)의 3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진휼(52), 표류(37), 휼전(14), 재난(11), 기타(13)의 5주제로, 문화는 과거(39), 의례(8), 기타(2)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승정원일기》숙종대 제주기사의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의망, 임명, 교체, 포폄, 피혐, 어사, 제주인 임명 등	356
	사법	제주목사 등 추고, 치죄, 조사 등	167
	유배	제주/정의/대정 유배인, 이배, 유배인 제주 민폐	131
	역모	과거 역모(길운절) 사례 인용, 제주유배인(장희재) 역모	16
	행정	제주인 상소, 역관 제주 배치 등	14
	군사	제주인 무과급제자 근무처, 조방장 임명 규정 등	9
	소 계		693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경제	마정	세공마, 산마, 체임진상마, 점마, 공마 운송/관리/분급	116
	공물	가시목, 감귤, 궁대, 흑우, 전복 등	65
	조세감면	환곡 탕감, 노비 신공 감면 등	9
	소 계		190
사회	진휼	제주 진휼곡 논의 및 운송	52
	표류	제주 표류 한인 송환, 안남 표류 제주인 송환	37
	휼전	선박 침몰 익사자 추모	14
	재난	역병, 폭풍우, 해일, 화재	11
	기타	추쇄, 기로, 노비, 격쟁 등	13
	소 계		127
문화	과거	어사시재, 직부전시 등	39
	의례	한라산신제, 풍운뇌우제 논의 및 시행	8
	기타	귤림서원 사액 등	2
	소 계		49
총 계			1,059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 중 정치 분야가 693건으로 2/3에 해당한다. 제주목민관들의 인사, 추고 및 치죄 청원, 유배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 분야 기사가 356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그 대다수(231건)는 제주목민관의 제수, 사은, 하직 기사이다. 제주목사(67건), 제주판관(46건), 대정현감(45건), 정의현감(40건), 제주교수(29건), 제주점마별감 및 산마감목관(4건)에 대한 순수한 임명 관련 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듯 순수 임명 관련 기사가 다수 수록된 배경에는 제주목민관 동일인의 '제수(선임)'와 '사은(선임 후 임금 면담 및 감사 인사)' 및 '하직(임지 부임 인사)' 기사가 이어져 수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목사의 경우 최소한 '제수' 기사만 40명에 이르는데, 실제 숙종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은 28명이다. 12명이 제수 이후 질병 또는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사직

상소를 제출하여 부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숙종대 제주에 파견된 어사도 4회(24건)나 기록에 보인다. 1675년(숙종 1) 제주순무사 이선(李選), 1679년(숙종 5) 제주안핵겸순무어사 이증(李增), 1706년(숙종 32) 제주시재어사 이해조(李海朝), 1716년(숙종 42) 제주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가 그들이다. 이선과 황구하는 흉년으로 말미암은 진휼 및 위무의 성격, 이해조는 인재등용을 위한 과거 시행, 이증은 전 제주목사와 정의현감의 불법 관련 조사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기타 제주목민관들의 의망(擬望) 및 서경(署經) 등과 관련된 기사 20건, 가자·고과·표창 등 포폄 관련 기사 13건으로 확인된다. 특히 제주목사의 의망과 관련한 기사가 10건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제주목사의 직급은 정3품이지만 여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제주목사만큼은 당상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즉 당상관 중으로 한정하면 그 대상인물이 너무도 협소하거나 적절한 선임이 불가하여 당하관으로 추천 대상을 확대하여 의망을 올리고 그에 대한 임금의 재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선임된 당하관의 제주목사는 곧바로 '가자(加資)'의 절차를 거쳐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과정도 병행되었다.

사법 관련 기사는 167건이나 되어 인사 관련 기사 다음으로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제주목민관들의 실정에 대한 추고 및 치죄(파직) 청원이 주류를 이룬다. 추고란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히는 사안을 말한다. 주로 제주목사를 추고하는 사안인데, 대부분은 종묘 등에 천신한 감귤류의 부패, 세공마 지연 운송, 진상마 부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숙종대 제주목사는 김흥운(金興運)부터 정동후(鄭東後)까지 28명이 재임했는데, 그 중 23명이나 추고를 당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참작에 의거 추고에만 그쳤다. 하지만 심한 경우 파직 청원이 잇따르고 치죄까지 이른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제주목사 소두산(蘇斗山), 윤창형(尹昌亨), 윤정화(尹鼎和), 이희태(李喜泰), 변시태(邊時泰)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704년(숙종 30)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제주목사 이희태에 대한 추고 및 치죄 청원이다. 무려 23회에 걸쳐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호남 연안 포민(浦民)들의 제주 연해 투채(偸採) 행위에 대해 대응 미숙과 장계 과장 보고 때문이었다. 이미 이전 이형상(李衡祥) 목사 때도 관련 사례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는 전투 장면을 연상하는 해적의 사례로 과장 보고를 했던 것이다. 변방 방비를 책임지

는 목사로서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십 차례의 치죄 청원이 잇따랐던 것이다.

유배 관련 기사도 131건이나 확인할 수 있어 숙종대 치열했던 붕당정치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의 유배인 정배 사실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대정현 유배인으로는 유혁연(柳赫然), 민암(閔黯), 장희재(張希載), 오시복(吳始復), 송상주(宋尙周)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의현 유배인은 이입신(李立身), 이시중(李時中), 김선필(金善弼), 이의징(李義徵), 유항(柳沆), 한도장(韓道章) 등이 있다. 제주(목) 유배인으로는 이혼(李焜, 임창군), 이엽(李煜, 임성군)의 왕족과 송시열(宋時烈), 이현명(李顯命), 이성휘(李聖輝), 김춘택(金春澤) 등의 인물이 확인된다.

이들 중 특이 사항으로는 1676년(숙종 2) 제주에 유배된 왕족 이혼과 이엽이다. 이들은 소현세자의 손자들로 그 부친인 이석견(李石堅, 경안군) 역시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숙종의 후대(厚待) 명령이 내려지고, 이배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1682년(숙종 8)에는 해남현으로 이배되었다. 1689년(숙종 15)에는 제주에 위리안치된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이 제주 산지천 변에 유배되었는데, 그에 대해 다시 국문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되었고 결국 유배된 지 불과 백여 일만에 다시 송환되었다. 송시열은 상경 송환 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하기에 이른다. 1701년(숙종 27)에는 대정현에 유배 중이던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에 대한 처형 명령이 내려져 그는 제주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밖에 유배인의 이배, 유배인들이 제주민에게 끼친 민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 1690년(숙종 16) 초에는 그 전해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제주 유배인에 대한 육지 이배가 논의되어 결국 의금부 및 형조 소관 죄인 32명이 육지로 이배되었다. 또한 1679년(숙종 5)에는 제주에 유배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민간에 끼치는 폐해를 방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안핵어사(이증)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 행정, 역모, 군사 부문에 대한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행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인의 상소와 제주에 역관을 배치한 사실이다. 1677년(숙종 3)에는 임금의 경연 석상에서 제주 출신 봉상시주부(정6품) 김계륭이 당시 윤창형 목사가 추진 중인 모슬진성, 화북진성의 축성 중지를 요청하는 건의를 하였다. 1680년(숙종 6)에는 제주에 역관으로 한학 및 왜학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1687년(숙종 13)에는 제주 유학(幼學) 양응도가 진휼 요청 및 산마 공마

경감 등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역모 관련 기사 중 특이 사항은 1701년(숙종 27) 제주 유배인 장희재(장희빈 오빠)의 서찰 관련 심문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군사 관련 기사로는 1705년(숙종 31) 제주 조방장(助防將) 임명 규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눈에 띈다.

경제 분야 기사는 세공마 및 체임진상마 운송 등 마정 관련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세공마 마필수, 운송로, 제주마 분급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 확인된 바로, 세공마는 통상 한 해에 3회(초운, 재운, 삼운) 약 500필 전후의 말이 사복시로 보내졌다. 하지만 600필을 상회하며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1686년(숙종 12) 668필, 1691년(숙종 17) 628필 등의 기사가 그것이다. 또한 세공마를 싣고 가는 재마선(載馬船)은 제주의 배 뿐만 아니라 호남 여러 지역(흥양, 강진, 여산, 무안, 광양 등)의 배들도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제주목민관을 지내고 이임할 때 사복시로 올려 보냈던 체임진상마는 현종대에 이어 숙종대에도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 상납했다.

공물 부문에서는 여러 감귤류의 진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감, 당유자, 동정귤 등 다양한 감귤류의 진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종묘 천신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운송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 부패한 채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봉진관인 제주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추궁도 이어졌다. 그 밖에 제향용 제주 흑우(黑牛)의 진상과 관련해서도 수량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수/1년'을 봄(3월 20일 이전)에 올려 보내고, 육지 이송 후 양육의 과정을 거쳐 제향에 올렸다는 점이다. 또 군기용 창병목의 제작을 위한 가시목과 기타 교자궁, 궁대통개, 백랍, 진피(약재), 전복 등의 공물 진상 사실이 확인된다.

사회 분야 기사는 진휼(51)과 표류(37)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1686년(숙종 12), 1705년(숙종 31), 1713년(숙종 39)~1716년(숙종 42)은 제주에 대흉년으로 다수의 기민이 발생하자, 진휼곡 마련, 운송 등의 논의와 시행을 다루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려 있다. 특히 1715년(숙종 41)과 1716년(숙종 42) 두 해에 걸친 흉년은 제주에 다수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제주별견어사(황구하)가 파견되고, 아사자들을 위로하는 어제제문(御製祭文)도 내려졌다.

표류 관련 기사는 숙종 연간 왜인 표류 및 송환 1건, 중국인 표류 및 송환 5건, 안남 표류 제주인 김태황(金泰璜) 송환 1건 등의 사안이 여러 기사에 걸쳐 전한다. 왜인 표류는 1681년(숙종 7), 표류 제주인(김태황) 송환은 1689년(숙종 15) 기사에 전

한다. 중국인 표류 송환 5건은 1682년(숙종 8), 1687년(숙종 13), 1692년(숙종 18), 1706년(숙종 32), 1713년(숙종 39)에 해당된다. 이 중 최대 규모는 1687년(숙종 13)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등주, 소주) 65명으로써 이들을 인솔하기 위한 역관이 파견되고 서울, 의주를 거쳐 중국 봉황성(鳳凰城)으로 인도되었다. 표류 제주인(김태황)은 중국 상선을 타고 송환되었는데, 조선 조정은 이들을 태우고 온 중국 상인들에게 총 2,000냥 전후의 은자(銀子)를 대가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도중 발생한 선박 침몰로 인해 그 익사자에 대한 휼전(추모) 거행 사례가 14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1692년(숙종 18) 1월에 발생한 사건이 최대 참사로 확인된다. 당시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던 대정현감 장후재(張後載)를 비롯 65인이 익사되어 이들을 추모하는 은전 실시를 전교로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역병으로 인한 재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1693년(숙종 19) 천연두로 약 2,000명, 1699년(숙종 25) 여역(전염 열병)으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714년(숙종 40)에는 전염병이 확산되자 조정에서 '형방패독산' 등 다량의 의약 수송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기사는 제주시재 및 급제자의 직부전시(문과 복시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전시에 응시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07년(숙종 33) 제주인 정창원(鄭敞遠), 오정빈(吳挺賓), 고만첨(高萬瞻), 1717년(숙종 43) 제주인 고만갑(高萬甲), 고처량(高處亮), 정창선(鄭敞選)의 전시직부 사실이 확인된다. 중요한 사실은 1701년(숙종 27) 제주에서도 문무과 초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절목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시취 인원은 전라도 초시의 일부 정원을 떼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뽑도록 하였다. 또한 제술 과목은 '표(表)'를 제외한 '부(賦)'와 '책(策)'으로 시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와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띈다. 조선 왕조는 명산대천에 정기적으로 제례를 지내는 규정인 사전(祀典)이 있는데, 여기에 한라산신제는 그동안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라산신제는 어사가 파견될 경우에 한해서 거행하도록 제문과 향축을 내려 보냈었다. 예컨대 1601년(선조 34)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어사로 내려왔을 때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예가 그의 『남사록(南槎錄)』에 전한다. 하지만 1703년(숙종 29) 한라산신제를 사전에 포함시켜 치악산 등의 제례와 동일하게 지낼 것을 논의한 후, 이를 명문화한 사실이 전한다. 또한 풍운뇌우제는 1703년 이형상 목사 때 폐지되었다가 1719년(숙종 45) 정동후 목사에 의

해 복설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1682년(숙종 8)에는 제주 유생들이 사현(四賢;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을 모신 제주의 귤림서원에 사액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승낙한 기사가 전한다. 이른바 제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귤림서원'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 기사는 총 1,059건이었다. 이전 효종대와 현종대의 기사보다 3~5배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4명의 역주위원에 1명을 더 투입하였고, 교열위원 2명까지 모셨다. 뿐만 아니라 1권의 책으로는 그 많은 내용을 담아내기 어려워 부득이 상, 하의 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독자 제위의 질책을 감수하며, 격려의 말씀도 감히 갈구해본다.

향후 제주학연구센터는 경종(景宗), 영조(英祖) 등 왕대별로 지속적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 기사는 《조선왕조실록》보다 10배 전후의 많은 사실이 담겨 있고,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세밀히 기록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제주 역사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당대 제주 사회의 면모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역주 사업은 역사문화 뿐 아니라 제주의 인문자연 전 분야에 걸쳐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역주위원 및 교열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및 제주학연구센터의 좌혜경, 김순자 선생님과 특히 임승희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인내심을 갖고 함께 책을 펴내신 고훈철 일신인쇄사 사장님과 편집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19년 12월

홍 기 표 (洪琦杓)

□ 일러두기

1. 본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 제주역사 편찬사업은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연차별로 역주 계획을 수립하여 왕대별로 발간하고 있다.

3. 제주역사 편찬사업은 첫 작업으로 2017년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본서는 《승정원일기》 효종대와 현종대 제주기사에 뒤이어 세 번째로 《승정원일기》 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5.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6.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탈초본'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7.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8.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김일우: 1674년(숙종 즉위) 9월 15일 ~ 1680년(숙종 6) 5월 5일
   2) 문숙자: 1680년(숙종 6) 5월 5일 ~ 1686년(숙종 12) 7월 2일
   3) 백종진: 1686년(숙종 12) 7월 8일 ~ 1694년(숙종 20) 2월 13일
      ※ 기사 발췌 및 역주 과정에서 누락된 기사를 추가한 경우의 역주도 담당하였다.
   4) 오창명: 1694년(숙종 20) 2월 13일 ~ 1704년(숙종 30) 12월 17일
   5) 백종진: 1705년(숙종 31) 1월 25일 ~ 1708년(숙종 34) 12월 27일
   6) 홍기표: 1709년(숙종 35) 1월 6일 ~ 1720년(숙종 46) 5월 22일

목 차

발 간 사 …… 5
해 제 …… 7
일러두기 …… 21

肅宗

1674年

卽位年 9月 15日(丙子) …… 40
卽位年 9月 19日(庚辰) …… 41
卽位年 10月 21日(辛亥) …… 42
卽位年 11月 29日(戊子) …… 44

1675年

元年 1月 19日(戊寅) …… 46
元年 1月 23日(壬午) …… 49
元年 1月 26日(乙酉) …… 50
元年 2月 2日(庚寅) …… 51
元年 2月 6日(甲午) …… 52
元年 2月 6日(甲午) …… 53
元年 2月 27日(乙卯) …… 54
元年 2月 28日(丙辰) …… 55
元年 2月 28日(丙辰) …… 56
元年 2月 28日(丙辰) …… 57
元年 3月 6日(甲子) …… 58
元年 3月 7日(乙丑) …… 59
元年 3月 21日(己卯) …… 60
元年 4月 6日(甲午) …… 61
元年 4月 10日(戊戌) …… 62
元年 5月 17日(乙亥) …… 63
元年 5月 19日(丁丑) …… 64
元年 閏 5月 28日(乙卯) …… 65
元年 6月 2日(己未) …… 66
元年 6月 3日(庚申) …… 67
元年 6月 4日(辛酉) …… 68
元年 6月 5日(壬戌) …… 69
元年 6月 23日(庚辰) …… 70
元年 7月 10日(丙申) …… 72
元年 7月 19日(乙巳) …… 73
元年 7月 24日(庚戌) …… 74
元年 7月 27日(癸丑) …… 75
元年 8月 3日(戊午) …… 76
元年 9月 6日(辛卯) …… 77
元年 9月 10日(乙未) …… 78
元年 9月 15日(庚子) …… 79
元年 11月 1日(乙酉) …… 80
元年 11月 10日(甲午) …… 81
元年 11月 10日(甲午) …… 82
元年 11月 16日(庚子) …… 83
元年 11月 18日(壬寅) …… 84
元年 12月 1日(甲寅) …… 85
元年 12月 7日(庚申) …… 86
元年 12月 10日(癸亥) …… 87
元年 12月 11日(甲子) …… 88
元年 12月 16日(己巳) …… 89
元年 12月 18日(辛未) …… 90
元年 12月 23日(丙子) …… 91

1676年

2年 1月 2日(乙酉) …… 94
2年 1月 3日(丙戌) …… 96
2年 1月 4日(丁亥) …… 98
2年 1月 8日(辛卯) …… 100
2年 1月 16日(己亥) …… 101
2年 1月 19日(壬寅) …… 103

2年 1月 22日(乙巳) …… 104
2年 1月 24日(丁未) …… 105
2年 1月 24日(丁未) …… 106
2年 1月 24日(丁未) …… 107
2年 2月 4日(丙辰) …… 113
2年 2月 6日(戊午) …… 114
2年 3月 5日(丁亥) …… 115
2年 3月 8日(庚寅) …… 116
2年 3月 8日(庚寅) …… 116
2年 4月 1日(癸丑) …… 118
2年 4月 2日(甲寅) …… 119
2年 4月 10日(壬戌) …… 120
2年 6月 24日(乙亥) …… 121
2年 7月 12日(壬辰) …… 122
2年 7月 12日(壬辰) …… 123
2年 10月 24日(癸酉) …… 124
2年 11月 17日(乙未) …… 125
2年 11月 24日(壬寅) …… 126
2年 11月 25日(癸卯) …… 127
2年 11月 26日(甲辰) …… 128
2年 11月 30日(戊申) …… 129
2年 12月 2日(庚戌) …… 130
2年 12月 3日(辛亥) …… 131
2年 12月 4日(壬子) …… 132
2年 12月 5日(癸丑) …… 133
2年 12月 6日(甲寅) …… 134
2年 12月 8日(丙辰) …… 135
2年 12月 11日(己未) …… 136
2年 12月 13日(辛酉) …… 137
2年 12月 13日(辛酉) …… 138

1677年

3年 1月 8日(乙酉) …… 140
3年 1月 22日(己亥) …… 141
3年 2月 4日(辛亥) …… 142
3年 2月 18日(乙丑) …… 143
3年 3月 13日(己丑) …… 144
3年 5月 12日(丁亥) …… 145
3年 7月 13日(戊子) …… 146
3年 7月 13日(戊子) …… 147
3年 7月 20日(乙未) …… 148
3年 8月 11日(乙卯) …… 149
3年 8月 23日(丁卯) …… 151
3年 8月 23日(丁卯) …… 152
3年 9月 5日(己卯) …… 153
3年 10月 5日(戊申) …… 154
3年 10月 11日(甲寅) …… 155
3年 11月 26日(己亥) …… 156

1678年

4年 3月 27日(戊戌) …… 158
4年 閏 3月 4日(甲辰) …… 159
4年 閏 3月 23日(癸亥) …… 160
4年 4月 2日(辛未) …… 161
4年 6月 15日(甲申) …… 162
4年 6月 27日(丙申) …… 163
4年 7月 2日(庚子) …… 164
4年 7月 7日(乙巳) …… 165
4年 7月 8日(丙午) …… 166
4年 7月 8日(丙午) …… 167
4年 7月 20日(戊午) …… 168
4年 7月 22日(庚申) …… 169
4年 9月 28日(丙寅) …… 170
4年 10月 3日(庚午) …… 171
4年 10月 5日(壬申) …… 172
4年 11月 13日(庚戌) …… 173
4年 11月 26日(癸亥) …… 174

1679年

5年 1月 21日(丁巳) …… 176
5年 2月 1日(丙寅) …… 177
5年 3月 18日(癸丑) …… 178
5年 3月 19日(甲寅) …… 180

5年 3月 19日(甲寅) ····· 181
5年 4月 4日(戊辰) ····· 182
5年 4月 27日(辛卯) ····· 183
5年 5月 6日(己亥) ····· 185
5年 5月 9日(壬寅) ····· 186
5年 5月 21日(甲寅) ····· 187
5年 5月 25日(戊午) ····· 188
5年 5月 25日(戊午) ····· 189
5年 6月 3日(丙寅) ····· 190
5年 6月 14日(丁丑) ····· 192
5年 6月 14日(丁丑) ····· 193
5年 7月 3日(乙未) ····· 194
5年 7月 11日(癸卯) ····· 195
5年 7月 13日(乙巳) ····· 196
5年 7月 15日(丁未) ····· 197
5年 7月 17日(己酉) ····· 198
5年 8月 24日(丙戌) ····· 199
5年 8月 24日(丙戌) ····· 200
5年 9月 4日(丙申) ····· 201
5年 9月 12日(甲辰) ····· 204
5年 9月 13日(乙巳) ····· 206
5年 9月 14日(丙午) ····· 208
5年 9月 14日(丙午) ····· 211
5年 9月 15日(丁未) ····· 212
5年 9月 17日(己酉) ····· 214
5年 9月 23日(乙卯) ····· 217
5年 9月 23日(乙卯) ····· 218
5年 9月 25日(丁巳) ····· 220
5年 9月 26日(戊午) ····· 221
5年 9月 26日(戊午) ····· 222
5年 10月 13日(甲戌)····· 223
5年 10月 19日(庚辰)····· 224
5年 10月 26日(丁亥)····· 225
5年 10月 27日(戊子)····· 226
5年 11月 2日(癸巳) ····· 227
5年 12月 12日(癸酉)····· 229

1680年

6年 2月 3日(癸亥) ····· 232
6年 2月 3日(癸亥) ····· 234
6年 2月 4日(甲子) ····· 235
6年 2月 5日(乙丑) ····· 236
6年 2月 8日(戊辰) ····· 237
6年 2月 9日(己巳) ····· 238
6年 2月 10日(庚午) ····· 239
6年 2月 13日(癸酉) ····· 240
6年 2月 19日(己卯) ····· 241
6年 2月 20日(庚辰) ····· 242
6年 2月 22日(壬午) ····· 243
6年 4月 16日(乙亥) ····· 244
6年 4月 22日(辛巳) ····· 245
6年 4月 27日(丙戌) ····· 246
6年 4月 28日(丁亥) ····· 248
6年 5月 2日(庚寅) ····· 249
6年 5月 2日(庚寅) ····· 250
6年 5月 2日(庚寅) ····· 251
6年 5月 2日(庚寅) ····· 252
6年 5月 5日(癸巳) ····· 253
6年 5月 5日(癸巳) ····· 254
6年 5月 14日(壬寅) ····· 256
6年 6月 11日(戊辰) ····· 257
6年 7月 5日(壬辰) ····· 258
6年 7月 5日(壬辰) ····· 259
6年 7月 6日(癸巳) ····· 260
6年 7月 8日(乙未) ····· 261
6年 7月 8日(乙未) ····· 262
6年 7月 10日(丁酉) ····· 263
6年 7月 11日(戊戌) ····· 264
6年 7月 14日(辛丑) ····· 265
6年 7月 15日(壬寅) ····· 267
6年 8月 8日(甲子) ····· 269
6年 閏 8月 22日(戊申) ····· 270
6年 9月 13日(戊辰) ····· 271
6年 9月 13日(戊辰) ····· 272

6年 10月 15日(庚子)····· 273
6年 12月 2日(丁亥) ····· 274

1681年

7年 1月 12日(丙寅) ····· 276
7年 3月 21日(甲戌) ····· 277
7年 4月 1日(甲申)····· 278
7年 4月 10日(癸巳) ····· 279
7年 4月 13日(丙申) ····· 281
7年 5月 23日(乙亥) ····· 282
7年 6月 3日(甲申)····· 283
7年 7月 1日(壬子)····· 285
7年 7月 2日(癸丑)····· 287
7年 7月 3日(甲寅)····· 289
7年 7月 4日(乙卯)····· 291
7年 7月 5日(丙辰)····· 293
7年 7月 6日(丁巳)····· 295
7年 7月 9日(庚申)····· 297
7年 7月 11日(壬戌) ····· 298
7年 7月 12日(癸亥) ····· 300
7年 7月 13日(甲子) ····· 302
7年 7月 14日(乙丑) ····· 304
7年 7月 18日(己巳) ····· 306
7年 7月 19日(庚午) ····· 308
7年 7月 22日(癸酉) ····· 310
7年 7月 23日(甲戌) ····· 311
7年 7月 24日(乙亥) ····· 312
7年 7月 28日(己卯) ····· 313
7年 8月 11日(辛卯) ····· 314
7年 9月 18日(丁卯) ····· 315
7年 9月 25日(甲戌) ····· 316
7年 10月 3日(壬午) ····· 317
7年 10月 15日(甲午)····· 318
7年 11月 22日(辛未)····· 319
7年 12月 22日(辛丑)····· 321

1682年

8年 1月 3日(辛亥)····· 324
8年 1月 9日(丁巳)····· 325
8年 1月 14日(壬戌) ····· 326
8年 2月 11日(己丑) ····· 327
8年 2月 27日(乙巳) ····· 328
8年 5月 2日(己酉)····· 329
8年 6月 4日(庚辰)····· 330
8年 6月 19日(乙未) ····· 332
8年 6月 23日(己亥) ····· 333
8年 6月 23日(己亥) ····· 335
8年 6月 23日(己亥) ····· 336
8年 7月 5日(庚戌)····· 338
8年 7月 5日(庚戌)····· 339
8年 7月 11日(丙辰) ····· 340
8年 8月 2日(丁丑)····· 341
8年 8月 13日(戊子) ····· 342
8年 8月 14日(己丑) ····· 343
8年 8月 15日(庚寅) ····· 344
8年 8月 27日(壬寅) ····· 345
8年 8月 28日(癸卯) ····· 346
8年 10月 4日(丁丑) ····· 347
8年 10月 13日(丙戌)····· 348
8年 10月 13日(丙戌)····· 349
8年 12月 3日(丙子) ····· 350
8年 12月 3日(丙子) ····· 351
8年 12月 14日(丁亥)····· 352
8年 12月 15日(戊子)····· 354

1683年

9年 1月 29日(辛未) ····· 356
9年 2月 19日(辛卯) ····· 358
9年 2月 28日(庚子) ····· 359
9年 6月 16日(丁亥) ····· 360
9年 閏 6月 12日(壬子) ····· 361
9年 閏 6月 26日(丙寅) ····· 363

9年 7月 2日(辛未) ····· 364
9年 7月 18日(丁亥) ····· 365
9年 7月 23日(壬辰) ····· 366
9年 12月 28日(乙丑)····· 367

1684年

10年 1月 22日(戊子)····· 370
10年 2月 9日(乙巳) ····· 371
10年 2月 13日(己酉)····· 372
10年 2月 17日(癸丑)····· 373
10年 2月 18日(甲寅)····· 374
10年 2月 18日(甲寅)····· 375
10年 2月 19日(乙卯)····· 377
10年 2月 21日(丁巳)····· 378
10年 2月 27日(癸亥)····· 379
10年 2月 28日(甲子)····· 380
10年 3月 1日(丁卯) ····· 381
10年 3月 2日(戊辰) ····· 382
10年 3月 19日(乙酉)····· 383
10年 3月 25日(辛卯)····· 384
10年 4月 27日(壬戌)····· 386
10年 4月 30日(乙丑)····· 387
10年 5月 14日(己卯) ····· 388
10年 5月 20日(乙酉)····· 389
10年 5月 26日(辛卯)····· 390
10年 6月 5日(己亥) ····· 391
10年 7月 23日(丁亥)····· 392
10年 7月 23日(丁亥)····· 393
10年 8月 15日(戊申)····· 394
10年 9月 18日(辛巳) ····· 395
10年 10月 2日(甲午)····· 397
10年 10月 11日(癸卯) ····· 398
10年 10月 16日(戊申) ····· 399
10年 11月 3日(甲子)····· 400
10年 11月 19日(庚辰) ····· 401
10年 11月 19日(庚辰) ····· 402
10年 11月 23日(甲申) ····· 403

1685年

11年 2月 15日(乙巳) ····· 406
11年 2月 15日(乙巳) ····· 407
11年 2月 18日(戊申) ····· 408
11年 3月 4日(甲子) ····· 409
11年 7月 2日(庚申) ····· 410
11年 7月 12日(庚午)····· 411
11年 7月 24日(壬午)····· 412
11年 7月 24日(壬午)····· 414
11年 7月 24日(壬午)····· 415
11年 8月 20日(戊申)····· 416
11年 8月 23日(辛亥) ····· 417
11年 9月 16日(癸酉)····· 418
11年 10月 1日(戊子)····· 419
11年 10月 3日(庚寅)····· 420
11年 10月 4日(辛卯) ····· 421
11年 10月 11日(戊戌) ····· 422
11年 10月 20日(丁未) ····· 423
11年 12月 18日(甲辰) ····· 424
11年 12月 21日(丁未) ····· 425
11年 12月 28日(甲寅) ····· 426

1686年

12年 3月 7日(辛酉) ····· 428
12年 4月 10日(甲午)····· 429
12年 4月 10日(甲午)····· 430
12年 4月 21日(乙巳)····· 431
12年 5月 13日(丙申) ····· 432
12年 6月 3日(乙卯) ····· 434
12年 6月 5日(丁巳) ····· 436
12年 6月 30日(壬午)····· 438
12年 7月 2日(甲申) ····· 439
12年 7月 8日(庚寅) ····· 440
12年 7月 15日(丁酉)····· 441
12年 7月 24日(丙午)····· 442
12年 7月 24日(丙午)····· 443

12年 7月 24日(丙午)····· 444
12年 7月 28日(庚戌)····· 446
12年 9月 9日(庚寅) ····· 447
12年 10月 3日(甲寅)····· 448
12年 11月 23日(癸卯) ····· 450
12年 11月 25日(乙巳) ····· 451
12年 12月 3日(癸丑)····· 452
12年 12月 11日(辛酉) ····· 455
12年 12月 13日(癸亥) ····· 456

1687年

13年 3月 13日(辛卯)····· 458
13年 4月 17日(甲子)····· 460
13年 5月 13日(庚寅)····· 461
13年 5月 16日(癸巳)····· 463
13年 5月 16日(癸巳)····· 465
13年 5月 16日(癸巳)····· 466
13年 5月 16日(癸巳)····· 468
13年 5月 23日(庚子)····· 469
13年 6月 1日(丁未) ····· 471
13年 6月 26日(壬申)····· 473
13年 6月 29日(乙亥)····· 474
13年 7月 15日(辛卯)····· 475
13年 7月 27日(癸卯)····· 476
13年 7月 29日(乙巳)····· 477
13年 11月 3日(戊寅)····· 478
13年 11月 13日(戊子) ····· 480
13年 11月 13日(戊子) ····· 485
13年 11月 13日(戊子) ····· 486
13年 12月 3日(丁未)····· 488
13年 12月 12日(丙辰) ····· 490
13年 12月 14日(戊午) ····· 491
13年 12月 25日(己巳) ····· 492

1688年

14年 1月 10日(甲申)····· 494
14年 1月 23日(丁酉)····· 495
14年 3月 17日(庚寅)····· 498
14年 4月 11日(癸丑) ····· 499
14年 4月 20日(壬戌)····· 500
14年 5月 12日(癸未)····· 501
14年 6月 9日(庚戌) ····· 502
14年 7月 30日(庚子)····· 503
14年 8月 3日(癸卯) ····· 504
14年 8月 22日(壬戌)····· 505
14年 9月 15日(甲申)····· 507
14年 9月 15日(甲申)····· 509
14年 9月 19日(戊子)····· 510
14年 9月 20日(己丑)····· 511
14年 9月 25日(甲午)····· 512
14年 10月 6日(乙巳) ····· 513
14年 10月 11日(庚戌) ····· 514
14年 10月 17日(丙辰) ····· 515
14年 10月 19日(戊午) ····· 516
14年 11月 3日(壬申)····· 517
14年 12月 6日(乙巳)····· 518

1689年

15年 1月 17日(乙酉)····· 520
15年 1月 21日(己丑)····· 521
15年 2月 4日(壬寅) ····· 522
15年 2月 5日(癸卯) ····· 524
15年 2月 6日(甲辰) ····· 526
15年 2月 7日(乙巳) ····· 527
15年 2月 8日(丙午) ····· 528
15年 2月 10日(戊申)····· 529
15年 2月 13日(辛亥)····· 530
15年 2月 18日(丙辰)····· 533
15年 2月 18日(丙辰) ····· 534
15年 2月 19日(丁巳)····· 535
15年 3月 4日(辛未) ····· 536
15年 3月 6日(癸酉) ····· 537
15年 3月 6日(癸酉) ····· 538

15年 3月 18日(乙酉) …… 539
15年 3月 20日(丁亥)…… 540
15年 3月 25日(壬辰) …… 541
15年 閏 3月 6日(癸卯) …… 542
15年 閏 3月 8日(乙巳) …… 543
15年 閏 3月 12日(己酉) …… 544
15年 閏 3月 17日(甲寅) …… 549
15年 閏 3月 17日(甲寅) …… 550
15年 閏 3月 22日(己未) …… 551
15年 閏 3月 23日(庚申) …… 552
15年 4月 10日(丙子)…… 553
15年 4月 11日(丁丑)…… 554
15年 4月 13日(己卯)…… 555
15年 4月 18日(甲申)…… 556
15年 4月 21日(丁亥)…… 557
15年 4月 21日(丁亥)…… 564
15年 4月 23日(己丑)…… 565
15年 5月 11日(丙午)…… 566
15年 6月 7日(壬申) …… 567
15年 6月 15日(庚辰)…… 568
15年 6月 16日(辛巳)…… 569
15年 6月 19日(甲申)…… 570
15年 6月 21日(丙戌)…… 571
15年 6月 21日(丙戌)…… 573
15年 7月 15日(己酉)…… 574
15年 7月 17日(辛亥)…… 576
15年 7月 18日(壬子)…… 577
15年 7月 19日(癸丑)…… 578
15年 7月 27日(辛酉)…… 579
15年 8月 20日(癸未)…… 580
15年 8月 20日(癸未)…… 581
15年 8月 29日(壬辰)…… 582
15年 9月 21日(甲寅)…… 583
15年 11月 5日(戊戌)…… 584
15年 12月 16日(戊寅) …… 585

1690年

16年 1月 24日(丙辰)…… 588
16年 1月 26日(戊午)…… 589
16年 2月 6日(戊辰) …… 590
16年 2月 7日(己巳) …… 591
16年 2月 13日(乙亥)…… 592
16年 2月 21日(癸未)…… 594
16年 4月 13日(甲戌)…… 595
16年 4月 17日(戊寅)…… 597
16年 7月 29日(戊午)…… 598
16年 8月 3日(辛酉) …… 599
16年 8月 8日(丙寅) …… 600
16年 8月 23日(辛巳)…… 601
16年 9月 5日(壬辰) …… 602
16年 11月 17日(甲辰) …… 604
16年 12月 23日(己卯) …… 606
16年 12月 23日(己卯) …… 607

1691年

17年 1月 19日(乙巳)…… 610
17年 1月 24日(庚戌)…… 612
17年 2月 13日(己巳)…… 614
17年 4月 13日(戊辰)…… 616
17年 6月 24日(戊寅)…… 617
17年 7月 11日(甲午)…… 618
17年 7月 13日(丙申)…… 619
17年 7月 16日(己亥)…… 620
17年 7月 16日(己亥)…… 621
17年 閏 7月 5日(戊午) …… 622
17年 閏 7月 6日(己未) …… 624
17年 閏 7月 15日(戊辰) …… 625
17年 閏 7月 19日(壬申) …… 626
17年 閏 7月 19日(壬申) …… 627
17年 閏 7月 19日(壬申) …… 628
17年 8月 2日(甲申) …… 629
17年 8月 8日(庚寅) …… 630

17年 8月 23日(乙巳)…… 631
17年 9月 3日(甲寅) …… 632
17年 9月 12日(癸亥)…… 633
17年 9月 21日(壬申)…… 634

1692年

18年 1月 9日(己未) …… 636
18年 2月 8日(戊子) …… 637
18年 2月 9日(己丑) …… 638
18年 3月 13日(壬戌)…… 639
18年 4月 3日(壬午) …… 640
18年 4月 10日(己丑)…… 641
18年 5月 12日(辛酉)…… 642
18年 8月 23日(庚子)…… 643
18年 8月 23日(庚子)…… 644
18年 9月 13日(己未)…… 646

1693年

19年 1月 21日(乙丑)…… 648
19年 1月 28日(壬申)…… 650
19年 2月 3日(丁丑) …… 651
19年 2月 11日(乙酉)…… 652
19年 2月 13日(丁亥)…… 653
19年 4月 5日(戊寅) …… 654
19年 4月 5日(戊寅) …… 655
19年 4月 9日(壬午) …… 656
19年 4月 10日(癸未)…… 657
19年 4月 11日(甲申) …… 658
19年 4月 13日(丙戌)…… 659
19年 4月 19日(壬辰)…… 660
19年 4月 20日(癸巳)…… 661
19年 4月 21日(甲午)…… 662
19年 4月 22日(乙未)…… 663
19年 4月 26日(己亥)…… 664
19年 4月 27日(庚子) …… 665
19年 4月 28日(辛丑)…… 666
19年 4月 29日(壬寅)…… 667
19年 4月 30日(癸卯)…… 668
19年 5月 1日(甲辰) …… 669
19年 5月 2日(乙巳) …… 670
19年 5月 5日(戊申) …… 671
19年 5月 6日(己酉) …… 672
19年 5月 11日(甲寅)…… 673
19年 5月 12日(乙卯)…… 675
19年 5月 12日(乙卯)…… 676
19年 5月 14日(丁巳)…… 677
19年 5月 15日(戊午)…… 678
19年 5月 16日(己未)…… 679
19年 5月 17日(庚申)…… 680
19年 5月 18日(辛酉)…… 681
19年 5月 19日(壬戌)…… 682
19年 5月 20日(癸亥)…… 683
19年 5月 21日(甲子) …… 684
19年 5月 22日(乙丑) …… 685
19年 5月 25日(戊辰)…… 686
19年 5月 26日(己巳)…… 687
19年 5月 27日(庚午)…… 688
19年 5月 28日(辛未)…… 689
19年 8月 9日(庚辰) …… 690
19年 8月 14日(乙酉)…… 691
19年 8月 19日(庚寅)…… 692
19年 10月 13日(癸未) …… 693
19年 10月 15日(乙酉) …… 694

1694年

20年 1月 15日(癸丑)…… 696
20年 2月 10日(戊寅)…… 698
20年 2月 13日(辛巳)…… 699
20年 2月 13日(辛巳)…… 701
20年 3月 13日(辛亥)…… 703
20年 3月 25日(癸亥)…… 704
20年 4月 2日(己巳) …… 705
20年 4月 3日(庚午) …… 706

20年 4月 16日(癸未)····· 707
20年 4月 17日(甲申)····· 708
20年 4月 20日(丁亥)····· 710
20年 4月 26日(癸巳)····· 711
20年 4月 27日(甲午) ····· 712
20年 5月 19日(丙辰)····· 713
20年 5月 23日(庚申)····· 714
20年 5月 26日(癸亥)····· 716
20年 閏 5月 2日(戊辰) ····· 717
20年 閏 5月 8日(甲戌) ····· 718
20年 6月 8日(甲辰) ····· 719
20年 6月 14日(庚戌)····· 720
20年 6月 23日(己未)····· 721
20年 7月 7日(癸酉) ····· 722
20年 7月 16日(壬午)····· 723
20年 7月 17日(癸未)····· 724
20年 7月 23日(己丑)····· 725
20年 7月 24日(庚寅)····· 726
20年 7月 29日(乙未)····· 727
20年 8月 7日(壬寅) ····· 728
20年 9月 4日(己巳) ····· 731
20年 9月 13日(戊寅)····· 732
20年 9月 14日(己卯)····· 735
20年 11月 7日(辛未)····· 736
20年 11月 8日(壬申)····· 738
20年 11月 15日(己卯) ····· 741
20年 11月 25日(己丑) ····· 742

1696年

22年 1月 23日(庚辰)····· 746
22年 2月 2日(戊子) ····· 747
22年 2月 2日(戊子) ····· 748
22年 3月 3日(己未) ····· 749
22年 3月 14日(庚午)····· 751
22年 5月 8日(癸亥) ····· 752
22年 5月 12日(丁卯)····· 753
22年 5月 12日(丁卯)····· 754
22年 5月 14日(己巳)····· 755
22年 5月 15日(庚午)····· 756
22年 5月 16日(辛未)····· 757
22年 5月 17日(壬申)····· 758
22年 6月 5日(己丑) ····· 759
22年 6月 27日(辛亥)····· 760
22年 7月 7日(辛酉) ····· 761
22年 7月 13日(丁卯)····· 762
22年 7月 14日(戊辰)····· 763
22年 7月 15日(己巳)····· 764
22年 7月 16日(庚午)····· 765
22年 7月 24日(戊寅)····· 766
22年 7月 24日(戊寅)····· 767
22年 7月 28日(壬午)····· 768
22年 8月 15日(戊寅)····· 769
22年 8月 15日(戊寅)····· 770
22年 8月 15日(戊寅)····· 772
22年 8月 23日(丙午) ····· 773
22年 9月 14日(丁卯)····· 774

1697年

23年 3月 9日(庚申) ····· 776
23年 3月 11日(壬戌)····· 777
23年 3月 27日(戊寅)····· 779
23年 閏 3月 3日(癸未) ····· 780
23年 閏 3月 14日(甲午) ····· 782
23年 閏 3月 15日(乙未) ····· 783
23年 閏 3月 15日(乙未) ····· 784
23年 閏 3月 18日(戊戌) ····· 785
23年 4月 13日(壬戌)····· 786
23年 4月 23日(壬申)····· 787
23年 4月 25日(甲戌)····· 788
23年 7月 6日(甲申) ····· 789
23年 7月 7日(乙酉) ····· 790
23年 7月 25日(癸卯)····· 791
23年 8月 16日(癸亥)····· 792
23年 8月 19日(丙寅)····· 793

23年 8月 23日(庚午)…… 794
23年 9月 10日(丁亥)…… 796
23年 9月 10日(丁亥)…… 797
23年 10月 3日(庚戌)…… 798
23年 10月 5日(壬子)…… 799
23年 10月 6日(癸丑)…… 800
23年 10月 6日(癸丑)…… 801
23年 10月 18日(乙丑) …… 802
23年 12月 15日(辛酉) …… 803
23年 12月 27日(癸酉) …… 804
23年 12月 27日(癸酉) …… 805
23年 12月 30日(丙子) …… 806

1698年

24年 1月 3日(己卯) …… 808
24年 1月 8日(甲申) …… 810
24年 8月 2日(癸卯) …… 811
24年 8月 2日(癸卯) …… 812
24年 9月 13日(甲申)…… 813

1699年

25年 2月 6日(丙午) …… 816
25年 4月 9日(戊申) …… 817
25年 5月 20日(戊子)…… 818
25年 閏 7月 12日(戊申) …… 819
25年 8月 23日(戊子)…… 820
25年 9月 16日(辛亥)…… 821
25年 10月 21日(乙酉) …… 822
25年 10月 23日(丁亥) …… 823
25年 10月 27日(辛卯) …… 824
25年 10月 29日(癸巳) …… 825

1700年

26年 1月 6日(庚子) …… 828
26年 1月 16日(庚戌)…… 830
26年 1月 22日(丙辰)…… 833
26年 1月 24日(戊午)…… 834
26年 2月 3日(丁卯) …… 835
26年 2月 18日(壬午)…… 836
26年 2月 20日(甲申)…… 838
26年 2月 20日(甲申)…… 840
26年 3月 2日(乙未) …… 842
26年 3月 6日(己亥) …… 843
26年 4月 2日(乙丑) …… 844
26年 5月 18日(庚戌)…… 845
26年 6月 15日(丙子)…… 846
26年 6月 21日(壬午)…… 848
26年 8月 9日(己巳) …… 849

1701年

27年 4月 19日(丙子)…… 852
27年 4月 29日(丙戌)…… 853
27年 5月 6日(壬辰) …… 854
27年 6月 12日(戊辰)…… 855
27年 6月 20日(丙子)…… 857
27年 6月 22日(戊寅)…… 859
27年 7月 1日(丙戌) …… 861
27年 7月 15日(庚子)…… 862
27年 7月 25日(庚戌)…… 864
27年 9月 23日(丁未)…… 865
27年 9月 24日(戊申)…… 866
27年 9月 28日(壬子)…… 867
27年 10月 12日(乙丑) …… 868
27年 10月 24日(丁丑) …… 870
27年 10月 28日(辛巳) …… 871
27年 11月 10日(癸巳) …… 873
27年 11月 11日(甲午) …… 874
27年 11月 18日(辛丑) …… 875
27年 11月 26日(己酉) …… 877

1702年

28年 1月 11日(癸巳)…… 882

28年 1月 13日(乙未)····· 883
28年 3月 7日(戊子) ····· 884
28年 3月 17日(戊戌)····· 885
28年 4月 28日(己卯)····· 886
28年 4月 30日(辛巳)····· 889
28年 5月 15日(丙申)····· 890
28年 5月 17日(戊戌)····· 891
28年 5月 25日(丙午)····· 893
28年 5月 27日(戊申) ····· 894
28年 6月 9日(己未) ····· 895
28年 6月 16日(丙寅)····· 896
28年 6月 25日(乙亥) ····· 898
28年 閏 6月 19日(己亥) ····· 899
28年 7月 19日(戊辰)····· 900
28年 7月 25日(甲戌)····· 901
28年 7月 25日(甲戌)····· 902
28年 9月 10日(戊午)····· 904
28年 12月 25日(辛丑) ····· 905

1703年

29年 1月 2日(戊申) ····· 908
29年 1月 20日(丙寅)····· 909
29年 2月 16日(辛卯)····· 910
29年 2月 26日(辛丑)····· 911
29年 3月 3日(戊申) ····· 913
29年 3月 3日(戊申) ····· 914
29年 3月 5日(庚戌) ····· 915
29年 3月 9日(甲寅) ····· 916
29年 3月 11日(丙辰)····· 917
29年 4月 17日(壬辰)····· 918
29年 5月 20日(甲子)····· 919
29年 6月 5日(己卯) ····· 920
29年 6月 5日(己卯) ····· 921
29年 6月 5日(己卯) ····· 922
29年 7月 18日(壬戌)····· 923
29年 7月 21日(乙丑)····· 924
29年 7月 25日(己巳)····· 926
29年 7月 29日(癸酉)····· 927
29年 8月 6日(己卯) ····· 929
29年 8月 7日(庚辰) ····· 930
29年 9月 5日(戊申) ····· 932
29年 9月 9日(壬子) ····· 933
29年 9月 9日(壬子) ····· 934
29年 9月 11日(甲寅)····· 935
29年 10月 14日(丙戌) ····· 936
29年 11月 13日(甲寅) ····· 937
29年 11月 16日(丁巳) ····· 939
29年 11月 19日(庚申) ····· 940
29年 11月 21日(壬戌) ····· 941
29年 12月 21日(壬辰) ····· 942
29年 12月 24日(乙未) ····· 943

1704年

30年 2月 11日(辛巳)····· 946
30年 3月 12日(辛亥)····· 947
30年 4月 29日(戊戌)····· 948
30年 5月 5日(癸卯) ····· 949
30年 5月 5日(癸卯) ····· 951
30年 5月 5日(癸卯) ····· 953
30年 5月 15日(癸丑)····· 955
30年 5月 15日(癸丑)····· 956
30年 5月 17日(乙卯)····· 959
30年 5月 17日(乙卯)····· 960
30年 5月 17日(乙卯)····· 961
30年 5月 19日(丁巳)····· 962
30年 5月 27日(乙丑)····· 964
30年 5月 30日(戊辰)····· 966
30年 6月 1日(己巳) ····· 967
30年 6月 3日(辛未) ····· 968
30年 6月 5日(癸酉) ····· 970
30年 6月 5日(癸酉) ····· 971
30年 6月 5日(癸酉) ····· 973
30年 6月 6日(甲戌) ····· 975
30年 6月 7日(乙亥) ····· 976

30年 6月 11日(己卯)…… 978
30年 6月 12日(庚辰)…… 979
30年 6月 13日(辛巳)…… 980
30年 6月 18日(丙戌)…… 981
30年 6月 19日(丁亥)…… 982
30年 6月 30日(戊戌)…… 984
30年 7月 14日(壬子)…… 986
30年 7月 15日(癸丑)…… 987
30年 7月 16日(甲寅)…… 988
30年 7月 20日(戊午)…… 989
30年 7月 23日(辛酉)…… 991
30年 8月 11日(戊寅)…… 993
30年 8月 16日(癸未)…… 994
30年 9月 10日(丁未)…… 995
30年 9月 10日(丁未)…… 997
30年 9月 18日(乙卯)…… 999
30年 10月 28日(乙未) …… 1000
30年 11月 19日(乙卯) …… 1001
30年 11月 19日(乙卯) …… 1003
30年 12月 14日(庚辰) …… 1004
30年 12月 17日(癸未) …… 1005

1705年

31年 1月 25日(庚申)…… 1008
31年 2月 6日(庚午) …… 1009
31年 2月 6日(庚午) …… 1014
31年 2月 10日(甲戌)…… 1016
31年 3月 11日(乙巳)…… 1018
31年 3月 15日(己酉)…… 1019
31年 4月 17日(庚辰)…… 1021
31年 閏 4月 3日(丙申) …… 1023
31年 閏 4月 6日(己亥) …… 1024
31年 5月 18日(庚辰)…… 1025
31年 7月 13日(甲戌)…… 1026
31年 9月 5日(丙寅) …… 1030
31年 9月 6日(丁卯) …… 1032
31年 9月 7日(戊辰) …… 1033
31年 9月 9日(庚午) …… 1035
31年 9月 12日(癸酉)…… 1036
31年 9月 17日(戊寅)…… 1037
31年 9月 17日(戊寅)…… 1039
31年 10月 28日(戊午) …… 1041
31年 11月 13日(癸酉) …… 1042
31年 11月 20日(庚辰) …… 1044
31年 11月 20日(庚辰) …… 1045
31年 12月 6日(丙申)…… 1046

1706年

32年 1月 10日(己巳)…… 1048
32年 2月 29日(戊午)…… 1049
32年 3月 3日(辛酉) …… 1050
32年 3月 8日(丙寅) …… 1051
32年 4月 6日(癸巳) …… 1052
32年 4月 13日(庚子)…… 1053
32年 7月 12日(丁卯) …… 1054
32年 7月 26日(辛巳)…… 1055
32年 8月 5日(庚寅) …… 1056
32年 8月 22日(丁未)…… 1058
32年 8月 24日(己酉)…… 1059
32年 8月 27日(壬子)…… 1060
32年 9月 4日(己未) …… 1061
32年 9月 15日(庚午)…… 1062
32年 9月 16日(辛未)…… 1063
32年 11月 24日(戊寅) …… 1064

1707年

33年 1月 21日(乙亥)…… 1068
33年 1月 21日(乙亥)…… 1069
33年 1月 28日(壬午)…… 1070
33年 2月 19日(壬寅)…… 1071
33年 2月 22日(乙巳)…… 1072
33年 2月 29日(壬子)…… 1073
33年 3月 18日(辛未)…… 1074

33年 3月 18日(辛未)…… 1075
33年 3月 20日(癸酉)…… 1076
33年 3月 20日(癸酉)…… 1077
33年 3月 25日(戊寅)…… 1078
33年 4月 10日(壬辰)…… 1079
33年 4月 11日(癸巳)…… 1080
33年 5月 12日(癸亥)…… 1081
33年 5月 25日(丙子)…… 1082
33年 5月 28日(己卯)…… 1085
33年 7月 16日(丙寅)…… 1087
33年 7月 21日(辛未)…… 1088
33年 8月 20日(己亥)…… 1089
33年 10月 18日(丙申) …… 1090
33年 10月 27日(乙巳) …… 1092
33年 11月 3日(辛亥)…… 1093

1708年

34年 1月 10日(戊午)…… 1096
34年 1月 24日(壬申)…… 1097
34年 2月 20日(丁酉)…… 1101
34年 2月 26日(癸卯)…… 1102
34年 3月 3日(庚戌) …… 1103
34年 3月 22日(己巳)…… 1104
34年 閏 3月 11日(戊子) …… 1105
34年 5月 12日(丁亥)…… 1106
34年 8月 5日(戊申) …… 1107
34年 11月 10日(壬午) …… 1108
34年 12月 14日(丙辰) …… 1110
34年 12月 14日(丙辰) …… 1111
34年 12月 27日(己巳) …… 1112

1709年

35年 1月 6日(戊寅) …… 1114
35年 1月 6日(戊寅) …… 1115
35年 1月 10日(壬午)…… 1116
35年 1月 15日(丁亥)…… 1117
35年 2月 15日(丙辰)…… 1120
35年 2月 21日(壬戌)…… 1121
35年 3月 11日(壬午)…… 1123
35年 4月 2日(癸卯) …… 1124
35年 4月 2日(癸卯) …… 1125
35年 4月 12日(癸丑)…… 1127
35年 4月 18日(己未)…… 1128
35年 4月 20日(辛酉)…… 1129
35年 4月 21日(壬戌)…… 1130
35年 6月 23日(壬戌)…… 1132
35年 7月 5日(甲戌) …… 1134
35年 7月 21日(庚寅)…… 1136
35年 7月 29日(戊戌)…… 1138
35年 8月 16日(甲寅)…… 1139
35年 12月 16日(壬子) …… 1140
35年 12月 21日(丁巳) …… 1141

1710年

36年 3月 16日(辛巳)…… 1144
36年 5月 6日(庚午) …… 1145
36年 5月 27日(辛卯)…… 1146
36年 5月 28日(壬辰)…… 1147
36年 6月 12日(丙午)…… 1148
36年 6月 12日(丙午)…… 1149
36年 閏 7月 23日(丙辰) …… 1151
36年 8月 16日(戊寅)…… 1153
36年 8月 17日(己卯)…… 1155
36年 8月 26日(戊子)…… 1156
36年 8月 26日(戊子)…… 1158
36年 12月 21日(辛巳) …… 1159

1711年

37年 2月 7日(丙寅) …… 1162
37年 2月 9日(戊辰) …… 1163
37年 2月 9日(戊辰) …… 1164
37年 2月 14日(癸酉)…… 1165

37年 2月 21日(庚辰)…… 1166
37年 4月 24日(壬午)…… 1168
37年 4月 26日(甲申)…… 1169
37年 6月 29日(丁亥)…… 1170
37年 7月 6日(癸巳) …… 1171
37年 7月 15日(己巳)…… 1173
37年 7月 18日(乙巳)…… 1174
37年 7月 28日(乙卯)…… 1175
37年 8月 16日(癸酉)…… 1176
37年 8月 16日(癸酉)…… 1177
37年 11月 25日(庚戌) …… 1178
37年 12月 18日(壬申) …… 1179
37年 12月 19日(癸酉) …… 1180

1712年

38年 1月 17日(辛丑)…… 1184
38年 1月 26日(庚戌)…… 1185
38年 1月 28日(壬子)…… 1186
38年 2月 5日(戊午) …… 1187
38年 4月 4日(丙辰) …… 1188
38年 5月 20日(壬寅)…… 1189
38年 6月 14日(丙寅)…… 1190
38年 6月 20日(壬申)…… 1191
38年 7月 3日(甲申) …… 1194
38年 7月 4日(乙酉) …… 1195
38年 8月 11日(壬戌)…… 1196
38年 9月 4日(甲申) …… 1198
38年 12月 3日(壬子)…… 1199
38年 12月 10日(己未) …… 1200
38年 12月 14日(癸亥) …… 1201

1713年

39年 1月 9日(丁亥) …… 1204
39年 2月 2日(庚戌) …… 1205
39年 3月 7日(甲申) …… 1206
39年 3月 21日(戊戌)…… 1207
39年 4月 9日(丙辰) …… 1209
39年 4月 18日(乙丑)…… 1210
39年 5月 26日(壬寅)…… 1211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2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3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4
39年 閏 5月 12日(戊午) …… 1215
39年 閏 5月 24日(庚午) …… 1216
39年 6月 9日(甲申) …… 1217
39年 8月 11日(丙戌)…… 1218
39年 8月 24日(己亥)…… 1219
39年 9月 8日(壬子) …… 1220
39年 9月 15日(己未)…… 1221
39年 9月 15日(己未)…… 1222
39年 9月 15日(己未)…… 1224
39年 9月 24日(戊辰)…… 1225
39年 9月 25日(己巳)…… 1226
39年 9月 30日(甲戌)…… 1228
39年 10月 5日(己卯)…… 1229
39年 10月 7日(辛巳)…… 1231
39年 10月 7日(辛巳)…… 1233
39年 10月 10日(甲申) …… 1234
39年 11月 13日(丁巳) …… 1235
39年 11月 13日(丁巳) …… 1236
39年 11月 18日(壬戌) …… 1237
39年 11月 20日(甲子) …… 1238
39年 11月 20日(甲子) …… 1240
39年 11月 20日(甲子) …… 1242
39年 11月 25日(己巳) …… 1244
39年 12月 18日(辛卯) …… 1245

1714年

40年 3月 17日(戊午)…… 1248
40年 4月 21日(壬辰)…… 1251
40年 4月 21日(壬辰)…… 1252
40年 4月 22日(癸巳)…… 1253
40年 6月 5日(乙亥) …… 1254

40年 6月 19日(己丑)…… 1256
40年 6月 22日(壬辰)…… 1259
40年 8月 5日(甲戌) …… 1260
40年 8月 16日(乙酉)…… 1261
40年 8月 18日(丁亥)…… 1262
40年 8月 19日(戊子)…… 1263
40年 9月 10日(戊申)…… 1264
40年 9月 11日(己酉)…… 1265
40年 9月 19日(丁巳)…… 1266
40年 9月 23日(辛酉)…… 1269
40年 10月 3日(辛未)…… 1271
40年 11月 30日(戊辰) …… 1272

1715年

41年 1月 17日(甲寅)…… 1274
41年 1月 27日(甲子)…… 1275
41年 3月 21日(丁巳)…… 1276
41年 3月 25日(辛酉)…… 1277
41年 4月 2日(丁卯) …… 1279
41年 4月 6日(辛未) …… 1281
41年 4月 6日(辛未) …… 1282
41年 4月 20日(乙酉)…… 1283
41年 6月 8日(壬申) …… 1284
41年 6月 21日(乙酉)…… 1285
41年 7月 1日(甲午) …… 1287
41年 7月 2日(乙未) …… 1288
41年 7月 13日(丙午)…… 1289
41年 7月 14日(丁未)…… 1290
41年 7月 19日(壬子)…… 1291
41年 9月 6日(戊戌) …… 1292
41年 9月 9日(辛丑) …… 1293
41年 9月 10日(壬寅)…… 1294
41年 9月 11日(癸卯)…… 1295
41年 10月 7日(己巳)…… 1297
41年 10月 30日(壬辰) …… 1298
41年 10月 30日(壬辰) …… 1299
41年 10月 30日(壬辰) …… 1300
41年 11月 29日(辛酉) …… 1303
41年 12月 20日(壬午) …… 1304
41年 12月 22日(甲申) …… 1305
41年 12月 22日(甲申) …… 1306

1716年

42年 1月 1日(壬辰) …… 1308
42年 1月 5日(丙申) …… 1309
42年 1月 6日(丁酉) …… 1310
42年 1月 10日(辛丑)…… 1311
42年 1月 22日(癸丑)…… 1312
42年 1月 22日(癸丑)…… 1313
42年 1月 22日(癸丑)…… 1314
42年 1月 22日(癸丑)…… 1316
42年 1月 22日(癸丑)…… 1319
42年 1月 23日(甲寅)…… 1321
42年 1月 26日(丁巳)…… 1322
42年 1月 26日(丁巳)…… 1324
42年 1月 29日(庚申)…… 1327
42年 2月 2日(癸亥) …… 1328
42年 2月 3日(甲子) …… 1329
42年 2月 3日(甲子) …… 1330
42年 3月 3日(甲午) …… 1331
42年 閏3月 9日(己巳) …… 1333
42年 閏3月 10日(庚午) …… 1335
42年 閏3月 20日(庚辰) …… 1336
42年 4月 21日(庚戌)…… 1337
42年 5月 6日(乙丑) …… 1338
42年 5月 10日(己巳)…… 1339
42年 5月 11日(庚午)…… 1340
42年 6月 22日(庚戌)…… 1341
42年 6月 22日(庚戌)…… 1342
42年 7月 25日(壬午)…… 1343
42年 9月 1日(丁巳) …… 1344
42年 9月 6日(壬戌) …… 1345
42年 9月 8日(甲子) …… 1347
42年 9月 8日(甲子) …… 1348

42年 9月 8日(甲子) …… 1349
42年 9月 14日(庚午)…… 1350
42年 10月 13日(己亥) …… 1351
42年 10月 18日(甲辰) …… 1352
42年 11月 12日(戊辰) …… 1354

1717年

43年 1月 18日(癸酉)…… 1358
43年 2月 12日(丁酉)…… 1359
43年 2月 26日(辛亥)…… 1360
43年 7月 23日(乙亥)…… 1361
43年 7月 23日(乙亥)…… 1362
43年 7月 27日(己卯)…… 1363
43年 10月 3日(癸未)…… 1364
43年 11月 日(辛亥) …… 1365
43年 12月 13日(癸巳) …… 1367
43年 12月 13日(癸巳) …… 1368
43年 12月 22日(壬寅) …… 1369

1718年

44年 1月 6日(乙卯) …… 1372
44年 1月 7日(丙辰) …… 1374
44年 1月 7日(丙辰) …… 1376
44年 1月 7日(丙辰) …… 1377
44年 1月 7日(丙辰) …… 1379
44年 3月 4日(癸丑) …… 1380
44年 3月 8日(丁巳) …… 1381
44年 3月 18日(丁卯)…… 1382
44年 6月 21日(戊戌)…… 1384
44年 12月 21日(甲子) …… 1385
44年 12月 25日(戊辰) …… 1387

1719年

45年 2月 7日(庚戌) …… 1390
45年 2月 8日(辛亥) …… 1391
45年 2月 20日(癸亥)…… 1392
45年 3月 2日(乙亥) …… 1393
45年 3月 3日(丙子) …… 1394
45年 3月 16日(己丑)…… 1395
45年 4月 3日(乙巳) …… 1396
45年 4月 3日(乙巳) …… 1397
45年 4月 22日(甲子)…… 1398
45年 4月 22日(甲子)…… 1399
45年 6月 7日(戊申) …… 1400
45年 6月 18日(己未)…… 1402
45年 6月 25日(丙寅)…… 1403
45年 6月 25日(丙寅)…… 1404
45年 8月 28日(戊辰)…… 1405
45年 9月 13日(壬午)…… 1406
45年 9月 20日(己丑)…… 1407
45年 9月 25日(甲午)…… 1408
45年 9月 25日(甲午)…… 1409
45年 9月 25日(甲午)…… 1410
45年 10月 17日(丙辰) …… 1411
45年 10月 17日(丙辰) …… 1412
45年 10月 18日(丁巳) …… 1413
45年 10月 22日(辛酉) …… 1414
45年 10月 24日(癸亥) …… 1415
45年 10月 29日(戊辰) …… 1416
45年 11月 18日(丙戌) …… 1417

1720年

46年 2月 8日(乙巳) …… 1420
46年 2月 21日(戊午)…… 1421
46年 5月 11日(丁丑)…… 1422
46年 5月 12日(戊寅)…… 1423
46年 5月 28日(甲午)…… 1424
46年 6月 22日(丁巳)…… 1425

1674年

❖ 康熙 十三年 甲寅 九月 十五日 丙子

○ 司僕寺啓曰, 旌義縣監李志行, 遞任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前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太僕馬藉】

❖ 숙종 즉위년(1674) 갑인년 9월 15일(병자)

□ 이지행(李志行)의 체임 때 진상 말 2필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1]이 체임하면서 진상마 2필이 올라왔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태복시 마적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이지행, 진상마.

1) 이지행(?~?): 정의현감을 지냄. 1672년 (현종 13) 윤 7월 이송로(李松老)의 후임으로 부임하고, 1674년(현종 15) 6월 파직됨.

❖ 康熙 十三年 甲寅 九月 十九日 庚辰

○ 魂殿都監提調, 引見時, 領議政許積所啓, 三南沿海各邑各鎭堡及濟州發遣巡撫御史事, 定奪之後, 將以秋間, 發送御史, 已爲差出, 事目亦已磨鍊入啓矣. 卽今事勢, 似難發送, 待明春發送, 何如. 左議政金壽恒曰, 御史則雖於明春發送, 凡事豫爲整頓以待之意, 爲先申飭宜矣. 上曰, 御史則待明春發送, 而豫爲申飭, 可也.【備局謄錄】

❖ 숙종 즉위년(1674) 갑인년 9월 19일(경진)

□ 허적(許積) 등 입시해 삼남연해·제주(濟州)에 순무어사 파견 시기에 대해 논의함

○ 혼전도감(魂殿都監)[2]의 제조(提調)를 인견할 때 영의정 허적(許積)[3]은 아뢰기를, "삼남지방 연해의 각 진보(鎭堡)와 제주(濟州)에 순무어사(巡撫御史)를 파견하는 일을 결정한 후, 가을 사이에 어사를 파견하기로 하여 벌써 차출하였고, 사목(事目)도 이미 마련해 계(啓)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파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어사는 단지 내년 봄에 파견하더라도, 일은 미리 정돈해 두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먼저 단단히 경계토록 해 두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는 내년 봄에 파견하더라도, 미리 단단히 주의토록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혼전도감, 허적, 제주, 순무어사.

---

2) 혼전도감(魂殿都監): 혼전도감은 혼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반 일을 맡았던 임시 기관.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 혼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의 시신 매안, 신주의 혼전 봉안까지의 제반 사항을 맡고, 그 이후 곧바로 혁파됨.

3) 허적(1610~1680):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1633년(인조 11) 사마시 합격, 1637년 정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사로(仕路)에 나서서 1664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친 뒤, 1671년 영의정에도 올랐으나, 이듬해 송시열(宋時烈)의 논척을 받아 영중추부사로 전임됨. 남인으로서 서인의 송시열과 가까이 지냄.

❖ 康熙 十三年 甲寅 十月 二十一日 辛亥

○ 司僕寺啓曰, 內寺廐馬卽今見存者, 雖準元數, 非但皆是淸馬, 濟州馬則未滿三分之一, 至於御乘可合, 只是淸馬一二匹, 而亦已齒老, 臣等尋常悶慮矣. 頃於旌義縣監李志行遞任進上馬二匹中, 有仇郎馬, 齒少才駿, 誠是良馬, 臣等適會公坐, 取來看審, 殊以爲幸, 如此駿骨, 誠未易得, 別爲善養調馴, 以備御坐之意, 申飭下吏矣. 昨夕色吏來言, 中使因傳敎, 取來廐馬看品後, 李志行仇郎馬, 賜給代奠官福善君柟云, 凡差備別賜給之馬, 下吏必須以某樣馬入之之意, 來問臣等, 然後擧行, 自是規例, 而此則下吏, 初不來問於臣等, 自渠意, 直取備擬御乘者, 書單啓下, 及其啓下賜給之後, 始爲來告於臣等, 事之可駭, 莫此爲甚, 當該色吏, 則自本寺, 已爲重究, 而旣以御乘擇立別養之馬, 與凡馬一體出用於賜給, 其在事體, 殊涉未安, 李志行馬則仍立, 以他廐馬中改啓下之意, 惶恐敢啓. 傳曰, 知道. 駕轎馬中擇給, 可也.【司僕謄錄】

❖ 숙종 즉위년(1674) 갑인년 10월 21일(신해)

□ 말의 사급(賜給) 관련 절차 불이행 색리(色吏)에 대해 혹독한 책임추궁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내시(內寺)의 구마(廐馬)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비록 원래 숫자대로 하더라도 모두가 청마(淸馬)[4]일 뿐만 아니라 제주마(濟州馬)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또 임금께서 타기에 적합한 것은 단지 청마 한 두 필뿐인데 이 역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도, 신들은 심상케 여겨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지행(李志行)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 중 구랑마(仇郎馬)[5]가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준마로 진정 좋은 말입니다. 신들이 마침 공좌(公坐)에 모여 (말을) 몰고 와 살펴보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준골(駿骨)은 정말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잘 기르고 조련해서 임금께서 탈 말로 준비하려고 하리(下吏)에게 신칙해두었습니다. 어제 저녁 색리(色吏)가 와서 말하길, '중사(中使)[6]가 전교(傳敎)에 따라서 구마들을 몰아다 간품(看品)한 뒤에 이지행의 구랑마는 대전관(代奠官)[7]인 복선군(福善君) 남(柟)에게 내려주도록 하라'고

---

4) 청마(淸馬): 청나라에서 사들인 말.
5) 구랑마(仇郎馬): 밤색[栗色]의 말.
6) 중사(中使):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던 내시(內侍).
7) 대전관(代奠官): 제사 때 임금이나 왕세자를 대신해 젯술을 올리던 관리.

하였습니다. 무릇 사급(賜給)하도록 채비〔差備〕하는 말은 하리(下吏)가 반드시 어떠한 모양의 말을 들이려고 하는지를 신들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절로 규례(規例)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리가 애당초 신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직접 임금께서 탈 말을 뽑아 단자(單子)에 기입하여 아뢰었고, 아뢴 대로 사급한 뒤에 비로소 신들에게 알렸습니다. 일이 해괴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색리를 본 시(寺)로부터 이미 엄히 추궁하였으나 이미 어승마로 따로 기르려던 말과 일반 말을 다 같이 사급하는데 쓰여 버렸으니, 이는 일 처리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이지행의 말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구마(廐馬) 중에서 고쳐 아뢸 것을 황공하지만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가교마(駕轎馬) 중에서 골라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체임진상마, 이지행, 구랑마.

❖ 康熙 十三年 甲寅 十一月 二十九日 戊申(戊子)

○ 禁府啓目粘連, 濟州牧使啓本云云. 罪人申命圭·李鼎基等, 罪名旣重, 到配未久, 不可輕議仍配之意, 回移何如? 啓依允. …….

❖ 숙종 즉위년(1674) 갑인년 11월 29일[무신(무자)]

□ 신명규(申命圭)를 제주(濟州) 배소(配所)에 그대로 유배하는 일 등에 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8]에 덧붙여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서 운운(云云)하기를. "죄인 신명규(申命圭)[9]·이정기(李鼎基)[10] 등의 죄명(罪名)이 이미 위중하고 유배된 지도 오래지 않았는데, 가볍게 그대로 유배 보낼 수 없다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떨지요?"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명규, 이정기.

---

8) 계목(啓目): 중앙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의 하나.

9) 신명규(1618~1688): 본관 평산(平山). 자는 원서(元瑞)·군서(君瑞), 호는 묵재(默齋) 혹은 적안(適安). 1662년(현종 3) 증광문과 병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친 뒤, 주로 대간(臺諫)에 많이 나아감. 1673년(현종 14) 능석(陵石) 축조 감독을 맡았던 일로 탄핵 당한 뒤, 대정현으로 유배됨. 1680년(숙종 6) 진도로 이배되고, 1683년(숙종 9) 아들 신임의 상소에 따라 풀려남. 저서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

10) 이정기(1624~?):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군섭(君燮). 1673년(현종 14) 신명규가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을 옮기는 일에 능석(陵石) 축조 감독을 맡았고, 여기에 감조관(監造官)으로 참여했다가 관리 소홀로 신명규와 함께, 탄핵 당한 뒤, 각각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유배됨.

1675年

❖ 康熙 十四年 乙卯 一月 十九日 戊寅

○ 上御夜對廳晝講, 特進官知事柳赫然, …… 錫胄曰, 兵家所重, 莫如騎兵, 而我國, 則只步無騎, 禁軍之馬, 亦甚疲劣, 至於各廳將士, 且多無馬之人, 實由於馬之稀貴, 而臣曾見太僕置簿, 諸處牧場馬, 六世禾以上者, 無捉上之事, 仍爲留放, 以至老死, 其中必多可用之馬, 而終爲空棄之物, 誠可惜也, 至於濟州金萬鎰所進山馬, 則馬品最好, 亦極繁盛而皆老死於場內, 馳突騰踏, 兒馬, 亦多致斃, 如此之馬, 尤爲可惜, 自今以後, 諸處牧場馬六禾以上, 酌定匹數, 或間三四年, 牽致于京, 擇其最優, 別樣成才, 以備國用, 其餘, 則作簿分授于鍊兵衙門, 以給將士之無馬者, 且年例雜種馬上來之類, 固爲賜給之用, 而分養去來, 帖子分給之際, 或不無下吏輩弄奸相換之弊, 終至無實之歸, 事甚虛疏. 此亦自今定式, 分授各十匹于都監·御營·守禦·摠戎等廳, 以爲喂養成才, 將士騎乘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赫然曰, 馬政之疏, 莫如近日, 牧場之設, 蓋爲重馬, 而今則棄馬作田, 以爲儲銀布之地, 故馬則養於惡地, 仍爲不成. 錫胄曰, 此言是也, 萬鎰之馬, 名曰山馬, 捉之雖難, 種則甚良, 七禾以上, 未知其幾, 而若給各衙門, 則豈不好哉? 各色惡種馬, 皆令捉來, 毋使易種, 則似好矣. 右副承旨鄭重徽曰, 上來馬匹, 定數爲當矣, 牧場之馬, 臣亦知之, 好馬, 則難捉, 少馬, 則易捉, 故好馬, 常爲空棄之物, 八道牧馬皆知數, 然後除可種者, 餘皆捉上, 則好矣. 赫然曰, 不必 如是之多取也. 上曰, 山馬及牧場馬捉上數, 令司僕提調, 與備局堂上, 相議定之.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월 19일(무인)**

□ **야대청(夜對廳)에서 제주(濟州) 김만일(金萬鎰) 목장의 말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야대청(夜對廳)에 나가 주강(晝講)하였다. 특진관지사(特進官知事) 유혁연(柳赫然)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병가(兵家)에서 중요한 것은 기병(騎兵)만 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보병만 있고 기병은 없습니다. 금군(禁軍)의 말마저 매우 열악합니다. 각 청(廳)의 장사(壯士)도 말 없는 사람도 많으니 사실은 말이 희귀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일찍이 태복시의 치부(置簿)를 보았는데 여러 곳의 목장 말 중 6·7살 이상의 것은 잡아 올리는 일이 없고 그대로 방목하여 늙어 죽게 됩니다. 그 중에는 쓸 만한 말이 많을 것인데, 끝내 헛되게 버려지는 퇴물이 되고 있으니 정

말 애석합니다. 제주(濟州) 김만일(金萬鎰)[11]이 진상한 말은 품질이 매우 좋고 또 아주 번성하고 있으나 그 목장 안에서만 늙어 죽고 있습니다. 달리다 부딪치고 서로 밟히고 어린 말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더욱 애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곳 목장의 6살 이상 되는 말은 필수(匹數)를 미리 정해 놓고, 혹 3~4년 간격으로 서울로 보내고 그 중 제일 우수하거나 특별한 모양이 있거나 재주 있는 것을 골라 국용(國用)으로 준비해두고, 나머지는 장부를 만들어 조련병과 아문(衙門)에 분급(分給)해서 말이 없는 장사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또 연례로 올라오는 잡종 말들은 사급하여 나누어 기르게 하고, 첩자를 나누어줄 때 간혹 말단 관리들이 농간해 서로 바꾸는 폐단이 없지 않아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니 일이 매우 허망합니다. 이 또한 지금부터 법식을 정해 각 10필을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등에게 나누어주고 재능을 키워 장사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마정(馬政)에 소홀히 하기는 지금만한 적이 없습니다. 목장을 설치한 이유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서인데, 지금은 말은 버려지고 밭으로 만들어서 은포(銀布)만 만들어내는 땅이 되어가고 있으니, 말들은 나쁜 땅에서 키워지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였다. 김석주가 아뢰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김만일의 말 중에서 산마(山馬)[12]라는 말은 비록 잡아오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종자만은 매우 우수합니다. 7살 이상 된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각 아문에게 분급해준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각종 각색의 나쁜 종자마를 다 잡아와서 종자가 바뀌지 말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우부승지 정중휘(鄭重徽)가 아뢰기를, "올라오는 마필의 수를 정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목장의 말들은 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잡기 어렵고 작은 말은 잡기가 쉬운데, 좋은 말은 항상 헛되게 버려지는 물건이 되어가는 실정이니, 8도 목장의 말 수량을 다 파악한 뒤 종자로 쓸 것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잡아 보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꼭 이처럼 많이 취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산마와 목장의 말을 잡아오

11) 김만일(1550~1632):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중림(重臨). 조선 중기의 목장주·말사육가로서 말을 수차례 국가에 바쳐 국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유일하게 '헌마공신'으로도 일컬어짐. 말을 바친 공으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에 이름. 아들 김대길(金大吉)도 1659년(효종 10)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제수 받았음. 이후 그 후손들이 세습해 1895년(고종 32)까지 이어졌음.

12) 산마(山馬): 제주의 김만일 후손이 감목관(監牧官)을 맡아 경영하는 산마장(山馬場)에서 길러 상납하던 말로써 성질이 강인하고, 기운이 왕성하여 전마에 적합하다고 정평이 난 말.

는 수량은 사복시 제조와 비변사 당상이 서로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마정, 김만일, 산마.

❖ 康熙 十四年 乙卯 一月 二十三日 壬午

○ 巳時, 上御夜對廳,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許積 …… 入侍 …… 積曰, 三南沿海各鎭堡及濟州, 送御史事, 【數字缺】 農時已迫, 而全羅道, 則出入海島處, 最多, 若五月, 則海暗 【數字缺】 趁來月發送, 宜矣. 上曰, 唯.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월 23일(임오)

□ 야대청(夜對廳)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해 제주(濟州)에 파견할 어사(御史)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야대청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영의정 허적 〈중략〉 등이 입시하고, 〈중략〉 허적이 아뢰기를, "삼남(三南)지역 연해의 각 진보(鎭堡)와 제주(濟州)에 어사(御史)를 파견하는 일은 【몇 글자가 빠짐】 농번기가 벌써 임박하고 전라도는 해도(海島)에 출입하는 곳이 제일 많고, 5월과 같은 달에는 바다가 어두우니 【몇 글자가 빠짐】 다음 달에 맞춰 파견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맞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야대청, 허적, 제주.

❖ 康熙 十四年 乙卯 一月 二十六日 乙酉

○ 辰時, 上御夜對廳. 告訃事校【使】沈益顯……引見時…… 入侍, ……積曰,……辛亥年, 極爲凶荒, 而濟州爲尤甚, 先王, 特爲賑救, 若爲差【數字缺】水使以下, 皆爲拿問, 爲敎, 故濟州, 賴此得以生活, 鄭台周, 潛【數字缺】妓, 多給此穀, 其罪, 不可謂不重, 而其時受刑, 亦多矣, 此罪, 雖不【數字缺】於疏決中, 自上矜惻而放釋, 宜矣, 但原情, 則渠同生所【數字缺】削去其害於渠者, 此後, 則勿爲放送何如?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월 26일(을유)

□ 야대청(夜對廳)에서 고부사(告訃使) 일행 인견 때 허적(許積) 등 입시해 제주(濟州) 흉년 때 구제 일 언급함

○ 진시(辰時)에 임금이 야대청에 나아가 고부사(告訃使)[13] 심익현(沈益顯)[14] 등을 〈중략〉 인견할 때, 〈중략〉 입시하여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신해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제주가 매우 심했습니다. 선왕께선 특별히 진휼과 구제를 위해 …를 뽑아서 …를 하는 등 【몇 글자가 빠짐】 수사(水使)이하 모두를 잡아다 문책하도록 하교(下敎)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濟州)는 이로 인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주(鄭台周)는 몰래 【몇 글자가 빠짐】 기생에게 이 곡식을 많이 주었으니, 그 죄는 중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 죄를 받은 게 많았으니, 이 죄가 비록 판결한 내용 중에 【몇 글자가 빠짐】가 아니라 하지만 임금께서 불쌍하게 여겨 석방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원정(原情)은 그의 동생이 【몇 글자가 빠짐】을 삭제시켰고, 그것이 그 자에게 해(害)가 되고 있으니, 이 뒤로는 풀어주지 않게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야대청, 고부사, 심익현, 제주.

---

13) 고부사(告訃使): 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중국에 보내는 사신을 이르던 말. 주로 새 왕의 즉위에 대해 중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임무였으며, 상사(上使)와 부사(副使)의 구별이 없었음.

14) 심익현(1641~1683):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가회(可晦), 호는 죽오(竹塢). 10세 때 효종의 부마로 뽑히고, 1652년(효종 3) 효종의 둘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 장가들어 청평위(靑平尉)에 봉해짐. 이후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여러 차례 역임하고, 만년에는 내섬시제조를 지냄. 세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다녀왔음. 서예에 뛰어나서 산릉지(山陵志)·옥책문(玉册文)·교명(敎命)의 글을 많이 씀. 도처에 상당수 서예작품을 남겼음.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二日 庚寅

○ 鄭載禧, 以備邊司言啓曰, 巡撫御史中忠淸道任奎·濟州李選, 雖陞堂上, 稱以巡撫使, 仍差勿改事, 已爲定奪於榻前, 而兩南御史有闕之代, 今當差出, 雜以堂上堂下, 或稱使, 或稱御史, 事體未安, 故皆以堂上抄擇,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2일(경인)

□ 제주(濟州) 순무어사(巡撫御史) 이선(李選) 임명 때 관계(官階) 조정에 관한 비변사(備邊司)의 계

○ 정재희(鄭載禧)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순무어사(巡撫御史)[15] 중 충청도의 임규(任奎)·제주(濟州)의 이선(李選)[16]은 비록 당상으로 승진하여 순무사로 칭하고 그대로 차임하여 바꾸지 말 일은 벌써 어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양남(兩南) 어사의 궐위를 대신해 지금 뽑아야 하는데, 당상과 당하를 섞어서 '사(使)'라고도 칭하고, '어사(御使)'라고도 칭한다면 사리와 체면이 타당치 않으니, 모두 당상으로 가려 뽑으라는 별단(別單)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걸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재희, 순무어사, 제주, 이선.

---

15) 순무어사(巡撫御史): 재앙이나 변란(變亂)이 일어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각처로 순행하며 백성들을 위무(慰撫)하던 어사.

16) 이선(1632~1692):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 혹은 소백산인(小白山人). 시호는 정간(正簡). 1664년(현종 5) 춘당대문과 병과 급제. 1673년(현종 14) 노산군(魯山君) 묘소에 시제(時祭)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의 신원을 상소함. 1675년(숙종 1) 순무사로 제주에 왔음. 1689년(숙종 15) 탄핵 뒤, 기장(機張)으로 유배되고, 거기에서 죽음. 1694년(숙종 20) 복관됨. 저서《지호집》.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六日 甲午

○ 權大載, 備邊司言啓曰, 三南及濟州巡撫使應行節目別單中, 有誤書之字, 亦有落漏之條, 故竝付標改書, 添書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6일(갑오)

□ 삼남(三南)·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 응행절목별단(應行節目別單) 중 오기·낙루의 걸 수정·첨가해 표기해 들이겠다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권대재(權大載)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삼남지방과 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의 응행절목(應行節目)의 별단(別單) 중 잘못 쓴 글자가 있고 누락한 조항도 있어서, 모두 비표를 붙여 글을 고치고 글을 첨가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재, 제주순무사, 응행절목별단.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六日 甲午

○ 刑曹參議李選疏曰, …… 猥膺濟州巡撫御史之命, 未及辭陛, 遽以大戚而停行矣, 今者廟堂, 改號爲使, 使之仍往, 顧念使事所幹, 體段頗重, 而臣之卽今情勢, 與前大異, 有不敢冒昧承當者, 不得不仰暴於聰聽之下, 以竢處分焉, 【數行缺】 先王寬大之德, 略施以薄罰矣. …….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6일(갑오)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의 명을 받들지 못하게 된 이선(李選)의 상소

○ 형조참의 이선(李選)이 아뢰기를, "〈중략〉 외람되게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의 명을 받고 하직인사도 못 하였는데, 갑자기 상(喪)을 당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개호(改號)를 '사(使)'로 하고 예전대로 가도록 하니, '사'라는 일의 근본을 돌아보면 체면이 자못 중하지만, 신의 지금 형편은 이전과 아주 다르니 감히 일을 맡으려고 덤비는 자가 없다면 부득불 임금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몇 행이 빠짐】 선왕께서는 관대한 덕으로 매우 가벼운 벌만을 베푸셨습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이선, 묘당.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二十七日 乙卯

○ 又啓曰, 卽見, 濟州牧使金興運柑橘進上王大妃殿單子, 姓字之下, 不爲着署, 殊無謹愼之意, 請濟州牧使金興運推考. 傳曰, 允.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27일(을묘)

□ 왕대비전의 감귤진상 단자(單子)에 서명치 않은 김흥운(金興運)의 추고를 청하는 윤휴(尹鑴)의 계

○ 또 아뢰기를, "이제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17]이 왕대비전의 감귤진상 단자 중 성자(姓字)의 아래에 착명과 서압하지 않은 것은 전혀 근신하는 마음이 없으니 제주목사 김흥운을 추고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흥운, 감귤진상단자.

17) 김흥운(?~?): 무신 출신. 1672년(현종 13) 전라병마절도사로 재임 중 동년 10월, 제주목사 윤계(尹堦)의 후임으로 부임하고, 1675년(숙종 1) 6월에 떠남.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二十八日 丙辰

○ 尹鑴, 以禮曹言啓曰, 濟州牧封進去十一月令薦新唐柚子, 宗廟·敬思殿·山陵·殯殿, 來二十九日依例薦進, 而崇陵則不爲封進, 考其狀啓日字, 則梓宮在殯之前故也, 殯殿所封之數, 倍於敬思殿封進之數, 以此分半, 孝敬殿及崇陵薦新, 而山陵崇陵薦新, 則依例魂殿內官, 陪進陵所, 薦進, 何如? 傳曰, 允.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28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봉진(封進) 11월령(令) 당유자(唐柚子)를 숭릉(崇陵) 등에 배진하는 일의 변통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윤휴(尹鑴)[18]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지난 11월령의 천신(薦新) 당유자를 종묘, 경사전(敬思殿), 산릉(山陵), 빈전(殯殿)에 오는 29일에 예전대로 천거하여 쓰게 하고, 숭릉(崇陵)에는 봉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장계의 날짜를 살펴보니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전에 봉진하는 수량은 경사전에 봉진하는 것의 배가 되고 있으니 이를 반으로 나눠 효경전과 숭릉에 천신하고 산릉과 숭릉에 천신하는 것은 전례대로 혼전(魂殿)의 내관(內官)에서 능소에 배진(陪進)해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윤휴, 제주목, 천신, 당유자.

---

18) 윤휴(1617~1680):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하헌(夏軒). 17세기 사상계에서 주자의 학설과 사상을 비판한 문인. 예송논쟁 때 남인으로 활동하며 서인세력과 맞섰으며, 숙종 즉위 후부터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거 축출될 때까지 많은 개혁안을 제기·실행하려 함. 1680년(숙종 6) 복선군 추대의 역모에 관여했다고 해 유배됐다가 처형당함. 저서 《독서기(讀書記)》 등 다수.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二十八日 丙辰

○ 以濟州牧使, 以私興利沙工奴希申致敗, 溆死人命, 多至十七名, 極爲慘事狀啓, 傳于鄭重徽曰, 觀此狀啓, 則溆死者, 至於十七名之多, 誠甚矜惻, 其令本道各別恤典擧行.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28일(병진)

□ 엄사자(溆死者) 발생 알린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사사로이 장사하는 사공 노(奴) 희신(希申)의 배가 침몰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게는 17명에 이르러 매우 참혹한 일을 장계로 아뢰었다. 정중징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니 빠져 죽은 자가 자그마치 17명에 이르니 참으로 심히 슬프고 불쌍하니 마땅히 본도에 명하여 각별히 휼전을 거행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엄사자, 제주목사, 사공노, 희신.

❖ 康熙 十四年 乙卯 二月 二十八日 丙辰

○ 南天漢, 以禮曹言啓曰. 濟州牧封進去十一月令宗廟薦新【數行缺】推移變通之勢, 不得已仍爲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2월 28일(병진)

□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11월령 종묘천신에 대해 변통할 방법이 없기에 그대로 천진하겠다고 보고하는 예조의 계

○ 남천한(南天漢)[19]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에서 봉진(封進)하는 지난 11월령 종묘천신(宗廟薦新)【몇 행 빠짐】옮겨 변통하는 방법, 부득이 그대로 천진(薦進)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종묘천신.

19) 남천한(1607~1686): 본관 영양(英陽). 자 장우(章宇). 호 고암(孤巖). 1646년(인조 24) 문과 급제. 대사간, 승지, 호조참의 역임.

❖ 康熙 十四年 乙卯 三月 六日 甲子

○ 禮曹啓曰, 今月十一日寒食祭, 則親行於孝敬殿, 十五日望祭, 則親行於敬思殿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又啓曰, 取考本曹謄錄, 則曾於辛亥年, 濟州別遣御史文武試才時, 因戶曹判書金壽興箚子, 備局覆啓, 別有漢挐山降香祝致祭之擧, 而此非常行之祀典, 故本曹雖未得前期定奪, 今此巡撫使到本州之時, 亦當有致祭之擧, 行祭吉日, 則到彼之後, 隨時卜日, 依祀典名山節祭例設行, 而祭文及香幣, 令該司急速磨鍊, 追送於未渡海之前, 而祭物則亦令本州, 精備擧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3월 6일(갑자)

□ 제주(濟州) 한라산(漢挐山) 치제(致祭) 관련 제문(祭文) 등의 마련·보고하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달 11일 한식제(寒食祭)는 친히 효경전(孝敬殿)에서, 15일 망제(望祭)는 친히 경사전(敬思殿)에서 거행해야 한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조의 등록(謄錄)을 모아 살펴보니 예전 신해년에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가 문무시재(文武試才)할 때, 호조판서 김수흥의 차자(箚子)로서 비변사가 복계하길, ‘별도로 한라산강향축치제(漢挐山降香祝致祭)를 거행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시 거행하는 제사의 예전(禮典)은 아니므로 본조에서 비록 이전에 기일을 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순무사가 본주에 도착할 때 마땅히 치제를 거행함이 있어야 하니, 제사를 행할 길일(吉日)은 그곳에 도착한 후 때맞춰 정하고 제사의 예전(禮典) 가운데 명산절제의 예에 의해 설행하면 됩니다. 제문과 향폐는 해당관청에서 신속히 마련하고 바다를 건너기 전에 추송(追送)하고 제물은 본주에 영을 내려 신경 써서 준비하고 거행하도록 분부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한식제, 제주별견어사, 문무시재, 한라산강향축치제.

❖ 康熙 十四年 乙卯 三月 七日 乙丑

○ 午時, 上御夜對廳, 領議政許積 …… 入侍 …… 積曰, 濟州巡撫使及三南巡撫使, 今當次第發送, 所幹事, 多有與大臣相議定奪之事 …….

❖ 숙종 1년(1675) 을묘년 3월 7일(을축)

□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제주·삼남순무사(濟州·三南巡撫使) 파견 관련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야대청에 나아가 영의정 허적(許積) 〈중략〉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와 삼남순무사(三南巡撫使)를 지금 차례로 파견하는 데 주관함은 대신과 함께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야대청, 허적, 제주순무사.

❖ 康熙 十四年 乙卯 三月 二十一日 己卯

○ 又啓曰, 濟州巡撫使李選, 今已下去, 提學命招, 書題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下缺】

❖ 숙종 1년(1675) 을묘년 3월 21일(기묘)

□ 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 이선(李選)의 하직에 제학(提學) 불러서 제자(題字)를 써서 들이도록 아뢰는 계

○ 또한 아뢰기를, "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 이선(李選)이 지금 벌써 하직하고 떠났으니, 제학(提學)을 불러서 제자(題字)를 써서 들이겠다는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하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순무사, 이선.

❖ 康熙 十四年 乙卯 四月 六日 甲午

○ 入侍時, 領議政所啓 …… 又所啓, 濟州牧使, 今當以文官差出, 而不可獨委該曹, 故臣取考官案, 則堂上無可合之人, 自前廟堂薦, 則雖在罷職中, 亦有擬望之規. 故臣欲相議稟達後, 使之擬望矣. 上曰, 雖在罷職中, 破格差出.【以上朝報】

❖ 숙종 1년(1675) 을묘년 4월 6일(갑오)

□ 입시(入侍) 때 영의정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차출 관련 일에 대해 아룀

○ 입시 때 영의정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금 문관으로 차출하는데 단지 해당 육조(六曹)에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신이 관안(官案)을 취해 살펴봤더니 당상(堂上)으로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이전부터 의정부가 추천했는데, 비록 파직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상의코자 하니 보고한 뒤에 이를 후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파직 중에 있더라도 파격적으로 차출하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영의정, 제주목사, 당상.

❖ 康熙 十四年 乙卯 四月 十日 戊戌

○ 備邊司啓曰 …… 又啓曰, 濟州牧使郭齊華, 方在全羅道康津地. 本州新營下人, 當下去迎來, 而但其下人之乘船, 在於上年十一月, 來到京中, 亦在今年正月之初云. 海外殘民, 累朔乞食, 下人, 則勿令下去, 牧使郭齊華, 則令本道給馬, 俾卽上來, 以爲省弊之地, 而下人留糧, 則令常平廳, 量宜題給,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4월 10일(무술)

□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제주(濟州) 신영(新營)의 하인(下人)에게 양식을 주는 일에 대한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곽제화(郭齊華)[20]는 지금 전라도 강진 땅에 있는데, 본주 신영(新營)의 하인이 당연히 내려가 맞이해야 하나, 단지 그 하인이 탄 배는 작년 11월에 서울에 와 금년 1월초에도 그냥 있다고 합니다. 바다 밖의 힘없는 백성이 여러 달에 걸쳐 걸식하고 있습니다. 하인에게 내려가라 영을 내리지 말고 목사 곽제화에게는 본도〔전라도〕에 말을 지급토록 명해 즉시 올라오게 해서 폐단을 줄이십시오. 제주하인에게는 상평창에 영을 내려 머물 양식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곽제화, 전라도, 제주 하인.

---

20) 곽제화(1625~1675):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중망(仲望). 1650년(효종 1)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지평(持平)·정언(正言)·장령(掌令)을 거쳐 1675년(숙종 1) 헌납에 제수된 이후 사간·집의(執義)도 역임함. 1675년 제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치 않고 곧 교체됨.

❖ 康熙 十四年 乙卯 五月 十七日 乙亥

○ 府啓,【措辭見上】…… 臣伏見昨日政廳之批, 前濟州牧使郭齊華, 加資, 有依李元祿例, 特勿還收之教, 臣竊駭惑焉. 李元祿之不收新資, 誠非法例, 今此郭齊華, 比元祿遭喪未赴任, 尤有間焉. 齊華, 特以私情, 得遞邊倅, 亦荷孝理之仁, 旣遞其任, 仍授其資, 豈非無名無義之甚也? 古之明君, 嚬笑猶愛, 名器之重, 不容虛假, 元祿之事, 已失政體, 援以爲例, 何可再誤? 請郭齊華新授加資, 亟命還收. …… 答曰, 亟停勿煩. 郭齊華, 本非不合而遞差, 爲其有老母之故也, 還收其資, 事涉未安 …….【以上朝報】

❖ 숙종 1년(1675) 을묘년 5월 17일(을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곽제화(郭齊華)의 가자(加資)를 환수하기를 청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같은 말이 앞에서 보임】〈중략〉 "신이 어제 정청(政廳)의 비답(批答)을 봤더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곽제화(郭齊華)에게 가자(加資)해 준 일은 이원록(李元祿)의 사례를 따라 특별히 환수하지 말라고 하는 전교가 있어 신이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고 미심쩍었습니다. 이원록에게 준 새로운 품계를 거두지 않은 일은 진정 법례(法例)가 아닙니다. 이번 일의 곽제화는 원록이 상(喪)을 당해 부임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제화는 다만 사사로운 정 때문에 변방수령의 직을 체임(遞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진 효도라는 이유로 체임시켜주고 그것으로 가자까지 해주었으니, 어찌 심히 명분도 의리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명군(明君)은 기쁨과 슬픔마저 아꼈다고 하고, 중요한 명기(名器)는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습니다. 원록의 일은 이미 정체(政體)를 잃어서, 직을 제수하는 게 사례가 되고 말았는데, 어찌 잘못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곽제화에게 가자한 것을 명하여 빨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속히 그만 아뢰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곽제화는 본디 합당하지 않아 체차(遞差)한 게 아니고, 그에게 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자를 환수하는 것도 일처리가 타당치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곽제화, 이원록.

❖ 康熙 十四年 乙卯 五月 十九日 丁丑

○ 晝講時, …… 領議政許積曰, …… 又所啓, 新除授濟州牧使蘇斗山, 全羅道益山人也. 遠來夫馬, 已經累月, 艱苦百狀, 而今又下去, 益山地. 還爲率來京中, 則漸遲時月, 勢必難支. 凡在任之人, 移授他職, 則除朝辭赴任, 固例也, 而此則在家除職, 除朝辭赴任, 雖無前例, 似當有變通之道, 而事非常規, 臣不敢仰請, 試詢于諸臣, 何如? 知事金萬基曰, 雖非常規, 若出於一時特命, 則似或無妨矣. 上曰, 濟州牧使, 除朝辭赴任, 可也 …….

❖ 숙종 1년(1675) 을묘년 5월 19일(정축)

□ 주강(晝講)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부임 소두산(蘇斗山)의 하직인사 시행여부 등을 논의함

○ 주강(晝講) 때, 〈중략〉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중략〉 또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21]은 전라도 익산(益山) 사람입니다. 멀리서 온 마부와 말이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어 고초가 많은데 지금 또 익산에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 서울로 오게 하면 점점 시간이 지연되어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릇 재임(在任)하는 사람을 다른 직으로 옮겨 제수하면 조정에 와 하직인사〔조사(朝辭)〕[22]를 하지 않고 부임하는 게 관례이나, 이번에는 집에 있다가 관직에 제수되었음에도 하직인사에서 제외해 부임한 것이 비록 전례는 없더라도 변통의 방법도 마땅히 있을 듯싶으나, 일이 원칙과는 달라 신은 함부로 감히 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신하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지사(知事) 김만기(金萬基)가 말하기를, "비록 원칙과 다르기는 해도, 한때의 특명(特命)으로 나온 일이니 만큼,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는 하직인사를 하지 않고 부임해도 좋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조사, 김만기.

---

21) 소두산(1627~169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 1652년(효종 3) 사마시 합격, 1660년(현종 1) 식년 문과 장원. 성균관전적·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 등을 지내다가 1675년(숙종 1) 제주목사 등을 비롯해 여러 곳의 외직을 거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 울분 끝에 병사함. 수령 재임 때 수차례 탐관오리라는 비난을 받음.

22) 조사(朝辭):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康熙 十四年 乙卯 閏 五月 二十八日 乙卯

○ 執義吳挺昌, 持平兪夏益·李沆啓曰, 濟州牧使蔡斗山校〔蘇斗山〕, 本以鄕里闢茸, 附麗發身, 曾任湖南巨州, 刼買民間【三四字缺】圖納近驛, 多受其直, 以營庄土, 橫科聚斂, 瞞報別備時【二字缺】資, 前後至再, 物情之唾罵駭憤, 固已久矣. 頃於本府之坐, 濟州人呈狀, 極言斗山, 營其父葬於六七十戶大村之中, 誘脅居民, 勒買田園, 毁家塞泉, 種植樹木, 怙勢虐民, 不一而足, 一邊呼訴之言, 固不可盡信, 而雖以斗山家自明之狀觀之, 其所抑勒, 亦不能自掩, 則其豪橫武斷, 侵害小民之罪, 不可不懲. 請濟州牧使蘇斗山, 姑先罷職, 兩邊狀內辭緣, 令本道明査啓聞後, 處置 …… 答曰, 依啓. …….【以上燼餘】

❖ 숙종 1년(1675) 을묘년 윤 5월 28일(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의 파직 등을 청하는 오정창(吳挺昌) 등의 계

○ 집의(執義) 오정창(吳挺昌), 지평(持平) 유하익(兪夏益)·이항계(李沆啓) 등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은 본래 용렬하고 아둔한데 아첨으로 출세하여 일찍이 호남의 큰 고을에 부임했고, 민간을 협박해 재산을 사들였으며,【3~4자 빠짐】 근처의 역(驛)을 손아귀에 놔 품삯을 많이 거두었고, 영(營)의 장토(庄土)에 멋대로 세금 매겨 마구 긁어 들였으며,【2자 빠짐】 별도로 준비할 때의 물품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앞뒤로 두 차례 이르렀으며, 세상에서 침 뱉으며 욕하고 분통스러워 한 게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부(사헌부)의 자리에서 봤던 제주사람의 정장(呈狀)은 두산에게 극언(極言)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6~70호의 대촌(大村) 가운데 장사를 지냈는데, 거주하는 사람을 어르고 협박하여 밭을 샀고, 집을 헐고 샘을 막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력을 믿고 백성을 학대한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쪽이 호소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두산의 집에서 스스로 밝힌 글을 봐도 그가 억지로 한 것은 가릴 수 없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려 일반 서민을 침해한 것은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사 소두산을 우선 파직하고 양측에서 올린 장계의 사연은 본도에 영을 내려 명백히 조사하고 보고한 뒤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이상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대촌.

❖ 康熙 十四年 乙卯 六月 二日 己未

○ 府啓, 【措辭見上】 請濟州牧使蘇斗山, 姑先罷職 ……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1년(1675) 을묘년 6월 2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 등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앞에서 보임】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은 우선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 康熙 十四年 乙卯 六月 三日 庚申

○ 府啓, 【措辭見上】 請濟州牧使, 姑先罷職 …… 答曰, 不允. 末端及處置事, 依啓.

❖ 숙종 1년(1675) 을묘년 6월 3일(경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인다.】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우선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과 처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 康熙 十四年 乙卯 六月 四日 辛酉

○ 府啓, 【措辭見上】 請濟州牧使蘇斗山, 姑先罷職, 兩邊狀內辭緣, 令本道明查啓聞後, 處置. 答曰, 不允.

❖ 숙종 1년(1675) 을묘년 6월 4일(신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위에 보임】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을 우선 파직하십시오. 양쪽 측 장계안의 사연은 본도에 영을 내려 명백히 조사하여 아뢰고 난 뒤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 康熙 十四年 乙卯 六月 五日 壬戌

○ 府啓, 【措辭見上】 請濟州牧使蘇斗山, 姑先罷職, 兩邊狀內辭緣, 令本道明查啓聞後, 處置. 答曰, 不允.

❖ 숙종 1년(1675) 을묘년 6월 5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임】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을 먼저 파직하고, 양쪽 측 장계안의 사연은 본도에 영을 내려 명백히 조사하여 보고한 뒤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두산.

❖ 康熙 十四年 乙卯 六月 二十三日 庚辰

○ 府啓, …… 訓鍊副正安緝, 本以悖惡麤悍之人, 猥登朝籍, 曾爲濟州屬縣之倅, 有拔劒犯上之事. 其爲海南縣監時, 承受柄臣之旨, 侵暴故參議尹善道之家, 毒徵私債米百石於一日之內, 以其不及期限, 囚其家僮八十餘人, 肆行刑杖, 擧至幾死之境, 其中一人, 立斃於酷刑之下, 使其家大小男女, 奔迸四出, 有若逢亂離劫盜者之爲, 至今聞之者, 猶爲憤惋. 其時監司, 雖有啓聞罷職之事, 而有不足以懲其悖亂諂附, 賊殺無辜之罪, 如此之人, 不可齒在衣冠之列. 請訓鍊副正安緝, 削去仕版. 答曰, 依啓.

❖ 숙종 1년(1675) 을묘년 6월 23일(경진)

□ 제주(濟州) 속현(屬縣)의 수령 안집(安緝)을 관직 경력 기록 명부에서 삭제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중략〉 "훈련부정(訓鍊副正) 안집(安緝)[23]은 본래 패악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조정에 적을 두고, 일찍이 제주(濟州)의 속현 수령이 되었을 때, 칼을 함부로 뽑아 윗사람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해남현감이었을 때는 권신(權臣)의 패지(牌旨)[24]를 이어받고, 고(故) 참의 윤선도(尹善道)[25]가를 침범해 포악스럽게 굴어 사채(私債) 쌀 100석을 하루 만에 독하게 받아내었습니다. 기한을 어긴 것 때문에 가동(家僮) 80여 명을 잡아 가두고 제멋대로 장(杖)을 때려 대부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가혹한 형벌 중에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 대소남녀가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같은 큰 난리와 강도짓에 지금 듣는 사람들도 오히려 분하고 원통하

---

23) 안집(?~?): 1649년(효종 즉위) 11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하고,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의 무고로 1651년(효종 2) 파직됨.

24) 패지(牌旨): 금전 거래 등을 대신케 하던 위임장을 이름.

25) 윤선도(1587~1671): 본관은 해남(海南). 호는 고산(孤山), 해옹(海翁), 시호는 충헌(忠憲). 1616년(광해군 8) 성균관 유생으로 이이첨(李爾瞻) 등을 규탄하는 소(疏)를 올린 일로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됨.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제수됐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감. 이후 벼슬을 모두 사양하고, 병자호란 이후 해남에서 보길도(甫吉島)로 옮아감. 효종의 부름으로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나아가기도 했으나, 사직한 뒤, 경기도 양주의 고산(孤山)에 은거함. 20여 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생활을 했으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 이 가운데 탁월한 문학적 역량이 나올 수 있었음. 정철(鄭澈)·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일컬어짐. 1675년(숙종 1) 남인의 집권으로 신원(伸寃)과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음.

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감사가 비록 파직을 계문한 일이 있지만, 그 패악으로 어지럽히고 아부한 점, 무고한 자를 해치고 죽인 죄를 충분히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자는 도저히 사대부의 반열에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훈련부정 안집을 사판(仕版)[26]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속현, 안집, 윤선도.

26) 사판(仕版): 과거 이후 관직경력을 기록한 명부.

❖ 康熙 十四年 乙卯 七月 十日 丙申

○ 政院啓曰, 濟州巡撫使李選賫來儒生試券, 當爲科次, 明日, 大提學金錫胄命招, 使之科次, 何如? 傳曰, 允.

❖ 숙종 1년(1675) 을묘년 7월 10일(병신)

□ 이선(李選)이 갖고 온 제주유생(濟州儒生) 시권(試券)의 과차(科次)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순무사(濟州巡撫使) 이선(李選)이 가지고 온 유생의 시권은 의당 성적을 매겨야하는데, 내일 대제학 김석주(金錫胄)[27]를 불러 그에게 과차(科次)하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순무사, 이선, 시권, 김석주.

---

27) 김석주(1634~1684):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식암(息庵). 전시직부를 통해 1662년(현종 3) 증광 문과 장원급제. 이후 전적(典籍)·이조좌랑·정언·좌부승지 등을 지냄. 남인과 서인을 오고가는 정치적 결탁을 통해 도승지로 특진되기도 했고, 공신호를 받기도 하였음. 사후에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공신호의 박탈, 이어 그 복구를 겪었음. 숙종 묘정에 배향되었음. 저서 《식암집(息菴稿)》·《해동사부(海東辭賦)》. 시호는 문충(文忠).

❖ 康熙 十四年 乙卯 七月 十九日 乙巳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今乙卯年上送馬五百七十一匹, 分三運發送. 其中凶咎·駑駘·雜種馬合二百三匹內, 二匹, 到靈巖病留, 一匹, 故失, 一匹, 到務安病留. 一百九十九匹, 以初運先到本寺, 而駑駘馬中一匹, 昨日到卽病斃, 時存馬一百九十八匹,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7월 19일(을사)

□ 제주(濟州)에서 보낸 말 중 병 들 것은 발병시기와 그 상태를 구분·보고하겠다는 사복시 제조의 계

○ 또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올해 을묘년에 올려 보낸 말 571필을 삼운(三運)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 중 흉구마(凶咎馬)·노태마(駑駘馬)·잡종마(雜種馬)는 도합 203필입니다. 2필은 영암에 도착해 병으로 남겨두고, 1필은 죽었고 1필은 무안에 도착해 병으로 남겨두었고, 199필은 애초 본 시(寺)에 먼저 도착했지만 노태마 중 1필은 어제 도착 즉시 병으로 죽어서 이제 말 198필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복시, 제주, 흉구마, 노태마, 잡종마.

❖ 康熙 十四年 乙卯 七月 二十四日 庚戌

○ 又以司僕寺言啓曰, 濟州再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康津故失, 一匹到靈巖故失, 一匹臨陂病留, 一匹康津病留, 一匹韓山病留, 七匹到水原放逸, 其餘一百八十七匹, 來到本寺, 故禾毛色, 別單開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7월 24일(경술)

□ 제주(濟州)의 두 번째 200필 공마(貢馬) 가운데 187필이 사복시에 도착했음을 보고하는 계

○ 또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두 번째 운반해 온 세공마 200필 가운데 1필은 배 안에서, 1필은 강진(康津)에 도착해, 1필은 영암(靈巖)에 도착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1필은 임피(臨陂), 1필은 강진(康津), 1필은 한산(韓山)에 병들어 남겨두었거니와, 7필은 수원(水原)에 도착해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187필이 사복시에 도착했음으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복시, 제주, 세공마.

❖ 康熙 十四年 乙卯 七月 二十七日 癸丑

○ 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許積所啓, …… 又所啓, 前濟州牧使金興運, 荒唐船往來緣由, 不爲報知於朝廷, 故頃日筵中, 有拿問之命矣. 第臣於上年五月, 以此等事, 申飭諸處之時, 濟州則不在於其中, 似有可恕之道矣. 上曰, 然則金興運, 姑勿拿問, 而如此申飭之後, 若又有掩置不報之事, 則各別論罪, 可也 …….【以上備局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7월 27일(계축)

□ 비변사 당상 인견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의 황당선(荒唐船) 출몰 미보고 건 등을 논함

○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뢴 바, 〈중략〉 또 아뢴 바,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이 황당선(荒唐船)이 왕래한 연유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아서 지난 번 경연 중에 잡아와 심문하라는 영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이 작년 5월에 이와 같은 문제로 여러 곳에 신칙할 때, 제주는 그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용서해 줄 만도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흥운은 잠시나마 잡아들여 와 심문하지는 말고, 이렇게 신칙한 뒤에도 만일 또 감추어 보고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각별히 죄를 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제주목사, 김흥운, 황당선.

❖ 康熙 十四年 乙卯 八月 三日 戊午

○ 司僕寺啓曰, 濟州三運年例進上馬八匹, 御乘馬二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合一百六十八匹內, 一匹, 船中故失, 一匹, 沃溝病留, 其餘馬一百六十六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寺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8월 3일(무오)

□ 제주(濟州)의 3운(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166필 도착했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세 번째 운반한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 차비(差備)진상마 80필, 삼명일(三名日)진상마 60필을 합해 168필입니다. 그 안에 1필은 배안에서 죽고 1필은 옥구(沃溝)에 병에 걸려 남기고 그 나머지 166필이 본시(本寺)에 도착했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기록하여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어승마, 차비진상마, 삼명일진상마.

❖ 康熙 十四年 乙卯 九月 六日 辛卯

○ 引見時, …… 吏曹判書尹鑴所啓, 旌義縣監李守謙, 卽故相臣元翼之庶孫也. 頃日參判獨政時, 除拜本職, 雖曰武士, 到處廉謹, 其才可用, 遠外出送, 誠爲可惜, 旌義縣監李守謙, 改差, 何如? 上曰, 李守謙改差, 可也 …….

❖ 숙종 1년(1675) 을묘년 9월 6일(신묘)

□ 인견(引見) 때,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수겸(李守謙)의 개차(改差) 등을 청하는 계

○ 인견할 때, 〈중략〉 이조판서(吏曹判書) 윤휴(尹鑴)가 아뢴 바,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수겸(李守謙)은 바로 재상 고(故) 이원익(李元翼)의 서손(庶孫)입니다. 지난번 참판이 혼자 정사를 행할 때, 본직을 제수했는데, 비록 무사(武士)라고 하지만, 가는 곳마다 청렴하고 성실했고, 그 재능도 쓸 만함으로, 먼 곳으로 나가 있는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정의현감 이수겸을 개차(改差)해주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수겸을 개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윤휴, 정의현감, 이수겸, 이원익.

❖ 康熙 十四年 乙卯 九月 十日 乙未

○ 有政, …… 尙仁詹爲旌義縣監, 鄭之垣爲引儀, 吳始復爲兵曹正郎 …….【以上朝報】

❖ 숙종 1년(1675) 을묘년 9월 10일(을미)

□ 상인첨(尙仁詹)에게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제수함

○ 정사가 있었는데, 〈중략〉 상인첨[28]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지항(鄭之垣)을 인의(引儀), 오시복(吳始復)을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삼았다. 〈하략〉.【이상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상인첨, 정의현감.

28) 상인첨(?~?): 1675년(숙종 1) 정의현감으로 부임하고, 1678년(숙종 3) 이임함. 재임 중의 탐욕과 부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679년(숙종 5) 이증(李增)이 제주안핵겸순무어사(濟州按覈兼巡撫御史)로 온 적이 있었음.

❖ 康熙 十四年 乙卯 九月 十五日 庚子

○ 禮曹啓曰, 大殿誕日, 各道監兵營所封方物, 依前例封進事, 前已啓下知委矣. 濟州牧使所封方物弓帶筒箇四部, 今始上來, 依前例看品內入, 而其中織毛馬粧, 結弓獐皮, 則無緣不爲封進, 極爲非矣. 牧使蘇斗山, 請推考, 未封織毛馬粧, 結弓獐皮, 急速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9월 15일(경자)

□ 대전(大殿) 탄일(誕日) 진상물품 직모마장(織毛馬粧) 등을 올리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소두산(蘇斗山)의 추고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 탄신일에 각도 감·병영에서 올리는 방물은 전례대로 봉진하도록 이전에 이미 지시하였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방물의 궁대통개(弓帶筒箇) 4부가 이제 막 올라와서 전례대로 간품(看品)해서 들이겠으나, 그 중 털로 짠 말장식과 활 메는 노루가죽은 이유도 없이 봉진하지 않으니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소두산을 청컨대 추고하시고, 아직 바치지 않은 털로 짠 말장식과 활 메는 노루가죽은 빨리 봉진하라는 뜻을 분부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궁대통개, 직모마장, 결궁장피, 소두산.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一月 一日 乙酉

○ 武科殿試差備官, 以命官意啓曰, 直赴殿試中東萊人李志恒錄名單子, 不書其年歲, 濟州人劉信元, 其父職銜, 書以訓鍊判官, 而不書其資級, 皆違格例, 不得已拔去. 此則兵曹自當待復科, 啓稟許赴, 而入門官收捧單子之時, 無意改察, 矇然奉留, 致令莫重殿試, 有此錯誤之弊, 終使遐方絶島之人, 未免空返, 事極可駭, 當該入門官, 從重推考, 何如? 傳曰, 科場事體, 至嚴且重, 而入門官, 不能詳審, 使遠方擧子, 致有落莫之歎, 事極痛駭, 亦甚矜惻. 當該入門官, 爲先罷職, 擧子則付之末端, 可也.

❖ 숙종 1년(1675) 을묘년 11월 1일(을유)

□ 제주인(濟州人) 유신원(劉信元) 등이 직부전시(直赴殿試)에 응시치 못하게 된 것에 따른 일의 처벌 등을 청하는 시험관의 계

○ 무과전시(武科殿試)의 차비관(差備官)이 명관(命官, 시험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직부전시자 중 동래인(東萊人) 이지항(李志恒)은 녹명단자(錄名單子)에 나이를 쓰지 않았고, 제주인(濟州人) 유신원(劉信元)은 부친의 직함을 훈련판관(訓鍊判官)으로 쓰면서 자급(資級)은 쓰지 않아, 모두 격식에 위배되어 어쩔 수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일은 병조가 스스로 다시 과거를 시행할 때, 응시토록 함을 보고토록 했으나, 성안으로 들어와 단자를 접수할 때 다시 살펴보려는 의지가 없이 장님처럼 받아놓고 그대로 방기해 막중한 전시에 이런 착오의 폐단을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먼 지방과 머나먼 외딴 섬의 사람들이 헛걸음을 면치 못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입문관(入門官)을 중한 죄로 추고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과장(科場)의 일처리는 지엄하고 또한 중한데, 입문관이 세심히 살피지 못하여 먼 지방의 응시자가 쓸쓸한 탄식만 하게 되어 일이 매우 불쌍하고 놀랍다. 해당 입문관을 먼저 파직하고 응시자는 말단에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무과전시, 녹명단자, 제주인, 유신원.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一月 十日 甲午

○ 禮曹啓辭, 今冬至各道所封方物, 因傳敎勿爲封進事, 知委各道矣. 本曹行關, 未及到彼之前, 濟州牧使所封方物弓俗筒箇四部, 織毛馬粧一部, 結弓獐皮十五張封進, 今始上來, 似當還送, 而旣已封進之物, 遠路還送有弊, 依例看品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11월 10일(갑오)

□ 이미 올린 제주(濟州)의 봉물은 환송의 폐단이 따르니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동지(冬至)의 각도 봉진 방물은 전교(傳敎)로 보내지 말도록 각도에 지시하였습니다. 본조의 공문이 아직 도달하기 전인데,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는 방물로서 궁대(弓俗)·통개(筒箇)[29] 4부, 직조의 말장식 1부, 활 메는 노루가죽 15장은 봉진하여 지금 막 올라왔음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보내온 물건을 먼 길을 환송하는 폐단도 있음으로 예전대로 간품(看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궁대통개, 직모마장, 결궁장피.

---

29) 궁대·통개(弓俗·筒箇): 궁대는 활을 넣는 통을 말하며, 통개는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도록 만든 물건. 통개의 경우는 흔히 가죽으로 만드는데, 활은 반만 들어가고 화살은 아랫부분만 들어가도록 만듦.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一月 十日 甲午

○【疊書】鄭樸, 以禮曹言啓曰, 今冬至各道所封方物, 因傳敎勿爲封進事, 知委各道矣. 本曹行關, 未及到彼之前, 濟州牧使所封方物弓伇筒箇四部, 織毛馬粧一部, 結弓獐皮十五張封進, 今始上來, 似當還送, 而旣已封進之物, 遠路還送有弊, 依例看品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년(1675) 을묘년 11월 10일(갑오)

□ 이미 올린 제주(濟州)의 봉물은 환송의 폐단이 따르니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중첩해 쓰여 있음】정박(鄭樸)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동지(冬至)의 각 도 봉진 방물은 전교(傳敎)로 보내지 말도록 각 도에 지시하였습니다. 본조의 공문이 아직 도달하기 전인데,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는 방물로서 궁대·통개(弓伇·筒箇) 4부, 직조의 말장식 1부, 활 메는 노루가죽 15장은 봉진하여 지금 막 올라왔음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보내온 물건을 먼 길을 환송하는 폐단도 있음으로 예전대로 간품(看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박, 제주목사, 궁대통개, 직모마장, 결궁장피.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一月 十六日 庚子

○ 司僕寺啓曰, 濟州判官李雲林, 遞任進上馬三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前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寺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11월 16일(경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운림(李雲林)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을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운림(李雲林)[30]의 체임진상마 3필이 올라왔는데,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에서 기르게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이운림, 체임진상마.

30) 이운림(1624~1688): 본관은 전의(全義). 1657년(효종 8) 문과 식년시 병과 급제. 1673년(현종 14) 제주판관으로 부임하고, 1676년(숙종 2) 떠남.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一月 十八日 壬寅

○ 晝講入侍時, 特進官柳赫然所啓, 軍士中無馬者, 以濟州山養馬, 捉來分給, 何如? 上曰, 待明春捉來分給, 可也.【訓局謄錄】

❖ 숙종 1년(1675) 을묘년 11월 18일(임인)

□ 주강(晝講) 때 말이 없는 군사들에게 제주(濟州)의 말을 분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에 입시했을 때, 특진관(特進官) 유혁연(柳赫然)[31]이 아뢴 바, "군사 중에 말 없는 자는 제주(濟州)의 산양마(山養馬)를 잡아다 나눠주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새해 봄까지 기다리고, 잡아다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훈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주강, 유혁연, 제주, 산양마.

---

31)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호 야당(野堂). 1644년(인조 22) 무과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던 중 효종 때 북벌과 관련해 일약 승지로 발탁되고, 그 뒤 이완(李浣)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면서 효종의 북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오래 동안 어영청의 대장직을 맡았음. 숙종 때 남인 숙청과 연루되어 경상도 영해로 유배됨. 무예와 아울러, 전략·군사 행정면에서도 재능이 뛰어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 집권과 함께, 신원과 영의정에 추증됨. 시호 무민(武愍).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一日 甲寅

○ 答府曰, 不允.【濟州牧使尹昌亨遞差事 以上內下日記】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1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체차(遞差) 청하는 사헌부의 계에 대한 비답(批答)

○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32]을 체차하는 일. 이상은 내하일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32) 윤창형(1613~1683):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회숙(會叔). 1660년(현종 1) 식년시 무과 병과급제. 이후 여러 무관직을 거쳐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함. 1676년(숙종 2)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1678년(숙종 4) 떠남. 이때 다수의 관방시설을 보수·정비·설치하였음.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七日 庚申

○ 三覆時, 獻納李壽慶所啓,【措辭見上】請濟州牧使尹昌亨遞差. 上曰, 不允.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7일(경신)

□ 삼복(三覆) 때 이수경(李壽慶) 등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체차(遞差) 등에 대해 논의함

○ 3심 재판의 삼복 때 헌납(獻納) 이수경[33]이 아뢴 바,【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임】"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체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삼복, 이수경, 제주목사, 윤창형.

33) 이수경(1627~1680):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자인(子仁), 호는 만성(晩醒), 소성(笑醒). 1665년(현종 6) 별시문과 병과 급제. 정언·부호군 등 역임함.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변방에 안치되어 배소에서 죽음. 글씨로 이름 떨침. 저서《기축록(己丑錄)》, 글씨 〈이색비(李穡碑)〉·〈청풍군수이덕순표(淸風郡守李德淳表)〉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十日 癸亥

○ 院啓, 【措辭見上】 請濟州牧使尹昌亨亟命遞差. 上曰, 不允.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10일(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체차(遞差) 명령의 서두름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임】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빨리 체차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十一日 甲子

○ 院啓, 【措辭見上】 …… 請嘉山郡守金友仁遞差, 前啓濟州牧使尹昌亨遞差事, 停啓. 答院曰, …… 遞差事, 依啓.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11일(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체차(遞差)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임】 "〈중략〉 청컨대, 가산군수(嘉山郡守) 김우인(金友仁)을 체차하고, 전에 아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체차하는 일은 삭제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중략〉 체차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김우인,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十六日 己巳

○ 吏批, 以 …… 尹爾霖爲濟州判官, 姜碩昌爲龍岡縣令, …….【正軸】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16일(기사)

□ 윤이림(尹爾霖)에게 제주판관(濟州判官) 등 관직을 제수함

○ 이비(吏批)[34]에서, 〈중략〉 윤이림[35]을 제주판관(濟州判官), 강석창(姜碩昌)을 용강현령(龍岡縣令)으로 삼았다.〈하략〉.【정축[36]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윤이림, 제주판관, 강석창.

34)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35) 윤이림(1642~1701):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택경(澤卿). 1669년(현종 10) 식년문과 을과 급제. 뒤이어 성균관에서 근무하다가, 곧 수성찰방(輸城察訪)·어천찰방(魚川察訪)을 거쳐 형조·예조정랑을 지냄. 또 김제군수, 직강, 성균관사예, 풍천부사 등도 역임함. 이 가운데 1675년(숙종 원년) 제주판관으로 제수되기도 했었으나,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임명이 취소됨.

36) 정축(正軸): 인사 관련 자료.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十八日 辛未

○ 謝恩, 獻納兪夏益 …… 濟州牧使尹昌亨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18일(신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 등이 사은(謝恩) 함

○ 헌납(獻納) 유하익(兪夏益)[37],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 〈하략〉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하익, 제주목사, 윤창형.

37) 유하익(1631～1699): 본관은 기계(杞溪). 호는 백인당(百忍堂). 1660년(현종 1)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관로에 나아가 이조정랑·동부승지 등을 거치고,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의 남인 숙청 때 함께 파직되어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풀려나와 도승지에 등용됨. 이후 이조참판·공조판서·대사헌·한성부판윤·예조판서·좌참찬·형조판서도 지냄.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의 남인 정권 퇴진 때 같이 삭출되었다가 2년 뒤에 풀려남. 글씨를 잘 썼음.

❖ 康熙 十四年 乙卯 十二月 二十三日 丙子

○ 謝恩, 都摠管 朗原君侃校【朗原君侃】…… 濟州判官尹爾霖 …….

❖ 숙종 1년(1675) 을묘년 12월 23일(병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림(尹爾霖) 등이 사은(謝恩)함

○ 도총관(都摠管) 낭원군(朗原君) 간(侃)교【朗原君侃】,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림(尹爾霖), 〈하략〉 등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도총관, 낭원군, 제주판관, 윤이림.

1676年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二日 乙酉

○ 近來國綱解弛, …… 新除授殷山縣監李守謙, 爲人之庸拙, 人望之不叶, 今姑勿論, 頃除旌義縣監, 而秉銓之臣, 以其才可用, 不合遠送, 卽爲啓遞, 曾未數月, 又除西關之倅, 雖未知守謙之才何才, 而必其不合於彼, 而合於此耶? 以用人之道, 言之, 則東西南北, 元無異同, 苟其才也, 何處不可? 況今海島關防, 尤爲緊重, 只是邑之豐瘠, 地之近遠, 果不如殷之便利於己也. 百里字牧之任, 其可爲守謙, 咨意取舍之地耶? 初之啓遞旌義也, 物情俱駭, 及拜是職, 公議愈激, 在渠之道, 固當踧踖不安, 而偃然出肅, 略無顧忌, 如此之輩, 若不懲礪, 無以杜日後猥越之弊, 請殷山縣監李守謙, 罷職不敍.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2일(을유)

□ 정의현감(旌義縣監)에서 새로 은산현감(殷山縣監)으로 제수된 이수겸(李守謙)의 파직불서(罷職不敍)를 청함

○ 근래 국가기강이 해이되고, 〈중략〉 새로 제수된 은산현감 이수겸(李守謙)은 사람됨이 옹졸하고 인망도 부족함에도, 덮어놓고 지난번에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습니다. 병전(秉銓, 인사 담당)의 신하가 그 사람의 재주가 쓸 만하기는 하나, 먼 곳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바로 아뢰어 교체했는데, 거듭 몇 달도 안 되어 또 서관〔황해도와 평안도〕의 수령에 제수했으니, 비록 수겸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꼭 저기에는 안 맞고 여기에만 맞는다는 겁니까? 사람 쓰는 방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서남북이 원래 차이가 없는데, 진실로 그의 재주는 어느 곳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하물며 지금 해도〔제주섬〕의 관방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단지 이 읍〔정의현〕의 풍요로운 정도와, 땅의 거리는 결국 은산이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점만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리나 되는 한 고을 수령의 임무는 수렴이라면 충분한데, 자의로 취사(取捨)할 형편이 됩니까? 처음 아뢰어 교체한 곳이 정의였는데, 여론이 왁작 지껄하니 이 직을 제수하게 되었지만 공론이 점점 빗발쳐, 그곳 소속의 도〔전라도〕마저도 매우 몸을 사리고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드름 피우며 숙배(肅拜)에도 나갔고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무리를 만약 징계해 바로잡아 놓지 않는다면 이후 분수에 넘어서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은산현감 이수겸을 파직하고 다시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수겸, 정의현감, 은산현감.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三日 丙戌

○ 又所啓 …… 新除授殷山縣監李守謙, 爲人之庸拙, 人望之不叶, 今姑勿論, 頃除旌義縣監, 而秉銓之臣, 以其才可用, 不合遠送, 卽爲啓遞, 曾未數月, 又除西關之倅, 雖未知守謙之才, 何才, 而必其不合於彼, 而合於此耶? 以朝廷用人之道言之, 則東西南北, 元無異同, 苟其才也, 何處不可? 況今海島關防, 尤爲緊重, 只是邑之豐瘠, 地之近遠, 果不如殷之便利於渠也. 百里字牧之任, 其可爲守謙, 恣意取捨之地耶? 初之啓遞旌義也, 物情俱駭, 及拜是職, 公議愈激, 在渠之道, 固當踧踖不安, 而偃然出肅, 略無顧忌, 如此之輩, 若不懲礪, 無以杜日後猥越之弊. 請殷山縣監李守謙, 罷職不敍. 上曰, 不允.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3일(병술)

□ 자의로 부임지를 취사선택한 전 정의현감(旌義縣監)이자 현 은산현감(殷山縣監) 이수겸(李守謙)의 파직을 청하는 김하천(金廈樞)의 계 등

○ 또 아뢴 바, "〈중략〉 새로 제수된 은산현감 이수겸(李守謙)은 사람됨이 옹졸하고 인망도 부족함에도, 덮어놓고 지난번에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습니다. 병전(秉銓, 인사 담당)의 신하가 그 사람의 재주가 쓸 만하기는 하나, 먼 곳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바로 아뢰어 교체하였습니다. 거듭 몇 달도 안 되어 또 서관〔황해도와 평안도〕의 수령에 제수했으니, 비록 수겸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꼭 저기에는 안 맞고 여기에만 맞는다는 겁니까?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방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서남북이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럴만한 재주라면 어느 곳인들 맞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해도〔제주섬〕의 관방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니, 단지 이 읍〔정의현〕의 풍요로움과 땅의 거리는 결국 은산현감이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점만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리 고을 수령의 임무는 수렴이라면 충분한데, 자의로 취사(取捨)할 형편이 됩니까? 처음 아뢰어 교체한 곳이 정의였는데, 여론이 왁작 지껄하니 이 직을 제수하게 되었지만 공론이 점점 빗발쳐, 그곳 소속의 도〔전라도〕마저도 매우 몸을 사리고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그는 거드름 피우며 숙배(肅拜)에도 나갔고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무리를 만약 징계해 바로잡아 놓지 않는다면 이후 분수에 넘어서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은산현감 이수겸을 파직하고 다시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수겸, 정의현감, 은산현감.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四日 丁亥

○ 行大司憲閔點, 執義柳命賢, 掌令金厦樉啓曰 …… 新除授殷山縣監李守謙, 爲人之庸拙, 人望之不叶, 今姑勿論, 頃除旌義縣監, 而以其才可用, 不合遠送, 卽爲啓遞, 曾未數月, 又除西關之倅, 雖不知守謙之才何才, 而不合於彼而合於此耶? 以朝廷用人之道言之, 則東西南北, 元無異同, 苟其才也, 何處不可? 況今海島關防, 尤爲緊重, 只是邑之豐瘠, 地之遠近, 果不如殷〈山〉之便利於渠也. 百里字牧之任, 其可爲守謙, 恣意取捨之地耶? 初之啓遞旌義也, 物情俱駭, 及拜是職, 公義愈激, 在渠之道, 固當踧踖不安, 而偃然出肅, 略無顧忌, 如此之輩, 若不懲礪, 毋以杜日後猥越之弊, 請殷山縣監李守謙, 罷職不敍. 民生休戚, 係於守令, 一事或失, 尙爲一時之害, 況於專務肥己, 剝割爲事者乎? …… 答曰, 不允 …… 李守謙事, 更加詳察處之.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4일(정해)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이자 현 은산현감(殷山縣監) 이수겸(李守謙)의 파직 등을 청하는 민점(閔點) 등의 계

○ 행대사헌(行大司憲) 민점[38], 집의(執義) 유명현(柳命賢), 장령(掌令) 김하정(金厦樉)이 아뢰기를, "〈중략〉 새로 제수된 은산현감(殷山縣監) 이수겸(李守謙)은 사람됨이 옹졸하고 인망도 부족함에도, 덮어놓고 지난번에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지만, 병전(秉銓:인사 담당)의 신하가 그 사람의 재주가 쓸 만하기는 하나, 먼 곳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바로 아뢰어 교체했는데, 거듭 몇 달도 안 되어 또 서관〔황해도와 평안도〕의 수령에 제수하였습니다. 비록 수겸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꼭 저기에는 안 맞고 여기에만 맞는다는 겁니까? 조정에서 사람 쓰는 방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서남북이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럴만한 재주라면 어느 곳인들 맞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해도〔제주섬〕의 관방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단지 이 읍〔정의현〕의 풍요로움과 지역의 거리가 결국 은산현감이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점만 못 한 것은 사실입

38) 민점(1614~1680):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쌍오(雙梧). 1656년(효종 7) 문과중시 병과 급제. 이후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등을 거쳐 경상도·전라도관찰사도 거침. 숙종대 형조판서·홍문관제학(提學)·이조판서 등을 지냈으나, 1677년(숙종 3)의 증광시(增廣試) 때 아들 민주도(閔周道)의 과거부정사건으로 사직했으나, 다시 복직해 공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에 이름.

니다. 백리나 되는 한 고을 수령의 임무는 수렴이라면 충분한데, 자의로 취사(取捨)할 형편이 됩니까? 처음에 아뢰어 교체한 곳이 정의였는데, 여론이 왁작 지껄하니 이 직을 제수하게 되었지만 공론이 점점 빗발쳐, 그곳 소속의 도〔전라도〕마저도 매우 몸을 사리고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그는 거드름 피우며 숙배(肅拜)에도 나갔고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무리를 만약 징계해 바로잡아 놓지 않는다면 이후 분수에 넘어서는 폐단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은산현감 이수겸을 파직하고 다시 쓰지 마십시오. 민생의 화복(禍福)은 수령에게 달려있어 한 가지 일을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한 때의 해가 됩니다. 하물며 오로지 자신만 배불리는데 힘쓰고 착취만 일삼는 사람에 있어서야?"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중략〉 이수겸의 일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처리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점, 이수겸, 정의현감, 은산현감.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八日 辛卯

○ 持平南有星啓曰 …… 頃除旌義縣監, 而以其才可用, 不合遠送, 卽爲啓遞, 曾未數月, 又除西關之倅, 雖未知守謙之才何才, 而必其不合於彼, 而合於此耶? 況今海島關防, 尤爲緊重, 遞彼除此, 亦甚無謂, 且其名稱未著, 全無履歷, 人所共知, 豈待詳察而後, 知之? 初之啓遞旌義也, 物情皆駭, 及拜是職, 公議愈激, 此而置之, 則長日後武夫圖便之習, 臣之論啓, 不容但已, 請殷山縣監李守謙, 罷職不敍 答曰, 不允. 出仕事, 依啓.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8일(신묘)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이자 현 은산현감(殷山縣監) 이수겸(李守謙)의 파직 청하는 등의 남유성(南有星)의 계

○ 지평(持平) 남유성(南有星)이 아뢰기를, "〈중략〉 지난번 제수된 정의현감(旌義縣監)은 재주가 쓸 만하기는 하나, 먼 곳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바로 아뢰어 교체했는데, 거듭 몇 달도 안 되어 또 서관〔황해도와 평안도〕의 수령에 제수 되었습니다. 비록 수겸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꼭 저기에는 안 맞고 여기에만 맞는다는 겁니까? 하물며 지금 해도〔제주섬〕의 관방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저기에서 교체하고 여기에서 제수하였으니 심히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의 명칭이 드러나지 않고 전혀 경력도 없는 것은 남들이 다 아는데 어찌 살펴보고 난 뒤에야 알겠습니까? 처음에 아뢰어 교체한 곳은 정의였는데, 여론이 왁작 지껄하고 이 직을 제수하니 공론이 점점 빗발칩니다. 이렇게 놔둔다면, 무부(武夫)가 편리만 도모하는 관습을 조장하는 것이니 신 등의 논의가 허용되지 않아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은산현감 이수겸(李守謙)을 파직하고 다시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벼슬에 나서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남유성, 정의현감, 이수겸, 은산현감.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十六日 己亥

○ 閔黯, 以禮曹言啓曰, 濟州儒生高起宗·金繼興等, 所志內, 生等, 特蒙直赴殿試之命, 累月候風, 罔極上來, 則增廣殿試, 已過, 故留待後科者, 已至年矣. 卽今庭試不遠, 付此庭試, 使之應榜, 得免落莫之歎云. 凡直赴之類, 例赴[校]【付】式年, 而取考文書, 則曾在先朝辛亥年, 因傳敎九月九日課製, 居首進士, 許赴於庭試, 此則出於特恩, 不可援以爲例, 而今此高起宗·金繼興, 則居在絶域, 與他有異, 亦不可無變通之道, 上裁, 何如? 傳曰, 特付於今番庭試.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16일(기해)

□ 제주유생(濟州儒生) 고기종(高起宗) 등의 정시(庭試) 응시를 가능케 해달라는 예조(禮曹)의 계

○ 민암(閔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유생(濟州儒生) 고기종(高起宗)[39]·김계흥(金繼興)[40] 등은 소지(所志)의 내용에 따르면, '저희 등은 특별히 직부전시(直赴殿試)의 명을 입어서 몇 달 동안 바람을 기다리며 망극하게도 올라왔는데, 증광전시는 이미 지나버려서 남아서 다음 과거를 기다리는 것도 벌써 한 해가 됩니다. 바로 지금 정시(庭試)가 멀지 않았으니 이번 정시에 부쳐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면 포기하는 탄식은 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직부(直赴)하는 경우에는 식년시(式年試)에 붙이고 있지만 문서를 모아 살펴보니, 일찍이 선대왕 신해년의 전교(傳敎)에 의해 9월 9일 과제(科製)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한 진사를 정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특은(特恩)에서 나왔지만, 사례로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기종과 김계흥은 멀고먼 지역에 살고 있으니 다른 지역과 다르고 또한 변통의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재결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는 정시에 특별히 부쳐주라."고

---

39) 고기종(1632~?): 본관은 제주. 1675년(숙종 3) 제주순무어사 이선(李選)의 시취(試取) 때 응시하여 김계흥 등의 3인과 함께 초시에 합격함. 1676년(숙종 4) 전시(殿試) 문과 때 병과 급제. 이후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를 지냄. 제주성 동문 밖에 살다가 후에 부친을 따라 봉개(奉蓋) 명도암(明道巖)으로 옮겨가 거주함. 이어 다시 애월읍 상가리(上加里)를 거쳐 구좌읍 한동리(漢東里)로 옮겨간 뒤, '방축고을'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함.

40) 김계흥(1647~1701): 본관은 광산(光山). 1675년(숙종 3) 제주순무어사 이선(李選)의 시취(試取) 때 응시하여 고기종 등의 3인과 함께 초시에 합격함. 1676년(숙종 4) 전시(殿試) 문과 때 병과 급제. 이후 사헌부 감찰(監察)에 이름. 구좌읍 한동리에서 태어나 세화리 'ᄀᆞ는-곶'에 거주했음. 글짓기와 글씨로 유명했거니와, 남학(南學)의 교수로서 후학에도 힘썼음.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유생, 고기종, 김계흥, 직부전시.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十九日 壬寅

○ 挺緯曰, 濟州設屯處, 有船隻改造事矣, 此意敢啓. 上曰, 兪.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19일(임인)

□ 오정위(吳挺緯) 입시(入侍)해 제주(濟州) 설둔처(設屯處)의 선척개조(船隻改造)에 대해 논의함

○ 오정위(吳挺緯)[41]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설둔처(設屯處)에서 선박 개조(改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오정위, 제주 설둔처, 선척개조.

41) 오정위(1616~1692): 본관은 동복(同福). 호는 동사(東沙).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거쳐 승지, 예조참의를 지냄. 충청도관찰사로도 나아가 공주의 옛 성을 개축했음. 숙종대 예조판서와 우참찬을 거쳐 호조·형조·공조판서를 지냄. 이 가운데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무안에 유배 갔다가 삭주·보성으로 이배됐고,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풀려나 다시 공조판서로 나아갔음.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二十二日 乙巳

○ 閔黯, 以兵曹言啓曰, 濟州擧子高男·韓寬·金繼武·吳泰炫·金振輝·洪尙悅等, 因巡撫使書啓, 俱以試才居首, 直赴殿試事, 捧承傳矣. 依濟州文科直赴高起宗等例, 許赴於今番殿試, 而本州擧子金雲興, 得參本道初試, 今方來在京中, 似當下去赴試, 而此乃絶島之人, 一體許赴京試, 何如? 傳曰, 允.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22일(을사)

□ 제주(濟州)의 고남(高男) 등에게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게 하자는 병조의 계

○ 민암(閔黯)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응시자 고남(高男), 한관(韓寬), 김계무(金繼武), 오태현(吳泰炫), 김진휘(金振輝), 홍상열(洪尙悅) 등은 순무사(巡撫使)의 서계(書啓)에 의하면 모두 시재(試才)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했음으로 전시에 직부하는 일을 전교를 받고 문서로 올렸습니다. 제주에서 문과에 직부된 고기종 등의 사례에 의해 이번 전시에 직부(直赴)하였지만 본주 응시자 김운흥은 본도〔전라도〕의 초시에 참여한 뒤, 지금은 올라와 서울에 와 있습니다. 마땅히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할 듯하나, 그는 멀고먼 섬사람이니 일체 서울에서의 응시를 허락해주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응시자, 고남, 한관, 김계무, 오태현, 김진휘, 홍상열, 고기종, 김운흥.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二十四日 丁未

○ 下直, 濟州牧使尹昌亨, 慶源府使金阜榮, 長水縣監趙爾重, 求禮縣監李時援.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24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 등 하직(下直)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 경원부사(慶源府使) 김부영(金阜榮), 장수현감(長水縣監) 조이중(趙爾重), 구례현감(求禮縣監) 이시원(李時援)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김부영, 조이중, 이시원.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二十四日 丁未

○ 傳于閔黯曰, 濟州牧使尹昌亨, 慶源府使金阜榮, 留待.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24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 등은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는 전교

○ 민암(閔黯)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과 경원부사(慶源府使) 김부영(金阜榮)은 남아서 대기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암, 제주목사, 윤창형, 경원부사, 김부영.

❖ 康熙 十五年 丙辰 一月 二十四日 丁未

○ 午時, 上御經筵廳. 將晝講, 領議政許積 …… 入侍. 方諸臣之未入也, 下直守令, 先爲引見事命下 …… 積曰 …… 濟州牧使引見時, 有相議分付事, 使之留在, 何如? 上曰, 勿出. …… 濟州牧使尹昌亨, 慶源府使金阜榮等, 竝入. 上曰, 守令一人先進, 餘各以次進. 尹昌亨進. 上曰, 爾年幾何? 對曰,【缺數字】上曰, 耽羅一域, 越海而遠, 且飢【缺數字】善爲之, 如有欲陳之事, 陳達, 可也. 昌亨曰, 臣以庸下, 叨此海外重地,【缺數字】値凶年, 賑救之策, 非敢不慮, 而但濟州, 乃海中也, 其處所有之穀, 不足【缺數字】則更無推移拮据之路, 以是爲憫耳. 積曰, 濟州前牧使, 未嘗一報農事形止矣. 今正月, 得見去年十月狀啓, 則始言凶年慘酷, 民事罔極, 開倉旬餘, 捧糴甚小云, 而又請以月課軍器價及耗穀牟麥等物, 救活飢民云. 以此觀之, 則其處穀物, 似足以賑救, 而臣細聞之, 則萬無自給之勢云, 爲人迂闊, 全不著意於民事之狀, 據此可知. 大槪海中飢氓, 得食之路, 與陸民之隨豐就食者, 懸殊, 故向在辛亥年, 先王, 深加軫念, 極力救恤, 使大臣及賑廳堂上一人, 專管其事, 此實莫大之惠政也. 濟州人口, 三萬餘, 而未賑前死者, 已一萬餘, 其蒙活者, 二萬餘人, 莫不刻骨感恩, 雖不敢仰達天聽, 而有上京者, 必來訪臣, 故今年農事, 臣得詳知, 風災極慘, 失稔無前云. 頃者尹昌亨, 亦語臣曰, 必有別例之賑救, 可以活民云, 前牧使所報, 雖極朦朧, 然豈以邑倅之不明, 不救望哺之赤子乎? 但兩西極凶, 三南穀物之在海邊者, 盡爲取用於賑救, 山郡所儲, 亦不敷, 無以那移, 此可慮也. 然當料理磨鍊先給【缺數字】千石, 使之赴任時, 竝爲輸往, 則賑飢民, 以宣布德意, 似可耳. 上曰,【缺數字】穀給之, 可也. 積曰, 巡撫使李選書啓中, 有可行者, 有不可行者, 而至於戰船, 前後往來者, 皆言其不可用, 此果然矣. 然戰船所泊處, 稱以防【缺一字】所, 別定將領, 著意警守, 似可矣. 且海路瞭望, 不可不著實, 聞他國船, 或來泊岸, 而愚民隱諱, 切不告官, 雖自官問之, 亦不肯告云矣. 上曰, 可怪. 積曰, 此乃鄭錦通倭之所經云, 瞭望尤爲著實. 上曰, 以地圖按之, 果是台州相通之地也, 瞭望一事, 須著意擧行. 積曰, 吾東方屬國, 只此海外疲氓, 不可不盡力撫摩. 且馬政, 重矣, 雜種則出之, 好種則養之, 可以蕃殖善馬矣. 又大靜·旌義, 皆其屬邑也, 判官及兩縣宰黜陟之權, 在於牧使, 其實乃監司也. 褒貶不可不公且嚴明, 而苟有誤事者, 卽加罷黜, 勿拘私情, 可也. 上曰, 然誠異於他邑, 宜用心於殿最之課, 誤事者, 隨卽啓聞罷黜. 積曰, 他國船漂泊者, 甚多, 盧錠, 爲牧使時, 亦遇漂船, 不善處置, 幾至爲國生事, 彼漂來船, 捉留何用? 佯爲捕捉之形, 使彼得自引去, 此乃朝廷之意也. 但濟州, 四面環海, 海中巖石, 大牙森立, 惟小船, 可以屈曲避石而行, 所謂戰船無用者, 以此也. 漂船【缺數字】者, 必敗, 敗則其人處【缺數字】難若給船以送, 則恐或漏洩於【缺數字】不忍捉

送于北京. 先朝, 曾有如此事, 頃日尹鑴之斥【缺數字】此也. 故臣語錠曰, 漂人善處之道, 惟故失一船, 爲可云, 蓋謂容彼【缺數字】佯若不知也, 而錠, 不悟此意. 臣又語錠曰, 凡漂船事, 當密通廟堂, 切勿狀啓云, 蓋此事, 旣達上聽, 則信爲難處故也. 錠, 又不從臣言, 到任後, 漂船有著岸而敗者, 錠, 祕密狀啓, 而不通於廟堂, 故臣未得知, 累月後, 見其時監司吳始壽私書, 始知之, 而以前旣分付, 不必回啓之意, 答送, 則錠, 猶不思善處之計, 乃裝一船, 調發軍人, 欲爲載送之際, 漂人等, 乘機奪船而去, 濟州軍人, 或見殺, 或見載而去, 錠, 又不告于朝廷, 前後處事, 俱極無形耳. 今使昌亨, 依臣語錠之意, 臨時處變, 如何? 上曰, 密通于備局, 可也, 然狀啓, 亦可也. 始壽曰, 濟州牧使, 例護本邑, 或不推惠於兩縣, 今雖給賑穀, 或不一體分給, 則大違朝家恤民之意耳. 上曰, 一體給之, 可也. 名雖牧使, 實則監司, 何可彼此乎? 始壽曰, 昌亨, 宜體聖旨, 以一體分給之敎, 言于兩縣百姓, 使知德意, 可也. 積曰, 穀物, 如不足用, 則急急狀啓. 上曰, 隨卽啓聞, 以爲追後賑救之地, 可也. 昌亨, 退, …… 始壽曰, 盧錠事, 臣心常痛惋, 大臣旣發言端, 臣請細陳. 錠於其時, 抵書於臣曰, 漂人拘留後, 祕密狀啓, 已久, 而尙無皁白, 不勝憫鬱云. 其狀啓上送, 在於臣到任前, 故臣亦不知曲折, 以私書問于許積, 則所答云云. 臣卽通于錠, 錠及發船調軍, 幾致變生, 擧措妄擾, 誠可怪也. 且伊時濟州人, 多賣唐物貨, 道內守令, 或有買者, 頗甚紛紜, 似聞錠, 亦染指云. 果是漂船之物貨, 則啓聞區處, 可也, 而他國物貨, 私自掠用, 則極爲不可, 雖不能的知其詳, 而臣以此陋其爲人. 頃日兵曹判書金錫胄, 欲遞錠, 北兵使時, 臣亦有所云云耳. 積曰, 此事, 人或言之, 往年吳始壽, 亦言之, 而臣答曰, 錠雖無狀, 而別無貪濫之稱, 恐或誤聞云矣. 近詳聞之, 頗有可疑, 而已往之事, 不能十分的知, 故不得請罪矣. 上曰, 不能明知, 則罪之似難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24일(정미)

□ 경연청(經筵廳)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해 물산이 부족한 제주(濟州)의 구휼과 표선(漂船) 문제 등을 논의함

○ 오시(午時) 때, 임금이 경연청에 나아갔다. 주강을 주관하는데 영의정 허적 〈중략〉 등이 입시하였다. 아직 여러 신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직하는 수령을 먼저 인견하는 일을 명했으나,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인견할 때, 상의해 분부할 일이 있으니 그에게 남아있으라고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중략〉 제주목사 윤창형과 경원부사 김부영(金阜榮) 등이 함께 입시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한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나머지는 차례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윤창형이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몇 글자가 빠짐】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 지역은 바다 건너 멀고 또 굶어【몇 글자가 빠짐】 그것을 잘 하고, 진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창형이 아뢰기를, "신이 보잘 것 없는데도 이 해외의 요충지를 함부로 맡아서, 【몇 글자가 빠짐】 흉년을 만나 진구휼(賑救恤)하는 방책을 감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주는 바로 바다 가운데에 있어 그곳에 있는 양곡이 부족해서【몇 글자가 빠짐】 다시 궁한 형편을 바꿔 볼 길이 없는데 이것이 두려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의 이전목사들은 농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정월에 작년 10월의 장계를 얻어 보니 흉년의 참혹함을 비로소 언급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일이 망극합니다. 창고를 열어 봐도 10일 남짓 환곡으로 받은 것도 매우 적다고합니다. 또 한 달마다 바치는 군기값〔軍器價〕과 모곡(耗穀)·모맥(牟麥) 등으로 기민들을 구활하겠다고 요청한다 합니다. 이로 보면 그 곳의 곡물은 구휼하기에 충분한 것 같지만 상세하게 들어보니 전혀 자급(自給)할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우활(迂闊)하고 백성의 일에 전혀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상황은 이를 근거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바다 가운데에서 기민들이 생계를 구하는 방법은 육지 백성 가운데 배불리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자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난 신해년에 선왕께서 마음을 다하고, 구휼에 힘을 다했고, 대신과 진휼청 당상 1인으로 하여금 그 일에만 전담하였으니, 이는 실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운 정사였습니다. 제주의 인구는 3만 남짓인데, 진휼 이전에 죽은 자가 이미 1만여 명이고, 겨우 구명된 자 2만여 인들은 모두들 그 은혜를 뼈에 사무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히 임금에게까지 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서울로 올라온 자가 있으면 꼭 신(臣)을 찾아오기에 금년 농사를 신은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 풍재(風災)가 너무 참혹하여 전례 없는 흉작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윤창형 또한 신과 대화하기를, '마땅히 별도로 구제한 사례가 있었으니 백성을 구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목사가 보고한 것은 비록 매우 몽롱하다해도 고을 수령이 현명치 않다고 하여 어찌 구활하길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제를 안했겠습니까? 다만 양서〔관서와 해서〕지역이 매우 흉년이니, 삼남지방 곡물 중 해변지방에 남아 있는 것들은 모두 진휼하는데 모아 사용하도록 하였고, 산 쪽 지역의 군현에 저장한 것도 넉넉지 못해 전용(轉用)할 수도 없으니 이게 염려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급료로 마련해둔 것을 먼저 지급하고, 【몇 글자 빠짐】 천 석(石)을 그의 부임 시에 함께 운반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덕음(德音)을 선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글자 빠짐】 곡식을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순무어사 이선의 서계(書啓) 중에는 수행할 만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戰船)에 관해서는 전후로 왕래하는 것들은 다들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선이 정박한 곳은 '방【한 글자 빠짐】소'[42]라고 부르고, 별도로 장령(將領)을 정해준 다음 조심히 방비하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또 해로(海路)의 사방을 살피는 것은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으니, 다른 나라 배가 간혹 해안에 정박하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백성이 숨기고 절대 관에 고하지 않으니 비록 관에서 이를 물어도 순순히 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정금(鄭錦)[43]이 왜(倭)와 통하여 지나다니는 곳이라 합니다. 사방을 살펴 경계하는 것에 더욱 신경 써야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도를 살펴보니 정말 이곳은 태주(台州)와 상통하는 곳이다. 사방을 살펴 경계하는 일은 마땅히 신경 써서 거행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우리 동방의 속국은 단지 저 바다 너머 지친 백성을 무마(撫摩)하는 데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정(馬政)이 중요한데, 잡종은 빼고, 좋은 종자만 기른다면 좋은 말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정과 정의는 모두 그 속읍입니다. 판관과 두 현의 수령을 출척시키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으니, 그가 사실 바로 감사입니다. 포폄은 공정하고 엄정·분명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파출시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사실상 다른 읍과는 다르니, 마땅히 고을 수령(守令)의 실적을 조사·보고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일을 그르친 자는 즉시 계문(啓門)하여 파출하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타국 배들이 표박(漂迫)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노정(盧錠)[44]이 목사일 때도 표류선이 왔는데,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저 표래선을 잡아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잡는 척만 하고 저들 스스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의 뜻입니다. 다만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중 암초가 뾰

---

42) 방【한 글자 빠짐】소: 방호소(防護所)로 생각됨.

43) 정금(鄭錦): 중국 정지룡(鄭之龍)의 후손. 명(明) 나라 사람으로서 청(淸) 나라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싸움에 크게 패하자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臺灣)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웅거하였음. 그 아들 정극상(鄭克塽)이 비로소 청나라에 항복하였음.

44) 노정(?~?): 본관은 풍천(豊川). 1651년(효종 2) 제주판관으로 부임했고, 재임 중 하멜 일행 승선의 네덜란드 배가 제주에 상륙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배를 1653년(효종 4) 8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리했음. 1669년(현종 10)에는 제주목사로 부임했고, 이듬해부터 해마다 극심한 흉년이 들자 현종에게 장계를 올려 구호곡을 요청하는 등 구휼에 힘썼음. 1672년(현종 13) 5월에 떠났고, 이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도 나아감.

족하게 박힌 채 숲처럼 펼쳐져 오직 작은 배만 꼬불꼬불 운행하며 암석을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선이 쓸모없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표류선이 【몇 글자 빠짐】 한 것은 반드시 부서지게 되고, 부서지면 그 사람이 처치【몇 글자 빠짐】하기 어려운데, 만약 배를 주어 보내면 혹시 【몇 글자 빠짐】에 누설될 수 있기에 차마 북경(北京)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정에서도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지난번에 윤휴가 배척 【몇 글자 빠짐】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노정에게 얘기하기를, '표인(漂人)을 잘 처리하는 방도는 단지 배하나 잃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고, 대개 저들을 포용한다고 말한다면 【몇 글자 빠짐】 알지 못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정이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또 노정에게 말하기를, '무릇 표선(漂船)의 일은 마땅히 은밀하게 묘당(廟堂)과 통하고 절대 장계하지 말라.'하였습니다. 대체로 이번 일은 벌써 상청(上廳)에 보고되었으니 정말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노정이 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임 후 표선 중에 해안가에 부서진 것이 있어 노정이 비밀히 장계하였지만 묘당(廟堂)과 통하지 않았으니, 신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몇 달 후 그 당시 감사 오시수(吳始壽)[45]의 개인적인 편지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벌써 분부했으니, 꼭 다시 아뢸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더니, 노정은 오히려 선처(善處)할 계책은 생각지 못하고 한척의 배를 띄우고 군사를 징발해서 실어 보내려 할 때에, 표류인들이 기회를 엿보다 배를 탈취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제주군인들은 살해당하거나 잡혀갔습니다. 노정은 또 조정에도 알리지 않았으니, 전후 처리한 일이 모두 매우 형편없을 따름입니다. 지금 윤창형에게 신과 노정에게 말해준 뜻에 따라 임시변통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변사와 비밀히 통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장계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제주목사가 전과 같이 본 읍을 보호한다면, 혹시 양현(兩縣)까지 은혜가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곡식을 진휼한다 해도 모두에게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조정에서 휼민하는 뜻에 크게 위배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좋겠다. 명칭은 비록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이니 어찌 피차를 가릴 것인가?"라고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윤창형은 의당 임금님의 뜻을 따라 한꺼번에 분급한다는 전교(傳敎)대로 양현백성에게 말해 성상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

45) 오시수(1632~1681): 본관은 동복(同福). 호는 수촌(水邨). 1656년(효종 7) 별시 문과 급제. 이후 정언·문학·이조정랑·사인(舍人)을 거치고, 1666년(현종 7) 중시 문과 장원하였음. 숙종대 대사헌·우참찬·판의금부사·이조판서·예조판서 등도 지내고, 1679년(숙종 5) 우의정에 오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유배되었다가 옛적 왕에게 허위보고 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사되었음. 저서《수촌집(水邨集)》.

뢰기를, “만약 곡식이 부족하면 장계를 급하게 올리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닥치는 대로 계문하면, 이에 따라 진구(賑救)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였다. 윤창형이 물러갔다. 〈중략〉 오시수가 아뢰기를, “노정의 일은 신이 늘 마음이 아픕니다. 대신이 이미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정이 신에게 쓴 글에서, ‘표류인을 잡아 둔 뒤에 비밀히 장계를 올린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잘잘못을 말해주지 않아 우울한 마음 이루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장계를 올려 보낸 것은 신이 도임하기 전 일이었고, 또한 곡절을 알지 못해 허적에게 개인 편지를 써서 물어봤더니 답한 것이 그러했습니다. 신은 바로 노정에게 알렸지만, 노정은 배를 띠워 군사를 다루다 거의 변고가 생길 뻔 했으니, 경거망동한 조처가 정말 이상합니다. 또 그 때 제주사람들이 중국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고, 전라도 수령 중에는 간혹 산 자들도 있어, 심히 어지러웠는데, 노정도 이에 관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표류선의 물건은 계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타국의 물건을 사사로이 멋대로 빼앗아 쓴 것은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신은 이 때문에 이 사람을 비루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날 병조판서 김석주가 노정을 교체하려 하는데도, 북병사였던 저 역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이번 일은 사람들이 간혹 말했었고, 예전에 오시수도 언급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노정은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별도로 탐람하다는 평도 없으니, 아마도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근래 상세히 들어보니 자못 의심나는 게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고 충분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 죄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백히 알 수가 없으니 죄주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제주목사, 윤창형, 제주인구, 대정, 정의, 탐라, 마정, 노정, 표인, 표선, 제주군인, 오시수.

❖ 康熙 十五年 丙辰 二月 四日 丙辰

○ 鄭樸,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濟州判官尹爾霖, 頃以其母類中之症, 已過十餘缺委頓呻痛之中, 添得赤白痢, 症勢危篤, 百藥無效, 人子情理, 不忍暫離, 斯速處置之意, 累度呈狀, 而本曹, 以絶島厭避之地, 不可以規外遞, 故題退矣. 今聞尹爾霖母病, 氣息奄奄, 朝夕難保云, 孝理之下, 不可强令赴任, 宜有變通之擧, 濟州判官尹爾霖, 罷黜, 何如? 傳曰, 允.

❖ 숙종 2년(1676) 병진년 2월 4일(병진)

□ 모친 위독한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림(尹爾霖)을 파출(罷黜)해 효를 다하게 할 것 청하는 이조의 계

○ 정박(鄭樸)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림(尹爾霖)은 지난번에 모친이 중풍을 맞은 지 10여일이 지나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가운데 이질까지 걸려 증세가 위독한데, 백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 아들의 정리로 차마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어 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몇 차례 장계를 올렸지만 본조(이조)에서 머나먼 섬이라 피하는 곳(근무지)이라는 이유로 규정 외로 교체할 수 없어서 물리쳤습니다. 이제 들으니 윤이림의 모친 병이 기운과 숨이 가물가물하여 조석으로 지탱키 어렵다고 하니, 효도의 이치로 봐 억지로 부임하란 영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변통의 조치로 제주판관 윤이림을 파출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박, 제주판관, 윤이림.

❖ 康熙 十五年 丙辰 二月 六日 戊午

○ 吏批, 以李夏鎭爲右承旨 …… 趙嗣基爲判決事, 徐文尙爲參知, 朴致道爲濟州判官 …….

❖ 숙종 2년(1676) 병진년 2월 6일(무오)

□ 박치도(朴致道)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이하진(李夏鎭)을 우승지(右承旨), 〈중략〉 박치도(朴致道)[46]를 제주판관(濟州判官), 〈하략〉으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이하진, 박치도, 제주판관.

---

46) 박치도(1642~1697): 본관은 순천(順天). 호는 검암(黔庵). 1668년(현종 9)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1676년(숙종 2) 제주판관으로 부임했고, 1678년(숙종 4) 떠났음. 관직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등을 지냄. 문장에 능하고, 학행이 뛰어났음.

❖ 康熙 十五年 丙辰 三月 五日 丁亥

○ 金德遠, 以禮曹言啓曰, 濟州牧所封, 去十一月令宗廟·敬思殿·山陵·孝敬殿·崇陵薦新唐柚子, 及十二月令薦新乳柑·洞庭橘等, 今始來到, 來初六日薦進崇陵薦新唐柚子·乳柑·洞庭橘, 則依例魂殿內官, 陪進陵所薦進, 而山陵薦新, 則今已停止, 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년(1676) 병진년 3월 5일(정해)

□ 제주목(濟州牧)에서 올린 천신(薦新)의 귤 가운데 산릉(山陵)에 올릴 물품은 사옹원에게 봉입(捧入)시키겠다는 예조의 계

○ 김덕원(金德遠)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봉진의 지난 11월령 종묘, 경사전, 산릉, 효경전, 숭릉에 새로 바치는 당유자(唐柚子)와 12월령으로 새로 바친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 등이 지금 비로소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초6일 숭릉에 새로 바칠 당유자, 유감, 동정귤은 이전대로 혼전내관이 배행하여 바쳐 올리겠지만, 산릉에 새로 바치는 일은 지금은 중단하고 있어서, 사옹원에서 받아들이라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당유자, 유감, 동정귤.

❖ 康熙 十五年 丙辰 三月 八日 庚寅

○ 以濟州牧使狀啓, 大靜縣各司上納貢物所載船致敗事, 傳于吳始復曰, 大靜所送官船, 大洋中忽遇狂風, 三十四人, 一時覆沒, 予深哀矜, 令本道各別恤典擧行.

❖ 숙종 2년(1676) 병진년 3월 8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로 확인된 익사자 34인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정현(大靜縣)의 각사에서 상납하는 공물을 실은 배가 부서진 일에 대해 오시복(吳始復)[47]에게 전교하기를, "'대정에서 보낸 관선이 대양 중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 34인이 동시에 침몰하였다.'하니 나는 깊이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긴다. 본도에 영을 내려 각별하게 휼전을 거행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오시복, 대정현, 휼전.

---

47) 오시복(1637~1716). 본관은 동복(同福). 호는 휴곡(休谷). 1662년(현종 3)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승지·이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역임했고,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파직되었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이조참판에 등용되고, 이어 한성 판윤·호조 판서로도 나아감. 1701년(숙종 27) 무고(巫蠱)의 옥사에 연루돼 대정현에 유배 왔다가 1712년(숙종 38) 함평·강진 등지로 이배됐고, 이듬해 영해부(寧海府: 현 경북 영덕군)에 이배된 뒤, 1716년(숙종 42) 여기에서 죽었음. 뒤에 신원되었음. 특히 글씨에 능했음.

❖ 康熙 十五年 丙辰 三月 八日 庚寅

○ 以濟州牧使各樣書册版燒燼事狀啓, 傳于金德遠曰, 卽見濟州牧使狀啓, 則莫重經書刻板, 不謹典守, 以致倉猝失火, 回祿無餘云, 驚駭莫甚. 判官李雲林, 從重推考, 失火官奴, 旣已遲晩納招, 嚴刑一次後放釋事, 分付.

❖ 숙종 2년(1676) 병진년 3월 8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의 서책과 판본이 불타버린 일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각종 서책과 판본이 불에 타버린 일에 대한 장계에 김덕원(金德遠)[48]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의 장계를 바로 보니, 경서와 각판만큼 중한 게 없는데, 지켜야 할 규정을 삼가지 못해 급작스런 실화를 이르게 해 불 재난으로 남은 게 없다고 하니, 놀라고 해괴함이 더 심할 수가 없다. 판관 이운림(李雲林)은 죄과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히도록 하라. 실화한 관노는 너무 오래 속였지만 자복하였으니, 엄형을 1차로 가한 후 석방케 하는 일을 분부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덕원, 판관, 이운림.

48) 김덕원(1634~1704): 본관은 원주(原州). 호는 휴곡(休谷). 1662년(현종 3) 정시 문과 병과 급제. 승문원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뒤, 승진과 파직 및 복직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정권이 바뀌자 곧 우의정에 임명되었음.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우의정을 사임했고, 그 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과 관련해 제주로 유배되었음. 4년 후 해남으로 이배(移配)된 뒤, 풀려남. 황해도 해주에서 죽었으며, 1711년(숙종 37) 신원되었음.

❖ 康熙 十五年 丙辰 四月 一日 癸丑

○ 今日晝講時, 濟州判官朴致道, 明日內, 除署經發送事, 及刑曹罪人趙松, 姑停刑推事, 及祔太廟大祝及執樽等執事, 承文院參下官, 竝爲塡差事, 榻前定奪.

❖ 숙종 2년(1676) 병진년 4월 1일(계축)

□ 박치도(朴致道)를 서경(署經) 없이 내려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어전에서 논의·결정함

○ 오늘 주강(晝講) 때,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치도(朴致道)를 내일 중에 서경(署經)없이 내려 보내는 일, 형조의 죄인 조송(趙松)에게 우선 형추(刑推)를 멈추는 일, 태묘에 부(祔)하는 대축(大祝)과 집준(執樽) 등의 집사(執事), 승문원참하관(承文院參下官)을 함께 뽑아 채우는 일 등을 어전에서 의논해 결정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박치도, 조송.

❖ 康熙 十五年 丙辰 四月 二日 甲寅

○ 下直, 濟州判官朴致道.

❖ 숙종 2년(1676) 병진년 4월 2일(갑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치도(朴致道)가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치도(朴致道)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박치도.

❖ 康熙 十五年 丙辰 四月 十日 壬戌

○ 禮曹啓曰, 濟州牧所封, 去三月令, 宗廟·敬思殿·山陵·孝敬殿·崇陵薦新靑橘, 今始來到, 來十一日薦進崇陵, 薦新靑橘, 則依例魂殿內官陪進陵所薦進, 而敬思殿及山陵所封靑橘, 則亦依前例, 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2년(1676) 병진년 4월 10일(임술)

□ 제주(濟州)에서 올린 청귤(靑橘)을 경사전(敬思殿) 등에 봉입(捧入)하는 건에 관한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한 지난 3월령 종묘(宗廟)·경사전(敬思殿)·산릉(山陵)·효경전(孝敬殿)·숭릉(崇陵)의 천신청귤이 지금 도착했고, 오는 11일에 숭릉에 올리는 천신청귤은 이전대로 혼전내관이 배행하여 능소에 바치지만, 경사전과 산릉에 봉진하는 청귤은 역시 전례대로 사옹원에서 받아들이도록 한다의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청귤.

❖ 康熙 十五年 丙辰 六月 二十四日 乙亥

○ 吏曹啓目粘連, 全羅道暗行御史金厦梴書啓云云. 觀此書啓, 則 …… 前安【缺】郡守鄭世輿段, 營私貽弊, 民間怨詈, 濟州載馬船格價米, 入送時, 以大同餘米二十石, 還上米十石, 細木十疋, 給付使令申再萬, 使之貿馬以來, 庚辛兩年蕩減還上, 混缺月課鉛鐵價米二十石,【缺】碩福處出給, 防納爲白有臥乎所. 因御史狀啓, 旣已罷黜, 罪狀乙良, 令攸司稟處爲白乎旀. …… 軍器一事及邊將乙良, 令兵曹稟處, 何如? 啓依允.

❖ 숙종 2년(1676) 병진년 6월 24일(을해)

□ 제주마(濟州馬) 운송 대가지불 관련 기록 보이는 이조의 계목(啓目)

○ 이조 계목에 덧붙여진 것으로, "전라도 암행어사 김하천(金厦梴)[49]의 서계(書啓)에 운운하였습니다. 이 서계의 내용을 보면, 〈중략〉 전 안【빠짐】군수 정세여(鄭世輿)가 제 잇속을 채우고자 해악을 끼쳤다고 민간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주(濟州)에서 말을 운송한 값으로 주는 쌀을 들여보낼 때, 대동여미 20석, 환상미 10석, 세목 10필을 사령(使令) 신재만(申再萬)에게 주어 말과 바꾸어 오라고 했으며, 경(庚)·신(辛) 두 해에 걸쳐 환상미를 탕감해주었는데, 월과(月課)의 연철가미(鉛鐵價米) 20석을【빠짐】해서 석복(碩福)에게 방납(防納)했다고 하는 바, 어사의 장계로 인해 이미 파직되었는데, 그 죄상(罪狀)인 즉 유사(攸司)에게 명을 내려 처리하라고 하십시오. 〈중략〉 군기(軍器) 일사와 변장(邊將)인 즉 병조에서 처리하라고 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김하천, 정세여, 신재만, 제주.

---

49) 김하천(1621~1677): 본관은 선산(善山). 1660년(현종 1) 증광시 병과 급제. 1675년(숙종 1) 장령(掌令)으로 나아갔고, 다음해 승지에 적합한 인물로 추천되었음. 이후 강릉부사(江陵府使)에 임명되었다가, 허적(許積)이 암행어사에 적합한 인물로 추천함에 따라 전라도암행어사로 고쳐 나아감. 1677년(숙종 3) 재차 장령으로 임명되었음.

❖ 康熙 十五年 丙辰 七月 十二日 壬辰

○ 備忘記, 罪人柳弼明, 前年七月, 有減死定配, 而今觀濟州牧使尹昌亨放·未放啓本, 則以甲寅七月到配懸錄, 莫重入啓公事, 不能詳審之失, 在所難逭, 尹昌亨推考, 元啓目中, 付標以入, 該房承旨, 亦難免不察之責矣.

❖ 숙종 2년(1676) 병진년 7월 12일(임진)

□ 석방·미석방의 계본에 유배인의 제주(濟州)도착 연(年) 잘못 기록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추고는 피하기 어렵다는 비망기(備忘記)

○ 비망기에, "죄인 유필명(柳弼明)은 작년 7월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였는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석방·미석방의 계본'을 보면 갑인년 7월 배소(配所)에 도착(到着)함을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공사(公事)로 입계(入啓)하는 것은 막중한 일인데, 상세히 살피지 못한 실수를 하였으니,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윤창형을 추고하고 원래의 계목(啓目)에 부표(付標)[50]해 들이고 해당 부서의 승지(承旨)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필명, 제주목사, 윤창형, 방·미방계본.

50) 부표(附表): 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고쳐야 할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고칠 자리에 붙이던 누런색의 종이쪽지를 이르던 말.

❖ 康熙 十五年 丙辰 七月 十二日 壬辰

○ 政院啓曰, 卽伏見濟州牧使尹昌亨推考備忘, 有該房承旨, 亦難免不察之敎, 其元啓目中, 誤書二字, 臣以該房, 許多文書出納之際, 不能詳察, 致勤聖敎, 不勝惶恐. 傳曰, 知道.

❖ 숙종 2년(1676) 병진년 7월 12일(임진)

□ 많은 문서 출납 때문에 윤창형(尹昌亨)의 계본(啓本) 살피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추고하라는 비망록을 봤더니, 해당 부서의 승지도 불찰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 계목 중에서 잘못 쓴 두 글자는 신이 해당 부서의 허다한 문서를 출납하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임금님의 전교에 최선을 대해야하는데, 너무나 황공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月 二十四日 癸酉

○ 謝恩, 兵曹參議金禹錫 …… 大靜縣監許梓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0월 24일(계유)

□ 대정현감(大靜縣監) 허재(許梓) 등이 사은함

○ 병조참의(兵曹參議) 김우석(金禹錫)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허재(許梓) 〈하략〉 등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김우석, 대정현감, 허재.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一月 十七日 乙未

○ 禁府罪人韓天敬春川地, …… 徒三年定配, 啓. …… 愛淑旌義郡, 不限年定配事, 付標以下.【以上朝報】

❖ 숙종 2년(1676) 병진년 11월 17일(을미)

□ 금부죄인(義禁罪人) 애숙(愛淑)을 정의군(旌義郡) 등으로 정배(定配)한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죄인 한천경(韓天敬)을 춘천(春川) 땅, 〈중략〉 등에 '도삼년정배(徒三年定配)[51]'할 것을 아뢰었다. 〈중략〉 애숙을 정의군(旌義郡)으로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정배할 것', 이하는 부표(付標)하였다.【이상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금부죄인, 애숙, 정의군.

51) 도삼년정배(徒三年定配): 3년 동안 일정한 곳으로 제한해 노역에 복무시키는 형벌.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一月 二十四日 壬寅

○ 未時, 大司憲李觀徵, 持平宋挺濂啓曰, 大靜定配罪人申命圭, 罪犯極重, 當初論以一罪者, 誠不爲過, 而貸死減罪, 定配絶島者, 實出於先王好生之德, 則於命圭, 亦云幸矣. 今伏見濟州牧使罪囚放未放狀啓, 則敢以命圭, 置於稟秩之中, 蔑法循私, 莫此爲甚, 請濟州牧使尹昌亨罷職. …… 答曰, 依啓. 尹昌亨, 勿罷只推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1월 24일(임인)

□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잘못을 범한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등을 청하는 이관징(李觀徵) 등의 계

○ 미시(未時) 때 대사헌(大司憲) 이관징[52]과 지평(持平) 송정렴(宋挺濂)[53]이 아뢰기를, "대정(大靜)에 정배된 죄인 신명규(申命圭)는 범죄가 매우 무거운 만큼, 애초에 극형(사형)으로 논하더라도 정말 지나치지는 않으나, 죽음 대신 죄를 감해 멀고멀 섬에 정배한 것은 사실 선왕께서 생명을 아끼는 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신명규도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대한 장계를 보니 감히 신명규를 여쭈어 결정할 부류 안에 수록했는데,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움을 따른 것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까? 청컨대, 제주목사 윤창형을 파직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윤창형은 파직하지 말고 단지 추고만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관징, 대정, 신명규, 제주목사, 윤창형.

---

52) 이관징(1618~1695): 본관은 연안. 호는 근옹(芹翁), 근곡(芹谷). 1653년(효종 4)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660년(현종 1) 효종의 계모가 되는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와 관련해 전라도도사로 좌천되기도 했음. 숙종이 즉위해 남인이 집권하자, 대사성·대사헌도 지냄. 1694년(숙종 20) 남인이 참화를 당한 갑술옥사로 삭출되었음. 해서(楷書)에 능했음. 저서《근곡집(芹谷集)》. 시호 정간(貞簡).

53) 송정렴(1612~1684):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존양재(存養齋). 1655년(효종 6) 동당명경과(東堂明經科) 합격한 뒤 성균관학유·오수찰방(獒樹察訪)·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함. 1675년(숙종 1) 숙종이 즉위하자 예조정랑, 사헌부의 지평·장령 등을 지냄. 주로 남인계열의 인사들과 교유했고, 거경궁리(居敬窮理)에 주된 관심을 가졌음. 고암서원(古巖書院)과 신천서원(新川書院)에 봉향되었음. 저서《존양재문집(存養齋文集)》3책.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一月 二十五日 癸卯

○ 大司憲李觀徵, 持平宋挺濂啓曰, 大靜縣定配罪人申命圭罪犯, 極大且重, 論以一罪, 實合王法, 而當初貸死減等, 特出於先王好生之德耳. 今伏見濟州牧使罪囚放未放狀啓, 則乃以命圭, 置之於稟秩中, 凡罪囚之置諸品秩者, 罪犯雖重, 情或有可恕者也. 今命圭之罪, 其果有一毫可恕之情乎? 昌亨之不嚴國法, 自恣稟啓之狀, 誠極痛駭, 不可推考而止, 請濟州水使尹昌亨罷職 …… 答曰, 已諭毋煩.

❖ 숙종 2년(1676) 병진년 11월 25일(계묘)

□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잘못을 범한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등을 청하는 이관징(李觀徵) 등의 계

○ 대사헌(大司憲) 이관징(李觀徵)과 지평(持平) 송정렴(宋挺濂)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신명규(申命圭)의 범죄는 너무 크고 무거운 만큼, 극형으로 논하더라도 사실 왕법에는 합치되지만 애초에 죽음을 대신해 감해줬던 일 등은 특별히 선왕께서 목숨을 아끼는 덕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대한 장계를 보니 바로 신명규가 여쭈어 결정할 부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릇 죄수를 기록하는 등급의 부류에는 죄가 비록 무겁다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관용을 베풀만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규의 죄는 그것에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관용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합니까? 윤창형(尹昌亨)이 국법을 엄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올린 품계장은 정말 매우 통탄스럽고 해괴하니 추고(推考)를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수사(濟州水使) 윤창형을 파직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이미 유시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관징, 대정현, 신명규, 제주수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一月 二十六日 甲辰

○【缺】時, 大司憲李觀徵, 持平宋挺濂啓曰,【措辭見上】請濟州牧使尹昌亨罷職, 黃海兵使柳重起遞差. 答曰, 不允.

❖ 숙종 2년(1676) 병진년 11월 26일(갑진)

□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등을 청하는 이관징(李觀徵) 등의 계

○【빠짐】때, 대사헌(大司憲) 이관징(李觀徵)과 지평(持平) 송정렴(宋挺濂)이 아뢰기를,【같은 내용이 위에서 보임】"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파직하고 황해병사(黃海兵使) 유중기(柳重起)를 교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관징, 송정렴, 제주목사, 윤창형, 유중기.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一月 三十日 戊申

○ 府前啓, 黃海兵使柳重起遞差事. 停啓. 濟州牧使尹昌亨罷職事, 無城上所, 姑停.

❖ 숙종 2년(1676) 병진년 11월 30일(무신)

□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건은 성상소(城上所)에 관원 없어 우선 정지했다는 등의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이전에 아뢰기를, "황해병사(黃海兵使) 유중기(柳重起)를 교체하는 일을 정계(停啓)[54]하였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파직시키는 일은 성상소[55]에 관원이 없어 잠시 정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중기, 제주목사, 윤창형, 성상소.

54) 정계(停啓): 임금에게 보고하는 죄인 문건인 전계(傳啓)에서 죄인의 이름을 빼 버리던 일.
55) 성상소(城上所): 사헌부·사간원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백관 감찰과 공사(公事) 출납하던 곳을 말함.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二日 庚戌

○ 府啓, 大靜縣定配罪人申命圭, 罪犯至重, 論以一罪, 實循王法, 當初貸死減等, 特出於先王好生之德, 而伏見濟州牧使尹昌亨罪囚放未放狀啓, 則乃以命圭, 置稟秩中, 凡罪囚之置諸稟秩者, 負犯雖重, 情或有可恕者也. 今命圭之罪, 其果有一毫可恕之情乎? 昌亨之不有國法, 自恣稟啓之狀, 殊極痛駭, 不可推考而止, 請濟州牧使尹昌亨罷職 …… 答曰, 不允.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2일(경술)

□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잘못을 범한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신명규(申命圭)는 범죄가 매우 무거운 만큼, 극형으로 논하더라도 사실 왕법에는 합치되나, 당초 사형을 대신 감해줬던 것들은 특별히 선왕께서 생명을 아끼는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죄수 석방과 미석방에 대한 장계를 보니 바로 신명규가 여쭈어 결정할 부류 안에 들어있는데, 무릇 죄수를 기록하는 등급의 부류에는 죄가 비록 무겁다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관용을 베풀만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규의 죄는 그것에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관용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합니까? 윤창형이 국법에도 없이 제멋대로 품계한 글은 매우 통탄스럽고 해괴해서 단지 추고로만 그칠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주목사 윤창형을 파직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신명규, 방·미방장계,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三日 辛亥

○ 府啓, 請濟州牧使尹昌亨罷職. 答曰, 勿煩.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3일(신해)

□ 윤창형(尹昌亨)의 파직(罷職)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파직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四日 壬子

○ 府啓, 大靜縣定配罪人申命圭, 罪犯至重, 論以一罪, 實合王法, 當初貸死減等, 特出於先王好生之德. 伏見濟州牧使尹昌亨罪囚放未放狀啓, 則乃以命圭, 置之稟秩中, 凡罪囚之置諸稟秩者, 罪犯雖重, 情或有可恕者也, 今命圭之罪, 其果有一毫可恕之情乎? 昌亨之不有國法, 肆然稟啓之狀, 誠極痛駭, 不可推考而止, 請濟州牧使尹昌亨罷職. 答曰, 當初勿罷, 只推之命, 且慮海外迎送之弊, 置諸稟秩中, 則放與未放, 專係於朝家之處分, 雖有差謬之失, 旣已推考, 毋庸堅執.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4일(임자)

□ 죄수 석방·미석방의 장계(狀啓)를 잘못 작성한 윤창형(尹昌亨)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정배된 죄인 신명규(申命圭)는 범죄가 매우 무거운 만큼, 극형으로 논하더라도 사실 왕법 맞는 것이나, 당초 사형을 대신 감해줬던 것들은 특별히 선왕께서 생명을 아끼는 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죄수 석방·미석방에 대한 장계를 보니, 바로 신명규를 여쭤 결정할 부류 속에 올렸습니다. 무릇 죄수를 여쭤 결정할 부류에 올리는 것은 범죄가 비록 무겁더라도 사정에 따라 관용을 베풀만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규의 죄에 털끝만큼이나 봐 줄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윤창형이 국법에도 없이 제멋대로 품계한 문서는 진실로 너무 통탄스럽고 해괴하니 단지 추고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주목사 윤창형을 파직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당초 파직하지 말고 단지 추고만 하라고 명했고, 또 바다 밖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는 폐단이 염려된다. 여쭈어 결정할 부류 속에 올리고, 석방과 미석방은 오로지 조정의 처분과 관련이 있는 만큼, 비록 잘못된 실수가 있었지만 이미 추고하였으니 계속 고집부리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신명규,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五日 癸丑

○ 府啓, 濟州牧使尹昌亨事. 答曰, 勿煩.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5일(계축)

□ 윤창형(尹昌亨)의 파직 건에 대한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의 일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六日 甲寅

○ 府前啓, 濟州牧使尹昌亨, 罷職事, 停啓.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6일(갑인)

□ 사헌부에서 윤창형(尹昌亨)의 파직과 관련한 일을 정계(停啓)함

○ 사헌부에서 이전에 아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파직시키는 일을 정계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八日 丙辰

○ 吏曹啓曰, 新除授大靜縣監許棹呈狀內, 老父病重, 年今七十, 只有一弟, 出繼外居, 便是獨子, 而他無相依之人, 情事切迫, 海外邊邑, 決難赴任, 依近例入啓處置云. 許棹情理, 實難遠離越海赴任, 依近日朝家定式, 改差何如? 傳曰, 允.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8일(병진)

□ 대정현감(大靜縣監) 제수의 허재(許棹)에게 병이 있는 노부(老父) 있음으로 개차(改差) 청하는 이조의 계

○ 이조에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대정현감(大靜縣監) 허재(許棹)의 정장(呈狀) 안에 '늙은 부친의 병이 중하고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단지 한 명의 동생만 있었는데, 양자를 가서 외거(外居)함으로 곧 독자가 되어 달리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정이 절박하고, 해외변방 고을에는 부임하기가 어려우니 비근한 사례에 비춰 계를 올려 처리한다.'고 합니다. 허재의 사정은 사실 멀리 바다 너머로 부임하기가 어려우니, 최근 조정의 정식(定式)에 따라 개차함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허재.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十一日 己未

○ 以鄭仁壽爲崇陵參奉, 李升來爲大靜縣監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11일(기미)

□ 이승래(李升來)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인수(鄭仁壽)를 숭릉참봉(崇陵參奉)으로 삼고, 이승래(李升來)[56]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인수, 이승래, 대정현감.

56) 이승래(?~?): 1677년(숙종 3) 대정현감으로 부임하고, 1679년(숙종 5) 떠남. 재임 기간 중 동해방호소를 철폐하는 한편, 모슬진을 구축한 뒤, 성을 쌓았음.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十三日 辛酉

○ 謝恩, 兵曹正郎鄭徵, 大靜縣監李升來, 護軍李克馨, 崇陵參奉鄭仁壽.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13일(신유)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 등이 사은함

○ 병조정랑(兵曹正郎) 정징(鄭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 호군(護軍) 이극성(李克馨), 숭릉참봉(崇陵參奉) 정인수(鄭仁壽)가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징, 대정현감, 이승래, 이극성, 정인수.

❖ 康熙 十五年 丙辰 十二月 十三日 辛酉

○ 禁府啓目粘連, 濟州牧使啓本云云,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 申命圭·李鼎基, 仍配何如? 啓依允. …….

❖ 숙종 2년(1676) 병진년 12월 13일(신유)

□ 신명규(申命圭) 등을 현 유배지에 그대로 두는 등의 문제를 알린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에 덧붙여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에서 운운하기를, "본부 소관 정배죄인의 미석방 분류는 아뢴 대로 시행하고, 신명규와 이정기(李鼎基)를 현재 지역에 그대로 정배시키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배죄인, 신명규, 이정기.

1677年

❖ 康熙 十六年 丁巳 一月 八日 乙酉

○ 權瑎, 以禮曹言啓曰, 朝因司饔院所報, 濟州牧, 去十月令宗廟薦新金橘柑子, 未及上來, 故以先來進上柑橘薦新事, 入啓, 輸送該寺之後, 本州所封薦新金橘柑子, 今始上來, 此則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년(1677) 정사년 1월 8일(을유)

□ 제주(濟州) 봉상의 천신(薦新)용 금귤감자(金橘柑子)를 사옹원에서 봉입(捧入)하길 청하는 예조의 계

○ 권개(權瑎)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아침에 사옹원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목(濟州牧)에서 지난 10월령 종묘의 천신(薦新)에 쓸 금귤과 감자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먼저 온 진상감귤로 천신에 올린다는 일을 입계(入啓)하였습니다. 해당관청으로 운송하고 난 뒤에 본주에서 봉진한 천신금귤·감자가 이제야 막 올라왔으니, 이것은 사옹원에서 받아들이게 함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개, 제주목, 천신금귤·감자.

❖ 康熙 十六年 丁巳 一月 二十二日 己亥

○ 又以司饔院官, 以監膳提調意啓曰, 各殿濟州柑子進上十七運, 十八運, 今日未納, 而全數朽腐, 無一介完全者, 海外所封, 自前不無傷敗之弊, 而未有如今日之所納, 越海之際, 以致腐傷, 雖非人力之所爲, 而莫重進上, 旣如此, 則不可無警責之道, 濟州牧使尹昌亨, 推考, 陪持下人, 亦令攸司推治, 何如? 傳曰, 允.

❖ 숙종 3년(1677) 정사년 1월 22일(기해)

□ 각 전 진상의 제주감자(濟州柑子)가 모두 상한데 대해 윤창형(尹昌亨)의 추고(推考) 등 요청하는 사옹원의 계

○ 또 사옹원 관리가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각전에 제주(濟州)의 감자 진상 17운과 18운이 오늘까지도 내지 못하였고, 전 수량이 부패하고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 밖에서 봉진한 것이 이전부터 상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나 오늘에 바친 것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올 때 부패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인력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진상이 막중함이 이와 같으니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을 추고하고, 이를 가지고온 하인들도 또한 유사에게 명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감선제조, 감귤 진상,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六年 丁巳 二月 四日 辛亥

○ 下直, 甲山府使李浚明, 大靜縣監李升來 …….

❖ 숙종 3년(1677) 정사년 2월 4일(신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 등이 하직함

○ 갑산부사(甲山府使) 이준명(李浚明),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 〈하략〉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준명, 대정현감, 이승래.

❖ 康熙 十六年 丁巳 二月 十八日 乙丑

○ 兵曹啓曰, 濟州山監牧官金大振, 封進馬二匹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以爲依例留養內廐之地, 而體小才劣, 一匹, 則且有病處, 其不謹擇養之狀, 殊爲未便, 監牧官金大振推考, 以爲警責之地, 何如? 傳曰, 允. 【以上馬籍□其錄】

❖ 숙종 3년(1677) 정사년 2월 18일(을축)

□ 부실 말을 봉진(封進)한 김대진(金大振)의 추고(推考) 청하는 병조의 계

○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57] 김대진(金大振)[58]의 봉진마(封進馬)[59] 2필이 올라와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서 써서 들였습니다. 전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지만 체구가 작고 열등하고, 1필은 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골라 기르는 것을 삼가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감목관 김대진을 추고해서 문책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 마적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산마감목관, 김대진, 봉진마.

---

57) 제주산마감목관(齊州山馬監牧官):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은 국가에 수차례 말을 바쳤고, 그의 3남 대길(大吉)도 1659년(효종 10) 208필의 말을 바쳤거니와 이를 계기로 제주산마감목관제가 신설됨. 이는 김만일의 개인목장과 기존 국영목장의 땅 일부를 합쳐 산마장(山馬場)을 조성하고, 이를 관할·감독하는 종6품 산마감목관을 김대길을 비롯해 95명에 달하는 김만일의 후손들로 하여금 200여 년 동안 세습케 하였음에서도 확인됨. 한편 산마장은 세 곳으로 나뉘었다. 현 조천읍 교래리 바농오름 부근으로 현재 제주돌문화공원이 자리한 곳의 '침장(針場)',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부터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까지 이어진 '상장(上場)', 그리고 현재 제동목장과 정석비행장이 있는 표선면 가시리 일대의 '녹산장(鹿山場)'이 그것임. 나중엔 갑마(甲馬)를 임시로 길렀던 '갑마장(甲馬場)'이 번널오름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조성되기도 함.

58) 김대진(1611~?): 김만일(金萬鎰)의 후손임. 산마감목관 김사종(金嗣宗)의 후임으로, 1670년(현종 11) 3대 제주산마감목관으로 나아가 1682년(숙종 8)까지 12년 간 재직함.

59) 봉진마(封進馬): 제주산마감목관이 국가에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2필씩 올리던 말이고, 임금이 타는 어승마(御乘馬) 용도로서 준마 가운데 준마였음. 애초에는 매년 바쳐졌으나, 산마감목관제가 실시 된 지 4년 만에 2년 1회 바침으로 그 부담이 줄어듦.

❖ 康熙 十六年 丁巳 三月 十三日 己丑

○ 刑曹啓目, 大靜罪人俊伊押送時, 不爲多定軍人, 致有中路見失之弊. 刑吏, 依法代配, 當該振威縣令楊廷藎, 從重推考何如? 啓依允. 莫大罪人, 不能嚴勅押送, 以致見失, 事極可駭. 楊廷藎, 先罷後推.

❖ 숙종 3년(1677) 정사년 3월 13일(기축)

□ 대정(大靜)의 죄인 준이(俊伊)를 압송 도중 놓친데 대해 죄를 청하는 형조의 계목

○ 형조에서 계목으로, "대정(大靜)의 죄인 '준이(俊伊)'를 압송할 때, 차정한 군인이 많지 않아 중간에 놓쳐버리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형리(刑吏)를 법대로 대신 정배시키고, 해당 진위현령(振威縣令) 양정진(楊廷藎)을 중한 죄로 추고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아뢴 대로 윤허한다. 막대한 죄인을 엄하게 압송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으니 일이 너무나 놀랍다. 양정진을 먼저 파직시키고 난 뒤에 추고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계목, 대정, 준이, 양정진.

❖ 康熙 十六年 丁巳 五月 十二日 丁亥

○ 柳命天,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本寺各道諸牧場及濟州馬種, 大異於前, 體骨壯健之馬, 絶無而僅有. 每當軍兵分給之時, 雖各別擇給, 而戰馬無可合者, 若不豫爲料理, 則將無以得戰馬, 誠可閔慮. 依先朝鎭江場外牧馬貿來例, 入□價本於濟州, 別種壯健雄馬五六匹, 雌馬四十餘匹, 極擇貿來, 而濟州牧使尹昌亨, 頗解馬品, 使之親審擇送, 別放於水草豐足牧場, 以爲日後需用之地, 何如? 傳曰, 允.

❖ 숙종 3년(1677) 정사년 5월 12일(정해)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전마(戰馬)를 심사해 무역토록 할 것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유명천(柳命天)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관아가 각 도의 여러 목장과 제주마(濟州馬)의 종자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 몸체가 건장한 말이 전혀 없고, 겨우 있을 정도입니다. 군병(軍兵)에게 분급해줄 때마다 비록 각별히 골라서 준다고 하지만 전마로 마땅한 게 없습니다. 만일 미리 고려해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마를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정말로 염려됩니다. 선조(先朝) 때 진강장(鎭江場)[60] 밖에서 사오는 사례에 따라 제주에서 값을 치르고 들여왔는데, 별종의 장성한 숫말 5·6필, 암말 40여필을 잘 골라서 사오게 하였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은 자못 말 품질에 대해 알고 있으니 그에게 친히 심사하여 골라 보내게 하고, 별도로 물과 풀이 풍성한 목장에 방목하여 나중에 필요한 데 쓰게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제주목사, 진강장, 윤창형.

60) 진강장(鎭江場): 경기 강화도에 소재한 목장.

❖ 康熙 十六年 丁巳 七月 十三日 戊子

○ 司僕寺啓曰, 各營分養馬若干病留者外, 今已畢捧, 三廳軍兵, 幾盡分給, 其餘馬匹, 盡放於箭串, 似當依前例與兩局大將, 同往擇給未受馬軍兵, 而卽今所放之馬, 皆體小不合於戰馬, 前頭濟州歲貢馬上來後, 亦當有推移分給之路, 此後, 則以帖字許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년(1677) 정사년 7월 13일(무자)

□ 앞으로 말 분급은 첩자(帖字)로써 허급(許給)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각 영에서 나누어 기른 말 중에 약간 병으로 남겨둔 것 외에는 지금 이미 다 올려 보내서 삼청(三廳)의 군병(軍兵)에게 거의 다 나눠 주었고, 그 나머지 마필은 모두 전곶(箭串, 살곶)에 다 방목하였습니다. 전례대로 양국(兩局)의 대장(大將)과 함께 가서 말을 받지 못한 군병에게 골라 주었습니다. 지금 방목한 말은 모두 체구가 작아 전마에는 맞지 않고, 앞서 제주 세공마(濟州 歲貢馬)가 올라온 뒤에는 추이에 따라 분급할 길이 있을 것이니, 앞으로는 첩자(帖字)로만 허급해주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전마, 전곶, 제주세공마.

❖ 康熙 十六年 丁巳 七月 十三日 戊子

○ 兵曹啓曰, 濟州先運年例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 竝二十五匹, 合九十三匹內, 到綾州故失, 一匹, 中路病留, 二匹, 實上納九十匹外, 又有上年山屯馬, 船中故失, 代生徵馬二匹, 牧使別進上馬十匹, 一時來到, 故禾毛色, 別單開錄以入, 而所謂牧使別進上, 乃是前例所無, 時牧使尹昌亨之所別爲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년(1677) 정사년 7월 13일(무자)

□ 실제로 제주(濟州)에서 90필 상납됐고, 이외에 목사(牧使)의 별도 진봉(進封) 말도 들어왔다는 병조의 계

○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먼저 운송된 [말은] 연례마 8필, 삼명일(三名日) 진상마 60필, 흉구(凶咎)와 노마 모두 25필, 합해 93필입니다. 그 중 능주(綾州)에 도착해 죽은 말 1필, 중간에 병으로 남겨둔 말 2필이니, 실제 상납한 90필 이외에 다시 작년의 산둔마(山屯馬)와 배안에서 죽은 말 대신 산 것으로 받아온 말이 2필, 목사의 별도 진상마 10필이 한꺼번에 도달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목사의 별도 진상은 전례에 없는 것이어서, 현 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별도로 봉진한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진상마, 산둔마, 제주목사, 윤창형.

❖ 康熙 十六年 丁巳 七月 二十日 乙未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歲貢馬, 皆已上來樣, 其稍優者, 分養於各邑, 以備國用, 其餘則當依前例, 各以十匹, 分授於訓局·御營·摠戎·守禦等廳, 而訓局·御營, 才以孰馬, 分給於無馬軍兵及別抄武士矣. 且當年歲貢之數, 旣比式年減少, 則仍以十匹, 定式分給, 似爲過多, 只守禦·摠戎兩廳, 擇其五匹, 給之, 何如? 傳曰, 允.

❖ 숙종 3년(1677) 정사년 7월 20일(을미)

□ 제주세공마(濟州歲貢馬)의 감소에 따라 수어청 등에는 5필만 분급토록 하자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세공마(濟州 歲貢馬)는 모두 벌써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우수한 것을 각 읍에 분양해주어 국용(國用)에 준비케 하고, 그 나머지는 전례대로 각 10필을 훈련도감(訓鍊都監), 어영(御營)·총융(摠戎)·수어청(守禦廳) 등에 나눠주지만 훈련도감과 어영청에는 숙련된 말로 말이 없는 군병과 별초의 무사들에게 분급해주었습니다. 또 올해 세공마의 수는 이미 식년(式年)과 비교하면 감소되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10필씩을 정식으로 분급해준다면 너무 많을 듯합니다. 다만 수어·총융청 두 청만은 제주 세공마 가운데 5필을 골라 주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세공마, 훈련도감, 수어청, 총융청.

❖ 康熙 十六年 丁巳 八月 十一日 乙卯

○ 午時, 上御熙政堂, 晝講 …… 奉常主簿金繼隆, 進伏, 上問弊瘼. 對曰, 大·小弊瘼, 隨事陳達, 卽爲變通, 故別無所陳之事, 而臣乃濟州人也. 海外偏方, 切有難堪之弊, 敢此仰達矣. 本州三邑中大靜爲縣, 最是沃土, 而瘴氣侵人, 率多夭死, 民居稀少, 空地多棄, 故本州之民, 每當農節, 往來耕作者多矣. 前因御史書啓, 以其作農之輩, 永作大靜之民, 風土各異, 夭死尤甚, 好生惡死, 人情所同, 則其爲號怨, 勢所必至, 自朝家特從民願 使還本主, 以遂其生生之樂何如? 且聞本島, 將有築城之擧, 而四面環海, 層巖削立, 雖不築城, 自是天險, 姑停是役, 以除弊, 而其中敵船可以艤泊處, 皆築, 又置大砲, 以爲備禦之方, 似爲萬全之計矣. 上曰, 令廟堂稟處. 繼隆退, …….

❖ 숙종 3년(1677) 정사년 8월 11일(을묘)

□ 희정당(熙政堂)의 주강(晝講) 때 봉상주부(奉常主簿) 김계륭(金繼隆)이 제주(濟州)의 폐막을 아룀

○ 오시(午時) 때,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주강하였다. 〈중략〉 봉상주부 김계륭[61]이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폐막을 물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크고 작은 폐막을 사안에 따라 말해 올려서 바로 변통되고 있어 별도로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신은 제주(濟州)사람입니다. 바다 밖의 처진 지역에서 실로 난감한 폐막이 있으니, 이를 감히 말씀 올립니다. 본주 3읍 가운데 대정(大靜)이 현으로는 가장 옥토이나, 장기(瘴氣)가 사람에게 스며들어 대부분 요절하여 거주하는 백성이 매우 드물고 적어 빈 땅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본주의 주민들은 매번 농사철 때만 드나들면서 경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전에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에 따르면, 그 농사짓는 무리들이 영원히 대정의 백성이 되기에는 풍토가 모두 다르며, 일찍 죽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건 사람마음이 같은 것이니 그들이 바라는 것에는 형편도 꼭 따라주어야 하는 만큼, 조정에서 그들의 민원에 따라 본 주인에게 되돌려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

---

61) 김계륭(1632~1690): 본관은 광산(光山). 1663년(현종 4) 사마시 합격, 이어 1671년(현종 12) 전시직부의 자격을 취했고, 1674년(현종 14)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는 아우 계창(繼敞)과 동방급제였음. 제주 귤림서원(橘林書院)의 원장을 역임했고, 제주 유림계의 영수로서 많은 영향을 끼침. 전라도 장흥의 벽사찰방(碧沙察訪)·예종정랑 등을 지냄. 김진용(金晉鎔)의 4남으로 태어났고, 애월읍 광령리에 거주했음.

대로 사는 즐거움을 이루게 함이 어떻습니까? 또 들으니, 장차 본도에서 축성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층층의 절벽이 깎아지르게 서 있어서 비록 성을 축성하지 않더라도, 천연적인 험준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공사를 중지해서 민폐를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적선이 정박할 만한 곳에만 모두 축성하고, 또 대포도 놓아 방비하도록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계책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에 영을 내려 보고·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김계륭이 물러갔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주강, 김계륭, 제주인, 대정.

❖ 康熙 十六年 丁巳 八月 二十三日 丁卯

○ 睦存善,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馬中, 擇其壯健戰馬可合者貿來, 別放於京畿牧場, 以爲取種之地事, 曾已陳啓蒙允矣. 入送價本已久, 近當上來, 而京畿牧場, 無空閑可放之處, 南陽大都島校【大阜島】, 水草豐足, 實合於牧馬放牧. 本島曾前所放馬中, 可以取種者, 移放於他牧場, 其餘不合於取種者, 則捉來本寺, 分給於無馬軍兵及帖子, 似爲便當, 而馬匹之類, 雖不甚多, 擇出移放, 事體重大, 不可專委於監牧官, 發遣本部郎廳, 使之精擇移放. …… 亦爲分付於京畿監司, 何如? 傳曰, 允.

❖ 숙종 3년(1677) 정사년 8월 23일(정묘)

□ 제주(濟州) 말 가운데 전마(戰馬)에 적당한 걸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 방목시키자는 사복시의 계

○ 목존선(睦存善)이 사복시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말 가운데 크고 건강해서 전마(戰馬)에 합당한 것을 골라 사와서 별도로 경기도의 목장에서 방목하고 종자를 취하는 곳으로 삼는 일은 이전에 이미 진계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들여오는 말의 값을 치른 지는 오래되었고,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경기의 목장은 텅 비어 방목할 만한 곳이 없으나, 남양의 대부도는 물과 풀이 풍족해서 목마를 방목하기에 적합합니다. 본도(제주도)는 일찍이 방목한 말 중에서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목장에 옮겨 방목하고, 그 나머지는 종자 얻는데 부적합한 것이어서 본시(사복시)에 잡아 올려 말 없는 군병에게 증서와 함께 분급하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마필의 종류는 비록 매우 많지는 않더라도 가려 뽑아 옮겨 방목함은 일 자체가 매우 중대하니, 오로지 감목관에게만 맡겨둘 수 없고, 본부(병부) 낭청을 파견해서 정밀하게 가려 뽑아 옮겨 방목하게 하십시오. 〈중략〉 또한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목존선, 제주마, 경기목장, 대부도.

❖ 康熙 十六年 丁巳 八月 二十三日 丁卯

○ 午時, 丁巳八月二十三日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 左議政權大運 …… 入侍. …… 大運曰,【缺】所陳之事, 下廟堂議處, 而所謂大靜人夭【缺】不可以此言, 率爾變通矣. 今旣面陳於榻前, 不【缺】意敢達. 上曰, 唯. 錫胄曰, 繼隆所達築城之事,【缺】之歸, 當初只設煙臺, 以爲瞭望之所, 而繼因牧使尹昌【缺】狀啓, 煙臺亦多有不築之處, 則其所謂築城一款, 今不必擧論. …….

❖ 숙종 3년(1677) 정사년 8월 23일(정묘)

□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비변당상(備局堂上) 인견 때 제주(濟州)의 축성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에,【정사년 8월 23일】 임금이 희정당에 나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권대운(權大運)[62] 〈중략〉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권대운이 아뢰기를, "【글자가 빠짐】 진술하는 일은 의정부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른바 대정인이 요절【글자가 빠짐】이 말 때문에 가볍게 변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어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말을 올린 것은【글자가 빠짐】 ○○가 아니어서 ○○할 뜻으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계륭(繼隆)이 축성의 일을 말씀드려 알린 것은【글자가 빠짐】 ○○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다만 연대를 설치해 사방을 살펴 경계하는 곳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어지는 목사 윤창【글자가 빠짐】의 장계에 의하면 연대도 또한 축조 안 된 곳이 많다고 하니, 이른바 축성이란 건은 지금 꼭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운, 대정인, 김석주, 김계륭, 목사, 윤창형.

---

62) 권대운(1612~1699):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석담(石潭). 1649년(인조 27) 별시문과 을과 급제. 이후 정언을 역임한 뒤, 각 양의 청요직과 다방면의 관직을 역임해 나아갔고,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으로 승진했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좌천·파직 당했고, 영일에 위리안치 되기에도 이르렀음. 1689년(숙종 15)에 와 기사환국으로 재등용돼 영의정에 오르기도 했으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 관련 관직을 삭탈당하고 절도(絶島)에 안치되었음. 이듬해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하여 풀려났고, 사후 왕의 특명으로 직첩 환급이 이뤄졌음.

❖ 康熙 十六年 丁巳 九月 五日 己卯

○ 晝講時, 侍講官柳命賢所啓, 頃聞濟州牧使尹昌亨, 常貢之外, 別獻十匹名鬣. 創出無前之擧, 已極猥越, 況其狀啓中, 太僕無可合御乘, 故別爲封進云. 究其心迹, 皆出媚悅之計, 此路一開, 後弊有不可勝言者. 聖明沖年御極, 正宜屛絶遠物, 決不可受此別獻, 有累淸明之治. 臣意以爲, 所納十匹馬, 倂卽還送本州, 尹昌亨則快加譴罪, 使中外洞知聖意, 以防日後私獻之弊宜當. 上曰, 筵臣之言誠是, 而越海還送有弊. 以其馬今姑移施於前頭八駿馬進上之數, 尹昌亨則從重推考, 觀其緘辭而處之. …….

❖ 숙종 3년(1677) 정사년 9월 5일(기묘)

□ 주강(晝講) 때 제주상공(濟州常貢) 외 말은 되돌려 보내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주강(晝講) 때, 시강관(侍講官) 유명현(柳命賢)[63]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들으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이 상공(常貢)하는 외에도 별도로 10필의 명마를 헌납하였습니다. 전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인데, 이미 분수에 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장계 안에 태복시에는 임금이 타기에 적합한 것이 없어 따로 봉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 씀을 따져보면, 모두 아첨하려는 계책에서 나왔고, 이 같은 길을 한 번 터주면 후폐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게 됩니다. 성상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마땅히 먼 곳의 선물을 끊어 이러한 별도의 헌납을 받지 않는다면 청명한 정치를 잇닿아 갈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은 바친 10필의 말을 모두 즉시 본주(제주)로 다시 보내고 윤창형을 단호하게 견책해서 중외에 성상의 뜻을 모두 알림으로서 나중에 사사로이 헌납하는 폐를 막음이 의당하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연하는 신하의 말이 사실 옳지만 바다 건너 다시 보내는 것도 폐가 된다. 그 말들은 지금 우선 앞선 팔준마(八駿馬)의 진상한 숫자에 옮겨 덧붙이고, 윤창형은 중한 죄로 추고하는데, 그가 써낸 글을 보고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시강관, 유명현, 제주목사, 윤창형, 상공.

---

63) 유명현(1643~1703): 본관은 진주(晋州). 호는 정재(靜齋). 1673년(현종 14) 정시문과 장원 급제. 이후 부수찬·사인·부제학 등을 거쳐, 1678년(숙종 4) 전라도관찰사로 나아감.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남인 실각때, 관작삭탈과 문외출송 당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승지로 복관하고, 형조·이조판서도 지냄.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로 흑산도에 안치되고, 5년 뒤 풀려났으나,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 살해 공모죄로 탄핵받아 남해도에 다시 안치되어 그곳에서 죽음.

❖ 康熙 十六年 丁巳 十月 五日 戊申

○ 晝講時, …… 知事閔熙所啓, 三名日方物之價, 旣已劃給於戶曹, 以爲進宴之資, 而但濟州方物, 則事勢有難便者, 蓋其地, 甚爲瘠薄, 米布中, 皆難措備上納, 此則以本色, 依前封進, 似爲便當矣. 上曰, 此地異於他處, 以本色封進事, 分付, 可也.

❖ 숙종 3년(1677) 정사년 10월 5일(무신)

□ 주강(晝講) 때 진연청(進宴廳) 상납의 제주(濟州) 미포(米布)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주강(晝講) 때 〈중략〉 지사(知事) 민희(閔熙)[64]가 아뢰기를, "삼명일 방물 값은 이미 호조에서 획급해줘서 진연청(進宴廳)의 비용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제주(濟州)의 방물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아마 그 땅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이고, 미포 중에 모두 미리 준비 상납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본색(本色)으로 이전의 봉진과 같이 함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땅은 다른 곳과는 다르니, 본색봉진으로 할 일이라고 분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희, 진연청, 제주방물, 본색봉진.

---

64) 민희(1614~1687):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설루(雪樓), 석호(石湖). 1650년(효종 1)에 증광문과 을과 급제. 이후 지평·장령을 거치고, 1661년(현종 2)에 경상도관찰사로 나아가 구휼에 큰 공 세움. 1663년(현종 4) 양주목사 재직 중 전례(典禮) 거행의 잘못을 빌미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부승지로 복직됨. 숙종 즉위 이후 남인 득세와 함께 정계 활동 커졌고, 관직도 계속 승진해 나아가 대사헌·예조판사를 역임한 뒤, 우의정을 거쳐, 1680년(숙종 6) 좌의정에 나아감. 이후 경신환국의 남인 실각 때, 관작삭탈과 위리안치 당했으나, 나중에 신원되었음. 시호는 문충(文忠).

❖ 康熙 十六年 丁巳 十月 十一日 甲寅

○ 兵曹啓曰, 大部島別放孳息, 頃濟州貿來後運雌馬二十三匹, 雄馬二匹, 乳馬四匹, 竝二十九匹內, 其中兒駒一匹, 越海時, 船中故失, 入來者二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啓下後, 亦爲牽送大部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년(1677) 정사년 10월 11일(갑인)

□ 제주(濟州)에서 건너온 말 228필의 나이와 털색에 대한 별단서(別單書)를 들여보내겠다는 병조의 계

○ 병조가 아뢰기를, "대부도에 따로 풀어 놓은 번식 마들은 이전에 제주(濟州)에서 사온 후 옮겨 놓은 암말 23필, 숫말 2필, 유마 4필로 합해 총 29필인데, 그 중에 어린 망아지 1필이 바다를 건너 올 때, 배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28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 들여서 아뢰고 난 후, 또한 대부도에 끌고 가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대부도, 제주.

❖ 康熙 十六年 丁巳 十一月 二十六日 己亥

○ 禮曹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方物外, 因傳敎, 特令全減事, 知委各道矣. 其中濟州, 則今冬至, 大殿所封弓帒筒箇四部, 絃弓·獐皮十五張, 循例封進, 本州異於陸邑, 恐未及期, 前期上送之致, 而海外已封之物, 還送有弊, 仍爲捧入, 其代, 明年冬至方物, 勿爲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3년(1677) 정사년 11월 26일(기해)

□ 제주(濟州)의 내년 동지방물(冬至方物)의 봉진(封進) 면제해 줄 걸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왕대비전의 방물 외에는 전교에 따라 특별 명령으로 전부 감해주는 일을 각 도에 모두 알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濟州)는 올 동지에 대전에 봉진하는 궁대·통개 4부, 현궁·노루 가죽 15장을 예에 따라 봉진해 왔지만, 본주는 육지부의 읍과는 달라서 기한을 지키지 못할까봐 기한에 앞서 올려 보내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밖에서 이미 봉진한 물건은 돌려보내면 폐단이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다음 해 동지의 방물은 봉진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궁대·통대, 현궁, 장피, 동지방물.

1678年

❖ 康熙 十七年 戊午 三月 二十七日 戊戌

○ 鄭錀,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旌義縣監尙仁詹, 遞任進上馬二匹上來, 依前禾毛色, 別單以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년(1678) 무오년 3월 27일(무술)

□ 정의현감(旌義縣監) 상인첨(尙仁詹)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 들이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정윤(鄭錀)이 사복시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상인첨(尙仁詹)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올라왔는데, 이전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들이고, 내구에 놓아기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륜, 정의현감, 상인첨, 체임진상마.

❖ 康熙 十七年 戊午 閏 三月 四日 甲辰

○ 以李嵇爲密陽府使 …… 李萬枝爲旌義縣監 …….

❖ 숙종 4년(1678) 무오년 윤 3월 4일(갑진)

□ 이만지(李萬枝)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혜(李嵇)를 밀양부사(密陽府使), 〈중략〉 이만지(李萬枝)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혜, 이만지, 정의현감.

❖ 康熙 十七年 戊午 閏 三月 二十三日 癸亥

○ 李沆, 以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上年濟州雌馬, 捉放于南陽大部島之後, 仍令設槽喂養矣. 今當草長之日, 將爲散放, 本寺官員, 不可不親往看放, 以爲檢飭牧圉之地, 且以驗其冬間喂養之勤慢, 僉正柳錫昌, 給馬下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년(1678) 무오년 윤 3월 23일(계해)

□ 남양대부도(南陽大部島) 방목의 제주(濟州) 암말 상태를 파악 위해 유석창(柳錫昌)에게 말을 줘 보낸다는 사복시의 계

○ 이항(李沆)이 사복시관원이 전하는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해 제주(濟州)의 암말을 남양의 대부도로 잡아들여 방목시킨 뒤에 구유를 설치해서 사육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풀이 자라는 날이 닥쳐서 방목하려 하니, 본시 관원이 친히 가서 방목 상태를 점검하고, 목장 땅을 검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겨울 동안 근면하게 사육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첨정(僉正) 유석창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대부도, 유석창.

❖ 康熙 十七年 戊午 四月 二日 辛未

○ 下直, 旌義縣監李萬枝, 幕嶺萬戶金大成.

❖ 숙종 4년(1678) 무오년 4월 2일(신미)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만지(李萬枝) 등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만지(李萬枝)[65], 막령만호(幕嶺萬戶) 김대성(金大成)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이만지.

65) 이만지(1634~?): 본관은 원주(原州). 1673년(현종 14) 식년시 무과 병과 급제. 1678년(숙종 4) 정의현감으로 부임하고, 다음해 떠남. 1683년(숙종 9) 운봉현감(雲峰縣監)으로 재임하던 중 백성 구휼(救恤)의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받기도 하였음.

❖ 康熙 十七年 戊午 六月 十五日 甲申

○ 兵批, 判書金錫胄呈辭受由 …… 崔寬爲濟州牧使, 李坫爲判官 …….

❖ 숙종 4년(1678) 무오년 6월 15일(갑신)

□ 최관(崔寬)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점(李坫)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병비[66]에서, 판서 김석주가 글을 올려 휴가를 청했고, 〈중략〉 최관(崔寬)[67]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점(李坫)[68]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관, 이점, 제주판관.

---

66)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 병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67) 최관(1613~1695): 본관은 전주(全州). 1651년(효종 2) 알성문과 병과 급제. 이후 정언(正言)·지평(持平)·동부승지·제주목사·대사헌·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좌찬성에 나아감. 제주목사로는 1678년(숙종 4)에 와 2년 간 재직하다가 신병으로 떠남. 이때 제주목 화북진성을 축조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는 논의도 나옴. 1686년(숙종 12) 다시 도승지로 국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칭병·사양했음. 청백리에 녹선(錄選)됐음.

68) 이점(?~1693): 1678년(숙종 4) 제주판관으로 부임하고, 1년 7개월여 재직하다 질병으로 파직됨.

❖ 康熙 十七年 戊午 六月 二十七日 丙申

○ 謝恩, 濟州牧使崔寬一.

❖ 숙종 4년(1678) 무오년 6월 27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사은(謝恩)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69]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관.

69) 국사편찬위원회 한자 원문은 '최관일(崔寬一)'로 되어 있으나, 숙종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인물은 '최관(崔寬)'이므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二日 庚子

○ 司僕寺啓曰, 濟州先運年例進上馬八匹, 御乘馬二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合一百六十八匹內, 三匹, 到水原放逸, 其餘一百六十五匹, 來到本寺, 禾毛色, 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2일(경자)

□ 제주(濟州)에서 도착한 진상마 165필을 고쳐 기록해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먼저 운반해 온 연례진상마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합 168필 가운데 3필은 수원(水原)에 도착해 달아나버렸고, 그 나머지 165필이 본 시(사복시)에 도착했음으로 나이와 털색을 기록해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어승마, 심명일진상마, 차비진상마.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七日 乙巳

○ 巳時, 上御時敏堂. 全羅監司柳命賢引見時, …… 權脩進曰, 濟州判官李坫, 除授已過二十日, 新迎下人輩, 上來已久, 而諫院位不齊, 尙未署經云. 諫院未肅拜人, 卽爲牌招, 使之署經,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7일(을사)

□ 유명현(柳命賢)의 인견(引見) 때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점(李坫)의 서경(署經)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갔다. 전라감사 유명현의 인견때, 〈중략〉 권수진(權脩進)이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점(李坫)이 제수된 지가 이미 20일이 지났고, 새로이 영입코자 온 하인들이 서울에 온 지도 오래되었으나, 사간원(司諫院)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아직도 서경(署經)을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간원에서 숙배(肅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패초(牌招)[70]하여 서경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유명현, 제주판관, 이점, 서경.

70) 패초(牌招): 임금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八日 丙午

○ 兪夏益,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三運歲貢馬二百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8일(병오)**

□ **제주(濟州)의 삼운세공마(三運歲貢馬)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개록(開錄)해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유하익(兪夏益)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세 번째 운반해온 세공마 200필이 본 시(사복시)에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삼운세공마, 화모색, 별단.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八日 丙午

○ 又啓曰, 濟州再運式年凶咎馬一百匹, 年例凶咎馬五十匹, 禾老駑駘馬十七匹, 上來馬出來時, 本州沙工逢授故失代徵馬一匹, 合一百六十八匹內, 致德興故失一匹, 到本寺故失二匹, 其餘一百六十五匹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8일(병오)

□ 제주(濟州)의 재운식년흉구마(再運式年凶咎馬) 등이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개록(開錄)해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두 번째 운반한 식년흉구마 100필, 연례 흉구마 50필, 늙은 노태마(駑駘馬) 17필이 올라오는 말로서 나올 때 본주 사공의 실수로 죽어 변상한 말 1필을 합해 총 168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덕흥(德興)에 이르러서 죽은 말 1필, 본 시(사복시)에 와서 죽은 2필을 제외한 나머지 165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식년흉구마, 연례 흉구마.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二十日 戊午

○ 濟州牧使崔寬下直.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20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하직(下直)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七年 戊午 七月 二十二日 庚申

○ 濟州判官李坫下直.

❖ 숙종 4년(1678) 무오년 7월 22일(경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점(李坫)이 하직(下直)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점(李坫)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이점.

❖ 康熙 十七年 戊午 九月 二十八日 丙寅

○ 引見時, …… 柳赫然曰, 往年濟州山馬八十餘匹, 分給軍士, 而其禾太老, 且多病馬, 不合於戰馬者, 還送本寺矣. 明春濟州山馬, 一百匹捉得, 擇其品好者, 初夏間上送, 以給都監馬兵,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4년(1678) 무오년 9월 28일(병인)

□ 인견(引見) 때 제주(濟州) 산마(山馬)의 군사 분급(分給)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 때, 〈중략〉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지난 해 제주(濟州) 산마(山馬) 80여필을 군사에게 나눠주었는데, 나이가 너무 늙고 또한 병든 말도 많아 전마에 적합지 않은 것들은 다시 본 시(사복시)로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봄에 제주산마 100필을 잡아 그 가운데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초여름 사이에 올려 보내도록 해 도감마병(都監馬兵)에게 주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혁연, 제주산마, 도감마병.

❖ 康熙 十七年 戊午 十月 三日 庚午

○ 午時, 上御進修堂. 引見時, 領議政許積, 左議政權大運, …… 吏曹判書吳始壽, …… 入侍. …… 始壽曰, 頃日登對時, 推恩加資人中, 加年冒錄及不入籍之流, 加資, 勿爲成給事, 定奪矣. 今考其文書, 則黃海·咸鏡·全羅三道及京中·濟州, 則臣未忝本職之前, 不待考籍, 已爲成給帖文, 此事未知何以處之. 積曰, 加年冒錄及不入籍之類, 固當罪之, 豈有加資之事乎? 上曰, 如此之類, 則雖已成給帖文, 還收, 可也. …….

❖ 숙종 4년(1678) 무오년 10월 3일(경오)

□ **옛적 제주(濟州) 사람 등에게 추은가자(推恩加資) 시행 관련 사실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 때,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인견(引見) 때,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 〈중략〉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지난 번 임금님을 뵈었을 때 추은가자(推恩加資)한 사람 가운데 나이를 올려 허위기록하거나 호적에 오르지 않은 무리에게 가자(加資)해준다는 문건을 내주지 말자는 일을 논의·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그 문서를 살펴보니 황해, 함경, 전라의 3도, 그리고 서울 안과 제주(濟州)는 신이 본직(이조판서)에 참여해보기도 전에 호적을 살펴볼 틈도 없이 이미 첩문을 만들어 주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나이를 올려 허위기록하거나 호적에 오르지 않은 무리에게는 당연히 벌을 줘야지, 어찌 가자(加資)를 해 준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무리에게는 비록 이미 첩문을 만들어 주어버렸어도 다시 환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오시수, 추은가자.

❖ 康熙 十七年 戊午 十月 五日 壬申

○ 以沈檀爲吏曹佐郎, 睦昌明爲禮曹參議, …… 鄭維嵩爲濟州判官, …….

❖ 숙종 4년(1678) 무오년 10월 5일(임신)

□ 정유설(鄭維嵩)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심단(沈檀)을 이조정랑(吏曹佐郎)으로, 목창명(睦昌明)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중략〉 정유설(鄭維嵩)을 제주교수(濟州敎授)[71]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심단, 목창명, 정유설, 제주판관.

71) 국사편찬위원회 한자 원문은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숙종대 정유설(鄭維嵩)은 '제주교수(濟州敎授)'를 역임하였으므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十七年 戊午 十一月 十三日 庚戌

○ 巳時, 上御進修堂.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許積, …… 入侍. …… 積曰, 朴慶後, 爲人及文筆極佳, 今番應製, 亦入高等, 聖意特爲聳動之擧, 而第玉堂之選極重, 故相臣李慶億, 爲濟州御史, 從實書啓, 孝廟極加嘉賞, 有此特命, 而今此朴慶後, 有異於是矣. 上曰, 朴慶後, 今姑改差. …….

❖ 숙종 4년(1678) 무오년 11월 13일(경술)

□ 진수당(進修堂)의 인견(引見)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박경후(朴慶後)의 후대 문제점 등을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에 나아갔다. 대신(大臣)·비국당상(備局堂) 인견(引見) 때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 〈중략〉 등이 입시했다. 〈중략〉 허적이 아뢰기를 "박경후(朴慶後)[72]는 사람됨이나 문필이 매우 훌륭하고, 이번 응제(應製)에도 높은 등수에 들어 임금께서 특별히 놀랄 만큼의 대우를 해주었고 단지 옥당(玉堂, 홍문관의 이칭)에 선발된 것도 매우 높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정승 이경억(李慶億)[73]은 제주어사(濟州御史)가 되어 사실대로 잘 아뢰어서 효종(孝宗)이 크게 칭찬하시어 이런 특명을 내리셨던 것이고, 지금 이 박경후는 이와는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경후는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박경후, 이경억, 제주어사.

---

72) 박경후(1644~1706): 본관은 함양(咸陽). 호는 취옹(醉翁), 만오(晩悟). 1675년(숙종 원년) 증광 문과 급제. 이후 삼사(三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사신으로 일본과 청나라에 갔다 왔고, 1692년(숙종 18) 청나라 사신의 접반사(接伴使)로 활약한 뒤, 병조참판에 오름. 글씨를 잘 썼고, 지금도 양주(楊州)의 좌찬성박대립비(左贊成朴大立碑), 하양(河陽)의 통제사김시성비(統制使金是聲碑) 등의 유필(遺筆)이 남았음.

73) 이경억(1620~1673):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화곡(華谷). 1644년(인조 22) 정시 문과 장원급제. 이후 예조·병조좌랑 역임, 이어 수찬·사인·충청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한성우윤·도승지·대사헌 등도 거친 후, 이조·호조·예조·형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음. 그 뒤 1672년(현종 13) 우의정과 좌의정도 지냄. 저서 《화곡유고(華谷遺稿)》. 시호 문익(文翼).

❖ 康熙 十七年 戊午 十一月 二十六日 癸亥

○ 下直, 濟州敎授鄭維嵩, 平山萬戶李碩華, 唐浦萬戶姜相望.

❖ 숙종 4년(1678) 무오년 11월 26일(계해)

□ 제주교수(濟州敎授) 정유설(鄭維嵩) 등이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정유설(鄭維嵩), 평산만호(平山萬戶) 이석화(李碩華), 당포만호(唐浦萬戶) 강상망(姜相望)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정유설, 이석화, 강상망.

1679年

❖ 康熙 十八年 己未 一月 二十一日 丁巳

○ 巳時, 上御進修堂, 召對. …… 上謂就道曰, 濟州, 在於海外, 船隻, 雖不任意往來, 而柑子進上, 至今不來, 太廟薦新, 尙未得爲之, 其在事體, 極爲未安, 濟州牧使崔寬, 推考, 可也. 諸臣遂罷出.

❖ 숙종 5년(1679) 기미년 1월 21일(정사)

□ 진수당(進修堂) 강론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의 추고 등에 대해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에 나아가고, 강론을 펼쳤다. 〈중략〉 임금이 민취도(閔就道)[74]에게 이르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밖에 있으니, 배가 비록 있다 해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감자(柑子) 진상이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해 태묘(太廟) 천신(薦新)이 여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사태가 매우 거북스러우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추고(推考)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마치고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취도, 감자진상, 제주목사, 최관.

74) 민취도(1633~1698): 본관은 여흥(驪興). 1675년(숙종 1) 증광문과 을과 급제. 1677년(숙종 3) 수찬·교리를 지내고, 이후 헌납·이조좌랑·승지, 이어 대사간도 역임하고, 형조판사로 특진되기도 함.

❖ 康熙 十八年 己未 二月 一日 丙寅

○ 閔就道,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柑橘進上, 今始來到, 而聞宗廟薦新次柑橘, 不爲來到云. 臣招問曲折於濟州陪持人, 則以爲宗廟薦新次柑橘所載船, 相失於海中, 不知去處云. 臣取考年例薦新封進之數於禮曹, 則十月朔薦金橘一百九十二箇, 柑子一百六十八箇, 十二月朔薦乳柑二百十六箇, 洞庭橘二百十六箇矣. 設或追後來到, 進上旣到之後, 薦新之禮, 遲延等待, 不無未安. 姑以進上所來者, 爲先依此數移送禮曹, 以爲明曉薦新後, 還爲內入之地, 何如? 其中金橘, 則進上中, 亦不來到, 此則不得已當待來到後薦新, 竝此仰稟. 傳曰, 依啓. 進上柑子, 先爲薦新, 可也.

❖ 숙종 5년(1679) 기미년 2월 1일(병인)

□ 감귤(柑橘) 진상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옹원의 계

○ 민취도(閔就道)가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감귤(濟州柑橘) 진상이 지금에야 막 올라왔다고 하는데, 들으니 종묘 천신(薦新)에 쓰일 감귤은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이 제주의 배지인(陪持人)[75]을 불러 곡절을 물었더니, 종묘 천신에 쓰일 감귤을 실은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잃어버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이 연례 천신 봉진의 개수를 예조(禮曹)를 통해 알아봤더니 10월 삭천(朔薦)에 금귤(金橘) 192개, 감자(柑子) 168개, 12월 삭천(朔薦)에 유감(乳柑) 216개, 동정귤(洞庭橘) 216개이었습니다. 설혹 추후에 올라올지언정, 진상은 이미 도착한 후인데도 천신의 예를 지연(遲延)시키면서 기다린다면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진상으로 올라온 것으로써 먼저 숫자에 맞춰 예조로 이송하여 내일 새벽 천신한 후, 다시 들여놓게 하는 방도가 어떻겠습니까? 그 중 금귤은 진상 중이어서 역시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는 부득불 마땅히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에 천신할 것을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진상된 감자(柑子)부터 먼저 천신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감귤, 종묘 천신, 제주 배지인, 진상감자.

---

75) 배지인(陪持人): 지방의 관아(官衙)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狀啓), 혹은 물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

❖ 康熙 十八年 己未 三月 十八日 癸丑

○ 以兩司請對時, 陳達焜·熀等, 安置喬桐事, 送假注書權德邵, 就問于大臣, 則左議政權大運, 右議政閔熙, 以爲罪人處置, 不但臣等熟講, 且采群議, 以濟州爲配所者, 意有所在, 不可移定他處, 難以文字書達, 後日登對, 當畢陳所懷矣. 至於守直別將, 不必別出置於官門至近之地, 仍令牧使監守, 似當矣. 領議政許積, 以爲焜·熀, 安置於濟州事, 臣亦與左右相熟講者也, 意實有在, 其不可移置他處, 與左右相之意, 無異, 置之官門至近之地, 仍令牧使監守, 亦似得宜, 無容別議, 而抑臣於此, 又有所懷. 李僅事, 未及結末之前, 徑先發送, 似涉太遽, 況今處置, 非以焜·愰爲有罪也, 實出於爲國家防後患之計, 而終始保全之意, 亦在於此, 則是不得已之擧也. 聖上前後下敎中, 矜憫之至意, 溢於辭表, 令人感泣, 而乃反牢囚於囹圄之中者, 恐非聖上憐恤之本意也. 自前此類, 本無囚繫之事, 仍置其家, 而使吏卒守護, 使外人不相通, 臨時發遣, 卽古例也, 仁祖朝處此之道, 臣所見知者也. 玆敢陳所懷於詢問之下, 惟願聖明, 更問於諸大臣, 而善處, 幸甚云矣, 敢啓. 傳曰, 依領相議施行, 而配所則登對時更議, 宜矣.

❖ 숙종 5년(1679) 기미년 3월 18일(계축)

□ 제주(濟州)를 유배지로 삼은 이혼(李焜) 등을 교동(喬桐) 안치하는 건에 대해 대신의 의견을 물어 보고함

○ 사헌부·사간원[양사(兩司)]에서 임금을 뵙기를 청할 때, 이혼(李焜)[76]과 이엽(李熀)[77] 등을 교동(喬桐)에 안치하는 일을 진술하며 가주서(假注書) 권덕소(權德邵)를 보내 대신들에게 묻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과 우의정(右議政) 민희(閔熙)가 "죄인의 안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신 등이 깊이 논의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 의견을 모아봐야 합니다. 제주(濟州)를 유배처로 삼은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 다른 곳으로 이정(移定)하는 것은 안 됩니

76) 이혼(1663~1729): 본관은 전주(全州). 할아버지는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 아버지가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慶安君), 임창군(臨昌君)에 봉해졌음. 1679년(숙종 5) 임금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로 아우인 황(煌)과 제주에 귀양 갔다가, 그 억울함이 밝혀져 풀려남. 숙종으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많이 받았음.

77) 이엽(1665~1690): 본관은 전주. 할아버지는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 아버지는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 임성군(臨城君)에 봉해졌음. 형이 되는 임창군 이혼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와 연루되어 1679년(숙종 5) 형과 함께 제주로 유배된 뒤, 진도(珍島)를 거쳐 해남(海南)으로 옮겨졌다가 1684년(숙종 10) 방면되었음.

다. 글로 써 아뢰기는 어려우니 후일 대궐에 나아가 뵈올 때 마땅히 품은 바를 모두 진술해 알리겠습니다. 수직별장(守直別將)의 경우는 별도로 관문 가까운 장소에 배치할 필요 없이 바로 목사에게 명을 내려 감수(監守)케 함이 마땅할 듯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은 "이혼과 이엽을 제주에 안치하는 일에 대해 신 역시 좌의정이나 우의정과 더불어 깊이 논의해 보았습니다. 진실로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니, 다른 곳에 이치(移置)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데에는[할 수 없다는 것은] 좌의정이나 우의정의 뜻과 차이가 없습니다. 관문 가까운 장소에 안치하여 그대로 목사에게 감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진실로 마땅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신은 또 다른 소회(所懷)가 있습니다. 이우(李僪)에 관한 일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솔히 먼저 보내버린 것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 듯합니다. 하물며 지금 안치하는 일은 이혼과 이엽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국가를 위해 후환을 방지하는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보전하려는 뜻 역시 여기에 있으니 이는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성상의 전후 하교 가운데 가엾게 여기는 지극한 뜻이 문건에 흘러넘쳐 사람을 감읍하게 하는데, 곧 도리어 감옥에 갇힌 자를 가두니, 성상께서 어여삐 여기는 본뜻은 아닌 듯합니다. 전부터 이 같은 부류는 본디 잡아가두는 일 없이 그들의 집에 안치하여 이졸(吏卒)에게 지키게 하여 바깥사람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임시로 파견하는 것이 옛 법도입니다. 인조(仁祖)조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신이 직접 봐 알게 된 바의 것입니다. 이에 두루 물으시어 감히 소회를 말씀해드리니, 성명(聖明)께서 다시 여러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서 잘 처리하시면 매우 다행이라 하니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상의 의견대로 시행하되, 배소(配所)인 경우는 나와 대면할 때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운, 민희, 이혼, 이엽, 제주, 허적.

❖ 康熙 十八年 己未 三月 十九日 甲寅

○ 禁府, 焜·熀等, 濟州牧安置, 啓.

❖ 숙종 5년(1679) 기미년 3월 19일(갑인)

□ 의금부에서 이혼(李焜) 등을 제주목(濟州牧)에 안치하겠다고 아룀

○ 의금부에서 이혼(李焜)·이엽(李熀) 등을 제주목(濟州牧)에 안치할 것을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의금부, 이혼, 이엽, 제주목.

❖ 康熙 十八年 己未 三月 十九日 甲寅

○ 備忘記, 噫, 予非不知焜·熀等, 實無與知之事, 推戴之說, 旣出於凶人之書, 大臣, 亦以宗社大計爲言, 故不得不勉從, 而予甚矜惻, 其令濟州牧, 厚賜料食及衣資, 使喚·婢子二名, 亦爲定給, 以示顧恤之意, 下諭于全羅監司.

❖ 숙종 5년(1679) 기미년 3월 19일(갑인)

□ 이혼(李焜) 등의 제주목(濟州牧) 유배와 관련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명령하는 비망기(備忘記)

○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아아, 내가 이혼(李焜)·이엽(李熀) 등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대(推戴)한다는 얘기가 이미 흉인(凶人)의 글에서 나왔고, 대신들 역시 종사의 대계를 위해 말을 하는지라 부득불 마지못해 따른다. 나는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고 가여워하니, 제주목(濟州牧)에 명령하여 식사비 등의 잡비와 옷감을 풍족하게 내리게 하고, 또한 사환(使喚)과 비자(婢子) 2명을 정급(定給)하게 하여 내가 불쌍히 여겨 돌봐주려는 뜻을 표시하기를 전라감사에게 명령토록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혼, 이엽, 제주목, 전라감사.

❖ 康熙 十八年 己未 四月 四日 戊辰

○ 吏批, 以姜聖佐爲濟州判官, …… 閔毅重爲監察.

❖ 숙종 5년(1679) 기미년 4월 4일(무진)

□ 강성좌(姜聖佐)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강성좌(姜聖佐)[78]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중략〉 민의중(閔毅重)을 감찰(監察)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강성좌, 제주판관.

78) 강성좌(1651~1696): 본관은 진주(晉州). 1677년(숙종 3) 금군초관(禁軍哨官)으로 무과 급제한 뒤 선전관겸내승직(宣傳官兼內乘直)을 거쳐 오위도총부도사가 됨. 1679년(숙종 5) 남인의 모함으로 제주판관에 좌천되고, 다음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제거되자, 훈련원정으로 나아감. 이후에도 남인과 소론의 부침에 따라 유배와 관직 재등용을 겪었음. 나홍좌(羅弘佐)·정홍좌(鄭弘佐)와 함께 '삼좌(三佐)'로 불렸음.

❖ 康熙 十八年 己未 四月 二十七日 辛卯

○ 大司憲權大載啓曰, 吏曹判書洪宇遠, 淸名直節, 文學行誼, 士林之所矜式, 聖明之所禮遇, 而都承旨閔宗道, 一疏再疏, 汲汲攻斥, 必欲逐去而後已, 良可駭也. 以李渟之移配爲非, 則和平下語, 直陳其意見, 可也, 今乃以循私壞法等語, 恣意醜詆, 已失相敬之道, 而及宇遠陳疏之後, 益懷嫌怒, 又擧李周徵之換差, 以爲脅持之資. 積仕換差, 自是前例, 前席稟定, 欲爲後式, 則元非大段之事. 況宗道之爲亞銓也, 洪淨爲金吾郎, 李玷爲濟州判官. 淨, 其妻四寸, 而玷, 亦其妻六寸也. 無相避姻親之除職, 自己之所不免, 而獨於他人, 剔抉而爲之咎, 豈無於己, 責於人之道也? 其凌蔑耆德之習, 殊甚不美. 不可不論啓之意, 發簡於同僚, 則同僚以爲措語失當, 使老成不安, 固有所失云, 而反以論罪爲過重. 臣膠固之見, 不能隨人俯仰, 再三往復, 終不歸一, 無非如臣無狀, 忝在首席, 不能見信之致, 何敢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숙종 5년(1679) 기미년 4월 27일(신묘)

□ 처육촌지간(妻六寸之間)의 이점(李玷)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던 민종도(閔宗道)의 체직(遞職)을 청한 권대재(權大載)의 상소

○ 대사헌(大司憲) 권대재[79]가 아뢰기를 "이조판서 홍우원(洪宇遠)[80]은 청렴·결백과 곧은 절개, 문학과 올바른 행실이 사림(士林)에서 모범으로 삼는 바이고, 성명(聖明)께서도 예우하는 바입니다. 도승지(都承旨) 민종도(閔宗道)[81] 계속 상소

---

79) 권대재(1620~1689):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소천(蘇川), 간은(艮隱). 1653년(효종 4) 별시문과 을과 급제, 1658년(효종 9) 문과 중시 병과 급제. 당쟁의 와중에서 남인으로 처신했는지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직 생활도 평탄치 않았음. 대사간·대사헌·예조참판 등을 역임함.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영변(寧邊)에 유배당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홍문관제학으로 다시 등용되었음.

80) 홍우원(1605~1687): 본관은 남양(南陽). 호는 남파(南坡).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각종 관직을 거쳐 1654년(효종 5) 수찬으로 지내던 중 장살(杖殺)당한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 파직을 당하기도 했으나, 2년 후 다시 관직을 받았음. 1663년(현종 4) 다시 수찬이 되었으나,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다시 파직됨. 이후 남인이 집권하면서 응교로 복직하고, 1676년(숙종 2) 대사성·예조판서·지중추부사에 임명됨. 이어 우참찬·이조판서·공조판서도 지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하자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명천으로 유배 갔고, 여기서 문천으로 이배된 뒤, 1687년(숙종 13) 현지에서 죽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복작되고, 이듬해 영의정을 추증받았음. 안성의 남파서원(南坡書院)·백봉서원(白峯書院)에 제향됨. 저서 《남파집(南坡集)》 13권. 시호 문간(文簡).

81) 민종도(1633~1693): 본관은 여흥(驪興). 1663년(현종 4) 문과 급제 후 검열이 되고 대교·봉교·지평을 거쳐 정언으로 나아감. 이후 각종 관직을 거쳐 1679년(숙종 5) 도승지가 되었고, 뒤 이어 대사헌·

를 올려 급급하게 공격·배척하는데 반드시 쫓아낸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니 진실로 경악스럽습니다. 만약 이발(李浡)의 이배를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부드러운 말로서 자신의 뜻을 솔직히 진술하면 좋을 터인데, 지금 사사로움을 쫓았다느니, 법을 무너뜨려다는 등의 말로 제멋대로 악랄하게 헐뜯으니, 이미 서로 공경하는 도를 잃었습니다. 홍우원이 의견을 아뢴 이후에는 더욱 혐노(嫌怒)한 감정을 품었으며 또 이주징(李周徵)의 환차(換差)를 거론하여 협박·공갈거리로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재직하면 환차하는 것은 본디 전례(前例)이고 앞서의 자리에서 여쭤 논의·결정한 것은 뒷날의 법식으로 삼으려 함이니 원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민종도가 이조참판이 되어서는 홍정(洪淨)을 금오랑(金吾郞)으로 삼고 이점(李坫)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습니다. 홍정은 그의 처사촌이며 이점 역시 그의 처육촌입니다. 인친(姻親)에게 관직을 제수할 때 상피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면할 수 없다고 하여도 유독 다른 이들에게만 후벼 긁어내 허물로 삼으니, 어찌 자신을 돌아봄은 없이 다른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능멸하는 버릇은 특히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불가불 잘잘못을 따져 알릴 뜻을 동료들에게 간찰을 보내니 동료들이 '말을 만듦이 마땅하지 않고 노성(老成)한 사람을 불안하게 하니 진실로 잃은 바가 있다.'고 운운 하는데도 도리어 논죄(論罪)가 지나치다고 합니다. 신의 고루한 견해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할 수 없어 재삼 왕복하였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는데, 신처럼 공적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욕되이 대사헌 자리에 있어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일각이라도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책을 체척(遞斥)해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임하지 말고, 물러나 세간의 논의·평판을 기다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재, 홍우원, 민종도, 이점, 제주판관.

부제학을 하다가 1680년(숙종 6) 참찬관이 됐으나 경신환국으로 유배를 당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이후 복직되고, 이후 정희재와 가까이 지내며 남인의 강경파로 나섰고, 이조참판·공조판서·대사헌을 거쳐 다시 병조판서·대사헌·예조판서를 하며 동지경연사를 겸함. 뒤 이어 우참찬·좌참찬 등을 거쳤고, 금위대장도 겸했음. 사망 다음해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이 일어난 후 관작을 추탈당했고, 1701년(숙종 27) 무고의 옥으로 아들 언량이 참수되면서 그 일족이 모두 몰살하였음.

❖ 康熙 十八年 己未 五月 六日 己亥

○ 巳時, 上御時敏堂引見時, 領議政許積, 左議政權大運, 兵曹判書金錫胄, …… 入侍. …… 錫胄曰, 考見文書, 則討逆之後, 例皆有告廟頒敎之擧, 如濟州賊吉云節, 不知何時之賊, 而就捕正刑者, 只是二人, 其時亦爲告廟頒敎, 百官各加一資. 旣已治逆, 告廟頒敎, 自是應行之事矣. …….【以上燼餘 朝報參謄】

❖ 숙종 5년(1679) 기미년 5월 6일(기해)

□ 제주(濟州)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을 처단한 뒤 종묘에 고하고, 반교(頒敎)했던 사례를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시민당(時敏堂) 나아가 인견할 때,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 〈중략〉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김석주가 아뢰기를, "문서를 살펴보니, 역적을 토벌한 후에는 연례대로 모두 종묘(宗廟)에 고(告)하고 반교(頒敎)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주(濟州)의 역적 길운절[82] 같은 경우 어느 때의 역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체포하여 사형에 처한 이가 둘 뿐이었는데도, 그때 역시 종묘에 고하고 널리 알렸으며 백관에게 각각 자급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습니다. 역모를 다스리고 난 뒤 종묘에 고하고 반교함은 진실로 마땅히 행해야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이고, 조보도 참고해 기록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권대운, 김석주, 제주, 길운절.

---

82) 길운절(?~1601): 본관은 선산(善山). 현 경북 김천시 개령면 출신이나, 선산으로 이주함. 1601년(선조 34) 정여립(鄭汝立)의 기축옥사와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 당한 소덕유(蘇德兪)을 찾아가 함께 제주에서 모반을 도모하기로 함. 이후 소덕유가 먼저 제주로 건너갔고, 그 뒤 제주에 와 소덕유·제주 토착의 문충기(文忠基) 등과 함께 제주를 장악한 다음, 한양으로 진격하자고 결의하였으나, 일의 성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봐 제주목사에게 고변해버림. 이로써 역모자 모의자가 일망타진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뒤, 20여 명이 처형되었고, 자신은 용서를 받음. 이후 포상을 받지 못한데 대해 원망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참형에 처해짐.

❖ 康熙 十八年 己未 五月 九日 壬寅

○ 入診時, ……, 上曰, 頃觀大靜縣監李升成上送遞任馬, 則甚爲不好. 濟州素是產馬之地, 若別擇豫養, 則不宜若是, 而苟充封進, 推考.【以上朝報 燼餘竝謄】

❖ 숙종 5년(1679) 기미년 5월 9일(임인)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의 체임마(遞任馬) 품질 불량 관련 추고 논의함

○ 진찰하러 들어갔을 때,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저번에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승래(李升來)[83]가 올려 보낸 체임마(遞任馬)를 보니 심히 좋지 않아 보였다. 제주(濟州)는 원래 말을 생산해내는 지방이니 만약 별도로 골라내 잘 길렀더라면 마땅히 이 같진 않았을 것인데, 겨우 봉진(封進)의 숫자만을 채웠으니, 추고(推考)하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이고, 불타고 남은 기록도 아울러 씀】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승래, 체임마.

83)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에는 '이승성(李升成)'이라 되어 있으나, 원본 대조 결과 '이승래(李升來)'가 옳음.

❖ 康熙 十八年 己未 五月 二十一日 甲寅

○ 下直, 忠州牧使權是經, 鳳山郡守李筵濟, 濟州判官姜聖佐.

❖ 숙종 5년(1679) 기미년 5월 21일(갑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강성좌(姜聖佐) 등이 하직함

○ 충주목사(忠州牧使) 권시경(權是經), 봉산군수(鳳山郡守) 이정제(李筵濟), 제주판관(濟州判官) 강성좌(姜聖佐)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시경, 이정제, 제주판관, 강성좌.

❖ 康熙 十八年 己未 五月 二十五日 戊午

○ 吏批, 以閔就道爲兵曹參議, ……, 李簹爲大靜縣監 …….

❖ 숙종 5년(1679) 기미년 5월 25일(무오)

□ 이당(李簹)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민취도(閔就道)를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중략〉, 이당(李簹)[84]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취도, 이당, 대정현감.

---

84) 이당(1661~1712): 본관은 덕수(德水). 1679년(숙종 5) 대정현감으로 부임하고, 1681년(숙종 7) 떠남. 1704년(숙종 30) 음보로 사산감역(四山監役)에 기용된 뒤, 세자익위사시직을 거쳐 부수(副率)·사복시주부·의금부도사 등에 나아감. 1709년(숙종 35) 양구현감이 되어서는 선정과 엄격한 법치를 행함. 이듬해 노모를 봉양한다는 구실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음. 시문에 능함.

❖ 康熙 十八年 己未 五月 二十五日 戊午

○ 巳時, 上御時敏堂. 大臣·備局堂上及三司請對引見. …….上曰, 焜·熀兄弟, 當初之安置絶島, 雖出於不得已, 而予心則誠有所不忍者矣. 今聞濟州牧使, 接置焜·熀於挾窄之處, 至於高築墻垣, 而出入之際, 亦必使人隨之, 有若防禁者然, 此非予之本意也. 積曰, 凡如此罪人, 使之防守者, 蓋慮有交通之患, 而至於濟州, 乃海中絶遠之地, 此則非所當慮矣. 大運曰, 申命圭·柳弼明, 皆在此地, 此人等或慮有交通之事, 而至於他人, 豈有是患乎? 濟牧所爲, 誠極過當矣. 上曰, 今後使之自便, 與同平民事, 分付于濟州牧使, 可也. …….【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5월 25일(무오)

□ 제주(濟州) 유배의 이혼(李焜)·이엽(李熀)의 방금(防禁) 건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 및 삼사(三司)가 대면하기를 청하자 인견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혼(李焜)과 이엽(李熀) 형제를 당초에 절도에 안치하는 일은 비록 부득이해서 나온 일이지만 나의 마음은 진실로 차마 못할 바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얘기를 들으니, 이혼과 이엽 두 형제를 자리가 몹시 좁은 곳에 두고 담장도 높이 쌓는 데에 이르렀고 출입할 때마다 역시 반드시 사람을 따라 붙이고 있으니 도망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는 나의 본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무릇 이 같은 죄인들의 경우, 방수(防守)하게 하는 것은 대개 서로 내통할 염려가 있음으로 걱정해서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 가운데 까마득히 먼 섬 지방이니 이는 마땅한 염려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신명규(申命圭)·유필명(柳弼明)이 모두 이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서로 내통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인데 다른 사람들인 경우 어찌 이런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제주목에서 행한 바는 진실로 정도에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차후로 그들을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평민(平民)의 일과 동등하게 할 것을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혼, 이엽, 제주목사, 허적, 권대운, 신명규, 유필명.

❖ 康熙 十八年 己未 六月 三日 丙寅

○ 引見時, 禮曹判書吳始壽所啓, 祭享所用黑牛, 濟州元貢, 一年二十首也. 別祭所用, 雖難豫定其數, 而宗社五享應用之數, 則一年十七首, 故用之有裕矣. 自丙辰年祔太廟之後, 一年所用, 增至二十二首, 比諸元貢, 二首不足, 故每以已前餘存之數, 推移用之. 卽今該署餘存之數, 只二十首, 而其中四首, 近以牛疫致斃, 前頭祭享時, 必有苟簡之患, 不可無變通之道. 若於元貢二十首之外, 加定五首, 則三首有剩於應用之數, 可以推移用之, 而聞濟州國屯所養黑牛已盡, 每每換納於私屯云, 似難全責於濟州矣. 曾前甲辰年間, 因濟州所報, 減其元貢五首, 移定於巨濟柒川島, 每年封進. 及至癸丑年, 柒川島牛疫大熾, 故其移定五首, 還定於濟州, 以至今日, 而癸丑以後, 柒川孳息之數, 亦必不少. 元貢二十首, 則依前使濟州上納, 加定五首, 則移定於巨濟, 何如? 領議政許積曰, 五首加定之擧, 在所不已, 而巨濟一邑, 亦難獨當. 令司僕寺量宜分定於黑牛所在絶島, 似爲便好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祭享所用黑牛, 每年自絶島越海而來, 率多瘦瘠, 不合於祭享, 故必須一年分養於湖西各邑, 待其充肥而用之. 卽今牛隻見存十六首, 前頭若又有連續致斃之患, 則絶島所在之牛, 猝難取用. 司僕寺所屬諸島所在黑牛, 待農隙, 量宜捉出, 牧養於畿內近島, 以爲孳息之地, 則其於不時豫備之道, 似爲得宜. 上曰, 依爲之.【禮曹謄錄】

❖ 숙종 5년(1679) 기미년 6월 3일(병인)

□ 인견(引見) 때 오시수(吳始壽) 등이 입시해 제향(祭享)에 쓸 제주(濟州) 흑우(黑牛) 공물량을 다시 정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 때, 예조판서 오시수(吳始壽)가 아뢴 바는, "제향(祭享)에 들어가는 흑우(黑牛)는 제주(濟州)의 원정공물(元定貢物)이며 1년에 20마리입니다. 별제(別祭)에 들어가는 양은 비록 그 수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종사(宗社)의 오향(五享)에 응당 쓰이는 숫자는 1년에 17마리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병신년 태묘(太廟)에 부친 후부터는 1년에 들어가는 게 22마리로 늘어 원공(元貢)에 비해 2마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전에 남았던 흑우(黑牛)를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관서에 남은 숫자가 단지 20마리이고, 그들 중 4마리가 근자에 우역(牛疫)으로 폐사(斃死)되었는데 제향(祭享)할 시기가 임박했고, 반드시 부족할 염려가 있으니 변통할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주의 원정공물을 20마리 외에 5마리를 더해 정한다면 3마리는 응당 쓰이

는 숫자에서 남음이 있으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들으니 제주의 국둔소(國屯所)에서 기르는 흑우가 이미 다해서 매번 사둔(私屯)에서 값을 쳐서 사다가 바친다고 하니, 전적으로 제주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찍이 갑신 연간 이전에 제주에서 올린 보고로 인해 제주의 원정공물에서 5마리를 빼서 거제(巨濟) 칠천도(柒川島)로 이정(移定)해서 매년 봉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축년에 이르러 칠천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돌았으므로 이정(移定)한 5마리를 다시 제주로 이정(移定)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계축년 이후 칠천도에 번식된 숫자 역시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원정공물 20마리인 경우 이전대로 제주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하는 5마리는 거제로 옮겨 정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5마리를 더하는 조치는 부득이한 바가 있으나 거제 한 읍(邑)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시 어렵습니다. 사복시에 명을 내려 잘 헤아려 흑우가 있는 외딴 섬에 나눠 정해주라고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다시 아뢴 바는, "제향(祭享)에 들어가는 흑우는 매년 외딴 섬으로부터 바다 건너서 오느라 대다수가 수척해져 제향에 적당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일 년 동안 호서(湖西) 각 읍에 나누어 길러 소들이 살찌기를 기다려 사용하게 하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소 16마리는 앞서와 같이, 또한 계속해서 폐사될 염려가 있는데, 외딴 섬에 있는 소는 갑자기 갖고 와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복시에 속해있는 여러 섬에 있는 흑우들을 농한기를 기다려 잘 헤아려 잡아내와 경기 근처의 섬에서 길러 번식하는 곳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뜻하지 않을 때를 예비하는 방도로 마땅할 듯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수, 흑우, 제주원공, 칠천도, 국둔, 사둔, 허적.

❖ 康熙 十八年 己未 六月 十四日 丁丑

○ 備忘記. 前大司諫權大載, 鍾城府使除授, …… 前掌令金聲久, 旌義縣監除授, …….

❖ 숙종 5년(1679) 기미년 6월 14일(정축)

□ 김성구(金聲久)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전 대사간(大司諫) 권대재(權大載)를 종성부사(鍾城府使)에 제수하고, 〈중략〉, 전 장령(掌令) 김성구(金聲久)[85]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고,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재, 김성구, 정의현감.

85) 김성구(1641~1707): 본관은 의성(義城). 호는 팔오헌(八吾軒), 해촌(海村). 1669년(현종 10) 식년문과 갑과 급제. 전적(典籍)·지평(持平)·수찬(修撰)·정언(正言) 등을 지냄. 1679년(숙종 5) 논핵 당한 뒤, 정의현감으로 쫓겨나고, 1681년(숙종 7) 떠남. 이때 제주 마정(馬政)의 폐단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상소도 올림. 한때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복관되어 대사성·헌납(獻納)·좌승지·강원도관찰사 등을 거쳐, 호조참의를 역임함.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득세하자 향촌에 물러나서 서사(書史)를 즐기다가 일생을 마침. 안동의 백록사(柏麓祠)에 제향 되었음. 저서《팔오헌집(八吾軒集)》.

❖ 康熙 十八年 己未 六月 十四日 丁丑

○ 鍾城府使權大載, …… 旌義縣監金聲久, …… 謝恩後仍爲下直.

❖ 숙종 5년(1679) 기미년 6월 14일(정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성구(金聲久) 등이 사은한 뒤 바로 하직함

○ 종성부사 권대재(權大載),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성구(金聲久), 〈중략〉 등이 사은한 후에 바로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재, 정의현감, 김성구.

❖ 康熙 十八年 己未 七月 三日 乙未

○ 巳時, 上御時敏堂. …… 柳赫然所啓, 頃因榻前定奪, 濟州山馬, 分給都監馬兵矣, 聞右司前哨金忠立, 愛惜所受馬, 親刷之際, 猝爲踶死, 事甚驚慘. 雖曰畜物之無知, 旣殺其主, 則所當殺此馬, 以祭其卒, 而但此馬, 旣載太僕馬籍中, 則不敢擅殺, 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

❖ 숙종 5년(1679) 기미년 7월 3일(을미)

□ 시민당(時敏堂)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제주(濟州) 산마(山馬)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갔다. 〈중략〉 유혁연(柳赫然)이 아뢴 내용은, "지난번 어전(御前)에서 논의·결정한대로 제주(濟州) 산마(山馬)를 도감(都監)의 마병(馬兵)에게 분급하였습니다. 들으니 우사전초(右司前哨) 김충립(金忠立)이 받은 말을 끔찍이 아껴 친히 쓸어주다가 창졸간에 밟혀 죽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비록 기르는 짐승이 무지하다고는 하나, 이미 그 주인을 죽였으니 마땅히 이 말을 죽여 그 병사에게 제사해야하는데 다만 이 말이 이미 태복시(太僕寺) 마적(馬籍)에 올라있어 감히 멋대로 죽일 수가 없어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혁연, 제주 산마, 마병, 태복시 마적.

❖ 康熙 十八年 己未 七月 十一日 癸卯

○ 下直, 北評事權瑍, 大靜縣監李簹.

❖ 숙종 5년(1679) 기미년 7월 11일(계묘)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당(李簹) 등이 하직함

○ 북평사(北評事) 권환(權瑍)과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당(李簹)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권환, 대정현감, 이당.

❖ 康熙 十八年 己未 七月 十三日 乙巳

○ 刑曹參判尹深, 參議李德入侍. …… 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 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7월 13일(을사)

□ 참의(參議) 이덕주(李德周)가 제주(濟州) 죄인의 처벌등급 기록을 읽고, 논의함

○ 형조참판(刑曹參判) 윤심(尹深), 참의(參議) 이덕(李德)[86]이 입시했다. 〈중략〉 형조참의 이덕주(李德周)[87]가 제주(濟州) 죄인의 처벌등급 기록을 읽었는데, 김정길(金正吉)·막금(莫今)·서원일(徐元一)·이지선(李之先)·난동(難同)[88]·이의정(李義正)은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김산건(金山建)은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서승부(徐承夫)·강설종(姜雪宗)은 임금이 말하기를, "풀어주라"고 하였다. 김일한(金日閑)·성남석(成男碩)·문종(文宗)·춘복(春卜)·애원(愛元)·오막징(吾莫徵)·두성(斗星)·임정원(林丁元)은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한승길(韓承吉)은 임금이 말하기를, "풀어주라"고 하였다. 산립(山立)·천일(天一)·의선(義先)은 임금이 말하기를, "등급을 내려라."고 하였다. 이덕주가 사형을 감하여 정배(正配)하는 죄인의 처벌등급 기록을 읽었는데, 김골대(金骨大) 등은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박충(朴忠)·전이생(全二生)·이성량(李星良)·이여택(李汝澤)은 "풀어주라."고 하였다. 〈하략〉.【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덕주, 제주죄인, 김정길.

---

86) 여기서는 형조참의 이덕(李德)이라 나오나, 바로 뒤 이어 이덕주(李德周)로 나옴. 이들 중 전자는 "이덕주"에서 "주"(周)자가 빠진 오기로 보임.

87) 이덕주(1617~1682): 본관은 전주(全州). 1668년(현종 9)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지평(持平)·장령(掌令)·사간·집의(執義)을 거쳐 승지로 승직되고, 충청도·강원도관찰사도 지냈음. 1682년(숙종 8) 허새(許璽)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신문 도중 죽음.

88) 원문의 표점이 잘못된 듯함. 이는 "難同"을 문장의 의미로 해석한데서 비롯했을 것이나, "難同"의 경우는 인명으로 봄이 적절할 것 같음. 죄인의 처분은 형조참의 이덕주가 각 죄인의 처벌등급을 읽어 내리면, 그에 맞춰 임금이 바로 처벌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음.

❖ 康熙 十八年 己未 七月 十五日 丁未

○ 安如石,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先運歲貢馬二百疋內, 一匹, 到禮山病留, 一百九十九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5년(1679) 기미년 7월 15일(정미)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작성해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안여석(安如石)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먼저 운반한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 한 마리는 예산(禮山)에 이르러 병이 나 남겨뒀고 199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안여석, 제주, 세공마, 화모색.

❖ 康熙 十八年 己未 七月 十七日 己酉

○ 李聃命,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竝八十七匹, 合一百五十五匹內, 一匹到玉果故失, 五匹中路病留, 其餘一百四十九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5년(1679) 기미년 7월 17일(기유)

□ 제주(濟州) 진상마(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개록(開錄)해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이담명(李聃命)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중 운반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三名日) 진상마 60필, 흉구(凶咎)·노태마(駑駘馬) 합 87필, 도합 155필 가운데 한 마리는 옥과(玉果)에 도착해 사고로 잃었으며 다섯 마리는 오는 도중에 병으로 남겨뒀고 그 나머지 149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담명, 제주, 연례진상마, 삼명일 진상마, 흉구·노태마, 화모색.

❖ 康熙 十八年 己未 八月 二十四日 丙戌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啓本云云. 觀此啓本, 則前牧使尹昌亨, 旌義前縣監尙仁詹, 貪濫不法之狀, 不待朝家分付, 以後官, 按覈前官之罪, 前古所無之事, 而旣已上聞之後, 則不可以崔寬擧措之駭異而置之, 竝令攸司稟處, 何如? 啓依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8월 24일(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 대해 유사(攸司)로 품처(稟處)하게 하길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 계목(啓目)에,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 덧붙여 운운하였습니다. 이 계본을 보니, 전 목사 윤창형(尹昌亨)과 정의 전현감 상인첨(尙仁詹)이 저지른 탐욕과 불법의 실정을 조정(朝廷)의 분부(分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 부임하는 관리로써 전관(前官)의 죄를 조사해 파헤치는 일은 이전에 없는 일이라 하는데, 이미 임금께 아뢴 뒤 인즉 최관(崔寬)의 처리(처사)가 놀랍고 괴이한 행동거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만큼, 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보고해 처리토록 함이 어떻습니까?"하자,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정의, 상인첨, 최관.

❖ 康熙 十八年 己未 八月 二十四日 丙戌

○ 刑曹啓目, 向前濟州牧使尹昌亨, 旌義縣監尙仁詹, 係是朝官, 移義禁府處置, 何如? 啓依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8월 24일(병술)

□ 윤창형(尹昌亨) 등의 의금부 처리를 청하는 형조의 계목

○ 형조계목(刑曹啓目)에, “지난번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상인첨(尙仁詹)은 조관(朝官)인지라 의금부로 옮겨 처치(處置)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윤창형, 정의현감, 상인첨.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四日 丙申

○ 巳時, 上御進修堂, …… 來善曰, 尹昌亨·尙仁詹等公事, 今當議處, 而崔寬先問于下輩, 三年居官之時, 小小瑣瑣之物, 莫不畢錄, 而其中或爲公用, 而其餘則歸於贓物. 渠輩供辭中, 多有稱冤之辭, 必須明查後, 可覈其實狀. 濟州, 絶島也, 其地人吏, 不可遠致京獄. 欲令濟州查覈, 則崔寬方在任所, 其隻李鼎基·柳弼明, 亦在其處, 似不可查問於濟州. 其中可問者, 拿致營下, 查覈, 何如? 上曰, 李鼎基·柳弼明, 尙在其處, 拿致營下, 詳查以啓, 可也. 來善曰, 金壽翼貪贓之物, 其時別遣御史, 查覈以來, 而今則事異於前, 鼎基·弼明兩隻, 尙在其處, 公私相應, 則御史雖欲明查, 不可得也. 夏鎭曰, 臣亦待罪金吾, 敢達. 此言好則好矣, 查問之時, 自及於馬主. 數百人出陸查問, 其弊不貲, 不可不差送御史矣. 來善曰, 馬之買賣, 不須更問. 昌亨·仁詹兩人之招, 旣曰買取云, 則不須更問矣. 義濟曰, 御史雖欲明覈, 公私符同, 則剛明亦無可施之處矣. 上曰, 仍令本道監司, 明查以啓, 可也. 雌馬一匹, 買送其兄云矣. 來善曰, 其他親舊之間, 旣稱買送云, 則馬主今不必更問矣. 夏鎭曰, 馬數相違處, 推問之際, 自至於更問馬主矣. …….【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4일(병신)

□ 진수당(進修堂)에서 목래선(睦來善) 등이 입시해 윤창형(尹昌亨)·상인첨(尙仁詹) 등의 일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으로 나아갔다. 〈중략〉 목래선[89]이 아뢰기를, "윤창형(尹昌亨)·상인첨(尙仁詹) 등의 공사(公事)는 지금 마땅히 의논해 처리해야 하겠지만, 최관(崔寬)이 먼저 하인배들에게 물었더니 삼년간 관직에 있는 동안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이루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는 간혹 공적으로 쓴 것도 있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장물(贓物)로 돌아갔다 합니다. 저들의 공초(供招) 내용 중에 억울하다는 말이 많으니 반드시 명백하게 조사한 뒤에야 그 실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주(濟州)는 멀고먼 외딴 섬이라서 그 땅의 인

89) 목래선(1617~1704): 본관은 사천(泗川). 호는 수옹(睡翁), 수헌(睡軒). 1650년(효종 1) 증광문과 병과 급제. 지평·교리·판결사 등을 거쳐 1675년(숙종 1) 형조판서가 되고, 뒤이어 대사헌·예조판서·호조판서를 역임함.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삭직되기도 했으나, 나중에 우참찬이 됨. 1689년(숙종 15) 우의정에 이르고, 이 해의 기사환국에서 서인(西人)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좌의정에 오름. 1694년(숙종 20) 남인이 몰락하는 갑술옥사가 일어나 절도에 위리안치되고, 1699년(숙종 25) 방환되어 전리(田里)에 돌아옴. 글씨에 뛰어났음.

리(人吏)는 멀어 서울의 옥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주목(濟州牧)에 명을 내려 조사해 밝히고자 하나, 최관이 바야흐로 임소(任所, 곧 제주목사의 지위)에 있으며 그 측근인 이정기(李鼎基)와 유필명(柳弼明)도 역시 그 곳에 있으니 제주에서 조사해 캐묻기는 불가할 듯싶습니다. 그 중 심문할만한 자는 영하(營下, 전라도 감영)로 잡아들여 자세히 조사해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기·유필명이 아직도 그 곳에 있으니, 전라도 감영으로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내선이 아뢰기를, "김수익(金壽翼)[90]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은 그 당시 별도로 파견된 어사가 자세히 조사해 밝혀 왔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일이 이전과 다르고, 이정기와 유필명 두 사람도 여태 그곳에 있어 공(公)·사(私)가 서로 응하니 만큼, 어사가 비록 명백히 조사하고자 하나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하진(李夏鎭)[91]이 아뢰기를, "신 역시 금오(金吾, 곧 의금부)에서 대죄하고 있으나 감히 아룁니다. 이 얘기는 좋다면 좋은 것입니다만 조사할 때 자연스럽게 마주(馬主)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 백인을 출륙시켜 조사하는 일은 그 폐해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어사를 차송(差送)하여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선이 아뢰기를 "말을 매매한 일은 다시 심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형·인첨 두 사람의 공초에 이미 매취(買取)하였다고 하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윤의제(尹義濟)[92]가 아뢰기를, "어사가 비록 명백하게 캐내고자 하나 공(公)·사(私)가 한 통속인지라 성질이 곧고 두뇌가 명석하더라도 역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로 본도 감사(監司)에게 명을 내려 명백하게 조사해 아뢰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암말 한 필을 그의 형에게 팔아 보냈

90) 김수익(1600~1673):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청악(靑岳). 1630년(인조 8) 별시 병과 급제. 이후 성균관전적·지제교(知製敎)을 거쳐 삼사(三司)의 직을 역임하였음.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의 화의성립 후 척화론자로서 귀향해 있다가 1640년(인조 18) 괴산군수가 됨.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49년(인조 27)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 받아 영남에 유배됨. 1658년(효종 9) 방환. 저서《남악집(南岳集)》. 시호 충경(忠景).

91) 이하진(1628~1682): 본관은 여주(驪州). 호는 매산(梅山), 육우당(六寓堂). 1666년(현종 7) 식년문과 갑과 급제. 이듬해 가주서·사옹원직장·전적, 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지냄. 이어 지평·수찬·헌납·공조참의·대사성을 거쳐 1678년(숙종 4)에 도승지·대사헌에 이름. 1680년(숙종 6) 대사간 재임 때 관직에서 쫓겨나는 허목(許穆)을 두둔하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서 진주목사로 좌천되고, 곧 이어 관직을 그만둠. 김석주(金錫胄)와 매사에 뜻이 맞지 않아 운산에 유배되고, 1682년(숙종 8) 배소에서 죽음. 1685년(숙종 11) 복관됨. 저서《육우당집》.

92) 윤의제(1640~1680년): 본관은 남원(南原). 1675년(숙종 1)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사관(史官)으로 기용되고, 정언·지평·교리·부수찬을 거쳐 1680년(숙종 6) 헌납·충청도관찰사를 지냄. 이 해 경신대출척으로 아버지 윤휴는 사사(賜死)되고, 자신은 극변(極邊)에 유배 후 병사함. 1691년(숙종 17) 신원(伸寃)됨.

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내선이 아뢰기를, "그 외 친구 사이에서도 이미 팔아 보낸 것이 알려졌다고 하니, 마주(馬主)들을 지금 다시 심문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진이 아뢰기를, "말의 숫자가 서로 다른 대목은 추문(推問)할 때 자연스럽게 마주(馬主)에게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목래선, 최관, 윤창형, 상인첨, 제주목, 이정기, 이필명, 이하진, 윤의제.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二日 甲辰

○ 掌令申濡, 持平金儁相·安如岳啓曰, 伏聞金吾之臣, 以尹昌亨事, 陳達於榻前, 請令道臣親查而蒙允, 臣等竊以爲不可也. 今此昌亨貪饕濫縱之狀, 非尋常負犯之比, 固宜詳覈嚴處, 而但道臣親查, 有違常規, 且多不便. 以濟州牧使崔寬之狀啓觀之, 辭連之人, 殆近百人, 使之越千里之海, 涉累日之程, 逮赴監營, 其爲弊已不貲矣. 況諸人推問之際, 其所證引者, 又不知其至於幾人, 而往來候風, 遲速難期, 遷延時月, 結梢未易, 則滯囚之患, 尤極可愍. 其在朝廷軫念遠氓之道, 決不當若是也. 曾在先朝, 以濟州牧使金壽翼事, 有別遣御史查覈之擧, 不但意在嚴查, 蓋亦慮此等之弊也. 請寢道臣親查之命, 依先朝故事, 擇朝臣中剛明曉事之人, 差遣御史, 使之嚴查. …… 答曰, 差遣御史, 雖有前例, 今此昌亨之事, 與壽翼有異, 不可不移他明查矣. …….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2일(갑진)

□ 김수익(金壽翼)의 전례대로 윤창형(尹昌亨) 조사 등을 청하는 계

○ 장령(掌令) 신학(申濡)[93], 지평(持平) 김준상(金儁相)·안여악(安如岳)[94]이 아뢰기를, "삼가 들으니 의금부의 신(臣)이 윤창형의 일을 어전에 진술해 알려서 도신(道臣)이 친히 조사함을 청해 윤허(允許) 받았다는데, 신 등은 조심스럽게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이 창형의 탐욕과 방종한 실상은 심상(尋常)한 범죄의 부류에 비길 바가 아니기에 진실로 마땅히 상세히 파헤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도신이 친히 조사케 하는 일은 상규에도 어긋나고 매우 불편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의 장계를 보니 공초에 연루된 사람들이 거의 백 명에 가까운데, 그들로 하여금 천리의 바다를 건너고 여러 날의 여정을 지나 감영(監營)으로 잡아들이면 그 폐해는 끝내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을 추문(推問)할 때 그 증인으로 끌어낼 자들이 또 몇 명에 이르지를 알 수 없고, 오고갈 때 바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시일이 지

---

93) 신학(1645~1702): 본관은 고령(高靈). 호는 만회당(晩悔堂), 만천(晩川). 1673년(현종 14) 식년문과 병과 급제. 1674년(숙종 즉위)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1677년(숙종 3) 지평(持平), 이어 정언(正言)을 역임하고, 장령(掌令)·헌납(獻納)·(執義) 등도 지내고, 1694년(숙종 20) 승지에 이름.

94) 안여악(1643~1685): 본관은 순흥(順興). 1675년(숙종 1)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예문관검열을 지내고, 1679년(숙종 5) 정언(正言)을 거쳐,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처단을 주장하는데 나섬. 이후 노론에 의하여 탄핵되어 귀양 가고, 유배 중 죽음. 1782년(정조 6)에 신원됨.

체되어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미결수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더욱 극히 근심될 만합니다. 이는 조정(朝庭)이 먼 지방 백성들의 사정을 돌봐 걱정하며 생각하는 방도로서는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곧 효종대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익(金壽翼)의 일에 별도로 어사를 파견해 샅샅이 조사해 밝혔던 조치는 단지 엄하게 조사하고자 했던 것만이 아니라, 대개 역시 이런 여러 가지의 폐단을 염려해서였던 것입니다.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친히 조사케 하라는 명령을 멈추어주시고 선조의 옛일처럼 조신(朝臣) 중에서 성격이 곧고 두뇌가 뛰어나며, 일에 훤한 사람을 택해 어사로 파견하여 엄하게 조사하게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어사를 파견하는 일이 비록 전례(前例)가 있다고 하나 지금 이창형의 일은 김수익의 것과 다르니 다른 곳으로 넘겨 명백하게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략〉"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신학, 김준상, 안여악, 윤창형, 도신, 제주목사, 최관, 김수익.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三日 乙巳

○ 巳時, 上御進修堂, 大臣·備局堂上引見. …… 李元祿進曰, 臣等以尹昌亨事, 別遣御史之意論啓, 而伏承聖批, 以今此昌亨之事, 與壽翼有異, 不可不移他明查爲敎, 臣竊以爲不然也. 今此昌亨貪饕濫縱之狀, 非尋常負犯之比, 固宜詳覈嚴處, 而道臣親查, 不但事體有所不當, 濟州爲邑, 在於絶島之中, 親查之際, 多有不便之事. 以崔寬之狀啓觀之, 則辭連之人, 殆近百人, 使之越千里之海, 涉累日之程, 逮赴監營, 其爲弊不貲矣. 況諸人推問之際, 其所證引者, 又不知其至於幾人, 而往來候風, 遲速難期, 遷延時月, 結梢未易, 則滯囚之患, 尤極可愍, 其在朝廷軫念遠氓之道, 決不當若是也. 先朝之別遣御史, 非徒意在嚴查, 亦慮此等之弊也.請寢道臣親查之命, 依先朝故事, 擇朝紳中剛明曉事之人, 差遣御史, 使之嚴查.上曰, 別遣御史, 有所拘礙. 大臣之意, 何如? 始壽曰, 昌亨所犯, 不啻狼藉, 而崔寬以交代之官, 無朝家分付之事, 而至於馳啓, 在渠人事, 則誠似可怪. 然島中絶遠, 自前多有如此之事, 不可不嚴覈重處, 而判義禁之令道臣查覈之請, 臣全未聞知, 及見臺啓始知之. 蓋此事與金壽翼有異者, 上敎誠然矣. 崔寬方以牧使在官, 則雖御史, 其所推覈之人, 不可與崔寬狀啓異辭, 查得實狀, 果似未易矣. 上答元禎曰, 已諭毋煩. 遂罷出.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3일(을사)

□ 진수당(進修堂) 인견(引見) 때 제주(濟州)에 어사(御史) 파견, 윤창형(尹昌亨)의 처벌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으로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備邊司) 당상(局堂)을 인견하였다. 〈중략〉 이원록(李元祿)[95]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 등이 윤창형(尹昌亨)의 일에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는 뜻을 논의해 아뢨으나, 삼가 임금의 비답을 받기를, '지금 이 창형의 일은 김수익의 건과 다르니 마땅히 다른 곳으로 넘겨 명백하게 조사하라'는 교시였는데, 신 등은 저으기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이 창형의 탐욕과 방종한 실상은 심상(尋常)한 범죄의 부류에 비길 바가 아닙

95) 이원록(1629~1688): 본관은 광주(廣州). 호는 박곡(朴谷). 1663년(현종 4) 식년 문과 을과 장원급제. 이후 율봉도찰방(栗峰道察訪)·성균관전적 등을 거쳐 경상도관찰사·예조참판·대사헌·대사간도 지냄. 이때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에게 참소를 받아 청선(淸選)에 금고된 적도 있었음.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이 일어나자 파직되어 충주, 안동, 영천 등에 우거하다 한질(寒疾)로 숨짐. 저서 《박곡선생문집(朴谷先生文集)》.

니다. 진실로 마땅히 상세히 파헤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도신(道臣; 관찰사)이 친히 조사함은 단지 이치나 명분으로 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濟州)라는 읍(邑)은 멀고먼 외딴 섬 가운데 있어 친히 조사하려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최관의 장계를 보면 공초에 연루된 이들이 거의 백 명에 가까운데, 이들로 하여금 천리의 바다를 건너고 여러 날의 여정을 거쳐 감영으로 잡아들이면 그 폐해 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을 추문(推問)할 때 그 증인으로 끌어낼 자들이 또 몇 명에 이르지를 알 수 없고, 오고갈 때 바람을 기다리느라 늦어짐과 이름을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시일이 지체되어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미결수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더욱 극히 근심될 만합니다. 이는 조정(朝庭)이 먼 지방 백성들의 사정을 돌봐 걱정하며 생각하는 방도로서는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조(先朝), 곧 효종이 별도로 어사를 파견한 것은 엄하게 조사하고자 했던 것만이 아니라, 역시 이런 여러 가지의 폐단을 염려해서였던 것입니다.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친히 조사하게 하는 명령을 멈추어주시고, 선조의 옛일처럼 조신(朝臣) 중에서 성격이 곧고 두뇌가 뛰어나며, 일에 훤한 사람을 택해 어사로 파견하여 엄히 조사케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는 일은 껄끄러운 점이 있다. 대신(大臣)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윤창형이 범한 바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울 뿐만 아니고, 최관은 교체된 관리로서 조정(朝廷)이 분부한 일이 없는데도 급히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저들이 인사(人事)를 살피는 것이 진실로 괴이해 합니다. 그러나 섬 가운데 까마득히 먼 땅이라 전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 엄히 조사해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철저히 조사해 밝히라고 청했다니, 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사헌부·사간원에서 올린 계사(啓辭)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대개 이 일은 김수익의 일과 다르다는 것은 임금의 전교는 진실로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최관이 바야흐로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니 어사라고 해도 추핵 받는 사람들이 최관의 장계와 얘기가 다를 수가 없으니, 조사해 실상을 얻는 것이 과연 쉽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원정에게 답해 말하기를, "이미 명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드디어 마치고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원록, 윤창형, 도신, 제주, 최관, 별견어사, 김수익, 오시수.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四日 丙午

○ 巳時, 上御進修堂, 晝講. …… 元禎曰, 濟州爲邑, 僻在海隅, 少無管攝於全羅監營之事, 必遣御史, 然後可以査得實狀矣.人或以爲, 崔寬方爲其牧使, 以此査得爲難云, 此則不然. 曾在先朝, 金壽翼爲牧使, 方在濟州, 而別遣御史, 査覈壽翼之事, 能覈得實狀. 且崔寬之事, 雖曰怪擧, 昌亨之贓汚, 若是其狼藉, 則當思明査痛治之道, 可也. 豈可先爲昌亨地, 豫慮其伸不伸也? 昨日右相未覺率爾陳達, 物議則皆以臺啓爲是矣. 潾曰, 若不別遣御史, 則不但國體不嚴, 査得實狀亦未易. 若遣公正之人, 則査得實〈狀〉不難矣.且以崔寬狀啓見之, 則可問之人, 殆近百人. 近百之人, 候風往來, 必經年閱歲, 其弊亦不可不慮也. 元禎曰, 昨於備局之坐, 臣發此言, 則皆以臣言爲是, 大臣亦以爲率爾陳達云矣. 上曰, 頃於晝講時, 判義禁以爲, 金壽翼則其時監司, 啓聞其貪贓之狀, 故不可使其監司, 仍爲査覈, 終至別遣御史, 而此則與壽翼事有異云. 昨日大臣亦以此言之, 故不從矣. 元禎曰, 金壽翼爲濟州牧使時, 李慶億爲御史, 能爲査得實狀. 御史得其人, 則雖有崔寬, 査得何難? 昌亨若有冤狀, 則自可辨白, 朝家事體, 決不當豫慮其不伸, 有所持難也. 益熏曰, 昌亨貪汚之狀, 若是其狼藉, 而近來諸議, 不以此爲怪, 只以崔寬爲非, 實未可曉也. 潾曰, 彼之怪妄與否, 非所可論, 而只爲覈得實狀, 嚴明處之, 於國體當然矣. 上答申潾曰, 依啓. 潾曰, 臣待罪言責, 當以言報國矣. 方今人不畏法, 賄賂公行. 尹昌亨之貪汚, 如是狼藉, 而不思詳査之道, 實爲寒心. …….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4일(병오)

□ 진수당(進修堂) 주강(晝講) 때 윤창형(尹昌亨)의 사건에 대한 조사, 제주(濟州)에 어사(御史)를 파견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으로 나아갔고, 주강하였다. 〈중략〉 이원정(李元禎)이 아뢰기를, "제주(濟州)라는 고을은 바다 모퉁이 외진 곳에 있어서 전라감영에서 조금도 관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어사를 보낸 연후에야 조사해서 실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생각하기를, '최관이 바야흐로 그 곳의 목사로 있으니 이번 조사는 어렵겠구나.'라고 한다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효종) 때 김수익이 제주목사가 되어 바야흐로 제주에 있었는데도 별도로 어사를 파견해 김수익의 일을 조사해 밝힘으로써 능히 실상을 샅샅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관의 일은 비록 괴이한 처사라 하더라도, 윤창형의 뇌

물수수와 추접함은 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울 정도니, 마땅히 낱낱이 조사하여 엄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야함이 옳습니다. 어찌 먼저 윤창형의 처지를 위해 미리 신원해주는 것을 염려한다는 말씀입니까? 앞전에 우상(右相)이 조심성 없이 소홀하게 사정을 말씀드린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론은 모두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계사(啓辭)가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학(申濩)이 아뢰기를, "만약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단지 국가체면이 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조사해도 실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정한 인물을 파견한다면 조사해서 실상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최관의 장계를 보면 심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백 명에 가깝습니다. 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람을 기다려 왕래하다보면 마침내 해를 넘기게 될 것이니 그 폐단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원정이 아뢰기를, "저번 비변사 관아에 출근하고서 신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모두가 신의 말을 옳다고 여겼고, 대신(大臣) 역시 조심성 없이 소홀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다고 했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번 주강(晝講) 때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생각하기를, '김수익의 경우 당시 감사(監司)가 그 부정취득의 실상을 계문(啓聞)했기에 그 감사로 하여금 사핵케 할 수 없어 결국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던 만큼, 이 경우는 김수익의 일과는 다름이 있다'고 했다. 어제는 대신(大臣) 역시 이 말을 했으니, (신하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원정이 아뢰기를, "김수익이 제주목사로 있었을 때도, 이경억(李慶億)이 어사가 되어 조사해서 실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사로 마땅한 인물을 얻는다면 비록 최관이 (제주목사 지위에) 있다고 해도, 조사해서 실상을 얻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만약 윤창형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리어 사리(事理)를 밝힐 수 있으니, 조정의 입장에서 미리 신원할 수 없다고 염려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일을 얼른 처리치 않고 어물어물 미루려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남익훈(南益熏)[96]이 아뢰기를, "윤창형의 탐욕과 추접함의 실상이 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운데도 근래 여러 의론들이 이 일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최관(崔寬)만을 그르다고 하니, 진실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신학이 아뢰기를, "그들의 괴이

96) 남익훈(1640~1693):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파은(坡隱).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 병과 급제. 숙종의 신임을 받아 1674년(숙종 즉위)부터 검열·호조좌랑·수찬·의홍현감·이조좌랑 등으로 빠르게 진급하고, 항상 청요직에 있었음. 남인이 득세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후에 승진해 성균관사예·동래부사 등을 역임함. 이어 승지·공조참의·형조참의·호조참판·동지의금부사·양주목사·경상도관찰사 등을 지냈고, 함경도관찰사를 지내던 중 임지에서 갑자기 죽음. 고대소설《옥루몽(玉樓夢)》의 작자라는 설도 있음.

하고 망령됨 여부는 논의할 만한 일이 아니며 다만 자세하게 조사해 실상을 얻어 엄명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국가체면에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신학의 말에 답하여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신학이 아뢰기를, "신은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언론으로 나라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음으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윤창형의 탐욕과 추접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운데도 자세히 조사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실로 한심스럽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원정, 제주, 최관, 제주목사, 김수익, 윤창형, 신학, 이경억, 남익훈.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四日 丙午

○ 晝講時, 至第六章, …… 申潝進曰, 臣等以尹昌亨事, 別遣御史之意論啓, 而伏承聖批以今此昌亨之事, 與壽翼有異, 不可不移他明查爲敎, 臣等竊以爲不然也. 今此昌亨貪饕濫縱之狀, 非尋常負犯之比, 固宜詳覈嚴處, 而道臣親查, 不但事體有所不當, 濟州爲邑, 在於絶島之中, 親查之際, 多有不便之事. 以崔寬之狀啓觀之, 則辭連之人, 殆近百人. 使之越千里之海, 涉累日之程, 逮赴監營, 其爲弊, 已不貲矣. 況諸人推問之際, 其所證引者, 又不知其至於幾人, 而往來候風, 遲速難期. 遷延時月, 結梢未易, 則滯囚之患, 尤極可愍, 其在朝廷軫念遠氓之道, 決不當若是也.【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4일(병오)

□ 주강(晝講) 때 윤창형(尹昌亨)의 사건 등에 대해 논의함

○ 주강 때 6장에 이르렀고, 〈중략〉 신학(申潝)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 등은 윤창형(尹昌亨)의 일에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는 뜻을 논의해 아뢨으나, 삼가 임금의 비답을 받기를, '지금 윤창형의 일은 김수익의 건과 다름이 있으니, 마땅히 다른 곳으로 넘겨 명백하게 조사하라'는 교시였는데, 신 등은 저으기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윤창형의 탐욕과 방종함의 실상은 심상(尋常)한 범죄의 부류에 비길 바가 아니기에 진실로 마땅히 상세히 파헤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도신(道臣; 관찰사)이 친히 조사함은 단지 이치나 명분으로 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濟州)라는 읍(邑)은 멀고먼 외딴 섬 가운데 있어 친히 조사하려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최관의 장계를 보면 공초에 연루된 이들이 거의 백 명에 가까운데, 이들로 하여금 천리의 바다를 건너고 여러 날의 여정을 거쳐 감영으로 잡아들이면 그 폐해 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을 추문(推問)할 때 그 증인으로 끌어낼 자들이 또 몇 명에 이르지를 알 수 없고, 오고갈 때 바람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시일이 지체되어 매듭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미결수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더욱 극히 근심될 만합니다. 이는 조정(朝庭)이 먼 지방 백성들의 사정을 돌봐 걱정하며 생각하는 방도로서는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신학, 윤창형, 김수익, 도신, 최관.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五日 丁未

○ 吏曹判書李元禎疏曰, 伏以臣, 於日昨筵中, 以濟州查事, 當遣御使[校][御史]之意, 隨臺啓之後, 略有所陳達, 不過爲事體之當然, 而及聞臺官之侵斥大臣, 臣意以爲, 如是而不遣御使校【御史】, 則其在見斥之大臣, 亦或有不安, 不知聖兪之已下, 復有所云云. 此則聖聰之所必記也, 而卽伏見大臣之疏, 有曰, 御使校【御史】之遣與不遣, 何與於臣, 而言議如此, 誠未可曉云, 臣不勝懼然校【瞿然】也. 臣之當初所陳者, 只欲嚴查汚吏而已, 追後更陳者, 亦欲破綻人言, 而前席倉卒之言, 臣亦不自知其必當於理, 而大臣之事, 大臣曾已自【數字缺】進於大臣, 而無損益, 臣豈以嚴查一次, 謂【半行缺】以此爲言, 臣安得晏然而已乎? 伏乞聖慈,【缺】臣無任屛營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察職.【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5일(정미)

□ 제주(濟州)에 어사(御史) 파견의 문제와 체직(遞職)을 청하는 이원정(李元禎)의 계

○ 이조판서 이원정[97]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삼가 신이 일전 경연(經筵)자리에서 제주(濟州)의 조사할 사안에 대해 마땅히 어사(御史)를 파견해야 한다는 뜻을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계사(啓辭) 후, 뒤이어 간략히 보고해 알려드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합니다. 대관(臺官)이 대신(大臣)을 침해·배척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렇게 해서 어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견척(見斥) 당한 대신 역시 혹 불안한 점이 있어서 임금님의 대답이 이미 내려졌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운운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총(聖聰)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시는 바인데, 이제 삼가 대신의 상소를 보니 '어사의 파견여부의 건을 어찌 신하와 더불어 하며, 의론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은 놀라 소스라침(瞿然)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신이 당초 보고해 알려드린 바는 다만 탐관오리를 엄중히 조사하고자한 것뿐이었고, 그 후에 다시 진달한 것은 역시 소문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 자리에서 창졸간에 했던 말은 신 역시 그것이 반드시 이치에 마땅하였는지는 스스로 알지 못합

---

97) 이원정(1622~1680): 본관은 광주(廣州). 호는 귀암(歸巖). 1652년(효종 3) 증광문과 갑과 급제. 이후 검열·교리 등을 거쳐 도승지·대사간·형조판서도 지냄. 1680년(숙종 6) 이조판서로 지낼 때 경신대출척으로 초산에 유배가던 도중에 불려와 장살 당함. 9년이 지난 1689년(숙종 15) 신원과 함께, 영의정에 추증됨. 신원된 뒤에도 여러 차례 정국의 변화에 따라 추탈(追奪)되기도 함. 저서 『귀암문집』. 시호 문익(文翼).

니다. 대신의 일은 대신(大臣)이 일찍이 이미 스스로【몇 글자가 빠짐】대신에게 나아갔는데도 손익이 없었는데, 신이 어찌 엄격한 조사를 일차(一次)로, 이르기를【반 줄이 빠짐】이것으로 구실을 삼는다면, 신이 어찌 마음 편할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임금님께 바라건대【글자가 빠짐】[98], 신은 물러나기를 아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원정, 제주, 어사, 대신.

98) 글자가 빠져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음.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十七日(己酉)

○ 卯正一刻, 上出御帳殿. …… 來善曰, 小臣惶恐, 有所達事矣. 上曰, 高聲奏達. 來善曰, 尹昌亨·尙仁詹事査覈之擧, 今若往濟州査覈, 則色吏庫子輩, 雖有欲以實狀納招者, 崔寬·李鼎基·柳弼明輩, 方在其處, 怵於其威脅, 必不敢直招, 事極難便. 今若令道臣, 各別明査, 則覈得實狀差勝, 故臣乃敢以此定奪矣. 伏聞頃日筵中, 以別遣御史事, 臺臣·重臣俱有所達, 有若以臣爲容護贓吏者然, 臣不勝瞿然之至. 旣聞此言, 何可冒居有司之任乎? 臣所帶判義禁, 亟命遞改, 以謝物議, 以便公私. 臣冒死敢達矣. 上曰, 本道査覈, 事不嚴明, 故允從臺啓矣. 元禎曰, 此乃聖明親聞之事, 而外間傳說, 如是爽實, 臣竊訝焉. 令道臣査覈, 揆以事例, 不如別遣御史之爲得體. 設令昌亨, 果有冤狀, 御史得其人, 則自可卞[辨]暴. 委之道臣, 寧有曲爲昌亨之意, 而臣之所達, 乃如是乎? 臣只以臺啓得體, 速爲允從之意, 略有所達矣, 筵說誤傳, 來善, 不知臣本意, 至以此辭職, 此誠臣平日不見信於朋友之致, 臣實慚焉. 始壽曰, 玆事顚末, 臣敢仰達. 尹昌亨, 尙仁詹捧原後, 臣與左相, 往赴備局坐, 睦來善, 以別遣御史之意, 問於臣, 臣以爲旣有前例, 似爲得體, 左相, 亦以爲是矣. 其後備局之坐, 來善, 又問曰, 或者以爲, 別遣御史, 蓋爲明査, 而但盤問之際, 事若涉於崔寬, 則爲其下人者, 必不直招, 以此事甚難便. 狀啓中遲晩取招者則置之, 其餘可問之人, 捉致營門, 使之嚴査爲好云, 臣答以爲, 事勢誠然, 此亦爲是云. 如有一毫係着之事, 前後來善之問, 臣豈可以事體答之, 而左相, 亦何可從公答之乎? 其間左相有干豫之說, 臣實未得聞知也. 但御史之遣不遣, 何與於大臣, 而臺臣所言如此, 至於必遣御史, 始可安於大臣之心云者, 尤未可曉也.【缺數行】…….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17일(기유)

□ 장전(帳殿)에 오시수(吳始壽) 등 입시해 제주어사(濟州御史) 파견 등에 대해 논의함

○ 묘정(卯正) 일각(一刻) 때, 임금이 외출해 장전으로 나아갔다. 〈중략〉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공(惶恐)하게도 전달해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성(高聲)으로 아뢰 전달하려무나."라고 하였다. 내선이 아뢰기를, "윤창형(尹昌亨)과 상인첨(尙仁詹)의 일을 조사해 파헤치는 조치로서 지금 만약 제주(濟州)로 가서 조사해 밝히려고 한다면 색리(色吏)·고자(庫子)들 가운데 비록 실상을 고해바치려는 자가 있더라도 최관(崔寬)·이정기(李鼎基)·유명필(柳弼明)의 무리가 현재 그곳에 있으니 그 위협을 두려워해

반드시 감히 곧게 고해바치려 들지 않을 테니 일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지금 만약 도신(道臣; 관찰사)에게 명해 특별히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게 한다면 조사해서 실상을 얻는 것이 더 낫게 될 터이니, 신이 감히 이것으로 논의·결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가 전번 경연자리에서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는 일을 대신(臺臣)과 중신(重臣)들이 함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는데, 마치 신은 장리(贓吏)를 옹호하는 자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서, 신은 섬뜩하게 두려워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찌 관부의 직에 나아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맡고 있는 판의금사(判義禁事)을 속히 갈아치울 것을 명하심으로 논란의 여론에 답하고 이로써 공사(公私)를 편안케 하십시오.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말씀을 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本道) 사핵[99]은 일이 엄격·명백치 못하므로, 사헌부·사간원에서 올린 계사(啓辭)대로 할 것을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원정이 아뢰기를, "이는 성명(聖明)께서 친히 들은 일인데도 밖에서 떠도는 소문은 이처럼 사실과 다르니 신은 저으기 이 일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명백히 밝히는 일은 사례를 헤아려보면,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일의 이치와 명분의 마땅함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설령 창형에게 실제로 원통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사에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저절로 분별되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도신(道臣)에게 맡기면, 차라리 창형의 뜻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 있겠다고, 신이 말씀을 드려 전달하는 바가 이와 같겠습니까? 신은 다만 사헌부·사간원의 계사(啓辭)가 이치와 사리의 올바름을 얻었으니 속히 윤허해 따르라는 뜻을 간략히 말씀드려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경연 자리에서의 말이 잘못 전해졌습니다. 목래선이 신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사직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신이 평소 벗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소치이므로 신은 진실로 부끄러워합니다."라고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이 일의 전말(顚末)을 신이 감히 우러러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창형과 상인 첨의 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후, 신이 좌상(左相)과 더불어 비국(備局)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목래선이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는 뜻으로 신에게 묻기에 신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치와 명분의 마땅함을 얻은 것 같다'라고 하였고 좌상(左相) 역시 그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비국(備局)의 자리에서 목래선이 다시 물어 말하기를, '혹자(或者)들이 생각하기를,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면 대개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겠지만 다만 자세히 캐어물을 때 일이 만약 최관과 관계된다면 그 아랫사람 되는 자는 반드시 곧이곧대로 불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은 매우 어렵

99) 본도(本道) 사핵(査覈): 도신(道臣), 즉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 밝히는 것.

게 된다. 장계 중 자복(自服)하여 사실을 털어놓은 자인 경우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심문할 만 한 자는 영문(營門)으로 잡아들여 거기에서 엄히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사세(事勢)가 진실로 그렇다면 이 역시 옳다'라고 했는데 만약 일말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두 번의 내선의 질문에 신이 어찌 이치와 사리의 마땅함에 맞는다고 대답했겠으며, 좌상(左相)도 역시 어찌 공의(公義)에 따른다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좌상(左相)이 간여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신은 진실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사를 파견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를 어찌 대신과 상의(相議)하겠습니까? 대신(臺臣)이 말한 바가 이와 같고 반드시 어사를 파견하여야 비로소 대신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겠다고 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줄이 빠짐】〈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목내선, 윤창형, 상인첨, 제주, 최관, 이정기, 유명필, 도신, 어사, 이원정, 오시수.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二十三日(乙卯)

○ 巳時, 上御進修堂, 引見大臣·備局堂上. …… 始壽曰, 濟州一邑, 僻在海隅, 朝家之所以軫恤者, 有異於他道, 故曾在先朝, 亦有別遣御史試士之擧. 今此御史, 雖爲查事而下去, 依前例, 令大提學出題以送, 使之試士, 兼試武藝, 以爲激勸之地, 三邑民瘼, 亦令一體訪問以啓, 似當. 且御史旣有兼幹之事, 則不可只謂之按覈御史, 以按覈兼巡撫御史, 改啓下,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23일(을묘)

□ 진수당(進修堂) 인견에서 제주(濟州) 파견 어사의 임무·역할·명칭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 때,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고, 대신·비변사 당상(堂上)을 인견하였다. 〈중략〉 오시수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란 한 읍(邑)은 바닷가 모퉁이 외진 곳에 있음으로 조정에서 불쌍하고 가련(可憐)하게 여겨 동정하는 것이 다른 도(道)와 다르니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도 역시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고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어사는 비록 조사를 위해 내려가는 것이라고 해도, 전례에 따라 대제학(大提學)에게 출제(出題)해서 보내라고 명령해서 시사(試士)케 하고 겸해서 무예(武藝)로서도 시사해서 격려·권장하는 방도로 삼고 삼읍(三邑)의 민폐 역시 일일이 방문하여 물어서 아뢰도록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어사가 이미 겸하여 주관하는 일이 있는 만큼, 단지 안핵어사(按覈御史)라고만 부를 수 없으니 안핵겸순무어사(按覈兼巡撫御史)라고 고쳐 전교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수, 제주, 어사, 시사, 안핵어사, 안핵겸순무어사.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二十三日(乙卯)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黯曰, 頃日禁府本道查覈公事, 小臣亦同參其事, 輾至及於臣兄, 臣於此, 不勝瞿然矣. 始壽曰, 此事不必人人【二行缺】御營別抄, 則依禁軍例, 受國馬, 而貧乏不能善喂, 殆不成模樣, 【缺】觀武才時, 鞭蘁·騎蘁, 皆將借騎於訓局云, 事尤寒心矣. 臣取考司僕各牧場馬, 則關西之身彌島, 嶺南之多乙背串兩牧之馬最多. 此馬各二十五匹, 濟州山馬五十匹, 合百匹捉出, 而濟州之馬, 則明年貢馬上來之時, 一時出送, 兩牧之馬則趁今捉出, 分養於各邑, 明年夏間, 俟其肥澤上送, 則可以分給於御營所屬矣. 訓局則年年已給山馬, 故御營則又欲以牧場馬參給. 其餘不當受馬者, 則亦使之得納熟馬帖子而受之, 則本寺亦無失馬之慮矣. 上曰, 依爲之.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23일(을묘)

□ 인견(引見) 때 어영청(御營廳)의 부족한 말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대신·비변사 당상들을 인견할 때 민암[100]이 아뢰기를, "지난 번 의금부에서 본도(本道)를 조사해 자세히 밝히는 공사(公事)에 소신도 역시 동참하였는데 그 일이 돌고 돌아 신의 형에게까지 미쳤으니, 신은 이에 대해 섬뜩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이 일은 사람마다 【두 줄이 빠짐】 필요가 없습니다. 어영(御營) 별초(別抄)의 경우는 금군(禁軍)의 규례에 의해 국마(國馬)를 받는데 가난하여 잘 먹이지를 못하니, 거의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글자가 빠짐】 무재(武才)를 볼 때 편추(鞭蘁)와 기추(騎蘁)는 모두 훈국(訓局)에서 빌려서 탄다고 하니 일이 더욱 한심합니다. 신이 사복시 각 목장의 말들을 취해 살펴보니 관서(關西)의 신미도(身彌島)와 영남(嶺南)의 동을배곶(冬乙背串) 두 곳 목장의 말이 가장 많습니다. 이곳의 말 각각 25필과 제주의 산마(山馬) 50필을 합쳐 100필을 잡아내는데, 제주 말의 경우는 내년 공마(貢馬)가 올라올 때 한꺼번에 출송(出送)하라고 하며, 두 목장의 말은 신속히 지금 잡아내와

100) 민암(1636년~1693):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차호(叉湖). 1668년(현종 9) 별시문과 을과 급제. 이후 지평·승지·함경도관찰사를 지냄. 1679년(숙종 5) 이후 이조참판·대사헌으로 있다가 숙종 6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파직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다시 대사헌에 기용되고, 이어 대제학·병조판서·우의정으로 나아감. 1694년(숙종 20)의 갑술옥사로 제주의 대정현(大靜縣)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의 탄핵으로 곧 이의징(李義徵)과 더불어 사사되었음.

각 읍에 나눠 기르게 하고, 내년 여름 기간에 살찌기를 기다려 올려 보내게 한다면, 어영(御營)에 속하는 곳에 분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훈국의 경우는 해마다 이미 산마를 분급 받고 있음으로, 어영은 또한 목장의 말을 섞어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는 마땅히 말을 받을 자가 아니니, 역시 숙마첩자(熟馬帖子)[101] 를 들이게 하여 받게 하면, 본시(本寺) 역시 말을 잃을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암, 신미도, 동을배곶, 제주산마, 숙마첩자.

101) 숙마첩자(熟馬帖子): 길들인 말에게 부여된 증서.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二十五日(丁巳)

○ 午時, 上御進修堂, 晝講. …… 又曰, 近年以來, 竄謫之人, 多送濟州, 濟州一島, 隔海千里, 朝廷聞見之所不及, 爲謫客者, 多有縱恣不謹, 貽弊民間之事, 爲守令者, 又不能禁戢. 臣於往年待罪憲府之時, 濟州之民, 以怨苦之故, 至有呈訴之擧, 其爲民弊, 據此可知. 臣謂竄謫之人, 不宜偏送於濟州, 以貽島民之弊. 凡諸邊遠, 顧何所不可? 今番按覈御史下去之時, 三邑謫客貽弊與否, 竝爲訪問以來, 以爲處置之地, 何如? 上曰, 今番御史之行, 別以此一款事, 分付, 可也.…….【燼餘】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25일(정사)

□ 진수당(進修堂) 주강(晝講) 때 제주(濟州) 적객(謫客)이 민폐를 자행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 때, 임금이 진수당에 나아갔고, 주강하였다. 〈중략〉〔겸특진관(兼特進官) 윤휴(尹鑴)가〕 또한 아뢰기를, "근년 이래 유배형을 받은 사람이 제주(濟州)로 많이 보내지는데, 제주 한 섬은 천리나 되는 바다로 떨어져 있어 조정의 견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적객(謫客)된 자들이 멋대로 행동하며 근신하지 않아 민간에 폐를 끼치는 일이 많고, 수령(守令)된 자들 또한 이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왕년에 사헌부를 맡았을 때 제주의 백성들이 원망과 괴로움 때문에 정소(呈訴)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민폐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유배형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제주로만 보내어 섬의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릇 여러 변경의 먼 곳을 고려해본다면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습니까? 이번 안핵어사(按覈御史)가 내려갈 때, 삼읍(三邑)의 적객들이 폐를 끼치는 여부까지 아울러 방문하여 묻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어사의 출행에는 별도로 이 안건까지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윤휴, 적객, 제주, 안핵어사.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二十六日(戊午)

○ 柳命堅, 以兵曹言啓曰, 今此濟州按覈御史, 兼試武藝事, 命下矣. 規矩單子, 依前例書入, 而事目則規矩落點啓下後, 追後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26일(무오)

□ 제주안핵어사(濟州按覈御史)에게 명한 내용의 사목(事目) 마련 관련 병조의 계

○ 유명견(柳命堅)[102]이 병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이번 제주안핵어사(按覈御史)는 무예를 시험하는 일까지 겸하게 하라는 명도 내리셨습니다. 규구단자(規矩單子)는 전례에 의거해 써서 들일 것이며 사목(事目)의 경우는 규구(規矩)가 낙점되었음으로 계하(啓下)를 받게 된 후, 추후에 마련해서 들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유명견, 제주안핵어사, 규거단자.

---

102) 유명견(1628~1707):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모산(茅山).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 병과 급제. 1676년(숙종 2) 수찬(修撰)을 역임하고, 1680년(숙종 6) 경주부윤 재직 중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할 때 파직 당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승지가 되고, 부제학·대사간을 거쳐 1692년(숙종 18) 이조참판을 지냄. 1701년(숙종 27) 장희재 등과 인현왕후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죄로 위도(蝟島)에 안치 당하였다가 1704년(숙종 30) 방환됨.

❖ 康熙 十八年 己未 九月 二十六日(戊午)

○ 李晶, 以禮曹言啓曰, 今月二十三日備局堂上引見時, 禮曹判書閔黯所啓, 自前濟州御史下去時, 有漢拏山致祭之規, 今亦依例爲之乎? 敢稟, 上曰, 依爲之事, 傳敎矣. 致祭吉日, 則御史到彼後, 隨時擇日, 祭物則令本州精備, 依名山節祭例設行, 而祭文及香祝, 亦令該司, 照例擧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9월 26일(무오)

□ 제주어사(濟州御史) 거행의 한라산(漢拏山) 치제(致祭) 관련 예조의 계

○ 이정(李晶)이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금월 23일 비변사 당상들을 인견하실 때, 예조판서 민암(閔黯)이 아뢴 내용은, '전부터 제주어사(濟州御史)가 내려갈 때 한라산에 치제하는 규례가 있었으니, 이번 역시 전례대로 시행할지를 감히 품계(稟啓)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전례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치제하는 길일의 경우는 어사가 그곳에 도착한 후, 때에 따라 택일하고 제물은 본주(本州)에 명해 정성들여 준비하게 하고 명산(名山) 절제(節祭)의 예법에 의거해 설행(設行)하되 제문과 향축 역시 해당 관서에 명해 전례를 살펴 거행하라는 뜻을 분부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정, 민암, 제주어사, 한라산, 치제.

❖ 康熙 十八年 己未 十月 十三日(甲戌)

○ 戶曹判書睦來善所啓 ……, 右議政吳始壽所啓, 今此濟州御史試取時, 武藝, 旣以取二技定奪. 二技入格之類, 自上當有處分, 而一技優等之類, 雖未入格, 自前有齎去木同, 御史, 直爲施賞之規. 今亦給送綵布十同, 以爲依前施賞, 慰悅島民之地, 何如? 上曰, 以全羅監營所儲木綿給送, 而十同似小, 難以周給, 二十同給送, 可也. …….【以上朝報】

❖ 숙종 5년(1679) 기미년 10월 13일(갑술)

□ 제주어사(濟州御史) 시취(試取) 입격자(入格者)의 시상 등에 대해 논의함

○ 호조판서(戶曹判書) 목래선(睦來善)이 아뢴 바는 〈중략〉 우의정(右議政) 오시수(吳始壽)가 아뢴 바는, "이번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시취(試取)할 때, 무예는 이미 두 가지의 기예로 시취하는 것으로 논의·결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예로 시험에 뽑힌 부류는 위로부터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며, 한 가지 기예로서 우등의 성적을 거둔 부류는 비록 시험에 뽑히지는 못했더라도 이전부터 가지고 간 목동(木同)을 어사(御史)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상하는 규정이 있었으니, 이번 역시 채포(綵布) 10동을 주어 보내서 전례대로 시상케 하여 섬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방도로 삼으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감영에 저축된 목면을 주어 보내게 하되, 10동은 적어서 두루 시상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니, 20동을 주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목래선, 오시수, 제주어사, 시취, 입격.

❖ 康熙 十八年 己未 十月 十九日(庚辰)

○ 具崟啓曰, 卽者濟州牧使崔寬, 身病辭職上疏, 使其邑吏上送. 該元疏, 還爲下送, 崔寬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10월 19일(경진)

□ 사직 상소를 읍리(邑吏)에게 올려 보낸 최관(崔寬)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구음(具崟)의 계

○ 구음[103]이 아뢰기를, "전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그 읍리(邑吏)에게 시켜 올려 보냈습니다. 해당 원래의 상소는 도로 내려 보내고 최관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구음, 제주목사, 최관.

---

103) 구음(1614~1683): 본관은 능성(綾城). 호는 명곡(明谷). 1652년(효종 3) 참봉으로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1669년(현종 10) 장령이 되고, 이듬해 정언으로 나아감. 1678년(숙종 4) 다시 장령을 거쳐 헌납으로 나아감. 1679년(숙종 5) 사간·승지를 역임한 뒤, 이어 간성군수(杆城郡守)를 지냄. 저서 《명곡문집》.

❖ 康熙 十八年 己未 十月 二十六日(丁亥)

○ 又啓曰, 濟州儒生製述書題出送事, 曾已定奪矣. 御史李曾, 明日辭朝云, 大提學金錫胄, 方在藥房, 使之來詣賓廳, 出題, 何如? 傳曰, 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10월 26일(정해)

□ 김석주(金錫胄)로 하여금 제주(濟州) 시취(試取) 관련 출제를 청하는 이정(李晶)의 계

○ (이정이)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생(儒生)들의 제술(製述) 관련 시취(試取) 문제를 출송하는 일은 이미 논의·결정되었습니다. 어사 이증(李增)[104]이 내일 하직인사를 한다는데, 대제학(大提學) 김석주(金錫胄)가 지금 약방(藥房)에 있으니 빈청(賓廳)으로 들게 하여 출제(出題)하라고 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제주유생, 이증.

104) 이증(1628~1686): 이름의 한자가 원문에는 "曾"이라 되어 있으나, "增"의 오기임. 1677년(숙종 3) 증광별시 병과 급제. 1679년(숙종 5) 지평을 지내고, 전 제주목사 윤창형과 정의현감 상인첨의 탐욕과 부정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되었음. 제주 체류기간이 5개월이었고, 이때의 일을 일기체로 적어《남사일록(南槎日錄)》을 편찬함. 의주부윤과 부사직 등도 지냄. 저서《남사일록》.

❖ 康熙 十八年 己未 十月 二十七日(戊子)

○ 按覈兼巡撫御史李增, 濟州地出去.【以上朝報, 燼餘竝謄】

❖ 숙종 5년(1679) 기미년 10월 27일(무자)

□ 이증(李增)이 제주(濟州)로 나감

○ 안핵겸순무어사(按覈兼巡撫御史) 이증(李增)이 제주(濟州) 땅으로 떠났다.【이상은 조보의 내용이고, 불타고 남은 기록도 아울러 베낌】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안핵겸순무어사, 이증, 제주.

❖ 康熙 十八年 己未 十一月 二日 癸巳

○ 晝講時, 知事金錫胄所啓, 夏間以禮曹建請, 司僕所屬湖南牧場所產黑牛, 移養孳息於近島事, 分付該曹, 故卽令巨濟加佐島·順川白也串, 取雌牛及雄牛若干, 上送矣. 去月望, 四十餘頭陸續來到, 而畿內本寺所管牧島, 除江華則只有大靜·永宗, 而大靜旣是山馬別養之所, 永宗則以募民保障之故, 盡出前日所在牛馬, 今難更送. 以此辭意, 移文禮曹, 或意其典牲署有近島, 可以牧牛矣. 得聞典牲提調之言, 則自前海島之牛, 體瘠而不順, 故例爲執出於本道, 移送湖西, 經一年分養後, 以次上納於本署, 待其充腯中用之後, 用之於牲牢, 至於孳息一款, 非本署所管, 汝火·栗島等處, 合氷則連陸, 且可放牧羊羔, 如欲放牛, 則必將設場立柵, 又設牧子, 決難爲之云. 早知如此, 則禮曹雖有定奪, 司僕可以更稟還寢, 而初旣失着, 到今上來者, 本爲孳息, 故皆是雌牛, 又不合於祭用, 則分養於畿邑亦難. 荏苒之間, 以疫致斃者, 至於十餘首, 尤爲可惜. 今則勢將入送於永宗, 以待風和, 轉養他島之計矣. 上曰, 依爲之.【禮曹謄錄】

❖ 숙종 5년(1679) 기미년 11월 2일(계사)

□ 주강(晝講) 때 김석주(金錫胄)가 호남(湖南) 목장(牧場)의 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방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할 때, 지사(知事) 김석주가 아뢴 내용은, "여름 간에 예조(禮曹)에서 건의해 청한, 사복시(司僕寺) 소속 호남 목장 산출의 흑우(黑牛)를 가까운 섬으로 옮겨 길러 번식하게 하자는 일을 해당 관부에 분부하니, 즉시 거제 가좌도(加佐島)와 순천(順川) 백야곶(白也串)에 암소와 수소 몇 마리를 올려 보냈습니다. 지난 보름에 40여 두가 잇달아 도착했으나, 경기지방 본시(本寺)가 관장하는 섬 지역의 목장은 강화(江華)를 제외하면 오직 대정(大靜)과 영종(永宗)뿐인데, 대정(大靜)은 이미 산마(山馬)를 별도로 기르는 곳이고, 영종의 경우는 백성을 모으고 방어 시설을 유지하는 까닭에 이전에 있던 소와 말들을 모조리 송출해버려 지금은 다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뜻을 예조(禮曹)에 알려서 혹 전생서(典牲暑) 소유의 가까운 섬에서는 소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생서 제조(提調)의 말을 들으니, 이전부터 섬 지역의 소들은 몸이 마르고 성질이 순하지 않았기에 관습적으로 본도(本道)에서 잡아내와 호서(湖西)지방으로 이송하여 일 년 가량을 나누어주어 기르게 한 뒤, 차례대로 본서(本署)에 상납합니다. 그것들이 충

분히 살쪄 알맞게 쓰이기를 기다린 뒤, 희생(犧牲)으로 사용합니다. 번식시키는 일은 본서(本署)의 소관이 아니며, 여화(汝火)·율도(栗島) 등의 곳은 얼어붙게 되면 육지와 이어지니 또한 양이나 염소를 방목할 수가 있으나, 만약 소를 방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목장을 설치하고 책(柵)을 세우고 또 목자(牧子)를 둬야 하는 만큼, 행하기가 반드시 어렵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이럴 줄 알았다면 예조에서 비록 논의·결정한 바가 있더라도 사복시에서 다시 방침을 거두어 달라고 품의(稟議)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르쳐 버렸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들은 본시 번식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두 암소이고, 또 제사의 용도로는 맞지 않으니, 경기(京畿)의 읍(邑)에 나누어 주어 키우게 하는 일 역시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우역(牛疫)으로 폐사(斃死)된 것이 10여 마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더욱 애석합니다. 지금은 일의 형세가 장차 영종(永宗)으로 들여 보내야하나,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려 다른 섬으로 옮겨가면서 길러볼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흑우, 가좌도, 백야곶, 대정, 영종, 산마.

❖ 康熙 十八年 己未 十二月 十二日 癸酉

○ 兵曹啓曰, 本曹郎廳李增, 以按覈御史, 出使濟州, 而海外候風之地, 還朝之期渺然. 前頭大政時, 郎廳不可不備員, 李增姑爲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5년(1679) 기미년 12월 12일(계유)

□ 이증(李增)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병조의 계

○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 낭청(郎廳)[105]의 이증이 안핵어사(按覈御史)로서 제주(濟州)로 나갔는데, (제주는) 바다 밖에서 바람을 기다려야하는 땅이어서 조정으로 돌아올 기약이 묘연합니다. 앞으로 닥칠 대정(大政)[106] 때, 낭청은 마땅히 인원을 갖추어야 하니, 이증을 우선 개차(改差)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낭청, 안핵어사, 제주, 대정.

---

105) 낭청(郎廳):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당하관(堂下官)을 달리 이르던 말.

106) 대정(大政): 해마다 12월에 행(行)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벼슬아치의 인사고과에 따라서 관직을 떼어버리거나 더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을 일컫거니와, 6월과 12월 두 차례(次例) 이뤄짐.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가 규모가 크고, 대대적으로 행해졌기에 대정이라는 이름이 유래함.

1680年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三日 癸亥

○ 今日引見時, 執義朴鎭圭所啓, 請還收閔鼎重等放釋之命. 上曰, 毋煩. 又所啓, 濟州乃絶島, 人皆厭避之地, 而牧使崔寬, 因筵臣之陳達, 有遞差之命, 臣不勝駭然也. 崔寬病勢之輕重, 雖未可知, 而今若輕遞, 則將來厭避之弊, 有不可勝言. 請還收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 上曰, 濟州雖人所厭避之地, 而崔寬之病重實狀, 已悉於御史狀啓中, 且曾經侍從之臣, 死於海島之中, 事甚矜惻, 故遞差矣. 有何所傷? 不允.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3일(계해)

□ 인견(引見) 때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 등의 환수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인견 때, 집의(執義) 박진규(朴鎭圭)[107]가 아뢴 내용은, "민정중(閔鼎重)[108] 등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거둬주기를 청합니다."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아뢴 내용이, "제주는 멀고 먼 외딴 섬이라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땅인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연신(筵臣)[109]의 사정·아룀으로 체차(遞差)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는데 신은 깜짝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최관이 걸린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 경솔히 체차하게 되면 장차 기피하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목사 최관을 체차하라는 명령을 거두어주십시오."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가 비록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일지라도, 최관의 병세가 위중한 실상을 이미 어사의 장계를 통해 잘 알고 있으며 또 일찍이 시종지신(侍從之臣)이 해도(海島) 가운데서 죽었던 일을 겪었기에 일이 매우 슬프고 가여워서. 체차한 것인데,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윤허하지 않았다.

---

107) 박진규(1633~1692): 본관은 밀양(密陽). 1675년(숙종 1) 식년문과 을과 급제. 이후 정언·지평·장령·헌납 등과 같은 언관 직에 반복하여 임명되면서, 남인의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벌임.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파직 당한 뒤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집의로 복귀함. 이 해에 승지로 발탁된 뒤, 여러 차례 승지를 지냄. 1690년(숙종 16) 강원도관찰사로 나아감.

108) 민정중(1628~1692):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노봉(老峯). 1649년(인조 27) 문과 장원급제. 이후 대사성·이조판서·좌의정 등을 역임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음. 현종 묘정과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등에 제향됨. 저서 《노봉집(老峯集)》. 시호 문충(文忠).

109) 연신(筵臣): 임금에게 경전(經典)을 강(講)하던 벼슬아치.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박진규,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三日 癸亥

○ 今日引見時, …… 副提學閔宗道所啓, 聞濟州牧使崔寬, 滿頭膿腫, 病到十分地頭, 而且查覈之事, 今已垂畢, 而曾經侍從之臣, 死於絶島, 則事甚矜惻. 若使歸死於故鄕, 則實是殿下好生之德也. 領議政許積曰, 御史狀啓, 則以症勢爲惡, 方在死生中, 將死之實狀尤詳, 而以私陳達, 事涉未安, 故宗道曾以此發言於備局也, 臣等以此爲答也. 若自上別爲處分, 則固是體下之道, 而濟州, 卽海島厭避之地, 人皆請遞, 事甚率爾. 閔宗道推考, 何如? 上曰, 閔宗道推考, 崔寬遞差. …….【以上 朝報】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3일(계해)

□ 인견 때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의 환수를 청한 것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인견 때, 〈중략〉 부제학(副提學) 민종도(閔宗道)가 아뢴 내용은, "들으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이 머리 가득 종양이 생겨 병이 매우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사핵(査覈) 건도 지금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종지신(侍從之臣)이 멀고 먼 외딴 섬에서 죽었던 일을 겪었던지라 일이 매우 슬프고 가엾습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게 해준다면 진실로 이는 전하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입니다."이었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어사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병세가 악화되어 바야흐로 생사 가운데 있고 장차 병들어 죽을 실상이 더욱 자세했으나, 사사롭게 사정을 아룀으로써 일이 매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도가 일찍이 이에 대해 비국(備局)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신 등이 이 같이 답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부터 별도로 처분하게 된다면 진실로 이는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살피는 도리이기는 하지만, 제주는 곧 섬 지역으로 기피하는 땅이기에 사람들이 모두 체차를 청한다 함은 언사가 매우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민종도를 추고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종도를 추고하고 최관을 체차하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민종도, 허적, 해도,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四日 甲子

○ 晝講時, 持平安如岳所啓, 請還收閔鼎重等放釋之命. 上曰, 勿煩. 又所啓, 請還收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事. 上曰, 已諭毋煩.【以上朝報】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4일(갑자)

□ 주강(晝講)에서도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의 환수에 대해 논의함

○ 주강 때, 지평(持平) 안여악(安如岳)이 아뢴 내용은, '민정중(閔鼎重) 등을 풀어주라는 명을 거두어주길 청함'이었다. 임금은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아뢴 내용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어주길 청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유시(諭示)하였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안여악,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五日 乙丑

○ 府啓, 閔鼎重等事, 濟州牧使崔寬事.【措語見上】答曰, 勿煩.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5일(을축)

□ 최관(崔寬) 관련 문제에 대한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아룀은 '민정중(閔鼎重) 등의 일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의 일'이었다.【같은 말이 위에서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헌부,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八日 戊辰

○ 府啓, 請還收閔鼎重等放釋之命事, 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還寢事. …… 答 曰. 不允. …….【以上朝報】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8일(무진)

□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의 중지를 청하는 일 등의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뢈은, '민정중(閔鼎重) 등을 풀어주라는 명을 거둬주길 청하는 일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체차하라는 명을 중지해 그만 둠을 청하는 일'이었다. 〈중략〉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헌부,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九日 己巳

○ 府啓, 請還收閔鼎重等放釋之命事, 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還寢事, 開城留守尹深從重推考事, 司藝金是榮遞差事. …….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9일(기사)

□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의 그만 둠을 청하는 일 등의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뢈은, '민정중(閔鼎重) 등을 풀어주라는 명을 거둬들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체차하라는 명을 중지해 그만 둠, 개성유수(開城留守) 윤심(尹深)[110]을 죄과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따져 밝힘, 사예(司藝) 김시영(金是榮)을 체차(遞差)함을 청하는 일'이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헌부,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윤심, 김시영.

110) 윤심(1633~1692): 본관 파평(坡平). 호 징암(懲庵).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이어 홍문관정자·지평·부교리·부수찬·이조좌랑 등을 거침. 1664년(현종 5)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다시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가 되어 제주에서 시취(試取)를 행함.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유배·파직·재기용을 수차례 겪으면서 1689년(숙종 15) 공조판서, 이어 병조판서를 거쳐 지돈녕부사에 이름. 예서에 뛰어났으며, 비문도 여러 곳의 기에 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十日 庚午

○ 掌令李寅賓所啓, 請還收閔鼎重等放釋之命事. 上曰, 勿煩. 又所啓, 請還寢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事. 上曰, 不允. 頃聞筵臣之言, 崔寬得必死之疾. 曾經侍從之臣, 若死於絶島, 則事甚矜惻, 故特命遞差矣. 臺臣以執法之論, 一二陳啓, 未爲不可, 而久不得停論, 未知其妥當也. …….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10일(경오)

□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을 거둬들이는 일 등을 청하는 이인빈(李寅賓)의 계

○ 장령(掌令) 이인빈[111]이 아뢴 내용은, '민정중(閔鼎重) 등을 풀어주라고 한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아뢴 내용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체차하라고 한 명령을 중지해 그만 둠을 청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번에 연신(筵臣)의 말을 들으니 최관이 반드시 죽을 질병을 얻었다고 한다. 일찍이 시종지신(侍從之臣)이 멀고먼 외딴 섬에서 죽은 것을 겪은 것처럼 일이 매우 불쌍하고 가여워 특별히 체차를 명한 것이다. 대신(臺臣)이 법리의 논리를 고집해 한두 번 진술해 아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래도록 정계(停啓)치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인빈, 민정중, 제주목사, 최관.

---

111) 이인빈(1625~1695). 본관은 한산(韓山). 호는 설루(雪樓). 1678년(숙종 4) 전시직부(殿試直赴)를 거쳐 증광문과 을과 급제. 1679년(숙종 5) 정언으로 재직하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축출 움직임에 동조·가담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대거 축출됨으로써 약 10년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1689년(숙종 28) 기사환국으로부터 2년 후 다시 장령으로 기용됨. 이어 헌납을 거쳐 사간에 오름.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十三日 癸酉

○ 持平朴鳳祥所啓, …… 又所啓, 請還收濟州牧使崔寬遞差之命事. 上曰, 已諭於昨日筵中之批, 勿煩. …….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13일(계유)

□ 지평(持平) 박봉상(朴鳳祥)이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란 명의 환수 등을 논의함

○ 지평(持平) 박봉상(朴鳳祥)이 아뢴 내용은, 〈중략〉 또한 아뢴 내용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을 체차(遞差)하라는 명을 중도에 그만 둠을 청하는 일'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어제 경연 자리에서 비답(批答)으로 유시(諭示)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박봉상, 제주목사, 최관.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十九日 己卯

○ 政院啓曰, 頃日引見時, 副提學閔宗道, 以濟州牧使崔寬, 病重請遞事陳達, 則大臣卽爲請推於榻前. 宗道之被推, 非由於□□條件與否, 而今見其緘辭, 至謂當該承旨, 難免不察之失, 有若因擧行條件疏漏而然. 插入刺語, 橫加侵斥, 其在事體, 豈容如是? 殊甚非矣, 副提學閔宗道, 請推考. 答曰, 依啓.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19일(을묘)

□ 최관(崔寬)의 체차(遞差) 명령 관련 민종도(閔宗道)의 추고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 인견(引見) 때, 부제학(副提學) 민종도(閔宗道)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관(崔寬)은 병세가 위중함으로 체차(遞差)를 청하는 일을 진달(陳達)하니, 대신(大臣)이 바로 어전(御前)에서 추고(推考)를 청하였습니다. 종도가 추고의 혐의를 입은 것은 □□[112]조건 여부에 연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서면상의 문답을 보니, 해당 승지에게 일렀음에 이르러서는 불찰(不察)의 실수를 면하기 어렵고 거행조건도 거칠고 엉성해 그리된 것 같음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소리를 끼워 넣어 멋대로 침해하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일의 이치와 명분의 마땅함으로 보더라도 어찌 이 같음을 용납하겠습니까? 특별히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부제학 민종도를 추고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승정원, 민종도, 제주목사, 최관.

112) 앞뒤 맥락으로 봐 "擧行"(거행)일 듯함.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二十日 庚午

○ 吏批, 以李元禎爲知春秋, …… 元相爲濟州牧使, …….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20일(경오)

□ 원상(元相)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이원정(李元禎)을 지춘추(知春秋)로 삼고, 〈중략〉 원상(元相)[113]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원정, 원상, 제주목사.

113) 원상(?~?): 1680년(숙종 6)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3개월 만에 경기수군절제사로 전직되어 떠남.

❖ 康熙 十九年 庚申 二月 二十二日 壬午

○ 謝恩, 同春秋李元禎, 副摠管申汝哲, 都摠都事申命羲, 濟州牧使元相, 鐵原府使權儔.

❖ 숙종 6년(1680) 경신년 2월 22일(임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원상(元相) 등이 사은함

○ 사은하기를, 동춘추(同春秋) 이원정(李元禎), 부총관(副摠管) 신여철(申汝哲), 도총도사(都摠都事) 신명희(申命羲), 제주목사(濟州牧使) 원상(元相), 철원부사(鐵原府使) 권주(權儔)가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은, 이원정, 신여철, 제주목사, 원상.

❖ 康熙 十九年 庚申 四月 十六日 乙亥

○ 下直, 永興府使朴長源, 密陽府使睦昌明, 濟州牧使元相, 長湍府使李世翊, 興海郡守權詢.

❖ 숙종 6년(1680) 경신년 4월 16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원상(元相) 등이 하직함

○ 하직하기를, 영흥부사(永興府使) 박장원(朴長源), 밀양부사(密陽府使) 목창명(睦昌明), 제주목사(濟州牧使) 원상(元相), 장흥부사(長湍府使) 이세익(李世翊), 흥해군수(興海郡守) 권순(權詢)이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하직, 박장원, 목차명, 제주목사, 원상.

❖ 康熙 十九年 庚申 四月 二十二日 辛巳

○ 禁府, 柳赫然大靜縣減死絶島定配. …… 啓.

❖ 숙종 6년(1680) 경신년 4월 22일(신사)

□ 의금부에서 유혁연(柳赫然) 등을 정배(定配)하였다고 아룀

○ 의금부에서 유혁연(柳赫然)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사형을 감해 멀고먼 외딴 섬의 귀양 보냄에 처함을 〈중략〉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의금부, 유혁연, 대정현, 감사절도정배.

❖ 康熙 十九年 庚申 四月 二十七日 丙戌

○ 院啓, 臣等以許積按律事, 論執已久, 未蒙允兪, 臣等竊惑焉. …… 罪人柳赫然以三朝宿將, 受恩最厚, 其人之反復無狀, 國人之所共知. 至於締結朝貴, 聚會論議, 陰厚近宗, 結爲婚姻, 此古今武臣之至戒, 邦憲之大禁. 赫然包藏禍心, 縱恣無忌, 至於訓局大將, 非與於體府, 而與許積私相密議, 團束親兵於深峽之中, 軍器旗幟, 自京營備送, 犒餽之擧, 操習之令, 皆出於赫然之手, 此則不但按驗明白, 渠亦不敢自卞, 而歸罪於積. 積與赫然, 卽是一身, 更無可問之隱情, 而兩賊旣不能窮問而得其實, 又不能據法而正其罪, 則自今將相之謀反者, 皆將以位高而不死, 豈不大可懼哉? 揆以軍法邦憲, 斷無可赦之理. 請大靜定配罪人柳赫然, 亟正邦刑. …….依啓.

❖ 숙종 6년(1680) 경신년 4월 27일(병술)

□ 유혁연(柳赫然) 등에 대해 속히 정형(正刑)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아룀은, "신 등이 생각하기에 허적(許積)을 법률에 의거 처단하는 일은 논의한지 이미 오래 되었어도 허락을 얻지 못하여, 신등은 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중략〉 죄인 유혁연(柳赫然)은 삼조(三朝)에 걸친 노련하고 공로가 많은 장수로서 은혜를 입음이 가장 도타웠습니다. 그 사람됨이 자주 아무렇게나 굴어 버릇없음은 온 나라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이었습니다. 조정의 권귀(權貴)와 결탁하여 함께 모여 수군거리며, 가까운 종실(宗室)과 은밀히 친하게 지내면서 혼인으로 맺었으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무신(武臣)이 지극히 경계할 일이며, 나라의 법으로도 크게 금하는 것입니다. 혁연은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 멋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며 훈국대장(訓局大將)에 이르렀는데도 군부의 체찰부(體察府)와 함께 하지 않고 허적(許積)과 더불어 사사로이 서로 비밀히 의논하여 친병(親兵)을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 놓고 군기(軍器)와 기치(旗幟)를 경영(京營)으로부터 갖춰 수송하고 호궤(犒餽)의 조치와 조습(操習)의 명령이 모두 유혁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자세히 조사되어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고, 역시 감히 스스로 변명할 수도 없음에도 죄를 적(積)에게 돌렸습니다. 적과 혁연은 바로 한 몸과 같으니, 다시 심문할 비밀스러운 점이 없는데, 이미 두 사람의 도적놈들을 끝까지 캐물었으나 그 실상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법에 근거해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없고, 지금부터는 장상(將相) 가운데 모반자들은 모두 지위가 높다 해서 죽이지 않으려 하니, 어찌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군법과 나라의 법도를 헤아려

보아도 결단코 사면해줄 만한 이치가 조금도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大靜)의 정배죄인 유혁연을 속히 국법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허적, 유혁연, 훈국대장, 대정, 정배죄인.

❖ 康熙 十九年 庚申 四月 二十八日 丁亥

○ 院啓, 請罪人許積按律處斷, 北靑判官尹命哲罷職事, 固城縣令金聖佐罷職事, 平安兵使申翼相改定事, 大靜定配罪人柳赫然, 亟正邦刑事. …….

❖ 숙종 6년(1680) 경신년 4월 28일(정해)

□ 유혁연(柳赫然)의 신속한 정형(正刑)을 청하는 등의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은, "죄인 허적(許積)을 법률에 의거해 처단하는 일, 북청판관(北靑判官) 윤명철(尹命哲)을 파직하는 일, 고성현령(固城縣令) 김성좌(金聖佐)를 파직하는 일, 평안병사(平安兵使) 신익상(申翼相)을 고쳐 정하는 일, 대정(大靜)의 정배(定配)죄인 유혁연(柳赫然)을 속히 국법으로 바로잡는 일. 〈하략〉 청했다."는 것이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사간원, 허적, 윤명철, 대정, 정배죄인, 유혁연.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二日 庚寅

○ 政院啓曰, 濟州儒生製述居首幼學金碾, 之次幼學吳湜·鄭希良, 直赴殿試事, 命下矣. 考見試券, 則鄭希良名下, 不書居住, 有違格例, 事當拔去, 敢稟. 傳曰, 此出於海外儒生, 不知規例之致, 勿爲拔去.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2일(경인)

□ 직부전시(直赴殿試) 명하(命下) 받은 제주유생(濟州儒生) 정희량(鄭希良)의 자격을 논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유생(濟州儒生) 제술부문 수석의 김연(金碾)[114], 차석의 유학 오식(吳湜)[115]·정희량(鄭希良)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이들의 시권(試券)을 살펴보니 정희량 이름 아래 거주를 적지 않아 격식과 사례에 어긋남이 있어 일의 규칙으로 봐 마땅히 제외되어야 함으로 감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바다 밖 유생에서 나온 일이고, 규례를 알지 못해 일어났으니, 제외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유생, 제술, 김연, 오식, 정희량, 전시직부.

---

114) 김연(1646~?): 제주유생으로 어사(御史) 이증(李增)의 시취(試取)를 통해 전시직부의 성적을 거두고,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병과급제 했으나, 1683년(숙종 9)에 와 이증의 시취 때 부정행위를 통해 답안을 제출했음이 탄로나 과방(科榜)에서 삭제됨.

115) 오식(1652~?): 제주유생으로 김연과 함께, 어사(御史) 이증(李增)의 시취(試取)를 통해 전시직부의 성적을 거두고,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병과급제 했으나, 1683년(숙종 9)에 와 이증의 시취 때 부정행위를 통해 답안을 제출했음이 탄로나 과방(科榜)에서 삭제됨.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二日 庚寅

○ 備忘記, 濟州安置罪人焜·熀等, 以幼穉之年, 少無豫知之迹, 置諸絶島, 心有所不忍, 而旣出於凶賊之推戴者, 故爲宗社大計, 不得不勉從矣. 非但今已兩年, 焜等兄弟, 本以幼弱之資, 竝與其母, 久處海霧之中, 累經重病云, 予深惻然. 當初處置, 實出於保全之道, 而今若不爲變通, 如有後悔, 則豈非有乖於保全之本意乎? 特爲移置喬桐, 以示予意.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2일(경인)

□ 이혼(李焜)·이엽(李熀) 형제를 교동(喬桐)으로 이치(移置)하라는 비망기(備忘記)

○ 비망기에, "제주(濟州)에 안치한 죄인 이혼(李焜)·이엽(李熀) 등은 어린 나이로서 미리 안 흔적이 조금도 없는데 멀고먼 외딴 섬에 안치되었으니 마음에 차마 못할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흉적(凶賊)이 추대(推戴)한 자로 나와 버렸기에 종사(宗嗣)의 대계(大計)를 위해 부득불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다. 비단 지금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혼 등의 형제가 본디 유약한 자질로 모두 그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해무(海霧) 가운데 처하다 보니 여러 번 중병을 거쳤다고 한다. 나는 심히 측은스럽다. 당초 안치를 취했던 것도 진실로 그들을 보전(保全)해주려는 방도로 냈는데, 지금 만약 변통하지 않아 만약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어찌 보전해주려는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교동(喬桐)으로 옮겨 안치함으로써 내 뜻을 보여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이혼, 이엽, 교동.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二日 庚寅

○ 政院啓曰, 臣等見備忘記, 濟州安置罪人焜·熀等移置喬桐之命, 此實天地好生之德, 臣等固當將順之不暇, 而第念焜·熀罪名旣重, 不可輕議近移. 區區所懷, 敢此仰達. 答曰, 久處海霧之地, 如有後悔, 則殊非保全之道. 今玆近移, 實出於愛欲其生之意也, 勿煩.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2일(경인)

□ 이혼(李焜)·이엽(李熀)의 교동이치(喬桐移置)에 대한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제주(濟州)에 안치한 죄인 이혼(李焜)과 이엽(李熀) 등을 교동(喬桐)으로 옮겨 안치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참으로 '천지가 살려내기를 좋아하는 덕'인지라, 신 등은 진실로 마땅히 지체없이 따라야 하겠으나, 혼·엽의 죄명이 이미 중대한지라 경솔히 가까운 지방으로 옮기는 일은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구구스럽게 품은 바를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오랫동안 해무가 있는 땅에 거처하여 만약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특별히 보전해주는 방도가 아닌 것이다. 지금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주는 일은 진실로 그 살려내려는 뜻을 사랑한데서 나온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이혼, 이엽, 교동.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二日 庚寅

○ 傳曰, 頃觀濟州御史李增狀啓, 則減死罪人申命奎·李鼎基等, 雖無大段作弊之事, 亦不無貽害於島民云, 此兩人竝移配他道.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2일(경인)

□ 신명규(申命奎) 등을 타도(他道)에 이배(移配)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전에 제주어사(濟州御史) 이증(李增)의 장계를 보니 사형을 감해 정배된 죄인 신명규(申命奎)와 이정기(李鼎基) 등은 비록 대단한 작폐(作弊)의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섬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침이 없을 수 없었다고 하니, 이 두 사람을 아울러 다른 도로 옮겨 유배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어사, 이증, 신명규, 이정기, 이배.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五日 癸巳

○ 吏批, 判書鄭載嵩呈辭受由, …….傳于柳尙運曰, 濟州判官, 今日政差出. 以任弘亮爲濟州判官.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5일(계사)

□ 임홍량(任弘亮)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판서(判書) 정재숭(鄭載嵩)[116]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말미를 받았고, 〈중략〉, 유상운(柳尙運)[117]에게 전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은 금일 인사행정에서 차출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임홍량(任弘亮)[118]을 제주판관으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정재숭, 유상운, 제주판관, 임홍량.

---

116) 정재숭(1632~1692): 본관은 동래(東萊). 호는 송와(松窩). 1660년(현종 1) 식년문과 병과 급제. 이후 지평·정언·문학·교리·수찬·광주부윤·동부승지 등을 거친 뒤, 대사간·개성유수·한성부판윤에 오름. 이어서 각부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1685년(숙종 11) 우의정으로 승진함. 이듬해 진주사(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노환으로 사직하고, 영중추부사가 됨.

117) 유상운(1636~1707): 본관은 문화(文化). 호는 약재(約齋), 누실(陋室). 1666년(현종 7) 별시문과 병과 급제. 이후 승정원주서로 기용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1680년(숙종 6) 대사간으로 특진함. 1685년(숙종 11) 호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형조판서가 됨. 1694년(숙종 20) 희빈장씨의 오빠 장희재(張希載) 처리를 둘러싸고는 노론과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장희재의 제주 유배 이후 노론의 지탄을 받아 한 때 삭직되어 성 밖에서 대죄하기도 함. 그 뒤 우참찬을 지내고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696년(숙종 22) 영의정에 오름. 이후 소론의 영수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다가 한 때 삭직 당하기도 했으나, 판중추부사로 복직됨. 희빈장씨의 사사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대립하다가 탄핵을 받아 파직·유배 당했다가 1704년(숙종 30) 방환되고, 판중추부사에 다시 복귀함. 나주의 죽봉사(竹峰祠)에 제향됨. 시호 충간(忠簡).

118) 임홍량(1634~1707): 본관은 풍천(豊川). 호는 폐추(敝箒). 1662년(현종 3) 증광문과 병과 급제. 이후 기천(基川)·명주(溟州)의 군수를 거쳐 목사(牧使)에 이름. 성리학 연구를 포기하고, 오직 시문(詩文)의 연구에 힘을 썼는데 문장의 품격이 높다는 평을 받았음. 한편, 1680년(숙종 6) 5월 제주판관을 제수 받았으나, 두 달 뒤 사촌지간의 임홍망(任弘望)이 제주목사를 제수 받음에 상피제(相避制)의 규제를 받아 체직되고, 제주판관은 이세강(李世剛)으로 교체됨. 저서《폐추유고(敝箒遺稿)》4권.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五日 癸巳

○ 司諫李墍, 正言李彦綱啓曰 …… 罪人柳赫然, 以三朝宿將, 受恩最厚, 其反復無狀, 國人之所共知. 至於締交朝貴, 聚會論議, 陰厚兇黨, 結爲婚姻, 此古今武臣之至戒, 邦憲之大禁, 而赫然包藏禍心, 無所顧忌, 團束親兵於深峽之中, 軍器旗幟, 皆自京營備送, 犒饋之資, 操習之令, 皆出於赫然之手. 此則不但按驗明白, 渠亦不敢自辨, 歸罪於積. 積與赫然, 便是一身, 更無可問之隱情, 而兩賊旣不能窮覈, 得其情實, 又不能據法而正其罪, 則自今將相之謀叛者, 皆將位高而不死, 豈不大可懼哉? 揆以軍法邦憲, 斷無可赦之理, 請大靜定配罪人柳赫然, 亟正邦刑. …….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5일(계사)

□ 대정 정배죄인 유혁연(柳赫然)의 정형(正刑) 등을 청하는 이무(李墍) 등의 계

○ 사간 이무(李墍), 정언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중략〉 죄인 유혁연(柳赫然)[119]은 세 임금을 모신 숙장(宿將)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후했는데도 도리어 행실을 함부로 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조정의 권귀와 결탁하여 함께 모여 의논하며 흉당(兇黨)을 비호하여 혼인을 맺었으니, 이는 고금(古今)의 무신들이 지극히 경계하는 것이고 나라의 법으로 크게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연(赫然)은 화를 꾸미는 데에 꺼리는 것이 없어서 깊은 산골짜기에 친병(親兵)을 숨겨놓고 군기(軍器)와 기치(旗幟)를 모두 경영(京營)에서 마련하여 보냈으니, 군사를 먹일 비용과 훈련시키는 명령이 모두 혁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비단 조사하여 명백히 밝혔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감히 스스로 변명할 수 없으므로 죄를 허적(許積)[120]에게 돌렸습니다. 적과 혁연은 한 몸이나 다름없어서 숨긴 정황을 다시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 적도를 끝까지 조사하여 정실(情實)을 밝혀내지 못하고 또 법에 의거하여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장상(將相)으로서 반역을 꾀하는 자가 모두 장차 높은 지위에 오르고 죽지 않게 되어도 어찌 크게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군법과 나라의 법에 비추어

---

119)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1644년(인조 22) 무과급제. 황해도병마절도사, 어영청 대장 등 역임. 숙종 때 남인이 숙청될 때 경상도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 시호 무민(武愍).

120) 허적(1610~1680):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 묵재(默齋)·휴옹(休翁). 1637년(인조 15) 문과급제, 경상도관찰사, 호조·형조판서, 영의정 등 역임. 서자 허견(許堅)의 역모사건에 휘말려 사사(賜死)되었다가 1689년(숙종 15) 관작이 추복됨.

보아도 결코 용서할 이치가 없으니, 청컨대 대정(大靜)에 정배된 죄인 유혁연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유혁연, 이무, 허적.

❖ 康熙 十九年 庚申 五月 十四日 壬寅

○ 院啓, 請大靜定配罪人柳赫然, 亟正邦刑事. 請前判書睦來善, 前牧使李夏鎭, 竝遠竄事. 入啓. 答曰, 勿爲煩論.

❖ 숙종 6년(1680) 경신년 5월 14일(임인)

□ 대정 정배죄인 유혁연(柳赫然)의 정형(正刑)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뢴, 대정(大靜)에 정배된 죄인 유혁연(柳赫然)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정용하라고 청한 일, 전 판서 목내선(睦來善)과 전 목사 이하진(李夏鎭)을 모두 원찬(遠竄)하라고 청한 일을 입계(入啓)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유혁연, 목내선, 이하진.

❖ 康熙 十九年 庚申 六月 十一日 戊辰

○ 謝恩, 持平李墍, …… 濟州判官任弘亮, 禮曹佐郎金晳, 江西縣令朴銑.

❖ 숙종 6년(1680) 경신년 6월 11일(무진)

□ 제주판관(濟州判官) 임홍량(任弘亮)이 사은함

○ 지평 이돈(李墍),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임홍량(任弘亮)[121], 예조좌랑 김석(金晳), 강서현령 박선(朴銑)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임홍량, 이돈, 제주판관, 김석, 박선.

121) 임홍량(1634~1707): 본관 풍천(豊川). 자 사인(士寅). 호 창추(敞帚). 1662년(현종 3) 문과급제, 기천(基川)·명주(溟州) 군수 등 역임. 저서《창추유고(敞帚遺稿)》.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五日 壬辰

○ 吏批啓曰, 濟州牧使, 今日政, 當爲差出, 而文官中可擬之人乏少. 當以曾經侍從有聲望者備擬, 而此非堦梯之比, 臣曹不敢直爲啓請. 問議于大臣, 擬望, 何如? 傳曰, 允.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5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의망할 인사가 적으니 대신(大臣)들에게 물어서 의망(擬望)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오늘 정사(政事)에서 마땅히 차출해야 하나, 문관 중 의망할 만한 사람이 매우 적으니 마땅히 시종(侍從)을 역임하고 명성과 인망이 있는 사람을 의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차례대로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조에서 감히 곧바로 계청(啓請)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게 물어 의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비, 시종.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五日 壬辰

○ 有政. 吏批, 尹攀爲慶尙都事, 呂聖齊爲右參贊, 任弘望爲濟州牧使, …….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5일(임진)

□ 제주목사로 임홍망(任弘望)을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122]에 의하여 윤반(尹攀)을 경상도 도사로 삼고, 여성제(呂聖齊)를 우참찬으로 삼고, 임홍망(任弘望)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반, 여성제, 임홍망, 제주목사.

122)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六日 癸巳

○ 禁府都事柳瑞, 柳赫然圍籬事, 濟州地出去, 都事李籥, 吳挺緯移配事, 朔州地出去.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6일(계사)

□ 유서(柳瑞)가 유혁연(柳赫然)을 위리(圍籬)하러 제주로 나감

○ 의금부도사 유서(柳瑞)가 유혁연(柳赫然)을 위리(圍籬)하는 일 때문에 제주(濟州) 땅으로 나가고, 도사(都事) 이탁(李籥)이 오정위(吳挺緯)를 이배(移配)하는 일 때문에 삭주(朔州) 땅으로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유서, 유혁연, 위리, 이탁, 오정위.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八日 乙未

○ 吏曹啓曰, 濟州判官任弘亮, 與新除授本州牧使任弘望, 爲四寸兄弟, 法當相避. 外官相避, 例自本道啓聞, 然後差出其代, 而此則越海之地, 若待任弘望赴任後啓聞, 則當經數月, 而弘亮辭朝屬耳, 行必不遠, 宜速處置, 俾無官事久曠之弊. 濟州判官任弘亮, 改差, 何如? 傳曰, 允.【以上吏曹】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8일(을미)

□ 임홍량(任弘亮)은 임홍망(任弘望)과 상피(相避) 관계이므로 교체를 청하는 이조(吏曹)의 계

○ 이조에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임홍량(任弘亮)은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임홍망(任弘望)[125]과 사촌형제간이니, 상피(相避)하는 것이 법에 마땅합니다. 외관(外官)이 상피하는 것은 으레 본도(本道)에서 계문(啓聞)한 후에 후임을 차출해야 하나, 이곳은 바다 건너이므로 만약 임홍망이 부임하기를 기다렸다가 계문한다면 몇 개월이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홍량이 하직할 때 정성스럽게 들었고,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공무를 오래 비워두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제주판관 임홍량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이조의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임홍량, 임홍망, 상피, 제주목사, 제주판관.

---

125) 임홍망(1635~1715): 본관 풍천(豊川). 자 (德章). 호 죽실거사(竹室居士). 1666년(현종 7) 문과급제, 예조참의, 제주목사, 경주부윤, 도승지 등 역임. 저서 《죽실집(竹室集)》.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八日 乙未

○ 有政. 吏批, 朴泰尙爲承旨, …… 李世綱爲濟州牧使, …….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8일(을미)

□ 이세강(李世剛)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박태상(朴泰尙)을 승지로 삼고, 〈중략〉 이세강(李世剛)[123]을 제주목사(濟州牧使)[124]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강, 박태상, 제주목사.

---

123) 국사편찬위원회의 한자 원문은 '이세강(李世綱)'으로 잘못 쓰여 있어서 교열자가 '이세강(李世剛)'으로 바로 잡음.

12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자 원문 및 탈초본에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되어 있으나, 당시 이세강은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역임하였으므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十日 丁酉

○ 謝恩, 左副承旨李秬, …… 濟州判官李世剛, 部將李希泰.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10일(정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세강(李世剛) 등이 사은함

○ 좌부승지 이유(李秬),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세강(李世剛), 부장(部將) 이희태(李希泰)가 사은(謝恩)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강, 이유, 이희태.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十一日 戊戌

○ 謝恩, 副修撰朴泰遜, …… 濟州牧使任弘望, 栗峰察訪朴玉漢.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11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임홍망(任弘望) 등이 사은함

○ 부수찬 박태손(朴泰遜),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임홍망(任弘望), 율봉찰방(栗峰察訪) 박옥한(朴玉漢)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임홍망, 박태손, 박옥한, 제주목사.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十四日 辛丑

○ 司譯院, 以都提調意啓曰, 本院之定送漢學一員于黃海監營, 平安監·兵營【缺】漢學·倭學各一員于濟州·統營, 倭學一員于全羅左·右水營, 蓋慮其或有不時通話之事故也. 其在常時, 雖無服役之勞, 分差客土, 辛苦有倍. 所定官限, 近則一朞, 遠或三年, 其所廩料接待, 理宜加優, 而其中只有放單料, 不給使喚處, 以此, 人皆厭避, 逢差之後, 若投死地, 甚非朝家分遣舌官豫備邊事之意. 請令該曹, 取考各處從前會減之數, 更爲定式, 通同磨鍊, 從優計給, 俾無各處不齊之弊, 而今自各營, 直爲給料者, 亦令一體施行, 其他衣資·朔布·使喚等事, 竝依舊例題給, 稍加軫恤. 以此行〈會〉各營各邑, 何如? 傳曰, 允.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14일(신축)

□ 제주(濟州) 등에 보낸 역관을 좀더 진휼할 것을 청하는 사역원의 계

○ 사역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本院)에서 황해감영에 한학(漢學) 1원(員), 평안감영과 병영, 【빠짐】, 제주(濟州)와 통영에 한학·왜학(倭學) 각 1원, 전라좌수영과 우수영에 왜학 1원을 정해 보낸 것은 대체로 간혹 불시에 서로 소통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비록 복역하는 노고는 없다 하더라도, 객지에 나누어서 보내면 괴로움이 갑절이다 됩니다. 정해진 기한은 가까우면 1년, 멀면 간혹 3년이나 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요되는 늠료(廩料)나 접대를 이치상 더욱 우대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중 단지 풀어줄 때 단료(單料)만 주고 사환(使喚)하는 곳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꺼리며, 차출된 후에는 사지(死地)에 내던져진 것처럼 여기니, 조정에서 역관을 나눠 보내어 변방을 방비한다는 뜻에 매우 맞지 않습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처에 예전부터 회감(會減)[126]한 수를 취하여 살펴보고 다시 정식(定式)을 삼아, 함께 마련하고 풍족하게 헤아려 주어 각처가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 영(營)에서 직접 늠료를 지급하는 것을 한결같이 시행하게 하고, 그 밖의 의자(衣資)·삭포(朔布)·사환(使喚) 등의 일은 모두 구례(舊例)에 따라 제급(題給)하여 조금이라도 진휼을 더하고, 이것으로 각 영에

126) 회감(會減): 회계 장부인 회안(會案)에 기록된 재화를 공용(公用)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함.

행회(行會)[127]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한학, 왜학, 진휼, 늠료.

127) 행회(行會): 관아의 우두머리가 조정의 지시와 명령을 부하들에게 알리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여 정하기 위하여 모이던 일. 또는 그런 모임.

❖ 康熙 十九年 庚申 七月 十五日 壬寅

○ 巳時【庚申七月十五日】,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萬容曰, 本院以柳赫然事, 閱月爭執, 而尙不允從, 臣竊悶焉. 赫然, 以三朝宿將, 受恩最厚, 其人之反覆無狀, 國人之所共知. 至於締交朝貴, 聚會論議, 陰厚近宗, 結爲婚姻, 此古今武臣之至戒, 邦憲之大禁, 而赫然包藏禍心, 無所顧忌. 至於訓局大將, 非與於體府, 而與許積, 私相密議, 團束親兵於深峽之中, 軍器旗幟, 皆自京營備送, 犒饋之資, 操習之令, 皆出於赫然之手. 此則不但按驗明白, 渠亦不敢自辨, 而歸罪於積. 積與赫然, 便是一身, 更無可問之隱情, 而積旣賜死, 則渠安得獨逭於刑章乎? 今日大臣陳達, 雖有圍籬之命, 論其罪狀, 揆以邦憲, 斷無容貸之理. 請大靜圍籬安置罪人柳赫然, 亟正邦刑. 上曰, 勿煩. …….

❖ 숙종 6년(1680) 경신년 7월 15일(임인)

□ 홍만용(洪萬容) 등이 희정당에 입시하여 유혁연(柳赫然)에 대해 국법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건의함

○ 사시(巳時)【경신년 7월 15일】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하는 자리에 입시했을 때, 〈중략〉 홍만용(洪萬容)이 말하기를, "본원(本院)이 유혁연(柳赫然)의 일로 몇 개월간 다퉜는데도 여전히 윤종(允從)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臣)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혁연(赫然)은 세 임금을 모신 숙장(宿將)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후했는데도, 그 사람이 도리어 행실을 함부로 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조정의 권귀와 결탁하여 함께 모여 의논하며, 종친을 비호하고 편들어 혼인을 맺었으니, 이는 고금(古今)의 무신들이 지극히 경계하는 것이고 나라의 법으로 크게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연(赫然)은 화를 꾸미는 데에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훈국대장(訓局大將)이 되어 체부(體府)에서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허적(許積)과 함께 사사로의 몰래 의논하여, 깊은 산골짜기에 친병(親兵)을 숨겨놓고 군기(軍器)와 기치(旗幟)를 모두 경영(京營)에서 마련하여 보냈으며, 군사를 먹일 비용과 훈련시키는 명령이 모두 혁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비단 조사하여 명백히 밝혔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감히 스스로 변명할 수 없으므로 죄를 적(積)에게 돌렸습니다. 적과 혁연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숨긴 정황을 다시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積)은 이미 사사(賜死) 되었으니 그에게 어찌 홀로 형장(刑章)을 너그러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신이 진달한 내용에 대해 비록 위리(圍籬)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나, 그 죄상을 논하자면 국법에 비추어 결코 용서할 이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大靜)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유혁연(柳赫然)에게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유혁연, 대정, 위리안치, 허적.

❖ 康熙 十九年 庚申 八月 八日 甲子

○ 下直, 南原府使趙渭叟, 濟州判官李世强, 麻田郡守李箕敍, 靑巖察訪黃淑龜.

❖ 숙종 6년(1680) 경신년 8월 8일(갑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세강(李世剛) 등이 하직함

○ 남원부사 조위수(趙渭叟),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세강(李世剛), 마전군수(麻田郡守) 이기서(李箕敍), 청암찰방(靑巖察訪) 황숙귀(黃淑龜)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강, 조위수, 이기서, 황숙귀, 제주판관.

❖ 康熙 十九年 庚申 閏 八月 二十二日 戊申

○ 禁府啓曰, 前慶尙兵使元相, 前統制使尹天賚等, 拿問後定罪事, 傳旨啓下矣. 尹天賚, 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元相, 時在濟州牧, 依例府書吏, 發遣拿來, 何如? 傳曰, 允.

❖ 숙종 6년(1680) 경신년 윤 8월 22일(무신)

□ 서리(書吏)를 파견하여 원상(元相)을 붙잡아오도록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경상도 병마절도사 원상(元相), 전 통제사 윤천뢰(尹天賚) 등을 붙잡아 심문하고 정죄(定罪)하는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계하(啓下)[128] 하였습니다. 윤천뢰는 지금 본부(本府)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즉시 잡아 가두고, 원상은 지금 제주목(濟州牧)에 있으니 전례(前例)대로 본부 서리(書吏)를 보내 붙잡아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원상, 윤천뢰, 제주목.

128) 계하(啓下): 상소문이나 일반 안건을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이 본 뒤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친람(親覽)과 결재(決裁)를 마쳤음을 표시하고 해당 부서로 내려 보내는 것.

❖ 康熙 十九年 庚申 九月 十三日 戊辰

○ 崔逸, 以兵曹言啓曰, 濟州武士金碭等八人呈狀內, 本州御史試才時入格直赴殿試事, 承傳行會, 故旣已上來, 許赴於今此別試殿試事, 呈狀, 而凡直赴殿試者, 例付式年, 增別試則非所當付, 而在前如此之類, 以其越海之故, 曾有特付別試之時, 渠輩必以此爲例, 有此來訴, 係是絶島遠人, 非如在京在近鄕者, 有難退却, 以致落莫,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特爲許赴於今番別試, 以慰遠人之心.

❖ 숙종 6년(1680) 경신년 9월 13일(무진)

□ 제주(濟州)의 무사(武士) 김탕(金碭) 등이 별시(別試)에 직부(直赴)하게 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을 어찌해야 할 지 묻는 병조의 계

○ 최일(崔逸)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무사(武士) 김탕(金碭) 등 8인이 올린 소장(訴狀)에, '본주(本州)의 어사가 시재(試才)할 때, 입격하면 직부전시(直赴殿試)한다고 전교를 받들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왔으니, 이번 별시(別試) 전시(殿試)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부전시하는 자는 관례대로 식년시에 부치고, 증광별시에는 마땅히 응시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류들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일찍이 특별히 별시에 응시하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필시 이런 전례 때문에 이처럼 와서 소장을 올린 것입니다. 절도(絶島)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서울이나 가까운 지방에 있는 자와는 달라 거절하고 물리쳐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별시에 특별히 응시를 허락하여 먼 지방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탕, 직부전시, 최일, 별시.

❖ 康熙 十九年 庚申 九月 十三日 戊辰

○ 又以禮曹言啓曰, 濟州御史試才時, 文科入格直赴殿試儒生金碾·吳湜·鄭希良等, 以願赴今番別試殿試事, 呈狀, 以冀轉啓, 而自前直赴殿試之人, 必赴於式年殿試, 非有特命, 則本曹不敢啓請, 據例退却矣. 伏見兵曹啓辭之批, 特爲許赴於今番別試, 以慰遠人之心事, 傳敎矣. 濟州文科直赴儒生等, 似不可異同, 何以爲之? 敢稟. 傳曰, 一體許赴, 可也.

❖ 숙종 6년(1680) 경신년 9월 13일(무진)

□ 문과에서 직부전시(直赴殿試)된 제주유생(濟州儒生) 김연(金碾) 등이 별시(別試)에 응시하게 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을 어찌해야 할 지 묻는 예조의 계

○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시재(試才)할 때 문과에 입격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된 유생 김연(金碾)·오식(吳湜)·정희량(鄭希良) 등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 별시전시(別試殿試)에 응시하게 해달라고 소장(訴狀)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하는 바에 따라 전달하여 아뢰자면, 예전부터 직부전시된 사람은 반드시 식년전시(式年殿試)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명(特命)이 없으면 본조(本曹)가 감히 계청(啓請)할 수 없고, 하더라도 전례에 의거해 물리치고 거절했습니다. 삼가 병조의 계사(啓辭)에 하비(下批)하신 것을 살펴보니, 이번 별시에 응시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여 먼 지방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전교하였습니다. 제주의 문과에 직부된 유생들도 다르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똑같이 응시를 허락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연, 오식, 정희량, 식년전시, 별시전시.

❖ 康熙 十九年 庚申 十月 十五日 庚子

○ 判府事金壽興箚子. 大概, 敢陳區區之懷, 以備裁處. 入啓.【以上朝報】答曰, 省箚具悉卿懇. 近因災異, 有此量移之擧矣. 箚中所論, 實出於深遠之意, 當令該府, 仍配濟州焉.

❖ 숙종 6년(1680) 경신년 10월 15일(경자)

□ 소회(所懷)를 진달한 김수흥(金壽興)의 차자

○ 판부사 김수흥(金壽興)이 차자(箚子)를 올려 대강의 구구한 소회를 감히 진달하고 재제(裁制)하여 처리해달라고 아뢰었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경(卿)의 뜻을 다 알았다. 요사이 재이(災異)로 인해 이처럼 양이(量移)[129]를 시행하였다. 차자에서 말한 내용은 진실로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해당 부(府)로 하여금 그대로 제주(濟州)에 정배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흥, 양이, 정배.

129) 양이(量移): 섬이나 변방으로 멀리 유배되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로 배소(配所)를 옮기는 것.

❖ 康熙 十九年 庚申 十二月 二日 丁亥

○ 禮曹啓曰, 月令薦新之物, 殯殿, 竝爲封進事, 知委各道矣. 十月令, 濟州所封宗廟薦新, 及各殿別進上唐金橘, 代名[校][以]金橘及柑子上送, 而乃於十月十九日封進, 故殯殿薦新, 則未及磨鍊矣. 以當殿所封進上, 仍爲薦進於殯殿, 而明日宗廟薦新, 一時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禮曹】

❖ 숙종 6년(1680) 경신년 12월 2일(정해)

□ 빈전(殯殿)의 월령천신(月令薦新)과 모레 종묘천신(宗廟薦新)을 일시에 거행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월령(月令)으로 천신(薦新)하는 물품을 빈전(殯殿)에도 함께 봉진하도록 각 도에 지시하였습니다. 10월령으로 제주(濟州)에서 봉진하여 종묘에 천신할 것과 각 전(殿)에 따로 진상할 당금귤(唐金橘)은 금귤(金橘) 및 감자(柑子)로 대신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봉진이므로 빈전에 천신할 것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당전(當殿)에 봉진하여 올려보낼 것으로 빈전에 올려 보내고, 내일 종묘의 천신을 일시에 거행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의 기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당금귤, 금귤, 감자, 월령.

1681年

❖ 康熙 二十年 辛酉 一月 十二日 丙寅

○ 禮曹啓曰, 月令薦新之物, 殯殿竝爲封進事, 知委各道矣. 卽者濟州牧使封進薦新十一月令唐柚子, 則宗廟·殯殿竝爲封進, 十二月令乳柑·洞庭橘, 則只封於宗廟, 當於明日薦進, 而殯殿則不爲封進. 依前例以當殿所封進上乳柑·洞庭橘, 亦於明日, 仍朝奠兼薦, 而考其膳狀日字, 則唐柚子中十一月十七日成貼, 乳柑·洞庭橘十一月初六日成貼, 當爲先封者在後, 當爲後封者在先, 海外之事, 雖與陸地不同, 顚錯之失, 不可置而不問, 當該牧使推考, 何如? 傳曰, 依啓. 絶海之事, 與陸地有異, 勿推可也.【禮曹謄錄】

❖ 숙종 7년(1681) 신유년 1월 12일(병인)

□ 월령(月令)으로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등의 진상 날짜와 선장(膳狀)의 날짜를 뒤바꿔 쓴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월령(月令)으로 천신(薦新)하는 물품을 빈전(殯殿)에도 함께 봉진하는 일을 각도에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여 천신(薦新)하는 11월령 당유자(唐柚子)는 종묘와 빈전에 모두 봉진하고, 12월령의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은 종묘에 봉진할 것은 내일 천진(薦進)하고, 빈전에는 봉진하지 않겠습니다. 전례(前例)에 따라 당전(當殿)에 봉진할 유감·동정귤도 내일 그대로 조전(朝奠) 때 겸하여 천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膳狀)의 날짜를 보니, 당유자는 11월 17일로 성첩(成貼)되어 있고 유감·동정귤은 11월 초6일로 성첩되어 있어, 마땅히 먼저 진봉하는 것은 뒤에 있고 뒤에 진봉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해외의 일이 비록 육지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앞뒤를 바꾼 잘못은 그대로 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바와 같이 멀리 떨어진 바다의 일은 육지와는 다르니 추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유감, 동정귤, 당유자 .

❖ 康熙 二十年 辛酉 三月 二十一日 甲戌

○ 吏曹啓目, 粘連. 觀此公淸道暗行御史金斗明書啓, 則以爲 …… 韓山郡守李夢錫段, 老於爲吏, 轉成滑手, 政無可觀, 事多鄙瑣, 受制妓妾, 衙門成市爲白乎旀, …… 又以漁夫八結, 除其柴草雜役, 作爲行用井間, 收捧生魚, 而不時誅求, 鞭扑隨之, 怨謗之聲, 在在譁然, 其違法侵民, 殊甚可駭. 濟州往來船收稅漁夫井間, 黃蜜正鐵徵贖文書, 竝爲封進是如爲白有臥乎所 …… 李夢錫則雖無大段犯法之事, 而種種鄙瑣, 侵暴無告之狀, 亦甚可惡旀不喩, 文書, 亦旣現捉, 竝只爲先罷黜, 其罪狀乙良, 令攸司稟處爲白乎旀. …….

❖ 숙종 7년(1681) 신유년 3월 21일(갑술)

□ 제주(濟州)를 왕래하는 배로부터 수세(收稅)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 한산군수 이몽석(李夢錫) 등에 대한 이조의 계목

○ 이조의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점련(粘連)한 이번 공청도(公淸道) 암행어사 김두명(金斗明)의 서계(書啓)를 보니 그 내용에 이르기를, 〈중략〉 한산군수(韓山郡守) 이몽석(李夢錫)은 향리(鄕吏)가 된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돈을 물 쓰듯 하며, 정사는 볼 만한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비루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기첩(妓妾)에게도 놀아나 아문(衙門)이 북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중략〉 또한 8결(結) 어부(漁夫)로 하여금 그 시초(柴草)와 잡역을 면제해주고 정간(井間)을 만들어서 생어(生魚)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때도 없이 거두어들이고 수시로 매질을 하여 원망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곳곳에 파다했습니다. 그가 법을 어기고 백성을 침학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제주(濟州)를 왕래하는 배로부터 수세(收稅)한 어부의 정간과, 황밀(黃蜜)·정철(正鐵)을 대신하여 속전(贖錢)을 징수한 문서를 모두 봉진했다 하온 바 〈중략〉 이몽석은 비록 대단한 범법을 저지른 일은 없지만, 종종 비루하고 보잘 것 없는 일로 침학한 정황이 또한 매우 사악할 뿐 아니라 문서 또한 이미 확보했으니 모두 우선 파출(罷黜)해야 합니다. 그 죄상은 관청으로 하여금 품달하여 처리하게 할 일이오며,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두명, 이몽석, 정간.

❖ 康熙 二十年 辛酉 四月 一日 甲申

○ 宋昌,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馬種, 近年以來, 駑劣倍甚, 逐歲進貢之馬, 漸不如前, 事極寒心. 得接山馬監牧官金大振呈狀, 則山馬屯內, 亦多惡種, 孳息馬品, 皆是駑駘雜色, 其他各屯, 多有急時變通之事云. 本州, 遠在海外, 馬政之虛疏, 誠如金大振之狀, 則占馬別監, 令該曹, 卽速擇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7년(1681) 신유년 4월 1일(갑신)

□ 제주(濟州)의 마종(馬種)이 나빠지므로 점마별감(占馬別監)을 뽑아 보내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송창(宋昌)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마종(馬種)이 요 몇 년 사이에 노둔한 것이 갑절이나 심해졌습니다. 매년 진공(進貢)하는 말이 점차 예전 같지 않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대진(金大振)이 정장(呈狀)한 것을 받아보니, 산마가 주둔한 곳에도 나쁜 마종이 많고 번식한 품종은 모두 느리고 둔한 잡종이며 그 외의 각 주둔처에도 급할 때 변통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는 멀리 해외에 있어 마정(馬政)의 허술함이 진실로 김대진이 올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 해당 관청에서 점마별감(占馬別監)을 지금 조속히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송창, 마종, 점마별감, 김대진.

❖ 康熙 二十年 辛酉 四月 十日 癸巳

○ 疏決入侍時,【缺】, 又讀李舜元文案【缺半行】, 時所捧木疋, 雖不知入己與否, 欲防後患,【缺半行】, 罪亦非犯贓之類, 似當參酌定罪矣. 敏敍曰,【缺五六字】無處置, 則亦是犯贓之罪也. 上曰, 削職缺四五字主, 聖齊曰, 此人之罪, 不可不痛治矣. 壽恒曰, 此人之情, 猶□重耳. 上曰, 姑待查啓後, 稟處. …… 正英, 讀江原道定配秩, 徒年罪人奴天伊·李成華等, 仍. 方小先·方小天等, 放. 婢永正·李義俊等, 亦放. 婢淑只·奴得民·李萬衡·婢玉春·婢愛禮·趙相杰·南鉦等, 竝仍. 充軍罪人柳碩棵·申命羲·鄭應先等, 竝放. 金海龍·元聖明·金世萬等, 亦放. 不限年罪人張元男·金廷丹·金世玉等, 竝減等, 移配本道. 又讀濟州三邑定配秩, 全家罪人金正吉, 仍. 減死罪人婢莫今, 仍. 徒年罪人徐一元, 放. 全家罪人李之善, 移配. 減死罪人奴亂同·朴義廷, 竝仍. 疏決姑畢後, 正英等退伏. …….

❖ 숙종 7년(1681) 신유년 4월 10일(계사)

□ 소결(疏決)에 입시하여 제주(濟州) 3개읍의 정배질(定配秩) 등을 읽고 죄수들의 처리를 논의함

○ 소결(疏決)[130] 때문에 입시(入侍)했을 때【빠짐】, 또 이순원(李舜元)의 문안(文案)을 읽었는데,【반행이 빠짐】 때 거둔 목면을 비록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후환을 막으려고【반행이 빠짐】, 죄가 또한 범장(犯贓)에 속할 종류는 아니니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민서(李敏敍)[131]가 말하기를, "【5, 6자가 빠짐】 처치한 것이 없으니 이 또한 범장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4, 5자가 빠짐】 주(主)를 삭직하라."라고 하였다.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정(情)이 오히려 □중(□重)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조사해 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품처(稟處)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정영(李正英)이 강원도 정배질(定配秩)을 읽었다. 도년(徒年)에 처해진 죄인 노(奴) 천이(天伊)·이성화(李成華) 등은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방소선(方小先)·방소천(方小天) 등은 풀어주라고 하

130) 소결(疏決):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함.

131) 이민서(1633~1688): 본관 전주(全州). 자 이중(彛仲). 호 서하(西河). 1652년(효종 3) 문과급제. 지평, 교리, 호조참의, 광주목사, 이조판서 등 역임. 저서《서하집(西河集)》.

였다. 비(婢) 영정(永正)·이의준(李義俊) 등도 또한 풀어주라고 하였다. 비 숙지(淑只)·노 득민(得民)·이만형(李萬衡)·비 옥춘(玉春)·비 애례(愛禮)·조상걸(趙相杰)·남옥(南鈺) 등은 모두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충군(充軍)한 죄인 유석과(柳碩棵)·신명희(申命羲)·정응선(鄭應先) 등은 모두 풀어주라고 하였다. 김해룡(金海龍)·원성명(元聖明)·김세만(金世萬) 등도 풀어주라고 하였다. 불한년(不限年) 죄인 장원남(張元男)·김정단(金廷丹)·김세옥(金世玉) 등은 모두 등급을 낮춰주고 본도로 옮겨 유배하라고 하였다. 또 제주(濟州) 3읍의 정배질(定配秩)을 읽었다. 전가죄인(全家罪人) 김정길(金正吉)은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고, 감사죄인(減死罪人) 비(婢) 막금(莫今)도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도년(徒年) 죄인 서일원(徐一元)은 풀어주라고 하였다. 전가죄인 이지선(李之善)은 옮겨 유배하게 했고, 감사죄인 노 난동(亂同)·박의정(朴義廷)은 모두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소결(疏決)을 우선 마친 후 정영(正英) 등이 물러났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소결, 이순원, 이정영, 정배질.

❖ 康熙 二十年 辛酉 四月 十三日 丙申

○ 以崔容之爲濟州點馬, 朴進益爲羽林衛將, 鄭東美爲武兼, 閔碩才爲加里浦僉使, …….

❖ 숙종 7년(1681) 신유년 4월 13일(병신)

□ 최용지(崔容之)를 제주점마(濟州點馬)에 제수함

○ 최용지(崔容之)를 제주점마(濟州點馬)로 삼고, 박진익(朴進益)을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삼았다. 정동미(鄭東美)를 무겸(武兼)으로 삼고, 민석재(閔碩才)를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최용지, 제주점마, 박진익, 정동미, 민석재.

❖ 康熙 二十年 辛酉 五月 二十三日 乙亥

○ 引見時, 領議政金壽恒所啓, 江華留守李選上疏, 別單條陳變通之策, 此非循例回啓之事, 故欲爲稟定於榻前矣. …… 其一款, 卽令濟州等三官, 間年精造交子弓一百張, 以送本府事也. 濟州弓制, 最善, 且多弓匠牛角, 使之造送, 固無不可, 而間年定式, 則亦似難便矣. 上曰, 間三年使之造送, 可也. …….

❖ 숙종 7년(1681) 신유년 5월 23일(을해)

□ 인견(引見)에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등지에서 교자궁(交子弓)을 만들어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할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이 상소하여 별단(別單)으로 조목조목 진술한 변통지책(變通之策)은 관례대로 회계(回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전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1항목은 제주(濟州) 등 3개 관(官)으로 하여금 해를 걸러 교자궁(交子弓) 1백 장(張)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본부(本府)에 보내게 한 것입니다. 제주는 궁제(弓制)가 가장 좋고 궁장(弓匠)과 우각(牛角)도 또한 많으니, 만들어 보내게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를 걸러 하도록 식을 정하면 또한 편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3년 걸러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이선, 교자궁.

❖ 康熙 二十年 辛酉 六月 三日 甲申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領敦寧府事金萬基所啓, 濟州年例, 上納於訓局, 加時木七百條, 槍柄木四百條內, 自濟州直爲輸納者, 只是三百條, 其餘八百條, 則自湖南右水營及公淸水營, 次次替運上納矣. 頃自備局, 因前牧使崔寬之言, 以本島民役甚重, 每年運納加時木於訓局者, 至於一千七百條, 沿海陸邑之上納此木者, 亦非不多, 則不必更爲貽弊於絶島, 令訓局裁量事勢, 稟旨革罷之意, 回啓允下, 自訓局當爲啓稟定奪, 而今適入侍, 敢此仰達矣. 蓋加時木之每年例納者, 濟州及全羅左右水營, 竝三處, 而所納之數, 各一千一百條也. 濟州所納, 元非一千七百條, 而其中木品, 濟州最好, 本局所用, 如有餘儲, 則外方造銃處, 波及亦多. 其爲軍門之用, 甚重且要, 而兩水營所納條數, 旣與濟州一般, 亦難加定於兩水營, 似不可猝然革罷矣. 上曰, 係是軍門所用, 似難革罷矣. 領議政金壽恒曰, 濟州, 自是海外絶島, 民窮役重, 從前朝家, 例樣優恤, 凡係上納之物, 多所減除, 而至於加時木, 備局, 未詳軍門需用之多少, 請令都監, 裁量稟處矣. 今聞上納之數, 只是一千一百條, 而木品, 比他處最好, 軍門所用, 亦甚要緊, 則仍舊勿減, 恐無妨矣. 上曰, 然則仍存勿罷[校][減], 可也.

❖ 숙종 7년(1681) 신유년 6월 3일(갑신)

□ 인견(引見)에 입시하여 김만기(金萬基) 등이 제주(濟州)에서 훈련도감에 상납하는 가시목(加時木) 등을 혁파하거나 줄여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 했을 때, 〈중략〉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해마다 훈련도감에 상납한 가시목(加時木) 7백 조(條), 창병목(槍柄木) 4백조 중 제주에서 직접 실어다 바친 것은 3백 조 뿐입니다. 그 외 8백 조는 전라우수영 및 공청(公淸) 수영이 차례차례 교대로 운반해서 상납했습니다. 지난번 비변사에서 전 목사 최관(崔寬)이 '본 섬의 민역(民役)이 매우 중하니, 매년 훈련도감에 운반해 바치는 가시목이 1천 7백 조에 이릅니다. 연해(沿海)의 육지 고을에서 이 나무를 상납하는 자 또한 적지 않으니, 절도(絶島)에 다시 폐단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다.' 라고 한 말 때문에,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일의 형세를 헤아리게 해서 혁파하겠다는 뜻을 품지(稟旨)하시고, 회계(回啓)를 통해 윤허하셨습니다. 훈련도감에서 마땅히 아뢰어서 재가를 받았사오니, 지금 마침 입시하였기에 감히 이와 같이 우러

러 아룁니다. 대개 가시목을 매년 으레 납부하는 것은, 제주 및 전라좌수영과 우수영 모두 세 곳이고, 바치는 수는 각각 1천 1백 조(條)입니다. 제주에서 바친 것은 원래 1천 7백조가 아니고, 그 중 나무의 품질이 제주가 가장 좋습니다. 본국(本局)에서 쓰고 만일 남아서 보관해 둔 것이 있으면 외방(外方)에 있는 총(銃) 만드는 곳에 보급한 것도 많으니, 군문(軍門)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수영(水營)에서 바치는 조수(條數)가 제주와 같으니, 두 수영에 추가하여 정하기 어렵고 갑자기 혁파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문이 쓸 것에 관계되니 혁파하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김수항이 말하기를, "제주는 바다 건너에 있는 절도(絶島)로, 백성이 곤궁하고 역(役)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정에서 하던 것을 좇아 으레 넉넉하게 구휼해왔고, 모든 상납 물품에 대해서는 줄여주거나 빼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목은 군문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를 상세히 알지 못하니, 청컨대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들으니 상납하는 수는 단지 1천 1백 조(條)이고 나무의 품질도 다른 곳에 비해 가장 좋으며, 군문이 필요로 하는 것도 매우 요긴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전대로 하고 감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로 남겨두고 혁파하거나 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만기, 가시목, 창병목, 훈련도감.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一日 壬子

○ 大司憲洪萬容, 掌令李三錫, 持平金鎭龜啓曰, 罪人姜萬鐵, 凶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 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戒,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持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依律處斷. …… 答曰, 不允. 末端事, 風聞未必盡信, 更加詳察處之.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일(임자)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132]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한 번이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132) 허견(?~1680): 본관 양천(陽川). 허적(許積)의 서자. 교서관(校書館) 정자 역임. 역모죄로 군기시 앞에서 능지처참됨.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의 진계(陳戒)로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지키고 보호해서는 아니되니, 청컨대 유배보낸 죄인 강만철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풍문을 다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二日 癸丑

○ 大司憲洪萬容, 掌令李三錫, 持平金鎭龜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後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 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昔在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2일(계축)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

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三日 甲寅

○ 大司憲洪萬容, 掌令李三錫, 持平金鎭龜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以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 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3일(갑인)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

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四日 乙卯

○ 大司憲洪萬容, 掌令崔商翼·李三錫, 持平金鎭龜·申暈啓曰, 罪人姜萬鐵, 凶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朝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答曰, 亟停勿煩.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4일(을묘)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최상익(崔商翼)·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신엽(申曄)이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빨리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五日 丙辰

○ 大司憲洪萬容, 掌令崔商翼·李三錫, 持平金鎭龜·申暈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答曰, 勿煩.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5일(병진)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최상익(崔商翼)·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신엽(申曄)이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

(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빨리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六日 丁巳

○ 大司憲洪萬容, 掌令崔商翼·李三錫, 持平金鎭龜·申暈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6일(정사)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홍만용(洪萬容) 등의 계

○ 대사헌 홍만용(洪萬容), 장령 최상익(崔商翼)·이삼석(李三錫), 지평 김진귀(金鎭龜)·신엽(申曄)이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 등은 감히 전하께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

(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하소서."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홍만용,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九日 庚申

○ 午時, 上御時敏堂. 領議政金壽恒, 左議政閔鼎重請對引見時, 同副承旨李濡, 假注書許墀, 記事官李畬·徐宗泰入侍. …… 壽恒曰, 今六月初五日大風, 不但京中最甚, 連見外方狀啓, 則風災慘酷, 近古無比, 而其中江原之嶺東, 尤甚, 慶尙道, 則至如黃腸木·船材木, 折落者甚多, 禾穀之傷損, 不須爲言, 而凡諸災異之中, 風災之爲變, 最急云, 此極可慮也. 古云千里不同風, 而以濟州之漂倭, 全羅之漂漢, 見之, 其所漂風, 俱在一時, 以此推之, 今番之風, 八路皆然矣. 上曰, 見諸道狀啓, 皆同然矣. ……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9일(경신)

□ 시민당(時敏堂)에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풍재(風災)와 표류인(漂流人)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납시어 영의정 김수항(金壽恒)[133],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의 청대(請對)로 인견(引見)할 때, 동부승지 이유(李濡), 가주서(假注書) 허지(許墀), 기사관(記事官) 이여(李畬)·서종태(徐宗泰)가 입시(入侍)하였다. 〈중략〉 수항(壽恒)이 아뢰기를, "금년 6월 초5일 대풍(大風)은 비단 서울에 가장 심하게 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린 장계(狀啓)를 연달아 보니 풍재(風災)가 참혹했던 것이 근고(近古)에 비교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 중 강원도의 영동(嶺東)이 더욱 심하며, 경상도는 황장목(黃腸木)·선재목(船材木)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부러져 떨어진 것이 많았고 화곡(禾穀)이 손상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러 재이(災異) 중에 풍재(風災)가 일으킨 변고가 가장 심하다 하니, 이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천리 내외로 같은 바람이 불 수 없다.'고 했으나, 제주(濟州)에 표류한 왜인(倭人)과 전라(全羅)에 표류한 한인(漢人)을 보니 바람에 표류한 일이 모두 일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이번 바람은 팔도가 모두 같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도(道)의 장계를 보니 모두 그러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민정중, 이유, 허지, 이여, 서종태, 풍재.

---

133) 김수항(1629~1689): 본관 안동(安東). 자 구지(久之). 호 문곡(文谷). 조부 김상헌(金尙憲), 1651년(효종 2) 문과급제. 판서, 영의정 등 역임. 기사환국 이후 남인에게 사사됨. 현종 묘정 배향. 저서 《문곡집(文谷集)》. 시호 문충(文忠).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一日 壬戌

○ 大司憲南二星,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 凶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敎,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其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1일(임술)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는 것입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어서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신(大臣)

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二日 癸亥

○ 大司憲南二星, 掌令申懷,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教,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答曰, 亟停勿煩.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2일(계해)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장령 신양(申懹),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려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자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어서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신양,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三日 甲子

○ 大司憲南二星, 掌令申懹,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以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教,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答曰, 毋庸堅執.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3일(갑자)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장령 신양(申懹),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려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자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신양,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四日 乙丑

○ 大司憲南二星, 掌令申懹,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 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教,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教,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4일(을축)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장령 신양(申懹),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려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자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신양,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八日 己巳

○ 大司憲南二星, 掌令申懹,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兇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爲教,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 皆曰可殺, 則臣等, 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敎,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 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此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決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8일(기사)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장령 신양(申懹),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려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자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조속히 명을 내리소서.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신양,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十九日 庚午

○ 大司憲南二星, 掌令申懹, 持平金萬埰啓曰, 罪人姜萬鐵凶逆之狀, 無異於賊堅, 上變之功, 又下於元老, 賊堅·元老, 俱已伏法, 而萬鐵, 獨保首領, 古今失刑, 未有若此之大者也. 臣等, 竊聞殿下, 曾於筵臣之請, 以不可失信, 爲教, 此則有不然者, 凡人主之刑人殺人, 一循國人公共之論, 而今此萬鐵之罪, 國人皆曰可殺, 則臣意竊恐殿下, 不可以一時減死之教, 終廢國人公共之論也. 且法者, 祖宗之法也, 殿下, 尤不可以自己好生之心, 輕改祖宗討逆之典也. 在昔宣廟時, 嶺南逆賊吉云節, 潛入濟州, 謀爲不軌, 適有發覺之端, 先自上變之故, 宣廟, 命盡誅同黨, 而云節, 則特令貸死, 旋因大臣陳達, 克正王法, 此豈非今日殿下之所當法者乎? 殿下於此, 不可更爲留難, 請發配罪人姜萬鐵, 亟命依律處斷.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19일(경오)

□ 제주(濟州)에 잠입했던 역적 길운절(吉云節)의 예를 들면서 역적 강만철(姜萬鐵)을 의율처단(依律處斷)하라고 청하는 남이성(南二星) 등의 계

○ 대사헌 남이성(南二星), 장령 신양(申懹), 지평 김만채(金萬埰)가 아뢰기를, "죄인 강만철(姜萬鐵)의 흉역(凶逆)한 죄상은 역적 허견(許堅)과 다를 게 없으며, 상변(上變)하여 고한 공로가 또한 정원로(鄭元老)에 버금갑니다. 적도(賊徒)인 견(堅)과 원로(元老)가 모두 이미 법에 따라 처형되었는데 만철(萬鐵)이 혼자서 수령(首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큰 실형(失刑)은 없었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청에 대해 신의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전교를 내리셨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국인(國人)의 공적인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철의 죄는 국인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사형에서 감하는 전교를 내려 끝내 국인의 공적인 논의를 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조종이 역적을 토벌해온 법을 고쳐서는 더욱 안됩니다. 옛날 선조(宣祖) 때 영남의 역적 길운절(吉云節)이 제주(濟州)에 잠입하여 불궤(不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각될 단서가 있자 먼저 위에 고변했으므로, 선조(宣祖)가 그 동당(同黨)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으나 운절(云節)만은 특별히 사형에서 사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곧 대신(大臣)이 진달하여 왕법을 바로잡았으니, 어찌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에 다시 유난(留難)해서는 아니 되니, 청컨대 유배 보낸 죄인 강만철을 속히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조속히 명을 내리소서.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만철, 길운절, 허견, 정원로, 남이성, 신양, 김만채.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二十二日 癸酉

○ 朴純,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六月朔進上搥鰒·長引鰒, 當日來到, 兩大妃殿·大殿所封, 間有色變, 推問陪持人, 則以爲行到羅州地, 果有水沈之事, 故受出長城文狀以來云, 取見長城府牒報, 則羅州刷馬從人, 中路沈水之後, 潛爲逃走, 以致色變云云, 俱由論報, 果如所報, 則羅州刷馬從人所爲, 殊極痛駭, 令本道明査治罪, 羅州牧使, 亦不無不能檢飭之失, 推考, 濟州陪持人, 不謹護來之罪, 亦不可全然不治, 自本院治罪, 何如? 傳曰, 依啓. 陪持人, 勿爲治罪.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22일(계유)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추복(搥鰒) 등에 변색된 것이 있으므로 배지인(陪持人) 등을 치죄(治罪)하기를 청하는 사옹원(司饔院)의 계

○ 박순(朴純)이 사옹원(司饔院) 관원으로서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6월 초하루에 진상(進上)한 추복(搥鰒)·장인복(長引鰒)이 당일 도착했는데, 두 대비전(大妃殿)과 대전(大殿)에 봉진한 것이 간혹 변색된 것이 있습니다. 배지인(陪持人)[134]을 추문(推問)하니 행차가 나주(羅州) 땅에 도착하여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장성(長城)에서 문장(文狀)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장성부(長城府) 첩보(牒報)를 받아보니, 나주의 쇄마종인(刷馬從人)이 중간에 물에 빠진 후 몰래 도주했으므로 색이 변했다고 사유를 갖추어 논보(論報)했습니다. 과연 논보한 바와 같다면, 나주의 쇄마종인이 한 일은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우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명백히 조사하여 치죄(治罪)해야 합니다. 나주목사(羅州牧使) 역시 검칙(檢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니 추고(推考)하십시오. 제주의 배지인은 진상품을 보호하고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죄를 또한 전혀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 본원(本院)이 치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배지인은 치죄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박순, 추복, 장인복, 사옹원, 배지인, 쇄마종인.

---

134) 배지인(陪持人): 지방관아의 진상(進上)·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二十三日 甲戌

○ 巳時, 上御進修堂.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左議政閔鼎重, 兼吏曹判書金錫胄, 行禮曹判書呂聖齊, …… 入侍. …… 錫胄曰, 旌義·大靜兩邑守令, 例以風汎之故, 瓜滿前, 先五朔而差出新官者, 乃是前規也. 卽今旌義縣監, 則瓜滿, 在十月, 大靜縣監, 則瓜滿, 在十一月, 故兩邑從馬, 俱已上來, 趁速差送新官之意, 敢達. 上曰, 後日政, 兩邑守令, 竝爲差出, 可也.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23일(갑술)

□ 김석주(金錫胄) 등이 정의현감(旌義縣監)과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임기 만료 전에 신임 수령을 차출해 보낼 것을 건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납시어 대신·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할 때,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겸이조판서(兼吏曹判書) 김석주(金錫胄),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 〈중략〉가 입시(入侍)하였다. 〈중략〉 김석주[135]가 말하기를,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고을의 수령은 예전부터 바람과 조수(潮水)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5개월 먼저 신임 수령을 차출하는 것이 전부터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지금 정의현감(旌義縣監)은 임기 만료가 10월이고, 대정현감(大靜縣監)은 임기 만료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고을의 종마(從馬)가 모두 이미 올라왔으니, 빨리 신임 수령을 뽑아 보내라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後日) 정사(政事)에서 두 고을 수령을 함께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민정중, 김석주, 정의현감, 대정현감.

---

135) 김석주(1634~1684): 본관 청풍(淸風). 자 사백(斯百). 호 식암(息庵). 조부 김육(金堉), 부친 김좌명(金佐明). 1662년(현종 3) 문과급제. 좌부승지, 도승지, 우의정 등 역임. 숙종 묘정 배향. 저서 《해동사부(海東辭賦)》. 시호 문충(文忠).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二十四日 乙亥

○ 下直, 濟州敎授牟世蕃[校][南世蕃], 泛漢萬戶鄭守.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24일(을해)

□ 제주교수(濟州敎授) 남세번(南世蕃) 등이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남세번(南世蕃), 범한만호(泛漢萬戶) 정수(鄭守)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남세번, 정수.

❖ 康熙 二十年 辛酉 七月 二十八日 己卯

○ 以兪櫺爲右副承旨, 趙亨期爲慶尙都事, 李正英兼判義禁, 趙世彙爲寧越郡守, 金應運爲旌義縣監, 鄭昌會爲大靜縣監, 韓瑄爲禮曹佐郎, …….

❖ 숙종 7년(1681) 신유년 7월 28일(기묘)

□ 김응운(金應運)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정창회(鄭昌會)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유헌(兪櫺)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삼고, 조형기(趙亨期)를 경상도사(慶尙都事)로 삼고, 이정영(李正英)을 겸판의금(兼判義禁)으로 삼고, 조세휘(趙世彙)를 영월군수(寧越郡守)로 삼았다. 김응운(金應運)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고, 정창회(鄭昌會)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한선(韓瑄)을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삼고,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응운, 정창회, 정의현감, 대정현감.

❖ 康熙 二十年 辛酉 八月 十一日 辛卯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三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長興故失, 而其餘一百九十七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7년(1681) 신유년 8월 11일(신묘)

□ 사복시에 도착한 제주(濟州)의 삼운(三運) 세공마(歲貢馬)를 별단(別單)으로 보고하겠다는 계

○ 또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삼운(三運) 세공마(歲貢馬) 2백 필 중, 1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어버렸고 1필은 장흥(長興)에 도착하여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백 97필이 본 사복시에 도착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삼운 세공마, 사복시.

❖ 康熙 二十年 辛酉 九月 十八日 丁卯

○ 傳曰, 今此濟州馬, 分養各邑外, 擇其能走者數十匹, 分給于兩局軍兵.

❖ 숙종 7년(1681) 신유년 9월 18일(정묘)

□ 잘 달리는 제주마(濟州馬)를 군병(軍兵)에 나눠주라는 전교(傳敎)

○ 전교하기를, "이번 제주마(濟州馬) 중 각읍(各邑)에 분양(分養)한 것 외에 잘 달리는 말 수십 필(匹)을 골라 양국(兩局)의 군병(軍兵)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 康熙 二十年 辛酉 九月 二十五日 甲戌

○ 李世翊,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此濟州馬分養各邑外, 擇其能走者數十匹, 分給于兩局軍兵事, 下敎矣. 濟州兒馬中體大健壯者二十匹, 別爲擇執, 分給兩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7년(1681) 신유년 9월 25일(갑술)

□ 제주(濟州)의 아마(兒馬) 중 건장한 말 20필을 골라 양국(兩局)에 나눠주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세익(李世翊)[136]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제주마(濟州馬) 중 각읍(各邑)에 분양(分養)한 것 외에 잘 달리는 말 수십 필(匹)을 골라 양국(兩局)의 군병(軍兵)에게 나누어주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제주(濟州)의 아마(兒馬) 중 몸이 크고 건장한 것 20필을 특별히 골라 양국(兩局)에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익, 사복시, 제주마.

136) 이세익(1626~1705): 본관 부평(富平). 자 숙필(叔弼). 호 철애(鐵厓). 1650년(효종 1) 문과급제. 황해도 관찰사, 나주목사, 사헌부지평 등 역임.

❖ 康熙 二十年 辛酉 十月 三日 壬午

○ 引見入侍時, …… 領議政金壽恒所啓, 曾因江華留守李選陳達, 交子弓一百張, 令濟州三邑間年造送於江都, 仍爲定式事, 定奪矣. 更加商議, 則海外絶島, 物力凋殘, 若令間年造送, 則其弊不貲, 姑令三邑, 合力造送一百張, 而勿爲定式, 似當矣. 上曰, 若令間年造送, 則三邑物力, 必有所不逮, 今年則使之造送, 而不必仍爲定式, 可也.【備局謄錄】

❖ 숙종 7년(1681) 신유년 10월 3일(임오)

□ 인견(引見)에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서 강도(江都)에 교자궁(交子弓)을 만들어 보내는 문제를 논의함

○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했을 때, 〈중략〉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일찍이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137]이 교자궁(交子弓) 1백 장(張)을 제주(濟州)의 3읍(邑)으로 하여금 해를 걸러 강도(江都)에 만들어 보낼 것을 아뢰자, 그대로 재가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상의해보니, 바다 건너에 있는 절도(絶島)이므로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하여 만일 한 해 걸러 만들어 보내게 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3읍(邑)으로 하여금 힘을 합쳐 1백 장을 만들어 보내되, 정식(定式)으로는 삼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해를 걸러 만들어 보내게 하면 3읍(邑)의 물력이 필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꼭 그대로 정식으로는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이선, 교자궁, 강화유수.

---

137) 이선(1632~1692): 본관 전주(全州). 자 택지(擇之). 호 지호(芝湖). 1664년(현종 5) 문과급제. 응교, 이조참판 등 역임. 시호 정간(正簡). 저서《지호집(芝湖集)》.

❖ 康熙 二十年 辛酉 十月 十五日 甲午

○ 司僕啓曰, 大靜縣監李簹遞任進上馬二匹上來, 依前例毛禾色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謄錄】

❖ 숙종 7년(1681) 신유년 10월 15일(갑오)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진상마(進上馬)를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司僕)이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당(李簹)의 체임(遞任) 진상마(進上馬) 2필(匹)이 올라왔습니다. 전례(前例)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기록하여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당, 대정현감, 진상마, 내구.

❖ 康熙 二十年 辛酉 十一月 二十二日 辛未

○ 司憲府掌令尹攀, 伏以, …… 北評事之復設, 蓋有意焉. 北方遐遠, 王化之所未沾, 諸邑守宰, 列鎭邊將, 率是武夫, 間有虐民肥己, 無所顧忌者, 故擇送評事, 使爲彈壓之地, 固不當以匪人充差, 而向者以朴致道除授, 該曹擧擬, 或出於乏人, 而聖明之必除此人, 抑何取歟? 致道, 本以南中鄕族, 名望素輕, 且曾爲濟州判官, 受制於尹昌亨, 不敢違異, 所言皆從, 其無風稜可知. 雖緣攀附, 猥與三司之列, 而人皆輕侮而竊笑, 若以彈壓之責, 付之於致道, 誰肯畏忌而自戢哉? 雖以他故見遞, 當初差除, 殊無義意. 評事作闕, 今已半年, 尙未見代, 此則似由於絶無可擬人之致, 而其於政體何如哉? …….

❖ 숙종 7년(1681) 신유년 11월 22일(신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시절 박치도(朴致道)의 행위를 설명하며 그를 북평사(北評事)에 제수한 것이 옳지 않았음을 피력한 윤반(尹攀)의 상소

○ 사헌부 장령 윤반(尹攀)이, "엎드려 생각건대, 〈중략〉 북평사(北評事)를 다시 설치한 것은 대체로 뜻이 있어서입니다. 북방은 멀어서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않고, 여러 고을의 수령과 진(鎭)의 변장(邊將)은 무부(武夫)로서 간혹 백성을 침학하여 자신을 살찌우고도 꺼리고 돌아보는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평사(評事)를 뽑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탄압하게 해야 하므로, 행위가 부정한 사람을 뽑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치도(朴致道)[138]를 제수한 것은, 해당 관에서 의망한 것이 혹 사람이 없는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임금께서 이 사람을 제수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치도(致道)는 본래 남도(南道)의 향족(鄕族)으로 명망과 여론이 본디 가벼웠습니다. 또한 일찍이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되었으나 윤창형(尹昌亨)에게 조종당하여 그를 어기지 못하고 하는 말마다 다 따랐으니, 좋은 위풍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연줄로 인해 외람되게 삼사(三司)의 반열에 들었으나, 사람들이 모두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만약 탄압할 책임을 치도(致道)에게 맡긴다면 누가 이를 수긍하여 꺼리고 피하면서 스스로 그치겠습니까? 비록 다른 이유 때문에 교체되었지만, 당초 제수한 것이 매우 의리에 맞지 않습니다. 평사(評事)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지금 이미 반년인

138) 박치도(1642~1697): 본관 순천(順天). 자 학계(學季). 호 검암(黔巖). 1668년(현종 9) 문과급제. 사간원헌납, 사헌부집의 등 역임. 민정중(閔鼎重)·김수항(金壽恒) 등과 교유.

데 아직도 후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의망할 만한 사람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 같으니, 정치의 요체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반, 박치도, 제주판관, 북평사.

❖ 康熙 二十年 辛酉 十二月 二十二日 辛丑

○ 司憲府大司憲金萬重疏曰, 伏以 …… 朴致道之爲人, 臣所未知, 而聞其家, 乃南中望族, 而南來人人, 稱其才華, 則要其人, 未必不合於淸選也. 且致道旣參弘錄, 則西銓·北幕備擬, 不過循例, 而今者不合之請, 不於經幄之重, 而反於幕官之微, 乃至□□□濟州判官時以實之, 亦可異也. 評事之彈壓北路, 朝家固借其權矣,【缺】官之設, 比之評事, 不亦徑庭乎? 身爲屬僚, 而使爲上官者, 憚其威風, 不敢是非, 此古人之所難能, 是何責人之太厚也? 又謂致道之得擬淸望, 出於【缺】攀附云者, 似謂附托權要, 而得其引進也. 誠如是, 則攀附者, 固可鄙【缺】其攀附者, 亦所當論, 臺臣之不爲明白指陳, 恐非論事之體也. 臣雖無【缺】敢有私於兩臣. 顧念國家淸選, 多有門閥, 其奮自疎遠, 如致道·范齊, 十不能一二, 而今乃逆擊沮遏, 不少假借, 誠恐有違於成湯立賢之道, 而【缺】人之路, 因此而崎嶇也. 臣無任激切祈懇之至, 謹昧死以聞.【以上燼餘】

❖ 숙종 7년(1681) 신유년 12월 22일(신축)

□ 박치도(朴致道)를 북평사(北評事)에 제수한 것에 대한 대간의 논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김만중(金萬重)의 상소

○ 사헌부 대사헌 김만중(金萬重)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중략〉 박치도(朴致道)의 사람됨은 제가 알지 못하나, 들으니 그 집안은 남도(南道)의 망족(望族)으로 남쪽에서 오는 사람마다 그 재화(才華)를 칭송하니 요컨대 그 사람이 반드시 청선(淸選)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도(致道)는 이미 홍문록(弘文錄)에 참여한 적이 있으니, 병조와 북막(北幕)에서 갖추어 의망한 것이 관례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요청은 경연(經筵)의 중책이 아니고 도리어 막관(幕官)의 미약한 직책에 대한 것입니다. □□□ 제주판관(濟州判官) 때의 일을 억지로 끌어들여 이를 실증하는 것도 또한 기이합니다. 평사(評事)는 북로(北路)를 탄압하고 조정에서는 그 권세를 빌립니다.【빠짐】 관(官)을 설치한 것은 평사에 비하면 또한 크게 차이나는 바가 아닙니까? 속료(屬僚)된 자로서 상관(上官)된 이로 하여금 위풍(威風)을 삼가게 하는 것은 감히 그릇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옛 사람들도 능히 하기 어려웠던 일이니, 이 어찌 다른 사람의 크나큰 후덕함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치도(致道)가 청선(淸選) 후보에 의망된 것을 가리켜【빠짐】 연줄을 타고 의지한 데에서 나왔다

고 말한 것은, 권세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등용되었다고 하는 말인 듯 합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연줄을 타고 의지한 자는 참으로 비루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빠짐】 권세로 의지함을 받은 자 또한 마땅히 논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臺臣)이 명백히 이를 가리켜 진달하지 않으니, 일을 논하는 요체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비록 【빠짐】, 감히 두 신하에게 사정(私情)이 있습니다만, 돌아보건데 국가의 청선(淸選)이 문벌(門閥)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아 그 떨치는 바가 매우 멀어졌으니, 치도(致道)·범제(范齊) 같은 이는 열에 한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공격하는 길을 막고 조금도 가차함이 없으니 진실로 성탕(成湯)이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도(道)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빠짐】 사람을 쓰는 통로가 이로 인해 기구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감격하여 간절히 바라는 바를 견딜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박치도, 제주판관, 평사, 범제.

168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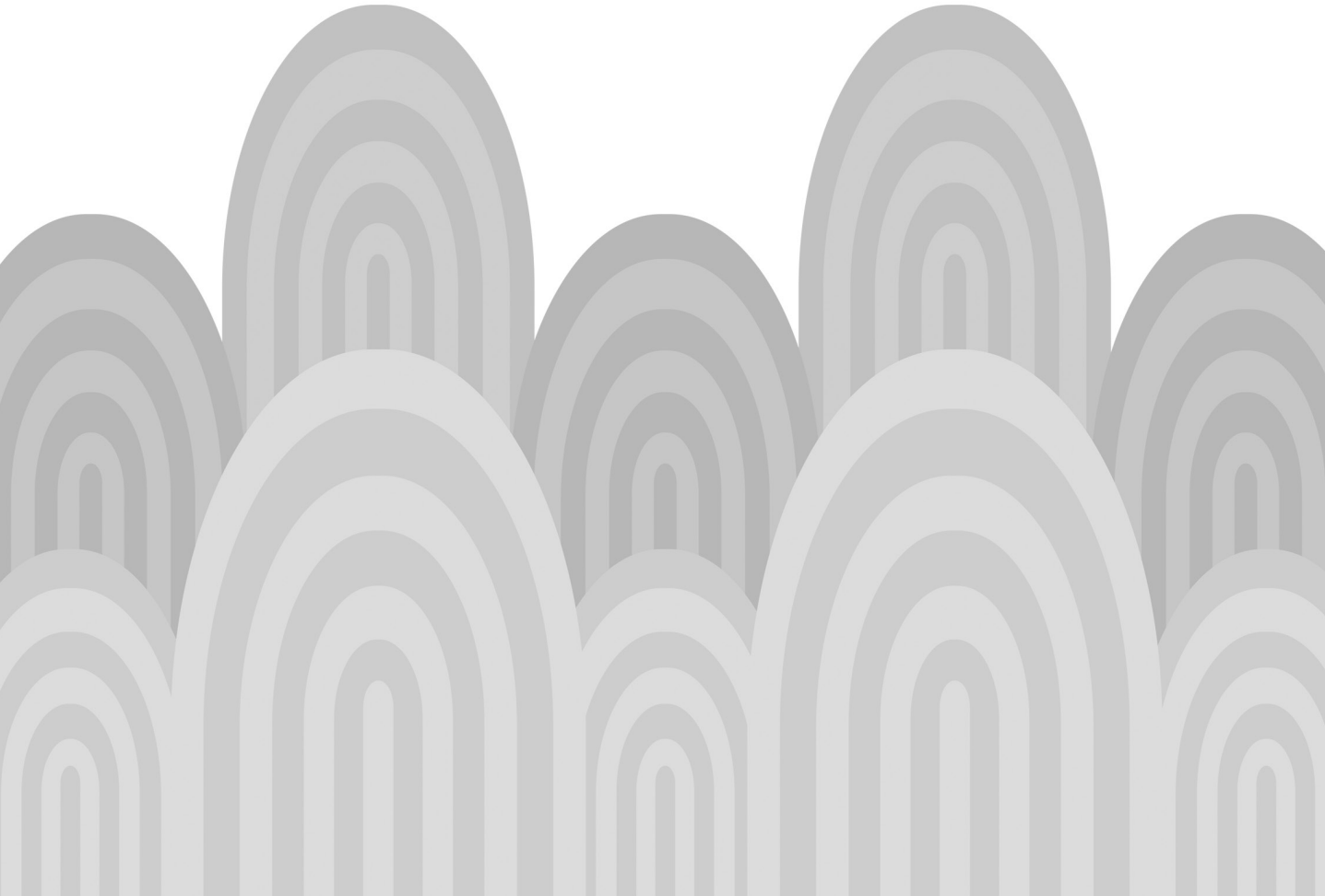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一月 三日 辛亥

○ …… 錫胄曰, 辛酉式年武科參榜者, 除壯元·濟州人外, 元數五十七人. 當依例赴防於西北邊地, 而但西北凶荒特甚, 必有主客俱困之患. 群議以爲, 赴防之類, 或代納米穀, 或代納軍器, 旣有前例, 今亦依爲之, 宜當云. 此言誠然, 而若捧米穀, 則其數旣少, 不足以有補於賑用矣. 頃見北兵使狀啓, 則有請得鳥銃之事, 且居山團束新軍, 亦願得五百柄鳥銃, 而未及備送. 若使赴防者, 代納鳥銃, 送于居山, 則似爲得宜. 下詢於大臣而處之, 何如? 鼎重曰, 當此凶歲, 防戍有弊, 使之代納戎器, 送于邊上, 實爲便當矣. 上曰, 依爲之.【擧行條】…….

❖ 숙종 8년(1682) 임술년 1월 3일(신해)

□ 김석주(金錫胄) 등이 입시하여 부방(赴防)하는 이들이 미곡(米穀)이나 군기(軍器)를 대납(代納)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전략〉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신유(辛酉) 식년(式年)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이 장원(壯元)과 제주인(濟州人)을 제외하면 원래 숫자가 57인인데, 마땅히 관례에 따라 서북방 변지(邊地)에 부방(赴防)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북 지방은 흉황이 매우 심하여 필시 주객(主客) 모두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기를, '부방하는 이들이 간혹 미곡(米穀)을 대납(代納)하거나 혹은 군기(軍器)를 대납한 전례(前例)가 이미 있으니, 이번에도 이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실로 맞습니다. 만약 미곡을 받는다 해도 그 수가 이미 적으니 진휼에 보태어 쓰기는 부족합니다. 지난번 북병사(北兵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조총(鳥銃)을 받겠다고 요청한 일이 있었고, 또 산에 있던 단속신군(團束新軍)도 조총 5백 병(柄)을 받겠다고 요청했는데 마련해 보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총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산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면 좋을 듯 합니다.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이런 흉년을 당하면 방수(防戍)에 폐해가 많으니, 융기(戎器)를 대납하게 하여 변지에 보내면 참으로 편리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거행조건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민정중, 부방, 조총.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一月 九日 丁巳

○ 李濡,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乳柑進上, 今始來到, 而宗廟薦新, 不爲來到, 招問曲折於陪持人, 則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不知去處云. 進上旣到之後, 遷就薦新, 事甚未安, 進上乳柑二百八十箇, 沒數移送禮曹·宗廟及永昭殿·山陵, 明曉薦新後, 依前還爲內入, 何如? 傳曰, 允.

❖ 숙종 8년(1682) 임술년 1월 9일(정사)

□ 천신(薦新)할 물품을 실은 배가 실종되었으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한 유감(乳柑)을 천신에 우선 사용할 것을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이유(李濡)가 사옹원 관원으로서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유감(乳柑)이 오늘 들어왔는데 종묘에 천신(薦新)할 것은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배지인(陪持人)을 불러 곡절을 물으니, 천신할 물품을 실은 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잃어버려 간 곳을 모른다고 합니다. 진상이 이미 당도한 후인데 천신을 미루는 것은 일이 매우 편안치 않습니다. 진상한 유감 2백 8십 개(箇)를 전부 예조·종묘 및 영소전(永昭殿)·산릉(山陵)에 이송(移送)하여 내일 새벽 천신한 후, 예전처럼 다시 들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유, 진상, 유감, 천신.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一月 十四日 壬戌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 去十二月朔令, 宗廟·永昭殿·翼陵薦新乳柑·洞庭橘, 今始上來. 洞庭橘則明日廟祭兼薦, 翼陵薦新, 則令魂殿內官陪進陵所, 依例薦進, 而乳柑則前因司饔院啓辭, 以進上所封, 旣已薦新, 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知道.

❖ 숙종 8년(1682) 임술년 1월 14일(임술)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 등의 천신(薦新) 등에 대해 보고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는 지난 12월 삭령(朔令)과,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익릉(翼陵)에 천신(薦新)할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이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동정귤은 내일 묘제(廟祭)에 아울러 올리고 익릉에 천신하는 것은 혼전내관(魂殿內官)에게 능소(陵所)에 배진(陪進)하여 관례에 따라 천진(薦進)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은 예전에 사옹원(司饔院)의 계사(啓辭)로 인해 진상(進上)으로 봉진한 것을 이미 천신하게 했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유감, 동정귤, 삭령, 천신.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二月 十一日 己丑

○ 故詩人固信其大成也. 翻曰, 宣王之田獵, 與後世之從獸無厭有異, 而專意於爲民除害, 故詩人贊美之也. 鎭龜曰, 周室衰微之餘, 宣王奮拔亂興衰之志, 有內修外攘之事, 故贊美之矣. 翻曰, 此後周人作石鼓, 以記中興之事矣. 至吉日, 鎭龜釋戊字曰, 戊, 剛日也, 以下文庚午推之, 則此爲戊辰矣. 釋伯字曰, 伯, 馬祖也, 謂天駟房星之神也. 鼎重曰, 房星爲天駟矣. 翻曰, 房星所照處, 則良馬應出, 故我國濟州, 上應房星, 所以多產良馬云矣. …….

❖ 숙종 8년(1682) 임술년 2월 11일(기축)

□ 주강(晝講)에 이숙(李翻) 등이 입시하여 주(周) 선왕(宣王)의 고사 등에 대해 읽고 논의함

○ 그러므로 시인(詩人)이 그가 대성(大成)할 것을 진실로 믿었다. 숙(翻)이 말하기를, "선왕(宣王)의 전렵(田獵)은 후세의 '짐승을 좇아 사냥하며 만족을 모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로지 백성을 위해 해악을 없애는 데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시인이 이를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귀(鎭龜)가 말하기를, "주(周) 왕실이 쇠잔한 나머지 선왕이 떨치고서 난리를 헤치고 쇠약한 것을 흥성하게 하려는 뜻으로 '안으로 정치를 닦고 밖으로 외세를 물리친 일이 있었으므로, 이를 칭찬하고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숙(翻)이 말하기를, "이 후부터 주나라 사람이 석고(石鼓)를 만들어 중흥한 일을 기록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길일(吉日)이 되자 진귀(鎭龜)가 무자(戊字)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무(戊)는 강일(剛日)[139]입니다. 아래 글의 경오(庚午)로 미루어보건대 이는 무진(戊辰)입니다." 라 하고, 백자(伯字)를 풀어 말하기를, "백(伯)은 마조(馬祖)이니, 천사방성(天駟房星之)의 신(神)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중(鼎重)이 말하기를, "방성(房星)이 천사(天駟)가 됩니다."라고 하였다. 숙(翻)이 말하기를, "방성(房星)이 비추는 곳에는 양마(良馬)가 나오므로 우리나라 제주(濟州)가 위로 방성에 응하여 이른바 양마를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숙, 김진귀, 민정중, 방성.

---

139) 강일(剛日): 천간(天干) 중에서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을 만나는 날.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二月 二十七日 乙巳

○ 安厚,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點馬別監崔容之, 別擇御乘馬可合十匹, 今纔入來,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8년(1682) 임술년 2월 27일(을사)**

□ **점마별감(點馬別監)이 고른 어승마(御乘馬) 1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보고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안후(安厚)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점마별감(點馬別監) 최용지(崔容之)가 어승마(御乘馬)로 합당한 10필을 특별히 골라서 오늘 겨우 들어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안후, 최용지, 어승마, 점마별감.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五月 二日 己酉

○ 下直, 旌義縣令李晩成, 眞寶縣監金錫齡.

❖ 숙종 8년(1682) 임술년 5월 2일(기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만성(李晩成) 등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140] 이만성(李晩成), 진보현감(眞寶縣監) 김석령(金錫齡)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만성, 김석령, 정의현령.

140) 국사편찬위원회 활자 원문과 탈초본에는 정의현령(旌義縣令)으로 잘못 쓰여 있어서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六月 四日 庚辰

○ 禁府啓目, 議于大臣, 則領議政, 以爲焜·熀等移配, 固出於聖上愛欲其生之德意, 而近京之地, 旣有所難便, 南方海島, 惟珍島, 風土稍勝, 且其道里, 比濟州稍近, 故以此爲移配之所矣. …… 伏惟上裁. …… 右議政李尙眞, 以爲珍島, 與濟州俱是絶島, 而移配于珍島者, 爲其去隨近而生理稍勝也. 果有風土不佳, 人多得病之患, 則雖非絶島, 更擇本道邊邑中, 最爲窮僻處, 改定所配, 恐合於終始保全之德意. 宜令該府, 稟旨擧行, 伏惟上裁. 左議政, 以爲曩歲江都投書之獄, 始起也, 其時之人, 擧欲釀成大禍, 意在必殺, 旣不可殺, 則遂發遠置海外之議, 而閔其受誣於凶人者, 亦欲姑置之絶遠與人不相接之地, 以絶彼疑, 以保其生, 故其兄弟, 竝配於濟州矣. 今當遇災審冤之日, 首下移出內地之命, 此實聖明終始曲全之盛德, 而昨日筵臣, 又以更置窮僻淸凉之地, 爲啓云. 此言, 誠亦有見, 而此惟在該曹審量去處當否, 更稟而定之而已, 伏惟上裁. 領中樞府事, 在外, 行知中樞府事李尙眞, 病不收議,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啓依議施行.

❖ 숙종 8년(1682) 임술년 6월 4일(경진)

□ 이혼(李焜)과 이엽(李熀)의 유배지에 대한 대신(大臣)의 의견을 보고하고 임금의 재가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 계목(啓目)임.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영의정이 말하기를, '이혼(李焜)[141]·엽(熀) 등의 이배(移配)는 진실로 임금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한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이미 편치 않은 바가 있었고, 남쪽 해도(海島)로는 오로지 진도(珍島)가 있는데 풍토가 조금 낫습니다. 또 그 거리도 제주(濟州)와 비교하여 조금 가까우니, 이 때문에 이배할 곳으로 삼은 것입니다. 〈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재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우의정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 '진도(珍島)와 제주(濟州)는 모두 절도(絶島)이니, 진도에 이배하는 것은 가깝고 살기가 조금 나은 곳을 따른 것입니다. 과연 풍토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병(病)을 많이 얻는 근심으로 말하자면, 비록 절도(絶島)가 아니라도 본도(本道)의 변읍(邊邑) 중 가장 궁벽한 곳을 다시 골라서 다시 유배지를 바꾸어 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하

141) 이혼(?~1724): 본관 전주(全州). 소현세자의 손자. 1679년(숙종 5)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로 아우인 이엽(李熀)과 함께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무고로 밝혀져 풀려남.

는 덕의(德意)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관청에 명하여 품지(稟旨)를 거행하는 게 마땅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좌의정이 말하기를, '몇해전 강도(江都)에서 투서(投書)로 인한 옥사가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큰 화(禍)를 만들고자 반드시 죽이는 데에 뜻을 두었으나 죽이지 못했으니, 드디어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의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흉인(凶人)에게 무함을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기고, 우선 다른 사람과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절도에 갖다두고 그의 의혹을 끊고 목숨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함께 제주로 유배한 것입니다. 지금 재이(災異)를 만나 억울한 옥사를 심사하는 날을 맞아 제일 먼저 내지(內地)로 옮기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실로 임금께서 시종일관 성덕(盛德)을 곡진하게 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연신(筵臣)이 또 궁벽하고 청량(淸凉)한 곳에 안치하자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식견이 있는 말이오나, 이는 오직 해당 관청에서 유배할 곳과 마땅한지 여부를 헤아려서 판단할 일입니다. 다시 결정해 달라고 아뢸 뿐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중추부사는 밖에 있고, 행지중추부사 이상진(李尙眞)은 병(病)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임금께서 재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헌의하여 아뢴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혼, 이엽, 이배, 계목.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六月 十九日 乙未

○ 大司成李選疏曰, 伏以, …… 仍念臣於乙卯, 以巡撫使, 赴濟州也, 受命於朝, 凡唐船之漂到者, 勿許登陸, 亦聞狀聞之意, 密諭於牧官, 以爲永久遵行之地矣. 今後良, 旣以此而死, 則彼海外絶域, 何獨尙存其令耶? 似當更詢廟堂而處之, 亦惟聖明之留神焉. 臣伏枕口呼, 語無倫次, 無任兢惶隕越之至. 謹昧死以聞.

❖ 숙종 8년(1682) 임술년 6월 19일(을미)

□ 중국배의 출현을 조정에 보고하는 문제를 묘당(廟堂)에 물어서 처리해 줄 것을 청하는 이선(李選)의 상소

○ 대사성 이선(李選)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중략〉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을묘년에 순무사(巡撫使)로서 제주(濟州)에 부임했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표류하여 도착한 중국배에 등륙(登陸)을 허가하지 말고 또 장계(狀啓)로 보고하라고 목사(牧使)에게 밀유(密諭)하고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 이를 없앤다면 저 바다 밖 외딴 곳에 어찌 그 령(令)을 존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묘당(廟堂)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또한 오직 임금께서 정신을 쏟으실 일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입으로 부르다보니 말이 두서가 없어 황송할 따름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선, 당선, 등륙.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六月 二十三日 己亥

○ 金錫胄曰, 伏聞濟州儒生等, 以四臣書院請額事, 遠來陳疏, 而該曹援據勿許疊設之例, 防啓允下云. 濟州之服屬我國, 年代雖久, 其實海外絶域也. 習俗貿貿, 始未得沾被右文之化矣, 近來頗事文學, 科第連出, 且嘗觀感興慕於國朝名賢之嘗至其地者, 設院竝祀, 以寓景仰之懷, 越海千里, 復此呼籲, 其意誠爲可嘉矣. 且其所祀四人, 一則文簡公金淨, 卽己卯名賢, 而被禍謫配者也, 一則大司憲宋麟壽, 亦是中廟朝名臣, 嘗出牧濟州, 冤死於乙巳者也, 一則文正公金尙憲, 宣廟丙午年間, 以巡按御史, 入海, 一則參判鄭蘊, 卽光海時抗疏立節之人, 謫居此島十餘年, 仁祖改玉之初, 首以獻納召還, 及至南漢講和之日, 以刃刺腹, 仍自廢不出. 今此四臣, 俱有文學名節, 素爲士林之所矜式者, 而海外之人, 亦能尊慕, 至設俎豆之所, 以爲表準之地, 則誠是美事, 似不可與陸地州縣紛紜疊設者, 比而同矣之[校][之矣]. …… 上曰, 先朝, 旣有成命, 故允下於該曹覆啓矣, 海島儒生之請, 果異於他處, 特許, 可也.

❖ 숙종 8년(1682) 임술년 6월 23일(기해)

□ 김석주(金錫胄)등이 입시하여, 제주유생(濟州儒生)들이 김정(金淨) 등 네 신하를 향사하는 서원의 사액을 청한 일에 대해 논의함

○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가만이 들으니, 제주유생(濟州儒生)들이 네 신하의 서원에 대해 사액을 청하는 문제로 멀리서 와서 상소를 올렸는데, 해조(該曹)에서 첩설(疊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입계(入啓)하여 윤허받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제주(濟州)가 우리나라에 복속된 지는 햇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실상은 바다 밖의 떨어져있는 지역입니다. 습속이 무식하고 예절에 어두워 처음에는 문화를 숭상하는 교화에 물들어있지 못했습니다. 근래들어 자못 문학을 일삼더니 과거급제자가 연이어 나오고, 또 국조의 명현으로서 일찍이 그 곳에 온 이들을 보고 흠모하여 서원을 세워 함께 향사하였습니다. 경앙(景仰)하는 회포가 깃든 것이 바다 건너 천리에 이르렀으니, 이처럼 다시 호소하는 뜻이 진실로 가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향사하는 4인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은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142]으로 기묘명현(己卯名賢)이며 사화의 피해를 입고 유배된

142) 김정(1486~1521): 본관 경주(慶州). 자 원충(元冲). 호 충암(冲菴), 고봉(孤峯). 1507년(중종 2) 문과 장원급제. 이조정랑, 형조판서 등 역임. 기묘사화로 진도, 제주도 등에 유배.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사사되고, 1545년(인종 1) 복관.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토대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집필. 저서《충암집(冲菴集)》.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대사헌 송인수(宋麟壽)[143]로, 역시 중종 때 명신(名臣)으로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왔다가 을사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144]으로, 선조(宣祖) 병오년에 순안어사(巡按御史)로서 제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참판 정온(鄭蘊)[145]으로 광해군 때 상소를 올려 절개를 세우고 이 섬에 유배와 10여년간 지내다가 인조반정 초기에 헌납(獻納)으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남한산성에서 강화(講和)하던 날에는 칼로 배를 찌르고 스스로 폐문하여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네 신하는 모두 문학과 명절(名節)이 있었는데, 본디 사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다 밖 사람들도 또한 존경하고 사모하여 향사하는 곳을 만들어 표준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의 주현(州縣)에 부산하게 중첩으로 설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복계(覆啓)하도록 윤허를 내린다. 해도(海島) 유생의 요청은 과연 다른 곳과는 다르니,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김정, 김상헌, 정온, 송인수, 기묘명현.

---

143) 송인수(1499~1547): 본관 은진(恩津). 자 미수(眉叟) 또는 태수(台叟). 호 규암(圭菴). 1521년(중종 16) 문과급제. 전라도관찰사, 대사헌 등 역임. 김안로 일파의 미움을 받아 1534년(중종 29) 제주목사로 좌천. 을사사화로 파직되었다가 사사됨. 저서《규암집(圭菴集)》. 시호 문충(文忠).

144) 김상헌(1570~1652): 본관 안동(安東). 자 숙도(叔度). 호 청음(淸陰) 또는 석실산인(石室山人). 1596년(선조 29) 문과급제. 대사헌, 예조판서 등 역임. 1601년(선조 34) 제주도에서 발생한 길운절(吉雲節)의 역옥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로 파견. 효종 묘정에 배향. 저서《청음전집(淸陰全集)》. 시호 문정(文正).

145) 정온(1569~1641): 본관 초계(草溪). 자 휘원(輝遠). 호 동계(桐溪), 고고자(鼓鼓子). 1610년(광해군 2) 문과급제. 대제학, 이조참판 등 역임. 시호 문간(文簡).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六月 二十三日 己亥

○ 右議政金錫胄所啓, 向時濟州, 有唐船漂到之事, 故自島中直爲驅遣, 俾不登陸, 而形止啓聞之事, 亦令勿爲矣. 其後乙卯年間, 廟議, 又以爲他國漂船, 旣到我境, 則自朝家全不聞知, 亦涉乖宜, 雖不張皇啓聞, 不可不卽報備局之意, 更爲分付, 而旣謂之聽聞有煩, 勿令啓聞, 則獨報備局, 亦非事體, 且因此事, 沿海瞭探, 遂致解弛, 事甚可慮, 且卽今又與前時不同, 南舶之漂沒於海島間者, 率多服屬於鄭錦之類, 不可以中華人物論也. 今後, 則更爲知委, 如或有如前漂致之事, 使之隨卽啓聞朝廷, 以竢處分, 何如? 上曰, 李選疏末, 有此所論, 欲於大臣引見時, 問議而爲之矣, 卿言先及, 正合予意, 依此爲之, 可也.

❖ 숙종 8년(1682) 임술년 6월 23일(기해)

□ 김석주(金錫胄)가 입시하여 외국 선박이 표류해 올 경우 조정에 계문(啓聞)하여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우의정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지난번 제주(濟州)에 중국배가 표착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섬에서 곧바로 쫓아내어 등륙(登陸)하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후 을묘년에 묘당(廟堂)에서 논의하여 말하기를, '다른 나라 표류선이 이미 우리 경내에 당도했는데도 조정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비록 장황하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변사에 즉시 보고하라고 다시 분부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 받는 것이 번거로우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니, 오직 비변사에만 보고하는 것도 일의 형세상 맞지 않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연해를 탐문하는 것이 해이해지는 일이 매우 염려스러우며, 지금은 또 앞서의 시기와는 같지 않습니다. 무릇 남쪽의 선박이 해도(海島)에 출몰하는 것은 대부분 정금(鄭錦)에게 복속한 무리이니, 중국 사람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알려서, 만약 전과 같이 표류하여 오는 일이 있으면 뒤따라 즉시 조정에 계문(啓聞)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선(李選)의 상소 말미에 이런 의논이 있기에 대신을 인견(引見)할 때 묻고 논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경(卿)의 말이 먼저 이르렀고 내 뜻과 부합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이선.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六月 二十三日 己亥

○ 又所啓, 今六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閔鼎重所啓, 前歲濟州漂到倭人等, 還送于東萊倭時, 使之自濟州領付于全羅左水使處, 自水營領付于東萊, 而毋得逕由於統營, 亦不許止留於各鎭浦者, 蓋不欲使外國之人, 覘視邊圉重地, 覆啓之中, 別爲措辭, 嚴明分付矣. 其後得聞漂倭領去者, 由閑山內洋, 過三千·統營·永登而去云, 甚疑訝, 未詳虛實. 今者三千權管崔準紀, 領運漕船上來, 故招致備局, 問之, 則果如前日所聞矣. 啓下分付之事, 不爲擧行, 已極驚駭, 至於漂倭領送, 則關係邊情, 尤不可不愼密, 而慢視朝廷號令, 任意違越, 此非尋常罪犯. 其時水使之不爲申飭與否, 姑未査出, 爲先從〈重〉推考, 領去軍官, 則令統制使捉致營下, 嚴明査問, 不遵號令曲折, 啓聞處置, 何如? 上曰, 依爲之.

❖ 숙종 8년(1682) 임술년 6월 23일(기해)

□ 김석주(金錫胄)가 입시하여 이전에 민정중(閔鼎重)이 아뢴 내용을 토대로, 제주에 표류한 왜인(倭人)을 동래(東萊)로 보낼 때 변방의 실정을 노출한 수사(水使)와 군관(軍官)을 조사해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함

○ 또 아뢰기를, “이번 6월 13일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했을 때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제주(濟州)에 표류해온 왜인(倭人)들을 동래(東萊)의 왜관에 보낼 때 그들을 제주에서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에게 보내면 수영(水營)에서 동래로 보내되, 통영(統營)을 경유하지 말고 또 각 진포(鎭浦)에 머무르지 말게 한 것은 대개 외국 사람으로 하여금 변방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복계(覆啓)한 내용 중에도 엄히 밝혀 분부하라고 특별히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으니, 왜인을 거느린 자가 한산(閑山)의 내양(內洋)을 경유하면서 삼천(三千)·통영(統營)·영등(永登)을 지나갔다고 하니 매우 의아합니다. 사실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금 삼천권관(三千權管)인 최준기(崔準紀)가 조운선을 끌고 올라왔으므로 비변사에 불러 물으니, 과연 전날 들은 대로입니다. 계하(啓下)하여 분부한 일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표류한 왜인을 보내는 데에 이르면 변방의 실정과 관계되므로 더욱더 신중하고 긴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의 명령을 소홀히하고 마음대로 어겼으니, 이는 평범하게 볼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 때의 수사(水使)에 대해, 신칙하지 못한 죄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중죄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왜인을 거느렸던 군관은 통제사(統制使)로 하여금 영하(營下)에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여 묻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게 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민정중, 최준기, 왜인.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七月 五日 庚戌

○ 魚震翼,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賜給馬帖, 一從年限題給事, 旣已啓稟定奪矣. 兒馬, 則濟州歲貢上來之後, 以分養外餘數, 知委各部, 收取馬帖, 考其年次, 呼名分給, 而至於熟馬, 則分養馬上來時, 各軍門軍兵等擇執外, 亦爲分給, 而此則非如兒馬一時分給之比, 隨其所捧, 因其呈狀, 續續許給, 故多不能一循年次, 頗有紛紜不均之弊, 殊無定式本意. 今後, 則分養馬上來後, 熟馬應受人, 卽爲知委, 收取馬帖, 依兒馬例, 考年分給, 而至於本寺邊馬元額數內, 則除面給馬外, 一切防塞, 俾無猥雜之事, 宜當. 此等定式, 臣等, 猶可爲之, 而若不稟定, 則必不無還爲撓改之弊, 別爲奉承傳施行, 何如? 傳曰, 依啓.

❖ 숙종 8년(1682) 임술년 7월 5일(경술)

□ 분양마(分養馬)를 균등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불평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어진익(魚震翼)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마첩(馬帖)을 사급(賜給)할 때는 한결같이 연한(年限)에 따라 제급(題給)할 것을 이미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아마(兒馬)는 제주(濟州)에서 세공(歲貢)이 올라온 후 분양하고, 그 나머지 수는 각부(各部)에서 알아서 마첩(馬帖)을 가져다가 연차(年次)를 고려하여 이름을 부르고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숙마(熟馬)는 분양마(分養馬)가 올라올 때 각 군문(軍門)·군병(軍兵) 등이 골라가지고 그 나머지는 또한 나눠주는데, 이는 아마를 일시에 분급하는 것과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받아들이는 대로 정장(呈狀)에 따라 속속 허급(許給)하므로 모두 연차에 따라서 할 수 없으니, 자못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 뒷말이 많아지는 폐단이 생기므로 식을 정한 본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분양마가 올라올 때 숙마(熟馬)를 받는 사람은 알아서 마첩을 가져다가 아마(兒馬)의 예를 따라 연차를 헤아려 나눠주되, 본 사복시의 변마(邊馬) 원액(元額) 숫자 내에서는 면급마(面給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여 외람되고 혼잡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식(定式)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만약 아뢰어 정하지 않으면 도리어 요개(撓改)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사오니 특별히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어진익, 분양마, 마첩.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七月 五日 庚戌

○ 魚震翼,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點馬崔容之還來後, 詳問本州各牧場形勢及馬政, 則以爲場馬之數, 比前倍多, 放馬之地, 甚爲狹小, 許多馬群, 不但無以遊息, 水草不茂, 飢困倒損者, 亦多, 馬品之體小駑劣, 職由於此云. 取見本寺馬籍, 則戊戌年以前, 則濟【缺】場狹小之說, 果是實狀, 而駑駘之類, 不可仍存, 以致前頭馬品之漸劣, 似當有變通之道. 三邑牧場內, 體小品劣之馬, 限數千匹, 連續執捉出送, 以爲區處之地, 似爲便益, 分付本州, 令牧使與兩邑守令, 着實擧行, 何如? 傳曰, 依啓.

❖ 숙종 8년(1682) 임술년 7월 5일(경술)

□ 제주(濟州) 목장(牧場)이 협소하여 마품(馬品)이 떨어지므로 노둔한 말들을 내보내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어진익(魚震翼)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점마(濟州點馬) 최용지(崔容之)가 돌아온 후 본주(本州) 각 목장(牧場)의 형세와 마정(馬政)에 대해 상세히 물으니, 목장의 말이 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져서 말을 방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많은 말들이 놀고 쉴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수초(水草)도 무성하지 않아 굶주려 쓰러지는 것이 또한 많다고 합니다. 말의 품종이 체구가 작고 노둔한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본 사복시의 마적(馬籍)을 가져다보니, 무술년 이전에는 제(濟)【빠짐】장(場)이 협소하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둔한 말들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은 앞으로 말의 품질이 점차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니, 마땅히 변통할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삼읍(三邑)의 목장 내에 있는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한 말은 수천 필에 한해 계속 붙잡아 내보내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주(本州)에 분부하여 목사(牧使)와 양읍(兩邑) 수령으로 하여금 착실히 거행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어진익, 최용지, 마적.

❖ 康熙 二十一年 壬戌 七月 十一日 丙辰

○ 尹敬敎,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曾因兵曹判書李翻, 楊前所啓, 濟州山屯馬三百匹, 取來分給禁軍事, 傳敎, 故限數三年, 每一年, 以一百匹別擇上送之意, 啓達後, 分付本州矣. 山屯馬一百匹, 今才上來, 而二匹, 則中路病留, 九十八匹, 爲先捧上, 別單書入, 而越海上來之馬, 擧皆瘦瘠, 今若分給於禁軍輩, 則必無善養成就之理, 又不無致斃之弊, 卽令放牧於箭串, 仍爲分養於近道各邑, 待明春還捧以給, 似爲便當矣,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8년(1682) 임술년 7월 11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산둔마(山屯馬)를 전곶(箭串)에 방목(放牧)했다가 내년 봄에 금군(禁軍)에 나눠줄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윤경교(尹敬敎)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일찍이 병조판서 이숙(李翻)[146]이 어전에서 아뢴 내용으로 인해 제주(濟州)의 산둔마(山屯馬) 3백 필의[을] 가져다가 금군(禁軍)에게 나눠주라는 전교(傳敎)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에 한해 매년 1백 필을 따로 골라 상송(上送)하겠다는 뜻을 계달(啓達)한 후 본주(本州)에 분부하였습니다. 산둔마 1백 필이 지금 겨우 올라왔는데, 2필은 중간에 병(病)으로 두고왔고 98필은 우선 받아서 별단(別單)에 기록하여 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올라온 말이 대부분 피로하고 수척하여 지금 만약 금군에게 나눠준다면, 잘 길러서 성취(成就)할 이치가 없고 또 죽는 폐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전곶(箭串)에 방목하도록 명하시고, 그대로 근도(近道)의 각읍(各邑)에서 분양(分養)하다가 내년 봄에 다시 받아서 분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경교, 이숙, 산둔마.

---

146) 이숙(1626~1688): 본관 우봉(牛峰). 자 중우(仲羽). 호 일휴정(逸休亭). 병자호란시 포로로 심양에 잡혀갔다가 귀국. 1655년(효종 6) 문과급제. 이조판서, 우의정 등 역임. 시호 충헌(忠獻).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二日 丁丑

○ …… 又所啓, 李翻前任兵判時, 以濟州山馬捉出分給, 曾已陳達, 今則其馬已爲上來矣. 今聞以其喂養之難, 自司僕寺定奪, 更爲分養於各邑, 分養之數, 因此添多, 則各邑之弊, 固已不貲, 所喂之馬, 例以元會計減, 則戶曹所失者, 亦多矣. 卽今未及分送者, 近五十餘匹云, 此則抄擇禁軍, 可以善喂者, 卽爲分給, 而江都陳太之自戶曹發賣者, 限五六石移給禁衛營, 以爲養馬之用, 似爲便好, 戶曹雖損此太數, 分養時應減之穀, 則還復不減, 戶曹亦無所失矣. 上曰, 依爲之. …….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2일(정축)

□ 제주(濟州) 산마(山馬)의 분양과 양육에 대해 논의함

○ 〈전략〉 또 아뢰기를, "이숙(李翻)이 전임 병조판서 시절 제주(濟州)의 산마(山馬)을 잡아내어 분급하는 문제를 이미 아뢰었고, 지금은 그 말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지금 들으니 기르기가 어려워 사복시에서 다시 각읍(各邑)에 분양(分養)할 것을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분양하는 수가 이 때문에 많아지면 각 읍의 폐해는 참으로 적지 않을 것이고, 기르는 말을 원래대로 계산하여 빼주면 호조(戶曹)의 손실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지금 나눠 보내지 못한 것은 5백여 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금군(禁軍) 중 잘 양육할 사람을 가려 뽑아서 즉시 나눠주고, 호조에서 발매한 강도(江都)의 묵은 콩을 5, 6섬에 한해 금위영(禁衛營) 이급(移給)하여 말을 기르는 용도로 쓰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호조는 비록 이 콩의 수만큼 손실이 되더라도 분양할 때 응감(應減)한 곡식은 다시 줄이지 않으며 호조로서도 손실이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숙, 산마, 금군.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十三日 戊子

○ 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左議政閔鼎重, 右議政金錫胄, …… 入侍. …… 金錫胄曰, 譯官中李承謙稱名者, 頗知漢語, 頃年漂漢人到濟州之時, 使此人押來, 上京之後, 又使押送于彼中, 亦頗有奔走之勞, 頃日以他事, 旣已〈加資〉別爲施賞則似好矣. 上曰, 實職除授, 可也. …….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13일(무자)

□ 희정당(熙政堂)에 민정중(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역관(譯官) 이승겸(李承謙)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께서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했는데,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우의정 김석주(金錫胄), 〈중략〉가 입시(入侍)하였다. 〈중략〉 김석주가 말하기를, "역관(譯官) 중 이승겸(李承謙)이라 부르는 자가 한어(漢語)를 잘 알아서, 지난해에 표류한 한인(漢人)이 제주(濟州)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을 시켜 압송해 왔습니다. 상경한 후에 다시 저쪽으로 압송하게 했으니 또한 매우 분주한 공로가 있습니다. 지난날 다른 일로 이미 가자(加資)했으니, 따로 상(賞)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직(實職)을 제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민정중, 김석주, 이승겸, 역관.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十四日 己丑

○ 傳于李玄錫曰, 焜·熀等, 旣已移配南海[校][海南]矣, 供饋·救療等事, 一依濟州例擧行, 憐恤之意事, 下諭.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14일(기축)

□ 해남(海南)으로 이배(移配)된 이혼(李焜) 등의 공궤(供饋)와 구료(救療) 등을 제주(濟州)의 예대로 거행하라는 전교

○ 이현석(李玄錫)에게 전교하기를, "혼(焜)·엽(熀) 등은 이미 해남(海南)으로 이배(移配)하였다. 공궤(供饋)·구료(救療) 등의 일은 모두 제주(濟州)에서의 관례에 따라 거행하여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혼, 이엽, 이현석.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十五日 庚寅

○ 傳曰, 焜·熀, 旣已移配海南矣, 供饋·救療等事, 一依濟州例擧行, 以示憐恤之意事, 下諭一行.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15일(경인)

□ 해남(海南)으로 이배(移配)된 이혼(李焜) 등의 공궤(供饋)와 구료(救療) 등을 제주(濟州)의 예대로 거행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혼(焜)·엽(熀) 등은 이미 해남(海南)으로 이배(移配)하였다. 공궤(供饋)·구료(救療) 등의 일은 모두 제주(濟州)에서의 관례에 따라 거행하여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혼, 이엽, 이배, 해남, 제주.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二十七日 壬寅

○ 禮曹啓曰, 上年, 因榻前定奪三名日各道所封方物, 別單書入, 而大殿封進冬至方物中, 濟州牧使所封織毛馬粧一部, 及兩大妃殿冬至方物全數姑減事, 付標啓下, 故今年正朝爲始, 兩大妃殿方物及大殿弓帒筒箇等物, 依近例以權減數封進矣, 其在享上之禮, 每因年凶, 久未復舊, 誠爲未安. 今年冬至爲始, 三名日方物物膳, 依舊例復舊封進事, 知委擧行, 何如? 傳曰, 依前姑減, 可也.【以上禮曹謄錄】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27일(임인)

□ 수량을 줄여서 봉진(封進)하던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구례(舊例)대로 복구하여 봉진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어전에서 삼명일(三名日)[147]에 각도(各道)가 봉진한 방물(方物)을 재가하여 별단(別單)을 기록하여 들였습니다. 그런데 대전(大殿)에 봉진한 동지(冬至) 방물 중,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部) 및 양대비전(兩大妃殿)의 동지 방물 전체를 우선 줄여줄 일을 부표(付標)하여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이에 금년 정조(正朝)를 시작으로 양대비전 방물 및 대전에 들일 궁대동개(弓帒筒箇) 등 물품은 요사이 관례에 따라 임시로 숫자를 줄여 봉진하였습니다. 공물을 올리는 예(禮)에 있어서는, 매년 흉황으로 인해 오래도록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금년 동지를 시작으로 삼명일의 방물과 물선(物膳)은 구례(舊例)를 복구하여 이에 따라 봉진하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전에 하던 대로 우선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삼명일, 직모마장, 궁대동개.

147) 삼명일(三名日): 임금의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를 가리킴.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八月 二十八日 癸卯

○ 禮曹啓曰, 以本曹三名日方物物膳, 冬至爲始, 復舊封進事草記, 傳曰, 依前姑減可也事, 傳敎矣. 自前方物姑減之時, 兩大妃殿方物物膳, 依例封進, 大殿·中宮殿方物物膳姑減, 而大殿各道所封弓俗箇箇, 及濟州牧使所封弓俗箇箇·結弓獐皮·織毛馬粧等物, 有恒式進封之事, 今亦依此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8년(1682) 임술년 8월 28일(계묘)

□ 양대비전(兩大妃殿),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 등에 봉진(封進)할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에 대해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동지를 시작으로 구례(舊例)를 복구하여 봉진(封進)하겠다고 초기(草記)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교하시기를, '예전에 하던대로 우선 줄여주는 게 좋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방물을 우선 줄일 때에도 양대비전(兩大妃殿)의 방물과 물선은 전례대로 봉진해 왔습니다. 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의 방물과 물선은 우선 줄이되, 대전(大殿)에 각도(各道)에서 봉진하는 궁대동개(弓俗箇箇) 및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는 궁대동개·결궁장피(結弓獐皮)·직모마장(織毛馬粧) 등의 물품은 항식(恒式)이 있어 이에 따라 진봉해 왔으니 이번에도 이에 따라 진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삼명일, 직모마장, 궁대동개, 모직마장, 결궁장피.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月 四日 丁丑

○ 沈攸,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判官李世剛, 遞任進上馬三匹上來, 依前禾毛色, 別單以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8년(1682) 임술년 10월 4일(정축)

□ 이세강(李世剛)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에 대해 보고하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심유(沈攸)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세강(李世剛)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올라왔으니, 전례에 따라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 맡겨 양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심유, 이세강, 체임진상마, 제주판관.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月 十三日 丙戌

○ 有政. 吏批, 以洪萬容爲禮曹參判, …… 鄭載濟爲濟州判官, …… 李玄錫爲右承旨.

❖ 숙종 8년(1682) 임술년 10월 13일(병술)

□ 정재제(鄭載濟)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홍만용(洪萬容)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중략〉 정재제(鄭載濟)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중략〉 이현석(李玄錫)을 우승지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홍만용, 정재제, 제주판관, 이현석.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月 十三日 丙戌

○ 兵批, 以任後昌爲統營虞候, …… 金振煜爲濟州山馬監牧官, …… 朴斗善爲僉知中樞.【以上朝報】

❖ 숙종 8년(1682) 임술년 10월 13일(병술)

□ 김진욱(金振煜)을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에 제수함

○ 병비(兵批)[148]에 의하여 임후창(任後昌)을 통영우후(統營虞候)로 삼고, 〈중략〉 김진욱(金振煜)을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으로 삼고, 〈중략〉 박두선(朴斗善)을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삼았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병비, 임후창, 김진욱, 박두선, 제주산마감목관.

148)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병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二月 三日 丙子

○ 下直, 扶安縣監成瑨, 陽城縣監李愍, 濟州判官鄭載濟.

❖ 숙종 8년(1682) 임술년 12월 3일(병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재제(鄭載濟) 등이 하직함

○ 부안현감(扶安縣監) 성진(成瑨), 양성현감(陽城縣監) 이빈(李**愍**),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재제(鄭載濟)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성진, 이빈, 정재제, 제주판관.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二月 三日 丙子

○ 午時, 上御熙政堂, 引見下直守令及大臣·備局堂上. 左議政閔鼎重, …… 濟州判官鄭載濟, 陽城縣監李憤, 扶安縣監成瑨, 假注書李萬齡, 記事官崔錫恒·鄭齊泰, 先後入侍. 持謙進曰, 守令, 使之進前, 何如? 上曰, 唯. 載濟進曰, 臣, 濟州判官鄭載濟也. 上曰, 履歷, 幾何? 載濟曰, 曾經武兼宣傳官而爲是職也. 上曰, 前見濟州牧使狀啓, 慘被風災, 年事甚凶, 且海外絶島, 王化所不被, 爾須盡心撫摩, 可也. …….

❖ 숙종 8년(1682) 임술년 12월 3일(병자)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 및 하직한 수령 등을 인견(引見)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하직한 수령 및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하셨는데,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재제(鄭載濟), 양성현감(陽城縣監) 이빈(李憤), 부안현감(扶安縣監) 성진(成瑨), 가주서(假注書) 이만령(李萬齡), 기사관(記事官) 최석항(崔錫恒)·정제태(鄭齊泰)가 앞뒤로 입시(入侍)하였다. 지겸(持謙)이 나아가 말하기를, "수령들은 앞으로 나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 하라."라고 하였다. 재제(載濟)가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재제(鄭載濟)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력(履歷)이 어찌 되는가?"라고 말했다. 재제(載濟)가 말하기를, "일찍이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을 지내고 이 직책을 제수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풍재(風災)를 입어 농사가 매우 흉년이라 하였다. 또 바다 건너 절도(絶島)이니 왕화(王化)를 입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어루만지고 보살피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정재제, 제주판관, 제주목사, 하직.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二月 十四日 丁亥

○ …… 鄭載禧, 讀濟州印僞造罪人高雲俊·朴繼云推案. 上曰, 大臣之意, 何如? 壽恒曰, 印信僞造明白, 更無可疑, 而繼云則與之同幾, 則似無異同, 而但隨參於雲俊, 未知律文之如何耳. 鼎重曰, 雲俊, 亦何可容貸也? 德遠曰, 此當依律處之, 而但自前印信僞造, 亦分首從而處之. 先王, 嘗以爲手自僞造者, 當斬, 同參者, 或減死矣. 上曰, 法文, 無隨從竝殺之文矣. 九萬曰, 首從分明, 則區別處之, 似宜矣. 鼎重曰, 近來如此用律, 雖無法文, 或有受敎矣. 上曰, 近來徙民逃亡, 有隨從區別之法, 此亦可以爲明證也. 泰周·龍翼·聖齊·信圭·昱·堦·敏敍·柚·杓·翮·範華·純·墜·錫翼·鎭龜·泰東·玧·頤命曰, 法外, 更無可達矣. 上曰, 姑待三覆, 更議處之, 可也. …….

❖ 숙종 8년(1682) 임술년 12월 14일(정해)

□ 제주인(濟州印)을 위조한 죄인의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전략〉 정재희(鄭載禧)가 제주인(濟州印)을 위조한 죄인 고운준(高雲俊)·박계운(朴繼云)의 추안(推案)을 낭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수항(壽恒)이 말하기를, "인신(印信)을 위조한 것이 명백하니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계운(繼云)은 같은 자리에 함께 했으니 서로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만, 운준(雲俊)을 따라서 참여했으니 율문(律文)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중(鼎重)이 말하기를, "운준 또한 어찌 용서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덕원(德遠)이 말하기를, "이것은 마땅히 율(律)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단, 예전부터 인신위조(印信僞造)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누어 처리해 왔습니다. 선왕(先王)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손수 위조한 자는 참(斬)하는 것이 마땅하고, 동참한 자는 사형에서 감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문에는 수종(隨從)을 함께 죽인다는 문장이 없다."고 하였다. 구만(九萬)이 말하기를, "수범과 종범이 분명하니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중(鼎重)이 말하기를, "근래에 이와 같은 율(律)을 적용할 때에는 비록 법문이 없더라도 혹은 수교(受敎)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사민(徙民)들의 도망에 대해 수종(隨從)을 구별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 또한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태주(泰周)·용익(龍翼)·성제(聖齊)·신규

(信圭)·정(晸)·계(堦)·민서(敏敍)·유(柚)·표(杓)·빈(翻)·범화(範華)·순(純)·무(婺)·석익(錫翼)·진귀(鎭龜)·태동(泰東)·윤(玧)·이명(頤命)이 말하기를, "법외(法外)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삼복(三覆)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인, 인신위조, 고운준, 박계운, 정재희.

❖ 康熙 二十一年 壬戌 十二月 十五日 戊子

○ 徐文重, 以禮曹意啓曰, 濟州牧使封進, 去十月令宗廟·永昭殿·翼陵薦新金橘·柑子等, 今始來到, 宗廟·永昭殿, 來十六日, 當爲薦進, 而翼陵薦新, 則今已停止, 依例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8년(1682) 임술년 12월 15일(무자)

□ 종묘(宗廟) 등에 천신(薦新)할 금귤(金橘) 등이 제주(濟州)에서 올라왔으므로 이의 처리를 논의하는 예조의 계

○ 서문중(徐文重)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지난 11월 월령(月令)으로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익릉(翼陵)에 천신(薦新)할 금귤(金橘)·감자(柑子) 등이 지금 비로소 당도했습니다. 종묘·영소전은 오는 16일 마땅히 천신하되, 익릉의 천신은 지금 이미 정지했으니 관례대로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봉입(捧入)하게 한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서문중, 천신, 금귤, 감자, 사옹원.

1683年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一月 二十九日 辛未

○ 備邊司啓曰, 命下矣. 臣等, 仰體聖上軫念民隱之至意, 謹與該掌諸臣, 裁量講定. 諸般身役, 則庚申査減後, 逃故之有近族, 不得永蠲者, 辛酉·壬戌兩年條, 許令蠲除. 還上逋欠, 則取考會案, 各邑未捧年條, 各自不同, 有難盡爲蕩減, 宜以慶尙道辛酉條未捧, 全羅道丙辰·己未條未捧, 濟州己未·庚申條未捧, 公洪道丁巳·戊午條未捧, 江原道辛亥·癸丑·甲寅·乙卯·丙辰·丁巳·戊午·己未條未捧, 咸鏡道己未·庚申條未捧, 平安道甲寅·乙卯·丙辰條未捧, 管餉丁未·己酉·庚戌·辛亥·壬子·甲寅條未捧, 各屯丁未·戊申·庚戌·辛亥·壬子條未捧, 黃海道丁巳·戊午條未捧, 管餉壬子·丁巳條未捧, 各屯壬子·戊午條未捧, 京畿丁未·戊申·乙卯·丙辰條未捧, 竝令蕩滌, 而毋論元會管餉, 各屯·監營, 統營, 兵·水營各穀, 依此抄出年條, 一體施行. 軍餉, 則勿論京外所管, 皆不得擧論, 開城府則元穀旣少, 而庚申未捧, 尙有一半, 若又許減, 則適足以啓其倖蠲之心, 徒增後日之弊, 今姑置之, 似當, 以此分付該曹與諸道, 何如? 傳曰, 依爲之.

❖ 숙종 9년(1683) 계해년 1월 29일(신미)

□ 백성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제주 등의 환상 포흠의 탕감 등을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게 아뢰기를, “명을 내리셨기에 신 등은 성상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뜻을 받들어 삼가 관장하는 해당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헤아리고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반 신역(諸般身役)은 경신년을 조사하여 감한 후에 도망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영구히 감해줄 수 없는 경우는 신유년과 임술년 두 해의 것을 면제하도록 하십시오. 환상(還上)에서 포흠(逋欠)이 난 것은 회안(會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각 읍이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연조(年條)가 각자 같지 않아서 모두 탕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경상도가 신유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전라도가 병진년과 기미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제주가 기미년과 경신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공홍도가 정사년과 무오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강원도가 신해·계축·갑인·을묘·병진·정사·무오·기미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함경도가 기미년과 경신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평안도가 갑인·을묘·병진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과 관향(管餉)이 정미·기유·경술·신해·임자·갑인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각둔(各屯)이 정미·무신·경술·신해·임자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황해도가 정사년과 무오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 관향이 임자년과 정사년에 거둬들이지 못한 것, 각둔이 임자년과 무오년에 거둬들이지 못한 것, 경기가 정미·무신·을묘·병진년 조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을 아울러 탕감하도록 하되, 원회(元會)와 관향, 각둔, 감영, 통영, 병·수영의 각 곡식을 막론하고 이에 의거하여 연조를 뽑아내어 일체 시행할 것이며, 군향(軍餉)은 경외(京外) 소관을 막론하여 모두 거론할 수 없습니다. 개성부는 원곡(元穀)이 적고, 경신년에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아직 절반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견감해 준다면 그 견감을 바라는 마음을 열어주어 훗날의 폐단만 더해 줄 것이니 지금은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해조(該曹)와 여러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49]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환상, 포흠, 탕감.

149) 《비변사등록》 1683년(숙종 9) 1월 27일자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二月 十九日 辛卯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 去十二月令薦新, 乳柑·洞庭橘, 今始上來, 宗廟·永昭殿·山陵, 竝爲封進矣. 宗廟·永昭殿則明曉薦進事, 分付, 而山陵薦新, 則旣已停止, 依前例, 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出禮曹謄錄】

❖ 숙종 9년(1683) 계해년 2월 19일(신묘)

□ 산릉(山陵) 천신(薦新)이 이미 정지되었기에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12월령 천신인 유감과 동정귤을 전례대로 사옹원에서 거두어들이도록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에서 봉(封)한, 지난 12월령 천신인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이 지금 올라와서 종묘와 영소전(永昭殿), 산릉에 모두 봉진하였습니다. 종묘와 영소전에는 내일 새벽에 천진(薦進)할 것을 분부하였지만, 산릉의 천신은 이미 정지하였기에 전례대로 사옹원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라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천신, 유감, 동정귤, 사옹원.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二月 二十八日 庚子

○ 禁府啓曰, 以濟州牧使狀啓, 前敎官鄭惟嵩, 及第吳湜·文榮後·金碾等, 移本府處之事, 命下矣. 鄭惟嵩·文榮後·金碾, 則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吳湜, 則時在濟州,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出禁府謄錄】

❖ 숙종 9년(1683) 계해년 2월 28일(경자)

□ 정유설(鄭惟嵩) 등을 즉시 잡아다 가두었음을 보고하면서 오식(吳湜)은 나장을 보내어 잡아 오기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의 장계에, 전 교관 정유설과 급제 오식(吳湜)·문영후(文榮後)[150]·김연(金碾) 등을 본부(本府)로 옮겨 처리하는 일에 대해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유설·문영후·김연은 본부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기에 즉시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오식은 지금 제주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 오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금부등록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정유설, 오식, 문영후, 김연.

150) 문영후(1628~1684): 본관 남평. 자 인경(仁卿).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오수찰방, 곡성현감 역임.

❖ 康熙 二十二年 癸亥 六月 十六日 丁亥

○ 禮曹啓曰, 卽接典牲署所報, 則本署留養黑牛十一首內, 今番宗廟親祭時五首, 上諡大祭時三首封進, 餘存只三首, 而前頭宗廟·永寧殿秋享大祭時, 實豫差竝七首, 社稷大祭時, 實豫差竝二首, 宗廟冬享大祭時, 實豫差竝四首, 合實入十三首內, 不足十首. 祭享之牛, 數三朔別養, 肥澤然後, 可以封進, 而濟州·巨濟元貢牛, 秋後出來, 故每不及於冬享大祭時, 不足牛十首, 請依前例, 自戶曹貿給 云. 前頭封進不足之牛, 至於十首之多, 若不豫爲變通, 則莫重祭享, 必有臨時苟簡之患, 依所報, 令該曹, 卽爲貿得, 以爲無弊繼用之地, 何如? 傳曰, 允.【出戶曹謄錄】

❖ 숙종 9년(1683) 계해년 6월 16일(정해)

□ 종묘와 영녕전 추향대제 등에 봉진할 소가 부족하고, 제주(濟州) 등의 원공우(元貢牛)가 가을 후에 나오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즉시 사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생서(典牲署)에서 보고한 것을 바로 접하니, '본서에서 유양(留養)하는 흑우 11마리 중에서 금번 종묘에서 친제(親祭)할 때 5마리와 상시대제(上諡大祭) 때 3마리를 봉진해서 남아있는 것이 3마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묘와 영녕전(永寧殿) 추향대제 때 실차(實差)와 예차(豫差)를 아울러 7마리, 사직대제(社稷大祭) 때 실차와 예차를 아울러 2마리, 종묘 동향대제 때 실차와 예차를 아울러 4마리, 합하여 실제로 들어가는 13마리 안에 10마리가 부족합니다. 제향에 쓰는 소는 수삼 개월을 별도로 길러 살을 찌운 후에야 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와 거제의 원공우(元貢牛)는 가을 후에나 나옵니다. 때문에 매번 동향대제 때에 이르지 못하니, 부족한 소 10마리를 청컨대 전례대로 호조(戶曹)에서 사서 지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봉진에 부족한 수가 10마리로 많으니, 만약에 미리 변통하지 못한다면 막중한 제향에 필시 때에 임하여 소홀히 하는 우환이 있을까 합니다. 보고한 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즉시 사게 하여 폐단 없이 계속 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호조등록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전생서, 원공우, 제향.

❖ 康熙 二十二年 癸亥 閏六月 十二日 壬子

○ 右議政金錫胄請對入侍. 入侍時, … 又所啓, 臣昨伏見濟州牧使愼景尹啓本, 其中所載宣諭御史李東郁事, 殊極可駭矣. 東郁, 旣已下去之後, 以濟州罪人一體句管疏釋之意, 自政院, 追下有旨, 則東郁, 所當更稟于朝廷, 仍與監司相議, 取其營上文案, 直爲疏釋, 雖自朝廷使之入往, 亦當入往宣諭以來, 而中間掩置, 都不擧論, 還京之後, 始稱忘却, 身爲御史, 旣奉有旨, 此豈忘却之事耶? 不可以事在旣往, 而因循假貸, 無所警責, 全羅道宣諭御史李東郁, 請罷職不敍, 以爲奉命慢棄者之戒. 上曰, 依爲之. …. 【出諫院朝報】

❖ 숙종 9년(1683) 계해년 윤 6월 12일(임자)

□ 김석주(金錫胄)가 입시하여 제주(濟州) 죄인을 담당하여 너그러이 처리하라는 유지(有旨)를 망각한 전라도선유어사 이동욱(李東郁)의 파직불서(罷職不敍) 등에 대해 논의함

○ 우의정 김석주[151]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제주목사 신경윤(愼景尹)[152]의 계본(啓本)을 살펴보다가 그 안에 실려있는 선유어사 이동욱(李東郁)[153]의 일로 매우 지극히 놀랐습니다. 동욱이 이미 내려간 후에 제주 죄인에 대한 일체를 담당하여 너그러이 처리하여 풀어주라는 뜻으로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를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동욱은 마땅히 다시 조정에 품고(稟告)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감사와 서로 의논하여 영(營)에서 올린 문안을 가지고 곧바로 처리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조정에서 시켜서 들어가게 했지만, 또한 마땅히 들어가서 선유하고 와야 하는데도 중간에 숨겨두고는 모두 거론하지 않다가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 비로소 잊어버렸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사로서 즉시 유지를 받들어야지 이것이 어찌 잊어버릴 일입니까? 기왕의 일이라고 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경계하여 꾸짖는 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선유어사 이동욱을 청컨대 파직하여 서용(敍用)하

---

151) 김석주(1634~1684): 본관 청풍(淸風). 자 사백(斯百). 호 식암(息庵). 시호 문충(文忠).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이조좌랑, 도승지, 우의정 역임. 저서《식암집》.

152) 신경윤(1624~?): 본관 거창(居昌). 자 중임(仲任).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김해부사, 제주목사, 동지중추부사 역임.

153) 이동욱(1646~1708): 본관 여주(驪州). 자 자문(子文). 호 한천(寒泉). 1676년(숙종 2) 문과 급제. 안주목사, 도승지, 예조참판 역임.

지 말도록 하여 봉명(奉命)을 게을리 하는 자의 경계로 삼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54] 〈하략〉. 【간원조보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김석주, 제주 죄인, 신경윤, 어사, 이동욱.

154)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윤6월 12일조에 본 기사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二年 癸亥 閏六月 二十六日 丙寅

○ 請對時, 右承旨洪萬鍾所啓, 本院郎廳, 方以假官差出, 事甚苟簡. …… 昔在宣祖朝, 故臣金應南, 以承旨, 斥補濟州, 下敎曰, 予愛金應南之勤幹, 常以能察職, 今乃締結朋比, 予實痛之, 若於日後, 改過自新, 則未必不更爲親寵也. 其後應南, 官至左相, …….【出諫院朝報】

❖ 숙종 9년(1683) 계해년 윤 6월 26일(병인)

□ 선조 때 김응남(金應南)의 제주(濟州) 좌천 인용

○ 청대할 때 우승지 홍만종(洪萬鍾)이 아뢴 바, 본원의 낭청이 바야흐로 가관(假官)으로 차출되어 일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중략〉 예전 선조 때에 가까운 신하 김응남(金應南)이 승지로써 제주(濟州)에 쫓겨 갔는데,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김응남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항상 직무를 잘 수행함을 사랑했는데, 지금 이에 붕당을 맺어 자기편을 두둔하니 내가 실로 통탄하였다. 만약 뒷날에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면 곧 가까이 총애함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 김응남은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하략〉.【간원조보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9〉

△ 주제어: 선조, 김응남, 제주.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七月 二日 辛未

○ 司僕寺啓曰, 濟州牧使愼景尹遞任進上馬三匹上來, 依前例, 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出諫院朝報】

❖ 숙종 9년(1683) 계해년 7월 2일(신미)

□ 신경윤(愼景尹)의 환임진상마 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올리면서 내구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 신경윤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155] 3필이 올라왔습니다. 전례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면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간원조보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신경유, 진상마, 내구.

155) 탈초본에는 환임진상마(還任進上馬)로 되어 있으나 원문 대조 결과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가 옳으므로, 역주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七月 十八日 丁亥

○ 晝講時, 領府事金壽興所啓, 濟州今年歲貢馬先運, 今纔入來, 而非但疲瘠太甚, 中路故失之類, 比前倍多, 此由於沿路各官, 不能善飼之致, 而亦不能趁時替受, 致有此弊, 不可無警責之道. 公洪·全羅兩道監司, 爲先推考, 沿路各邑官吏, 使之各別嚴責, 何如? 上曰, 依爲之.【出司僕謄錄】

❖ 숙종 9년(1683) 계해년 7월 18일(정해)

□ 주강에 김수흥(金壽興)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서 올라오는 세공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홍과 전라 양도의 감사를 우선 추고(推考)하고, 연로 각읍의 관리를 엄책(嚴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 때 영부사 김수흥[156]이 아뢰기를, "제주에서 금년 세공마(歲貢馬) 선운(先運)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쩍 말라 야윈 것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고실(故失)한 무리가 전에 비해 배나 많습니다. 이것은 연로(沿路)의 각관(各官)이 잘 먹이지 못한 까닭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일찍이 교대로 받지 않아서 마침내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경계하여 꾸짖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홍(公洪)과 전라 양도의 감사를 우선 추고(推考)하고, 연로 각읍의 관리를 각별히 엄히 꾸짖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사복등록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세공마, 공홍, 전라, 감사, 추고.

---

156) 김수흥(1626~1690): 본관 안동(安東). 자 기지(起之). 호 퇴우당(退憂堂)·동곽산인(東郭散人). 시호 문익(文翼). 1655년(효종 6) 문과 급제. 도승지, 호조판서, 영의정 역임.

❖ 康熙 二十二年 癸亥 七月 二十三日 壬辰

○ 尹嘉績,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再運歲貢馬二百匹, 今纔入來, 六匹則中路病留, 一匹則闖失, 一百九十三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9년(1683) 계해년 7월 23일(임진)

□ 제주(濟州)의 재운 세공마가 도착하였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윤가적(尹嘉績)[157]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의 재운 세공마(濟州再運歲貢馬) 200필이 지금 막 들어 왔는데, 6필은 중간에서 병이 들어 지체되고, 1필은 잃어버렸기에 193필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윤가적, 세공마, 별단.

157) 윤가적(1642~?): 본관 칠원(漆原). 자 여휴(汝休). 1664년(현종 5) 문과 급제. 지평, 승지, 공홍관찰사 역임.

❖ 康熙 二十二年 癸亥 十二月 二十八日 乙丑

○ 禮曹啓曰, 月令薦新之物, 殯殿竝爲□進事, 移文知委各道矣. 濟州牧使封進去十月令宗□□·永昭殿薦新, 唐金橘·柑子, 及今月令薦新, 乳柑·洞庭橘等, 今日入來, 當於明日薦進, 而殯殿, 則無所封進, 行會之未及到彼, 勢所固然. 取考前例, 則甲寅□月令, 濟州牧所封靑橘, 以王大妃殿封進, 仍爲薦新, 則殯殿, 今亦以王大妃殿所封, 唐金橘·柑子·乳柑·洞庭橘, 明日兼薦殯殿之意, 敢啓. 傳曰, 知道.【出禮曹謄錄】

❖ 숙종 9년(1683) 계해년 12월 28일(을축)

□ 왕대비전에 봉(封)한 당금귤 등을 빈전에도 겸하게 올리게 하도록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월령(月令)으로 천신(薦新)하는 물건을 빈전(殯殿)에도 아울러 봉진(封進)하도록 이문(移文)하여 각 도에 알렸습니다. 제주목사가 봉진한 지난 10월령 종묘와 영소전에 천신하는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 및 금월령 천신인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 등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마땅히 내일 올려야 하는데, 빈전에는 봉진할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공문이 미처 그곳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실로 사정이 그러해서입니다. 전례를 참고한다면, 갑인년 □월령으로 제주목사가 봉한 청귤(靑橘)을 왕대비전에 봉진한 것으로 천신한 적이 있습니다. 빈전인 경우, 지금 또한 왕대비전에 봉한 당금귤·감자·유감·동정귤을 가지고 내일 빈전에 겸하여 올리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거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9〉

△ 주제어: 월령, 당금귤, 감자, 유감, 동정귤.

168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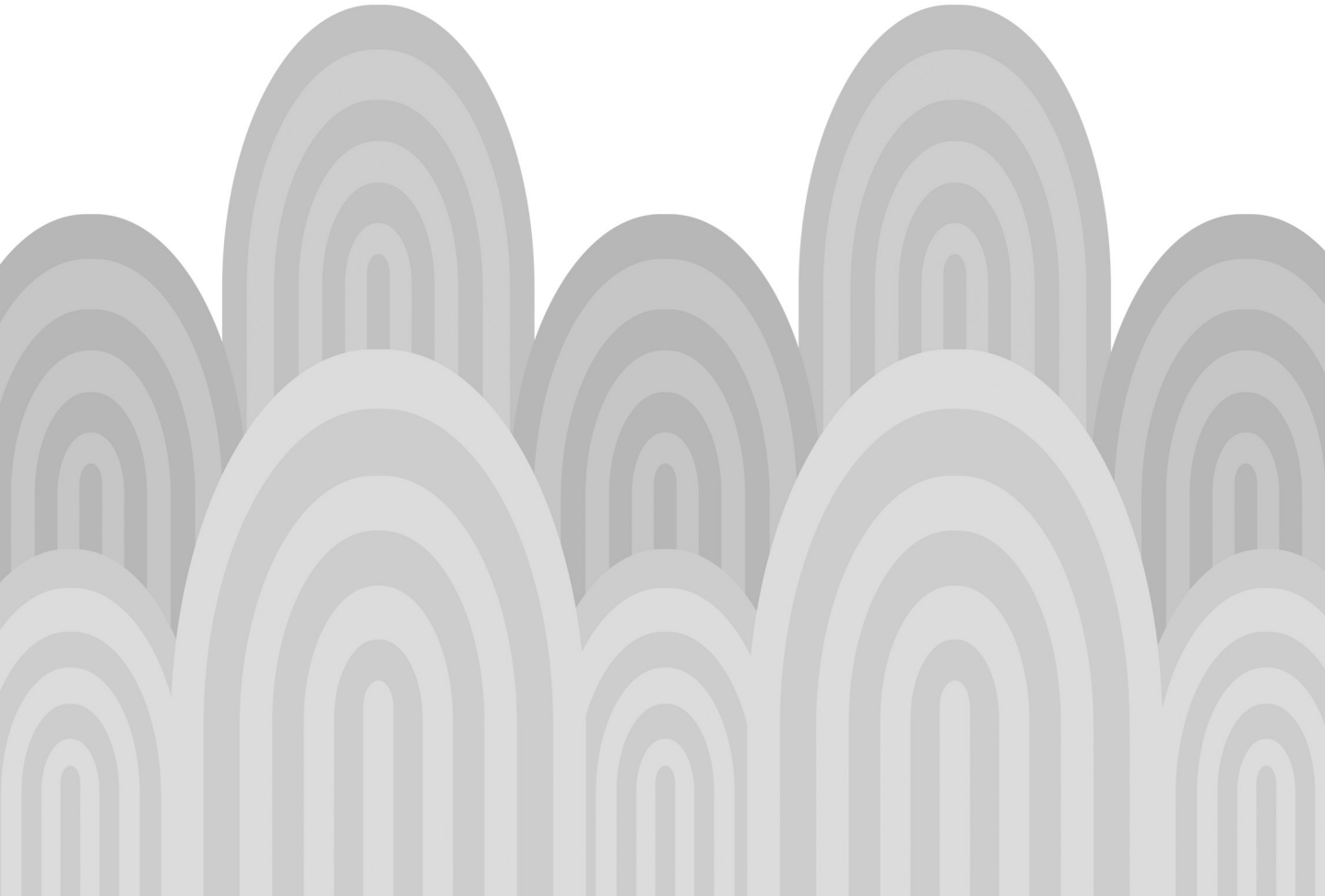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一月 二十二日 戊子

○ 去癸亥秋冬等褒貶, 柔遠僉使車好胤, 在德萬戶丁戒信, 古豐山萬戶鄭邦彦, 甫老知權管宣舜龍, 大靜縣監鄭昌會, 以上, 中. 豐山萬戶李蔓, 玉連萬戶李君錫, 黃拓坡權管權宗南, 西小羅萬戶蔡興男, 以上, 下.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월 22일(무자)

□ 계해년(癸亥年)의 추동등(秋冬等) 포폄(褒貶) 성적

○ 지난 계해년(癸亥年) 추동등(秋冬等) 포폄(褒貶)에서, 영원첨사(柔遠僉使) 차호윤(車好胤), 재덕만호(在德萬戶) 정계신(丁戒信), 고풍산만호(古豐山萬戶) 정방언(鄭邦彦), 보로지권관(甫老知權管) 선순룡(宣舜龍),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창회(鄭昌會), 이상은 중(中)을 받았다. 풍산만호(豐山萬戶) 이만(李蔓), 옥련만호(玉連萬戶) 이군석(李君錫), 황척파권관(黃拓坡權管) 권종남(權宗南), 서소라만호(西小羅萬戶) 채흥남(蔡興男), 이상은 하(下)를 받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포폄, 대정현감, 정창회.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九日 乙巳

○ 都政. 吏批, 以權傛爲典牲主簿, …… 金世亮爲大靜縣監, …… 金世龜爲濟州牧使, …….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9일(을사)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시행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시행하였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권용(權傛)을 전생주부(典牲主簿)로 삼고, 〈중략〉 김세량(金世亮)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고, 〈중략〉 김세귀(金世龜)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도목정사, 김세량, 김세귀, 대정현감, 제주목사.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十三日 己酉

○ 濟州牧使, 以金鼎泰等六人, 溘死事狀啓. 傳曰, 溘死人等, 令本州各別, 恤典擧行.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13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6인의 익사를 보고하는 장계(狀啓)를 올림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김정태(金鼎泰) 등 6인이 물에 빠져 죽은 일 때문에 장계(狀啓)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이들에 대해 본주(本州)로 하여금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정태, 장계, 휼전, 제주목사.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十七日 癸丑

○ 政院啓曰, 今十三日入侍時, 有濟州牧使愼景尹推考之命, 而進上柑子, 以山橘代封, 而甚爲體小, 且多腐傷爲敎, 而落漏於擧行條件中, 有若直以柑子封進而體小者然, 其疏漏甚矣. 擧行條件付標以入, 臣以其日入侍承旨, 矇然不察, 以經累日, 不勝惶恐. 傳曰, 日昨引見時, 以近來濟州薦新及進上柑子, 甚爲體小, 至於今年, 則以山橘代封者, 幾至三分之二, 雖因風災水旱, 以致如此云, 而若能着實栽種培養, 則豈有如是苟簡之理哉? 殊涉未安, 牧使推考, 自禮曹各別申飭事, 下敎矣. 注書之記事, 旣如是疎漏, 追後付標處, 亦未免相左, 以此改書以入, 推考傳旨中, 亦爲付標.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17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산귤(山橘)이 작고 상한 것에 대한 거행조건(擧行條件)에 누락된 내용이 많아 이를 부표(付標)해서 들인다는 승정원(承政院)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번 13일에 입시(入侍)했을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신경윤(愼景尹)을 추고(推考)하라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할 감자(柑子)를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하게 했는데, 매우 크기가 작고 또 부패하여 상한 것이 많았다는 전교 내용이 거행조건(擧行條件)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곧바로 감자를 봉진했는데, 크기가 작았다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성글고 빠진 것이 매우 심하니, 거행조건에 부표(付標)하여 들입니다. 저는 그날 입시(入侍)한 승지(承旨)로서, 어리석게도 살피지 못한 채 며칠이나 경과했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엊그제 인견(引見)할 때, ‘근래 제주에서 천신(薦新) 및 진상(進上)으로 올리는 감자(柑子)가 매우 크기가 작고, 금년에는 산귤로 대신 봉진한 것이 거의 3분의 2에 이른다. 비록 풍재(風災)와 수한(水旱)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나, 만일 착실하게 씨앗을 심고 길렀다면 어찌 이와 같이 구차해 질 까닭이 있겠는가? 매우 편치 않으니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고 예조에서 각별히 신칙하라’고 하교하였다. 주서(注書)가 일을 기록한 것이 이미 이처럼 성글고 빠졌고, 추후에 부표한 곳도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했으니 고쳐 써서 들이고 추고한 전지(傳旨) 중에도 역시 부표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경윤, 천신, 진상, 산귤, 거행조건.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十八日 甲寅

○ 禮曹啓曰, 濟州牧使愼景尹狀啓, 牛疫, 祭享黑牛, 亦難充數云, 故司僕寺所屬牧場黑牛, 令本府量宜分牧於湖西諸邑事, 定奪行會矣. 卽見全羅監司李師命移文, 則順天白也島, 黑牛九首, 定色吏軍人, 使之領去矣. 所經一路, 牛疫大熾, 黑牛九首, 相繼染痛, 連以致斃, 無一首餘存云. 雖是牛疫熾盛之日, 豈無方便救活之道, 而不謹救護, 以致沒數致斃之狀, 殊甚未安. 所經各邑守令, 竝爲推考, 領來色吏, 令本道從重治罪,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18일(갑인)

□ 제향(祭享)에 사용할 흑우(黑牛)를 우역(牛疫)으로 죽게 한 관리를 치죄(治罪)해 달라고 청하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신경윤(愼景尹)의 장계(狀啓)에, 우역(牛疫) 때문에 제향(祭享)에 쓸 흑우(黑牛)의 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복시(司僕寺) 소속 목장의 흑우를 본부(本府)로 하여금 헤아려서 호서(湖西) 제읍(諸邑)의 목장에서 나누어 방목하도록 재가를 받아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전라도 관찰사 이사명(李師命)이 이문(移文)한 것을 보니, 순천(順天) 백야도(白也島)의 흑우 9마리를 색리군인(色吏軍人)을 정해 끌고가게 했습니다. 어느 길을 지나다가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흑우 9마리가 줄지어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연달아 죽고 1마리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우역이 치성(熾盛)한 날이라 하더라도 어찌 구해낼 방도가 없었단 말입니까? 삼가 구해서 보호하지 못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이 매우 미안할 따름입니다. 지나간 각 읍의 수령을 모두 추고(推考)하고, 끌고 온 색리(色吏)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무거움을 따져서 죄를 다스려 훗날의 징계 방편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경윤, 우역, 흑우, 백야도, 이사명.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十八日 甲寅

○ 上御夜對廳受灸, …… 壽興曰, 臺諫, 以公洪監司蘇斗山事, 論啓矣. 斗山, 出身之後, 出入臺閣, 不無風采之可觀, 且有才局, 故累著大邑, 治績著稱, 至於出牧濟州, 未聞有不廉之誚, 而臺諫所論如此, 設使果有浮謗, 前日被彈之後, 除授江陵, 則秋毫不犯, 皆稱善治, 國家用人之道, 只當取其長處, 何可永棄而不用乎? 但公洪前監司, 以其身病, 不得行公者累月, 今又罷職, 尤無察任之理, 各邑文報, 民人牒訴, 無不積滯云, 本道之事, 殊甚可慮. 蘇斗山, 旣已被彈, 設或赴任, 必無彈壓之勢, 今姑改差, 差出其代, 恐合事宜矣. 上曰, 諸大臣, 皆言蘇斗山, 可合擢用, 斗山, 曾無入侍之事, 雖未詳其爲人, 欲試其才, 累畀重任, 而臺諫每每彈論, 殊極已甚. 且朝家用人之道, 捨短取長, 實合事理, 豈可以一番浮謗, 永棄而不用乎? 但旣被臺彈之後, 雖或停論, 必不肯赴任, 本道之事, 亦甚可慮. 公洪監司蘇斗山, 今姑改差, 東萊府使仍任, 可也. …….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18일(갑인)

□ 야대청(夜對廳)에서 소두산(蘇斗山)의 개차(改差) 등을 논의함

○ 임금이 야대청(夜對廳)에 납시어 뜸을 떴다. 〈중략〉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 "대간이 공홍감사(公洪監司) 소두산(蘇斗山)[158]의 일을 논계(論啓)하였습니다. 두산(斗山)은 무과 출신의 후손으로, 대각(臺閣)을 출입하며 볼만한 풍채(風采)는 없었으나 또 재국(才局)이 있었으므로, 여러 차례 대읍(大邑)에 기용되어 치적이 드러나고 칭송받았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나가게 될 때까지 청렴하지 않다는 비방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간이 이와 같이 논박하였습니다. 설사 과연 무단한 비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탄핵을 입은 이후 강릉(江陵)에 제수되자 조금도 범한 것이 없어 모두 잘 다스렸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도(道)는 단지 그 장점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영구히 버리고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 공홍도(公洪道)의 전임 관찰사가 신병(身病) 때문에 공무를 보지 못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또 파직하니, 책임을 맡아 살필 이치가 더욱 없어지고 각 고을의 문보(文報)와 민인들의 첩소(牒訴)가 적체되었다고 합니다. 본도(本道)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소두산은 이미 탄핵을

158) 소두산(1627~1693): 본관 진주(晉州). 자 망여(望如). 호 월주(月洲). 1660년(현종 1) 문과 장원급제.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나주목사 등 역임.

당했으니 설사 혹 부임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여 그 후임을 차출하는 것이 일의 편의에 맞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대신들이 모두 소두산을 뽑아 쓸 만하다고 하였다. 두산(斗山)이 일찍이 입시(入侍)한 일이 없어 비록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 그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중임(重任)을 여러 차례 맡겼다. 그런데 대간이 매번 탄핵하고 논박하는 일이 매우 심하다. 또한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도(道)는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어찌 한 번의 뜬 비방으로 영원히 버리고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 이미 대간의 탄핵을 입은 후이니 비록 논박을 멈추더라도 필시 부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니, 본도(本道)의 일이 또한 매우 염려스럽다. 공홍감사 소두산은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고 동래부사(東萊府使)는 잉임(仍任)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소두산, 공홍감사, 김수흥, 제주목사.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十九日 乙卯

○ 義禁府啓曰, 以濟州牧使狀啓, 刑曹粘目, 前大靜縣監鄭昌會, 移本府處置事, 允下矣. 鄭昌會, 自任所時未上來,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以上燼餘】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19일(을묘)

□ 정창회(鄭昌會)에게 나장(羅將)을 파견해서 붙잡아올 것을 청하는 의금부(義禁府)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형조에서 점련하여,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창회(鄭昌會)를 본부(本府)로 옮겨 처리하는 일에 대해 계목으로 보고하니 이를 윤허하셨습니다. 정창회가 임소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관례에 따라 의금부의 나장(羅將)을 보내 붙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정창회, 대정현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二十一日 丁巳

○ 淸城府院君金錫胄箚子, 伏以, …… 往在先朝, 曾有人, 以今濟州牧使愼景尹, 爲見今左相閔鼎重家葬地, 宜塞淸路, 至發於上聞文字中, 左相, 爲陳看山事始末, 且暴與景尹素相親厚狀, 其時聖批, 至以事誠出於朋友交厚間, 無以爲嫌爲敎, 今臣, 與構相親厚, 卽國人之所共知也. …… 伏願聖明, 鑑此危懇, 早許罷退, 大歸田里, 俾得滌盪脫節, 以選古人明哲之訓, 則其於聖朝, 亦未必不爲敦節礪廉之一助也. 臣不勝激切屛營之至.【批答見上】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21일(정사)

□ 민정중(閔鼎重)과 신경윤(愼景尹)의 관계를 예로 들어 자신을 변명한 김석주(金錫胄)의 차자

○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중략〉 지난 앞 조정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현 제주목사(濟州牧使) 신경윤(愼景尹)입니다. 그가 현 좌상 민정중(閔鼎重) 집안의 장지(葬地)를 보니 청로(淸路)가 막혔기에, 위에 올리는 보고 문서에 그 내용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좌상은 간산(看山)한 일의 시말(始末)을 진술하고, 또 경윤(景尹)과 본래 서로 친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때 임금께서 비답으로, 일이 붕우교후(朋友交厚) 사이에서 나온 것이니 인혐하지 말라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저는 한구(韓構)와 서로 사이가 돈독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이와같은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주셔서 조속히 파직하여 물러나 전리(田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저로 하여금 기둥을 씻어서 옛 사람의 밝고 지혜로운 교훈을 고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성조(聖朝)에도 또한 예절을 돈독히 하고 염치를 닦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고 황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비답은 위에 있음】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주, 한구, 민정중, 신경윤.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二十七日 癸亥

○ 以李翊相爲大司憲, …… 孫愈爲濟州敎養官, …… 曺武勛爲學正, 理山郡守黃震瑞, 加通政.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27일(계해)

□ 손유(孫愈)를 제주교양관(濟州敎養官)에 제수함

○ 이익상(李翊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고, 〈중략〉 손유(孫愈)를 제주교양관(濟州敎養官)으로 삼고, 〈중략〉 조무훈(曺武勛)을 학정(學正)으로 삼았다. 이산군수(理山郡守) 황진서(黃震瑞)를 통정(通政)으로 가자(加資)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손유, 제주교양관, 이익상, 황진서.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二月 二十八日 甲子

○ 又啓曰, 憲府之官, 或引嫌或有病, 時無行公之員, 開坐無期, 而未署經守令, 今至於十餘處. 其中旌義下人上來留京, 已至數朔, 絶島之人, 飢餒之患, 尤爲可慮, 宜有變通之道, 敢此仰稟. 傳曰, 備員署經, 其勢未易, 竝除署經發送.

❖ 숙종 10년(1684) 갑자년 2월 28일(갑자)

□ 서경(署經)을 하지 못해 수령들이 부임하지 못하자 변통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헌부의 계

○ 또 아뢰기를, "사헌부 관원이 혹은 인혐(引嫌)하거나 혹은 병이 있어 지금 공무를 볼 관원이 없어 언제 개좌(開坐)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처 서경(署經)을 하지 못한 수령이 지금 10여 군데에 달합니다. 그 중 정의(旌義)의 하인이 올라와 서울에 머문 지 이미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절도(絶島)에서 온 사람이 굶주릴 우려가 있으니 더욱 염려됩니다. 변통할 방도를 쓰는 것이 마땅하여, 감히 이와 같이 우러러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인원을 갖추어 서경하는 것은 형세상 쉽지 않다. 모두 서경을 생략하고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서경, 정의, 개좌.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三月 一日 丁卯

○ 下直, 江襄都事兪得一, …… 大靜縣監金世亮, …… 甑山縣令朴尙廉.

❖ 숙종 10년(1684) 갑자년 3월 1일(정묘)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량(金世亮) 등이 하직함

○ 강양도사(江襄都事) 유득일(兪得一),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량(金世亮), 〈중략〉 중산현령(甑山縣令) 박상렴(朴尙廉)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세량, 대정현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三月 二日 戊辰

○ 下直, 旌義縣監金夏世.

❖ 숙종 10년(1684) 갑자년 3월 2일(무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하세(金夏世)가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하세(金夏世)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하세, 정의현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三月 十九日 乙酉

○ 下直, 江襄監司申琓, 濟州牧使李世龜, …… 加里浦僉使金重元.

❖ 숙종 10년(1684) 갑자년 3월 19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세귀(李世龜) 등이 하직함

○ 강양감사(江襄監司) 신완(申琓),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세귀(李世龜), 〈중략〉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김중원(金重元)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귀, 제주목사, 신완, 김중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三月 二十五日 辛卯

○ 禮曹啓曰, 濟州牧使封進今三月令宗廟·永昭殿薦新靑橘, 今日入來, 當於明曉薦進, 而殯殿則亦爲封進, 殯殿朔膳中, 亦有靑橘, 以此明日因朝奠兼薦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又啓曰, 濟州牧使封進薦新靑橘, 明日薦進之意, 纔已入啓矣. 卽接奉常寺所報, 則薦新靑橘, 開封看品, 則竝爲腐傷云, 故臣於方開間, 亦卽看品, 則果爲腐傷, 內外乾燥, 無一介可薦者, 殯殿朔膳中靑橘, 如或完全, 則亦可推移薦進於宗廟·永昭殿, 故問於司饔院, 則無一樣腐傷爲答, 此是曾前所未有之事也. 莫重薦新之物, 本州初不擇封, 致有闕薦之擧, 事極可駭, 牧使愼景尹, 從重推考, 陪持人, 不可無不謹致傷之罪, 令攸司囚禁重治,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10년(1684) 갑자년 3월 25일(신묘)

□ 부패하고 상한 청귤(靑橘)을 봉진(封進)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처벌하도록 청하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이번 3월령의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 천신(薦新) 청귤(靑橘)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마땅히 내일 새벽에 천진(薦進)해야 하고 빈전(殯殿)에도 봉진해야 하나, 빈전의 삭선(朔膳) 중에도 청귤이 있으니 내일 조전(朝奠)을 겸하여 천진하겠다는 뜻으로 분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가 천신(薦新)으로 봉진한 청귤을 내일 천진(薦進)하겠다는 뜻을 겨우 입계(入啓)하였습니다. 지금 봉상시(奉常寺)의 보고를 보니, 천신할 청귤을 개봉하여 품질을 보았는데 모두 부패하고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어서 품질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부패하고 상했으며 안팎이 건조하여 1개도 천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빈전의 삭선 중에 있는 청귤이 만일 완전하다면 종묘·영소전에 옮겨서 천진할 수 있어 사옹원(司饔院)에 물어보았는데, 똑같이 부패하고 상한 것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천신이라는 막중한 일에 쓰일 물품을 본주(本州)에서 애초에 가려서 봉진하지 않고 천진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목사 신경윤(愼景尹)을 중한 벌에 따라 추고(推考)하시고, 배지인(陪持人)도 삼가 살피지 못하여 상하게 한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가두고 무겁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신경윤, 천신, 청귤.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四月 二十七日 壬戌

○ 有政. 吏批, 以李益壽爲典籍, …… 金尙夏爲濟州判官, …… 嚴緝爲東萊府使.

❖ 숙종 10년(1684) 갑자년 4월 27일(임술)

□ 김상하(金尙夏)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이익수(李益壽)를 전적(典籍)으로 삼고, 〈중략〉 김상하(金尙夏)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중략〉 엄집(嚴緝)을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상하, 이익수, 엄집, 이비, 제주판관.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四月 三十日 乙丑

○ 謝恩, 濟州牧官金尙夏.

❖ 숙종 10년(1684) 갑자년 4월 30일(을축)

□ 제주목관(濟州牧官) 김상하(金尙夏)가 사은함

○ 제주목관(濟州牧官) 김상하(金尙夏)가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상하, 사은.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五月 十四日 己卯

○ 大司憲尹趾善所啓, …… 又所啓, 邊倅之文武交替, 意非偶然, 而新除授濟州判官金尙夏, 爲人庸下, 曾爲北路敎養官, 到處見侮, 且多擧措之可駭者. 海外蘇殘之責, 決非此人所堪, 請濟州判官金尙夏罷職. 上曰, 依啓. …….

❖ 숙종 10년(1684) 갑자년 5월 14일(기묘)

□ 윤지선(尹趾善)이 입시하여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상하(金尙夏)의 파직(罷職) 등을 논의함

○ 대사헌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변지 수령의 문무 교체는 우연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상하(金尙夏)는 사람됨이 용렬하여, 일찍이 북로교양관(北路敎養官)이 되자 도처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해괴한 행동이 많았으니, 바다 건너 지친 백성을 살리는 직책은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주판관 김상하를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지선, 김상하, 제주판관.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五月 二十日 乙酉

○ 吏批啓曰, 新除授濟州牧判官曺挺宇子幼學夏翊, 呈狀于政院曰, 其父前在湖南, 雖不得親爲呈狀, 而祖母, 今年七十六歲, 人子情理, 勢難遠離云, 以代子呈狀, 雖違常例, 若待在遠人親呈辭狀, 欲爲處置, 則海外新迎下人之久滯, 不可不慮, 親年七十, 勿除三百里外, 自是法例, 曺挺宇濟州判官, 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10년(1684) 갑자 5월 20일(을유)

□ 76세 노모가 있는 조정우(曺挺宇)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서 교체해 줄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정우(曺挺宇)의 아들 유학(幼學) 하익(夏翊)이 승정원에 정장(呈狀)하기를, 그 아버지가 전에 호남에 있어서 비록 직접 정장(呈狀)하지는 못했으나 조모(祖母)가 금년 76세이니 아들된 정리(情理) 상 멀리 떠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신 정장한 것은 비록 상례(常例)에 어긋나나 만약 멀리 있는 이가 직접 사직서를 올려 처리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바다 건너에서 새로 하인을 맞이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체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70이면 3백리 밖에는 제수하지 않는 것이 법례(法例)이니 조정우(曺挺宇)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조정우, 제주판관, 조하익.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五月 二十六日 辛卯

○ 謝恩, 濟州判官朴昌漢, 成均博士曺武勛.

❖ 숙종 10년(1684) 갑자년 5월 26일(신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창한(朴昌漢) 등이 사은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창한(朴昌漢)[159], 성균박사(成均博士) 조무훈(曺武勛)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박창한, 제주판관, 조무훈.

159) 박창한(1642~1718): 본관 무안(務安). 자 한경(漢卿). 1678년(숙종 4) 문과급제. 사간원정언, 승지 등 역임.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六月 五日 己亥

○ 禁府照目, 前濟州判官鄭載濟矣, 常時使喚妓生, 國恤之初, 雖一併退送, 其後以衣服縫造·洗濯等事, 時或往來衙下, 而任其所爲, 不爲斥絶, 則殊無遠嫌之意, 宜有人言之來是白乎旀, 上官處事, 如有不合於事理者, 則面陳意見, 固無不可, 而對其幕下之人, 歷擧某事之失, 至發指的之言, 則先失在我之道, 終未免爲失體之歸. 以此照律, 罪杖八十, 收贖, 奪告身三等私罪. 啓功減一等.

❖ 숙종 10년(1684) 갑자년 6월 5일(기해)

□ 정재제(鄭載濟)의 죄상과 율(律)의 적용에 대해 보고하는 의금부의 조목(照目)

○ 의금부 조목(照目)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정재제(鄭載濟)는 상시로 기생을 불러들이다가 국상 초기에 비록 한꺼번에 되돌려 보냈으나, 그 후 의복의 봉조(縫造)·세탁 등의 일로 때때로 관아를 왕래했습니다. 이에 그대로 직임을 맡겨서는 배척하여 끊을 수가 없고,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려는 뜻도 없어 의당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상관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만일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말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막하(幕下)의 사람을 대하면서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들면서 지적하는 말을 한다면, 먼저 자신의 도리를 잃어버리고 끝내 일의 형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율(律)을 적용하여 장(杖) 80의 죄를 물리되 수속(收贖)하게 하고, 고신(告身) 3등을 빼앗는 사죄(私罪)를 적용하되 공(功)으로 1등을 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정재제, 제주판관, 의금부 조목.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七月 二十三日 丁亥

○ 備忘記, 濟州歲貢馬, 必於七月旬前上來, 意有所在, 其前亦以此, 累度申飭矣. 今月殆盡, 了無形影, 別爲嚴飭之意, 果安在哉? 雖是海外之事, 委涉未妥, 當該牧使, 推考, 以警後日.

❖ 숙종 10년(1684) 갑자년 7월 23일(정해)

□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를 반드시 7월 10일 전에 올라오도록 한 것은 다 뜻이 있어서이니, 그 전에도 이 때문에 여러차례 신칙(申飭)한 바가 있다. 이번 달이 거의 다갔는데 아직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특별히 신칙한 뜻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비록 바다 건너의 일이지만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하니, 당해(當該)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여 훗날의 경계로 삼으라.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비망기, 세공마.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七月 二十三日 丁亥

○ 司僕寺啓曰, 云云事, 傳敎矣. 濟州年例進上馬, 必於五月內裝載, 七月初上來, 而今年, 則七月已盡, 頓無消息, 事極疑怪, 自本寺, 移文全羅監司, 使之査問矣. 卽者海南縣監移牒內, 濟州馬所載船, 十四隻內, 十一隻, 則六月二十二日, 到泊於縣境, 三隻, 則因風漂流, 七月初二日, 始爲來泊, 點檢下陸云. 六月二十二日, 旣已到泊, 則所當卽爲馳通而已, 過一朔之後, 今始報來本縣, 稽緩之失, 不可置之, 海南縣監崔容云, 推考. 馬匹上來時, 所經各邑, 各別善養, 趁卽交替護送之意, 三道監司處, 行文申飭, 何如? 上曰, 依允.【司僕寺謄錄】

❖ 숙종 10년(1684) 갑자년 7월 23일(정해)

□ 사복시에서 제주(濟州)의 진상마가 올라오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뒤늦게 보고한 해남현감(海南縣監)의 추고(推考) 등을 건의함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운운(云云)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제주(濟州)의 연례(年例) 진상마(進上馬)는 반드시 5월 안에 싣고 7월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금년은 7월이 이미 다 갔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으니 일이 매우 의아하고 해괴합니다. 사복시로부터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조사하게 했더니 지금 해남현감(海南縣監)이 이첩(移牒)한 내용에, 제주의 말을 실은 배 14척 중 11척은 6월 22일 현(縣)의 경계에 도착하여 정박했고, 3척은 바람 때문에 표류하다가 7월 초2일에 비로소 와서 정박한 후 점검하고 육지로 내려왔다 합니다. 6월 22일에 이미 도착하여 정박했다면 마땅히 즉시 빠르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인 지금에야 비로소 본현(本縣)에 보고가 되었으니, 일이 늦어진 과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해남현감 최용운(崔容云)을 추고(推考)하고, 말이 올라올 때 지나온 각읍(各邑)을 각별히 잘 다독여서 때맞춰 교체하며 호송하라는 뜻을 3도의 감사(監司)에게 문서로 신칙(申飭)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사복시, 진상마, 최용운, 해남현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八月 十五日 戊申

○ 司僕寺啓曰, 濟州再運出來年例進上馬八匹, 御乘馬二十匹, 誕日進上馬二十匹內, 一匹, 到本寺所失, 冬至進上馬二十匹, 來乙丑年正朝進上馬二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內, 一匹, 到中路病留, 式年凶咎馬一百匹內, 二匹, 到中路病留, 一匹, 到海南爲虎咬斃, 年例一百匹內, 三匹, 到中路病留, 其餘三百六十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0년(1684) 갑자년 8월 15일(무신)

□ 제주(濟州)의 각종 진상마(進上馬)의 수효 등을 보고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두 번째로 운송하려고 내보낸 연례(年例) 진상마(進上馬)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 탄일(誕日) 진상마 20필 중 1필은 사복시에 당도하여 잃어버렸습니다. 동지(冬至) 진상마 20필, 오는 을축년 정조(正朝) 진상마 20필, 차비(差備) 진상마 80필 중 1필은 중간에 병으로 머무르게 했습니다. 식년(式年) 흉구마(凶咎馬)[160] 1백필 중 2필은 중간에 병으로 머무르게 했고, 1필은 해남(海南)에 도착하여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연례(年例) 1백필 중 3필은 중간에 병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 3백 6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사복시, 진상마, 어승마, 흉구마.

160) 흉구마(凶咎馬): 본래의 용도에 쓰지 못하는 흠이 있는 말로 잡역(雜役)에 쓸 목적으로 올려 보내던 말.

❖ 康熙 二十三年 甲子 九月 十八日 辛巳

○ …… 啓曰, 以濟州三運馬, 頓無消息, 令該寺稟處事, 命下矣. 今此三運馬, 雖曰船隻不足, 分運上送, 而尙今未到, 實是曾所未有之事, 臣等, 亦甚疑怪矣. 昨日海南縣監馳報, 以爲濟州出來駑駘馬二百匹所載七隻內, 三隻, 則今月初三日, 到泊, 其餘四隻, 則以風勢之不順, 不得偕泊, 別定輕快船, 探知於海島云. 聞來不勝驚駭, 到泊後, 星火牒報之意, 分付矣. 歲貢馬匹數, 雖多, 必須一時裝載出送, 自是前例, 而今年, 則諉以船隻不足, 風高之後, 始爲追後出送, 越海之際, 未免漂失之患, 本牧之不能檢擧, 極爲非矣. 濟州牧使金世龜, 從重推考, 何如? 傳曰, 依啓. 今番本牧所爲, 極涉無據, 所當從重論罪, 而今姑斟酌, 日後更有如此之弊, 則罪不止此, 自本寺各別嚴飭, 可也.【司僕寺謄錄】

❖ 숙종 10년(1684) 갑자년 9월 18일(신사)

□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가 늦어진 것 때문에 제주목사를 추고(推考)하라고 건의한 사복시의 계

○ 〈전략〉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세 번째 운송한 말이 아무 소식이 없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번 세 번째 운송하는 말은 비록 선박이 부족하여 나누어서 올려보낸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는 것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일이니 신(臣) 등도 또한 의아하고 괴이합니다. 어제 해남현감(海南縣監)이 치보(馳報)하기를, 제주에서 내보낸 노태마(駑駘馬) 2백필을 실은 7척의 배 중 3척은 이달 초3일에 도착하여 정박했고, 그 나머지 4척은 바람이 고르지 않아 모두 정박하지 못해 별도로 경쾌선(輕快船)을 정해 해도(海島)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듣고는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착하여 정박하면 재빨리 첩보(牒報)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세공마(歲貢馬)의 수효가 비록 많다 해도 일시에 장재(裝載)하여 내보내는 것이 전례(前例)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바람이 높아진 후에야 비로소 내보내 바다를 건널 때 표류할 우려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목사가 검칙하여 거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목사 김세귀(金世龜)를 무거운 죄에 따라 추고(推考)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번 제주목사가 한 행위는 매우 근거가 없으니 무거운 죄에 따라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우선 짐작하건데, 훗날 다시 이와 같은 폐해가 있으면 죄

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사복시에서는 각별히 엄칙(嚴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세귀, 세공마, 노태마.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月 二日 甲午

○ 司僕寺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振煜, 封進馬二匹, 來到本寺, 禾毛色, 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司僕謄錄】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0월 2일(갑오)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말 2필을 별단(別單)으로 보고하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진욱(金振煜)이 봉진(封進)한 말 2필이 사복시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하여 들이고, 관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진욱, 산마감목관.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月 十一日 癸卯

○ 下直, 濟州判官尹世礎.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0월 11일(계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세초(尹世礎)가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세초(尹世礎)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세초, 제주판관.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月 十六日 戊申

○ 金鎭龜, 以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濟州後運駑駘馬二百匹, 今纔上來, 而船中所失一匹, 到中路故失一匹, 病留十匹, 到本寺故失六匹計除, 則實數雌雄馬, 竝一百八十二匹也. 故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燼餘】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0월 16일(무신)

□ 제주(濟州)에서 올라 온 노태마(駑駘馬)를 별단(別單)으로 보고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진귀(金鎭龜)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중에 운송한 노태마(駑駘馬) 2백필이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잃어버린 1필, 중로(中路)에서 사망한 1필, 병(病) 때문에 두고 온 10필, 사복시에 도착해서 사망한 6필을 제하면 실수효는 자웅마(雌雄馬) 합해서 1백 82필입니다. 이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진귀, 노태마.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一月 三日 甲子

○ 謝恩, 護軍趙渭叟, 宣傳官李壽民, 南部主簿金孝昌, 濟州敎授文榮後.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1월 3일(갑자)

□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 등이 사은함

○ 호군(護軍) 조위수(趙渭叟), 선전관(宣傳官) 이수민(李壽民), 남부주부(南部主簿) 김효창(金孝昌),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161]가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문영후, 제주교수.

161) 문영후(?~?): 본관 남평(南平). 자 인경(仁卿). 1666년(현종 7) 문과급제. 곡성현감, 제주향교 교수 역임.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一月 十九日 庚辰

○ 下直, 濟州敎授文榮後.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1월 19일(경진)

□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가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가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문영후, 제주교수.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一月 十九日 庚辰

○ 今日藥房入診時, 上曰, 焜·熀之當初編配, 非謂其有罪, 實出於保全之意, 曾前累欲放釋, 而因大臣之持難, 尙今未果矣. 今以大王大妃殿周甲之慶, 特爲頒赦, 此則異於常赦, 雜犯死罪, 旣令咸宥, 則焜·熀之於大王大妃殿, 乃是子孫, 尤不可不爲擧論, 今欲放釋, 未知如何. 都提調金壽興曰, 焜·熀事, 臣屢度陳達, 到今淺慮, 如前無異, 而大槪此兩人當初所遭, 非謂其眞有罪犯, 國家處置, 只爲其保全矣. 若以保全之道言之, 則莫如姑不擧論之爲愈, 如濟州·珍島卽遠惡之地, 知其無罪, 而仍置於遠惡之地, 固爲矜惻, 卽今所配之處, 自是善地, 厚恤之[校][而]全安之, 宜矣. 至於放還輦下, 則決知其不便, 臣不敢更變前見矣. …….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1월 19일(경진)

□ 김수흥(金壽興) 등과 함께 이혼(李焜) 등을 석방하거나 유배지를 옮겨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혼(焜)·엽(熀)을 당초 유배에 처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여러 번 풀어주려고 했으니 대신들이 어렵게 여겨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지금 대왕대비전이 회갑을 맞은 경사로 인해 특별히 반사(頒赦)하고자 하니, 이것은 상사(常赦)와는 다른 것이다. 잡범(雜犯)은 사죄(死罪)를 범했어도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혼·엽은 대왕대비전에게는 자손이 되므로 더욱 거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떠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도제조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 "혼과 엽의 일은 제가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제 생각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이 두 사람이 치욕을 당한 것은 진실로 범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라에서 처리한 것도 모두 그 보전(保全)을 위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보전하는 방도로 말하자면 우선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제주(濟州)·진도(珍島) 같은 곳은 멀고 험악한 땅입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도 멀고 험악한 땅에 그대로 두었다면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지금 유배된 곳은 좋은 곳이니 후하게 구휼하고 모두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풀어주어 도성에 이르게 하면 결단코 그 불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예전의 견해를 다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흥, 이혼, 이엽, 반사, 상사.

❖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一月 二十三日 甲申

○ 禁府啓目, …… 都提調金壽恒曰, 焜·熀事, 臣屢度陳達, 到今淺慮, 與前無異, 而大概, 此兩人當初所遭, 非爲其眞有所犯, 國家處置, 只爲其保全矣. 若以保全之道言之, 則莫如姑不擧論之爲愈, 如濟州·珍島, 卽遠惡地, 知其無罪, 而仍置於遠惡地, 固爲矜惻, 卽今所配之處, 自是善地, 厚恤而全安之, 宜矣. 至於放還輦下, 則決知其不便, 臣不敢更變前見矣. 上曰, 大臣所見, 固出於深長之慮, 而旣知其無罪, 又當無前之赦, 予意則放釋無妨, 令該府, 問于諸大臣, 稟處.

❖ 숙종 10년(1684) 갑자년 11월 23일(갑신)

□ 이혼(李焜) 등을 사면 또는 석방하는 문제에 대한 의금부의 계목(啓目)

○ 의금부 계목(啓目)에, 〈중략〉 도제조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혼(焜)과 엽(熀)의 일은 제가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제 생각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이 두 사람이 치욕을 당한 것은 진실로 범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라에서 처리한 것도 모두 그 보전(保全)을 위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보전하는 방도로 말하자면 우선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제주(濟州)·진도(珍島) 같은 곳은 멀고 험악한 땅입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도 멀고 험악한 땅에 그대로 두었다면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지금 유배된 곳은 좋은 곳이고 후하게 구휼하고 모두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풀어주어 도성에 이르게 하면 결단코 그 불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예전의 견해를 다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의견이 진실로 깊고 오랜 생각에서 나온 것이나, 이미 그가 무죄임을 알고 있고 또한 예전에 사면해주지도 않았으니 내 생각으로는 풀어주어도 무방하겠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대신들에게 물어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이혼, 이엽.

1685年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二月 十五日 乙巳

○ 吏批, 濟州牧使姜世龜, …… 禁府都事金文夏.

❖ 숙종 11년(1685) 을축년 2월 15일(을사)

□ 강세귀(姜世龜)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여, 강세귀(姜世龜)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중략〉 김문하(金文夏)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세귀, 제주목사, 김문하.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二月 十五日 乙巳

○ 吏批啓曰, 濟州□□□□出身死矣. 海防重地, 不可久曠, 所當各別擇差, 急速下送, □□□□□少, 鄰道守令中, 聲績已著之人, 竝擬, 何如? 傳曰, 允. …….

❖ 숙종 11년(1685) 을축년 2월 15일(을사)

□ 공석인 제주(濟州)의 관직에 후임을 제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비(吏批)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출신(出身)으로 사망했습니다. 해방(海防)에 있어 중요한 곳을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으니, 마땅히 각별히 골라서 급히 내려보내 □□□□□, 이웃 도(道)의 수령 중 명성과 공적이 이미 드러난 사람을 함께 의망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제주, 해방.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二月 十八日 戊申

○ 傳于鄭勔曰, 今觀全羅監司狀啓, 則濟州凶荒亦慘, 賑事方張云, 新牧使姜世龜, 令該曹, 使之催促辭朝.

❖ 숙종 11년(1685) 을축년 2월 18일(무신)

□ 제주(濟州)에 흉황이 심하므로 신임 목사 강세귀(姜世龜)를 빨리 떠나게 하라는 전교

○ 정면(鄭勔)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제주(濟州)에 흉황(凶荒)이 참혹하여 진휼이 한창이라 한다. 신임 목사 강세귀(姜世龜)에게 해조(該曹)로 하여금 하직을 독촉하게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정면, 강세귀, 사조.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三月 四日 甲子

○ 下直, 濟州牧使姜世龜, 丹陽縣監李敏章.

❖ 숙종 11년(1685) 을축년 3월 4일(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강세귀(姜世龜)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강세귀(姜世龜), 단양현감(丹陽縣監) 이민장(李敏章)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세귀, 이민장.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七月 二日 庚申

○ 柳之發, 以司僕寺意啓曰, 卽今內廐, 亦無御乘可合之馬, 事甚悶慮, 而濟州私屯馬, 多有好品云, 故曾於春間, 臣壽興, 陳達於榻前, 如得好馬, 則勿拘多少, 使之上送事, 定奪分付矣. 今者本州, 擇得國屯馬二匹, 私屯馬一匹上送, 而皆是濟州牧使金世龜【缺半行】觀其馬品, 皆有【缺七八字】匹, 則今纔三禾【缺六七字】非凡馬之比, 若得成就, 則亦可以爲御乘, 誠爲多幸矣. 三匹禾貌色別單書入, 馬則仍爲入送, 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1년(1685) 을축년 7월 2일(경신)

□ 어승(御乘)에 합당한 말을 골랐으니 별단(別單)으로 보고하겠다고 한 사복시의 계

○ 유지발(柳之發)이 사복시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내구(內廐)에는 어승마(御乘馬)로 합당한 것이 없으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제주(濟州)의 사둔마(私屯馬)에는 호품(好品)이 많다고 하므로 지난봄에 신(臣) 수흥(壽興)이 어전에서 아뢰어, '만일 좋은 말을 얻으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올려보낼 것'이라는 재가를 내리시고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본주(本州)에서 국둔마(國屯馬) 2필, 사둔마(私屯馬) 1필을 골라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세귀(金世龜)가 【반행이 빠짐】 말의 품질을 보고 모두 【7, 8자가 빠짐】필이니, 지금 겨우 세 살 【6, 7자가 빠짐】 평범한 말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만약 성장하면 또한 어승마(御乘馬)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해서 들이고, 말은 그대로 들여보내 내구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유지발, 어승, 김세귀, 국둔마, 사둔마.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七月 十二日 庚午

○ 李濡,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上年冬江華北一場, 移設煤音, 定奪之後, 濟州山屯雌馬品好者五六十匹, 及把夫雄馬上來時, 別擇上送, 分放取種之意, 陳達於榻前, 分付濟州矣. 今者歲【二字缺】旣已下陸, 依例分路上送, 而取種雌馬六十匹, 雄馬十五匹, 爲先入來, 故禾毛色, 別單書入矣, 北一場則今無移設之事, 不必又爲添放, 而平安道于彌島馬, 又將移放於椵島, 今此雌馬, 參酌入送, 以爲取種之地, 似爲便當, 故鎭江場雌馬二十匹, 雄馬十匹, 大部島雌馬十五匹, 雄馬五匹, 椵島雌馬【一字缺】十五匹, 分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皆是體大品好之馬耶?

❖ 숙종 11년(1685) 을축년 7월 12일(경오)

□ 제주(濟州)에서 올려 보낸 말을 강화(江華)로 옮겨 취종(取種)하기 위한 사복시의 계

○ 이유(李濡)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작년 겨울 강화(江華)의 북일장(北一場)을 매음(煤音)으로 이설하기로 임금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 후 제주(濟州)의 산둔자마(山屯雌馬) 중 품질 좋은 5, 60필과, 파부(把夫)의 웅마(雄馬)가 올라올 때 따로 고른 것을 올려 보내서 나누어 방목하고 취종(取種)하겠다는 뜻을 어전에서 아뢰고 제주에 분부하였습니다. 지금 세(歲)【2자가 빠짐】이미 육지에 내렸으니 관례대로 길을 나눠 올려 보냈는데, 암말 60필과 숫말 15필이 우선 들어왔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하여 들였습니다. 북일장은 지금 이설할 것이 없고 또 추가로 방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우미도(于彌島)의 말을 또 장차 가도(椵島)로 옮겨 방목하려고 하므로, 지금 이 암말을 참작하여 들여보내니 취종(取種)할 방편으로 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에 진강장(鎭江場) 암말 20필과 숫말 10필, 대부도(大部島) 암말 15필과 숫말 5필, 단도(椵島)의 암말【1자가 빠짐】15필을 나눠 보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모두 체격이 크고 품질이 좋은 말인가?"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유, 북일장, 매음, 취종, 진강장.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七月 二十四日 壬午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再運馬三百六十八匹, 而年例進上馬八匹內, 三匹洋中致敗, 誕日進上馬二十匹內, 一匹到和順病留, 冬至進上馬二十匹內, 一匹到康津故失, 正朝進上馬二十匹, 歲貢馬二百匹內, 一匹洋中致敗, 一匹到任實病留, 年例良咎馬一百匹內, 一匹到鎭安病留, 六匹到長水病留, 一匹船中故失, 一匹到寶城病留, 一匹到玉果病留, 一匹到玉果故失, 一匹到靈光病留, 二匹到本寺病留, 二匹到本寺故失, 其餘三百四十五匹禾毛色, 別單書入, 而各項馬匹點捧之際, 其禾毛色耳割, 多與本州文書, 相左, 故姑以時到毛色, 推移充數矣. 今年馬品, 比前駑劣, 箇箇體小, 殊非曾前申飭之意. 且進上馬中, 至有靑盲之病, 其全不用意揀擇之狀, 尤爲可駭. 濟州牧使姜世龜, 從重推考, 而一路各色, 善爲喂養護送事, 年前別爲啓達嚴飭矣. 今番之馬, 瘦瘠倍甚, 各色之不謹養飼, 據此可知, 各道監司及一路守令, 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依啓. 濟州貢馬之駑劣無形, 未有甚於近日, 其常時拋棄馬政之狀, 已極無據, 況申飭警責, 前後非一, 而紀綱解弛, 人不畏法, 不但不爲惕念奉行, 苟充進上之弊, 愈往愈甚, 尤爲可駭, 每每推考, 亦甚苟且, 不可以到任未久而置之, 濟州牧使姜世龜, 姑先先罷後推.

❖ 숙종 11년(1685) 을축년 7월 24일(임오)

□ 제주(濟州)에서 운송된 말의 숫자와 품질 등을 보고하고 말의 품질이 떨어진 책임을 물어 제주목사 등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司僕寺)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두 번째로 운송한 말이 3백 68필인데,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중 3필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탄일진상마(誕日進上馬) 20필 중 1필은 화순(和順)에 도착해서 병(病) 때문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동지진상마(冬至進上馬) 20필 중 1필은 강진(康津)에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정조진상마(正朝進上馬)는 20필이고, 세공마(歲貢馬) 2백필 중 1필은 바다에서 죽고 1필은 임실(任實)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연례양구마(年例良咎馬) 1백필 중 1필은 진안(鎭安)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고, 6필은 장수(長水)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고, 1필은 배에서 죽었고, 1필은 보성(寶城)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1필은 옥과(玉果)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고, 1필은 옥과에서 죽었으며 1필은 영광(靈光)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2필은 사

복시에 도착해서 병 때문에 머무르게 했고, 2필은 사복시에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3백 45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되, 각 항목의 말들을 점검해서 받을 때 그 나이와 털색, 귀의 쪼개짐[耳割]이 본주(本州)의 문서와 많이 다르므로 우선 지금 당도한 털색으로 차례로 숫자를 채우겠습니다. 금년은 마품(馬品)이 전에 비해 둔하고 약하며 각각의 체구도 작아 예전에 신칙(申飭)하신 뜻과 매우 다릅니다. 또 진상마(進上馬) 중에는 청맹(靑盲)의 병까지 있으니, 간택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은 상황이 더욱 놀랍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강세귀(姜世龜)를 중한 벌에 따라 다스리고, 일로(一路)의 각색(各色)은 잘 길러서 호송하라고 몇 해 전 특별히 아뢰어 엄히 신칙하셨습니다. 이번 말은 수척한 것이 갑절이나 심하니, 각색(各色)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각 도의 관찰사 및 일로의 수령을 함께 추고(推考)하고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제주의 공마(貢馬)가 노둔한 것이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평상시 마정(馬政)을 포기한 양상이 극히 무거(無據)하다. 하물며 신칙하여 엄히 경계한 것이 앞뒤로 한 두 번이 아님에랴?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단 마음을 다해 봉행하지 않은 것 뿐 만이 아니라 진상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니 더욱 놀랍다. 일일이 추고하는 것도 구차하지만, 부임한지 오래지 않았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제주목사 강세귀를 우선 파직하고 나중에 추고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강세귀, 제주목사, 진상마.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七月 二十四日 壬午

○ 傳曰, 今此濟州牧使姜世龜, 罷職之代, 當以武臣差送, 以名望表著之人, 各別擇擬事, 分付該曹.【已上朝報】

❖ 숙종 11년(1685) 을축년 7월 24일(임오)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무신(武臣) 중에서 각별히 선택해 의망(擬望)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이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강세귀(姜世龜)를 파직한 후임으로 마땅히 무신(武臣)을 선발해 보낼 것이니, 명망이 드러난 사람 중에서 각별히 골라 의망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강세귀, 파직.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七月 二十四日 壬午

○ 吏批, 以李尙銓爲濟州牧使, …… 李綸爲兵曹參議.

❖ 숙종 11년(1685) 을축년 7월 24일(임오)

□ 이상전(李尙銓)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여 이상전(李尙銓)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중략〉 이윤(李綸)을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상전.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八月 二十日 戊申

○ 備忘記, 生徒內官金三達, 賦性危險, 倫紀滅絶, 常時窮凶極惡之事, 不一而足, 一自得罪見黜之後, 猶不徵艾, 益肆怨毒, 至以悖慢罔測之說, 公然發口, 略無忌憚, 事之痛惋, 莫此爲甚, 如此之類, 不可一日置在輦轂之下, 以貽無窮之害. 金三達, 濟州全家定配, 當日內押送.

❖ 숙종 11년(1685) 을축년 8월 20일(무신)

□ 패륜적 언행을 한 김삼달(金三達)을 제주(濟州)로 전가정배(全家定配)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생도내관(生徒內官) 김삼달(金三達)은 천성이 위험하고 윤기(倫紀)가 끊어져 평상시의 그지없이 흉악한 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스스로 죄를 얻어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거두지 않고 더욱 사악하게 독을 품어, 패악하고 망측한 이야기를 공연히 꺼내고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그러니 통탄스럽고 분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같은 부류는 하루라도 서울에 두어 끝없는 해악을 끼치게 할 수는 없다. 김삼달을 제주(濟州)로 전가정배(全家定配)하고 당일 내로 압송하라.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비망기, 김삼달, 전가정배.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八月 二十三日 辛亥

○ 引見時, 正言李徵明所啓, 請罪人金重夏, 嚴鞫處斷事. 上曰, 勿煩. …… 又所啓, 臣伏見下政院備忘記, 有生徒內官金三達, 全家定配濟州之命, 而其滅絶倫紀, 怨毒悖慢等罪名, 無非極罪, 雖置之大辟, 可也. 第凡有大小罪犯者, 必付之有司, 按法審決者, 乃所以重獄體也. 今玆三達之直自宮中, 勘斷定配, 有乖宮府一體之意, 且關後弊. 請濟州定配內官金三達, 更令有司, 嚴加究核, 名正其罪, 以存獄體. 上曰, 依啓. …….

❖ 숙종 11년(1685) 을축년 8월 23일(신해)

□ 인견(引見)에 이징명(李徵明)이 입시하여 김삼달(金三達)을 조사하여 치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함

○ 인견(引見)할 때 정언(正言) 이징명(李徵明)이 아뢰기를, “청컨대 죄인 김중하(金重夏)를 엄히 국문하여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가 승정원에 내려보낸 비망기(備忘記)를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도내관(生徒內官) 김삼달(金三達)을 제주(濟州)에 전가정배(全家定配)하라는 명(命)이 있었는데, 그가 윤기(倫紀)를 끊어버리고 독을 품고 패악한 짓을 한 죄는 모두 극한 벌을 받을만한 죄이니, 사형에 처한다해도 옳습니다. 다만, 무릇 크고 작은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넘겨 법을 상고하고 살펴서 처결하는 것은 곧 옥체(獄體)를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달(三達)을 곧바로 궁중(宮中)에서 정배(定配)로 감단(勘斷)했으니, 궁중과 조정은 일체(一體)라는 뜻에 어긋나며 또 뒤에 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컨대, 제주에 정배한 내관(內官) 김삼달을 다시 유사(有司)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게 하시어 그 죄를 밝게 다스려 옥체(獄體)를 보존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징명, 김삼달, 전가정배.

❖ 康熙 二十四年 乙丑 九月 十六日 癸酉

○ 今日諸承旨持公事入侍時, 新除授廣州留守柳尙運, 卽爲牌招肅拜, 明日內, 使之辭朝事, …… 濟州牧使·甲山府使外, 其他未下直都事·守令·察訪, 亦一體催促發送事, 榻前下敎.

❖ 숙종 11년(1685) 을축년 9월 16일(계유)

□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하직하게 하라고 하교함

○ 오늘 여러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 했을 때, "새로 제수된 광주유수(廣州留守) 유상운(柳尙運)은 즉시 패초(牌招)하여 숙배(肅拜)하게 하고 내일 안으로 사조(辭朝)하게 할 것,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갑산부사(甲山府使) 외에 그밖에 아직 하직하지 않은 도사(都事)·수령·찰방 또한 모두 재촉하여 보낼 것"이라고 어전에서 하교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패초.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月 一日 戊子

○ 下直, 濟州牧使李尙銓.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0월 1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상전.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月 三日 庚寅

○ 慶尙監司書目, 靑松府使金洪慶, 病重罷黜事. 濟州牧使書目, 判官尹世礎, 罷黜事.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0월 3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판관(判官)을 파출(罷黜)하라고 서목을 올림

○ 경상감사(慶尙監司)가, 청송부사(靑松府使) 김홍경(金洪慶)이 병이 위중하므로 파출(罷黜)하라고 서목(書目)을 올렸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판관(判官) 윤세초(尹世礎)를 파출하라고 서목을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세초, 김홍경.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月 四日 辛卯

○ 吏批, 以朴東胄〈爲〉瓦署別提, 任元耆爲濟州牧使, …… 金錫達〈爲〉司贍主簿.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0월 4일(신묘)

□ 임원구(任元耆)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여 박동주(朴東胄)를 사포별제(瓦署別提)로 삼고, 임원구(任元耆)[162]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중략〉 김석달(金錫達)을 사섬주부(司贍主簿)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임원구, 박동주, 김석달.

162) 임원구(1647~?): 본관 풍천(豊川). 자 대년(大年). 1678년(숙종 4) 문과급제.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月 十一日 戊戌

○ 以備局啓目, 濟州判官尹世礎仍任事, 承傳.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0월 11일(무술)

□ 윤세초(尹世礎)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잉임(仍任)하는 문제에 대해 승전(承傳)함

○ 비변사가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세초(尹世礎)를 잉임(仍任)시켜 달라고 올린 계목(啓目)에 대해 승전(承傳)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세초, 제주판관.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月 二十日 丁未

○ 以備忘記, 傳于任弘望曰, 近來京外官吏, 全不知享上之爲重, 苟充封進之弊, 愈往愈甚, 事之寒心, 固已久矣. 濟州年例貢布·鹿皮, 長廣短狹, 色品薄劣, 不合於內司, 其中尤甚無形者, 已令內司退色, 而該牧判官, 難免不謹之罪, 尹世礎, 姑先從重推考.【以上燼餘】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0월 20일(정미)

□ 제주(濟州)의 연례(年例) 진상품이 형편없으니 윤세초(尹世礎)를 추고(推考)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로 임홍망(任弘望)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향상(享上)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여 봉진(封進)을 구차하게 대충하는 폐단이 갈수록 심하니, 일이 이렇게 한심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제주(濟州)의 연례(年例) 진상품인 공포(貢布)·녹피(鹿皮)는 길이와 폭이 짧고 좁으며, 색품(色品)도 나빠서 내사(內司)에 맞지 않다. 그 중 더욱 심한 것은 이미 내사(內司)로 하여금 퇴색(退色)하게 했으니, 해당 목사와 판관은 삼가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다. 윤세초(尹世礎)를 우선 무거운 벌에 따라 추고(推考)하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윤세초, 공포, 녹피.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二月 十八日 甲辰

○ …… 壽恒曰, 嘗考仁祖朝【缺半行】處斷, 而中間或有變通【缺一行】魚淵爲名者, 未嘗有貸死之事矣. 且卽今罪囚中, 或以取服於其道, 而變辭於上京者, 凡卄六人也, 渠輩之故, 而啓此無前之釁, 貽辱國家, 慘不忍言. 以此論之, 則盡殺無惜, 而第人命至重, 所當欽恤, 曾前如此事, 施罰之道, 北人則流于南, 南人則流于北, 以爲實邊之地, 目今西北邊堡, 多有零殘, 則分流各堡, 或亦一助, 而猶恐有再犯之患, 故不若定配於濟州也. 然濟州土居之人, 生理亦難, 則許多流徒, 似無聊活之路, 國家旣令不死, 而反置無生之地, 亦甚可矜爾. …….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2월 18일(갑진)

□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도류형(徒流刑)에 처한 죄인의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함

○ 〈전략〉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일찍이 상고해보니 인조조(仁祖朝) 【반행이 빠짐】 처단했고, 중간에 간혹 변통한 경우가 있었으나 【1행이 빠짐】 어연(魚淵)이라는 이름이나, 일찍이 사형을 사면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죄수 중에서 간혹 도중에 자복하거나 상경하여 변사(變辭)한 자가 모두 26인입니다. 이런 무리들 때문에 전에 없던 이와 같은 계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국가에 욕을 끼친 것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니 이로써 논하자면 다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마땅히 흠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벌을 시행하는 방식이 북쪽 사람은 남쪽에 유배하고, 남쪽 사람은 북쪽에 유배하여 변방을 충실히 하는 방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서북쪽 변보(邊堡)가 영락하고 조잔한 것이 많으니 나누어 각 보(堡)로 유배하면 혹시라도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재범(再犯)할 우려도 있으므로 제주(濟州)에 정배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제주 땅에 사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우니, 유도(流徒)된 많은 이들도 살아갈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나라에서 죽지 않게는 했으나 도리어 살 수 없는 땅에 방치한 것이니 또한 매우 불쌍합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변보.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二月 二十一日 丁未

○ 金載顯, 以刑曹言啓曰, 犯越罪人等, 濟州三邑, 及南方絶島, 爲奴定配, 榻前陳達矣. 濟州三邑, 比之他島, 生計尤艱, 許多罪人, 竝送三邑, 則主客俱困, 分送各處, 則苦歇懸殊, 故問議大臣, 珍島·巨濟·南海等地, 分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2월 21일(정미)

□ 제주(濟州)에만 죄인을 정배하면 생계가 곤란하니 진도(珍島) 등의 절도(絶島)에 분배하여 보내자는 형조의 계

○ 김재현(金載顯)이 형조(刑曹)의 말로 아뢰기를, "범월(犯越)한 죄인들을 제주(濟州) 3읍 및 남쪽 지방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노(奴)로 삼는 것을 어전에서 아뢰었습니다. 제주 3읍은 다른 섬에 비하면 생계(生計)가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죄인을 모두 3읍에 보내면 주객(主客)이 모두 곤궁해지니, 각처에 나눠서 보내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에 대신들과 논의하여 진도(珍島)·거제(巨濟)·남해(南海) 등지에 분배하라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김재현, 범월, 절도.

❖ 康熙 二十四年 乙丑 十二月 二十八日 甲寅

○ 又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所封去十月令宗廟·永慕殿·山陵·永昭殿薦新金橘·柑子等, 今始來到, 二十九日薦進, 而山陵薦新, 則今已停止, 依前例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1년(1685) 을축년 12월 28일(갑인)

□ 산릉 천신을 정지했으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금귤(金橘) 등을 사옹원으로 하여금 봉입(捧入)하게 하자는 예조의 계

○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지난 10월령으로 종묘(宗廟)·영모전(永慕殿)·산릉(山陵)·영소전(永昭殿)에 천신(薦新)하는 금귤(金橘)·감자(柑子) 등이 지금 당도했으니 29일 천진(薦進)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릉 천신은 지금 이미 정지하였으니, 전례(前例)에 따라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봉입(捧入)하게 하고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사옹원, 산릉 천신, 금귤, 감자.

1686年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三月 七日 辛酉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進十一月令宗廟·永慕殿·山陵·永昭殿薦新柚子及十二月令乳柑·洞庭橘等, 今始來到, 來初八日薦進, 而永慕殿·山陵薦新, 則今已停止, 依例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禮曹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3월 7일(신유)

□ 영모전과 산릉 천신은 정지했으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물품을 사옹원(司饔院)에서 봉입(捧入)하게 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11월령으로 종묘(宗廟)·영모전(永慕殿)·산릉(山陵)·영소전(永昭殿)에 천신(薦新)할 유자(柚子) 및 11월령의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등이 지금 비로소 당도했습니다. 오는 초8일에 천진(薦進)하되, 영모전·산릉 천신은 지금 이미 정지했으니 관례대로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봉입(捧入)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사옹원, 산릉 천신, 유감, 유자, 동정귤.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四月 十日 甲午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捧三月令薦新靑橘, 來十一日薦進之意, 入啓矣. 卽接奉常寺牒報, 則宗廟所封一百九十八介內, 八箇稍完, 一百九十介, 盡爲腐傷, 永昭殿所封十八箇內, 二箇稍完, 十六箇盡爲腐傷云. 莫重薦新, 如是腐傷, 此是海外所封, 累月待風之際, 以致如此, 而不可以此薦進, 改封進, 亦難, 各殿所封進上中, 稍完者, 移送該寺, 明日薦新後, 還爲內入事, 分付該院,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4월 10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바친 청귤이 부패하고 상하여 이를 그대로 천신할지 여부를 아뢰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들인 3월령으로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을 오는 11일에 천진(薦進)하겠다는 뜻을 아룁니다. 지금 봉상시(奉常寺)의 첩보(牒報)를 보니, 종묘(宗廟)에 봉진할 1백 98개 중 8개는 거의 완전하나 1백 90개는 모두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영소전(永昭殿)에 봉진할 18개 중 2개는 거의 완전하나, 16개는 다 부패하고 상했다고 하니 천신할 막중한 것이 이처럼 부패하고 상한 것입니다. 이는 바다 건너에서 봉진한 것이 몇 개월이나 바람을 기다리다보니 이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천진(薦進)할 수도 없고 다시 봉진(封進)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각 전(殿)에 봉진한 진상(進上) 중 거의 완전한 것은 해당 시(寺)에 이송하여 내일 천신한 후 다시 내입(內入)하도록 해당 관청에 분부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청귤, 제주목사.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四月 十日 甲午

○ 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 啓曰, 卽者因禮曹啓辭, 濟州進上靑橘, 自本院, 移送奉常寺事, 命下矣. 濟州二月令三殿進上靑橘都數, 至於五百三十箇, 而擧皆腐敗, 其中稍爲完實者, 堇得十箇, 移送于奉常寺, 以爲薦新後內入之地, 而此外三殿進上金橘·山橘·洞庭橘三種, 竝爲捧進, 而亦皆腐敗, 稍完者, 不過十分之一二. 此由於風便不順, 道路淹滯之致, 而莫重上供之物, 有此無前損傷, 封進官, 難免不謹之失,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司饔院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4월 10일(갑오)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청귤(靑橘) 등이 대부분 부패했으므로 봉진관(封進官)을 추고(推考) 하라고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 관원이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예조(禮曹)의 계사(啓辭)로 인해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청귤(靑橘)을 본원(本院)으로부터 봉상시(奉常寺)로 이송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제주(濟州)에서 2월령으로 삼전(三殿)에 진상한 청귤의 총수는 5백 30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부패했고 그 중 거의 완전한 것은 겨우 10개이니 봉상시에 이송하여 천신한 후 내입(內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삼전에 진상할 금귤(金橘)·산귤(山橘)·동정귤(洞庭橘) 3종도 함께 봉진(捧進)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부패하여 거의 완전한 것은 10분의 1,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람이 고르지 않았고 도로에서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공(上供)할 막중한 물품을 이처럼 전에 없이 상하게 했으니, 봉진관(封進官)은 삼가지 못한 과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벌에 따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옹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진상, 청귤, 산귤, 동정귤.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四月 二十一日 乙巳

○ 司僕寺啓曰, 濟州點馬別監, 別捉御乘可合馬十一匹, 今纔上來, 故看閱馬品, 則其中仇郎雄馬一匹及騮雄馬一匹, 最有步才, 正合於駕轎馬, 其餘九匹, 亦皆有才, 將來可以成就, 體大者則立養於內廐, 體小不合於內廐者, 則立於外寺, 善爲調習宜當,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寺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4월 21일(을사)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말 11필에 대한 간품(看品) 결과와 활용에 대해 보고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점마별감(點馬別監)이 특별히 어승(御乘)에 합당한 말 11필을 붙잡아 지금 겨우 올라왔기에 마품(馬品)을 검열하였습니다. 그 중 구랑웅마(仇郎雄馬) 1필 및 유웅마(騮雄馬) 1필이 가장 걷는 재주가 있어 가교마(駕轎馬)로 딱 맞습니다. 그 나머지 9필도 모두 재주가 있으니 장래에 성취(成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구가 큰 것은 내구(內廐)에서 키우고, 체구가 작어 내구(內廐)에 적합지 않은 것은 외시(外寺)에서 키워 잘 조습(調習)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기록하여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점마별감, 어승, 가교마.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五月 十三日 丙申

○ 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 …… 師命曰, 左議政之必欲盡誅放砲人, 以懲邊民, 誠出於慮患之至意, 而臣意則亦有所不忍者, 國家法禁, 若以越境採蔘, 爲一切死律, 隨現必殺, 則今日用律, 誠不可不重, 而但朝家, 旣不能嚴申令甲, 致令邊民, 生此奸計, 而彼中論死之外, 又從而加其律, 則此所謂慢令致期, 罔民以死法也. 自今以後, 更定法令, 永杜此弊, 可也. 而此則豈非朝家所可顧念處也? 此臣之所以終不欲盡用死律也. 上曰, 自前潛越者, 非止一再, 而未有如今番之狼藉, 論理情犯, 斷無容貸之理, 而此地, 異於他道, 民人之生理, 爲難, 迫於飢寒, 有此冒死犯禁之事, 其情亦可矜惻, 許多罪人, 不忍盡誅, 咨文中首倡放砲者, 朴承鶴□□□□一體論死, 其餘則特爲減死, 定配於濟州, 可也.【擧條】…….

❖ 숙종 12년(1686) 병인년 5월 13일(병신)

□ 희정당(熙政堂)의 인견(引見)에 이사명(李師命) 등이 입시하여, 월경인(越境人)들의 처벌 등을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하셨다. 〈중략〉 사명(師命)이 말하기를, "좌의정이 포(砲) 쏜 사람을 다 죽여서 변민(邊民)을 징계하자고 한 것은 진실로 우환을 염려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생각도 또한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고 보지만 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기를, 만약 월경(越境)하여 삼(蔘)을 캐면 모두 사율(死律)에 의거하여 나타나는 즉시 반드시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율(律)을 적용하는 것은 진실로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조정에서 이미 법령을 엄히 신칙하지 못해 변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간계(奸計)를 만들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죽음을 논하지 않고 추가로 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이른바 '명령을 태만히 하고 기일을 각박하게 하는 것'이니, 백성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사법(死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법령을 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영구히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고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제가 끝내 사율(死律)을 다 쓰지 않고자 함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몰래 월경한 자가 한둘이 아니나 지금처럼 낭자한 적은 없었다. 정범(情犯)으로 논하자면 결단코 용서할 이치가 없다. 하지만 이 곳은 다른 도(道)와는 달리 백성들의 생리(生理)가 어렵고 추위와 굶주림에 쫓기

므로 이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범금(犯禁)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정상이 또한 불쌍하니 많은 죄인을 차마 다 죽일 수는 없다. 자문(咨文) 중 수창(首倡)하여 포를 쏜 자, 박승학(朴承鶴)□□□□ 일체 사형으로 논하고, 그 나머지는 특별히 사형에서 감해주고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행조건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이사명, 박승학, 월경, 채삼.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六月 三日 乙卯

○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時, …… 申汝哲啓曰, 上. 今年馬兵等分給之馬, 大不如前, 事甚可悶, 以今年所給言之, 四五十匹之馬, 皆是體小駑駘, 以此推之, 則前頭軍馬, 勢將無一匹可合戰用, 向年則神彌島馬種, 體大骨壯者頗多, 故軍中所給, 擧皆能走矣. 上. 今年, 無一匹送來者, 未知其由, 此時馬政, 必須變通, 然後可無戰馬難繼之患矣. 依前已行之例, 濟州入山馬八十匹, 體大骨壯, 可合戰馬者, 神彌島, 限三四十匹極擇別捉, 於八月晦前, 令司僕寺, 濟州所捉, 則分養於湖南各邑, 神彌島所捉, 則分養於關西各邑, 待明年三四月, 上送京中, 分給馬兵, 以爲調習成才之地事, 奉承傳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擧行條件】

❖ 숙종 12년(1686) 병인년 6월 3일(을묘)

□ 신여철(申汝哲) 등이 입시(入侍)하여 마병(馬兵)에게 분급할 전마(戰馬)의 보급과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할 때, 〈중략〉 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상. 금년에 마병(馬兵) 등에게 분급할 말의 크기가 예전 같지 않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금년에 지급할 것으로 말하자면, 4, 50필의 말인데 모두 체구가 작고 노둔합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장차 군마(軍馬)가 1필도 전시(戰時)에 쓸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미도(神彌島)의 마종(馬種)으로 체구가 크고 골격이 건장한 것이 매우 많아 이를 군(軍)에 나누어주었으니 대부분이 잘 달렸습니다. 상. 금년에는 1필도 보내온 것이 없는데,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정(馬政)을 반드시 변통한 연후에야 전마(戰馬)를 계승하기 어려운 우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수행했던 관례에 따라 제주(濟州)의 입산마(入山馬) 80필 중 체구가 크고 골격히 건장하여 전마(戰馬)에 적합한 것과, 신미도(神彌島)에서는 3, 40필에 한해 선별하여 별도로 8월 그믐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복시로 하여금 제주(濟州)에서 붙잡은 것은 호남의 각읍에 분양(分養)하게 하고, 신미도에서 붙잡은 것은 관서(關西)의 각읍에 분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 4월까지 기다려 서울에 올려보내 마병에게 분급하여, 조련해서 성재(成才)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전교(傳敎)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거행조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신여철, 신미도, 전마, 마정.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六月 五日 丁巳

○ 備局堂上引見時, 以訓鍊大將申汝哲所啓, 濟州入山馬, 限八十匹, 神彌島馬, 限三四十匹, 極擇別捉於八月晦前, 濟州所捉則分養於湖南各邑, 神彌島所捉則分養於關西各邑, 待明年三四月, 上送京中, 分給馬兵事, 命下矣. 卽當依此分付擧行, 而但濟州入山馬, 壬戌年以後, 訓局及兵曹別啓請捉來之數, 三百匹, 年例進上御乘馬, 亦至數百匹, …… 而仍念近來, 濟州馬及各牧場馬政, 非不別樣申飭, 而馬種之駑劣, 非一朝一夕之故, 逐年分養上來之類, 漸不如前, 事極寒心. 姑以今年所捧觀之, 則牧場馬中, 蔚山所屬冬背串, 江華北一場, 平安道神彌島馬, 無不壯大, 皆合戰馬, 此三處之馬, 則依鎭江場例, 勿爲帖給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允. 【司僕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6월 5일(정사)

□ 인견(引見)에 신여철(申汝哲) 등이 입시하여 전마(戰馬)에 적합한 말을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비변사당상을 인견(引見)할 때 훈련대장 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입산마(入山馬)는 80필에 한해, 신미도(神彌島)의 말은 3, 40필에 한해 8월 그믐 전까지 잘 골라서 따로 붙잡아야 합니다. 제주에서 붙잡은 것은 호남의 각읍에 분양(分養)하고, 신미도에서 붙잡은 것은 관서(關西)의 각읍에 분양하여 내년 3, 4월이 되기를 기다려 서울에 올려 보내서 마병(馬兵)에게 분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시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해야 하나, 다만 제주의 입산마는 임술년 이후 훈련도감 및 병조에서 별계(別啓)로 붙잡아오도록 청한 숫자가 3백 필입니다. 연례(年例) 진상 어승마(御乘馬) 역시 수백 필에 이릅니다. 〈중략〉 그리고 그대로 생각해보니 요사이 제주의 말과 각 목장의 마정(馬政)에 대해서 특별히 신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마종(馬種)이 노둔한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데도 매년 분양하여 올라오는 부류가 점점 예전 같지 않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우선 금년 받아들인 것을 보니, 목장마(牧場馬) 중 울산에 소속된 동배곶(冬背串), 강화(江華)의 북일장(北一場), 평안도 신미도(神彌島)의 말이 건장하고 크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두 전마(戰馬)에 적합합니다. 이 세 곳의 말은 진강장(鎭江場)의 사례에 의거하여 체급(帖給)하지 말 것을 승전(承傳)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

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신여철, 어승마, 전마, 신미도.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六月 三十日 壬午

○ 吏批, 以任相元爲都承旨, …… 朴世佶爲旌義縣監, 李坡爲礪山郡守, 柳星年爲大靜縣監, …… 盧碩賓爲成均學錄.【郎廳 蔡慶承 校正. 郎廳 朴混源 書.】

❖ 숙종 12년(1686) 병인년 6월 30일(임오)

□ 박세길(朴世佶)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유성년(柳星年)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여 임상원(任相元)을 도승지(都承旨)로 삼고, 〈중략〉 박세길(朴世佶)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고, 이파(李坡)를 여산군수(礪山郡守)로 삼고, 유성년(柳星年)[163]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고, 〈중략〉 노석빈(盧碩賓)을 성균학록(成均學錄)으로 삼았다.【낭청 채경승(蔡慶承)이 교정하고, 낭청 박혼원(朴混源)이 씀.】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박세길, 정의현감, 유성년, 대정현감.

163) 유성년(1648~?): 본관 선산(善山). 자 중경(仲經). 1673년(현종 14) 문과급제.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二日 甲申

○ 謝恩, 都摠經歷李玄成·韓濟相, …… 旌義縣監朴世佶, …… 大靜縣監柳星年, …… 義興縣監徐文徵.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2일(갑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길(朴世佶)과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성년(柳星年) 등이 사은함

○ 도총경력(都摠經歷) 이현성(李玄成)·한제상(韓濟相),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길(朴世佶),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성년(柳星年), 〈중략〉 의흥현감(義興縣監) 서문징(徐文徵)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숙자 역주/ 2018〉

△ 주제어: 박세길, 정의현감, 유성년, 대정현감, 사은.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八日 庚寅

○ 濟州牧使, 判官尹世礎, 病重罷黜事.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8일(경인)

□ 병이 중한 윤세초(尹世礎)의 파출(罷黜)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164]에 "판관 윤세초(尹世礎)[165]의 병이 중하니 파출(罷黜)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윤세초, 파출.

---

164) 서목(書目):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하는 문서.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는데, 원장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함께 서목을 올린 하관에게 돌려줌.

165) 윤세초(1638~?): 본관 양주(楊州). 자 중보(重寶). 본 기사 원문에는 '초(礎)'가 '웅(雄)'으로 되어있음.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예조좌랑 역임.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十五日 丁酉

○ 又以備邊司言啓曰, 濟州出來先運駑駘馬三百匹內, 到中路病留四十二匹, 故失三匹, 闘失一匹, 到本司病留五匹, 故失一匹, 實數二百.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15일(정유)

□ 제주(濟州)에서 보내온 선운 노태마의 마필수를 보고하는 신엽(申曄)의 계

○ (신엽이)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보내온 선운 노태마(先運駑駘馬) 3백 필 안에,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것이 42필, 죽은 것이 3필, 달아난 것이 1필이고, 본사(本司)에 이르러 병이 들어 지체하는 것이 5필, 죽은 것이 1필로, 실제 수는 2백 필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엽, 비변사, 노태마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二十四日 丙午

○ 徐宗泰,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及歲貢馬二百匹內, 到中路病留四匹, 故失一匹, 凶咎馬一百匹內, 到中路病留八匹, 故失三匹, 到本寺病留五匹, 所捧實數三百四十七匹, 而禾毛色, 多與本州上送馬籍相左, 故依前以時毛色置簿,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24일(병오)

□ 제주(濟州)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이 본주(本州)에서 올려 보낸 마적(馬籍)과 다른 것이 많아서 지금 털색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서종태(徐宗泰)[166]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보내온 연례 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167] 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과 세공마(歲貢馬) 2백 필 안에,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것이 4필, 죽은 것이 1필이고, 흉구마(凶咎馬) 1백 필 안에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것이 8필, 고실한 것이 3필이며,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이 들어 지체하는 것이 5필로, 받아들인 실제 수는 347필인데 나이와 털색이 본주(本州)에서 올려 보낸 마적(馬籍)과 서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전처럼 지금 털색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별단(別單)[168]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상마, 마적.

---

166) 서종태(1652~1719): 본관 달성(達城). 자 군망(君望). 호 만정(晩靜), 서곡(瑞谷), 송애(松厓). 시호 문효(文孝).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만정당집》.

167) 삼명일(三名日): 세 명절날을 가리키는 말로, 임금의 탄신일[大殿誕日], 정월초하루[正朝], 동지(冬至) 또는 정월초하루, 단오(端午), 동지를 이름.

168) 별단(別單):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二十四日 丙午

○ 下直, 知禮縣監趙麟祥, …… 大靜縣監柳星年, …….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24일(병오)

□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성년(柳星年) 등이 하직함

○ 지례현감(知禮縣監) 조인상(趙麟祥),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성년(柳星年)[169]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유성년.

169) 유성년(1648~?): 1672년(현종 13) 문과 급제. 이인찰방, 전적, 양재찰방 역임. 대정현감으로 1686년(숙종 12) 9월에 도임하여, 1689(숙종 15) 3월에 체임되었다. 본 기사 원문에는 '년(年)'이 '두(斗)'로 되어있음. 고병오(高炳五)의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에 의거 '年'으로 고쳐 풀이하였음. 본서 동년 6월 30일과 7월 2일에도 대정현감은 유성년으로 되어 있음.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二十四日 丙午

○ 巳時, 上御熙政堂引見. 入侍, 同副承旨徐宗泰, 假注書洪重夏, 記事官宋疇錫·鄭澔, 柔遠僉使崔壽海, 天水僉使金衍錫, 廣梁僉使尹沅, 咸興判官李岱, 知禮縣監趙趙麟祥, 興陽縣監牟世蕃, 大靜縣監柳星年. …… 牟世蕃, 進達職姓名. 上問履歷. 世蕃曰, 曾經校書正字·典籍·奉常主簿·濟州判官, 今叨本職矣. 上問七事. 世蕃誦對. …… 柳星年, 進達職姓名. 上問履歷. 星年曰, 壬子式年明經科出身, 曾經利仁察訪·典籍·良才察訪, 今叨本職矣. 上問七事. 星年誦對. 上曰, 絶島遐遠, 王化不及, 撫摩之責, 宜別於他邑, 爾其十分盡心. 星年曰, 聖教丁寧, 敢不盡心乎? 上, 命內官, 各給弓矢于邊將, 遂罷出.【以上燼餘】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24일(병오)

□ 희정당에 나아가 인견하는 자리에서 지방관으로 나아가는 유성년(柳星年) 등에게 마음을 다해 공무에 힘쓸 것을 독려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는 자리이다. 입시(入侍)한 이는 동부승지 서종태(徐宗泰), 가주서 홍중하(洪重夏), 기사관 송인석(宋疇錫)·정호(鄭澔), 유원첨사 최수해(崔壽海), 천수첨사 김연석(金衍錫), 광량첨사 윤원(尹沅), 함흥판관 이대(李岱), 지례현감 조인상(趙麟祥), 흥양현감 모세번(牟世蕃), 대정현감 유성년(柳星年)이다. 〈중략〉 모세번이 관직과 성명을 진달(進達)하였다. 임금이 이력을 물으니 세번이 아뢰기를, "교서정자·전적·봉상주부·제주판관을 지냈고, 지금 외람되게도 본직(本職)을 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七事)[170]를 물으니 세번이 암송하여 답하였다. 〈중략〉 유성년이 관직과 성명을 진달하였다. 임금이 이력을 물으니 성년이 아뢰기를, "임자년(1672) 식년 명경과(式年明經科)에 급제하여 이인찰방·전적·양재찰방을 지냈고 지금 외람되게도 본직을 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를 물으니 성년이 암송하여 답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라 임금의 덕화(德化)가 미치지 않으니 백성을 위로하여 달래는 책임이 마땅히 다른 읍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너는 십분(十分)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성년

---

170) 칠사(七事): 수령칠사(守令七事).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로, 농사와 잠업을 진흥시키고[農桑盛], 호구를 늘리고[人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잘 다스리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사송을 간결하게 하고[詞訟簡], 간활이 없어지게 하는 것[奸猾息]. 새로 임명된 수령이 하직할 때 외우게 함.

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간곡한데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내관(內官)에 명하여 변장(邊將)에게 각기 활과 화살을 주게 하고 드디어 파하고 나왔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유성년, 대정현감, 모세번, 제주판관.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七月 二十八日 庚戌

○ 下直, 旌義縣監朴世佶.

❖ 숙종 12년(1686) 병인년 7월 28일(갑술)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길(朴世佶)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길(朴世佶)[171]이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세길, 하직.

171) 박세길(?~?): 전라도 영암군 태생. 무과 급제. 감찰 역임. 정의현감으로 1686년(숙종 12) 9월에 도임하여, 1689년(숙종 15) 3월에 체임.

❖ 康熙 二十五年 丙寅 九月 九日 庚寅

○ 下直, 順天府使韓濈, 慶尙都事洪璹, 濟州判官尹以就, 兎城僉使尹起商, 文城僉使李衡聖. …….

❖ 숙종 12년(1686) 병인년 9월 9일(경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취(尹以就) 등이 하직함

○ 순천부사 한영(韓濈), 경상도사 홍숙(洪璹), 제주판관(濟州判官) 윤이취(尹以就)[172], 토성첨사 윤기상(尹起商), 문성첨사 이형성(李衡聖)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윤이취, 하직.

172) 윤이취(?~?): 제주판관으로 1686년(숙종 12) 10월에 도임하여, 1689년(숙종 15) 4월에 체임.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月 三日 甲寅

○ 領議政金壽恒所啓, …… 今年濟州風災慘酷, 公私馬匹之致斃者甚多, 至如各種果實, 亦皆枯死, 無以充進上云, 禾穀之傷損, 可以推知矣. 濟州一島, 土地瘠薄, 雖在常年, 米穀甚貴, 只以魚藿等物, 出陸轉販, 料理資生, 每當歉歲, 民不支堪, 庚申被災之時, 自朝家各別軫念, 移粟救災, 故民得免死矣. 今年則嶺南·湖南沿海諸邑, 俱不免大侵, 本道之民, 亦難救活, 實無移救島民之路, 而陸地民, 猶可流丐得食, 而海外絶島之民, 苟無國家賑恤之事, 則將不免涸轍之魚矣, 事極可慮. 令該廳豫爲料理救濟之道, 何如? 上曰, 濟州牧使狀啓, 風災慘酷, 至於牛馬凍死, 農事之失稔, 推此可知, 分付該廳, 可也.【以上朝報】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0월 3일(갑인)

□ 김수항(金壽恒)이 풍재 입은 제주(濟州) 백성의 구제에 관해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상주함

○ 영의정 김수항(金壽恒)[173]이 아뢰었다. 〈중략〉 "금년 제주(濟州)의 풍재(風災)가 참혹하여 공사(公私) 마필(馬匹) 중에 죽음에 이른 것이 아주 많고, 각종 과실(果實)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말라죽어 진상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하니 화곡(禾穀)의 손상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라는 한 섬은 토지가 척박하여 비록 평년에도 미곡(米穀)이 심히 귀하고, 다만 어곽(魚藿) 등의 물건을 가지고 육지로 나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번 흉년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경신년(1680)에 재앙을 입었을 때는 조정에서의 각별한 마음으로 곡식을 옮겨 재앙을 구제하였기에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영남·호남 연해의 여러 읍이 모두 큰 흉년을 당해 본도(本道)의 백성들 또한 구제하여 살리기 어려우니 실로 섬 백성들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지 백성들은 오히려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을 수라도 있지만 바다 밖 절도(絶島)의 백성들은 국가에서 진휼하는 일이 없으면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얕은 물속에서 메말라 죽어가며 헐떡이는 붕어의 신세[174]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사태가 지극히 염

---

173) 김수항(1629~1689): 본관 안동(安東). 자 구지(久之). 호 문곡(文谷). 시호 문충(文忠). 1651년(효종 2) 문과 급제. 부제학, 도승지, 우의정 등 역임. 저서 《문곡집》.

174) 수레바퀴 자국에 …… 붕어의 신세[涸轍之魚]: 생사가 다급한 처지를 말함. 《장자》 〈외물(外物)〉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얕은 물속에서 메말라 죽어가며 헐떡이는 붕어가 물을 조금만 부어 주면 살 수 있겠다고 애원하는 이야기가 나옴. 학철부어(涸轍鮒魚).

려스럽습니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구제의 방법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의 장계에 풍재가 참혹하여 소와 말이 얼어 죽는 지경에 이르렀다하니 농사가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관청에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175]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풍재.

175) 《비변사등록》 1686년(숙종 12) 10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一月 二十三日 癸卯

○ 上曰, 濟州牧使, 年例進上中, 馬裝, 元無緊用處, 且年久之後, 便爲空費之物, 至於獐皮, 則軍需中緊用者也. 今後則馬裝之代, 以獐皮封進事, 令該曹酌定分付, 梔子封進元數中, 一半, 亦以白蠟代封事, 問其便否於本州, 以爲變通之地, 可也. …….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1월 23일(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연례진상 중에 마장(馬裝) 대신 노루가죽으로 봉진하는 일과 비자의 절반을 백랍으로 대신 봉진하는 일에 대한 전교

○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연례로 진상하는 것 중에 마장(馬裝)은 본래 긴요하게 쓰이는 곳이 없고, 또 해가 오래 지나면서 곧 쓸데없이 낭비하는 물건이 되어 버렸다. 노루가죽은 군수(軍需) 중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마장 대신에 노루가죽으로 봉진하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잘 헤아려 결정하도록 분부하고, 비자(梔子) 봉진 본래의 수량 중 절반은 백랍(白蠟)으로 대신 봉진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편안한지 그렇지 않을 지를 본주(本州)에 물어 변통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연례진상, 노루가죽, 군수, 비자, 백랍.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一月 二十五日 乙巳

○ 以濟州牧使李尙銓狀啓, 沃溝載馬船致敗, 格軍十四名, 馬三十匹淹死事, 傳于洪萬鍾曰, 淹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1월 25일(을사)

□ 옥구에서 재마선이 침몰하여 격군 등이 물에 빠져 죽은 일에 관한 이상전(李尙銓)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176]의 장계에, "옥구(沃溝)에서 말을 실은 배가 침몰하여 격군(格軍) 14명, 말 30필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였다. 홍만종(洪萬鍾)[177]에게 전교하기를,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등에게 본도(本道)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옥구, 재마선, 이상전, 휼전.

176) 이상전(?~?): 제주목사로 1686년(숙종 12) 10월에 도임하여, 1688년(숙종 14) 4월에 체임.

177) 홍만종(1637~1688): 본관 풍산(豊山). 자 여수(汝受).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원, 호조참판, 도승지 역임.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二月 三日 癸丑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壽恒所啓, 頃見濟州牧使狀啓, 被災之慘, 前所罕有, 參以所聞, 則民事罔極矣. 蓋島中形勢, 異於陸邑, 常時亦無以資生, 而遭此凶荒, 若非朝家別爲顧濟, 則三邑之民, 決無救活之路矣. 曾在辛亥年, 朝家, 特軫島民切急之狀, 前後移轉穀物, 至於三萬餘石, 其時兩南, 雖甚凶荒, 沿海所儲穀物, 尙有餘裕, 推移入送矣. 卽今兩南儲蓄, 蕩然, 賑活本土之民, 亦患不贍, 實無可以波及他道者, 姑就兩南沿海邑穀物稍優處, 分定七千餘石, 使之移給, 而設令準數入送, 以次爲前頭救活之資, 亦將不足, 島民事, 誠爲切急矣. 上曰, 濟州, 異於陸地, 而年事之慘, 如此, 以此七千餘石之穀, 何以救活許多民人耶? 繼賑之穀, 與賑恤堂上, 相議料理, 移轉, 可也. 金壽恒曰, 本道凶荒至此, 不但賑資之難繼, 明年種子, 必無辦出之路, 辛亥年, 亦有雜穀種子入送之擧, 而以兩西穀物, 取來船運矣, 必須豫爲料理分付, 然後可以趁農節入送. 今年西路, 雖曰凶歉, 比諸三南, 則有間, 雜穀, 參酌取來, 以爲移轉之地, 似不可已矣. 上曰, 他無推移之道, 參酌取來, 可也. 兵曹判書李師命曰, 兩西田稅, 無上納之規, 而乙巳·丁巳年, 兩次作木以用矣. 卽今兩西收租案, 未及上來, 未知田稅米石數之幾何, 而不但取來移送于濟州, 亦多經費之道, 參酌移轉之數, 以爲施行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壽恒曰, 兩西所捧田稅, 雖在豐年, 其數似未滿於萬石, 若以雜穀二萬石, 取來, 則可當田稅萬石之米矣. 師命曰, 關西田稅, 沿海則作米, 山郡則作木, 移轉之外, 又取來雜穀二萬石, 然後或可繼用, 而若除田稅, 只爲移轉雜穀二萬石, 則與本廳之當初定奪於大臣者, 稍異矣. 壽恒曰, 關西田稅上納, 雖有前例, 臣意則欲以雜穀二萬石, 取來, 以當田稅之數, 而師命之意, 則欲於二萬石之外, 又爲取用田稅, 關西穀物, 如可以推移, 則依此爲之, 亦無妨矣. 上曰, 依本廳堂上所達, 爲之.【備局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2월 3일(계축)

□ 인견(引見)에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백성의 구활을 위해 양남(兩南)에서 곡물을 이전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178]이 인견(引見)에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얼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보니 재앙을 입은 참혹함이 전에 드물게 있던 바로, 들은 것을 참고하니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망극합니다. 대개

178) 비국당상(備局堂上): 비변사의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을 일컫는 말.

섬 안의 형세는 육지의 읍과는 달라 보통 때에도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조정에서 별도로 돌보아 주어 구제하는 일이 없으면 3읍의 백성들은 결코 목숨을 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신해년(1671)에 조정이 섬 백성들의 절급한 상황에 특별히 마음을 쓰며 걱정하여 앞뒤로 곡물을 이전(移轉)한 것이 3만여 석에 이릅니다. 그때 양남(兩南)[179]이 비록 심히 흉년이 들었지만 연해에 저축한 곡물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들여보냈는데, 지금은 양남에 저축한 것도 텅 비어서 본토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리기에도 또한 충분하지 못할까 걱정이니 실로 다른 도(道)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양남 연해의 읍 중에 곡물이 조금 넉넉한 곳에서 7천여 석의 몫을 나누어 정하여 이것을 이급(移給)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설령 정한 수량에 따라서 들여보내어 차례로 앞으로 다가오는 구활(救活)의 밑천으로 삼는다 해도 또한 부족할 것이니 섬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진실로 급급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가 육지와 달라서 농사가 이루어진 형편의 참혹함이 이와 같다. 이 7천여 석의 곡물로 어찌 허다한 백성들을 구활할 수 있겠는가? 진휼을 이어갈 곡식을 진휼청(賑恤廳)의 당상관과 상의하여 잘 헤아려 처리해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흉년이 이에 이르렀으니, 진휼에 필요한 물자를 잇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년 종자(種子)를 반드시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신해년(1671)에는 또한 잡곡 종자를 들여보내는 조치가 있었는데, 양서(兩西)[180]의 곡물을 취하여 와서 배로 실어 날랐었습니다. 반드시 미리 잘 헤아려 처리하여 분부해야 하니, 그런 후에야 농사철에 맞춰 들여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서로(西路)[181]는 비록 흉년이라고 하지만 삼남(三南)[182]에 비하면 잠시간의 겨를은 있으니 잡곡을 적절히 정하여 가져와서 이전하는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처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달리 추이(推移)할 방법이 없으니 적절히 정하여 가져오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이사명(李師命)[183]이 아뢰기를, "양서(兩西)의 전세(田稅)는 상납의 규정이 없어서, 을사년(1665)과 정사년(1667)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작목(作木)[184]하여 썼었습니다. 지금 양서의 조세를 거두어들인 문서가 아직 올라오지

179) 양남(兩南): 영남과 호남. 곧 경상도와 전라도.
180) 양서(兩西): 관서(關西)와 해서(海西). 곧 평안도와 황해도.
181) 서로(西路): 서도(西道). 즉 평안도를 이름.
182)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183) 이사명(1647~1689): 본관 전주(全州). 자 백길(伯吉). 호 포암(蒲菴).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병조판서 역임.
184) 작목(作木):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이나 콩 등의 물종을 무명[木]으로 바꾸어 내게 하는 것.

않았기에 전세미(田稅米)의 석수(石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가져와서 제주로만 이송(移送)할 것이 아니라 또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써야 할 길이 많으니 이전할 수량을 적절히 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85] 수항이 말하기를, "양서에서 받아들이는 전세는 비록 풍년이더라도 그 수가 1만 석이 차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에 잡곡 2만 석을 취하여 온다면 전세 1만 석의 미(米)에 합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명이 말하기를, "관서(關西)의 전세는 연해(沿海)는 작미(作米)로 하고, 산군(山郡)은 작목(作木)으로 합니다. 이전하는 것 외에 또 잡곡 2만 석을 취하여 온 연후에야 계용(繼用)할 수 있을 듯한데, 만약에 전세를 제하고 단지 잡곡 2만 석만을 이전한다면 본청(本廳)이 당초 대신(大臣)과 결정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수항이 말하기를, "관서의 전세 상납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신의 생각은 잡곡 2만 석을 가져와서 전세의 수를 감당하고 싶은 것이고, 사명의 생각은 2만 석 외에 또 전세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 관서의 곡물을 추이(推移)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한다 해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청 당상이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86]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양남, 구활, 진휼당상, 이사명, 양서.

185) 이상의 내용은《숙종실록》1686년(숙종 12) 12월 3일자 기사에 간략하게 확인됨.
186) 본 기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비변사등록》1686년(숙종 12) 12월 4일자 기사에 확인됨.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二月 十一日 辛酉

○ 常平廳啓曰, 因濟州牧使李尙銓狀啓, 本州三邑各樣貢物, 及年例進上物種, 依辛亥年例, 令該廳抄出書啓, 稟旨蠲減事, 自備局覆啓蒙允矣. 本州三邑貢物, 及進上物種, 依辛亥年裁減數, 權減,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2월 11일(신유)

□ 제주(濟州) 3읍의 공물 및 진상물종을 신해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감하고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상평청의 계

○ 상평청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의 장계에 따라 본주(本州) 3읍의 각양 공물과 연례 진상물종을 신해년(1671)의 전례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뽑아내어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품지(稟旨)[187]하여 견감하는 일을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188]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본주 3읍의 공물과 진상물종을 신해년에 덜어주었던 수에 따라 임시로 감하는 것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전, 공물, 진상물종.

187) 품지(稟旨): 특정한 사안을 보고하여 임금의 결재를 받음. 품(稟)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아뢴다는 뜻이고, 지(旨)는 임금의 뜻이나 결재란 뜻임.
188) 복계(覆啓):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아룀.

❖ 康熙 二十五年 丙寅 十二月 十三日 癸亥

○ 引見入侍時, 領議政所啓, 濟州三邑凶荒, 前所罕有, 卽今民事, 萬分切急, 賑救之資, 莫如鹽醬, 而濟州元無煮鹽之規, 故曾在辛亥年, 以本道所在戶曹案付之鹽, 入送矣. 今亦以五百石, 船運入送事, 分付戶曹及本道, 何如?【戶曹謄錄】

❖ 숙종 12년(1686) 병인년 12월 13일(계해)

□ 인견에 영의정이 입시하여 흉년이 심한 제주(濟州)에 소금을 배로 운송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에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189]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3읍의 흉년이 전에 드물게 있던 바로, 지금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매우 심히 절박합니다. 진휼하는 물자로 소금과 간장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본래 소금을 굽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신해년(1671)에는 본도(本道) 소재 호조대장[戶曹案付]에 기록된 소금을 들여보냈었습니다. 지금 또한 5백 석을 배로 운반하여 들여보내는 일을 호조와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호조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흉년, 염장, 호조대장.

189) 영의정: 당시 영의정은 김수항(金壽恒)임.

1687年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三月 十三日 辛卯

○ 今月十三日, 大臣·備局堂上入侍時, 檢閱沈季良解見任還收, 牌招察任事, 榻前定奪. …… 龍翼曰, 曾因傳敎, 濟州進上梔子一半, 代以白蠟封納便否, 問于本州矣. 得見牧使回牒, 則以爲梔子每患不足, 未得準封, 白蠟代半之擧, 誠爲多幸, 而但梔子, 則摘取於果園, 白蠟, 則收捧於軍兵, 如有加分定之擧, 則其弊亦多云. 槪梔子與白蠟, 自有貴賤輕重之殊, 梔子一斤之代, 雖未知定以白蠟幾許, 而果有加捧之擧, 則濟州凶荒最甚, 必不無軍兵之呼冤, 何以爲之? 敢此仰達. 上曰, 欲知其便否, 使之問之矣. 形勢如此, 則以梔子仍存, 可也. …….

❖ 숙종 13년(1687) 정묘년 3월 13일(신묘)

□ 남용익(南龍翼)이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비자의 절반을 백랍으로 봉납하는 것의 폐단에 대해 논의함

○ 금월 13일, 대신과 비국당상이 입시했을 때, 검열 심계량(沈季良)을 현 직임에서 해임한 것을 도로 거둬들이고, 패초(牌招)[190]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일을 탑전(榻前)[191]에서 결정하였다. 〈중략〉 남용익(南龍翼)[192]이 아뢰기를, "일찍이 전교(傳敎)에 따라서 제주(濟州)에서 진상하는 비자(梔子)의 절반을 백랍(白蠟)으로 봉납하는 것의 편의에 대해 본주(本州)에 물어보았습니다. 목사의 회첩(回牒)을 받아보니, 비자가 매번 부족하여 봉납의 수량을 따를 수가 없기에, 백랍으로 반을 대신하는 조치는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비자는 과원에서 따오고 백랍은 군사들에게서 거둬들이니, 만약에 몫을 나누어 정하는 조치를 더하게 되면 그 폐단이 또한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비자와 백랍은 절로 귀천과 경중의 차이가 있으니, 비자 1근을 대신하여 비록 백랍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과연 정한 액수 외에 더 거두어들이는 조치가 있다면 제주의 흉년이 가장 심한 때에 반드시 군사들의 하소연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편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해서 물어보게 한 것이다. 형세가 이와 같다면 비자로써 그대로 하

---

190) 패초(牌招): 승지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명(命)'자를 쓴 목패(木牌)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의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

191) 탑전(榻前): 임금의 자리 앞.

192) 남용익(1628~1692): 본관 의령(宜寧). 자 운경(雲卿). 호 호곡(壺谷). 시호 문헌(文憲). 1648년(인조 26) 문과 급제. 좌참찬, 예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저서《호곡집》.

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남용익, 비자, 백랍.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四月 十七日 甲子

○ 備邊司啓辭, 濟州漂到淸人等, 押送京中之意, 旣已啓下知委矣. 六十餘人遠路押來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 令該院別定善漢語譯官一員, 急速下送, 待候於海上, 以爲領來之地, 且押送北京時齎咨譯官, 預爲擇定治行, 咨文, 亦令該院, 前期撰出, 以待漂人到京後, 卽爲發送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 숙종 13년(1687) 정묘년 4월 17일(갑자)

□ 제주(濟州)에 표도한 청인(淸人)을 서울로 압송할 때 통역을 할 역관을 내려 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해 온 청인(淸人) 등을 서울로 압송하라는 뜻을 이미 계하(啓下)[193] 받아 알렸습니다. 60여 인을 데리고 먼 길을 압송할 때에는 역관의 통역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한어(漢語)를 잘하는 역관 1원(員)을 별도로 정하여 급히 내려 보내 바닷가에서 명령을 기다렸다 데려오게 하십시오. 또 북경으로 압송할 때 자문(咨文)[194]을 가지고 가는 역관을 미리 정하여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하게 하고 자문을 또한 해원으로 하여금 기한에 앞서 지어내게 하여 표도인이 서울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에 즉시 떠나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95]【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청인, 표도, 압송, 역관, 자문.

---

193) 계하(啓下): 임금에게 재가(裁可)를 받음.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하게 되면 '계(啓)'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에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함.

194) 자문(咨文): 조선의 국왕과 명(明)·청(淸)의 육부(六部) 사이에 주고받던 외교 문서.

195)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4월 1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十三日 庚寅

○ 龍翼曰, 朴思敦, 北馬持來之罪, 今當議處, 而其原情, 以爲三馬中, 二疋則北馬, 一疋則濟州馬, 而混入於高山驛屬公中云. 濟馬與否, 看審則可知, 故其馬, 使之上送, 而去年備局, 以淸馬·北馬持來者, 竝論以贓律事, 才已定奪矣. 凡贓律, 有監守自盜·枉法·不枉法三等, 今此淸馬與北馬貿來者, 必須定以【二行缺】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13일(경인)

□ 남용익(南龍翼)이 북마(北馬)를 가지고 온 박사돈(朴思敦)의 죄를 논함에 그 중 한 마리가 제주마(濟州馬)라 하기에 살펴보기 위해 그 말을 올려 보낼 것 등을 청함

○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 "박사돈(朴思敦)이 북마(北馬)[196]를 가지고 온 죄를 지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그 원정(原情)[197]에 3필의 말 가운데 2필은 북마(北馬)이고, 1필은 제주마(濟州馬)로 고산역(高山驛)의 속공(屬公)[198] 안에 섞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주마인지의 여부는 살펴보면 알 수 있으니 그 말을 올려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국(備局)이 청나라에서 나는 말과 북마를 가지고 온 자를 모두 장률(贓律)[199]로써 논하는 일에 대해 겨우 결정을 보았습니다. 무릇 장률에는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200]과 왕법장(枉法贓)[201]과 불왕법장(不枉法贓)[202]의 세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나라에서 나는 말과 북마를 사들인 자를 반드시 【2행이 빠짐[203]】"라고 하였다.[204]

---

196) 북마(北馬): 북도(北道) 곧 함경북도에서 나는 말.

197) 원정(原情): 죄인 등이 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198) 속공(屬公): 주인이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범법물(犯法物)·범장물(犯贓物) 등을 국가의 소유물로 귀속시킴.

199) 장률(贓律): 장죄(贓罪)를 다스리는 형률(刑律)로, 이 죄를 받게 되면 그 아들과 손자에게는 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승정원·장례원·사간원·경연관·세자시강원·춘추관·지제교·종부시·관찰사·도사·수령 등의 직책에 제수하지 않음.

200)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 《대명률(大明律)》〈형률(刑律) 도적(盜賊)〉의 감수자도창고전량률(監守自盜倉庫錢糧律)을 범한 죄라는 뜻으로, 감독하거나 지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창고의 금전과 양식 등의 물건을 훔친 경우는 수범(首犯)이나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장오죄(贓汚罪)로 논죄하는 것을 말함.

201) 왕법장(枉法贓): 어떤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부정하게 판결한 것.

202) 불왕법장(不枉法贓): 어떤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부정하게 판결하지는 않은 것.

203)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6월 26일 기사에 본 기사의 내용이 그대로 서술됨. 이에 의거하면 2행의 빠진 문장은 "某律, 然後可以依律照勘, 令備局議定後, 回啓何如, 上曰, 依爲之事命下矣, 朴思敦持

△ 주제어: 남용익, 박사돈, 북마, 제주마.

來北馬, 若以官穀買來, 則毋論北馬持來之罪, 便是監守自盜之贓, 雖非官穀, 抑買土民之馬, 則似當爲枉法贓, 若是以已物私和買來, 則似當爲不枉法贓, 本府就此三者, 淸北馬一體參酌照律宜當, 以此意分付何如, 答曰, 允."인 듯하다. 풀이하면, "(반드시) 어떤 율(律)로써 결정을 한 뒤에야 그 율에 의거해서 감처(勘處)할 수 있습니다.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결정한 뒤에 회계(回啓)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박사돈이 가지고 온 북마가 만약 관청 곡물로 사가지고 온 것이라면 북마를 갖고 온 죄를 논할 것 없이 이는 감수자도의 장률입니다. 또 비록 관청 곡물은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억지로 산 말이라면 이는 왕법장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의 돈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온 것이라면 이는 불왕법장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청나라에서 나는 말이든 북마이든 일체 참작해서 법률에 비추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다."라고 하였다.

204)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5월 14일과 6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十六日 癸巳

○ 申懹,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到人六十五名, 再昨入來, 而日勢已暮, 未及問情, 昨日始令本司郎廳, 與譯官等, 偕往詳問其居住根脚, 與敗船曲折, 南方事情, 則與當初所對於濟州·湖南者, 大意一樣, 故以其問情辭緣, 別單書入矣. 此外更無可問之事, 許多異國之人, 不宜久留京中, 依前定奪, 卽當押送於北京, 故衣·袴·戰笠·靴·韈·帽·帶等物, 依前例令戶曹措備分給, 則各人等, 皆叩頭稱謝云, 而其中數人, 自在道之時, 得病未差, 或有時方苦痛者, 勢難强迫登程, 令醫司別定醫官, 覓給當劑, 善爲救療, 姑觀一二日發送, 何如? 答曰, 允.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16일(계사)

□ 제주(濟州)에 표도한 65명에 대해 문정(問情)한 내용을 별단에 써서 들이면서 병자는 치료하고 보내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신양(申懹)[205]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표도인 65명이 그저께 들어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문정(問情)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제 비로소 본사 낭청으로 하여금 역관 등과 함께 가서 그 사는 곳과 근각(根脚)[206] 및 배가 침몰하게 된 경위와 남방(南方)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묻게 하니, 곧 당초 제주와 호남에서 대답했던 것과 대강의 뜻이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정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습니다. 이외에 다시 심문할 일이 없고, 허다한 이국인을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전에 내린 결정에 따라서 즉시 북경으로 압송해야 할 것이기에 웃옷[衣]과 바지[袴], 전립(戰笠), 신발[靴], 버선[韈], 두건[帽], 띠[帶] 등의 물건을 전례에 따라 호조로 하여금 조처하여 준비하고 나누어 주게 하니 곧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도(道)에 있을 때부터 병을 얻어 차도가 없었는데, 혹여 지금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형세 상 억지로 여정에 오르게 하기는 어려우니 의사(醫司)로 하여금 특별히 의관(醫官)을 정하여 병에 맞는 약제를 찾아서 잘 치료해 주면서 우선 하루 이틀 살펴보고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07]

---

205) 신양(1630~1706): 본관 평산(平山). 자 자평(子平). 호 관곡(寬谷).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대사간, 성균관대사성 역임.

206) 근각(根脚): 죄인의 생년월일과 용모 및 죄상을 기록한 서류.

207)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5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양, 표도인, 치료.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十六日 癸巳

○ 壽恒曰, 近雖連雨, 而畿田猶未洽, …… 壽恒曰, 濟州漂到人等, 明當發送, 而其中全州被捉人劉連稱名者, 情跡頗有可疑之端, 再三詰問, 終不吐實, 至曰吾入去之後, 則當發不好之說云. 外議或以爲留置無妨, 或以爲入送, 宜當, 而臣意, 則凡事, 理直則不跲, 自此具以實狀, 移咨彼中, 則彼豈有不信之理乎? 今若留之不遣, 事或發覺, 則誠爲難處, 莫如偕此漂漢人等, 起送之爲愈也. 上曰, 入送, 似可矣. 壽恒曰, 劉連者, 自言登州之人, 而言辭多有可疑處, 今此漂漢人等, 皆是登·蘇近處之人, 使之一處對坐, 詰問根脚後, 更爲稟處, 何如? 上曰, 依此爲之. …….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16일(계사)

□ 김수항(金壽恒)이 제주(濟州)에 표도한 한인들을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 전주에서 붙잡힌 유연(劉連)이라는 자를 대좌(對坐)하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김수항이 아뢰기를, “근래 연일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경기지방은 오히려 아직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중략〉 수항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표도인 등을 내일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전주에서 붙잡힌 유연(劉連)이라고 이름 불리는 자는 정황이 아주 의심스러운 조짐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따져 물어도 끝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들어가면 바로 좋지 않은 말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혹은 남겨두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하고, 혹은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은 모든 일은 이치가 곧으면 곤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실상을 갖추어 저쪽에 자문(咨文)을 보낸다면 저쪽이 어찌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남겨두어 보내지 않았다가 일이 혹 발각이라도 된다면 진실로 난처하게 되어 이 표도한 한인(漢人) 등과 함께 보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유연이라는 자는 스스로 등주인(登州人)이라고 말하는데, 말씨에 의심스러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도한 한인 등은 모두가 등주와 소주(蘇州) 근처 사람들인데, 이들을 한 자리에서 대좌(對坐)하여 근각(根脚)을 따져 물은 후 다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대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항, 표도인, 한인, 유연, 등주인.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十六日 癸巳

○ 申懹, 以備邊司言啓曰, 全州被捉劉姓人, 押送南別宮, 與濟州漂來各人接話, 以驗其情僞之意, 旣已稟定於榻前, 故以此意, 分付於譯官輩矣. 卽接其手本, 則所謂劉姓人, 率往濟州漂漢所在處, 與各省之人, 會坐一處, 各其方語, 多般詰問, 則彼此之語, 頓無相通, 漂漢等, 以爲決非中原之人, 劉漢, 氣色惶惙失措云. 手本辭緣, 則別紙書入, 而漂漢輩所言如此, 其非漢人, 則可以斷定, 今無入送北京之事, 亦無譯官輩同處更問之端, 令刑曹, 姑爲拘留, 以待智島人朴立推問狀啓之來, 知其根脚, 然後更稟處置, 何如? 傳曰, 允.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16일(계사)

□ 중국인이라 속인 유연(劉連)에 대한 수본(手本)을 별지에 써서 올리면서, 박립(朴立)을 추문한 장계가 올라온 뒤에 다시 아뢰어 처리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신양(申懹)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주에서 붙잡힌 유씨 성을 가진 이를 남별궁(南別宮)에 압송하여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들 각각과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하여 그 진정(眞情)과 거짓을 시험하게 하는 것을 탑전(榻前)에서 아뢰어 결정하였기에 이 뜻을 가지고 역관들에게 분부하였었습니다. 방금 그 수본(手本)[208]을 접하니, '유씨 성이라고 부르는 이를 제주에 표류해 온 중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각 성(省)의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 앉혀 각각 그 지방의 말로 여러 가지에 대해 따져 물으니, 피차의 말이 곧 서로 통하지 않자 표류해 온 자 등은 결코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유연이라는 자의 얼굴빛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본의 내용을 곧 별지에 써서 들였는데, 표류해 온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경으로 보낼 일은 없고 또한 역관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물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형조(刑曹)로 하여금 우선 구류하도록 하였다가 지도(智島) 사람 박립(朴立)을 추문(推問)한 장계가 오기를 기다려 그 근각(根脚)을 파악한 연후에 다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09]

---

208) 수본(手本): 공사(公事)에 관하여 실무자가 상사(上司) 또는 관계 관서에 보고하는 문서.
209)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5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양, 유연, 지도, 박립, 표류.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十六日 癸巳

○ 申懷, 以備邊司言啓曰, 以全州被捉漢人所招, 智島人朴立, 自本道捉囚營下, 推問實狀, 急速啓聞之意, 曾已入啓行會矣. 濟州漂來漢人押送時, 此漢, 竝爲入送事, 旣已定奪, 而朴立推問辭緣, 當入於咨文中, 本道啓聞, 若循例上送, 則必未免遲延之患, 各別急速啓聞之意, 別定禁軍, 發馬知委, 何如? 傳曰, 允.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16일(계사)

□ 박립(朴立)을 추문한 내용을 속히 계문(啓聞)하도록 전주에 파발마를 보내어 통지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신양(申懹)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주(全州)에서 붙잡은 중국인의 공초(供招)로 인하여 지도(智島) 사람 박립(朴立)을 본도(本道)로부터 감영에 잡아 가두고 실상을 추문(推問)하여 신속히 계문(啓聞)하겠다는 뜻을 일찍이 아뢰고 본도에 알렸습니다.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한인(漢人)들을 압송할 때 이 자를 아울러 입송하는 일은 이미 결정하였고, 박립(朴立)을 추문한 내용을 의당 자문(咨文) 안에 넣어야 하는데, 본도의 계문을 예(例)에 따라 올려 보낸다면 필히 지연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신속하게 계문하라는 뜻을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파발마를 띄워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10]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양, 지도, 박립, 표류, 중국인.

---

210)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5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五月 二十三日 庚子

○ 申懹, 以備邊司言啓曰, 全州被捉人劉連稱名者, 與濟州漂來人等, 一處對坐, 詰問根脚, 而無一言相通, 漂漢等, 皆以爲決非中原之人云. 故姑令刑曹, 拘留, 以待智島人朴立推問狀啓上來後, 稟處之意, 頃已啓達矣. 厥漢, 自拘留典獄之後, 大生疑惙, 自分必死, 晝夜呼哭, 專廢食飮, 令譯官等, 逐日往見, 開論勸食, 而猶不解惑, 每發乞哀求活之言, 且請還移於當初所寓之處云矣. 卽接刑曹馳報, 且聞譯官之言, 則自去夜猝然得病, 症甚危劇, 多施鍼藥, 少有回甦之勢, 而累日廢食, 氣息極其綿綴云. 厥漢根脚, 未及究覈, 而病勢如此, 不無徑斃之慮, 使之還爲移置于司譯院, 善爲救療, 何如? 傳曰, 允.【燼餘】

❖ 숙종 13년(1687) 정묘년 5월 23일(경자)

□ 유연(劉連)이 전옥서에 구류된 뒤 식음을 전폐하여 병세가 심하므로 사역원으로 옮겨 치료해 주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신양(申懹)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주(全州)에서 붙잡힌 유연(劉連)이라고 칭하는 자를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 등과 한 곳에 모여 마주 앉혀 근각(根脚)을 따져 물이니 한 마디 말도 서로 통하지 않았고, 표류해 온 자 등이 모두 결코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선 형조로 하여금 구류하여 지도(智島) 사람 박립(朴立)을 추문(推問)한 장계가 올라온 후에 품처하는 뜻을 이미 아뢰었었습니다. 그 자가 전옥서(典獄署)에 구류된 후부터 크게 겁을 내어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고 밤낮으로 소리 내어 슬피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기에 역관 등으로 하여금 날마다 가서 보아 개론(開論)하여 음식을 권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혹을 풀지 않고 매양 애걸하며 살려달라는 말만 하고, 또 당초에 머물던 곳으로 도로 옮겨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형조에서 올라온 치보(馳報)를 접하고 또 역관의 말을 들으니, 지난밤부터 갑자기 병이 나서 증세가 매우 위독하였는데, 침과 약을 많이 써서 회생하는 기세가 조금 있지만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호흡이 다급히 이어지고 합니다. 그 자의 근각을 아직 밝히지 못했고, 병세가 이와 같아서 경폐(徑斃)[211]의 염려가 없지 않으니, 도로 사역원으로 옮겨 치료를 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

211) 경폐(徑斃): 형(刑)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가 갑작스레 죽는 것.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양, 유연, 박립, 치료, 사역원.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六月 一日 丁未

○ 備邊司啓辭, 司譯院接置劉連稱名人處, 以全羅監司啓本辭緣, 令譯官張炫·李承謙等, 更加反覆詰問矣. 譯官等, 以其問答說話, 報知於本司, 故別單書入, 以備睿覽, 而厥漢前後所對之語, 變幻不一, 今此手本中問答, 亦多不成說話者. 且問答之際, 皆用我國之語, 而漢語, 則或發一二句語, 亦不能慣熟. 頃日濟州漂漢等, 對坐詰問之時, 不得通一語, 漂漢等, 皆以爲決非中原之人, 而我國譯官, 亦或以爲似非漢人, 且其爲人, 外而愚蠢, 而不無凶譎之態, 以其容貌擧止, 觀之, 則決非我國之人云, 其間情僞, 實爲難測, 必明知其根脚來歷, 然後可以有所處置. 渠旣以爲與高子英一時漂到之事, 與陳起雲·朴立等, 一處面質, 則虛實可以立卞云. 陳·朴兩人, 不可不捉來對辯, 而對辯之際, 或不無更引他人之端, 遠道多人, 推捉上京, 其弊可慮, 若以移文往復, 則不但有稽延之患, 亦難得其情實, 厥漢, 還爲押送本道, 使之留置營下, 嚴加守護, 與其援引各人等, 一處面對, 究覈其虛實, 俾得歸一後, 枚擧啓聞, 以爲處置之地, 而在京時同處, 問情譯官中, 曉事者一人, 亦爲一時下送, 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依啓.【備局謄錄】

❖ 숙종 13년(1687) 정묘년 6월 1일(정미)

□ 유연(劉連)의 내력을 밝히기 위해 진기운(陳起雲) 등을 대질시켜 허와 실을 조사하고 역관 중 1인을 내려 보내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사역원에 머물러 둔 유연(劉連)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전라감사가 올린 계본(啓本)의 내용에 따라 역관 장현(張炫)과 이승겸(李承謙) 등으로 하여금 다시 반복하여 따져 묻게 하였습니다. 역관 등이 그 문답했던 대화를 본사(本司)에 보고하였기에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여 예람(睿覽)[212]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앞뒤로 대답한 말이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않아, 지금 이 수본(手本) 가운데 문답에도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문답할 때에는 모두 우리나라의 말을 썼고, 중국어는 혹 한두 구절의 말을 하였지만 역시 익숙하지 않아서, 지난번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자 등과 마주 앉아 따져 물을 때에도 한 마디의 말도 통할 수 없었기에 표류해 온 자 등이 모두 결코 중국인이 아니라고 여겼고, 우리나라 역관 또한 혹여 중국인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 사람됨이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하지만 요사스럽게 속이는 태

212) 예람(睿覽): 임금의 열람.

도가 없지 않았으며, 그 용모와 행동거지로 본다면 결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그 사이의 진정(眞情)과 거짓을 실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필히 그 근각(根脚)의 내력을 분명히 파악한 후에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이가 이미 고자영(高子英)이 동시에 표류해 왔다는 일은, 진기운(陳起雲)과 박립(朴立) 등과 한 곳에서 얼굴을 맞대어 대질한다면 그 허와 실이 바로 판명될 것이라고 하니, 진·박 두 사람을 잡아와서 대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질할 때 혹 다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단서가 없지 않고, 먼 도(道)의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서울로 올려 보내게 되면 그 폐단이 염려가 되며, 만약에 이문(移文)으로 오고간다면 지연될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실상을 얻기 어려우니, 그 자를 도로 본도(本道)로 압송하여 감영에 머물러 두게 하고 엄중히 지켜서 그가 끌어들였던 각각의 사람 등과 한 곳에서 대면하게 하여 그 허와 실을 조사하여 하나로 결말이 나게 한 후에 낱낱이 들어 아뢰어 처치하도록 하고, 서울에 있을 때 함께 머물면서 문정(問情)하였던 역관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자 한 사람을 또한 동시에 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13]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신양, 유연, 박립, 치료, 사역원.

213)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6월 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六月 二十六日 壬申

○ 備邊司啓曰, 今五月十三日, 英陵奉審大臣以下請對引見入侍時, 兼禮曹判書南龍翼所啓, 朴思敦北馬持來之罪, 今當議處, 而其原情以爲三馬中, 二疋則北馬, 一疋則濟州馬, 而混入於高山驛屬公中云. 濟州馬與否, 看審則可知, 故其馬使之上來…….【備局謄錄】

❖ 숙종 13년(1687) 정묘년 6월 26일(임신)

□ 북마(北馬)를 가져온 박사돈(朴思敦)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고산역 속공으로 석여 들어간 제주마를 올려보내게 했다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게 아뢰기를, "금년 5월 13일 영릉(英陵)을 봉심(奉審)한 대신 이하가 청대(請對)하여 인견 입시할 때 겸예조판서 남용익(南龍翼)[214]이 아뢴, 박사돈[215]이 북마[216]를 가져온 죄를 지금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그의 원정(原情)에 '3필의 말 중 2필은 북마이고 1필은 제주마인데, 고산역(高山驛)의 속공(屬公)으로 섞여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마인지의 여부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말을 올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하략〉.【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박사돈, 북마, 고산역, 남용익.

---

214) 남용익(1628~1692): 본관 의령(宜寧). 자 운경. 호 호곡(壺谷). 시호 문헌(文憲). 1648년(인조 26) 문과 급제. 형조판서, 좌참찬, 예문관제학 역임. 저서 《식암집》.

215) 박사돈(1645~?): 본관 죽산(竹山). 자 자후(子厚). 1672년(현종 13) 무과 급제. 부령부사 역임.

216) 북마(北馬): 북도(北道) 곧 함경도에서 나는 말.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六月 二十九日 乙亥

○ 司僕寺啓曰, 濟州牧使李塤, 判官金煥遞任馬各三疋, 上來之初, 試其才品, 則皆不合內廐之用, 而越海遠來之馬, 疲瘠憊敗, 留養之後, 方可詳知, 故姑爲入送於內廐矣. 今因傳敎, 更試其才, 則李塤馬一疋, 金煥馬三疋, 皆是駑劣不可用者, 莫重進上之馬, 全不揀擇, 苟充塞責之狀, 極爲可駭, 李塤·金煥, 爲先從重推考, 以警日後, 宜當. 且昨日下敎之事, 內乘掩置, 今始來告, 事甚慢忽, 當該內乘, 亦爲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13년(1687) 정묘년 6월 29일(을해)

□ 내구(內廐)에 들여보내야 할 제주(濟州)의 막중한 진상마를 제대로 간택하지 못한 이인(李塤) 등을 종중추고(從重推考) 하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塤)[217]과 판관 김환(金煥)의 체임마(遞任馬) 각 3필이 올라온 처음에 그 재주와 품격을 시험해 보니 모두가 내구(內廐)[218]에서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 먼 곳에서 온 말이라 마르고 지쳐있으니 유양(留養)한 후에야 바야흐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구에 들여보냈었습니다. 지금 전교에 따라서 다시 그 재주를 시험해 보니 이인의 말 1필과 김환의 말 3필이 모두가 둔하고 졸렬하여 쓸 수 없는 것으로, 막중한 진상마를 온전히 간택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숫자만 채워서 책임을 면하고자만 한 실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인과 김환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219]하여 훗날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어제 하교한 일을 내승(內乘)[220]이 숨겨 두었다가 오늘에 와서야 고하였으니, 일을 매우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해당 내승을 또한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내구, 이인, 김환, 체임마, 종중추고.

---

217) 이인(1608~1669): 본관 성주(星州). 자 야수. 호 소옹(素翁). 1642년(인조 20) 문과 급제. 영광군수, 형조참의 역임. 제주목사로 1686년(숙종 12) 10월에 도임하여, 1688년(숙종 14) 4월에 체임.

218) 내구(內廐): 조선시대 궁내(宮內)에 따로 둔 내사복시(內司僕寺). 연여(輦輿)·승마(乘馬) 등을 맡아 봄.

219) 종중추고(從重推考): 관리의 과실이 있을 때 죄과를 따져서 그중 중한 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을 말함.

220) 내승(內乘): 조선시대 내사복시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밀시(密侍)·연곡(輦轂)·어승마점검(御乘馬點檢)·위양(喂養)·조습(調習)·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담당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七月 十五日 辛卯

○ 司僕寺啓曰, 今年濟州歲貢馬, 六月十七日, 到泊康津縣下陸, 依例分運上送, 而兵曹判書李師命, 禁軍分給次, 別啓請山馬一百疋, 先爲入來, 故別單書入, 而其中一疋, 到靈巖故失, 一疋, 到稷山病留矣, 敢啓. 傳曰, 知道.【太僕謄錄】

❖ 숙종 13년(1687) 정묘년 7월 15일(신묘)

□ 제주(濟州) 세공마가 도착해서 나누어 보내는데 이사명(李師命)이 금군(禁軍)에 나누어 줄 산마 100필을 먼저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금년 제주(濟州) 세공마가 6월 17일 배에 실려 강진현(康津縣)에 도착하여 육지에 내려 전례에 따라 분운(分運)하여 올려 보냈는데, 병조 판서 이사명(李師命)이 금군(禁軍)에게 나누어주려고 별도로 계청한 산마(山馬) 1백 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는데, 그 중에 1필은 영암(靈巖)에 도착하여 고실(故失)하였고, 1필은 직산(稷山)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공마, 이사명, 금군, 산마.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七月 二十七日 癸卯

○ 司僕寺啓曰, 三運濟州進上年例馬八疋, 御乘馬二十疋, 誕日馬二十疋, 冬至馬二十匹, 正朝馬二十匹, 差備馬二十疋, 式年凶咎馬一百疋, 年例凶咎馬一百疋, 合三百六十八疋, 今才上來, 而到中路病留三疋, 到本寺病留三疋, 到中路故失三疋, 船中故失一疋, 到本寺故失三疋計除, 一從時到實數, 禾毛色, 別單書入, 而捧上之際, 毛色錯雜, 多與馬籍有異, 領來色吏, 亦甚迷劣, 不能明白整齊, 故如此之類, 不得已姑以時毛色塡書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3년(1687) 정묘년 7월 27일(계묘)

□ 3운 제주(濟州) 진상마 308필이 지금 도착했는데 도중에 손실된 것들을 제외한 실제의 수 및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3운(運) 제주(濟州) 진상 연례마(年例馬)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 탄일마(誕日馬) 20필, 동지마(冬至馬) 20필, 정조마(正朝馬) 20필, 차비마(差備馬) 20필, 식년 흉구마(式年凶咎馬) 1백 필, 연례 흉구마(年例凶咎馬) 1백 필 합 308필[221]이 이제야 겨우 올라왔는데,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무는 3필,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이 들어 머무는 3필, 도중에 잃어버린 3필, 배 안에서 잃은 1필, 본시에 이르러 잃어버린 3필을 제하고, 한 결 같이 지금 도착한 것으로부터 실제의 수 및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 털색이 뒤섞여서 마적(馬籍)과 다른 것이 많았고, 거느리고 온 색리(色吏)가 또한 심히 미욱하고 변변치 못하여 명백하게 정돈하여 가지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類)는 부득이 일단 지금의 털색으로 채워 써넣을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진상마, 마적.

221) 308필: 원문에는 368필로 되어 있는데, 308필로 바로잡아 풀이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七月 二十九日 乙巳

○ 備忘記, 濟州進上馬八疋, 例爲別擇, 喂養封進, 而今觀丁卯進上之馬, 擧皆體小無才, 其中一疋, 尤爲瘦瘠, 擇執豫養之意, 果安在哉? 事之可駭, 莫此爲甚. 牧使李尙銓, 姑先從重推考.

❖ 숙종 13년(1687) 정묘년 7월 29일(을사)

□ 야윈 제주(濟州) 진상마를 봉진한 이상전(李尙銓)을 종중추고(從重推考) 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222]에 이르기를, "제주(濟州) 진상마 8필은 으레 특별히 간택하여 먹여 길러서 봉진하는데, 지금 정묘년 진상마를 보니, 대부분이 체구가 작고 재주가 없다. 그 가운데 1필은 더욱 야위었으니, 가려서 택하여 미리 기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목사 이상전(李尙銓)을 우선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전, 제주진상마, 종중추고.

222) 비망기(備忘記): 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一月 三日 戊寅

○ 文重曰, 入侍承旨, 例於其日, 仍爲直宿, 擧行條件, 必親看檢書入, 乃是規例, 而近來, 則注書記草, 必問於入侍諸臣, 故往復之際, 自致稽延矣. …… 九萬曰, 西北道推刷, 以今年江原·黃海·京畿·公洪等道之凶歉, 竝爲停止矣. 西北人, 如有往于兩南者, 則非但本處欲爲推還, 兩南年事, 優於西北, 故自備局成給公事, 使之推送, 而濟州人, 亦有出來兩南者, 似當一體推送, 而今聞濟州, 今年亦爲失稔云, 推送人民, 添其食口, 亦似可慮, 濟州推刷, 限明秋停止事,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擧行條】…….【燼餘】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1월 3일(무인)

□ 남구만(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흉년으로 인해 제주(濟州) 추쇄를 중지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서문중(徐文重)이 말하기를, "입시한 승지는 으레 그날 그대로 숙직하면서 거행조건(擧行條件)[223]을 반드시 직접 두루 살펴 검사하여 써넣는 것이 규례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주서(注書)[224]가 기초(記草) 하면서 반드시 입시한 제신(諸臣)에게 묻습니다. 때문에 오고갈 때에 절로 시간이 지연되기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남구만(南九萬)[225]이 말하기를, "서북도(西北道)의 추쇄(推刷)는 금년 강원도(江原道), 황해도(黃海道), 경기도(京畿道), 공홍도(公洪道) 등의 흉년으로 모두가 정지되었습니다. 서북인(西北人)으로 양남(兩南)에 간 자가 있다면 본처(本處)에서 추환(推還)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양남의 농사 형편이 서북보다 나으니 비국(備局)에서 공문을 작성해 주어 추송(推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인으로 또한 양남으로 나온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일체 추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들으니, 제주(濟州)가 금년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주 출신의 백성을 추송하여 그 먹는 입을 더하는 것 또한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것 같으니, 제주의 추쇄를 내년 가을까지 중지하는 일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26]

---

223) 거행조건(擧行條件): 신하들이 연석에서 진달한 말들 중에 조보(朝報)에 낼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반포하는 것.

224) 주서(注書):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 사초(史草)를 쓰는 일을 맡아봄.

225) 남구만(1629~1711): 본관 의령(宜寧). 자 운로(雲路). 호 약천(藥泉), 미재(美齋). 시호 문충(文忠). 1656년(효종 7)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 《약천집》.

226) 《비변사등록》 1687년(숙종 13) 11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거행조(擧行條)】〈하략〉.【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남구만, 추쇄, 양남.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一月 十三日 戊子

○ 濟洲幼學梁應渡等疏曰, 伏以臣, 竊伏聞近畿之民, 凡係邑弊民瘼, 輒皆登疏上徹, 或蒙格外之恩, 而惟我本州, 僻居海中, 風濤萬里, 有非尋常可越之地, 故雖有變通之事, 祈懇之志, 瞻望北宸, 無路自達矣. 今者本州之民, 荐遭凶歉之歲, 實無生活之道, 三邑父老一處相謀, 遣臣等三人, 瀝血陳章, 仰瀆天聽, 伏願聖明, 少垂憐察焉. 上年湖南之凶荒, 近古所無, 湖南諸郡, 本州尤甚, 一島生靈, 盡在涸轍, 幸賴朝廷之多數轉移, 牧使判官之善爲分賑, 堇保垂死之喘, 莫待新穀之出矣. 天之降災, 愈往愈酷, 今秋穡事, 又重失稔, 前夏, 水澇之慘, 八路之所同然, 而至於本州, 則旱乾特甚, 六月以後, 點雨不下, 各樣穀物, 盡被枯損, 卽今民間, 十家九空, 顚連道路, 氣象愁慘, 有死之外, 更無他策, 而未死之前, 又有萬萬急迫者, 何者? 本島民人等, 上年受食之穀, 【二行缺】牧場·米·租·粟·太, 竝二千二百七十石, 三邑倉儲米雜穀, 竝一萬六百二十七石, 本州軍餉米皮穀竝三千五石, 本州別備米皮穀竝六百五石, 合爲二萬七千四百八十二石零, 而竝與各年未收之穀, 而計之, 則其數優多, 朝家若無變通之擧, 而督令收捧, 則今方赤立之民, 救死猶不贍, 許多官糴, 尙何有辦出之〈道〉乎? 【數行缺】庚辛兩年數多分給之穀, 自朝家特爲蕩減, 故民生之, 至今生活, 皆由於此, 今亦依此兩年例, 或舊遠未收, 或移轉, 或別備中, 量宜蠲減後, 雖未減應納之物, 亦宜數年之限, 漸次收捧, 則一道之民, 庶有可生之道, 蓋島民形勢, 與陸地之民, 大有不同, 故陸地之民, 雖値本土之飢荒, 或有就豐相資之道, 而至於島民, 則茫茫大海, 隔以南北, 無處乞哀, 束手待死而已. 今者朝家, 雖仍凶歉, 遍用隱恤之典, 而本州與陸地, 若無分別輕重之道, 則非但朝家軫恤島民之意, 竟歸虛套, 雖以本州之事, 言之, 年年凶歉, 旣甚於陸地, 地之形勢, 又異於陸地, 若未蒙別樣恩澤, 則島中數百里地, 將未免爲枯魚之肆, 豈不哀哉, 豈不痛哉? 臣等, 竊自惟念, 天災已如此, 言之無益矣. 朝家於本州, 雖有別樣眷顧之意, 【數行缺】伏乞天地父母, 深軫矜恤之念, 斷自宸衷, 特爲採施, 則不但臣等之幸而已, 實是島中數萬生靈之幸也. 臣等, 且伏念山馬別捉之事, 曾前, 則限式年爲之矣. 自數年以來, 每歲而爲之, 當於五六月之間, 悉發三邑民丁, 蔽野漫山, 進逐圍捕, 如此之際, 自失農務, 民間有弊, 固不可勝言, 而且以養馬之道, 言之, 馬之字育, 政在二三月, 【二行缺】雖幸相尋, 免於自斃者, 亦皆氣渴瘦瘠不得成就, 以此觀之, 每歲捉馬, 有弊於民, 無益於馬, 亦願殿下, 俯詢此議於該寺, 以爲依前, 限式年別捉之地, 則公私幸甚云云. 啓下備邊司, 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濟州幼學梁應渡等上疏, 則備陳本道年年凶荒之狀, 且陳上年受食移轉穀物之數, 而請依庚·辛兩年例, 量宜蠲減是如爲白臥乎所, 本州形勢, 與陸地郡邑, 有異, 還上收捧多寡, 宜在本州牧使參

量擧行, 有難自朝家分穀數分付是白在果, 今年春·夏賑畢後, 本州別備穀, 及尤甚飢民處, 分給賑廳穀物, 依牧使狀啓, 旣自賑廳, 覆啓蕩減, 則蠲減一事, 今不當更爲擧論是白乎旀, 還上收捧, 本爲明春還給之計, 而民力旣竭之後, 雖欲收捧, 亦不可得, 自本州, 想必已爲酌量處置, 而畢捧磨勘之期, 不遠, 寬限收捧, 事亦不當, 更爲分付是白乎旀, 山馬之逐年別捉, 誠爲有弊, 依前規每式年捉送, 宜當爲白乎矣, 此則事係太僕, 令本寺稟處, 何如? 啓依允. 司僕寺啓目, 粘連啓下. 觀此上疏, 備陳山馬別捉之弊爲白有在果, 【數字缺】進上馬, 皆以山馬封進事, 因傳敎分付爲白有如, 其後本州牧使, 以山馬逐年捉出, 無以充數之意, 啓聞爲白乎, 亦以覆啓變通爲白有矣, 近年以來, 兵曹及訓鍊都監連續啓請, 未免有別捉之擧, 今此疏中陳弊之言, 果是實狀毋不喩, 山馬元數不多, 今後又有如前別捉之擧, 則將無以取種是白去乎, 姑限字息間, 勿爲捉出之意, 分付本牧, 以爲觀勢擧行之地, 何如? 啓依允. 【燼餘】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1월 13일(무자)

□ 제주(濟州)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거둬들이지 못한 곡식을 변통해 줄 것, 산마(山馬)는 전례대로 식년에 한정하여 별도로 잡아 올리게 해 줄 것을 청하는 양응도(梁應渡) 등의 상소

○ 제주(濟州) 유학 양응도(梁應渡) 등의 상소에, "삼가 아룁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근기(近畿)지방의 백성들이 무릇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거리에 관계된 것들은 모두 상소를 올려 위로 아뢰어져서 혹은 격외(格外)의 은전(恩典)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주(本州)는 궁벽한 바다 가운데 바람에 일어나는 큰 물결이 만 리를 이루어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변통(變通)할 일이나 간절히 바라는 뜻이 있더라도 임금님을 우러르며 스스로 아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본주의 백성들은 거듭 흉년을 만나 실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에 3읍의 부로(父老)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의논하여 신 등 3인을 보내어 진심을 드러내어 소장(疏章)을 올려 우러러 전하의 귀를 욕되게 하고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금이나마 가엽게 여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호남의 흉년은 근고(近古)에 없던 바로, 호남의 제군(諸郡) 중에 본주가 더욱 심하여 온 섬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얕은 물속에서 메말라 죽어가며 헐떡이는 붕어의 신세에 있었는데, 다행히 조정이 많은 곡물을 옮겨 준 것에 힘입고, 목사와 판관이 분진(分賑)을 잘하여 겨우 죽어가는 목숨을

보존하였기에 새 곡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갈수록 더욱 혹독해져서 금년 가을 농사는 더욱 흉년이 들었는데, 지난여름 홍수의 참혹함은 8도가 같은 바인데, 본주에 이르러서는 가뭄이 특히 심하여 6월 이후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각종 곡물이 모두 말라죽어 버려 지금 민간에는 열 집에 아홉은 비어있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은 거리를 메워 상황이 몹시도 비참하니, 죽는 것밖에는 다시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또한 매우 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도(本島) 백성 등이 지난해 받아먹은 곡식【2행이 빠짐】목장(牧場)·미(米)·조(租)·속(粟)·태(太)가 모두 2,270석, 3읍 창저미(倉儲米) 잡곡은 모두 10,627석, 본주 군향미(軍餉米) 피곡(皮穀)은 모두 3,005석, 본주 별비미(別備米) 피곡은 모두 605석으로 합이 27,482석 남짓인데, 매년 거둬들이지 못한 곡물과 아울러 계산하면 그 수는 아주 많습니다. 조정에서 변통하는 조치가 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게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제하는 것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데, 허다한 환곡을 어찌 마련하여 낼 방도가 있겠습니까?【몇 행이 빠짐】경신년(1680)과 신유년(1681) 두 해에 걸쳐 나누어 주었던 많은 곡식은 조정에서 특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이러한 두 해의 전례에 의거해서 오래된 것은 거두지 말거나, 이전(移轉)하거나 혹은 별비(別備)하는 것 가운데에서 알맞은 것을 잘 헤아려 견감(蠲減)한 후에, 비록 응당 바쳐야할 것을 감할 수 없다면 또한 마땅히 수년의 기한으로 점차 거둬들인다면 한 도(道)의 백성들은 거의 살아갈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섬 백성들의 형세는 육지의 백성과는 크게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육지의 백성들은 비록 본토의 기황(飢荒)을 만나더라도 혹은 넉넉한 곳으로 나아가 서로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섬 백성들에 이르러서는 망망한 대해(大海)가 남북으로 막혀 있어 애걸할 곳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조정이 비록 거듭된 흉년에 은휼의 은전을 두루 쓰고는 있지만 본주와 육지가 만약 차이 있는 조치가 없다면, 조정이 섬 백성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뜻이 결국에는 허투루 돌아감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본주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해마다 흉년은 이미 육지보다 심하고, 땅의 형세는 또 육지와 달라서 만약 특별한 은택을 입지 못한다면 섬 안 수백 리의 땅은 장차 목마른 고기의 어물전 신세[227]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

227) 목마른 고기의 어물전 신세[枯魚之肆]: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붕어 한 마리가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 있으면서 길 가는 장주(莊周)에게 한 말이나 한 되쯤 되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살려 줄 수 있겠느냐고 하자, 장주가 장차 오월(吳越) 지방으로 가서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 대주겠다

등이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니, 하늘의 재앙이 이미 이와 같으니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이 본주에 대해서 비록 특별한 보살핌의 뜻이 있더라도【몇 행이 빠짐】삼가 바라건대, 천지부모와 같은 임금님께서 심히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려 특별히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신 등의 다행일 뿐만이 아니라 실로 이는 섬 안의 수만 살아있는 백성들의 다행일 것입니다. 신 등이 또한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산마(山馬)를 별도로 잡아 올리게 하는 일은 일찍이 전에는 식년(式年)에 한하여 했었습니다. 수년 이래부터는 매해에 이를 행하니, 오뉴월 사이를 당해서는 3읍의 민정(民丁)을 모두 징발해서는 온 산과 들판에 흩어져서 나아가 쫓아 에워싸서 붙잡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절로 농사일을 잃어 민간의 폐단이 되고 있음은 진실로 이루다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기르는 도(道)를 가지고 말한다면, 말을 낳고 기르는 것은 정말로 2, 3월에 있는데【2행이 빠짐】비록 다행히 서로 찾았다 해도 자폐(自斃)를 면한 것은 또한 모두 기운이 다하고 수척하여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매해에 말을 잡아 올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고 말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니 또한 원컨대 전하께서는 해당 관아에 이러한 논의를 물어 전례에 의거하여 식년에 한하여 별도로 잡아 올리게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계목(啓目)[228]에 첨부하여 계하를 하였기에 이 제주 유학 양응도 등의 상소를 보니, 본도(本道)의 매년 흉년의 실상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또 지난해 받아먹은 이전(移轉) 곡물의 수를 진술하면서 경신년과 신유년 두 해의 예에 의거하여 헤아려 마땅히 견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주의 형세는 육지의 군읍(郡邑)과 차이가 있어서 환곡을 거둬들이는 정도는 의당 본주 목사가 참작하여 거행하는 것에 달려있어서 조정으로부터 분곡(分穀)의 수를 분부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봄·여름 진휼을 마친 후에 본주 별비곡(別備穀)이 더욱 심하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르렀고, 진청(賑廳)의 곡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목사의 장계에 따랐으며, 이

고 하자, 그 붕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장 한 말이나 한 되쯤의 물만 얻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일찌감치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것이 낫겠다.[吾得斗升之水然活耳 君乃言此 曾不如早索我於枯魚之肆]"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전하여 극심한 곤경에 처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228) 계목(啓目): 중앙 관서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 중요한 일을 올릴 때에는 계본(啓本)의 서식을 썼고, 작은 일을 올릴 때에는 계목의 서식을 사용함. 그 기본 서식은 첫 줄에 계목을 올리는 관서명을 적고, 다음 줄 첫머리에는 계목으로 시작하여 무슨 일인지를 적고, 다음 줄에 계목을 올린 시기와 관원을 적고, 올린 관서의 도장을 찍음. 담당 승지(承旨)가 올리면 임금이 윤허를 내리면서 이를 나타내는 계(啓)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다음, 윤허한 날짜와 담당 승지의 성(姓)을 적고 수결하였으며, 담당 승지는 계목을 올린 관서에 임금이 윤허하였다는 사실을 하달함.

미 진청으로부터 탕감(蕩減)을 거듭 아뢰었으니 견감(蠲減)하는 일은 지금은 다시 거론하지 말 것이며,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은 본래 내년 봄에 도로 돌려줄 계획인데 민력(民力)이 이미 다한 후에는 비록 거둬들이고자 해도 또한 할 수 없으니, 본주로부터 생각건대 반드시 이미 헤아려 처리했을 것이지만,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을 마감할 시기가 멀지 않았는데 기한을 넉넉히 연기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일 또한 마땅치가 않으니 다시 분부할 것이며, 산마를 해마나 별도로 잡아 올리는 것은 진실로 폐단이 되고 있으니 앞의 규례에 의거해서 매 식년에 잡아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일이 태복시(太僕寺)[229]에 관계되니 본시(本寺)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사복시의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였습니다. 이 상소를 보니, 산마를 별도로 잡아 올리는 폐단을 자세히 진술하였거니와【몇 자가 빠짐】 진상마를 모두 산마로써 봉진(封進)하는 일은 전교(傳敎)에 따라서 분부하였는데, 그 후 본주 목사가 산마를 해마다 착출(捉出)함에 있어 숫자를 채울 수 없다는 뜻을 계문(啓聞)하고 또한 변통할 것을 거듭 아뢰었고, 최근 몇 년 이래로 병조와 훈련도감이 연속해서 계청(啓請)하였지만 별도로 잡아 올리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소 가운데 폐단을 아뢴 말은 과연 이것이 실상일 뿐만이 아닙니다. 산마는 본디 숫자가 많지 않으니 지금 이후 또 전과 같이 별도로 잡아 올리는 일이 있다면 장차 종자를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우선은 새끼를 낳아 기르는 사이에 한해서 착출하지 말게 하는 뜻을 본목(本牧)에 분부하고 형세를 보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양응도, 환곡, 겸감, 산마, 태복시.

229) 태복시(太僕寺):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과 목장을 관장한 기관임.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一月 十三日 戊子

○ 答濟州幼學梁應渡等疏曰, 省疏具悉. 疏辭令該曹稟處.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1월 13일(무자)

□ 상소의 내용을 품처(稟處)하게 하겠다고 양응도(梁應渡) 등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 제주(濟州) 유학 양응도(梁應渡) 등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상소의 내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양응도, 상소.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一月 十三日 戊子

○ 午時, 上御熙政堂. 領議政南九萬, 兼禮曹判書南龍翼, 行吏曹判書呂聖齊, 左參贊尹堦, 綾平君具鎰, 兵曹判書李師命, 刑曹判書徐文重, 大司諫李奎齡, 右副承旨李頤命, 執義黃欽, 校理南致熏, 假注書朴泰淳·鄭徽周, 記事官尹星駿·宋相琦等, 入侍. …… (師命) 又啓曰, 故相臣洪重普, 爲兵判時, 請錄用金應河子孫, 其孫世龜, 除取才, 差南行宣傳官, 世龜, 後登科, 官至濟州牧使而死, 忠臣子孫, 各別收拾, 豈非偶然? 今者世龜之子, 重禹, 爲人頗佳, 亦合調用, 依世龜例, 除取才付南行宣傳官, 或部將, 因使業武, 何如? 九萬曰, 世龜, 曾爲臣徧裨, 故熟知其父子, 世龜, 固短少, 其子, 尤甚不似武人貌樣, 若以忠臣奉祀孫之故, 欲爲收錄, 則分付東銓, 使之調用, 何如? 上曰, 雖不必壯大, 亦可爲武士, 而聞大臣之言, 殊甚殘弱, 不可勸武, 方自吏曹別爲收用, 可也. …….【抄出擧行】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1월 13일(무자)

□ 희정당에 이사명(李師命)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를 지냈던 김세귀(金世龜)의 아들의 녹용(錄用)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니, 겸예조판서 남용익, 행이조판서 여성제, 좌참찬 윤계, 능평군 구일, 병조판서 이사명, 형조판서 서문중, 대사간 이규령, 우부승지 이희명, 집의 황흠, 교리 남치훈, 가주서 박태순·정휘주, 기사관 윤성준·송상기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이사명[230]이) 또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홍중보[231]가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김응하(金應河)[232]의 자손에 대한 녹용(錄用)[233]을 청하여, 그의 손자 김세귀가 취재(取才)를 하지 않고 남행선전관에 차정되었습니다. 김세귀는 뒤에 급제하여 벼슬이 제주목사에 이르러 죽었으니, 충신의 자손을 각별히 거두는 것이 어찌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김세귀의 아들 중우(重禹)는 사람됨이 아주 훌륭하니 또한 조용(調用)하기에 합당합니다. 김세귀의 사례에 따라서 취재를 하지 않고 남행선전

230) 이사명(1647~1689): 본관 전주(全州). 자 백길(伯吉). 호 포암(蒲菴).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병조판서 역임.

231) 홍중보(1612~1671): 본관 남양(南陽). 자 원백(遠伯). 호 이천(梨川). 시호 충익(忠翼). 1645년(인조 23) 문과 급제. 우참찬, 판의금부사, 우의정 역임.

232) 김응하(金應河): 본관 안동(安東). 자 경의(景義). 시호 충무(忠武). 삼수군수, 북우후 역임.

233) 녹용(錄用): 공신 또는 충신의 자손을 기록해 두었다가 채용하는 것.

관이나 부장(部將)에 부쳐 무(武)를 일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남구만(南九萬)[234]이 말하기를, "김세귀가 일찍이 신의 편비(偏裨)였기에 그 아비와 자식을 익히 잘 압니다. 김세귀는 실로 작고 왜소하였고, 그 아들은 더욱 심하여 무인의 모양 같지가 않습니다. 충신의 봉사손이기 때문에 수록(收錄)하고자 한다면 이조에 분부하여 등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꼭 장대해야만 무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의 말을 들으니 아주 잔약한 이를 무사로 권할 수는 없다. 이조에서 별도로 거두어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거행조건(擧行條件)을 초출(抄出)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세귀, 김중우, 김응하, 녹용.

234) 남구만(1629~1711): 본관 의령(宜寧). 자 운로(雲路). 호 약천(藥泉)·미재(美齋). 시호 문충(文忠). 1656년(효종 7) 문과 급제. 함경도관찰사, 형조판서, 영의정 역임. 저서《약천집》.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二月 三日 丁未

○ 呂聖齊曰, 濟州牧使, 旣已瓜滿, 前頭當差出, 而此州與他有異, 且値連歲凶荒, 似當擇人以送, 而無可合之人. 前監司李喜龍, 有才局, 而前任洪州時, 解由未出, 曾差江原監司時, 大臣陳達, 勿拘解由差送矣. 今旣罷歸, 前頭濟州差出時擬望, 勿拘解由, 何如? 上顧南九萬曰, 此言, 如何? 南九萬曰, 濟州異於他處, 喜龍, 且有才局, 勿拘解由, 似宜. 上曰, 勿拘解由, 特爲擬望, 可也. …….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2월 3일(정미)

□ 여성제(呂聖齊) 등이 입시하여 이희룡(李喜龍)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차출할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여성제(呂聖齊)[235]가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임기가 이미 찼으므로 이제 차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고을은 다른 곳과 다르고 또한 해를 거듭해서 흉년을 당했으니 의당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감사 이희룡(李喜龍)[236]이 재주와 도량이 있지만 앞서 부임했던 홍주(洪州) 때의 해유(解由)[237]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차출할 때 대신(大臣)의 진달(陳達)로 해유에 구애받지 않고 차출하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앞으로 있을 제주목사를 차출할 때의 의망(擬望)[238]에 있어서 해유에 구애받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남구만(南九萬)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제주는 다른 곳과 다릅니다. 희룡이 또한 재주와 도량이 있으니 해유에 구애받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유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히 의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

235) 여성제(1625~1691): 본관 함양(咸陽). 자 희천(希天). 호 운포(雲浦). 시호 정혜(靖惠). 1654년(효종 5) 문과 급제. 병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약천집》.

236) 이희룡(1639~1697): 본관 덕수(德水) 자 군서(君瑞). 1672년(현종 13) 문과 급제. 사헌부 지평·장령, 사간원 사간 역임. 제주목사로 1688년(숙종 14)에 도임하여, 1689년(숙종 15) 5월에 체임.

237) 해유(解由):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 중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解除)받던 일.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문자(解由文字)를 발급받음.

238) 의망(擬望): 이조(吏曹)에서 적임자 후보 세 사람을 뽑아 추천하는 일. 이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수망(首望)', 두 번째를 '중망(中望)' 또는 '부의(副擬)', 마지막을 '말망(末望)'이라 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여성제, 제주목사, 이희룡, 해유, 의망, 남구만.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二月 十二日 丙辰

○ 李思永,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封進今十二月令宗廟·永昭殿薦新乳柑·洞庭橘等果, 今纔來到, 以其次第論之, 則十月令柑橘, 十二月令唐柚子當先, 而如是逆次以來, 殊甚可怪, 而海外帆便, 有難遙度, 隨所到, 來十二日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2월 12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봉진할 당유자 등을 12일에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이사영(李思永)[239]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금번 12월령 종묘·영소전 천신 유감·동정귤 등의 과실이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 순서를 가지고 논한다면, 10월령 감귤이 12월령 당유자보다 의당 먼저 왔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차례가 뒤바뀌어 온 것은 심히 괴이하다 할 만 합니다. 하지만 바다 밖 배의 형편을 멀리서 헤아림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도착한 것에 따라 오는 12일 천진(薦進)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사영, 예조, 제주목사, 봉진, 월령.

239) 이사영(1634~1710): 본관 전주. 자 신보(愼甫).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예조참판, 대사간, 도승지 역임.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二月 十四日 戊午

○ 李思永,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所封去十月令宗廟·永昭殿薦新唐金橘·柑子等, 今始上來, 唐金橘則明日臘享大祭兼薦, 而柑子則昨因司饔院啓辭, 以進上所封, 旣已薦新, 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允.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2월 14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종묘 등에 천신(薦新)하기 위해 보낸 당금귤 등을 해원(該院)에서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사영(李思永)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지난 10월령 종묘·영소전 천신 당금귤·감자 등이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당금귤은 내일 납향대제(臘享大祭)에 겸천(兼薦)하고, 감자는 어제 사옹원(司饔院)의 계사(啓辭)에 따라 진상하여 봉(封)한 것을 이미 천신(薦新)하였으니 해원(該院)에 명하여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사영, 예조, 제주목사, 월령, 천신.

❖ 康熙 二十六年 丁卯 十二月 二十五日 己巳

○ 以李喜龍爲濟州牧使, …….

❖ 숙종 13년(1687) 정묘년 12월 25일(기사)

□ 이희룡(李喜龍)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희룡(李喜龍)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희룡, 제주목사.

1688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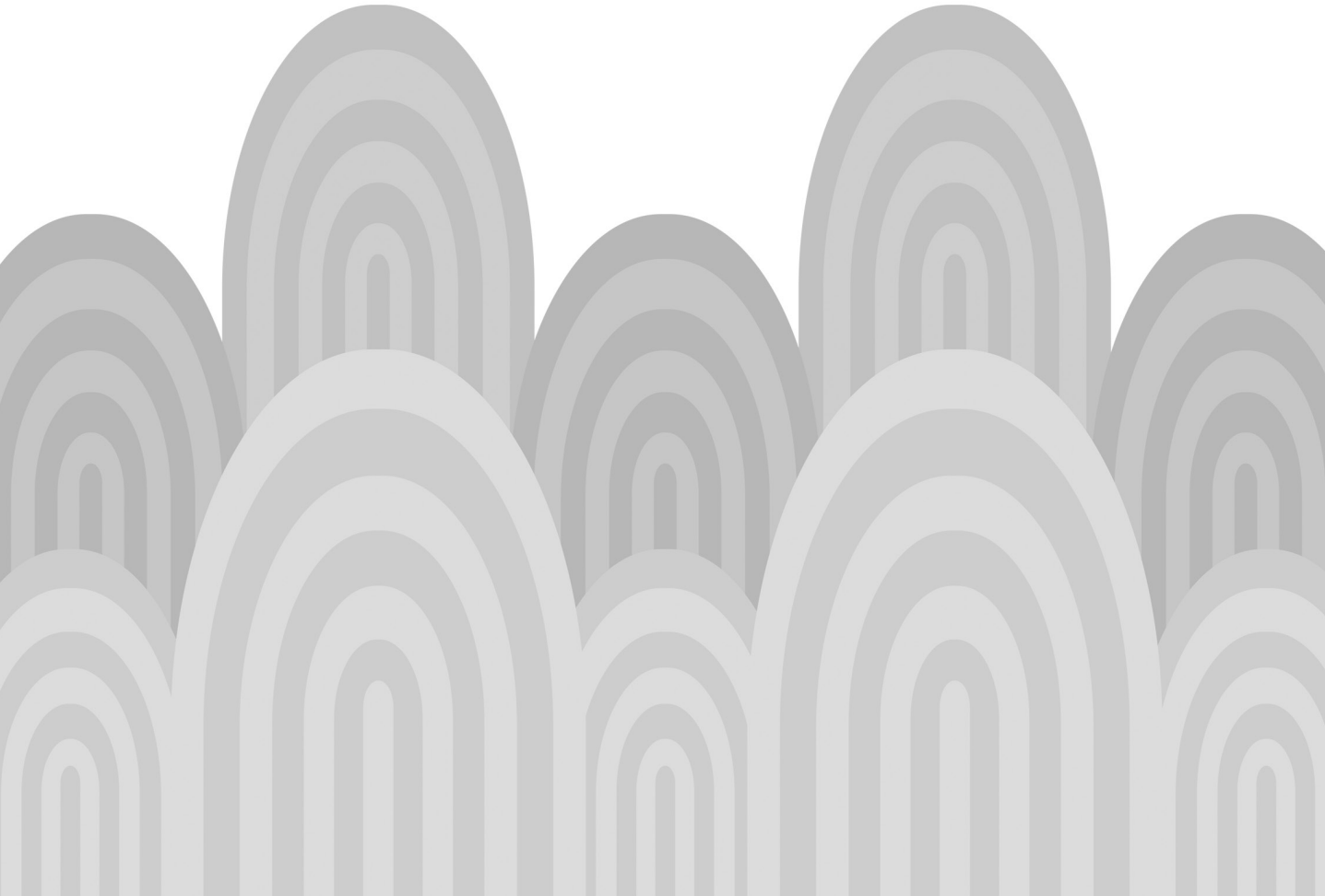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一月 十日 甲申

○ 謝恩, 濟州牧使李喜龍, …….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월 10일(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 등이 사은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이 사은(謝恩)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희룡, 제주목사, 사은.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一月 二十三日 丁酉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參贊尹堦所啓, 臣於待罪金吾之日, 前縣監鄭昌會, 累年囚禁受刑, 故欲知獄情, 考閱文案, 則當初啓聞, 出於下吏之發告, 而五十餘石穀物, 船運直送于其家, 爲言, 穀物出處, 則下吏, 初以爲隱結所捧, 後以爲衙祿所捧, 及田稅剩餘云, 昌會供辭, 則謂之五十餘石穀物, 軍官兩人奴馬, 竝逐朔會減料米收合者, 而欲貿軍器所用, 鄕校祭器, 出給者云. 臣曾爲濟州牧使, 詳知本縣結數之些少, 故取考戶曹濟州三邑收租案, 則癸亥所捧田稅, 未滿數十石, 其所謂剩餘云者, 必無是理, 下吏之構虛誣陷之狀, 判然無疑, 而不敢無端陳達. 且昌會之子擊錚, 覆啓判付內, 如有一毫冤枉之端, 則一向加刑, 亦非審克之道, 更令本道, 査覈啓聞後, 稟處之命, 故以待其査啓矣. 今日詣闕時, 適見其査覈覆啓, 則亦多有疑端擧論之事, 而以其無可據援證, 仍請加刑. 贓律, 有監守自盜, 枉法不枉法之別. 昌會, 設有私用穀物之事, 若是應急會減之物, 則固不犯於自盜之律, 而抱冤莫伸, 終死獄中, 則恐有傷於聖上好生之德, 似當令該府, 更査而稟處矣. 上曰, 下吏輩誣陷的實, 則其子擊錚, 蓋由於此矣. 稱冤之端, 不無其理, 大臣之意, 何如? 領議政南九萬曰, 田稅剩米, 多數取用, 則罪固罔赦, 而若以軍官奴馬料, 收合用之, 則直以贓法治之, 亦涉冤枉. 尹堦爲判義禁時, 旣詳其獄事, 且考閱該曹文案, 有此陳達, 不可不更爲明査處之矣. 上曰, 依爲之.【以上禁府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월 23일(정유)

□ 인견에 윤계(尹堦) 등이 입시하여 정창회(鄭昌會)가 관곡(官穀)을 도용(盜用)했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참찬 윤계(尹堦)[240]가 아뢰기를, "신이 의금부(義禁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에, 전 현감 정창회(鄭昌會)[241]가 여러 해 옥에 갇혀 형을 받고 있기에 옥사(獄事)의 진상을 알아보고자 문안(文案)을 자세히 살펴 열람한 즉, 당초의 계문(啓聞)은 하리(下吏)의 발고에서 나온 것으로, 50여 석의 곡물을 배로 운반하여 그의 집에 곧바로 보냈다고 말하였습니

240) 윤계(1622~1692): 본관 해평(海平). 자 태승(泰昇). 호 하곡(霞谷). 시호 익정(翼正). 호조판서, 함경도관찰사, 형조판서 역임. 제주목사로 1672년(현종 13) 5월에 도임하여, 같은 해 10월에 나거(拿去)됨. 저서 《동사(東史)》, 《제의(祭儀)》.

241) 정창회(?~?): 본관 하동(河東). 대정현감으로 1681년(숙종 7) 10월에 도임하여, 1683년(숙종 9) 12월에 체임.

다. 곡물의 출처에 대해 하리는 처음에는 은결(隱結)[242]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록(衙祿)[243]에서 거둬들인 것과 전세(田稅)의 나머지라고 하였습니다. 창회의 공사(供辭)[244]에서는 말하기를, 50여 석의 곡물은 군관 두 사람의 노복(奴僕)과 마필(馬匹)에 대해 한꺼번에 달마다 회감(會減)[245]한 요미(料米)를 수합한 것으로, 군기(軍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건과 향교의 제기(祭器)를 사려고 출급(出給)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었기에 본현(本縣)의 결수(結數)[246]가 매우 적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조(戶曹)에서 제주삼읍수조안(濟州三邑收租案)을 취하여 살펴보니, 계해년(1683)에 거둬들인 전세는 수십 석이 차지 않았으니, 그 이른바 '나머지'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리가 거짓을 꾸며 무함(誣陷)을 한 실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지만 감히 함부로 진달(陳達)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회의 아들이 격쟁(擊錚)으로 복계(覆啓)한 데에 대한 판부(判付)[247] 안에,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억울한 단서가 있다면,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또한 죄상을 자세히 살펴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가 아니다. 다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한 후에 품처(稟處)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사계(査啓)[248]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일 입궐하였을 때 마침 그것을 조사하여 복계한 것을 보니 또한 의심스러운 단서로써 거론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근거할 증거가 없기에 거듭 형을 가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장률(贓律)에는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과 왕법장(枉法贓), 불왕법장(不枉法贓)의 구별이 있습니다. 창회가 설령 곡물을 사사로이 쓴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하여 회감한 곡물이라면 진실로 감수자도율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통한 마음을 펴지 못하고 끝내 옥중에서 죽는다면 성상(聖上)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성을 손상시킬까 두려우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리배(下吏輩)가 무함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아들의 격쟁은 대개 여기에서 말

242) 은결(隱結):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꾀하여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토지.
243) 아록(衙祿): 지방의 수령과 벼슬아치들에게 주는 녹봉을 가리키는데, 아록전(衙祿田)을 주어서 백성들로부터 그 결세를 받아쓰게 함.
244) 공사(供辭):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공초(供招).
245) 회감(會減): 회계장부[會案]에 기록된 재화를 회계장부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함.
246) 결수(結數): 토지에 과세(課稅)하는 단위 면적인 결복(結卜) 혹은 결부(結負)의 수량.
247) 판부(判付): 입계(入啓)한 일에 대하여 임금이 윤허하거나 어떤 처치를 명하는 것을 말함.
248) 사계(査啓): 사핵계본(査覈啓本).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보고서.

미암은 것이다.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전세에서 남은 쌀을 다수 취하여 썼다면 죄는 진실로 용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군관의 노복과 마필에 대한 요미(料米)를 수합하여 썼다면 곧바로 장법(贓法)으로 다스리는 것이 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윤계가 판의금부사 당시에 이미 그 옥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또한 해조(該曹)의 문안을 자세히 열람하여 이와 같이 진달하는 것이니 다시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창회, 윤계, 남구만, 격쟁, 회감.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三月 十七日 庚寅

○ 下直, 濟州牧使李喜龍.

❖ 숙종 14년(1688) 무진년 3월 17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희룡, 제주목사, 하직.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四月 十一日 癸丑

○ 謝恩, 副校理尹德駿, …… 濟州敎授金繼興.

❖ 숙종 14년(1688) 무진년 4월 11일(계축)

□ 제주교수(濟州敎授) 김계흥(金繼興) 등이 사은함

○ 부교리 윤덕준, 〈중략〉 제주교수(濟州敎授) 김계흥(金繼興)[249]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계흥, 제주교수, 사은.

249) 김계흥(1647~1701): 본관 광산(光山). 자 성경(盛卿). 1676년(숙종 2) 문과 급제. 사헌부감찰 역임.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四月 二十日 壬戌

○ 司憲府照目, 前濟州牧使李尙銓矣, 年例進上馬八匹, 事體自別, 在前, 必以純色馬封進, 而今番, 則其中, 以雜馬苟充封進, 極爲可駭, 罪決杖一百, 告身盡行追奪, 私罪, 啓功減一等.

❖ 숙종 14년(1688) 무진년 4월 20일(임술)

□ 잡마(雜馬)를 봉진한 죄를 지은 이상전(李尙銓)에 대해 조율(照律)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헌부의 조목

○ 사헌부의 조목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에 대한 것은 일의 체통이 절로 각별합니다. 전에는 반드시 순색마(純色馬)로 봉진했는데, 금번은 그 가운데 잡색으로 구차하게 채워 봉진하였으니 심히 놀랄 만합니다. 죄가 결장(決杖) 1백에 고신(告身)[250]을 모두 추탈하는 데에 해당하는데, 사죄(私罪)이니 공(功)으로 한 등급을 감하는 것으로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전, 제주목사, 순색마, 잡색, 봉진.

250) 고신(告身):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직첩(職牒).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五月 十二日 癸未

○ 柳之發,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牧使李尙銓, 遞任進上馬三匹上來. 八月載船上送, 至洋中, 逢風漂流, 不知去處, 故報知本寺後, 更爲捉出養飼,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馬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4년(1688) 무진년 5월 12일(계미)

□ 이상전(李尙銓)의 체임 진상마가 올라왔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유지발(柳之發)[251]이 사복시의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상전(李尙銓)의 체임 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올라왔습니다. 8월에 배에 실어 올려 보낸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본시(本寺)에 보고하여 알린 후에 착출(捉出)하여 기르고 먹이다가 지금에야 올라왔기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면서 전례에 따라 내구마(內廐馬)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전, 진상마, 내구마.

---

251) 유지발(1633~1705): 본관 진주(晉州). 자 기지(起之).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회양부사, 사간원 정언, 사헌부장령 역임.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六月 九日 庚戌

○ 下直, 濟州敎授金繼興.

❖ 숙종 14년(1688) 무진년 6월 9일(경술)

□ 제주교수(濟州敎授) 김계흥(金繼興)이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김계흥(金繼興)이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김계흥, 하직.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七月 三十日 庚子

○ 備邊司啓曰, 濟州漂到淸人, 押送京中之意, 纔已啓下行會矣, 異國人遠路押來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 令該院, 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 急速下送海上, 以爲領來之地, 且押送北京時, 齎咨譯官, 豫爲差定治行, 咨文, 亦令該院撰出, 以待漂人到京後, 卽爲發送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校正 南鶴宗. 日記廳郎廳 南鶴老.】

❖ 숙종 14년(1688) 무진년 7월 30일(경자)

□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청인(淸人)을 북경으로 압송할 때 자문(咨文)을 가져갈 역관을 미리 차정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류한 청인(淸人)을 북경으로 압송할 뜻을 이미 계하(啓下)하여 행회(行會)[252]하였는데, 이국인을 먼 길 압송할 때 통역하여 말을 통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별도로 한어(漢語)를 잘 이해하는 역관 한 사람을 정하여 속히 해상으로 내려 보내어 데려오게 하십시오. 또한 북경으로 압송할 때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을 미리 차정(差定)하여 여장을 준비하게 하고, 자문을 또한 해원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여 표류한 사람들이 서울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에 즉시 떠나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처럼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53]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교정 남학종(南鶴宗). 일기청낭청 남학로(南鶴老)】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류, 청인, 역관, 자문.

---

252)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

253) 《비변사등록》 1688년(숙종 14) 7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八月 三日 癸卯

○ 備忘記, 曾前濟州貢馬上送, 在於八·九月草殘之時, 多有致斃之患, 故自孝廟朝, 別爲警責, 累度申飭之後, 每於七月內, 幾盡上來矣. 今年貢馬, 已屆仲秋, 尙不上送, 近年以來所未有之事, 殊甚可駭. 過限發船, 以致如此, 則責在本牧, 下陸後, 處處淹留, 以致如此, 則責在該道該邑, 此一款, 令太僕明白査稟後, 當該官, 姑先從重推考.【以上司僕寺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8월 3일(계묘)

□ 공마(貢馬)를 늦게 보낸 연유를 조사하고 해당 관원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에 이르기를, "일찍이 전에는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을 올려 보내는 것이 8,9월 풀이 다 시든 때여서 죽게 할까하는 근심이 많이 있었다. 때문에 효묘(孝廟) 때 이래로 특별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여러 차례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후에는 매번 7월 안에는 거의 다 올라왔다. 금년 공마는 이미 중추(仲秋)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올려 보내고 있지 않다. 최근 몇 년 이래로 없던 일이니 매우 심히 놀랍다. 기한을 넘겨 배를 띄워서 이렇게 되었다면 책임은 본목(本牧)에 있는 것이다. 육지에 내린 후에 곳곳에서 지체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면 책임은 해당 도(道)의 해당 읍(邑)에 있는 것이다. 이 한 조목을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명백하게 조사하여 아뢴 후에 해당 관리를 우선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공마, 태복시, 종중추고.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八月 二十二日 壬戌

○ 備邊司郎廳, 以領左相意啓曰, 統制使李世選, 以漂船事狀啓, 纔已覈啓矣. 今此船隻, 漂流洋中, 別無近岸留泊之事, 則只當問其爲何國人, 取見所持公文之後, 卽令下海, 任其所之, 而統制使, 別生意見, 使之回泊營下, 以爲久留守護之計, 致有此難處之弊, 此實由於未諳朝家定式之致, 今後則不可無明白定奪分付之擧矣. 曾前他國商船之漂到於濟州者, 船隻雖破傷, 不至於全然敗失, 所持公文, 果若明白, 則修改其什物, 直爲發還, 一邊馳啓事定式, 則沿海各邑, 設有此等漂船, 亦當一體擧行, 而船隻完固, 漂流於水中稍遠之處者, 不過瞭望察其所向而已, 雖在水中, 如或去岸不遠者, 則觀其船體人物之如何, 揮斥發送, 勿令近岸, 其來泊岸邊者, 則問其某國人, 考見公文, 卽爲發送後, 馳啓, 宜當. 以此等意, 定式知委於兩南監司及統制使·水使等處, 以此遵行, 何如? 答曰, 依啓.【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8월 22일(임술)

□ 타국 상선이 제주에 표류해 왔을 때의 정식(定式)으로 양남(兩南) 감사 등에게 명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 낭청이 영·좌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통제사 이세선(李世選)[254]이 표류한 선박의 일로 장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복계(覆啓)하였습니다. 지금 이 선박은 바다에서 표류하였지만, 달리 해안 가까이에서 머물며 정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의당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고, 소지한 공문을 가져다 본 후에 즉시 바다로 나가게 해서 그것이 가는 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사가 달리 의견을 내어서 영하(營下)로 돌아 정박하게 하고는 오래 머물며 수호(守護)할 계책을 세워 처치하기 곤란한 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조정의 정식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까닭입니다. 지금 이후 명백하게 정탈(定奪)[255]하여 분부하는 조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전에 타국 상선이 제주에 표류해 왔을 때는 선박이 비록 깨어져 상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파손되지 않았고 소지한 공문이 명백하다면, 그 집물을 수리하는 대로 바로 돌려보내는 한편 치계(馳啓)하는 일에 대해 정식하였습니다. 연해 각 읍에 만약 이와 같

254) 이세선(1628~1698): 본관 전의(全義). 자 선보(選甫). 1657년(효종 8) 무과 급제. 통제사, 어영대장, 병조참판 역임.

255) 정탈(定奪):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임금의 재결(裁決).

이 표류해온 선박이 있다면 또한 마땅히 똑같이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박이 견고하고 바다 위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표류하는 배는 높은 곳에 올라 그것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바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배는 그 선체와 인물이 어떠한지를 보고 물리쳐 떠나보내어 해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변에 정박한 배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고, 공문을 살펴보고 즉시 떠나보낸 뒤에 치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정식하여 양남(兩南) 감사 및 통제사와 수사 등에게 명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56]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류, 이세선, 선박, 정식.

256)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8월 2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九月 十五日 甲申

○ 備邊司啓曰, 濟州漂到人, 越海之後, 使之押送京中矣. 得接全羅監司所報及領來譯官手本, 則今月初四日下陸, 初六日自海南離發云, 數日來, 似當入來, 令該曹豫爲修治南別宮家丁所入房舍, 以爲接置之所, 供饋等事, 竝依前例擧行, 而禁軍解事者一人, 別爲擇定, 領率留衛軍十餘名防守, 俾無雜人出入之弊. 且譯官在道問情, 雖與初到濟州所言無異, 而入京後, 亦令本司郎廳一員, 與解事譯官數人, 更爲盤問情實後, 令齎咨譯官押送, 到鳳凰城交付之後, 只齎咨文, 入往北京, 而分付義州府尹, 使之豫爲送人, 通報于鳳城, 以爲車輛整齊押去之地, 何如? 傳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9월 15일(갑신)

□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면 남별궁(南別宮)에 머물게 하여 조사한 뒤, 역관으로 하여금 봉황성(鳳凰城)으로 압송하여 교부한 후에, 북경에 자문을 전달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은 바다를 건넌 후에 서울로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전라감사가 보고한 것과 데리고 오는 역관(譯官)의 수본(手本)을 접하니, 금월 4일에 육지에 내렸고, 6일에 해남(海南)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내로 들어올 것 같으니 해조(該曹)에게 미리 남별궁(南別宮)[257]에 가정(家丁)[258]이 들어가는 방사(房舍)를 정비하여 접치(接置)하는 장소로 삼게 하고, 공궤(供饋) 등의 일을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며, 금군(禁軍)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자 1인을 특별히 선정하여 유위군(留衛軍) 10여 명을 거느려 지키면서 잡인이 출입하는 폐단을 없게 하십시오. 또한 역관이 길에서 문정(問情)한 것이 비록 처음 제주에 표도(漂到)하여 말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서울에 들어온 후에 또한 본사(本司) 낭청 1원(員)이 사리를 잘 아는 역관 몇 사람과 함께 다시 실정을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갈 역관에게 압송하게 하십시오. 봉황성(鳳凰城) 도착하여 교부(交付)한 후에는 단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

257) 남별궁(南別宮): 서울 소공동(小公洞)에 있었던 조선왕조의 별궁으로, 1593년(선조 26)에 선조(宣祖)가 환도(還都)한 뒤에 이곳에서 명나라 장수와 관원들을 접견함. 여기에서 유래하여 이후 남별궁으로 불리면서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장소로 쓰임.

258) 가정(家丁): 집안에서 부리는 남자일꾼을 통칭하는 말. 여기서는 사신이 올 때 함께 따라온 막일꾼을 말함.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의주부윤에게 분부하여 미리 사람을 보내어 봉황성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레를 정비해서 압송하여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59]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류, 남별궁, 역관, 봉황성.

259) 《비변사등록》 1688년(숙종 14) 9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九月 十五日 甲申

○ 李思永, 以備邊司意啓曰, 漂海人越海之後, 使之押送京中矣. 得接全羅監司狀啓, 則今月初四日下陸, 初六日自海南離發云, 數日來似當入來, 令該曹豫爲修治南別宮家丁所入房舍, 以爲接置之地, 供饋等物, 竝依前例擧行, 而禁軍中解事者一人, 別爲擇定, 領率留衛軍十餘名防守, 俾無雜人出入之弊. 且譯官在道問情, 雖與初到濟州問情無異, 而入京後, 亦令本司郎廳一員, 與解語譯官數人, 更爲盤問情實後, 令齎咨譯官押送 鳳凰城交付之後, 只齎咨文入往北京, 而分付義州府尹, 使之豫爲送人, 通報於鳳城, 以爲車輛整齊押去之地, 何如? 傳曰, 允.【燼餘】

❖ 숙종 14년(1688) 무진년 9월 15일(갑신)

□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면 남별궁(南別宮)에 머물게 하여 조사한 뒤, 역관으로 하여금 봉황성(鳳凰城)으로 압송하여 교부한 후에, 북경에 자문을 전달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사영(李思永)[260]이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표해인(漂海人)은 바다를 건넌 후에 서울로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전라감사의 장계를 접하니 금월 4일에 육지에 내렸고, 6일에 해남(海南)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내로 들어올 것 같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남별궁(南別宮)에 가정(家丁)이 들어가는 방사(房舍)를 정비하여 접치(接置)하는 장소로 삼게 하고, 공궤(供饋) 등의 일을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며, 금군(禁軍)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자 1인을 특별히 선정하여 유위군(留衛軍) 10여 명을 거느려 지키면서 잡인이 출입하는 폐단을 없게 하십시오. 또한 역관이 길에서 문정(問情)한 것이 비록 처음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하여 말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서울에 들어온 후에 또한 본사(本司) 낭청 1원(員)이 말의 뜻을 아는 역관 몇 사람과 함께 다시 실정을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에게 압송하게 하십시오. 봉황성(鳳凰城)에서 교부(交付)한 후에는 단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의주부윤에게 분부하여 미리 사람을 보내어 봉황성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레를 정비해서 압송하여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사영, 표류, 남별궁, 역관, 봉황성.

---

260) 이사영(1634~1710): 본관 전주. 자 신보(愼甫).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대사간, 도승지 역임.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九月 十九日 戊子

○ 備邊司啓曰, 濟州漂到漢人等, 卽者京畿差使員領來, 故使之入接於南別宮, 而別定本司郎廳, 與解事譯官, 進去問情之意, 敢啓. 答曰, 知道.【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9월 19일(무자)

□ 제주(濟州)에 표도한 한인들을 남별궁(南別宮)에 머물게 하고, 본사 낭청과 역관이 문정하러 나아간다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도한 한인 등을 앞서 경기 차사원(差使員)이 데리고 왔습니다. 때문에 남별궁(南別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였는데, 본사(本司) 낭청을 특별히 정해서 사리를 잘 아는 역관과 나아가서 문정(問情)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도, 한인, 남별궁, 문정.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九月 二十日 己丑

○ 備邊司啓曰, 昨日濟州漂漢人等入來後, 使本司郎廳與解事譯官等問情, 則與在濟州所問答者, 一樣別單書入, 而此人等, 久留有弊, 留二日, 二十二日發遣, 宜當. 曾前漂漢人處衣袴等物, 自戶曹造給矣, 今亦依前例造給, 而且行過平安道之時, 每人銀子二兩, 令管餉特爲分給事, 亦爲分付平安監司, 依此擧行, 何如? 答曰, 允. 【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9월 20일(기축)

□ 제주(濟州)에 표도한 한인에 대해 문정(問情)을 마쳤으므로 옷과 은자를 주어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어제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했던 한인(漢人) 등이 들어온 후에 본사 낭청으로 하여금 사리를 잘 아는 역관 등과 함께 문정(問情)하게 하니 제주에 있을 때 문답한 것과 한결같은 내용의 별단(別單)을 써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등은 오래 머물면 폐단이 있으니 이틀을 머물렀다 22일에 떠나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찍이 전에 표도했던 한인에게 의복 등의 물건을 호조(戶曹)로부터 만들어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전례대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또 일행이 평안도를 지날 때 각각의 사람에게 은자(銀子) 2냥(兩)을 관향사(管餉使)로 하여금 특별히 나누어 주는 일을 또한 평안감사에게 분부하여 이와 같이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61]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도, 한인, 호조, 은자, 관향사.

261) 《비변사등록》 1688년(숙종 14) 9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七年 戊辰 九月 二十五日 甲午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箭串所放馬疋, 例於七八月間, 臣等, 與兩局大將出往, 軍兵等處, 提給戰馬矣. 今年則濟州貢馬, 尙不上來, 今已草衰, 撤場不遠, 故今年則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御營廳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9월 25일(갑오)

□ 제주(濟州)의 공마가 올라오지 않아 군병들에게 전마(戰馬)를 제급(提給)할 수 없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살곶[262]에 방목하고 있는 마필은 으레 7,8월 사이에 신 등이 양국(兩局)[263]의 대장과 나아가서 군병 등에게 제급(提給)하는 전마(戰馬)입니다. 금년은 제주(濟州)의 공마(貢馬)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이미 풀은 시들어서 철장(撤場)이 멀지 않았으니, 금년은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어영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살곶, 전마, 공마, 양국.

---

262) 살곶[箭串]: 현재 서울 성동구(城東區)에 있는 뚝섬의 옛 이름 중의 하나.
263) 양국(兩局): 어영청(御營廳)과 훈련도감(訓鍊都監).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月 六日 乙巳

○ 司僕寺啓曰, 濟州船運駑駘馬三百匹內, 十五匹, 洋中敗沒, 五匹, 船中故失, 二十三匹, 到中路病留, 七匹則中路故失, 一匹則中路鬪失, 二百四十九匹入來, 五匹到本寺故失, 實數, 只是二百四十四匹, 而其第次毛色, 與本州啓本, 箇箇相左, 錯雜莫甚. 色吏迷劣, 莫知其故, 不得已以時到毛色捧上, 別單書入矣. 莫重封進馬領來色吏, 不爲擇定, 以專不省事, 迷不知東西者, 苟充定送, 以致如此, 事極可駭, 濟州牧使李喜龍,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司僕寺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0월 6일(을사)

□ 제주(濟州)에서 선운(船運)한 노태마(駑駘馬)의 상태가 계본과 다른 까닭을 모르는 색리를 보낸 이희룡(李喜龍)의 추고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선운(船運)한 노태마(駑駘馬) 3백 필 안에 15필은 바다 한가운데서 패몰(敗沒)하였고, 5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였으며, 23필은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7필은 도중에서 잃어 버렸고, 1필은 도중에서 잃어버려 249필이 들어왔는데, 5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한 후 잃어버려 실제의 수는 단지 244필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 차례의 털색이 본주(本州)의 계본(啓本)과 개개가 서로 어긋나고 뒤섞여 어수선한 것이 아주 심합니다. 색리가 미욱하고 변변치 못하여 그 까닭을 알지 못하니 부득이 지금 도착한 털색으로 거두어 올리면서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막중한 봉진마(封進馬)를 거느리고 오는 색리를 가려서 택하지 않고, 전혀 일을 살피지 못하여 동과 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가지고 구차하게 숫자만 채워 보내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이 심히 놀랄 만합니다. 제주목사 이희룡(李喜龍)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선운, 노태마, 봉진마, 이희룡.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月 十一日 庚戌

○ 備邊司啓曰, 西北民推刷, 上年則江襄·黃海·京畿·公洪道等, 因凶歉, 竝爲停止, 只令兩南擧行矣. 今年 …… 濟州人推刷, 亦一體擧行事, 分付,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0월 11일(경술)

□ 제주인(濟州人)의 추쇄를 거행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서북민(西北民)의 추쇄(推刷)를 작년에는 강양(江襄)·황해(黃海)·경기(京畿)·공홍도(公洪道) 등이 흉년이 들어 모두 정지하고, 단지 양남(兩南)만 거행하게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중략〉 제주인(濟州人)의 추쇄를 또한 함께 거행하는 일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인, 추쇄.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月 十七日 丙辰

○ 司僕寺啓目, 粘連觀此全羅監司啓本, 則濟州歲貢馬上納, 自有期限, 則各邑, 不爲惕念擧行, 至於十月將盡, 尙不入來, 各邑怠慢之罪, 殊極可駭, 不可無別樣警責之道, 四月念後及五月發送爲白在, 寶城·長興·順天·興陽·務安·樂安·茂長等邑守令, 竝先罷後推爲白乎矣, 三四月發送, 而五六月到泊之船人, 自本道, 竝爲查問, 各別刑推, 以爲懲礪之地, 以此回移, 何如? 啓依允.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0월 17일(병진)

□ 제주(濟州)의 세공마가 기한 내에 오지 않았으니 보성 등의 수령을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할 것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목

○ 사복시 계목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전라감사의 계본을 보건대,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 상납은 기한이 있는데 각 읍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하지 않아 10월이 다 가도록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읍의 태만한 죄가 심히 놀랄 만하니 특별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조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4월 20일 이후 5월에 이르러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보성(寶城)·장흥(長興)·순천(順天)·흥양(興陽)·무안(務安)·낙안(樂安)·무장(茂長) 등 읍의 수령을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推考)하되, 3,4월에 발송하여 5,6월에 도박(到泊)한 선인(船人)을 본도(本道)에서 모두 조사하고 철저히 심문하여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공마, 보성, 추고, 선인.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月 十九日 戊午

○ 司僕寺啓曰, 濟州後運馬三百六十八匹內, 洋中致敗二十匹, 船中故失二匹, 中路故失四匹, 中路病留七匹, 合三十三匹計除, 三百三十五匹入來, 二匹則到本寺病留矣. 禾毛色別單書入, 而三名日進上馬中若干匹, 體小駑劣特甚. 莫重封進之馬, 如是苟充, 事極可駭. 濟州牧使李喜龍,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司僕寺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0월 19일(무오)

□ 제주(濟州)에서 올려 보낸 말이 좋지 않으므로 이희룡(李喜龍)의 추고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후운마(後運馬) 368필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치패(致敗)한 20필, 배 안에서 고실(故失)한 2필, 도중에서 고실한 4필, 도중에서 병으로 머물고 있는 7필, 합 33필을 제한 335필이 들어왔는데,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는데, 삼명일(三名日) 진상마 가운데에 몇 필이 체구가 작고 노열(駑劣)한 것이 특히나 심합니다. 막중한 봉진마(封進馬)를 이와 같이 구차하게 숫자만 채웠으니 일이 매우 놀랄 만합니다. 제주목사 이희룡(李喜龍)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삼명일, 진상마, 이희룡, 추고.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一月 三日 壬申

○ 引見入侍時, 領議政金壽興所啓, 司僕寺南方各牧場, 馬品漸劣, 當有變通之道, 而各場累千匹之馬, 有難一時盡去, 珍島·興陽·順天三處, 欲爲別設一牧場, 以爲將來成就之地, 濟州好品雌馬一百五十匹, 把夫山馬雄馬三十匹, 明年三月內上送之意, 預爲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1월 3일(임신)

□ 인견에 김수흥(金壽興)이 입시하여 진도 등 세 곳에 목장을 따로 설치하고 품질이 좋은 제주마(濟州馬)를 내년에 올려 보내도록 미리 분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인견(引見)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흥(金壽興)[264]이 아뢰기를, "사복시 남쪽지방 각 목장에 있는 말의 품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각 목장 수천 필의 말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진도(珍島)·흥양(興陽)·순천(順天) 세 곳에 별도로 하나의 목장을 설치하여 훗날 성취할 곳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주(濟州)의 품질이 좋은 암말 150필, 파부마(把夫馬)[265]로 산마(山馬) 중에서 수말 30필을 내년 3월 안에 올려 보내는 뜻을 미리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수흥, 진도, 목장, 파부, 산마.

---

264) 김수흥(1626~1690) : 본관 안동(安東). 자 기지(起之). 호 퇴우당(退憂堂), 동곽산인(東郭散人). 시호 문익(文翼). 1655년(효종 6) 문과 급제. 도승지, 호조판서, 영의정 역임. 저서《퇴우당집》.

265) 파부마(把夫馬): 종자용 수말을 일컫음. 남구명(南九明),《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마설(馬說)〉에 "숫말 중에 근골이 장실(壯實)하지만 흠이 있어 봉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방둔(放屯)하게 하여 종자를 취하는 용으로 삼는데, 마적(馬籍)에 이른바 파부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雄馬中筋骨壯實 而有凶咎不合於封進者 許令放屯 以作取種之資 馬籍所謂把夫馬是也]"라고 함.

❖ 康熙 二十七年 戊辰 十二月 六日 乙巳

○ 備邊司啓曰, 濟州漂船事咨文, 旣已撰出矣. 依前例, 別定禁軍, 下送義州, 使之傳給於鳳凰城,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14년(1688) 무진년 12월 6일(을사)

□ 제주(濟州)에 표도한 선박에 대한 자문을 의주로 보내 봉황성에 전달하게 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선박의 일에 대한 자문(咨文)을 이미 지었습니다. 전례대로 별도로 금군(禁軍)을 차정(差定)하여 의주(義州)로 내려 보내어 봉황성(鳳凰城)에 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66]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도, 선박, 자문, 봉황성.

266) 《비변사등록》 1688년(숙종 14) 12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68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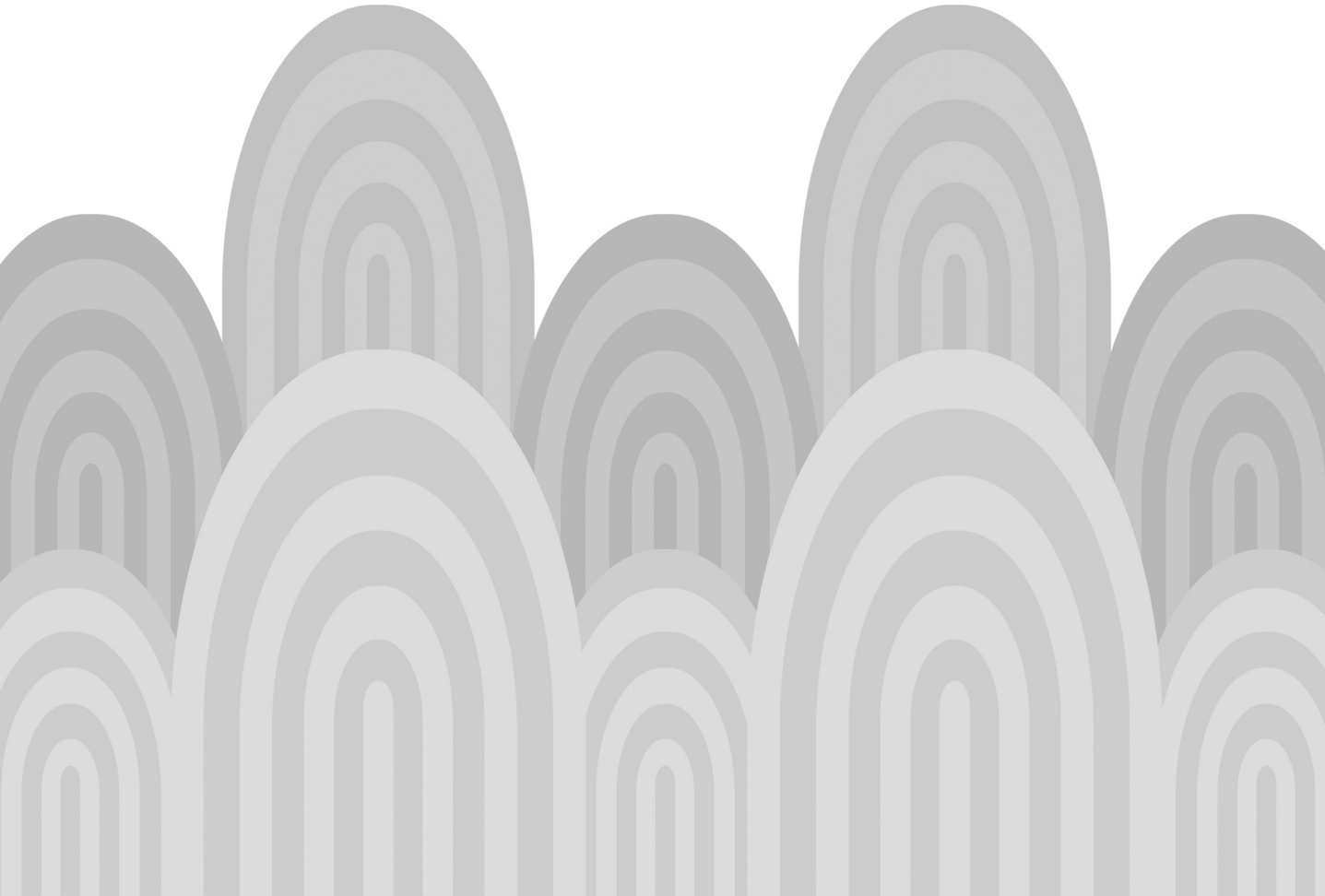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二十八年 己巳 正月 十七日 乙酉

○ 都目政. 吏批, 以蘇后山爲禮賓主簿, …… 楊遇漢爲濟州判官, …… 李泰東爲旌義縣監, …… 南伋爲大靜縣監,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1월 17일(을유)

□ 양우한(楊遇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267]가 있었다. 이비(吏批)[268]에 따라 소후산(蘇后山)을 예빈주부로 삼았다. 〈중략〉 양우한(楊遇漢)[269]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중략〉 이태동(李泰東)[270]을 정의현감으로 삼았다. 〈중략〉 남급(南伋)을 대정현감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양우한, 이태동, 남급,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

---

267) 도목정사(都目政事): 도정(都政). 정기적으로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그 성적에 따라 이조와 병조에서 실시하는 대대적인 인사 행정.

268) 이비(吏批): 이조의 인사 행정에 참여하는 당상관(堂上官), 즉 이조(吏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와 이방 승지(吏房承旨)를 말함.

269) 양우한(1630~?): 본관 청주(淸州). 자 국로(國老). 1662년(현종 3) 무과 급제.

270) 이태동(1638~1702): 본관 전주(全州). 자 경통(景通). 1681년(숙종 7) 문과 급제. 임실현감 역임. 정의현감으로 1689년(숙종 15) 3월에 도임, 같은 해 8월에 사임하여 떠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一月 二十一日 己丑

○ 有政. 吏批, 以李世白·姜鋧爲承旨, …… 張後載爲大靜縣監,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1월 21일(기축)

□ 장후재(張後載)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따라 이세백(李世白)·강현(姜鋧)을 승지로 삼고, 〈중략〉 장후재(張後載)[271]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장후재, 대정현감.

271) 장후재(1650~?): 본관 진천(鎭川). 자 여후(汝厚). 1690년(숙종 16) 문과 급제. 대정현감으로 1689년(숙종 15) 3월에 도임하여, 1691년(숙종 17) 10월에 체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四日 壬寅

○ 掌令李允修, 持平李濟民啓曰, …… 門黜罪人宋時烈, 本以昏朝孽臣之子, 托以山林之名, 濟以陰沴之性, 其平生罪惡, 難徧以毛擧, 當己亥大喪之初, 倡爲長庶之論, 以售貶薄之計, 用意絶悖, 罪關宗社, 當時之得保首領, 已是失刑之甚者, 及今日國有大慶, 名號已定, 分義斯正, 而將心尙存, 舊惡未悛, 經營揣摩, 肆然投疏, 乃引宋朝不幸之事, 敢爲臣子所不忍言之言, 疑亂人心, 動搖國本, 其心所在, 灼然可知, 不可不亟施荐棘之典, 少洩神人之憤, 請門黜罪人宋時烈, 極邊圍籬安置. …… 答曰, 昔在乙酉年議定儲嗣之日, 李敬輿, 以人心波蕩等語, 有所陳達, 仁廟震怒, 特命安置, 況此時烈, 則敢以國本已建, 分義大定之後, 肆然投疏, 顯示不悅服之意, 其心所在, 已極叵測, 而敢引宋朝古事, 尤爲絶悖, 有非人臣所忍發口者, 何以言之? 哲宗初封燕安郡王, 及其神宗有疾, 引命册立者也. 今日人心世道, 雖云凶悖, 渠安敢以不幸之事, 比擬於今日, 欲爲動撓國本之計乎? 思之至此, 萬萬痛惋, 如此無將之徒, 不可不夬施懲惡之典, 濟州圍籬安置, 嚴加栲棘.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4일(임인)

□ 이윤수(李允修)와 이제민(李濟民)이 송시열(宋時烈)의 제주(濟州) 위리안치 등에 대해 논의함

○ 장령 이윤수(李允修)[272]와 지평 이제민(李濟民)[273]이 아뢰기를, "〈상략〉 문외출송(門外黜送)[274]한 죄인 송시열(宋時烈)[275]은 본래 광해조(光海朝)의 간신의 자식으로, 산림(山林)의 이름으로 의탁하면서 음흉하고 요사스러운 마음을 더하였으니 그 평생의 죄악은 두루 하나하나 들추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기해년(1659) 대상(大喪)을 당한 초기에 장서지론(長庶之論)[276]을 주창하여 남을 헐뜯고 얕잡는 계략을 부렸습니다. 의도가 몹시 패악(悖惡)스럽고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었는데도 당시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 형벌의 시행이 이미 대단히 잘못한 것입

272) 이윤수(1653~1693): 본관 광주(廣州). 자 면숙(勉叔). 호 창암(滄菴). 1681년(숙종 7) 문과 급제. 교리, 사헌부지평, 황해도관찰사 역임.

273) 이제민(1645~?): 본관 연안(延安). 자 홍지(弘之). 홍문관수찬 역임.

274) 문외출송(門外黜送): 죄인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 비교적 가벼운 벌이었음.

275) 송시열(1607~1689): 본관 은진(恩津). 자 영보(英甫). 호 우암(尤庵), 우재(尤齋). 시호 문정(文正).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역임. 저서《송자대전(宋子大全)》.

276) 장서지론(長庶之論): 장자(長子)니 서자(庶子)니 하는 의논.

니다. 오늘날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명호(名號)가 정해지고 분의(分義)가 바르게 정해졌는데도, 장심(將心)[277]을 아직도 간직하여 이전에 저지른 잘못된 죄악을 고치지 않고, 요리조리 궁리를 짜내어 방자하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송조(宋朝)의 불행하였던 일을 끌어다가 감히 신하로서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하여 인심(人心)을 어지럽히고, 국본(國本)[278]을 요동케 하였으니,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급히 유배의 법률을 시행하여 신명과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문외출송한 죄인 송시열을 아주 멀리 떨어진 변경(邊境)에 위리안치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예전 을유년(1645)에 저사(儲嗣)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날에 이경여(李敬輿)가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린다.' 등의 말로 아뢰자 인묘(仁廟)가 진노하여 특명으로 안치(安置)의 명을 내렸었다. 하물며 이 시열은 국본이 이미 세워졌고, 분의(分義)가 크게 정해진 후에 감히 방자하게 상소를 올려 열복(悅服)하지 않는 뜻을 드러내어 보였으니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이미 지극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감히 송조(宋朝)의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더욱 패악스럽게도 신하로써 차마 입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을 어찌 말하는 것인가? 철종(哲宗)은 처음에 연안군왕(燕安郡王)에 봉해졌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나서야 비로소 고명(顧命)에 따라서 책립된 것이다. 오늘날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비록 흉패(凶悖)하다고 하지만, 저이가 어찌 감히 불행했던 일을 가지고 오늘날에다 비교하며 국본을 동요시키는 계책을 꾸민 것인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심히 통탄스럽다. 이와 같은 무장(無將)[279]의 무리에게는 악을 징계하는 법을 결단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하여 엄히 가시나무를 가하라. 〈하략〉"라고 하였다.[280]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윤수, 이제민, 송시열, 위리안치.

---

277) 장심(將心): 장차 난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불충(不忠)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함.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장공(莊公) 32년조에 "군친(君親)에게는 장심(將心)이 없어야 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살해야 한다.[君親無將, 將而誅焉]"라고 하였음.

278) 국본(國本): 임금의 대를 이을 세자나 세제를 가리키는 말임. 여기서는 원자(元子)가 된,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낳은 아들 윤(昀)을 가리킴.

279) 무장(無將): 본래는 군주(君主)에 대하여 반역 찬시(叛逆簒弑)할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곧 '무장을 범한 자', 즉 '반역 찬시할 마음을 가진 자'의 뜻으로 전용되었음.

280) 《숙종실록》 1689년(숙종 15) 2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五日 癸卯

○ 同日□時, 上御熙政堂. 左議政睦來善, 右議政金德遠, 右副承旨權愈, 假注書沈仲良, 記事官金時傑·李寅燁入侍. …… 來善曰, 濟州漂風人, 已過累日之後, 始爲生還, 而賃得他國船還來, 所謂他國人, 稱以必徵賃船之價, 至今留在, 而牧使李喜龍病重, 不得察任, 故判官, 鉤問其事情, 枚報巡營, 有此轉啓, 似未詳盡邊上之事, 殊涉可慮. 牧使李喜龍, 今姑改差, 其代卽爲差出, 趁速發送,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引對罷出 以上燼餘.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5일(계묘)

□ 희정당에 목래선(睦來善)이 입시하여 병이 중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을 즉시 개차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같은 날 □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좌의정 목래선(睦來善)[281], 우의정 김덕원(金德遠)[282], 우부승지 권유(權愈), 가주서 심중량(沈仲良), 기사관 김시걸(金時傑)·이인엽(李寅燁)이 입시(入侍)하였다. 〈중략〉 목래선이 말하기를, "바람에 밀려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타국의 배를 세내어 얻어 돌아왔기에 타국인이라는 자들이 배를 빌려준 값을 받아야 한다고 핑계 대며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 이희룡(李喜龍)은 병이 중하여 임무를 살필 수가 없기에 판관이 그 사정을 캐어물어 순영에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문(啓聞)한다면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다할 수 없을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목사 이희룡을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고 그를 대신할 이를 즉시 차출(差出)하여 속히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내었음[283]】 인대를 마치고 나감 이상은 불타고 남은 것임.

---

281) 목래선(1617~1704): 본관 사천(泗川). 자 내지(來之). 호 수옹(睡翁), 수헌(睡軒).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동지부사, 좌의정 역임.

282) 김덕원(1634~1704): 본관 원주(原州). 자 자장(子長). 호 휴곡(休谷).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형조참판, 예조판서 역임.

283) 거조(擧條)는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줄임 군신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은 주서에 의해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로 남겨지지는 않음. 그런데 군신의 대화 내용 중에는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사안을 뽑아서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보(朝報)에 반포하게 되는데, 이를 거조라고 함. 거조를 냈다는 것은 군신 간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했다는 의미와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목래선, 표류, 제주인, 이희룡, 개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六日 甲辰

○ 有政. 吏批, 判書沈梓進, 參判吳始復在外, 參議姜鋧未肅拜, 左副承旨柳命賢進. 以金夢陽爲兵曹正郎, 閔鏞爲濟州牧使,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6일(갑진)

□ 민용(閔鏞)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재(沈梓)는 나왔고, 참판 오시복(吳始復)은 지방에 있고, 참의 강현(姜鋧)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좌부승지 유명현(柳命賢)이 나왔다. 김몽양(金夢陽)을 병조정랑에, 민용(閔鏞)[284]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사, 민용, 제주목사.

284) 민용(?~?): 본관 여흥. 1666년(현종 7) 무과 급제. 전라병사, 경흥부사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七日 乙巳

○ 晝講入侍時, 濟州判官改差, 以文官差送事, 及吏曹郎官, 勿拘解由, 備擬差出事, 榻前定奪,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7일(을사)

□ 제주판관(濟州判官)의 개차(改差) 등을 탑전(榻前)에서 정탈(定奪)함

○ 주강(晝講)을 위해 입시한 때에 제주판관(濟州判官)의 개차(改差)에 문관으로 차송(差送)하는 일과 이조낭관을 해유(解由)에 구애되지 말고 의망(擬望)을 갖추어 차출(差出)하는 일을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八日 丙午

○ 下直, 英陽縣監洪處道, 旌義縣監李泰東,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8일(병오)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태동(李泰東) 등이 하직함

○ 영양현감(英陽縣監) 홍처도(洪處道),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태동(李泰東)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이태동, 하직.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十日 戊申

○ 以李起漢爲濟州判官,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10일(무신)

□ 이기한(李起漢)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기한(李起漢)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한, 제주판관.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十三日 辛亥

○ 十三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左議政睦來善, 右議政金德遠, 吏曹判書沈梓, 判尹李之翼, 禮曹判書李觀徵, 兵曹判書尹深, 戶曹判書權大載, 行司直李宇鼎, 大司憲閔宗道, 大司成睦昌明, 司諫李蓍晩, 副校理李允修, 假注書朴涎·李宇晉, 記事官金時傑·李寅燁入侍. …… 來善曰, 臣見全羅監司狀啓, 則濟州判官所報, 本州封進馬押領金泰璜等, 上年九月, 出海漂流之後, 不知去處矣. 今正月, 淸商人等, 持寧波府票文, 及安南明德侯公文, 載與本州漂人等以來, 且言與漂人, 約以船價大米六百包, 宜速備給, 且其所持物貨, 願爲買賣而還去云. 他國之人, 載還我人, 其恩可謝, 而此實無前事, 言其淸商所爲, 則跡涉潛商, 自此接待以送, 則亦涉交通, 不無日後之慮, 臣意則賃船之價米, 自朝家依約, 折銀以給, 毋使失信, 淸商等則分付濟州, 上送京中, 移咨入送于彼國, 俾無後慮, 似合事宜, 先以濟州判官上送文書, 入之矣. 已經睿覽, 必有定算, 將何以處之乎? 德遠曰, 濟州文書, 已經睿覽, 伏想聖明, 必有裁處之意矣. 寧波府行商, 到安南國, 載還我國漂人云者, 安知其十分眞的, 而所謂明德侯文書中, 未有印信之迹, 只有圖書之標, 亦不無可疑之端矣. 漂風船之來泊於濟州者, 不稟於朝家, 自其處直爲還送, 而如或船敗下陸, 勢難資送者, 則必由陸率來, 移咨押送矣. 此則稱以大淸之商, 載送我國之人, 旣已漂漢, 且無前規, 若不熟講善處, 則或不無意外之慮, 臣意則以爲, 其賃船之價, 雖不可不如約備給, 必由陸率置京中, 具由移咨, 押送彼國, 似無後患, 而但其漢商, 有其船隻, 若聞此事, 必有逃走之弊, 令本州善處, 以防此患, 宜矣. 上曰, 文書予已詳覽, 大臣所達, 實合事宜, 備給船價, 由陸則乘機逃去, 不可不慮, 此意言送于濟州牧使, 而新牧使, 亦催促發送, 可也.【出擧條】…….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13일(신해)

□ 희정당에서 목내선(睦來善) 등이 입시하여 표류되었던 김태황(金泰璜)의 구제 등에 대해 논의함

○ 13일 사시(巳時)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할 때에 좌의정 목래선(睦來善), 우의정 김덕원(金德遠), 이조판서 심재(沈梓), 판윤 이지익(李之翼), 예조판서 이관징(李觀徵), 병조판서 윤심(尹深), 호조판서 권대재(權大載), 행사직 이우정(李宇鼎), 대사헌 민종도(閔宗道), 대사성 목창명(睦昌明), 사간 이시만(李蓍晩), 부교리 이윤수(李允修), 가주서 박정

(朴涎)·이우진(李宇晉), 기사관 김시걸(金時傑)·이인엽(李寅燁)이 입시하였다. 〈중략〉 목래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감사의 장계를 보니,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보고한 것에 본주(本州) 봉진마(封進馬)를 압령하는 김태황(金泰璜) 등이 지난해 9월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한 뒤 간 곳을 알지 못했는데, 금년 정월 청나라 상인 등이 영파부(寧波府)의 표문(票文)과 안남(安南) 명덕후(明德侯)의 공문을 가지고 배를 타고 표류했던 본주 사람 등과 와서는 또 표류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약속한 배삯으로 쌀 6백 포(包)를 의당 속히 갖추어 지급하고, 또 그들이 소지한 물화(物貨)를 매매하여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타국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배에 싣고 돌아왔으니 그 은혜는 사례할 만하나 이러한 일은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 청나라 상인이 하는 짓으로 말한다면 자취가 잠상(潛商)인데, 이대로 접대해서 보낸다면 또한 교통(交通)할 때에 후일의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배를 세낸 값으로 쌀은 약속한 대로 조정에서 절은(折銀)[285]하여 주어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청나라 상인 등은 제주에 분부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자문(咨文)과 함께 저들의 나라에 들여보내어 후환을 없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 합니다. 앞서 제주판관이 올려 보낸 문서를 들여보냈습니다. 이미 예람(睿覽)을 거쳤기에 반드시 정해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제주에서 올려 보낸 문서를 이미 예람하였기에, 삼가 생각건대 성명(聖明)에 반드시 헤아려 처리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영파부의 행상(行商)이 안남국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표류인을 싣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을 어찌 전부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명덕후의 문서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인신(印信)을 찍은 자취가 없고 단지 도서(圖書)라는 표시만 있으니 또한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표류한 배가 제주에 와서 정박한 것은 조정에 아뢰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배가 부서져서 육지에 내렸고 형세 상 자송(資送)하는 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육로로 데리고 오고, 자문(咨文)을 갖추어 압송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 표류했던 중국인들 중에 또한 전규(前規)가 없으니 잘 강구하여 선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염려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그 배삯은 비록 약속대로 갖추어 주지 않을 수 없지만 반드시 육로로 데리고 와서 서울에 두고, 사유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고 저들의 나라로 압송하는 것이 후환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중국 상인들은 그들의 배를 가지고 있으니, 만약에 이러한 일을 듣게 된다면 반

285) 절은(折銀): 값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줌.

드시 도주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본주로 하여금 잘 처리해서 이러한 우환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서는 내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신들이 아뢴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 배삯을 갖추어 주어라. 육로를 경유할 때 기회를 틈타서 도망갈 염려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제주목사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또한 서둘러 떠나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286] 【거조(擧條)를 내었음】〈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태황, 청나라 상인, 영파부, 안남국.

286) 이상의 내용이《숙종실록》1689년(숙종 15) 2월 13일자 기사와《비변사등록》1689년(숙종 15) 2월 15일자 기사에서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十八日 丙辰

○ 又啓曰, 濟州漂人載來淸商, 上送京中, 轉送彼國之意, 旣已啓下, 行會本道及本州矣. 異國人上送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 令該院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 趁卽下送海上, 以爲押來之地, 且押送北京時, 齎咨譯官, 豫爲差定治行, 咨文亦令該院撰出, 以待淸商入京後, 卽爲發送, 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18일(병진)

□ 제주(濟州)에 표류인을 싣고 온 청나라 상인을 북경으로 압송할 때 역관을 미리 임명하고, 승문원에서 자문(咨文)을 지어내어,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오는 즉시 출발시키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또 아뢰기를, "표류했던 제주(濟州)사람을 배로 싣고 온 청나라 상인을 서울로 올려 보내어 저들의 나라로 보낼 뜻을 이미 계하(啓下)하였기에 본도(本道)와 본주(本州)에 통보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올려 보낼 때에 역관으로 말이 통하는 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원(該院)[287]으로 하여금 특별히 한어(漢語)를 잘하는 역관 1원(員)을 정하여 즉시 바닷가로 내려 보내어 압송하여 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북경으로 압송할 때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을 미리 차정(差定)하여 여장을 꾸리게 하고, 자문 또한 해원에게 지어내게 하여 청나라 상인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 후에 즉시 떠나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88]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청나라 상인, 역관, 자문, 압송.

---

287) 해원(該院): 사역원(司譯院)을 의미.

288) 《비변사등록》 1689년(숙종 15) 2월 1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十八日 丙辰

○ 禮曹啓曰, 月令薦新之物, 殯殿與魂殿·山陵, 竝爲封進事, 知委各道矣. 濟州牧使封進去十一月宗廟·永昭殿薦新唐柚子, 今日入來, 當於明日薦進, 而考見其謄狀日子, 則當爲封進於殯殿, 而無封進之事, 殊涉不察, 孝思殿·徽陵闕薦, 事甚未安, 以大殿封進中, 除出十箇, 一依宗廟每室五箇薦進例, 以爲孝思殿·徽陵一體薦進之意分付, 而牧使李喜龍則難免不察之失, 推考,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18일(병진)

□ 봉진(封進)을 잘 살피지 못한 이희룡(李喜龍)의 추고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월령 천신(月令薦新)하는 물품을 빈전(殯殿)[289]과 혼전(魂殿)[290]·산릉(山陵)에도 아울러 봉진(封進)하는 일은 각 도(道)에 통지하였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지난 11월령 종묘와 영소전[291]에 천신하는 당유자(唐柚子)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내일 천진(薦進)에 당하여 그 선장(膳狀)[292]의 날짜를 살펴보니 당연히 빈전에 봉진해야 하는데도 봉진하는 일이 없으니 자못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효사전(孝思殿)과 휘릉(徽陵)[293]에 천신을 못하게 되어 심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전(大殿)에 봉진하는 것 중에서 10개를 덜어내어 한 결 같이 종묘의 실(室)마다 5개를 천진하는 예에 따라 효사전과 휘릉에 대해 모두 천진할 뜻을 분부하고, 목사 이희룡(李喜龍)은 살피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월령 천신, 이희룡, 추고.

---

289) 빈전(殯殿): 인산(因山) 전까지 임금이나 왕비, 왕자의 관(棺)을 놓아두는 전각.
290) 혼전(魂殿):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葬) 뒤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전각.
291) 영소전(永昭殿): 숙종의 첫 번째 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292) 선장(膳狀): 진상하는 월선(月膳) 물목(物目)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문건.
293) 효사전(孝思殿)과 휘릉(徽陵):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혼전(魂殿)과 능(陵).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二月 十九日 丁巳

○ 兪夏益, 以司饔院言啓曰, 卽見濟州所封十一月令柑橘進上單子, 則着署體畫甚大, 莫重御覽文書, 殊無敬謹之意, 濟州牧使李喜龍,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2월 19일(정사)

□ 이희룡(李喜龍)의 추고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유하익(兪夏益)[294]이 사옹원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封)한 11월령 감귤진상단자(柑橘進上單子)를 바로 보니 서명으로 쓴 글자의 획이 매우 컸습니다. 막중한 어람문서(御覽文書)에 자못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습니다. 제주목사 이희룡(李喜龍)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유하익, 어람문서, 감귤진상단자, 이희룡, 추고.

294) 유하익(1631~1699): 본관 기계(杞溪). 자 사겸(士謙). 호 백인당(百忍堂).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대사헌, 좌참찬, 형조판서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四日 辛未

○ 下直, 大靜縣監張後載.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4일(신미)

□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후재(張後載)가 하직함

○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후재(張後載)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장후재, 하직.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六日 癸酉

○ 又啓曰, 新除授濟州判官李起漢, 呈狀于政廳曰, 奴婢十七口, 居在本州, 揆以法例, 不可冒赴, 照例處置云. 守令於本邑, 有壯奴婢十口以上, 則不得赴任, 自是法例, 濟州判官李起漢, 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6일(계유)

□ 노비가 17구(口) 이상 부임할 곳에 있는 이기한(李起漢)을 법례에 따라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에서 또 아뢰기를, "새로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된 이기한(李起漢)이 정청(政廳)[295]에 소장(訴狀)을 올려 말하기를, '노비 17구(口)가 본주(本州)에 살고 있습니다. 법례로 따진다면 법을 어기면서 부임할 수는 없으니 법례를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수령은 본읍(本邑)에 장노비(壯奴婢) 10구 이상이 있으면 부임할 수 없습니다. 이 법례로부터 제주판관 이기한을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한, 제주판관, 개차.

295) 정청(政廳): 이조·병조의 전관(銓官)이 정사(政事)에 관한 일을 보는 곳.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六日 癸酉

○ 有政. 吏批, 判書沈梓進, 參判吳始復在外, 參議姜鋧進, 右承旨申厚載進. …… 金涑爲濟州判官,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6일(계유)

□ 김속(金涑)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재(沈梓)가 나왔고, 참판 오시복(吳始復)은 지방에 있고, 참의 강현(姜鋧)이 나왔고, 우승지 신후재(申厚載)가 나왔다. 〈중략〉 김속(金涑)[296]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속, 제주판관.

296) 김속(1629~?): 본관 강릉. 자 희도(希道).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시정(寺正) 역임. 제주판관으로 1689년(숙종 15) 4월에 도임하여, 1691년(숙종 17) 8월에 체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十八日 乙酉

○ 備邊司郎廳, 以三公意啓曰, 濟州牧使, 不可不擇送, 而今聞新牧閔鏞, 曾任南閫, 事多不謹云, 改差, 本州久曠, 且有時急擧行之事, 其代, 令該曹各別擇差, 催促赴任,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18일(을유)

□ 민용(閔鏞)을 개차하고 후임을 각별히 택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 낭청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새로운 목사 민용(閔鏞)은 일찍이 남곤(南閫)[297]으로 있을 때 삼가지 않은 일이 많았다고 하니 개차(改差)하십시오. 본주(本州)가 오래도록 비어있고 또한 시급히 거행할 일이 있으니, 그를 대신할 이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택차(擇差)하여 서둘러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98]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민용, 제주목사.

297) 남곤(南閫): 남방의 곤수(閫帥). 곤수(閫帥)는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예스럽게 부르는 말임.
298) 《비변사등록》 1689년(숙종 15) 3월1 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二十日 丁亥

○ 有政. 以柳德三爲濟州牧使,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20일(정해)

□ 유덕삼(柳德三)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유덕삼(柳德三)[299]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유덕삼, 제주목사.

299) 유덕삼(1632~1702): 본관 진주(晋州). 자 공달(公達). 1665년(현종 6) 무과 급제. 도총부도사,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통진부사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三月 二十五日 壬辰

○ 有政. 以金澍爲司僕正, …… 李宇恒爲濟州牧使,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3월 25일(임진)

□ 이우항(李宇恒)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김수(金澍)를 사복정으로 임명했다. 〈중략〉 이우항(李宇恒)[300]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우항, 제주목사.

300) 이우항(? ~1722): 본관 광주(廣州). 자 여구(汝久). 포도대장, 삼도수군통제사 역임. 제주목사로 1689년(숙종 15) 5월에 도임하여, 1691년(숙종 17) 12월에 체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六日 癸卯

○ 權瑍啓曰, 卽者濟州牧使李喜龍, 罪人放未放啓本, 來到本院, 而其中內人刼憲, 罪名極重, 所不敢輕議, 而肆然置之於放秩, 已極無據, 且淸商未卽出送狀啓中, 只書年月, 而不書日子, 其矇不致察之狀, 亦甚可駭. 濟州牧使李喜龍, 從重推考, 刼憲放秩, 則勿施, 何如? 傳曰, 刼憲, 負犯極重, 當初減死, 亦云幸矣. 其未幾何, 偃然置諸放秩, 其縱恣無嚴之狀, 極爲痛駭, 李喜龍, 先罷後推.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6일(계묘)

□ 죄가 무거운 갈헌(刼憲)을 방질(放秩)에 넣은 이희룡(李喜龍)의 종중추고 등을 청하는 권환(權瑍)의 계

○ 권환(權瑍)[301]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이 죄인에 대한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302]을 본원(本院)에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나인 갈헌(刼憲)의 죄명이 극히 무거워서 감히 가벼이 의론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자하게 이를 방질(放秩)에 두었으니 터무니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청나라 상인을 즉시 내보내지 않은 것을 보고하는 장계 안에 연월만을 쓰고 일자를 쓰지 않았으니, 어리석어 자세히 살피지 않은 정황이 또한 심히 놀랄 만합니다. 제주목사 이희룡(李喜龍)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갈헌의 방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갈헌이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무거우니 당초에 사형을 감하여 준 것 또한 다행이라 할 것인데, 얼마도 안 되어 거만스럽게 이를 방질에 두었으니 그 제멋대로이며 무엄한 실상이 극히 매우 놀랍다. 이희룡을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권환, 제주목사, 이희룡, 갈헌, 종중추고.

---

301) 권환(1636~1716): 본관 안동(安東). 자 중장(仲章). 호 제남(濟南). 1668년(현종 9) 문과 급제. 대사간, 병조참판, 개성부유수 역임. 저서《제남집》.

302)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八日 乙巳

○ 又以司僕寺言啓曰, 旌義縣監朴世佶,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8일(을사)

□ 박세길(朴世佶)이 올려 보낸 체임 진상마를 별단에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또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길(朴世佶)[303]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세길, 정의현감, 진상마, 내구.

303) 박세길(?~?): 무과급제. 전라도 영암군 태생. 감찰 역임. 정의현감으로 1686년(숙종 12) 9월에 도임하여, 1689년(숙종 15) 3월에 체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十二日 己酉

○ 大司憲權瑎, 大司諫李玄紀, 執義金澍, 司諫李壽徵, 持平沈樧·李萬元, 正言李元齡·趙浧合啓曰, 臣等, 謹按春秋之法, 人臣無將, 將則誅, 時烈, 當己亥議禮之日, 舍禮經立第二長亦名元子之文, 引註疏四種之說, 貶降君父, 終不以嫡統, 歸於孝廟, 惟我孝廟, 以仁祖之次嫡, 承宗廟莅臣民, 至於十年, 則渠何敢擬之於體而不正乎? 此其將心一也. 因故參議臣尹善道陳疏辨斥, 又敢以檀弓免·子游衰, 果不足恤乎之說, 肆然疏陳, 以明其見, 夫檀弓之免, 譏仲子之舍孫立子也, 子游之衰, 譏文子之廢嫡立庶也. 渠何敢以次嫡承統, 十年君臨之聖王, 爲不當立之庶子, 而謂將見譏於知禮之人耶? 此其將心二也. 我殿下卽祚以來, 十有六年, 而國無儲位, 人心危懼, 幸賴祖宗之默佑, 獲覩元良之誕降, 名號已定, 億兆胥悅, 而時烈, 投進一疏, 敢引宋朝不幸之事, 明今日定號之太急, 顯有撓動國本之意, 此其將心三也. 不獨此也, 庚申以後, 恣意修郤, 心腹凶胄, 爪牙賊勳, 屠戮無辜, 網打善類, 殆無孑遺, 乃者勳已伏法, 胄亦追削, 而時烈, 以巨魁, 假息至今, 此固輿情之所不快者也. 且因有滇之獄, 陳疏自明, 而有曰臣無拳無勇, 不能辦貫高之事. 夫貫高, 爲張敖圖不軌於漢祖, 事覺, 絶吭而死, 時烈, 以何意引此而自況乎? 蓋欲肆惡而自不掩其本情矣. 況癸丑遷陵之日, 與金壽興書, 有曰, 庚子聖上, 親自奉審之時, 不爲改封, 至於今日, 乃無一毫自反之語, 而專罪諸臣, 此豈聖人省己反身, 躬自厚薄責人之意耶? 都俞之際, 不可不以子家駒對昭公之說, 密□規戒. 又曰, 連以違豫, 廢閣展陵, 然溫泉則逐年行幸, 不能無疑於議者之心. 噫嘻, 甚哉, 此何言也? 設令人主, 眞有過失, 爲臣子者, 面陳疏規, 固有之矣. 安有揑摭君上所無之過, 揚之於僚友之間, 有若數罪者然哉? 毋論子家駒引喻之悖理, 卽其無君不道之罪, 萬戮猶輕. 又其向日疏中, 以故相臣許穆, 癸卯早建國本之說, 謂之潛挑禍機, 至於逆堅之謀, 而益肆. 噫, 殿下誕生之初 , 請建儲位之論, 何與於逆堅之謀, 而乃爲此無倫之語耶? 此在時烈, 固是薄過, 而亦可見其人之兇悖矣. 頃年逆賊有滇奴與姪之招, 有曰, 有滇, 欲乞糧於萊府, 往投於鄭錦, 以爲請兵來攻之計, 遂到長鬐, 留時烈栲棘之中者, 至於四十日之久, 其子聞而携歸, 未幾而投凶書, 凶書中所謂嫡統失序者, 實襲時烈之論, 則時烈之不與凶謀, 人孰信之? 噫, 己亥之貶降, 兆今日動國本之計, 有滇之逆謀, 藉時烈亂宗統之論, 而癸丑之數君上, 庚申之禍士林, 皆人臣之極罪, 天下之大惡也. 此而不正王法, 則無以洩神人之憤, 塞禍亂之源,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 拿鞫嚴問, 以正邦刑. 答曰, 不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12일(기유)

□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을 청하는 권해(權瑎) 등의 합계

○ 대사헌 권해(權瑎)[304], 대사간 이현기(李玄紀)[305], 집의 김주(金澍), 사간 이수징(李壽徵)[306], 지평 심벌(沈橃)[307]·이만원(李萬元)[308], 정언 이원령(李元齡)[309]·조식(趙湜)[310]이 합계(合啓)하기를, "신 등이 삼가 춘추의 논법[春秋之法][311]으로 살피건대, 인신(人臣)은 장심(將心)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벌하여 벤다고 하였습니다. 시열(時烈)은 기해년(1659) 예(禮)를 논의할 때에 예경(禮經)의 '제2장자를 세우고 또한 원자(元子)라고 한다.'라는 글을 버리고, 주소(註疏)의 사종설(四種說)[312]을 인용하면서 군부(君父)를 폄강(貶降)하여 끝내 적통(嫡統)으로 효묘(孝廟)를 귀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효묘는 인조(仁祖)의 차적(次嫡)으로 종묘를 잇고 신민(臣民)을 다스려 온 지 10년에 이르고 있

---

304) 권해(1639~1704): 본관 안동(安東). 자 개옥(皆玉). 호 남곡(南谷). 1665년(현종 6) 문과 급제. 대사헌, 형조참의, 호조참의 역임. 저서 《남곡집》.

305) 이현기(1647~1714): 본관 전주(全州). 자 원방(元方). 호 졸재(拙齋)·회헌(悔軒). 1676년(숙종 2) 문과 급제. 우승지, 대사성, 경상도관찰사 역임.

306) 이수징(1632~1702): 본관 연안(延安). 자 인로(仁老).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지평, 사간, 장령 역임.

307) 심벌(1645~1711): 본관 청송(靑松). 자 군섭(君涉).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사헌부집의, 충청도관찰사 역임.

308) 이만원(1651~1708): 본관 연안(延安). 자 백춘(伯春). 호 이우당(二憂堂).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대사간, 이조참의, 평안도관찰사 역임.

309) 이원령(1639~1719): 본관 전주(全州). 자 여장(汝長).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사헌부헌납, 홍문관교리 역임.

310) 조식(1648~1714): 본관 횡성(橫城). 자 지정(持正).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승지, 황해도관찰사, 종성부사 역임.

311) 춘추지법(春秋之法): 춘추필법(春秋筆法).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쓸 때 권선징악(勸善懲惡)과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의하여 역사를 서술하던 논법(論法).

312) 사종설(四種說): 가통(家統)을 이은 아들이라도 부모가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않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설을 말함. 가공언(賈公彥)의 《의례소(儀禮疏)》 권29 〈상복(喪服)〉에 "비록 승중(承重)을 했어도 삼년복을 입지 않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정(正)·체(體)이기는 하나 전중을 하지 못한 것이니[正體不得傳重] 적자(嫡子)에게 폐질이 있어서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요, 둘째는 전중은 했으나 정·체가 아닌 것이니[傳重非正體] 서손(庶孫)이 뒤를 이은 경우요, 셋째는 체이기는 하지만 정이 아닌 것이니[體而不正]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로 삼은 경우요, 넷째는 정이기는 하지만 체가 아닌 것이니[正而不體] 적손(嫡孫)을 세워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서 유래한 것임. 여기에서 정(正)은 적장(嫡長)을 의미하고, 체(體)는 그 몸이 부조(父祖)를 계승한 것을 의미. 기해예송(己亥禮訟) 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송시열 등의 서인(西人) 쪽에서는 이 사종설 가운데 세 번째가 효종(孝宗)에게 해당한다고 하여,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가 효종을 위해 삼년복 대신에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킴.

으니, 저이가 어찌 감히 '체(體)이기는 하지만 정(正)이 아닌 것'에 견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장심(將心)의 첫 번째입니다. 인하여 고 참의 윤선도(尹善道)의 진소(陳疏)를 변척(辨斥)하였고, 또 감히 '단궁(檀弓)의 문(免)과 자유(子游)의 최(衰)[313]는 과연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라는 말로써 방자하게 소진(疏陳)하여 그의 견해를 밝혔는데, 단궁이 문(免)을 입은 것은 중자(仲子)가 손자를 버리고 서자로 후사를 세운 것을 기롱한 것이고, 자유가 최(衰)를 입은 것은 문자(文子)가 적자(嫡子)를 폐하고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것을 기롱한 것입니다. 저이가 어찌 감히 차적(次嫡)으로 종통(宗統)을 이어 10년을 군림한 성왕(聖王)을 후사로 세우기에 합당하지 않은 서자로 삼아서 장차 예를 아는 사람에게 기롱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장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전하가 즉위한 이래로 16년 동안 나라에 저위(儲位)가 없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조종(祖宗)의 보이지 않는 도움에 힘입어 원량(元良)의 탄강(誕降)을 보게 되어 명호(名號)가 정해짐[314]에 억조창생이 다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한 통의 상소를 투진(投進)하여 감히 송조(宋朝)의 불행했던 일을 인용하면서 지금 명호가 정해진 것이 너무 급하다고 밝혀 국본(國本)을 요동시킬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그 장심(將心)의 세 번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신년(1680) 이후 방자한 마음으로 원한을 보복하였으니, 흉적 김석주(金錫胄)[315]를 심복(心腹)으로 삼고 역적 김익훈(金益勳)[316]을 조아(爪牙)로 삼아서 무고한 이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선량한 무리를 모조리 잡아가서 거의 남은 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익훈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고, 김석주 또한 추삭(追削)하였는데, 송시열은 우두머리이면서도 지금까지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여러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이유정(李有湞)의 옥사로 인하여 상소를 올려 스스로

313) 단궁(檀弓)의 문(免)과 자유(子游)의 최(衰):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공의중자(公儀仲子)라는 사람이 적손(嫡孫)을 버리고 적자(嫡子)의 아우〔庶子〕를 후사로 삼자, 단궁이 그것은 예가 아니라고 여겨 공의중자의 초상에 문상하면서 법도에 맞지 않게 관(冠)을 벗고 괄발(括髮)하며 한 치 넓이의 흰 베 조각을 머리에 두르는 문(免)을 하고 감으로써 그의 무례함을 조롱한 것이 단궁 문의 고사임. 또 자유(子游)의 최(衰)는 사구(司寇) 혜자(惠子)의 상에 자유가 일부러 예(禮)가 아닌 마최(麻衰)와 수삼의 요질(腰絰)을 띤 최복(衰服)의 중복(重服) 차림으로 조문함으로써, 사구 혜자가 적자인 난호(蘭虎)를 폐하고 서자(庶子)를 세운 것을 기롱하며 깨우쳐 주려고 한 고사를 말함.

314) 명호(名號)가 정해짐: 1689년 1월 왕자를 원자(元子)로 칭하기로 정한 것을 일컬음.

315) 김석주(1634~1684): 본관 청풍(淸風). 자 사백(斯百). 호 식암(息庵). 시호 문충(文忠).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수찬, 헌납, 교리 역임. 저서 《식암집》.

316) 김익훈(1619~1689): 본관 광산(光山). 자 무숙(懋叔). 호 광남(光南). 시호 충헌(忠獻). 음보로 등용. 광주부윤, 형조참판, 어영대장 역임.

를 해명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관고(貫高)[317]의 일을 변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관고는 장오(張敖)를 위해서 한조(漢祖)에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는데, 송시열이 어떤 의도로 이를 인용하여 빗댄 것입니까? 대개 악한 마음을 함부로 부리고자 하였기에 절로 그 본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계축년(1673) 능(陵)을 옮길 적에 김수흥(金壽興)[318]에게 보낸 글에서 말하기를, “경자년(1660)에 임금께서 친히 봉심(奉審)할 때에 개봉(改封)하지 않았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곧 스스로 반성하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오로지 여러 신하들만을 탓하니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이 자신을 반성하여 자신에 대한 질책은 두텁게 하고 타인에 대한 질책은 가벼이 하는 뜻이겠는가? 정사를 논의할 때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했던 말[319]로써 바르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계속되는 병환으로 전릉(展陵)[320]을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으면서 온천에는 해마다 거둥하시니, 의론하는 자의 마음에 의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설령 인주(人主)가 정말로 과실이 있다면 신하된 자는 진실로 임금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상소하여 바로잡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임금에게 없는 잘못을 주워 모아다가 같은 동료들 사이에 드러내면서 저지른 죄를 들추어 열거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가구를 끌어다가 비유한 것이 이치에 어긋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곧 그 무군부도(無君不道)의 죄는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또 그의 예전에 올린 상소 가운데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321]이 계묘년(1663)에 국본(國本)을 일찍 세워야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것을 재앙의 기틀을 몰래 돋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역적 허견(許堅)[322]의 모의에 이르러서

---

317) 관고(貫高): 한(漢)나라 때 조왕(趙王) 장오(張敖)의 정승. 한나라 고조(高祖)가 조(趙)나라에 들렀을 때 사위인 조왕을 모욕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객을 시켜 백인현(柏人縣)에서 고조를 죽이려 하였음. 그 뒤에 일이 발각되어 조왕이 장안(長安)으로 압송되자 온갖 고문에도 굽히지 않고 조왕의 무죄를 밝혔으므로 고조가 그의 의리를 훌륭하게 여겨 용서해 준 고사가 있음.

318) 김수흥(1626~1690): 본관 안동(安東). 자 기지(起之). 호 퇴우당(退憂堂)·동곽산인(東郭散人). 시호 문익(文翼). 1655년(효종 6) 문과 급제. 도승지, 호조판서, 영의정 역임. 저서《퇴우당집》.

319)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했던 말:《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소공(昭公) 25년조에 “소공이 자가구에게 계씨(季氏)를 죽이겠다고 하니, 자가구가 제후와 대부들이 참람한 짓을 해온 지 오래이고 계씨는 민심을 얻고 있으므로 안 될 일이라고 말렸다. 그러나 소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하다가 결국 쫓겨났다.”라고 한 것을 가리킴.

320) 전릉(展陵): 임금이 선왕의 능침에 참배하는 일.

321) 허목(1595~1682): 본관 양천(陽川). 자 문보(文甫)·화보(和甫). 호 미수(眉叟). 시호 문정(文正). 삼척부사, 우의정 역임. 저서《미수기언》등.

322) 허견(? ~1680): 본관 양천(陽川). 교서관정자 역임. 1680년(숙종 6)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

는 더욱 방자하였습니다. 아! 전하께서 탄생하신 처음 저위(儲位)를 세우기를 청하는 의론이 역적 허견의 모의와 무슨 상관이라서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송시열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작은 과실이었지만 또한 그 사람의 흉패(兇悖)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몇 해 전에 역적 유정의 종과 조카의 공초(供招)에서 말하기를, "유정이 장차 내부(萊府)에서 양식을 빌려 정금(鄭錦)[323]에게 가서 투항하고 병사를 구하고 와서 공격할 계획으로 드디어 장기(長鬐)에 이르러 가시나무를 둘러친 송시열의 배소(配所)에서 40일 동안 오래도록 머물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들어 가지고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흉서(凶書)를 투서하였는데, 투서 가운데 이른바 '적통(嫡統)이 순서를 잃었다.'는 말은 실로 시열의 논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니 송시열이 흉악한 모의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 기해년의 폄강(貶降)은 오늘 국본을 동요시키는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유정의 역모는 송시열이 종통을 어지럽히는 의론이 쌓인 것입니다. 계축년에 임금을 책망한 것과 경신년 사림의 화(禍)는 모두가 인신(人臣)의 극죄(極罪)이고 천하의 대악(大惡)입니다. 이런데도 왕법(王法)을 바루지 않는다면 신과 사람의 분원(憤怨)을 풀어서 화란(禍亂)의 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죄인 송시열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324]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시열, 권해, 이유정, 흉서, 나국엄문.

君)·복평군(福平君) 등과 역모를 꾀한다는 김석주(金錫胄)의 고변으로 주살됨.

323) 정금(鄭錦): 명(明)나라 사람으로 청(淸)나라에 대항하여 싸워 패하자, 중국 본토를 떠나 바다를 건너 대만(臺灣)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웅거하였음. 그가 죽은 뒤 아들 정극상(鄭克塽)이 청나라에 항복하였음.

324) 《숙종실록》 1689년(숙종 15) 윤3월 12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十七日 甲寅

○ 下直, 禮山縣監趙祺錫, 濟州判官金涑.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17일(갑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속(金涑) 등이 하직함

○ 예산현감 조기석,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속(金涑)[325]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김속, 하직.

325) 김속(1629~?): 본관 강릉(江陵). 자 희도(希道).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시정 역임. 제주판관으로 1689년(숙종 15) 4월에 도임하여, 1691년(숙종 17) 8월에 체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十七日 甲寅

○ 合啓, 大司憲權瑎, 大司諫李玄紀, 掌令金邦杰, 持平鄭善鳴, 正言李允修啓曰,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拿鞫嚴問以正邦刑. …… 答曰, 勿煩.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17일(갑인)

□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을 청하는 권해(權瑎) 등의 합계

○ 대사헌 권해(權瑎), 대사간 이현기(李玄紀), 장령 김방걸(金邦杰)[326], 지평 정선명(鄭善鳴)[327], 정언 이윤수(李允修)[328]가 합계(合啓)하기를,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권해, 송시열, 나국엄문.

---

326) 김방걸(1623~1695): 본관 의성(義城). 자 사흥(士興). 호 지촌(芝村).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지평, 정언, 대사성 역임. 저서《지촌문집》.

327) 정선명(1636~1694): 본관 진양(晉陽). 자 성원(聲遠).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지평, 정언, 장령 역임.

328) 이윤수(1653~1693): 본관 광주(廣州). 자 면숙(勉叔). 1681년(숙종 7)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황해도관찰사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二十二日 己未

○ 持平鄭善鳴, 正言金鼎台啓曰,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拿鞫嚴問以正邦刑, …… 答曰, 勿煩.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22일(기미)**

□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을 청하는 정선명(鄭善鳴) 등의 계**

○ 지평 정선명(鄭善鳴), 정언 김정태(金鼎台)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선명, 송시열, 나국엄문.

❖ 康熙 二十八年 己巳 閏 三月 二十三日 己巳

○ 金澍·鄭善鳴進曰,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拿鞫嚴問以正邦刑.【見上】上曰, 勿煩.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윤 3월 23일(기사)

□ 김주(金澍) 등이 입시하여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김주(金澍)와 정선명(鄭善鳴)이 나아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앞에 보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선명, 송시열, 나국엄문.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十日 丙子

○ 合啓, 請濟州圍籬罪人宋時烈拿鞫嚴問, 以正邦刑, …… 答曰, 勿煩.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10일(병자)

□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을 청하는 합계

○ 합계(合啓)하기를,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시열, 나국엄문.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十一日 丁丑

○ 大司憲睦昌明, 執義李后沆, 司諫金邦杰, 持平裵正徽·鄭善鳴, 獻納李萬元, 正言趙湜啓曰,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拿鞫嚴問, 以正邦刑. …… 答曰, 勿煩.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11일(정축)

□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을 청하는 목창명(睦昌明) 등의 계

○ 대사헌 목창명(睦昌明)[329], 집의 이후항(李后沆), 사간 김방걸(金邦杰), 지평 배정휘(裵正徽)[330]·정선명(鄭善鳴), 헌납 이만원(李萬元), 정언 조식(趙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시열, 나국엄문, 목창명.

---

329) 목창명(1645~1695): 본관 사천(泗川). 자 제세(際世). 호 취원(翠園). 1670년(현종 11) 문과 급제. 대사간, 부제학, 병조판서 역임.

330) 배정휘(1645~1709): 본관 성주(星州). 자 미숙(美叔).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사간원헌납, 평강현감, 사헌부장령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十三日 己卯

○ 又啓曰, 濟州出使, 以武臣極擇差送事, 榻前定奪矣. 本司郎廳柳畯, 差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13일(기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준(柳畯)을 차송(差送)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무신으로 신중히 택하여 차송(差送)할 것을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본사 낭청 유준(柳畯)을 차송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준.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十八日 甲申

○ 府啓, 煥·嫮事. 李瞻漢等事. 趙嗣基事. …… 內人, 交通外間, 宣泄禁中之言, 此是極罪, 而濟州定配罪人竺剛, 交結主家, 表裏和應, 情跡旣露之後, 自上親賜嚴問, 則敢以所不忍發諸口之言, 加之於東朝, 高聲唱惡, 略無畏罪怵服之心, 其爲情狀, 萬戮猶輕. 請濟州定配罪人竺剛, 亟正邦憲. 答曰, 不允.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18일(갑신)

□ 나인(內人) 갈강(竺剛)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하기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이환(李煥)과 이혁(李嫮)의 일, 이첨한(李瞻漢) 등의 일, 조사기(趙嗣基)의 일을 아뢰었다. 〈중략〉 나인이 외간(外間)과 교통하여 궁궐 안의 말을 누설하는 것은 극죄(極罪)인데, 제주(濟州)에 정배된 죄인 갈강(竺剛)이 주인집과 교결(交結)하여 안팎으로 호응하다가 정적(情跡)이 이미 탄로 난 뒤에 임금이 친히 엄문(嚴問)하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동조(東朝)[331]에게 가함에 큰 소리로 창악(唱惡)하는 것이 거의 죄가 두려워 복종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 정상(情狀)됨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니, 제주 정배 죄인 갈강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할 것을 청합니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나인, 정배, 갈강, 동조.

331) 동조(東朝): 태후(太后)나 대비(大妃)를 가리키는 말. 한(漢)나라 때에 황태후가 거처하던 장락궁(長樂宮)이 황제의 거처인 미앙궁(未央宮)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게 됨. 여기서는 숙조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를 가리킴.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二十一日 丁亥

○ 政院啓曰, 三司來詣請對矣. 傳曰, 引見. …… 大司憲睦昌明, 應敎李湜, 持平裵正徽·鄭善鳴, 獻納李萬元, 正言趙湜, 校理權珪·姜銑, 修撰沈季良·沈缺所啓, 臣等, 以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亟正邦刑事, 論列已久, 而兪音尙閟, 臣竊惑焉. 時烈, 以陰兇之性, 挾權譎之智, 內畜禍心, 外示朴野, 談經籍而以文爲奸, 語性理而以飾其辯, 假托山林, 恣行胸臆, 殆將四十餘年. 平生所務, 晝夜所度, 惟在於植黨而禍國, 殃物而利己, 其飾詐釣名, 如安石·惠卿, 陰謀戕殺, 如盧杞·林甫, 勢焰隆赫, 如竇憲·梁冀, 順非堅僞, 如少正卯, 遙執朝權, 如賈似道, 以一人之身, 兼八兇之罪, 求之古今, 罕有匹儔. 姑取其最大者言之, 自孝廟逮殿下, 遇之以師友, 視之以股肱, 雖以嗜利無恥之人, 宜有感激報效之念, 而時烈則不然, 以罔上爲行, 敢以妬賢蠹國害民之事, 靡所不爲, 朝廷日卑, 綱紀大壞, 此其罪之大者也. 憑藉寵靈, 籠絡一世, 國柄在其掌握, 威福過於人主, 輕視君父, 略無嚴憚, 凌鑠卿相, 有同奴隷, 政令廢置, 盡在其指揮, 慶賞與奪, 一任其好惡, 暫有違忤, 縱鷹犬而搏噬, 順其指使, 以爵祿爲酬報, 宰相不得爲宰相之職, 銓官不得爲銓官之事, 使一世, 知有時烈, 而不知有君父, 此又罪之大者也. 異己者, 雖一時名賢, 汲汲排擊, 猶恐其或遲, 附麗者, 雖行若狗彘, 汲汲奬擢, 猶恐其或失, 謂之儒賢而吹噓者, 無非惟泰·李翔之類也, 謂之人才而進用者, 無非益勳·師命之徒也. 至於邊邑編氓, 無行賤孽, 出入其門, 皆通仕路. 噫, 不問善惡, 唯取附己, 布列朝廷, 托以腹心者, 自古奸臣, 孤主制國之術也, 此可罪之大者也. 假稱道學, 自擬朱子, 此與王莽之每擬周公, 似道之竊慕謝安, 無異也. 大勢所在, 擧國靡然, 搢紳之士, 章甫之徒, 稱以師門, 雖不合之事, 悖亂之行, 稱道贊揚, 一以爲法, 轉相誑誘, 詿誤一世, 頌莽之徒, 遍於八路. 噫, 亂逆之臣, 固天下之大惡, 而然猶身誅而禍止. 今此時烈, 陷溺人心之禍, 必將累世而不除, 終至於亡人國而後已. 益勳之輩, 開告密之門, 屠戮搢紳, 殆無虛歲, 及其國言藉藉之後, 趙持謙·韓泰東等, 欲治誣告之罪, 首發益勳之論, 則渠乃不顧羞恥, 極力伸救, 反以護逆, 亦一逆之語, 構成二人之罪目, 必欲置之死地, 幸賴聖明在上, 公議不與, 雖不得遂其奸計, 誣告之罪, 時烈爲首, 此又罪之大者也. 欲掩貶降之罪, 則豫定世室於孝廟, 欲亂豫定之迹, 則追加徽號於太祖. 噫, 太祖神功, 豈待字數之多而益著也? 孝廟盛德, 豈因時烈之言而益光也? 又安有三百年之後, 追上徽號, 五七世之前, 豫定世室之理乎? 此則古之無嚴孝廟, 擅加字數之意, 此又罪之大者也. 及至己亥誤禮之後, 逾疾異己之人, 始欲戕殺而未得其便, 至庚申之獄, 竟售網打之計, 今者天日下燭, 群凶伏法, 而半國之人, 疾怨愈甚, 有若唐季之南北司, 宋朝之熙豐黨, 罔念寅協之義, 惟懷怨毒之心, 國家之亡, 終必以此, 可爲

流涕, 可爲痛哭, 馴致乎此者, 誰任其咎? 此又罪之大者也. 噫, 爲人臣負此罪惡, 雖以堯·舜之任皐陶之法, 邦有常刑, 則斷不可貸, 此其將心, 又有所不可掩者乎? 我孝宗大王, 以仁祖大王之次嫡, 正位春宮, 十年君臨, 則祖宗之宗統嫡統, 不歸孝廟, 其將何歸? 乃加庶子之賤名, 亂宗嫡之大統, 隱然以閏位之隱公, 待我孝廟, 廢嫡之文字, 譏我仁廟, 其辜恩懷私之心, 路人所知, 此其將心, 一也. 誤禮之後, 人心憤菀, 公議激發, 前後諸臣, 上章辯論, 則渠有心腸, 亦豈不知? 非惟不悛, 反加醜詆, 目之以凶人, 斥之以嫁禍, 故參議臣尹善道, 因此栫棘, 故相臣許穆, 因此禁錮, 如三朝宿望之趙絅, 一時淸名之洪宇遠, 竝加收司之律, 而屛君上之聽, 杜一國之口. 其後, 納有滇於栫棘之中, 而醞釀投書之變, 此其將心, 二也. 殿下卽位十有六年, 國無儲嗣, 人心危懼, 幸賴祖宗之默佑, 獲覩元良之誕降, 名號已定, 億兆胥悅, 而時烈投進一疏, 語極陰險, 外示媚悅之態, 而顯有不滿之意, 此其將心, 三也. 噫嘻, 亦甚矣. 時烈罪惡, 固不止此, 而不係無將不道之罪者, 不可殫論耳. 臣等, 歷觀古史, 未有惡如時烈, 罪如時烈, 將心如時烈, 而不伏王誅者也. 殿下, 如以臣等之所論, 有一毫爽實之論, 則所當一一辯明, 示其不然, 如其未也, 何愛於一兇人, 尙靳允兪耶? 唐宗不戮林甫, 宋帝不誅秦檜, 失刑之譏, 千載未已, 今若不誅時烈, 亂賊不懼, 紀綱不立, 國是不定, 人心不正, 請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 拿鞫嚴問, 以正邦刑. 上曰, 依啓.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21일(정해)

□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송시열(宋時烈)의 나국엄문(拿鞫嚴問) 등을 청하는 목창명(睦昌明) 등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삼사(三司)가 와서 입대(入對)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인견(引見)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목창명(睦昌明), 응교 이식(李湜), 지평 배정휘(裵正徽)·정선명(鄭善鳴), 헌납 이만원(李萬元), 정언 조식(趙湜), 교리 권규(權珪)[332]·강선(姜銑)[333], 수찬 심계량(沈季良)·심결(沈缺)이 아뢰었다. "신 등은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에 대해 속히 나라의 형벌을 바르게 적용할 것을 논열(論列)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음(兪

332) 권규(1648~1722): 본관 안동(安東). 자 국서(國瑞), 덕장(德章). 호 남록(南麓).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경기도관찰사, 대사간, 대사헌 역임.

333) 강선(1645~1710): 본관 진주(晉州). 자 자화(子和).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강원도관찰사, 형조참판, 도승지 역임.

音)이 아직까지도 없으니 신 등은 적이 당혹스럽습니다. 송시열은 음흉한 성질로써 임시방편의 권모술수로 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기르면서 밖으로는 질박하고 꾸밈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 경적(經籍)을 얘기하면서 문장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성리(性理)를 말하면서 그의 변론을 꾸미면서 산림(山林)에 가탁(假托)하여 방자하게 품고 있는 생각을 실행한 것이 거의 장차 40여 년에 이르는데, 평생 힘쓴 것으로 밤낮 헤아린 것은 오직 당(黨)을 만들어서 나라에 화(禍)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해를 입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에 있었으니, 그 거짓을 꾸며서 명예를 구하는 것은 안석(安石)·혜경(惠卿)[334]과 같았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것은 노기(盧杞)[335]·이임보(李林甫)[336]와 같았고, 기세가 성대하고 혁혁한 것은 두헌(竇憲)·양기(梁冀)[337]와 같았고, 그릇된 것을 따르면서 거짓을 굳게 하는 것은 소정묘(少正卯)[338]와 같았고, 먼 곳에서 조정의 권력을 잡은 것은 가사도(賈似道)[339]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몸뚱이로 팔흉(八兇)의 죄를 겸하였으니, 이를 예와 오늘에서 찾는다 해도 필적할만한 상대가 드물 것입니다. 우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져다가 말을 한다면, 효묘(孝廟)에서부터 전하에 이르기까지 사우(師友)처럼 대우하고 팔다리처럼 바라보며 믿고 소중히 여겼기에, 비록 이익을 좋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감격하여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다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그렇지 않고 임금을 속이는 것으로 행동했으니, 감히 어진 이를 질투하여 나라를 좀먹게 하고 백성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 바가 없었으니, 조정은 날로 비하(卑下)되고, 기강은 크게 무너졌으니 이것이 그 죄가 큰 것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빙자해서 한 세대를 농락하였으니,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그의 손아귀에 있었기에 위복(威

---

334) 안석(安石)·혜경(惠卿): 북송(北宋) 때 신법(新法)을 주창한 왕안석(王安石)과 그의 뒤를 이어 신법을 추진한 여혜경(呂惠卿)을 가리킴.

335) 노기(盧杞):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간신. 뛰어난 말재주로 덕종의 신임을 받아 동중서문하평장사에 발탁.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死地)로 내몰아 모해하였음.

336) 이임보(李林甫): 천성이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하였는데 당 현종(玄宗) 때 이부 상서로 있으면서 환관과 궁녀들과 결탁하여 현종의 비위만 맞추고 정치를 방자하게 행하다가, 마침내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불러왔음.

337) 두헌(竇憲)·양기(梁冀): 각각 후한 화제(和帝)와 순제(順帝) 때 황제의 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권력을 전횡하던 인물.

338) 소정묘(少正卯):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司寇)가 되어 조정의 정사를 본 지 7일 만에 정사를 어지럽힌 대부(大夫) 소정묘(少正卯)를 양관의 아래에서 주살하였다."라고 하였음.

339) 가사도(1213~1275): 중국 남송(南宋)의 재상. 자 사헌(師憲). 호 추학(秋壑). 누이동생이 귀비가 되자 동지추밀원사, 참지정사 등의 자리에 올랐음. 젊어서부터 권세를 믿고 갖은 비행과 황음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함.

福)[340]이 임금보다 지나쳐 군부(君父)를 경시하였고, 거의 삼가고 꺼리는 것이 없어서 재상(宰相)을 업신여겨 부리는 종과 같이 보았습니다. 정령(政令)은 폐(廢)한 채 버려져서 모두가 그의 지휘에 있었으니, 상을 주고 뺏는 것을 한결같이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맡겨져서 잠시라도 어겨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매와 개[341]를 풀어서 움켜쥐고 씹어 먹었고, 그의 조종에 따르면 작록(爵祿)으로 주어 보답하였기에 재상은 재상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고, 전관(銓官)[342]은 전관의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 세대로 하여금 시열이 있음을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죄가 큰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자는 비록 한 시대의 명현(名賢)일지라도 배격하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그것이 혹 더뎌질까 두려워했고, 빌붙어 떨어지지 않는 자는 비록 행실이 개나 돼지와 같더라도 장탁(獎擢)하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그것이 잃어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유현(儒賢)이라고 하면서 과장되게 칭찬하여 천거하는 자는 이유태(李惟泰)[343]와 이상(李翔)[344]의 무리가 아님이 없고, 인재라고 하면서 선발하여 임용하는 자는 김익훈(金益勳)[345]과 이사명(李師命)[346]의 무리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변경(邊境) 고을의 백성에 이르러서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천얼(賤孼)이 그의 집안에 출입하여 모두가 벼슬길에 통하였습니다. 아! 선한지 악한지를 묻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아부하면 취하여 조정에 늘어놓고, 심복(心腹)에게 맡기는 것은 예로부터 간신(奸臣)이 임금을 고립시켜 국사(國事)를 멋대로 하는 술책입니다. 이것이 가히 죄가 큰 것입니다. 도학(道學)에 거짓 칭탁하여 스스로를 주자(朱子)에 빗대었으니, 이는 왕망(王莽)이 매양 주공(周公)에 빗대고, 가사도가 남몰래 사안(謝安)[347]을 사모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큰 세력이 있는 곳으로 온 나라가 초목이 바람에 쓰러지듯 따르게 되었으니, 조정의 벼슬아치와 유생의 무리들이 사문

---

340) 위복(威福): 위력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은혜로 달래기도 하는 일.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오직 군주만이 복을 행하고 오직 군주만이 벌을 행한다.[惟辟作福 惟辟作威]"라고 하였음.

341) 매와 개[鷹犬]: 사냥하는 매와 개로 남의 앞잡이라는 뜻임.

342) 전관(銓官): 이조와 병조에 속하여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343) 이유태(1607~1684): 본관 경주(慶州). 자 태지(泰之). 호 초려(草廬). 시호 문경(文敬). 1658년(효종 9) 송시열과 송준길의 천거로 지평이 되고, 이듬해 시강원진선, 집의를 거쳐 현종 즉위 후 공조참의·동부승지를 역임. 저서 《초려집》.

344) 이상(1620~1690): 본관 우봉(牛峯). 자 운거(雲擧). 호 타우(打愚). 시호 문목(文穆). 송시열을 통하여 김집(金集)의 학통을 이어받음. 1658년(효종 9) 유일(遺逸)로 천거됨. 형조참의, 대사헌, 이조참판 역임.

345) 김익훈(1619~1689): 본관 광산(光山). 자 무숙(懋叔). 호 광남(光南). 시호 충헌(忠獻). 음보로 등용되어 의금부도사, 남원부사, 사복시첨정 등 역임.

346) 이사명(1647~1689): 본관 전주(全州). 자 백길(伯吉). 호 포암(蒲菴).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병조판서 역임.

347) 사안(謝安): 동진(東晉)의 명신(名臣). 회계(會稽) 땅 동산에 은거하면서 계속되는 조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 한가로이 지낸 고사가 전함.

(師門)이라 칭하면서 비록 불합리한 일과 정의에 어그러지고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행실일지라도 칭찬하고 찬양하며 한 결 같이 법으로 삼아서 돌아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한 세대를 그르쳤기에 왕망을 칭송하는 무리들이 팔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 난역(亂逆)의 신하는 진실로 천하의 대악(大惡)이어서 오히려 주륙을 당해야만 화(禍)가 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열이 인심(人心)을 잘못된 곳으로 빠뜨린 화(禍)는 반드시 몇 세대가 지나서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익훈의 무리는 밀고하는 길을 열어 벼슬아치들을 도륙함에 거의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었는데, 국론(國論)이 자자한 후에 이르러서 조지겸(趙持謙)[348]과 한태동(韓泰東)[349] 등이 무고(誣告)의 죄를 다스리고자 수발(首發)한 김익훈에 대한 논의는 곧 저이가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신구(伸救)하여 도리어 역적을 비호하였습니다. 또한 한 역적의 말로 두 사람의 죄목을 엮어서 이들을 기필코 사지(死地)에 두고자하였는데, 다행히 성명(聖明)이 위에 있고, 공의(公議)가 함께 하지 않아서 비록 그 간계(奸計)를 이룰 수는 없었지만, 무고의 죄는 시열이 으뜸이 되니, 이것이 또한 죄가 큰 것입니다. 폄강(貶降)한 죄를 가리고자 효묘(孝廟)에 대한 세실(世室)[350]을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한 자취를 어지럽히고자 태조(太祖)에 휘호(徽號)[351]를 추가하였습니다. 아! 태조의 신공(神功)이 어찌 자수(字數)의 많음을 기다려 더욱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효묘의 성덕(盛德)이 어찌 시열의 말에 따라서 더욱 빛나는 것이겠습니까? 또 3백년 후에 휘호를 추상(追上)하고, 5~7세(世) 전에 세실을 미리 정하는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곧 옛날 거리낌 없이 효묘에 자수를 제멋대로 가한 뜻이니, 이것이 또한 죄가 큰 것입니다. 기해년(1659)에 예(禮)를 그르친 후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욱 미워하여 비로소 장살(戕殺)하고자 하였지만 그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경신년(1680)의 옥사(獄事)에 이르러 마침내 일망타진할 간계를 부렸는데, 오늘 임금께서 아래를 밝게 비추어 흉악한 무리들이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

348) 조지겸(1639~1685): 본관 풍양(豊壤). 자 광보(光甫). 호 오재(汚齋). 1670년(현종 11) 문과 급제. 형조참의, 고성군수, 경상도관찰사 역임. 저서 《오재집》.

349) 한태동(1646~1687): 본관 청주(淸州). 자 노첨(魯瞻). 호 시와(是窩). 1669년(현종 10) 문과 급제. 헌납, 부교리, 사간 역임. 저서 《시와유고》.

350) 효묘(孝廟)에 대한 세실(世室): 세실(世室)은 영구히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신실(神室)을 말하는데, 5세(世)가 된 신주는 종묘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는 것이 예(禮)이나, 큰 공덕(功德)이 있는 군왕은 그 신주를 옮기지 않고 따로 신실(神室)을 만들어 봉안(奉安)하고 영원히 제사를 올림. 1683년(숙종 9)에 당시 영중추부사였던 송시열이 효종대왕을 세실(世室)로 올리는 일을 발의하자, 숙종이 대신과 2품 이상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박세채(朴世采) 등의 여러 신하들이 옳다고 하였음. 이에 숙종이 세실을 삼아 영원히 옮기지 않는 것이 실로 오늘날 임금과 신하들이 추모(追慕)하는 지극한 바람에 맞는다 하며 예조에 거행하도록 전교하였음. 《숙종실록》 숙종 9년(1683) 9월 21일자 참조.

351) 휘호(徽號): 서거한 왕이나 왕비 등에게 올리는 존호(尊號).

다. 반국(半國)의 백성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 당(唐)나라 말기 때의 남북사(南北司)[352]와 송(宋)나라 때의 희풍당(熙豐黨)[353]과 비슷한데도 동인협공(同寅協恭)의 의리[354]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원한만을 품었으니, 국가가 망하는 것은 끝내 기필코 이것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고 통곡할 지경인데, 이에 길들여진 것은 누가 그 잘못을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이 또 죄가 큰 것입니다. 아! 신하가 되어 이러한 죄악을 졌으니, 비록 요순지임(堯舜之任)과 고요지법(皐陶之法)으로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면 결단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장심(將心)이 또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우리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차적(次嫡)으로, 춘궁(春宮)에 정위(正位)하여 10년 동안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조종(祖宗)의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이 효묘(孝廟)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에 서자(庶子)라는 천한 이름을 가하여 종적(宗嫡)의 대통(大統)을 어지럽히고, 은연중에 윤위(閏位)한 은공(隱公)[355]으로써 우리 효묘를 대우하였고, 폐적(廢嫡)이라는 문자로 우리 인묘(仁廟)를 기롱하였으니, 그가 은혜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다 아는 바이니, 이것이 그 장심의 첫 번째입니다. 예(禮)를 그르친 후에 인심은 분한 마음에 답답해하였고, 공의(公議)가 격렬하게 일어나서 앞뒤로 여러 신하가 글을 올려 변론하였으니, 저이가 마음이 있다면 또한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헐뜯으며 흉악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화(禍)를 넘겨 씌워서 물리쳤습니다. 고(故) 참의 윤선도(尹善道)는 이 때문에 천극(栫棘)[356] 되었고, 고 상신 허목(許穆)은 이 때문에 금고(禁錮) 되었고, 세 조정에서 숙망(宿望)이었던 조경(趙絅)[357]과 한때 청렴으로 이름이 있었던 홍우원(洪宇遠)[358] 같은 이들에

352) 남북사(南北司): 남사(南司)와 북사(北司). 당나라 때 환관의 관서가 궁궐의 북쪽에 있었고 재상의 관서가 궁궐의 남쪽에 있었던 데서 나온 말로, 남사는 재상을, 북사는 환관을 가리킴.

353) 희풍당(熙豐黨): 송나라 신종(神宗) 때의 당쟁. 희풍은 신종 때의 연호인 희녕(熙寧)과 원풍(元豐)을 말함.

354) 동인협공(同寅協恭)의 의리: 조정의 관원들이 서로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국정에 진력함을 가리킴. 《서경》〈고요모(皐陶謨)〉의 "다 같이 경건하고 함께 공손하여 마음을 합하십시오.[同寅協恭和衷哉]"라는 구절에서 온 말임.

355) 윤위(閏位)한 은공(隱公): 정통(正統)이 아닌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썼음. 혜공(慧公)은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임금인데, 혜공(惠空)의 장서자로 이름은 식고(息姑). 태자 궤(軌)가 어려 섭정(攝政)이 되어 군(君)의 일을 담당함. 윤위(閏位)는 본래 달[月]이 차지 않는 역수상(曆數上)의 여분을 이르는 말로, 중간에 끼어있는 윤달처럼 정통이 아님을 뜻함.

356) 천극(栫棘): 유배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로, 배소(配所)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을 말함.

357) 조경(1586~1669): 본관 한양(漢陽). 자 일장(日章). 호 용주(龍洲), 주봉(柱峯). 시호 문간(文簡). 1623년 인조반정 후 유일(遺逸)로 천거. 1626년(인조 4) 문과 급제. 대제학, 형조판서, 회양부사 역임. 저서《용주유고》.

358) 홍우원(1605~1687): 본관 남양(南陽). 자 군징(君徵). 호 남파(南坡). 시호 문간(文簡). 1645년(인조 23) 문과 급제. 이조판서, 우참찬, 공조판서 역임. 저서《남파집》.

게는 모두 수사(收司)의 율[359]을 가하면서 임금의 귀를 막고, 온 나라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이유정(李有湞)을 유배지 안으로 들여서 투서(投書)의 변(變)을 꾸몄으니, 이것이 그 장심의 두 번째입니다. 전하가 즉위한 지 16년, 나라에 저위(儲位)가 없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조종(祖宗)의 보이지 않는 도움에 힘입어 원량(元良)의 탄강(誕降)을 보게 되어 명호(名號)가 정해짐에 억조창생이 다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한 통의 상소를 투진(投進)하였는데, 말이 심히 음험하면서 겉으로는 아첨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불만스러운 뜻을 드러내었으니, 이것이 그 장심의 세 번째입니다. 아아! 또한 심합니다. 송시열의 죄악은 진실로 이것에 그치지 않아서 무장부도(無將不道)[360]의 죄에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은 다 논할 수 없을 뿐입니다. 신 등이 옛날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대, 악하기가 시열과 같고, 죄가 시열과 같고, 장심이 시열과 같으면서 왕주(王誅)[361]에 불복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에 신 등이 논한 것을 가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사실과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하나 변명(辯明)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흉악한 한 사람을 아끼면서 오히려 윤허를 꺼리십니까? 당의 현종은 이임보를 죽이지 않았고 송의 고종은 진회(秦檜)[362]를 죽이지 않아서 형벌의 시행을 잘못했다는 비난이 천 년이 되어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송시열을 베지 않는다면 난적(亂賊)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강은 서지 않아서 국사(國事)가 안정되지 않고 인심이 바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제주에 위리안치된 송시열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시어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목창명, 송시열, 장심, 위리안치, 나국엄문.

---

359) 수사(收司)의 율: 연좌제. 수사는 백성들이 열 집을 단위로 하여 서로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발하게 하는 것으로, 춘추 전국 시대 진(秦)나라 공손앙(公孫鞅)이 제정한 법임.

360) 무장불도(無將不道): 장차 반란(叛亂)하려는 뜻이 있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을 이름.

361) 왕주(王誅): 대역 죄인을 왕법에 의하여 주살함.

362) 진회(秦檜): 남송(南宋) 때의 인물로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재상에 올라 금(金)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였으며, 주전론자(主戰論者)인 장준(張浚)과 악비(岳飛) 등을 제거하여 후세에 간신의 표본으로 여겨짐.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二十一日 丁亥

○ 大司憲睦昌明, 持平裵正徽·鄭善鳴所啓, 請還收緣坐罪人煥·爀放歸田里之命. …… 又所啓, 請濟州定配罪人剭剛亟正邦刑.【見上】上曰, 依啓.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21일(정해)

□ 갈강(剭剛)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하기 등을 청하는 목창명(睦昌明) 등의 계

○ 대사헌 목창명(睦昌明), 지평 배정휘(裵正徽)·정선명(鄭善鳴)이 아뢰기를, "청컨대 연좌 죄인 이환(李煥)과 이혁(李爀)을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濟州) 정배 죄인 갈강(剭剛)에 대해 속히 국법을 바르게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앞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갈강, 제주.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四月 二十三日 己丑

○ 禁府啓曰, 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 拿鞫嚴問, 以正邦刑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 拿來,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4월 23일(기축)

□ 금부도사를 보내어 송시열(宋時烈)을 잡아올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된 죄인 송시열(宋時烈)을 나국엄문(拿鞫嚴問)하여 국법을 바루는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금부도사를 보내어 잡아오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시열, 금부도사.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五月 十一日 丙午

○ 以濟州牧使李喜龍狀啓, 船人寺奴乭云等溘死事, 傳曰, 溘死人等, 令本牧恤典擧行.

❖ 숙종 15년(1689) 기사년 5월 11일(병오)

□ 돌운(乭云) 등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희룡(李喜龍)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의 장계에서 뱃사람과 시노(寺奴) 돌운(乭云) 등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바다에 빠져죽은 사람 등에 대해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희룡, 시노, 돌운, 휼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七日 壬申

○ 備邊司啓曰, 卽接京畿監司所報, 濟州漂人載來漢人, 三四日內, 當入京城云, 令各該曹預爲修治南別宮家丁所入房舍, 以爲接置之所, 供饋等事, 竝依前例擧行, 而禁軍解事者一人, 別爲擇定, 領率留衛軍二十名防守, 俾無雜人出入之弊, 譯官中, 解事者數人, 別爲擇定, 使之接待,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7일(임신)

□ 제주(濟州) 표인(漂人)을 데려온 한인(漢人)들에게 방사(房舍)를 마련해주고 공궤(供饋)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가 보고한 것을 보니,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싣고 온 한인(漢人)들이 삼사일 내에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니, 각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남별궁(南別宮)에 가정(家丁)이 들어가는 방사(房舍)를 정비하여 접치(接置)하는 장소로 삼게 하고, 공궤(供饋) 등의 일을 모두 전례대로 거행하며, 금군(禁軍)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자 1인을 특별히 선정하여 유위군(留衛軍) 20명을 거느려 지키면서 잡인이 출입하는 폐단을 없게 하며, 역관(譯官)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자 몇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이들을 접대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363]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인, 한인, 남별궁, 공궤, 역관.

363) 《비변사등록》 1689년(숙종 15) 6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十五日 庚辰

○ 姜鋧,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人載來漢人等, 卽者京畿差使員, 領來【缺】入接於南別宮, 而別定本司郎廳與解事譯官, 進去問情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15일(경진)

□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데려온 한인(漢人)들에게 낭청 등을 보내어 정황을 묻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강현(姜鋧)[364]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표류했던 제주인을 싣고 온 한인(漢人) 등을 방금 경기차사원이 압령하여 왔습니다. 【글자 빠짐】 남별궁(南別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였으니, 특별히 본사(本司) 낭청과 사리를 잘 아는 역관을 정하여 나아가서 문정(問情)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강현, 제주인, 한인, 낭청, 역관, 문정.

364) 강현(1650~1733): 본관 진주(晉州). 자 자정(子精). 호 백각(白閣), 경암(敬庵). 시호 문안(文安).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十六日 辛巳

○ 姜鋧, 以備邊司言啓曰, 昨日漂人載來漢人等入來後, 使本司郎廳與解事譯官問情之意, 入啓, 蒙允矣. 其所問答說話, 與濟州問答別紙所錄, 別無大段相左處, 而但其所帶人數, 有加於寧波府踏印文印中之元數, 以此問答辭意, 別單書入, 其中病漢謝六哥, 入京之後, 病勢一向危重云, 令醫司擇送醫官, 看病救療, 且其所着衣袴等物, 令該曹依例入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16일(신사)

□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데려온 한인(漢人)들과의 문답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의고(衣袴) 등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입급(入給)하게 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강현(姜鋧)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표류인을 싣고 온 한인(漢人) 등이 들어온 후, 본사 낭청이 사리를 잘 아는 역관과 함께 문정(問情)할 뜻을 입계(入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문답했던 이야기와 제주(濟州)에서 문답했던 별지(別紙)에 기록한 것과 크게 어긋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의 숫자가 영파부(寧波府)에서 답인(踏印)한 문인(文印) 가운데의 원래 수보다 많았는데, 이러한 문답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병이 든 사육가(謝六哥)라는 자는 서울에 들어온 후에 병세가 줄곧 위중하다고 합니다. 의사(醫司)로 하여금 의관(醫官)을 가려 보내어 병을 보살펴 치료하게 하고, 또 그들이 입는 의고(衣袴) 등의 물품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입급(入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강현, 표류인, 한인, 사육가.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十九日 甲申

○ 又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流人載來漢人, 旣已到京, 盤問事情, 今當入送北京, 分付義州府尹, 預爲送人, 通報于鳳城, 使之整齊車輛, 以爲漢人所持物件搬運之地,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19일(갑신)

□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데려온 한인(漢人)이 북경에 갈 때 미리 봉황성(鳳凰城)에 알려 수레를 준비하여 소지한 물건을 운반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싣고 온 한인(漢人)이 이미 서울에 도착하여 사정을 조사했으니, 지금 마땅히 북경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의주부윤에게 분부하여 미리 사람을 보내어 봉황성(鳳皇城)에 통보하여 수레를 정돈하게 하여 한인이 소지한 물건을 운반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인, 한인, 의주부윤, 봉황성.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二十一日 丙戌

○ 李蓍晩,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流人載來漢人所騎船價銀八百兩, 水軍價銀四百兩, 金泰璜所約米六百包折價銀六百兩, 及漢人等涉海時路費銀一千兩, 令解事譯官, 商確停當, 漢人等, 旣以好意, 載送我人, 則與漂到者有異, 事當依所願給價, 以示優待之意. 且過平安道後, 盤纏銀, 每人各給二兩, 則當爲五十六兩, 上項銀子合一千八百五十二兩, 此則當以平安道管餉所在本司所管遼軍木所賣銀子出給, 而其在待遠人之道, 似當在此時計給, 慰悅其心. 故先令戶曹, 計數以給, 其代管餉銀子, 準此數取來, 以給戶曹宜當, 戶曹及平安監司處, 竝以此意分付, 此漢等久留有弊, 今二十二日發送, 而咨文, 未及撰出, 不得一時付送, 撰出後, 別定禁軍, 追送於中路,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21일(병술)

□ 표류인을 데리고 온 한인(漢人)에게 대금을 치러줄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시만(李蓍晩)[365]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표류했던 제주인(濟州人)을 싣고 온 한인(漢人)이 타고 온 배삯 8백 냥, 수군(水軍)에게 지불할 은 4백 냥, 김태황(金泰璜)이 약속한 미(米) 6백 포를 절가(折價)[366]한 은 6백 냥 및 한인 등이 바다를 건널 때의 노비(路費) 은 1천 냥은 일을 잘 아는 역관으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합당하게 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인 등은 호의로써 우리 백성들을 실어 보냈으니, 표도(漂到)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마땅히 원하는 바에 따라 대금을 치러주어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안도를 지난 후에 노자(路資)로 지급하는 은은 한 사람당 2냥씩 지급하면 56냥이 됩니다. 위 조목의 은자의 합계가 1,852냥[367]으로, 이는 마땅히 평안도 관향소(管餉所)[368]에 있는, 본사

---

365) 이시만(1641~1708): 본관 광주(廣州). 자 정응(定應). 호 동애(東厓).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대사간, 도승지, 함경도관찰사 역임.

366) 절가(折價): 어떤 물품 대신 다른 물품으로 받을 때 두 가지의 값을 견주어 받을 물품의 수량과 그 값을 정하는 것을 말함.

367) 1,852냥: 위 각 조목을 합하면 2,856냥임. 합계의 오기(誤記)이거나 위 각 조항에 서술된 숫자에 오기가 있는 듯함.

368) 관향소(管餉所): 국가 비상시에 군량으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던 양곡인 관향(管餉)을 보관하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듯 함. 1623년(인조 1) 각 지방에 군량을 비축하고, 관향사(管餉使)를 파견하여 이를 관리함. 평안도는 감사가 관향사를 겸임함.

가 관리하는 요군목(遼軍木)[369]을 판매한 은자로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의 사람들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금 계산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호조로 하여금 숫자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대신 관향소의 은자를 이 숫자에 준해서 가지고 와서 호조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호조와 평안감사에게 아울러 이러한 뜻으로 분부해 주십시오. 이 한인 등이 오래 머물면 폐단이 있게 되니 오는 22일 떠나보내고, 자문(咨文)은 아직 미처 지어내지 못해서 동시에 부쳐 보낼 수가 없으니 지어낸 후에 별도의 금군을 정하여 중간 길에 뒤따라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370]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시만, 제주인, 한인, 김태황, 관향소.

369) 요군목(遼軍木): 평안도 지방의 군정(軍政) 가운데 하나로,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바치던 무명을 가리킴.

370) 《비변사등록》 1689년(숙종 15) 6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六月 二十一日 丙戌

○ 李蓍晩,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海人載來漢人等, 令戶曹旣已入給衣袴, 而適當盛暑, 所造給者, 乃白布單衣, 前頭涼節不遠, 萬里行役之際, 不可〈無〉備寒之資, 襦衣袴等物, 更令該曹造給, 以示優待遠人之意. 且渠等, 値此潦雨, 慮其沾濕, 願得雨具云, 油衫, 亦爲分付, 竝卽入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6월 21일(병술)

□ 표류한 제주인을 데리고 온 한인에게 솜을 넣어 만든 저고리와 바지, 유삼(油衫) 등을 들여 주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시만[371]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표류한 제주인을 싣고 온 한인(漢人) 등에게 호조로 하여금 이미 저고리와 바지를 들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더위를 당했기에 만들어 준 것은 흰 베로 된 홑옷이었습니다. 앞으로 서늘해지는 계절이 멀지 않았는데, 만 리길을 가는 때에 추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솜을 넣어 만든 저고리와 바지 등을 다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여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넉넉히 대우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이러한 장맛비를 만나서 축축하게 젖는 것을 염려하여 우구(雨具)를 얻기 원한다고 합니다. 유삼(油衫)을 또한 분부하여 아울러 즉시 들여 줄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372]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류, 제주인, 한인.

---

371) 이시만(1641~1708): 본관 광주(廣州), 자 정응(定應) 호 동애(東厓).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대사간, 도승지, 함경도관찰사 역임.

372) 《비변사등록》 숙종 15년 6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七月 十五日 己酉

○ 李著晩,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先運駑駘馬三百匹內, 船中故失一匹, 中路故失二匹, 病留者, 至於九十四匹之多, 此前所未有之事. 時到馬二百三匹, 而第次毛色, 與別單所錄, 箇箇相左, 色吏迷甚, 莫知所由, 不得已以時到色捧上, 病留邑名, 亦不能區別, 只以中路病留懸錄, 別單書入, 上年以此之故, 請推牧使矣. 今此牧使, 不爲惕念, 又以如此之人定送, 殊甚可駭, 本州牧使李宇恒, 請從重推考. 且色吏言內, 以爲所經各官, 多般執頉, 不爲交付, 冀免故失之弊, 以致病留者數多云. 各官所爲, 亦極寒心, 令本道監司查覈現出, 該邑鄕所色吏, 爲先刑推, 後勿如是之意, 使之各別嚴飭, 何如? 傳曰, 依啓. 病留者, 將近百匹之多, 此實前所未有, 各邑所爲, 誠可寒心, 當該守令, 竝摘發, 姑先從重推考.

❖ 숙종 15년(1689) 기사년 7월 15일(기유)

□ 제주(濟州)의 선운노태마 중 병이 들어 머물러 지체되고 있는 것이 94필에 달한 책임을 물어 이우항(李宇恒) 등의 종중추고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시만(李著晩)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선운노태마(先運駑駘馬) 3백 필 가운데 배 안에서 고실(故失)한 것이 1필이고 중도에서 고실한 것이 2필인데, 병이 들어 머물러 지체되고 있는 것이 94필의 다수에 이르니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도착한 말이 203필인데, 차례 차례의 털색이 별단(別單)에 기록된 것과 각각이 서로 어긋나는데도 색리(色吏)는 미혹됨이 심하여 그 까닭을 알지 못하기에 부득이 지금 도착한 털색으로 받아 올립니다. 병으로 머물고 있는 읍명(邑名)은 또한 구별할 수 없어 다만 중간에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기록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작년에 이러한 이유로 목사의 추고(推考)를 청했었는데, 금번에 이에 대해 목사가 경계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을 정하여 보낸 것이 심히 놀랄 일입니다. 본주 목사 이우항(李宇恒)을 청컨대 종중추고(從重推考) 하십시오. 또한 색리가 한 말 가운데 경유한 각 고을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교부(交付)하지 않고 고실의 폐단을 면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병으로 머무는 숫자가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관(各官)이 한 것이 또한 매우 한심합니다. 본도(本道) 감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이 드러나게 하고, 해당 읍의 향소(鄕所) 색리를 우선 형추(刑推)하여 이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히 경계하게 하는 것이 어

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1백 필 가까이 많은 수에 이르는 것은 실로 전에 없던 바이다. 각 읍이 한 짓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다. 해당 수령을 아울러 적발하여 우선 종중추고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시만, 이우항, 선운노태마, 종중추고.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七月 十七日 辛亥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卽見濟州牧使李宇恒移關, 則以爲陸地各邑載馬船, 例於四月望前齊到, 霖雨前裝載出送, 而順天·長興·光陽等邑船隻, 五月間, 始爲到泊, 羅州船隻, 終不入, 沙格十五名定送, 自是前規, 而長興則八名, 靈光則十名, 茂長·光陽則十一名, 珍島·順天則十三名定送云. 濟州馬歲貢之法, 國之大政, 各邑之不謹擧行, 殊極可駭. 船隻晩泊之順天·光陽等邑, 沙格數少之長興·靈光·茂長·光陽·珍島·順天等邑, 鄕所色吏, 令本道監司, 拿致刑推, 船隻元不到泊之羅州牧使, 推考, 何如? 傳曰, 允.【太僕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7월 17일(신해)

□ 세공을 위한 제주마(濟州馬)를 실을 배를 늦게 보낸 순천 등 고을의 향소 색리를 잡아다가 형추(刑推)하고 배를 보내지 않은 나주목사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항(李宇恒)이 보낸 관문(關文)을 바로 보니, 육지 각 읍에서 말을 실을 배가 으레 4월 보름 전에 일제히 도착하여 장마 전에 짐을 꾸려 내보냅니다. 순천(順天)·장흥(長興)·광양(光陽) 등의 배는 5월 중에야 비로소 도착하여 배를 대었고, 나주의 배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격(沙格)[373]은 15명을 정하여 보내는 것이 전례인데 장흥은 8명, 영광(靈光)은 10명, 무장(茂長)·광양은 11명, 진도(珍島)·순천은 13명을 정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제주마를 세공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도 각 읍이 삼가 거행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배를 늦게 댄 순천·광양 등의 읍과 사격의 수를 적게 보낸 장흥·영광·무장·광양·진도·순천 등 읍의 향소(鄕所) 색리(色吏)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형추(刑推)하게 하고, 배를 처음부터 대지 않은 나주목사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우항, 제주마, 세공, 사격, 나주목사.

---

373) 사격(沙格): 사공(沙工)과 곁꾼(格軍). 사공은 선장에 해당하고 격군은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킴.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七月 十八日 壬子

○ 李蓍晩,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卽接全羅監司移關, 則以爲濟州馬中路病蹇者, 仍留其邑, 待差定色吏上送事, 壬戌年爲始, 定式擧行, 而本道終到官, 替傳於忠洪道初面官, 吹毛覓疵, 點退不捧, 遠邑牽夫, 或有直向京司, 或有牽還本邑, 仍致病斃者, 比比有之云. 今番中路病留者, 殆近百匹之故, 因傳敎, 已令査出推考矣. 今後則所經各官, 切勿點退, 病傷的實, 則依例捧留, 待差上送, 次次替授, 無或推托, 如有違者, 隨現論罪之意, 令三道監司各別申飭,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7월 18일(임자)

□ 제주마(濟州馬)가 경유하는 각 고을은 점퇴(點退)하지 말고 병상(病傷)이 확실하면 받아서 머물게 하였다가 색리가 차정되면 올려 보내도록 3도 감사에게 각별히 단단하게 타일러 경계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시만(李蓍晩)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라감사가 보낸 관문(關文)을 바로 보니, 제주마(濟州馬)로 중도에서 병이 든 것을 그대로 그 읍에 머물게 하고 색리가 차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올려 보내는 것은 임술년(1682)에 시작하여 규식(規式)을 정하여 거행하였습니다. 본도(本道) 중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고을이 충홍도(忠洪道)의 처음 접하는 고을에게 교대하여 전달할 때에, 억지로 트집을 잡아 점퇴(點退)[374]하여 받지 않아서 먼 고을의 견부(牽夫)가 곧바로 경사(京司)로 향하기도 하고, 혹은 본읍(本邑)으로 끌고 돌아와 그대로 병든 채 죽게 하는 것이 자주 있어 왔다고 합니다. 금번 중도에서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것이 거의 100필에 이른 까닭에 전교에 따라서 이미 자세히 조사해 내어 추고(推考)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유하는 각 고을은 절대로 점퇴하지 말고 병상(病傷)이 확실하면 으레 받아서 머물게 하였다가 색리가 차정되는 것을 기다렸다 올려 보냄에, 차례대로 갈아주어 혹여 핑계를 대어 회피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만약에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드러나는 대로 죄를 논할 뜻을 3도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단단하게 타일러 경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시만, 제주마, 전라감사, 점퇴.

---

374) 점퇴(點退): 받을 물건을 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수령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七月 十九日 癸丑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年例進上馬六十匹, 歲貢馬二百匹, 凶笞馬一百匹, 合三百六十八匹內, 船中故失一匹, 中路病留二匹, 到本寺病留四匹計除, 實數三百六十一匹,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7월 19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나온 연례진상마 등의 실수를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또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64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마(凶笞馬) 100필 합 368필 가운데 배 안에서 고실(故失)한 1필, 중도에서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2필,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는 4필을 제외한 실제의 수 361필을 별단(別單)을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연례진상마, 세공마, 흉구마, 별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七月 二十七日 辛酉

○ 又以義禁府意啓曰, 李立身·李元成等, 嚴鞫處斷事, 傳旨啓下矣, 李立身, 時在旌義縣配所, 李元成, 時在兎山地配所, 依例發遣府都事拿來, 何如? 傳曰, 允.

❖ 숙종 15년(1689) 기사년 7월 27일(신유)

□ 죄인 이입신(李立身) 등에게 금부도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또 의금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입신(李立身)[375]·이원성(李元成) 등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하는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입신은 지금 정의현(旌義縣) 배소에, 이원성은 토산(兎山) 배소에 있는데, 전례에 따라 금부도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입신, 이원성, 정의현, 토산, 금부도사.

375) 이입신(1625~1689): 본관 양성(陽城). 자 현부(顯夫). 호 의재(毅齋). 1663년(현종 4) 무과 급제. 도총관, 전라병사, 평안병사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八月 二十日 癸未

○ 禁府, 劉自勗光陽縣, 李世憲昆陽郡, 丁大祿河東縣, 極邊定配. 李敏哲珍島郡, 李時中旌義縣, 申彦華濟州牧, 柳滌巨濟縣, 吳定邦南海縣, 絶島定配. 啓.【以上朝報】

❖ 숙종 15년(1689) 기사년 8월 20일(계미)

□ 의금부에서 이시중(李時中) 등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 했다고 아룀

○ 의금부에서 유자욱을 광양현, 이세헌을 곤양군, 정대록을 하동현에 극변정배(極邊定配)하였고 이민철을 진도군, 이시중(李時中)을 정의현(旌義縣), 신언화(申彦華)를 제주목(濟州牧), 유척을 거제현, 오정방을 남해현에 절도정배(絶島定配)하였다고 아뢰었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시중, 신언화, 정의현, 제주목, 절도정배.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八月 二十日 癸未

○ 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今年, 卽慶尙·咸鏡道·濟州點馬當次之年, 近來牧場馬政, 非不申飭, 而漸至解弛, 不可不別樣檢飭, 三處點馬, 令該曹擇差, 而濟州別監, 依前先爲下送, 何如? 傳曰, 允.【太僕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8월 20일(계미)

□ 제주도에 전례대로 제주별감을 파견하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은 곧 경상도와 함경도, 제주(濟州)의 목장마를 점마(點馬)할 차례가 되는 해입니다. 근래 목장의 마정(馬政)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점차 해이함에 이르고 있으니 각별하게 점검하여 단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곳을 점마할 때 해조(該曹)로 하여금 택차(擇差)하여 제주별감(濟州別監)을 전례대로 먼저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목장마, 점마, 마정, 제주별감, 택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八月 二十九日 壬辰

○ 又啓曰, 卽接典牲署牒報, 則近來牛疫大熾, 本署留養黑牛十首內, 病斃者七, 方痛者二, 餘存者只是一首, 而前頭得免, 未可豫料, 濟州元貢牛分養成冊, 尙不上來, 冬享大祭, 只隔一月, 濟州貢牛, 雖或出來, 越海瘦瘠之牛, 決不合於祭享之用, 大祭封進黑牛, 實豫差竝四首, 而他無推移封進之路, 黑牛五首, 令該曹貿給事, 依前例入啓變通云. 莫重祭享所用之牛, 幾盡致斃, 本署事勢, 誠爲可慮, 令該曹給價貿得, 豫爲留養, 以爲無弊封進之地事, 分付,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15년(1689) 기사년 8월 29일(임진)

□ 우역(牛疫)이 창궐하고 있으니 대제봉진흑우(大祭封進黑牛)는 무급(貿給)하여 제주공우(濟州貢牛)의 봉진 폐단이 없게 하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또 아뢰기를, "전생서(典牲署)의 첩보(牒報)를 바로 보니, '근래 우역(牛疫)이 크게 유행하여 본서(本署)에 두어서 기르고 있는 흑우 10수 가운데 병들어 죽은 것이 7수이고, 지금 앓고 있는 것이 2수이며, 남아있는 단 1수는 앞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을 지 예측할 수 없거니와, 제주원공우분양성책(濟州元貢牛分養成冊)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고, 동향대제(冬享大祭)는 단 1개월 남아 있을 뿐이기에 제주공우(濟州貢牛)가 혹여 나온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면서 수척해진 소는 제향을 지내는 용도에 결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대제에 봉진할 흑우는 실차(實差)와 예차(預差)를 합하여 모두 4수인데 달리 변통하여 봉진할 길이 없으니, 흑우 5수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무급(貿給)하는 일을 전례대로 입계(入啓)하여 변통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막중한 제향에 쓸 소가 거의 다 죽어버렸기에 본서의 일이 되어가는 형세가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해조로 하여금 값을 주고 사서 미리 두어 길러서 폐단 없이 봉진하게 할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우역, 흑우, 제주공우.

❖ 康熙 二十八年 己巳 九月 二十一日 甲寅

○ 府啓, 申範華事.【見上】推鞫罪人拿來, 事體極爲嚴祕, 使不得與外人交通, 奉命都事, 亦不敢私覿於人, 而禁府都事尹愉, 乃於罪人立身拿來時, 往見濟州定配罪人金鎭龜, 朝廷若有紀綱, 奉命之人, 何敢私相尋訪他罪人, 若是其無忌憚乎? 蔑法縱恣, 至於此極, 則罪人拿來之際, 不能嚴祕, 必多疎漏之弊, 亦可知矣, 事之寒心, 莫此爲甚. 請禁府都事尹揄, 拿問定罪.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15년(1689) 기사년 9월 21일(갑인)

□ 이입신(李立身)을 잡으러 갔다가 김진구(金鎭龜)를 만나고 온 책임을 물어 윤유(尹揄)를 잡아다 죄를 물어 정죄(定罪) 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신범화의 일을 아뢰었다.【앞에 보임】 "추국 죄인(推鞫罪人)을 잡아오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굳게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사신은 외인(外人)과 서로 통할 수 없고, 임금의 명을 받든 도사(都事) 또한 감히 사사로이 타인을 만날 수가 없는데도, 금부도사 윤유(尹揄)[376]는 곧 죄인 입신(立身)을 잡아올 때 제주(濟州)에 유배된 죄인 김진구(金鎭龜)[377]를 가서 만났으니, 조정에 만약 기강이 있다면 임금의 명을 받든 사람이 어찌 감히 사사로이 다른 죄인을 서로 찾아 방문하기를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국법을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죄인을 잡아올 때 비밀을 굳게 지킬 수 없어서 반드시 소홀히 한 폐단이 많았음을 또한 알 수 있으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금부도사 윤유를 잡아다 죄를 물어 정죄(定罪)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입신, 김진구, 윤유.

---

376) 유윤(1647~1721): 본 파평(坡平). 자 천종(天縱). 호 봉계(鳳溪). 양선현감, 공조정랑, 문의현령 역임. 1681년(숙종 7) 진사시 합격. 저서《봉계문집》.

377) 김진구(1651~1704): 본관 광산(光山). 자 수보(守甫). 호 만구와(晩求窩). 시호 경헌(景獻).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도승지, 좌참찬, 판의금부사 역임.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十一月 五日 戊戌

○ 以金聲久爲執義, …… 朴濟爲旌義縣監, …….

❖ 숙종 15년(1689) 기사년 11월 5일(무술)

□ 박제(朴濟)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김성구(金聲久)를 집의(執義)로, 〈중략〉 박제(朴濟)[378]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제, 정의현감.

378) 박제(?~?): 정의현감으로 1690년(숙종 16) 1월에 도임하여, 1692년(숙종 18) 7월에 떠남.

❖ 康熙 二十八年 己巳 十二月 十六日 戊寅

○ 下直, 旌義縣監朴濟.

❖ 숙종 15년(1689) 기사년 12월 16일(무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제(朴濟)가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제(朴濟)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제, 정의현감.

1690年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一月 二十四日 丙辰

○ 庚午正月二十四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德遠曰, 濟州今年凶歉太甚, 而本州定配罪人, 其數頗多, 故主客俱困, 殊甚可慮. 罪之重者, 固不可輕議, 而至於輕罪, 則不可無變通之道, 查稟後, 移配陸地, 以除本州流亡之患, 未知, 何如. 上曰, 自前凶歲, 本州罪人, 有移配陸地之事矣. 卽令該府該曹, 查稟擧行, 可也. 出擧條 …….

❖ 숙종 16년(1690) 경오년 1월 24일(병진)

□ 희정당에 김덕원(金德遠) 등이 입시하여 흉년이 든 제주(濟州)에서 유배인의 배소를 육지로 옮기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경오년 정월 24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 〈중략〉 김덕원(金德遠)[379]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금년 흉년이 아주 심한데, 본주(本州)에 유배된 죄인의 수가 아주 많아서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죄가 중한 자는 진실로 가벼이 논의할 수 없지만 가벼운 죄에 이르러서는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으니, 사품(查稟)한 후에 육지로 배소를 옮겨 본주에 유망(流亡)할 염려를 없애는 것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부터 흉년에 본주 죄인을 육지로 이배(移配)하는 일이 있었다. 즉시 해부(該府)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고 품의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내었음】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덕원, 흉년, 이배.

---

379) 김덕원(1634~1704): 본관 원주(原州). 자 자장(子長). 호 휴곡(休谷).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형조참판, 예조판서 역임.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一月 二十六日 戊午

○ 金聲久啓曰, 今正月二十四日引見時, 因右議政金德遠所達, 自上有濟州定配罪人中, 擇其輕者, 移配陸邑之敎, 而不能覺察, 遺漏於擧行條件, 當該注書推考. 臣以伊日入侍承旨, 亦有不察之失, 惶恐待罪. 傳曰, 依啓.【以上出蠹餘日記】

❖ 숙종 16년(1690) 경오년 1월 26일(무오)

□ **제주(濟州) 정배죄인을 육지에 있는 읍으로 이배하는 일을 거행조건에서 빠뜨린 주서(注書)를 추고하고, 이를 살피지 못한 자신도 대죄한다는 김성구(金聲久)의 계**

○ 김성구(金聲久)[380]가 아뢰기를, "금번 정월 24일 인견할 때,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진달한 바에 따라 위로부터 제주(濟州) 정배죄인 중에 죄가 가벼운 자를 뽑아 육지에 있는 읍으로 배소를 옮기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행조건(擧行條件)에서 빠뜨린 해당 주서(注書)를 추고(推考)하고, 신은 그날 입시했던 승지로써 또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으니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다 남은 일기에서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성구, 김덕원, 정배죄인, 주서, 추고.

380) 김성구(1641~1707): 본관 의성(義城). 자 덕휴(德休). 호 팔오헌(八吾軒). 1669년(현종 10) 문과 급제. 좌승지, 강원도관찰사, 호조참의 역임. 저서《팔오헌집》.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二月 六日 戊辰

○ 金聲久, 以司僕寺言啓曰, 戊辰, 以南方各牧場馬品漸劣, 珍島·興陽·順天三處, 別設一場, 而濟州好品雌馬一百五十匹, 山雄馬三十匹, 上送事, 定奪矣. 別設牧場之意, 査問於三處監牧官, 則皆以爲不得可合設場處云, 而新設牧場, 亦涉有弊. 牧場中珍島智力山·南陽大部島·江華鎭江場, 素稱產出駿馬之地, 地多馬少, 姑以濟州好品雌馬一百五十匹, 山雄馬三十匹, 分放於智力山·大部島·鎭江場, 而智力山所放之馬, 則別定差員, 與監牧官按同[校][眼同], 自下陸官直放後, 禾毛色, 使之成册上送, 其餘馬匹, 上京逢點後, 分放兩處, 何如? 傳曰, 允.

❖ 숙종 16년(1690) 경오년 2월 6일(무진)

□ 제주(濟州)의 품질 좋은 암말과 산웅마를 진도 지력산(智力山) 등지에 나누어 방목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김성구(金聲久)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무진년(1688)에 남쪽지방 각 목장 말의 품질이 점점 나빠져서 진도(珍島)·흥양(興陽)·순천(順天) 세 곳에 특별히 일장(一場)을 설치하여 제주(濟州)의 품질 좋은 암말 150필과 산웅마(山雄馬) 30필을 올려 보내는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별도로 목장을 설치하는 뜻을 세 곳의 감목관에게 사문(査問) 하였더니, 모두가 목장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새로 설치된 목장이 또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목장 가운데 진도의 지력산(智力山)과 남양의 대부도(大部島), 강화의 진강장(鎭江場)은 평소 준마의 산지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땅은 많고 말은 적습니다. 우선 제주의 품질 좋은 암말 150필과 산웅마 30필을 지력산과 대부도, 진강장에 나누어 방목하되, 지력산에 방목한 말은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감목관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하륙한 관(官)에서 곧바로 방목한 후 나이와 털색을 성책(成册)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마필은 서울로 올려 보내어 점고(點考)를 거친 후에 두 곳으로 나누어 방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성구, 지력산, 대부도, 진강장.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二月 七日 己巳

○ 金聲久,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振煜, 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6년(1690) 경오년 2월 7일(기사)

□ 김진욱(金振煜)의 봉진마가 올라왔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며 내구에서 기르게 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성구(金聲久)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진욱(金振煜)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이제 겨우 올라왔기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면서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먹여 기를 뜻을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성구, 김진욱, 봉진마, 내구.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二月 十三日 乙亥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牌不進之弊, 近來尤甚, 故頃日特爲分付矣. …… 判義禁李觀徵啓曰, 頃因右議政金德遠陳達, 以濟州年凶, 定配罪人中, 罪名稍輕者, 移配陸地事, 命下矣. 濟州定配罪人中, 本府罪人八人, 而譯官韓錫祚, 容有可議, 豈爲此一人, 而有所變通乎? 置之何如? 德遠曰, 前日自有移配之命, 而其後發配時, 無處分之事, 未知聖上, 或出於有意耶? 閔黯曰, 臣待罪金吾時, 左右相, 以韓錫祚事有所陳達, 自上令移配, 則相臣, 以錫祚, 方以他罪, 在囚, 其事結末後, 處分爲宜之意, 陳達矣. 其後錫祚發配之日, 無移配之命, 而不敢復有所煩稟矣. 上曰, 其時偶然忘却, 移配陸地, 可也.【擧行條件】…….

❖ 숙종 16년(1690) 경오년 2월 13일(을해)

□ 인견에 이관징(李觀徵)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유배된 한석조(韓錫祚)의 육지 이배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패초(牌招)[381]에 나아가지 않는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별히 분부하였었다. 〈중략〉 판의금부사 이관징(李觀徵)[382]이 아뢰기를, "지난번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아뢴 바에 따라 제주(濟州)의 흉년으로 정배(定配)된 죄인 중에 죄명이 조금 가벼운 자들을 육지로 이배하는 일에 대한 명을 내렸습니다. 제주에 정배된 죄인 중에 본부(本府)의 죄인은 8인으로, 역관 한석조(韓錫祚)는 논의할 만한데 어찌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변통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배의 명이 있었고, 그 뒤 유배지로 떠나보낼 때에 처분한 일이 없었으니, 성상(聖上)이 혹 뜻이 있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민암(閔黯)[383]이 말하기를, "신이 의금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좌상과 우상이 한석조의 일을 진달하자 상께서 이배를 명하였는데 상신(相臣)이 석조가 지금 다른 죄로 갇혀 있으니 그 일이 결말이 난 후에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 뒤에 석조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이배

---

381) 패초(牌招): 승지를 시켜 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382) 이관징(1618~1695): 본관 연안(延安). 자 국빈(國賓). 호 근옹(芹翁)·근곡(芹谷). 시호 정간(貞簡). 1653년(효종 4)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승지, 대사헌 역임. 저서 《근곡집》.

383) 민암(1636~1693): 본관 여흥(驪興). 자 장유(長孺). 호 차호(叉湖). 1668년(현종 9) 문과 급제. 지평, 승지, 함경도관찰사 역임.

의 명이 없었기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여쭙지 않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는 우연히 잊었던 것이다. 육지로 이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거행조건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관징, 김덕원, 민암, 한석조, 이배.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二月 二十一日 癸未

○ 金聲久, 又以刑曹言啓曰, 今正月二十四日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金德遠所啓, 濟州今年, 凶歉太甚, 而本州定配罪人, 其數頗多, 故主客俱困, 殊甚可慮, 罪之重者, 固不可輕議, 至於輕罪, 則不可無變通之道, 查稟後移配陸地, 以除本土居民一分之弊, 何如? 上曰, 自前凶歲, 本州罪人, 有移配陸地之事, 令該府·該曹, 查稟擧行, 可也事, 命下矣. 本曹所管濟州罪人三十八名內, 七名段, 罪名甚重, 有難出陸, 仍配本州, 三十一名, 罪名稍輕, 出陸移配, 定配所,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6년(1690) 경오년 2월 21일(계미)

□ 제주(濟州)에 흉년이 심하므로 경죄인을 육지로 이배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경죄인 31명에 대해 배소를 정하여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형조의 계

○ 김성구(金聲久)가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번 정월 24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아뢴 바, '제주(濟州)에 금년 흉년에 아주 심한데, 본주(本州)에 유배된 죄인이 아주 많아서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죄가 중한 자는 진실로 가벼이 논의할 수 없지만 가벼운 죄에 이르러서는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으니, 사품(査稟)한 후에 육지로 배소를 옮겨 본토에 사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단을 없애주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부터 흉년에 본주 죄인을 육지로 이배(移配)하는 일이 있었다. 해부(該府)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고 품의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본조(本曹) 소관의 제주 죄인 38명 안에서 7명은 죄명이 아주 중하여 육지로 나오기 어려우니 그대로 본주(本州)에 두고, 31명은 죄명이 조금 가벼우니 육지로 나와 배소를 옮기면서 정배소(定配所)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성구, 김덕원, 흉년, 이배.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四月 十三日 甲戌

○ 金龜萬, 以禮曹言啓曰, 卽接典牲署牒報, 則本署卽今留養黑牛, 只有五首, 前頭永寧殿, 宗廟秋享大祭, 實預差竝封進者七首內, 二首不足, 社稷大祭實預差竝二首, 而其間有別祭之擧, 則無推移封進之牛, 濟州·巨濟元貢牛, 五月內, 捉出分養湖西後, 取來封進之意, 已報本曹行會, 而此牛, 雖或趁期上來, 纔已越海, 勢未及肥澤, 決不可用於祭享, 莫重祭享所用之牛, 不可不預爲措備別養, 敢此牒報. 祭享可合黑牛五六首, 依前例, 令戶曹貿給云. 前頭封進黑牛不足之數, 至於如此, 越海之牛, 勢未及肥澤, 誠如所報, 不可無前期變通之道, 依所報, 令該曹貿給, 何如? 傳曰, 允.

❖ 숙종 16년(1690) 경오년 4월 13일(갑술)

□ 호조로 하여금 제향에 쓰일 흑우를 무급(貿給)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김귀만(金龜萬)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생서(典牲署)의 첩보(牒報)를 바로 받아보니, '본서(本署)에 지금 당장 두어서 기르는 흑우가 단 5수뿐입니다. 앞으로 영녕전(永寧殿)[384]과 종묘추향대제(宗廟秋享大祭)에 실차(實差)와 예차(預差)로 아울러 봉진할 7수 가운데 2수가 부족하고, 사직대제(社稷大祭)에는 실차와 예차를 아울러 2수인데 그 사이에 별제(別祭)를 거행하게 되면 추이(推移)하여 봉진할 소가 없습니다. 제주(濟州)와 거제(巨濟)의 원공우(元貢牛)는 5월 내에 착출하여 호서(湖西)에 분양(分養)한 후에 가지고 와서 봉진할 뜻을 이미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행회(行會)[385]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는 비록 혹여 기한에 다다라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제 막 바다를 건너왔기에 형세 상 살쪄 윤기가 나는 데에 미치지 못하여 결코 제향에 쓸 수 없으니, 막중한 제향에 쓸 소를 미리 갖추어 특별히 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감히 보고합니다. 제향에 합당한 흑우 대여섯 수를 전례대로 호조로 하여금 무급(貿給)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진할 흑우의 부족한 수가 이와 같음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온 소가 형세 상 살쪄 윤기 나는 데에 이르지 못함은 진실로 보고한 바와 같으니 기일에 앞서 변통할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보고한 바에 따라 해조(該曹)로 하여금

---

384) 영녕전(永寧殿): 조선시대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를 봉안하던 곳으로 종묘 안에 있음. 태조의 사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대(代)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셨음.

385)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

무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귀만, 흑우, 무급.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四月 十七日 戊寅

○ 執義尹鼎和, 掌令金鼎台·李熙采啓曰 …… 興德縣監李錠, 本以庸調武夫, 到任三年, 無一善狀, 專任鄕所, 托爲心腹, 日夜營爲, 無非剝民肥己之事, 姑以其最著者言之, 則去年七月, 濟州馬上來之時, 以煙戶, 調發驅馬軍, 而加定軍數, 故爲剩餘, 除出餘軍, 托以均役, 勒捧價米, 其數甚多, 盡爲私用. …… 如此鄙悖不法之人, 不可不嚴懲, 以杜後弊, 請興德縣監李錠拿問定罪. 答曰, 勿校[不]允.

❖ 숙종 16년(1690) 경오년 4월 17일(무인)

□ 제주마가 올라올 때 징발한 말몰이꾼에게 가미를 받아내어 사사로이 사용한 이정(李錠)의 나문정죄(拿問定罪)를 청하는 윤정화 등의 계

○ 집의 윤정화(尹鼎和)[386], 장령 김정태(金鼎台)·이희채(李熙采)가 아뢰기를, "〈상략〉 흥덕현감 이정은 본래 용렬한 무부(武夫)로 도임 3년 동안 한 번도 선정을 베풀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직무를 전적으로 맡긴 향소(鄕所)는 의탁하여 심복(心腹)이 되어 밤낮으로 경영하는 것이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들을 살찌우는 일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선 그 가장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작년 7월 제주마가 올라올 때 연호(煙戶)로 말몰이꾼을 징발하면서 몰이꾼의 숫자를 더 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원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몰이꾼을 덜어내면서 균역(均役)이라는 구실로 억지로 가미(價米)를 받아낸 것이 그 수가 아주 많은데, 모두 사사로이 사용하였습니다. 〈중략〉 이와 같이 비열하고 막되 먹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엄히 징계하여 훗날의 폐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흥덕현감 이정을 나문정죄(拿問定罪)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연호, 말몰이꾼, 이정, 가미.

---

386) 윤정화(1648~?): 본관 파평(坡平). 자 열지(說之).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제주목사, 공조참의, 공조참판 역임.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七月 二十九日 戊午

○ 備忘記, 耽羅一域, 素稱多產善馬, 而比年以來, 馬品無形, 雜種居半, 已極寒心, 而今觀歲貢馬匹, 箇箇體少品劣, 其全不留意馬政, 任他抛棄之狀, 誠可駭然. 濟州牧使李宇恒, 姑先從重推考, 明年歲貢馬, 又如是品劣, 則當有別樣論責之擧, 以此意各別嚴飭事, 言于該寺.

❖ 숙종 16년(1690) 경오년 7월 29일(무오)

□ 체구가 작은 세공마를 올려 보낸 이우항(李宇恒)을 종중추고하고 각별히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에 이르기를, "탐라(耽羅)는 평소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고 일컬어지는데, 근년 이래로 말의 품질이 형편이 없어 잡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 심히 한심스럽다. 지금 세공마를 보니 하나하나가 체구가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데, 온전히 마정(馬政)에 유의하지 않고 방임하여 포기해 버린 실상이 실로 놀랄 만하다. 제주목사 이우항(李宇恒)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 내년 세공마가 또 이와 같이 품질이 나쁘면 의당 특별히 책임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각별히 엄하게 타일러 경계할 것을 해당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공마, 이우항, 마정, 종중추고.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八月 三日 辛酉

○ 司僕寺啓曰, 濟州三運馬三百十八匹內, 一匹到淳昌病留, 一匹到龍仁故失, 實捧三百十六匹, 以時到毛色, 別單書入, 而臣待罪該寺, 不能檢飭, 再運歲貢馬匹, 尤甚體小品劣, 致勤聖敎, 不勝惶恐. 今此三運馬匹, 旣稱進上, 則比之歲貢, 事體自別, 所當益加惕念, 而馬匹之無形, 前後無異, 極爲可駭. 若不別樣警飭, 馬政必至於漸爲疎虞, 濟州牧使李宇恒, 姑先從重推考, 以觀日後, 何如? 傳曰, 允.【已上司僕寺謄錄】

❖ 숙종 16년(1690) 경오년 8월 3일(신유)

□ 체구가 작은 세공마를 올려 보낸 이우항(李宇恒)을 종중추고 하고 각별히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라는 비망기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삼운마(濟州三運馬) 318필 내에 1필은 순창(淳昌)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1필은 용인(龍仁)에 도착하여 고실(故失)하여 실제로 받은 316필을 당시 도착한 털색으로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습니다. 신이 해당 관아에 근무하면서 능히 점검하여 단속하지 못하여 재운세공마(再運歲貢馬)가 더욱 심히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하여 수고롭게 성교(聖敎)를 내리게 하였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 삼운마를 이미 진상이라 일컬었으니, 세공에 비하여 사체(事體)가 달라서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욱 가져야 하는데도 마필이 형편없는 것이 앞뒤가 다름이 없으니 심히 놀랄 만합니다. 만약 보통과 달리 단단히 경계하여 질책하지 않는다면 마정(馬政)은 필히 점차 허술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주목사 이우항(李宇恒)을 우선 종중추고 하여 후일의 경계를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삼운마, 이우항, 마정, 종중추고.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八月 八日 丙寅

○ 司僕寺啓曰, 卽見濟州牧使牒報, 則陸邑分定載馬船隻, 俱不趁卽到泊, 其中興陽·康津船隻, 終不入來, 不得已賃船載送云. 進上馬載送, 何等重事, 而各官之慢不擧行, 殊極可駭. 興陽·康津兩邑守令推考, 監色捉致刑推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出司僕寺謄錄】

❖ 숙종 16년(1690) 경오년 8월 8일(병인)

□ 말을 싣고 갈 선박을 보내지 않은 흥양 등지의 수령을 추고하고 감색을 형추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첩보를 보니 육지 읍에 나누어 정한, 말을 실고 갈 배가 모두 진작에 와서 정박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흥양(興陽)과 강진(康津)의 배는 끝내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배를 임대하여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진상마를 실어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각 고을이 태만하여 거행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합니다. 흥양과 강진 두 읍의 수령을 추고(推考)하고, 감색을 붙잡아 와서 형추(刑推)할 뜻을 본도(本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흥양, 강진, 진상마, 감색, 추고.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八月 二十三日 辛巳

○ 禮曹啓曰, 王世子册禮後, 陳賀方物所封中, 濟州牧使封進世子宮織毛馬粧一部, 旣已本邑封進矣, 三名日方物中, 大殿所封進阿多介一坐代, 豹皮四張,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 因傳敎恒式代封, 則前頭三名日, 世子宮所封進阿多介及織毛馬粧, 一體代封乎? 敢此仰稟. 傳曰, 依爲之.【出禮曹謄錄】

❖ 숙종 16년(1690) 경오년 8월 23일(신사)

□ 삼명일에 세자궁에 봉진해야 하는 아다개 및 직모마장 일체를 대신 봉진하는 것을 묻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자 책봉례 후에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을 봉하는 것 중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세자궁에 봉진하는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部)는 이미 본읍에서 봉진하였습니다. 삼명일(三名日) 방물 중에 대전(大殿)에 봉진하는 아다개(阿多介)[387] 1좌(坐)는 표범가죽 4장(張)으로 대신하고, 직모마장은 결궁장피(結弓獐皮) 5장으로 대신하는 것은 전교에 따라 항식(恒式)으로 대신 봉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삼명일에 세자궁에 봉진할 아다개 및 직모마장 모두를 (표범가죽과 결궁장피로) 대신하여 봉진합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책봉례, 직모마장, 아다개, 결궁장피, 표범가죽.

387) 아다개(阿多介): 표범가죽으로 만든 요. 아두개(阿斗箇) 혹은 아닷개〔阿介〕라고도 함.

❖ 康熙 二十九年 庚午 九月 五日 壬辰

○ 康熙二十九庚午九月初五日晝講時, 同知事柳命天所啓, 今次陵幸時上言下吏曹者, 多是年八十以上願爲加資事也. …… 又所啓, 臣待罪典醫監提調, 兩醫司貢物下人, 有難支之弊, 故敢此仰達. 在昔外方藥材來貢之時, 則出納之際, 例請臺監, 而一自貢物設立之後, 則出給價物於貢物下人, 使之擔當進排, 而元無上納之藥材, 自濟州只納陳皮等若干種, 故爲此一番請臺而其後別無請臺出納之事, 月令監察之有弊於本司, 甚多, 貢物下人輩, 不勝支當, 聞掌苑·禮賓等司貢物設立之後, 無請臺出納之事, 故監察月令, 竝皆革罷云, 兩醫司月令, 一體革罷, 未知何如? 參贊官沈檀曰, 臣亦待罪惠民署提調, 此弊固然, 藥材出納之時, 則固當有請臺之擧, 而今則貢物下人輩, 受價備藥, 置諸渠家, 而進排上司, 則濟州數種之藥, 雖無臺監, 亦可捧納. …… 軍器·禮賓·掌苑諸司, 自貢物設立之後, 月令皆已革罷, 兩醫司月令, 亦一體革罷, 何如? 上曰, 其弊誠然, 兩醫司月令, 一體革罷, 可也. …….

❖ 숙종 16년(1690) 경오년 9월 5일(임진)

□ 주강에 유명천(柳命天) 등이 입시하여, 진피(陳皮) 등의 약재를 상납하는 제주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양의사(兩醫司)의 월령 혁파 등에 대해 논의함

○ 강희 29년 경오 9월 초 5일 주강(晝講) 때, 동지사 유명천[388]이 아뢰기를, "이번 능에 거둥할 때 상언(上言)을 이조(吏曹)에 내린 것이 대개 80세 이상을 가자(加資)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신은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로 있습니다. 양의사(兩醫司)[389]의 공물하인(貢物下人)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옛날에 지방에서 약재를 와서 바칠 때면 출납할 즈음에 으레 사헌부 감찰을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공물을 설립한 후부터는 가물(價物)을 공물하인에게 내어줘서 공물 진상을 담당하게 하고 있기에 본래 상납하는 약재가 없고, 제주에서 다만 진피(陳皮) 등 약간의 종류만을 상납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한번 사헌부 감찰을 청하고, 그 뒤로는 따로 사헌부 감찰을 청하여 출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월령(月令) 감찰이 본사(本司)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심

388) 유명천(1633~1705): 본관 진주(晋州). 자 사원(士元). 호 퇴당(退堂). 1672년(현종 13) 문과 급제. 홍문관제학, 판의금부사, 판중추부사 역임.

389) 양의사(兩醫司):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

히 많아서 공물하인들이 이루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듣건대, 장원서(掌苑署)와 예빈시(禮賓寺) 등은 공물을 설립한 후에 사헌부를 청하여 출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모두 혁파하였다고 합니다. 양의사의 월령을 똑같이 혁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참찬관 심단[390]이 말하기를, "신 또한 혜민서 제조(惠民署提調)로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약재를 출납할 때면 마땅히 사헌부 감찰을 청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물하인들이 값을 받아서 약재를 갖추어 저들의 집에 두었다가 進排上司한다면, 제주의 몇 종류의 약재는 비록 사헌부 감찰이 없더라도 또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군기시(軍器寺)·예빈시·장원서 등 여러 관청이 공물을 설치한 후에 월령을 모두 혁파하였으니, 양의사 월령 또한 똑같이 혁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폐단이 진실로 그러하다. 양의사의 월령을 똑같이 혁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391]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진피, 약재, 전의감, 혜민서, 공물하인.

390) 심단(1645~1730): 본관 청송(靑松). 자 덕여(德輿). 호 약현(藥峴)·추우당(追尤堂).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도총관 역임.

391) 《비변사등록》 숙종 16년 9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十一月 十七日 甲辰

○ 兵曹啓曰, 濟州御史試才時入格, 直赴殿試之類, 例付於式年增廣, 而別試·庭試, 則元無許赴之規, 今此濟州姜斗燦·金汝聲·吳後周·金彦甲·康致完等五人, 以己未年巡撫御史試才時, 三技入格之人, 反居於二技之下, 不得直赴殿試. 頃因本州士人陳弊疏, 姜斗燦等七人, 特許直赴, 而其中高斗瞻, 適在京城, 已於今年四月唱榜, 金壽長, 方遭喪不來, 姜斗燦等五人, 應榜次上來, 欲付於今十九日庭試, 呈狀於本曹, 而取考前例, 庚申年金碭等, 因其呈狀, 自本曹措辭啓稟, 則特爲許赴於別試, 至於庭試, 則尤有異於他科, 如此試才之類, 似難變通許赴, 而但慮絶島之人, 與在京在近鄕者, 不同, 留待式年, 其勢誠難. 今若一切退却, 則不無落莫之心, 何以爲之? 敢稟. 傳曰, 姜斗燦等, 俱是絶島之人, 不可無變通之道, 特爲許赴庭試, 而後勿援例, 可也.【已上春坊朝報】

❖ 숙종 16년(1690) 경오년 11월 17일(갑진)

□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시재할 때 입격되어 직부 전시하도록 한 강두찬(姜斗燦) 등을 정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묻는 병조의 계

○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시재 시에 입격하여 직부 전시하는 부류는 으레 식년증광시에 부쳐졌고, 별시(別試)·정시(庭試)에는 본래 직부를 허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 강두찬(姜斗燦)·김여성(金汝聲)·오후주(吳後周)·김언갑(金彦甲)·강치완(康致完) 등 5인은 기미년 순무어사 시재 시에 세 가지 기예로 입격한 사람인데도 도리어 2기(二技)의 아래에 머물러 전시에 직부할 수 없었습니다. 근래 본주(本州) 사인(士人)이 폐단을 진술한 소장에 따라서 강두찬 등 7인을 특별히 직부에 허락하고, 그 가운데 고두첨(高斗瞻)은 마침 서울에 있어서 이미 금년 4월에 창방(唱榜)[392]하였고, 김수장(金壽長)은 막 상을 당하여 오지 않았으며, 강두찬 등 5인은 창방에 참여하려고 올라와서 오는 19일 정시에 부치고자 본조(本曹)에 문서를 올렸습니다. 전례를 취하여 살펴보니, 경신년(1680) 김탕(金碭) 등이 올린 문서에 따라서 본조에서 말을 꾸며 계품(啓稟)한 즉 특별히 별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 이르러서는 다른 과거와 더욱 다름이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시재의 부류를 변통하여 응시

392) 창방(唱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호명하여 패(牌)를 수여하는 의식으로, 대과(大科)에는 홍패(紅牌)를 주고 소과(小科)에는 백패(白牌)를 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절도의 백성은 서울에 있거나 가까운 시골에 있는 자와는 같지 않아서 식년을 지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 형세 상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라 지금 만약 일체를 물리쳐 버린다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강두찬 등은 모두가 절도의 백성으로 변통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특별히 정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되 뒤에 이를 예(例)로 삼지 말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상은 춘방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강두찬, 김여성, 오후주, 김언갑, 강치완, 전시.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十二月 二十三日 己卯

○ 下直, 濟州敎授文榮後.

❖ 숙종 16년(1690) 경오년 12월 23일(기묘)

□ 문영후(文榮後)가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393]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문영후, 제주교수.

393)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확인 결과 탈초본의 오기이므로, 역주자가 문영후(文榮後)로 바로 잡음.

❖ 康熙 二十九年 庚午 十二月 二十三日 己卯

○ 義禁府啓曰, 濟州減死定配罪人李震相, 依律處斷事, 臺諫方爲論啓, 不得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見義禁府謄錄】

❖ 숙종 16년(1690) 경오년 12월 23일(기묘)

□ 제주(濟州) 정배죄인 이진상(李震相)에 대해 대간이 법률대로 처단하기를 논계하고 있으므로 귀양을 보낼 수 없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감사(減死)하여 정배하는 죄인 이진상(李震相)에 대해 법률대로 처단하는 일을 대간이 막 논계(論啓)[394]하고 있으니, 귀양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의금부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배죄인, 이진상, 대간, 논계.

394) 논계(論啓):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논박하여 아룀.

1691年

❖ 康熙 三十年 辛未 一月 十九日 乙巳

○ 辛未正月十九日, 上御□□□,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上曰, 三南値此大無, 賑救之道, 今方講究, 而都下民人, 則旣不耕作, 平日所恃而資活者, 專以三南公私穀物也. 今年則失稔尤甚, 餘存穀物, 亦皆以賑資, 留置本道, 無上來之穀, 都下民庶, 無以聊生, 言念及此, 誠可矜惻. …… 禮曹判書李宇鼎曰, 西北民·濟州人刷送事, 各道中有失稔處, 則例有停刷之擧. 今年三南凶荒特甚, 似當依前停刷, 而黃海·平安道及江春道嶺西, 則曾因年凶, 雖已停刷, 今年則別無失稔之事, 至於嶺東, 則未免失稔, 嶺東與三南, 則一體停刷, 嶺西及黃海·平安道, 則依前督刷, 何如? 上曰, 一道之內, 或刷或停, 似涉不便, 三南及江春道, 則無論嶺東·西, 竝皆停刷, 而兩西則督刷, 可也. …….【以上御營廳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1월 19일(을사)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삼남의 흉년에 따른 제주인(濟州人) 등의 쇄환을 중지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신미년 1월 19일에 임금이 □□□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입시할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삼남 지역이 금년에 큰 흉년을 만나 진휼하는 방도를 지금 막 강구하고 있는데, 도성 안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에 평소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삼남의 공사(公私) 곡물이다. 금년은 흉년이 더욱 심하여 남아있는 곡물은 또한 모두 진휼하는 것으로 본도(本道)에 두어 올라오는 곡식이 없으니 도성 안의 많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엽다."라고 하였다. 〈중략〉 예조판서 이우정(李宇鼎)[395]이 아뢰기를, "서북민과 제주인(濟州人)을 쇄환(刷還)해 보내는 일은 각 도(道) 안에 흉년이 든 곳이 있으면 으레 쇄환을 중지하는 조처가 있었습니다. 금년 삼남의 흉년이 특별히 심하니, 마땅히 전례대로 쇄환을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해·평안도 및 강춘도와 영서는 일찍이 흉년으로 인해 비록 이미 쇄환을 중지하였으나 금년은 특별히 흉년의 사례가 없고, 영동은 흉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영동과 삼남은 일체 쇄환을 중지하고, 영서와 황해·평안도는 예전대로 쇄환을 독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도 안에서

395) 이우정(1635~1692): 본관 전주. 자 중백(重伯).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역임.

혹을 쇄환을 독촉하고 혹은 쇄환을 중지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다. 삼남과 강춘도는 영동·영서를 논함이 없이 아울러 모두 쇄환을 중지하고, 양서(兩西)[396]는 쇄환을 독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어영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흉년, 삼남, 쇄환, 이우정.

396) 양서(兩西): 해서(海西)와 관서(關西). 곧 황해도와 평안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康熙 三十年 辛未 一月 二十四日 庚戌

○ 禮曹啓曰, 卽接典牲署牒報, 則祭享黑牛今年條元貢, 則上年秋間出送分養, 今春爲始, 取來封進, 則似無不足貿用之弊, 而近來則秋後出來分養, 勢未及肥澤, 每不合於冬享大祭. 莫重祭享及時封進之牛, 節晩輸送分養, 事極不當. 今春享時, 則以別卜定未盡之牛封進, 亦甚未安, 不可無强爲變通之道. 今辛未條爲始, 濟州元貢牛, 三月念前輸送分養, 以爲鱗次取用之意, 入啓云. 每年黑牛, 分養湖西, 次次取用矣, 近來則因其牛疫, 京外留養, 幾盡致斃, 故每於祭享臨時, 未免貿用苟艱之患, 其在事體, 殊甚未安. 依該署所報, 今年條元貢黑牛, 三月念前出送留養, 以爲前頭祭享時無弊封進之地, 而今後則每年春初, 恒式出送之意, 分付該道及濟州牧使處, 何如?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1월 24일(경술)

□ 제향에 쓰일 흑우의 분양(分養)에 대한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생서(典牲署)의 첩보(牒報)를 바로 받아보니, '제향에 쓰이는 흑우의 금년 조 원공(元貢)은 지난해 가을 사이에 내어 보내어 나누어 기르게 해야 하는데, 금년 봄을 시작으로 가지고 와서 봉진한다면 사서 쓰는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가을이 지난 뒤에 내어 와서 나누어 기르게 하니, 형세 상 살이 찌고 윤택이 날 수 없어 매양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막중한 제향에 있어서 때에 맞추어 봉진해야 하는 소를 철이 늦게 수송하여 분양하게 하는 것은 사태가 매우 부당합니다. 금년 봄 제향 할 때에는 별지정(別卜定)[397]을 미진한 소로 봉진하였으니, 또한 심히 미안하여 억지로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신미년 조를 시작으로 제주 원공우(元貢牛)를 3월 20일 전에 수송하고 나누어 기르게 하여 차례대로 가져다 쓸 뜻으로 입계(入啓)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흑우를 호서(湖西)에 분양하여 차례차례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근래에는 우역(牛疫)으로 서울 밖에서 머물러 두고 기르던 것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매번 제향 할 때에 임하여 사서 쓰는 데에 구차하고 가난한 근심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체(事體)에 있어 심히 미안한 일입니다. 해당 관아에서 보고한 대로 금년 조 원공 흑우를 3월 20

397) 별지정(別卜定): 지방에서 나는 어떤 물건을 정례(定例)로 정해 놓은 것[元卜定] 외에 서울의 각 관아, 각 도(道), 각 군(郡)에 바치는 것을 말함.

일 전에 내어 보내어 머물러 두고 기르게 하여 앞으로 제향 할 때에 폐단 없이 봉진하게 하고, 지금 이후로는 매년 봄 초기에 언제나 내어 보내도록 하는 뜻을 해당 도(道)와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전생서, 흑우, 제주목사.

❖ 康熙 三十年 辛未 二月 十三日 己巳

○ 二月十三日, 上御□□□.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閔黯所啓, 頃者慶尙水使權曦, 以臺啓遞差, 而追後聞之, 則權曦略有措備, 且貸巡營木同, 貿得穀物, 以爲賑救土卒之圖. …… 又所啓, 臣有區區所懷, 敢此仰達. 濟州一島, 邈在海外, 王化不及, 土俗貿貿, 朝家之所以設置敎授, 其意固非偶然. 丁未年, 以本州人高弘進爲敎授, 而弊端甚多, 故其時牧使啓聞罷黜之後, 仍革本州人敎授之規矣. 乙丑年, 又以本州文官文榮後爲敎授, 則少無奉行國法之意, 而專事謀利肥己之事, 校院田畓所收之穀, 太半橫占, 歸之己家, 校中奴婢, 任意使喚, 或收捧其貢木, 或使之治農, 且新付儒生等處, 稱以禮物, 勒徵酒食, 罔有紀極, 而至於率其妻妾, 入處校中, 偃息治產, 有若私室, 校院典僕等, 殆不能支堪, 及其瓜遞之後, 三邑之人, 庶幾其弊風之革矣. 今者榮後, 又差其任, 必不悛其舊習, 重貽一島之害. 請自今革罷本州人差送之規, 擇送他邑人, 使之各別敎養, 何如? 上曰, 爲先自本州, 詳査啓聞, 可也.

❖ 숙종 17년(1691) 신미년 2월 13일(기사)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제주교수(濟州敎授) 등에 대하여 논의함

○ 2월 23일, 임금이 □□□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지난번 경상수사 권희(權曦)가 대계(臺啓)[398]로 인하여 체차(遞差)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들으니 권희는 대략 조처하여 준비하는 바가 있어서, 또 순영의 목동(木同)[399]을 꾸어다가 곡물을 사와서 토졸(土卒)들을 진구(賑救)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중략〉 또 아뢰기를, "신이 구구하게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 감히 이에 우러러 아룁니다. 제주(濟州) 섬은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서 임금님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여 지방의 풍습이 어리석으니, 조정에서 교수를 설치한 까닭은 그 뜻이 진실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미년(1667)에 본주인(本州人) 고홍진(高弘進)[400]을 교수로 삼았으나 폐단이 아주 많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목사가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한 후에는 본주인을 교수로

398) 대계(臺啓): 대간이 논하여 아뢰는 일, 특히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유죄임을 밝히려고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啓辭)를 말함.

399) 목동(木同): 무명. 목(木)은 무명, 동(同)은 묶음을 세는 단위를 뜻함.

400) 고홍진(1602~1682): 본관 제주. 자 퇴이(退而).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역임.

삼는 규정을 혁파하였습니다. 을축년(1685)에 또 본주 문관 문영후(文榮後)[401]를 교수로 삼았는데 조금도 국법을 봉행할 뜻은 없고, 오로지 이익을 도모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일만을 일삼아 향교와 서원의 전답에서 거둬들이는 곡식의 태반을 가로채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렸고, 향교 안의 노비들을 임의로 부려서 혹은 그들에게서 공목(貢木)[402]을 거둬들이고, 혹은 이들을 부려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또, 새로 유생에 붙여진 이들에게 예물로써 칭탁하여 술과 음식을 강제로 거둬들임에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첩을 거느림에 이르러서는 향교 안으로 들여 거처하게 하고, 편안히 누워서 쉬면서 치산(治産)하기를 사사로운 집과 같이 하였으니, 향교와 서원의 전복(典僕)[403] 등이 거의 버티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가 임기가 차서 갈린 후에는 3읍의 백성들이 그 폐해가 되는 어지러운 풍습이 혁파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금 영후가 또 그 직임에 임명되었으니 반드시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온 섬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본주인으로 차송(差送)하는 규정을 혁파하여 다른 읍의 사람을 골라 보내어 각별히 가르쳐 기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본주로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고홍진, 문영후, 본주인.

---

401) 문영후(1628~?): 본관 남평. 자 인경(仁卿).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오수찰방, 곡성현감 역임.

402) 공목(貢木):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는 무명. 여기서는 노비들이 신공(身貢)으로 바치던 무명을 이름.

403) 전복(典僕): 각사(各司)와 시(寺),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향교(鄕校) 등에 딸려 음식을 만들거나 수직(守直) 혹은 건물을 짓는 등의 잡역을 맡아 하는 노복(奴僕)을 말함.

❖ 康熙 三十年 辛未 四月 十三日 戊辰

○ 府啓, 新除授固城縣令金瑜, 曾任海南縣監時, 掩匿濟州貢馬一匹, 事覺, 被逮定配, 坐此廢棄, 積有年所, 人之唾鄙, 至今未已, 其他行事, 推此可知. 除目之下, 物情俱駭, 如此之人, 決不可復畀字牧之任, 請新除授固城縣令金瑜罷職. 答曰, 不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4월 13일(무진)

□ 해남현감으로 재직할 때 제주공마(濟州貢馬)를 몰래 숨기는 등의 불미스러운 짓을 했던 김유(金瑜)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고성현감에 제수된 김유(金瑜)는 일찍이 해남현감으로 재임할 때에 제주공마(濟州貢馬) 1필을 몰래 숨겼다가 일이 발각되어 붙잡혀 정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려진 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침을 뱉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른 행실은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인데, 제수한 절목을 보니 물정(物情)에 대해 모두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다시 수령의 임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새로 고성현감에 제수된 김유를 파직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공마, 김유.

❖ 康熙 三十年 辛未 六月 二十四日 戊寅

○ 以沈橃爲忠淸監司, …… 柳之發爲濟州牧使, …….【以上吏曹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6월 24일(무인)

□ 유지발(柳之發)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심발(沈橃)을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중략〉 유지발(柳之發)[404]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지발.

404) 유지발(?~?): 본관 진주. 자 기지(起之).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 康熙 三十年 辛未 七月 十一日 甲午

○ 下直, 文山萬戶申汝述, …… 濟州判官李受益, …… .

❖ 숙종 17년(1691) 신미년 7월 11일(갑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수익(李受益) 등이 하직함**

○ 문산만호 신여술,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수익(李受益)[405]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이수익.

405) 이수익(?~?): 전라도 함평군 태생. 무과 급제. 제주판관으로 1691년(숙종 16) 8월에 도임하여, 1694년(숙종 19) 5월에 체임.

❖ 康熙 三十年 辛未 七月 十三日 丙申

○ 傳曰, 大臣·備局堂上引見. 引見時, 濟州牧使柳之發改差, 以文臣中, 廉謹有風, 力可以彈壓者, 勿論堂上堂下, 極擇差送事, 及軍器寺提調, 以訓鍊大將差下事, 榻前定奪.

❖ 숙종 17년(1691) 신미년 7월 13일(병신)

□ 유지발(柳之發)을 대신할 새로운 적임자의 차송(差送)을 논의함

○ 전교하기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겠다."라고 하였다. 인견할 때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지발(柳之發)의 개차(改差)에 문신 중에서 청렴하고 매사에 신중함에 풍취가 있고 힘써 백성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를 당상 당하를 막론하여 정밀하게 잘 골라 뽑아 임명하여 보내는 일과 군기시 제조를 훈련대장으로 임명하는 일을 탑전(榻前)에서 결정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지발, 개차.

❖ 康熙 三十年 辛未 七月 十六日 己亥

○ 吏批啓曰, 濟州牧使, 文臣中, 勿論堂上·堂下, 極擇差出事, 命下矣. 堂上中, 可合之人絶乏, 堂下曾經侍從及時任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7월 16일(기해)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의망할 당상이 부족하므로 시종을 지낸 이와 현재 수령으로 재임 중인 당하 등도 아울러 의망하겠다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문신 중에 당상 당하를 막론하여 정밀하게 잘 골라 뽑아 임명하여 보내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당상 중에 합당한 인물은 아주 없고, 당하에 일찍이 시종을 지낸 이와 현재 수령으로 재임 중인 이를 아울러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비, 제주목사, 의망.

❖ 康熙 三十年 辛未 七月 十六日 辛亥

○ 以南弼星爲蔚山府使, 尹再爲濟州牧使, 鄭行百爲沔川郡守, 任道三爲扶安縣監, 金兌昌爲梁山郡守, 任胤元爲瑞興縣監. …….【出吏曹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7월 16일(기해)

□ 윤재(尹再)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남필성(南弼星)을 울산부사(蔚山府使)로, 윤재(尹再)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는다. 〈하략〉.【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윤재, 제주목사.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五日 戊午

○ 傳曰, 濟州馬必趁草衰前上送事, 前後申飭, 非止一再, 而今年馬, 至今不來, 故昨招太僕吏問之, 則貢馬下陸公事, 尙不來到本寺云. 本牧所爲, 委屬可駭, 宜有論責之道, 而其間曲折, 爲先査問後稟處事, 分付司僕寺.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傳敎矣. 貢馬趁早上送事, 自本寺, 亦嘗申飭, 非不嚴明矣. 五月晦間, 得接濟州牧使報狀, 則四月已盡, 載馬船隻, 不爲入來, 貢馬恐有節晩之弊云, 嚴關本道, 各別申飭矣. 貢馬尙無渡海消息, 殊極可駭. 船隻不卽入去, 以致如此, 則責在本道, 船隻入去後, 遲延不送, 則責在濟州, 査問本道, 得其實狀後, 稟處, 何如?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5일(무오)

□ 제주(濟州)의 공마를 아직 올려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여 실상을 안 다음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전교하기를, "제주마(濟州馬)를 반드시 풀이 시들기 전에 올려 보내는 일에 대해 앞뒤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는데, 금년 말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때문에 어제 태복시의 관리를 불러다 물으니, 공마를 하륙하는 공사(公事)가 아직까지 본시(本寺)에 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목(本牧)이 하는 짓이 놀랄 만하다. 마땅히 논책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사이의 곡절을 우선 조사한 후에 품처하는 일을 사복시에 분부하였다."라고 하였다. 사복시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미 전교하였듯이 공마를 좀 더 일찍이 올려 보내는 일은 본시로부터 또한 일찍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기를 엄하고 명백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5월 그믐께쯤에 제주목사가 보고한 공문을 보니, 4월이 이미 다갔는데도 말을 실을 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마가 시일이 늦어지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하여 엄중히 본도(本道)에 관문(關文)[406]을 보내어 각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습니다. 공마가 아직까지도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이 없으니 심이 놀랍습니다. 배가 즉시 들어가지 않아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책임이 본도에 있고, 배가 들어간 후에 지연되어 보내지 않았다면 책임은 제주에 있는 것입니다. 본도를 조사하여 그 실상을 알아본 후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406) 관문(關文): 동급 또는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공마, 태복시.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六日 己未

○ 司僕〈寺〉啓曰, 卽接康津縣監報狀, 則濟州貢馬所載船十八隻到泊云. 考見其報狀, 成帖日子, 則乃七月初七日也. 中路遲滯, 幾至一月之久, 報狀齎來人所爲, 極爲可駭. 令攸司, 囚禁重治,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6일(기미)

□ 제주(濟州)의 공마가 강진현에 도착했다고 보고하는 문서를 지체하여 가지고 온 이를 잡아가두어 중하게 다스리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강진현감이 보고한 문서를 바로 받아보니, 제주공마(濟州貢馬)를 실은 배 18척이 도착해서 정박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를 살펴보니 성첩(成帖)한 날짜가 곧 7월 7일이었습니다. 중도에서 지체된 것이 거의 1개월이나 되었으니, 문서를 가지고 온 이가 한 짓이 매우 놀랄 만합니다.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잡아가두어 중하게 다스리게 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공마, 강진현감.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十五日 戊辰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駑駘馬三百匹內, 到韓山病留九匹, 咸平病留二匹, 逃逸二匹, 興德病留七匹, 古阜病留一匹, 康津病留一匹, 靈光病留二匹, 大興病留一匹, 新昌病留一匹, 靈巖故失一匹, 到本寺病留二匹, 合三十匹計除, 實數二百七十匹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15일(무진)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노태마 27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노태마(駑駘馬) 3백 필 안에 한산(韓山)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9필, 함평(咸平)에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2필, 도망친 것 2필, 흥덕(興德)에서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7필, 고부(古阜)에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1필, 강진(康津)에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1필, 영광(靈光)에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2필, 대흥(大興)에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1필, 신창(新昌)에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1필, 영암(靈巖)에서 고실(故失)한 것 1필,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고 있는 것 2필, 합 30필을 제외한 실제 수 27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노태마, 별단.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十九日 壬申

○ 司僕啓, 濟州再運出來年例進上馬八匹, 誕日·冬至·正朝進上馬六十匹, 凶咎馬六十匹, 合一百二十八匹內, 到陽智病留一匹, 鎭安病留一匹, 到本寺病留四匹, 到竹山故失一匹, 南原故失二匹, 合九匹計除, 則實數一百十九匹, 禾毛色區別,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19일(임신)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재운(再運) 연례진상마 8필, 탄일·동지·정조진상마 60필, 흉구마(凶咎馬) 60필, 합 128필 안에 양지(陽智)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1필, 진안(鎭安)에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1필,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 4필, 죽산(竹山)에 도착하여 고실(故失)한 것 1필, 남원(南原)에서 고실한 것 2필, 합 9필을 제외한 실제 수 119필을 나이와 털색을 구별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진상마, 흉구마, 별단.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十九日 壬申

○ 又啓曰, 瑞山大山牧場, 土地廣闊, 而雌馬不多, 生息不蕃, 故今番濟州出來雌馬中, 擇其禾不老者三十匹取種, 次別定馬醫司僕, 領付于大山牧場, 而一路率馬軍, 依馬匹數調發, 待令於各其地境, 次次替送後, 別定差使員, 與監牧官眼同放牧之意, 分付京畿·忠淸監司處, 而馬醫司僕·養馬二人往還時, 所經各官供饋事, 令該曹成給草料, 何如? 傳曰, 允.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19일(임신)

□ 마의사복 등이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암말을 대산목장(大山牧場)으로 거느리고 가고 올 때 각 고을에서 공궤(供饋)할 수 있도록 초료(草料)를 작성해 줄 것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또 아뢰기를, "서산(瑞山) 대산목장(大山牧場)은 땅이 광활하나 암말이 많지 않아 번식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제주(濟州)에서 나온 암말 중에서 나이가 늙지 않은 것 30필을 택하여 새끼를 받는 말로 하고, 다음으로 별도로 마의사복(馬醫司僕)[407]을 정하여 대산목장에 부치도록 하며, 도중에 견마군을 마필 수대로 뽑아서 각각 그 지경에서 명령을 기다려 차례차례 체송(替送)한 뒤에 별정 차사원과 감목관이 함께 참석하여 방목하는 뜻을 경기·충청감사에게 분부하고, 마의사복과 양마(養馬)[408] 2인이 가고 올 때 경유하는 곳의 각 고을에서 공궤(供饋)하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료(草料)[409]를 작성하여 내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산목장, 마의사복, 양마, 공궤, 초료.

---

407) 마의사복(馬醫司僕): 사복시에 속하여 말의 병을 치료하는 정7품의 잡직(雜職).

408) 양마(養馬): 말을 먹여 키우던 사복시의 관원.

409) 초료(草料): 초료장(草料狀). 공무로 파견되는 관원에게 연도(沿道)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와 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 康熙 三十年 辛未 閏 七月 十九日 壬申

○ 又啓曰, 濟州出來三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到寶城故失, 四匹到本寺病留, 其餘一百九十五匹禾毛色區別,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司僕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윤 7월 19일(임신)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세공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삼운 세공마(三運歲貢馬) 2백 필 안에 1필은 보성(寶城)에 도착하여 고실(故失) 하였고, 4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그 나머지 195필을 나이와 털색을 구별해서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康熙 三十年 辛未 八月 二日 甲申

○ 洪時亨爲鐵原府使, …… 李益敏爲大靜縣監, …….【已上吏曹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8월 2일(갑신)

□ 이익민(李益敏)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홍시형(洪時亨)을 철원부사(鐵原府使)로 삼고, 〈중략〉 이익민(李益敏)[410]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익민, 대정현감.

410) 이익민(?~?): 대정현감으로 1691년(숙종 17) 10월에 도임하여, 1694년(숙종 20) 5월에 떠남.

❖ 康熙 三十年 辛未 八月 八日 庚寅

○ 司僕寺啓曰, 大靜縣監張後載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寺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8월 8일(경인)

□ 장후재(張後載)의 체임진상마가 올라왔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후재(張後載)[411]의 체임진상마 2필이 이제 겨우 올라왔기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으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장후재, 체임진상마.

411) 장후재(1650~1692): 본관은 진천. 1690년(숙종 16) 문과 급제. 대정현감으로 1689년(숙종 15) 3월에 도임하여, 1691년(숙종 17) 10월에 체임.

❖ 康熙 三十年 辛未 八月 二十三日 乙巳

○ 吏曹判書柳命賢所啓, 頃因濟州敎授文榮後作弊事, 令本道査覈矣. 査啓今始來到, 按其實狀, 則別無大段作弊之事, 而榮後, 是濟州人, 故亦不無招謗之端. 榮後不可全然置之, 今姑改差, 而此後本州人, 勿差敎授, 似爲得宜矣. 此係變通, 詢問于大臣而處之, 何如? 領議政權大運曰, 絶島之人, 來仕京中未易, 本州敎授差送之規, 一切防塞, 則必有落莫之嘆. 依文武交差之例, 濟州人間間差送, 似好矣. 上曰, 榮後改差, 而間差事, 亦依大臣所達施行, 可也.【已上吏曹謄錄】…….

❖ 숙종 17년(1691) 신미년 8월 23일(을사)

□ 유명현(柳命賢)이 입시하여 문영후(文榮後)를 개차(改差)하고 제주교수(濟州敎授)의 후임으로 제주인을 차송(差送) 할지의 여부 등 대해 논의함

○ 이조판서 유명현(柳命賢)[412]이 아뢰기를, "지난번 제주교수(濟州敎授) 문영후(文榮後)가 폐단을 일으킨 일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사계(査啓)[413]가 지금 도착하였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니 특별히 크게 폐단을 일으킨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후는 제주인입니다. 때문에 또한 비방을 초래한 단서가 없지 않으니 영후를 전혀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고 이후로 본주인(本州人)을 교수로 임명하지 말아야 마땅할 듯 합니다. 이는 변통에 관계된 것으로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영의정 권대운(權大運)[414]이 말하기를, "절도의 백성이 서울에서 벼슬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주 교수로 임명하여 보내는 규정을 일체 막아버린다면 반드시 실망하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임명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제주인을 사이사이에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후를 개차하고, 사이사이에 임명하는 일은 또한 대신이 아뢴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유명현, 문영후, 제주교수, 본주인, 권대운.

---

412) 유명현(1643~1703): 본관 진주. 자 사희(士希). 호 정재(靜齋). 1673년(현종 14) 문과 급제. 부제학,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이조판서 역임.

413) 사계(査啓): 사핵계본(査覈啓本).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보고서를 말함.

414) 권대운(1612~1699): 본관 안동. 자 시회(時會). 호 석담(石潭). 1649년(인조 27) 문과 급제. 함경도관찰사, 호조판서, 영의정 역임.

❖ 康熙 三十年 辛未 九月 三日 甲寅

○ 下直, 仁同府使李台龍, 大靜縣監李益敏.

❖ 숙종 17년(1691) 신미년 9월 3일(갑인)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익민(李益敏) 등이 하직함

○ 인동부사(仁同府使) 이태룡(李台龍),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익민(李益敏)이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익민.

❖ 康熙 三十年 辛未 九月 十二日 癸亥

○ 以柳成運爲安邊府使, …… 潘尹衛爲濟州敎授, …….

❖ 숙종 17년(1691) 신미년 9월 12일(계해)

□ 반윤위(潘尹衛)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유성운(柳成運)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중략〉 반윤위(潘尹衛)[415]를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반윤위, 제주교수.

415) 반윤위(1629~?): 본관 광주. 1690년(숙종 16)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제주교수, 유곡찰방 역임.

❖ 康熙 三十年 辛未 九月 二十一日 壬申

○ 下直, 濟州敎授潘尹衛.

❖ 숙종 17년(1691) 신미년 9월 21일(임신)

□ 제주교수(濟州敎授) 반윤위(潘尹衛)가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반윤위(潘尹衛)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반윤위, 제주교수.

1692年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一月 九日 己未

○ 濟州牧使, 以大靜縣監張後載及卞爾球等六十五人溳死事, 狀啓. 傳曰人物溳死, 至於此多, 已涉矜惻, 而邑倅之一時溳沒於大洋之中, 尤極驚慘, 合有別樣顧恤之典, 令該曹稟旨擧行事, 分付.【以上朝報】

❖ 숙종 18년(1692) 임신년 1월 9일(기미)

□ 장후재(張後載) 등이 익사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대정현감 장후재(張後載) 및 변이구(卞爾球) 등 65인이 익사했다는 일로 장계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너무 불쌍하고 가여운데, 고을의 수령이 동시에 대양의 한 가운데서 빠져 죽은 것은 더욱 심히 놀랍고 비참하다. 별도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는 일을 분부토록 하라."라고 하였다.[416]【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장후재, 변이구.

416)《숙종실록》 1692년(숙종 18) 1월 8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二月 八日 戊子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副司直尹以濟所啓, 祭享所用黑牛, 例自濟州出來, 分養於湖西各邑. 今已盡斃, 典牲署所存, 只是三四首, 前頭祭享時, 難可繼用, 似當有變通之道. 令該曹黑牛三四十頭, 別爲貿得, 以爲秋享時所用, 一以爲分養於畿內近島, 何如? 左議政睦來善曰, 卽今見存者數少, 夏享大祭之時, 則雖可用之, 秋享時, 則必有苟簡之患. 自前如此之時, 例有令該曹貿送之事, 今亦分付該曹, 貿送該署, 以爲繼用之地, 亦令分養於近島, 使之孳息, 宜矣. 上曰, 分付該曹, 依此擧行, 可也.

❖ 숙종 18년(1692) 임신년 2월 8일(무자)

□ 인견에 윤이제(尹以濟) 등이 입시하여 제향에 사용할 흑우의 분양(分養)과 사오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행 부사직 윤이제(尹以濟)[417]가 아뢰기를, "제향에 쓰이는 흑우는 으레 제주(濟州)에서 나와 호서(湖西)의 각 읍에 분양(分養)합니다. 지금은 이미 다 죽어서 전생서(典牲署)에 남아있는 것이 단지 서너 마리로, 앞으로 제향 할 때에 잇대기가 어렵겠으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흑우 삼사십 마리를 별도로 사와서 추향(秋享) 할 때에 쓸 것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기내(畿內) 가까운 섬에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목래선(睦來善)[418]이 아뢰기를, "지금 남아있는 수가 적으니, 하향대제(夏享大祭) 때에는 비록 쓸 수 있지만 추향 때에는 반드시 구차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으레 해조로 하여금 사서 보내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또한 해조에 분부하여 해서(該署)에 사서 보내어 잇대게 하고, 또한 가까운 섬에 분양하여 새끼 쳐 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에 분부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흑우, 제향, 분양, 윤이제, 목래선.

---

417) 윤이제(1628~1701): 본관 파평. 자 여즙(汝楫). 1663년(현종 4) 문과급제. 경기도관찰사, 비변사제조, 형조판서, 어영대장 역임.

418) 목래선(1617~1704): 본관 사천. 자 내지(來之). 호 수옹(睡翁)·수헌(睡軒).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동지부사, 좌의정 역임.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二月 九日 己丑

○ 禮曹判書柳命賢所啓, 今因寫字官·畫員勸奬之議, 臣亦有所懷, 敢此仰達. …… 司直尹以濟所啓, 祭享所用黑牛, 例自濟州出來, 分養於湖西各邑, 今已盡斃, 典牲署所存, 只是三四首, 前頭祭享時, 難可繼用, 似當有變通之道. 令該曹, 黑牛三四十頭, 別爲貿得, 一以爲秋享時所用, 一以爲分養於畿內近島, 何如? 左議政睦來善曰, 卽今見存者數少, 夏享大祭之時, 則雖可用之, 秋享時則必有苟簡之患, 自前如此之時, 例有令該曹貿送之事, 今亦分付該曹, 貿送該署, 以爲繼用之地, 亦令分養於近島, 使之孳息, 宜矣. 上曰, 分付禮曹, 依此擧行, 可也.

❖ 숙종 18년(1692) 임신년 2월 9일(기축)

□ 인견에 윤이제(尹以濟) 등이 입시하여 제향에 사용할 흑우의 분양(分養)과 사오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예조판서 유명현이 아뢰기를, “지금 사자관과 서원을 권장하는 의론에 따라 신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어 감히 이와 같이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직 윤이제(尹以濟)가 아뢰기를, “제향에 쓰이는 흑우는 으레 제주(濟州)에서 나와 호서(湖西)의 각 읍에 분양(分養)합니다. 지금은 이미 다 죽어서 전생서(典牲署)에 남아있는 것이 단지 서너 마리로, 앞으로 제향 할 때에 잇대기가 어렵겠으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흑우 삼사십 마리를 별도로 사와서 추향(秋享) 할 때에 쓸 것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기내(畿內) 가까운 섬에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지금 남아있는 수가 적으니, 하향대제(夏享大祭) 때에는 비록 쓸 수 있지만 추향 때에는 반드시 구차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으레 해조로 하여금 사서 보내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또한 해조에 분부하여 해서(該署)에 사서 보내어 잇대게 하고, 또한 가까운 섬에 분양하여 얼식(孳息)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에 분부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흑우, 제향, 분양, 윤이제, 목래선.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三月 十三日 壬戌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睦來善所啓, 前者寧波府商人, 載到濟州漂民者, 入送北京, 則其回咨, 今後如此之類, 勿爲入送, 給糧解送之後, 只以人物及貨物之數, 因貢使之便, 開報禮部云云. 今番福建長樂縣商賈輩, 漂到旌義者, 給糧還送之意, 別爲咨文, 付送齎奏官之行, 何如? 上曰, 所達誠然, 別爲咨文付送, 可也. 【以上禮曹謄錄】

❖ 숙종 18년(1692) 임신년 3월 13일(임술)

□ 인견에 목래선(睦來善)이 입시하여 표류해서 우리나라로 온 중국 사람들에 대해 별도로 자문(咨文)을 만들어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전에 영파부(寧波府) 상인으로 제주(濟州)에서 표류한 백성을 배로 실어온 자를 북경(北京)에 들여보내니 그 회답 자문(咨文)에, '지금 이후로는 이와 같은 부류는 들여보내지 말고, 식량을 주어 풀어서 돌려보낸 후에, 인물과 화물의 숫자만을 공사(貢使) 편에 예부(禮部)에 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복건성(福建省) 장락현(長樂縣) 상인배로 정의현(旌義縣)에 표류해 온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는 뜻으로 별도로 자문(咨文)을 지어 재주관(齎奏官)[419]의 행렬에 부쳐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바가 진실로 그러하다. 별도로 자문을 지어 부쳐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목래선, 장락현, 표류, 정의현, 자문.

419) 재주관(齎奏官): 중국의 황제에게 주문(奏文)을 올리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원.

❖ 康熙 三十一年 壬申 四月 三日 壬午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權大運所啓, 濟州入山之馬, 素稱駿骨, 必有朝家分付, 然後例爲捉納, 而近年以來, 久無此擧, 故各軍門戰馬, 末由擇給. 令本牧今年歲貢馬上來時, 山馬中擇其尤者, 限百匹捉送, 而今雖節晩, 全羅沿邊之邑, 載馬船今方入送, 急急捉出, 雖未滿百匹, 使之上送, 擇其中有才品者, 分養於兵水營等處, 若得成材, 雖不得御乘, 可立爲邊馬, 其餘則分給〈軍兵〉, 何如? 上曰, 軍兵戰馬, 甚爲殘劣, 極爲驚駭, 依此爲之, 可也.【以上司僕寺謄錄】

❖ 숙종 18년(1692) 임신년 4월 3일(임오)

□ 인견에 권대운(權大運)이 입시하여 전마(戰馬)의 충당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권대운(權大運)[420]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입산지마(入山之馬)는 평소 준마의 골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서 반드시 조정의 분부가 있은 연후에야 으레 잡아서 바치는데, 근년 이래로 오랫동안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군문의 전마(戰馬)들을 골라 줄 길이 없습니다. 본목(本牧)으로 하여금 금년 공마(貢馬)를 올려 보낼 때에 산마(山馬) 중에서 뛰어난 것을 골라 1백 필에 한하여 잡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기가 늦었지만 전라도 연변의 읍으로 하여금 재마선(載馬船)을 지금 당장 들여보내어 급히 잡아내게 하십시오. 비록 1백 필이 차지 않더라도 올려 보내게 하고, 그 가운데 재품(才品)이 있는 것을 골라서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등에 분양하여 성숙한 재목을 얻게 된다면, 비록 어승마(御乘馬)를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변마(邊馬)[421]로 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군병〉에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병의 전마가 심히 쇠잔하고 용렬한 것이 매우 놀랄 만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운, 산마, 공마, 전마.

---

420) 권대운(1612~1699): 본관 안동. 자 시회(時會). 호 석담(石潭). 1649년(인종 27) 문과 급제. 예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역임.

421) 변마(邊馬): 어승마 다음가는 등급의 크고 건실한 말. 어승마로 올려 쓰기도 하고 내농포(內農圃)의 짐말로 쓰기도 하였음.

❖ 康熙 三十一年 壬申 四月 十日 己丑

○ 司僕寺啓曰, 旌義縣監朴濟, 遞任進上馬二匹上來, 俱有材品, 而其中騮馬一匹, 則步才實合於駕轎馬, 且以體小, 似不可立養於內寺, 而遞任進上馬, 內寺立養, 從前規例, 故依例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寺謄錄】

❖ 숙종 18년(1692) 임신년 4월 10일(기축)

□ 박제(朴濟)의 체임진상마가 올라왔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제(朴濟)[422]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올라왔는데, 모두 재품(材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마(騮馬)[423] 1필은 걷는 재주가 실로 가교마(駕轎馬)[424]로 합당한데, 또한 체구가 작아서 내시(內寺)에 입양(立養)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임진상마를 내시에서 입양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규례이므로 예(例)에 따라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제, 체임진상마, 가교마, 내시.

---

422) 박제(?~?): 정의현감으로 1690년(숙종 16) 1월에 도임하여, 1692년(숙종 18) 7월에 체임.
423) 유마(騮馬):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
424) 가교마(駕轎馬): 임금이 사용하는 가마를 끄는 말.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五月 十二日 辛酉

○ 下直, 平昌郡守郭昌徵, …… 旌義縣監申命伯, …….

❖ 숙종 18년(1692) 임신년 5월 12일(신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신명백(申命伯) 등이 하직함

○ 평창군수(平昌郡守) 곽창징(郭昌徵),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신명백(申命伯)[425]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신명백, 하직.

425) 신명백(?~?): 정의현감으로 1692년(숙종 18) 7월에 도임하여, 1695년(숙종 21) 3월에 체임.

❖ 康熙 三十一年 壬申 八月 二十三日 庚子

○ 引見時, 大司諫李湜所啓, 伏聞因靈恩君涵沐浴呈辭, 特下給馬之命, 優待宗班, 誠聖德事也. …… 領議政權大運所啓, …… 又所啓, 濟州歲貢馬匹, 例待各邑船隻, 方爲載送, 而得見濟州牧使報狀, 則礪山·務安兩邑船隻, 不卽來到, 故不得已以本州船隻裝載云, 而續接本州文狀, 則礪山·務安船隻, 始到於五月旬後, 緩緩來泊云. 兩邑守令過限發船之責, 在所難免,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上曰, 依爲之. …….【以上朝報】

❖ 숙종 18년(1692) 임신년 8월 23일(경자)

□ 인견에 권대운(權大運) 등이 입시하여 제주세공마(濟州歲貢馬)를 싣고 올 배를 늦게 보낸 여산(礪山)·무안(務安) 두 읍 수령의 종중추고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할 때에 대사간 이식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영은군 함(涵)의 목욕 정사(沐浴呈辭)에 따라 말을 내어주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셨는데, 종반(宗班)을 우대하는 것은 참으로 성덕을 베푸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또 아뢰기를, "제주세공마(濟州歲貢馬)를 으레 각 읍의 배를 기다렸다가 지금 실어 보냈는데, 제주목사의 보장(報狀)을 보니, 여산(礪山)·무안(務安) 두 읍의 배가 즉시 이르지 않아서 부득이 본주(本州)의 배로 꾸려서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주에서 작성한 문장(文狀)을 이어서 접하니, 여산·무안의 배가 5월 1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느릿느릿 와서 정박하였다고 합니다. 두 읍 수령이 기한을 넘어 배를 띄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운, 제주세공마, 여산, 무안, 종중추고.

❖ 康熙 三十一年 壬申 八月 二十三日 庚子

○ 引見入侍時, 領議政權大運所啓, 日昨沙場閱武時, 因領府事金德遠所達, 摠戎廳物力疲弊, 不成貌樣, 十餘同木, 每年定式題給之意陳達, 而令廟堂稟處事, 命下矣.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初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 船中故失, 一匹, 到海南病留, 二匹, 到靈巖病留, 一匹, 到水原故失, 病留·故失合五匹計除, 實上來一百九十五匹. 山屯馬一百匹, 三十三匹, 洋中溘死, 一匹, 到海南病留, 其餘六十六匹上來矣. 禾毛色區別, 別單書入, 而貢馬之殘劣, 比前尤甚. 山屯馬, 則當初啓請捉來者, 雖不可用於內廐, 欲爲擇其稍優者, 或立於外廐, 或給於軍兵, 意非偶然, 而擧皆色雜體小, 亦且有禾老者, 前日所見, 大相不同, 殊甚可駭. 牧使, 常時不爲留意馬政, 捉出之時, 亦不用意擇執之狀, 據此可知, 濟州牧使尹鼎和,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以上司僕謄錄】

❖ 숙종 18년(1692) 임신년 8월 23일(경자)

□ 입시할 때 사복시에서 마정(馬政)을 소홀히 한 윤정화(尹鼎和)의 종중추고에 대해 논의함

○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권대운이 아뢰기를, “일전 백사장에서 무사를 사열할 때 영부사 김덕원이 아뢴 바, ‘총융청 물력이 피폐하여 형편없으니 면포 10여 동(同)을 매년 정식을 정해 지급해야 하다.’는 뜻을 진달한 일로 인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초운세공마(初運歲貢馬) 2백 필 안에, 1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였고, 1필은 해남(到海)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고, 2필은 영암(靈巖)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고, 1필은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고실하여, 병으로 머물거나 고실 한 것 합 5필을 제외하고 실제로 올라온 것은 195필입니다. 산둔마(山屯馬) 1백 필 (중에) 33필은 바다에 빠져 죽었고, 1필은 해남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고, 그 나마지 64필이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구별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데, 공마의 잔열(殘劣)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산둔마인 경우 당초 계청(啓請)하기를, 잡아온 것이 비록 내구(內廐)에서 쓸 수 없더라도 그 중에 조금 나은 것을 택하여 혹은 외구(外廐)에 입양(立養)하고, 혹은 군병에 주고자 한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잡색이고 체구가 작으며 또한 나이가 늙은 것이 있는 것이 전에 봤

던 것과는 아주 다르니 심히 놀랄 만합니다. 목사가 항시 마정(馬政)에 뜻을 두지 않았고, 착출 할 때에 또한 가리는 데에 뜻을 두지 않은 실상을 이에 의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주목사 윤정화(尹鼎和)[426]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초운세공마, 산둔마, 윤정화, 종중추고.

426) 윤정화(1648~?): 본관 파평. 자 열지(說之).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공조참의, 공조참판 역임. 제주목사로 1692년(숙종 18) 1월에 도임하여, 1693년(숙종 19) 4월 체임.

❖ 康熙 三十一年 壬申 九月 十三日 己未

○ 兵曹判書閔宗道所啓, 禁衛營, 今方打造鳥銃, 而銃家所用加時木, 舊儲且盡, 全羅兵水營及濟州牧使處, 斫取運納之意, 分付, 何如? 知事尹以濟曰, 御營廳, 亦爲一體取用事敢達. 右議政閔黯曰, 訓鍊大將李義徵, 病未入侍, 故不得稟達, 而軍門需用, 似無同異矣. 上曰, 三軍門一體取用事, 分付, 可也. …….【以上御營廳謄錄】

❖ 숙종 18년(1692) 임신년 9월 13일(기미)

□ 민종도(閔宗道) 등이 입시하여 조총의 총집 재료인 가시목의 운납(運納) 등에 대해 논의함

○ 병조판서 민종도(閔宗道)[427]가 아뢰기를, "금위영이 지금 조총을 제조하였는데, 총집을 만들 때 쓴 가시목(加時木)은 예전에 쌓아두었던 것으로 또한 다 소진하였습니다. 전라병·수영과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베어내어 운납(運納)하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지사 윤이제(尹以濟)가 아뢰기를, "어영청에서도 또한 일체를 가져다 쓰는 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이 병으로 입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품달할 수는 없지만, 군문에서 쓰는 것에는[도] 거의 다를 바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군문(三軍門)[428]에서 일체를 가져다 쓰는 일로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어영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민종도, 조총, 가시목, 윤이제, 민암, 삼군문.

---

427) 민종도(1633~?): 본관 여흥. 자 여증(汝曾).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예문관대교, 세자시강원문학, 병조참지 역임.

428)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1693年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一月 二十一日 乙丑

○ 受灸入侍時, 都提調金德遠所啓, 進御騶結造, 濟州牧自前獨當封進者, 蓋緣本州匠手手品, 最優於他處故也. 今則定州·統營等處, 皆能結造, 而其匠手手品, 不下於濟州, 濟州則道路遼遠, 且越大海, 封進之際, 或有不及之患, 不可無變通之道, 自今以後, 進御騶結造六部, 各二部, 分定於濟州·統營·平安道, 每年定式封進, 俾無臨時窘急之弊, 如何? 上曰, 依爲之. 又所啓, 臣以兼帶尙方事, 有仰達矣. 進御頭冕騶結造涼臺具六部, 每年自濟州封進者, 乃是舊例, 而上年所納結造, 極爲麤劣, 故本院退送, 使之更爲精造, 趁歲前上送事, 別爲申飭矣. 今已經歲, 尙不上送, 越海之地, 雖未知事故之何如, 而莫重進御所用, 初不精擇以送, 退送之後, 亦不能趁期封進, 不可無警責之道, 濟州牧使尹鼎和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戶曹謄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1월 21일(을축)

□ 뜸을 뜨는 일로 김덕원(金德遠)이 입시하여 진어총결조(進御騶結造)를 제주(濟州) 등에 매년 나누어 봉진하게 하는 문제, 윤정화(尹鼎和)의 추고 등에 대해 논의함

○ 뜸을 뜨는 일로 입시할 때에 도제조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진어총결조(進御騶結造)는 제주목(濟州牧)에서 이전부터 홀로 담당하여 봉진하였던 것으로, 대개 본목(本州) 장수(匠手)의 솜씨가 다른 곳보다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주(定州)·통영(統營) 등이 모두 결조(結造)에 능하고, 그 장수의 솜씨가 제주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는 길이 아주 멀고, 또한 큰 바다로 격해 있어서 봉진한 때에 혹 미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으니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진어총결조 6부(部)를 각 2부씩 제주·통영·평안도(平安道)에 분정(分定)하게 하는 것을 매년 정식(定式)으로 삼아 봉진하게 하여 그때에 이르러 궁색하게 급히 마련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상의원(尙衣院)을 겸대하는 일로 앙달(仰達)할 것이 있습니다. 진어두면총결조양대구(進御頭冕騶結造涼臺具) 6부는 매년 제주에서 봉진하는 것이 곧 구례인데, 지난해 바친 결조는 매우 추열(麤劣)하여 본원(本院)이 물리쳐 도로 보내어 다시 정밀하게 만들되, 새해가 되기 전에 올려 보내도록 특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올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바

다 건너의 땅이라 비록 일의 까닭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진어(進御)에 쓰이는 막중한 것을 처음에는 정밀하지 못한 것을 가려서 보냈고, 물리쳐 도로 보낸 후에는 또한 기한이 되도록 봉진하지 못했으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방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목사 윤정화(尹鼎和)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호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덕원, 진어총결조, 진어두면총결조양대구, 윤정화, 추고.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一月 二十八日 壬申

○ 禮曹啓曰, 濟州牧所封凡係送上之物, 雖是過限, 以海外, 曾無請推之規矣, 本州封進薦新, 上年十月令橘柑子, 十一月令唐柚子, 十二月令乳柑·洞庭橘等物, 經年之後, 尙不封進, 考諸前例, 或有正月初生間封進之時, 今則正月已盡, 亦無消息, 雖未知海外事勢之果, 如何, 而其在敬謹之道, 難免稽緩之責, 牧使尹鼎和推考, 斯速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1월 28일(임신)

□ 윤정화(尹鼎和)를 추고하여 천신(薦新) 물품을 봉진하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한 것으로, 무릇 보내어 올리는 것에 관계된 물건은 비록 이것이 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바다 밖이기 때문에 일찍이 추고를 청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주(本州)에서 봉진하는 천신(薦新)인 경우 지난해 10월령 귤감자(橘柑子), 11월령 당유자(唐柚子), 12월령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등이 해가 지난 후인데도 아직까지 봉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를 살펴보건대, 혹 정월 초승 사이에 봉진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월이 이미 다했는데도 또한 소식이 없습니다. 비록 바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의 형편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공경하고 삼가야 할 도리에 있어서 지체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 윤정화(尹鼎和)를 추고하여 이것을 속히 봉진하게 하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천신, 윤정화, 추고.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二月 三日 丁丑

○ 禮曹啓曰, 濟州牧使封進宗廟永禧殿薦新上年十月令橘柑不及十二月令乳柑·洞庭橘等, 今始上來, 當於初四日薦新, 而十一月令唐柑子, 則不爲來到, 故問其緣由於陪持人, 則追後發船, 未及上來云, 待其上來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已上出禮曹謄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2월 3일(정축)

□ 당감자가 도착하지 않은데 대해 연유를 물어 보고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하여 종묘와 영희전(永禧殿) 천신(薦新)에 쓰이는, 지난해 10월령 귤감(橘柑)은 이르지 않았고, 12월령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등은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초 4일 천신을 당해서 11월령 당감자(唐柑子)[429]가 도착하지 않았기에 그 연유를 배지인(陪持人)에게 물으니, 나중에야 배를 띄워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천신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봉진, 천신, 당감자.

429) 앞장 1월 28일 기사에는 11월경 진상품이 당유자(唐柚子)로 되어 있음.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二月 十一日 乙酉

○ 備邊司啓目, 粘連觀此全羅監司狀啓, 則濟州牧使尹鼎和, 身病極重是如, 累度呈辭是白置. 絶島與內地有異, 廢閣公務, 果爲半歲, 不可無趁速變通之道, 令廟堂稟處亦爲白有臥乎所, 海外絶島人所厭避, 因許遞免, 則有關後弊, 不可輕易變通是白乎矣, 尹鼎和自南邑, 崇飮已過, 及莅海島, 因以成病, 尋常文報, 全不酬應, 旣有實病, 諉以後弊而不遞, 則私情切迫, 姑置勿論, 海防疏虞, 委屬可慮. 尹鼎和罷黜, 其代, 以武臣中年少有才望者, 令該曹極擇差出, 急速赴任之意, 該曹良中, 竝以分付, 何如? 啓依允.【已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2월 11일(을유)

□ 윤정화(尹鼎和)를 파출(罷黜)하고 후임자를 차출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 계목에, "원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전라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정화(尹鼎和)의 신병이 아주 중하다고 하면서 여러 번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절도(絶島)와 내지는 달라서 공무를 폐하여 방치해 두는 것이 과연 반년이나 되어 속히 변통하는 방법이 없을 수가 없기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밖의 절도는 사람들이 꺼려서 피하는 곳이라고 하여 체면(遞免)을 허락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가볍게 변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정화는 남쪽 고을에서부터 술을 즐기는 것이 이미 지나쳤고, 해도(海島)에 부임하여서는 이 때문에 병이 나서, 일반적인 보고서에도 전혀 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병이 있는데도 뒷날의 폐단을 핑계대어 체직하지 않는다면 사정(私情)은 절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한다면 바다고을의 방어를 소홀히 할 것이니, 위속(委屬)들이 염려됩니다. 윤정화를 파출(罷黜)하고 그 대신에 무신 중에 젊고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잘 가려 차출하게 하여 속히 부임하게 하는 뜻을 해조에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윤정화, 신병, 변통, 파출.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二月 十三日 丁亥

○ 有政. …… 李基夏爲濟州牧使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2월 13일(정해)

□ 이기하(李基夏)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이기하(李基夏)[430]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사, 이기하, 제주목사.

430) 이기하(1646~1718): 본관 한산(韓山). 자 하경(夏卿). 문음(門蔭)으로 입사(入仕). 훈련대장, 총융사, 지훈련원사 역임. 제주목사로 1693년(숙종 19) 4월에 도임하여, 1694년(숙종 20) 7월에 체임.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五日 戊寅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三月令靑橘, 來初六日薦進之意, 纔已入啓矣. 卽接奉常寺牒報, 則宗廟所封一百九十八箇內, 完十八箇, 腐傷一百八十箇, 永禧殿所封十八箇, 盡爲腐傷云. 曾前如此之時, 以各殿所封進上, 移送該寺薦進後, 有還爲內入之規, 今亦依此例, 令司饔院依此數輸送該寺, 以明日薦進後, 內入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5일(무인)

□ 종묘와 영희전에 봉진한 청귤 중 부패하여 상한 것을 각 전(殿)에 봉진하는 진상물을 가지고 봉상시에 수송하여 내일 천진한 후에 내입(內入)하는 일을 분부하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3월령 청귤(靑橘)을 오는 6일 천진(薦進)하는 뜻을 이미 입계(入啓)[431] 하였습니다. 봉상시에서 올린 첩보를 바로 받아보니, 종묘에 봉진한 198개 중 온전한 것은 18개이고 부패하여 상한 것이 180개이며, 영희전(永禧殿)에 봉진한 18개는 모두 부패하여 상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을 때에는 각 전(殿)에 봉진하는 진상물을 가지고 해시(該寺)로 이송하여 천진한 후에 도로 들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러한 예(例)에 따라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이 숫자대로 해시에 수송하여 내일 천진한 후에 내입하는 일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청귤, 부패, 천진, 봉상시, 사옹원.

---

431) 입계(入啓):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월을 올리거나 또는 직접 아뢰는 일.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五日 戊寅

○ 又啓曰, 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濟州二月朔進上, 各殿所封靑橘, 今日來到, 而全數腐傷, 其中稍完者, 不過數箇, 而渡海上來之際, 已經累朔, 易致如此, 勢所固然矣. 海外封進之物, 曾無退送之規, 不得已仍爲封入, 而所封之物, 旣有腐傷, 則封進官吏, 不無其責, 推考, 陪持人下陸稽滯之罪, 自本院從重治罪, 何如? 傳曰, 海外之事, 難容人力, 勿爲推考, 陪持人, 參酌治罪, 可也.【以上禮曹謄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5일(무인)

□ 부패하여 상한 청귤을 각 전(殿)에 봉진한 일과 관련하여 봉진관리를 추고하고 배지인을 종중치죄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사옹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2월 초하루 진상으로 각 전(殿)에 봉진하는 청귤이 오늘 도착하였는데, 모두가 부패하여 상하여서 그 가운데 조금 온전한 것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바다를 건너 올라올 때에 이미 몇 개월이 경과하여 쉬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형세 상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밖에서 봉진하는 물건을 일찍이 물리쳐 도로 보내는 규정이 없기에 부득이 그대로 봉입(封入) 하였습니다. 봉진한 물건이 이미 부패하여 상한 것이라면 봉진관리에게 그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추고하고, 배지인(陪持人)은 육지에 내리기를 지체한 죄로 본원(本院)에서 종중치죄(從重治罪)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바다 밖의 일은 인력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우니 추고하지 말고, 배지인은 참작하여 치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청귤, 부패, 봉진관리, 배지인, 추고, 종중치죄.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九日 壬午

○ 司憲府啓曰, 伏聞因旌義縣定配罪人金善弼養子鄭重亨上言, 有善弼放歸田里之命, 臣等, 取考禁府徒流案則善弼, 以內官, 親密兇胄, 因傳敎定配絶島, 觀其罪名, 則當初免死, 旣是寬典, 到今其子之呼籲駕前, 願移陸地, 亦極猥越, 而不料特宥之命, 出於該府覆啓之外, 仰惟聖明, 嚴內外之別, 謹隄防之道, 方以德屹事, 罪尙仰, 備忘之下, 人心莫不悅服, 今此疏釋之典, 決不可施之於親密兇胄之善弼. 請還收旌義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答曰, 不允.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9일(임오)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의 양자 정중형(鄭重亨)의 상언(上言)에 따라 선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의금부의 도류안(徒流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선필은 내관(內官)으로 흉악한 김석주(金錫胄)[432]와 친밀하였기에 전교(傳敎)에 따라서 절도(絶島)에 정배되었는데, 그 죄명을 보면 당초에 사사를 면하였으니 이미 관대한 은전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그 양자가 어가(御駕) 앞에서 호소하여 육지로 옮겨주도록 원한 것은 또한 지극히 외람되고 분수에 넘치는 것인데, 뜻밖에 특별히 용서하라는 명이 해부(該府)의 복계(覆啓)[433] 밖에서 나왔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안팎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제방(隄防)의 도리를 삼갔기에 바야흐로 이덕흘(李德屹)의 일로써 최상앙(崔尙仰)을 벌한다는 비망기(備忘記)가 내려왔을 때 인심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풀어주는 은전은 결코 흉악한 김석주와 친밀한 선필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 죄인 김선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434]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432) 김석주(1634~1684): 본관 청풍. 자 사백(斯百). 호 식암(息庵). 시호 문충(文忠).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좌부승지, 이조판서, 우의정 역임. 저서《식암집》.

433) 복계(覆啓): 중죄수(重罪囚)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초복(初覆)·재복(再覆)·삼복(三覆) 등과 같이 반복하여 상계(上啓)하는 일.

434)《숙종실록》1693년(숙종 19) 4월 9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十日 癸未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10일(계미)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十一日 甲申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不允.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11일(갑신)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十三日 丙戌

○ 今日引見時, 執義朴萬鼎所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上曰, 勿煩.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13일(병술)

□ 인견에 박만정(朴萬鼎)이 입시하여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인견할 때에 집의 박만정(朴萬鼎)[435]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만정,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435) 박만정(1648~1717): 본관 밀양(密陽). 자 사중(士重). 호 동계(東溪)·설정(雪汀). 1683년(숙종 9) 문과 급제. 사헌부집의, 시강원보덕, 제용감정 역임. 저서《동계집》.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十九日 壬辰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19일(임진)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日 癸巳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 答曰, 不允. …….
【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0일(계사)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一日 甲午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1일(갑오)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二日 乙未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2일(을미)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六日 己亥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6일(기해)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七日 庚子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 答曰, 不允. …….
【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7일(경자)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八日 辛丑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不允.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8일(신축)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二十九日 壬寅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29일(임인)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四月 三十日 癸卯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4월 30일(계묘)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一日 甲辰

○ 府啓, 本府以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還收事, 有所論列已久, 而兪音尙閟, 臣等竊惑焉. 善弼, 以親密兇胄之內官, 因傳敎定配絶島, 當初免死, 旣是寬典, 其子號籲, 亦涉猥越, 而不料特宥之命, 出於該府覆啓之外, 仰惟聖明, 嚴內外之別, 謹隄防之道, 方以德屹事, 罪尙仰備忘之下, 人心莫不悅服, 而今此疎釋之恩, 反及於善弼, 前後之處分, 未免各異, 恐有乖於懲惡之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일(갑진)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환수하는 일로 논열(論列)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유음(兪音)이 아직까지도 없으니 신 등이 그윽이 미혹됩니다. 선필은 흉악한 김석주(金錫胄)와 친밀한 내관이었기에 전교로 인하여 절도(絶島)에 정배되었는데, 당초에 사사를 면하였으니 이미 관대한 은전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호소한 것 또한 지극히 외람되고 분수에 넘치는 것인데, 뜻밖에 특별히 용서하라는 명이 해부(該府)의 복계(覆啓) 밖에서 나왔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안팎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제방(隄防)의 도리를 삼갔기에 바야흐로 이덕흘(李德屹)의 일로써 최상앙(崔尙仰)을 벌한다는 비망기(備忘記)가 내려왔을 때 인심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풀어주는 은전이 도리어 선필에게 미친다면 앞뒤의 처분에 각각 상이함을 면하지 못하여 옳지 못한 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정의 죄인 김선필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日 乙巳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일(을사)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五日 戊申

○ 引見時, 持平丁時潤所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上曰, 勿煩.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5일(무신)

□ 인견에 정시윤(丁時潤) 등이 입시하여,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전교하기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겠다."라고 하였다. 인견할 때에 지평 정시윤(丁時潤)[436]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시윤,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436) 정시윤(1646~1713): 본관 압해(押海). 자 자우(子雨). 호 두호(斗湖). 1690년(숙종 16)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수찬, 병조참의 역임.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六日 己酉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6일(기유)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一日 甲寅

○ 院啓, 請遠配罪人崔尙仰, 令該府考律處斷, 請還收靈愼君瀅, 加資仍授之命. 答曰, 勿煩.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竝見上】耽羅一域, 實我國之冀北, 其所產馬匹, 凡於大小公私之行, 不許任自出陸者, 意有所在, 而前牧使尹鼎和所帶褊裨, 率多無識駔儈之輩, 欺瞞主將, 私取良馬, 今方斥賣於都下, 而一人所持, 至於七八, 榷來他物, 亦皆稱是, 人言喧藉, 聽聞俱駭, 如此之類, 不可不隨現重治, 而牧使之不能檢下, 亦難免其責. 請前濟州牧使尹鼎和, 從重推考, 其軍官等, 令攸司摘發科罪. …… 答曰, 不允. 末端三件事, 依啓. 【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1일(갑인)

□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정화(尹鼎和)의 종중추고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형률을 상고하여 처단하게 하시고, 영신군(靈愼君) 형(瀅)에게 가자(加資)를 그대로 주도록 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모두 앞에 보임】 탐라 한 구역은 실로 우리나라의 기북(冀北)[437]입니다.[438] 그 생산되는 말은 무릇 크고 작은 공사의 행렬에 있어 임의로 육지로 내치지 않는 것은 그 뜻에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전 목사 윤정화(尹鼎和)가 데리고 간 편비(褊裨)는 대부분이 무식한 거간꾼의 무리들로, 주장(主將)을 속여 사사로이 좋은 말을 취하여 지금 서울 안에서 헐값으로 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것이 7~8필에 이르고 독점하여 파는 다른 물건도 또한 모두 이러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퍼져 떠들썩한데, 들리는 소문이 모두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는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했으니 또한 그

437) 기북(冀北): 중국 기주(冀州)의 북쪽으로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되는 곳.
438) 이하 윤정화의 추고에 관한 기사는 《숙종실록》 1693년(숙종 19) 5월 12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전 제주목사 윤정화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그 군관 등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적발하여 죄를 처단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 세 건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윤정화, 편비.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二日 乙卯

○ 執義李文興, 持平丁時潤·沈得元啓曰, …… 且以前濟州牧使尹鼎和, 不能檢束褊裨事, 有所論啓, 而旣非鼎和之所親犯, 則姑先問備, 亦足警責, 觀其緘辭處置未晩, 故只請推考矣. 今聞物議, 以爲此雖非主牧之所知, 而海外物產, 禁防之地, 常時不能嚴束, 致有管下濫雜之弊, 則推考薄罰, 殊非臺閣論事之體云. 臣等之失, 著矣. 以此以彼, 俱難仍冒, 請命遞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2일(을묘)

□ 윤정화(尹鼎和)에게 단지 추고(推考)만을 청한 책임으로 사직을 청하는 이문흥(李文興) 등의 계

○ 집의 이문흥(李文興), 지평 정시윤(丁時潤)·심득원(沈得元)[439]이 아뢰기를, "〈상략〉 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정화(尹鼎和)가 편비(褊裨)를 능히 검속하지 못한 일로 논계(論啓)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화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었기에 우선 문비(問備)[440]하여 또한 족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었고, 그 함사(緘辭)[441]를 보고 처치하여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추고(推考)[442]만을 청하였습니다. 지금 뭇 평판을 들으니, 이는 비록 주목(主牧)이 알 바가 아니지만 바다 밖으로 생산되는 물건이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곳으로, 언제나 엄하게 단속하지 못할지라도, 관하(管下)에서 남잡(濫雜)한 폐단이 있다면, 가벼운 형벌로 추고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각(臺閣)[443]에서 일을 논하는 모양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 등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모두가 그대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명하여 신 등의 직을 체척(遞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윤정화, 편비, 이문흥, 정시윤, 심득원.

---

439) 심득원(1644~1709): 본관 청송(靑松). 자 선장(善長). 1689년(숙종 15) 문과 급제. 지평, 사서, 정언 역임.
440) 문비(問備): 죄과가 있는 관원을 사헌부에서 글로 묻고, 힐문 받은 자가 사연을 갖추어 답하는 것을 말함.
441) 함사(緘辭): 관원이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를 말함.
442) 추고(推考): 관원의 죄를 조사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태(笞)나 장(杖)을 치는 것으로, 후대에 와서는 실질적인 형벌은 사라지고 해당 관원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형식적인 처벌로 변하였음.
443)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二日 乙卯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新啓, 前濟州牧使尹鼎和, 帶率無賴軍官, 私取禁馬, 攫來貨物, 斥賣都下, 人言狼藉, 其軍官等, 旣令攸司摘發科罪, 則主牧之不能檢束, 任其濫雜之罪, 不可推考而止. 請前濟州牧使尹鼎和, 罷職不敍. …… 答曰, 不允. 尹鼎和事, 及處置事, 依啓. 【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2일(을묘)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윤정화(尹鼎和)의 파직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신계(新啓)[444]하기를, “전 제주목사 윤정화(尹鼎和)가 데리고 갔던 무뢰한 군관이 사사로이 취한 금마(禁馬)와 빼앗아 온 물품을 서울에서 헐값으로 판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 군관 등을 이미 유사(攸司)로 하여금 적발하여 죄를 처단하게 하였는데, 곧 주목(主牧)이 능히 검속하지 못하니, 그 남잡(濫雜)을 방치한 죄를 추고(推考)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 제주목사 윤정화를 파직하여 영구히 벼슬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윤정화의 일과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윤정화, 군관.

444) 신계(新啓): 사간원, 또는 사헌부에서 죄인의 죄상을 들어 임금께 아뢰는 문서.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四日 丁巳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4일(정사)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五日 戊午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5일(무오)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六日 己未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6일(기미)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七日 庚申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7일(경신)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八日 辛酉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8일(신유)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十九日 壬戌

○ 大司憲李玄逸所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措辭見上】答曰, 勿煩.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19일(임술)

□ 이현일(李玄逸) 등이 입시하여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사헌 이현일(李玄逸)[445]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앞에 보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현일,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445) 이현일(1627~1704): 본관 재령(載寧). 자 익승(翼昇). 호 갈암(葛庵).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거두로 이황(李滉)의 학풍을 계승한 대표적인 산림(山林). 사헌부장령, 이조참판, 대사헌 역임.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日 癸亥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 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措辭見上】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0일(계해)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앞에 보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一日 甲子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措辭見上】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1일(갑자)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앞에 보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二日 乙丑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2일(을축)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五日 戊辰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5일(무진)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六日 己巳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6일(기사)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七日 庚午

○ 晝講時, 持平沈鏜所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措辭見上】上曰, 勿煩. …….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7일(경오)

□ 주강에 심당(沈鏜) 등이 입시하여,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함

○ 주강 때에 지평 심당(沈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심당,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五月 二十八日 辛未

○ 府啓,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 【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19년(1693) 계유년 5월 28일(신미)

□ 정배된 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정의현(旌義縣) 정배죄인 김선필(金善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원배죄인 최상앙을 법률을 상고하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앞에 보임】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선필, 정의현, 정배죄인.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八月 九日 庚辰

○ 以濟州牧使狀啓, 島內人民, 以大小痘患及怪疾, 死亡之數, 至於一千九百五十四名之多, 極爲驚慘事, 傳曰, 觀此狀啓, 怪疾死亡者, 至於此多, 事極驚慘. 令該曹祈禳祭香祝, 依例斯速下送, 以爲卜日設行之地.

❖ 숙종 19년(1693) 계유년 8월 9일(경진)

□ 천연두와 괴질이 발생하여 사망한 이가 1,954명에 달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섬 안의 백성들이 대두(大痘)와 소두(小痘)[446] 및 괴질로 사망한 수가 1,954명에 달하니 지극히 놀랍고 참혹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면 괴질로 사망한 자가 이렇게 많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참혹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기양제(祈禳祭)[447]를 지낼 향축을 예(例)에 따라 속히 내려 보내어 날을 보아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448]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두, 소두, 괴질, 기양제, 향축.

---

446) 대두(大痘)와 소두(小痘): 대두는 천연두(天然痘) 곧 '큰마마', 소두는 수두(水痘) 곧 '작은마마'를 가리킴.

447) 기양제(祈禳祭): 재앙이 물러가라고 비는 제사.

448) 《숙종실록》 1693년(숙종 19) 8월 9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八月 十四日 乙酉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年, 卽慶尙·咸鏡道·濟州點馬當次之年, 近來牧場馬政, 非不申飭, 漸至解弛, 不可不別樣檢飭. 三處點馬, 令該曹擇差, 而濟州點馬別監, 依前先爲下送, 何如? 傳曰, 允.【以上兵曹謄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8월 14일(을유)

□ 경상도 등의 점마별감을 가려서 임명하되 제주(濟州) 점마별감을 먼저 내려 보내기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은 경상도와 함경도, 제주(濟州)가 점마(點馬)를 하는 해입니다. 근래 목장의 마정(馬政)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점차 해이해지고 있어 특별히 점검하여 단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곳의 점마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게 하고, 제주 점마별감을 전처럼 먼저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병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마정, 점마, 점마별감.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八月 十九日 庚寅

○ 有政. 以李國華爲掌令, …… 趙世成爲濟州點馬別監, …….【以上朝報】

❖ 숙종 19년(1693) 계유년 8월 19일(경인)

□ 조세성(趙世成)을 제주점마별감(濟州點馬別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국화(李國華)를 장령(掌令)으로 삼고, 〈중략〉 조세성(趙世成)을 제주점마별감(濟州點馬別監)으로 삼았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조세성, 제주점마별감.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十月 十三日 癸未

○ 左議政睦來善所啓, 近來國綱解弛, 人心不淑, 冒濫成風, 事極駭然. …… 世龜進曰, 胡馬貿來, 用於何處耶? 古有朕乘千里馬, 獨先安之之語, 脫有緩急, 上獨乘胡馬, 而往于何處, 且有乖於不寶遠物之意矣. 上曰, 卽今御乘馬, 連爲致斃, 無可乘之馬, 濟州馬亦甚劣, 故有是事耳. …….【以上盡餘移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10월 13일(계미)

□ 강세귀(姜世龜)[449] 등이 입시하여 호마(胡馬)를 사오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좌의정 목래선이 아뢰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심이 착하지 못하여 함부로 법을 어기는 것이 널리 유행하고 있으니 심히 놀랍습니다." 〈중략〉 강세귀(姜世龜)가 나아가 아뢰기를, "호마(胡馬)를 사와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옛날에 '짐(朕)이 천리마를 타고 혼자 먼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한 말[450]이 있는데, 만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홀로 호마를 타고 어디를 간다면 또한 먼 곳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어승마가 연이어 죽어서 탈 수 있는 말이 없고, 제주마(濟州馬) 또한 심히 졸렬하여, 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451] 〈하략〉.【이상은 타다 남은 것에서 옮겨 베낌】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강세귀, 호마, 제주마.

---

449) 강세귀(1632~1703): 본관 진주(晉州). 자 중보(重寶). 호 삼휴당(三休堂).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호조참의, 충청도관찰사, 대사간 역임.

450) '짐(朕)이 천리마를 타고 혼자 먼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한 말: 한 문제(漢文帝) 때 누가 천리마를 바쳤는데 문제가 받지 않으면서 "난기(鸞旗. 천자의 기)는 앞에 있고 따르는 수레는 뒤에 있는데 짐이 천리마를 타고서 혼자 먼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한 고사가 있음.

451) 《숙종실록》 1693년(숙종 19) 10월 13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三十二年 癸酉 十月 十五日 乙酉

○ 又啓曰, 卽見濟州點馬別監趙世成狀啓, 則年月踏印, 此雖出於未暗[諳]規例之致, 而自違常式, 請濟州點馬別監趙世成推考. 傳曰, 允.【以上燼餘移謄】

❖ 숙종 19년(1693) 계유년 10월 15일(을유)

□ 장계의 답인(踏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세성(趙世成)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금위영의 계

○ 금위영에서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 점마별감 조세성(趙世成)의 장계를 바로 보니, 연월답인(年月踏印) 이것이 비록 규례를 잘 알지 못한 소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상식(常式)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제주 점마별감 조세성을 추고(推考)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타다 남은 것에서 옮겨 베낌】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점마별감, 조세성, 연월답인, 추고.

1694年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一月 十五日 癸丑

○ 巳時, 上御熙政堂, 忠淸監司金澍, 留待引見. 忠淸監司金澍, 承旨李雲徵, 假注書李德運, 記事官李柱天·兪世重入侍, 澍進伏. …… 始復曰, 頃日忠淸監司洪萬朝, 以濟州進上所載船, 到庇仁馬梁鎭前洋致敗事, 啓聞中, 竝及馬梁僉使李畛, 極力濟活沙格十二名之意, 而只言其功可嘉, 別無請賞之事, 故本曹回啓, 不爲擧論矣. 道臣, 又因濟州沙格等呈訴, 査報備局, 盛陳李畛大洋昏夜中出死力, 拯濟許多人命, 得以全活, 而終無論賞之擧云云. 島民之得以生活, 果如狀啓及報狀辭意, 則僉使李畛, 似不可無激勸之道. 詢問于入侍大臣而處之, 何如? 來善曰, 方其破船之時, 十數名人命, 濱於死亡, 馬梁僉使李畛, 率其鎭民, 急往拯濟, 俾免溘沒之患, 其在激勸之道, 合施褒賞之典矣. 上曰, 令該曹考例稟達.【出擧措[條]】…….

❖ 숙종 20년(1694) 갑술년 1월 15일(계축)

□ 인견에 오시복(吳始復) 등이 입시하여 사공과 곁꾼을 구해준 이진(李畛)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충청감사 김주(金澍)를 남아서 기다리게 하여 인견하였다. 충청감사 김주, 승지 이운징(李雲徵), 가주서 이덕운(李德運), 기사관 이주천(李柱天)·유세중(兪世重)이 입시하였고, 김주가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오시복(吳始復)[452]이 아뢰기를, "지난번 충청감사 홍만조(洪萬朝)[453]가 제주 진상물을 실은 배가 비인현(庇仁縣) 마량진(馬梁鎭) 앞 바다에 이르러 치패(致敗)한 일로 계문(啓聞)하였고, 이 가운데, 아울러 마량첨사 이진(李畛)이 힘을 다해 사공과 곁꾼 12명을 구조하여 살린 뜻에 이르러서는 다만 그 공(功)이 가상하다고만 말하고 별도로 상을 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본조(本曹)에서 회계(回啓)[454]를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신(道臣)[455]은 또 제주(濟州) 사격 등이 올린 소장에 따라서 비국(備局)에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이진이 대양에서 어둡고 깊은 밤 속으로 나가 사력을 다해 허다한 인명을 건져 구해내어 온전히 살

452) 오시복(1637~1716): 본관 동복(同福). 자 중초(仲初). 호 휴곡(休谷).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이조참판, 한성판윤, 호조판서 역임.

453) 홍만조(1645~1725): 본관 풍산(豊山). 자 종지(宗之). 호 만퇴(晩退).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대사간, 형조참판, 한성부판윤, 좌참찬 역임.

454)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455) 도신(道臣): 관찰사.

아날 수 있었는데도 끝내 상을 논하는 일이 없었다고 힘써 진달(陳達)하였습니다. 섬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장계와 보장(報狀)의 내용과 같다면 첨사 이진에게는 격려하여 권장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시한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그 배가 파선될 때에 십 수 명의 인명이 사망에 임박하였는데, 마량첨사 이진이 그 진(鎭)의 백성들을 이끌고 급히 가서 건져내어 물에 빠져 죽는 우환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 격려하여 권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포상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예(例)를 살펴 품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내었음】〈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복, 홍만조, 제주 진상물, 마량첨사, 이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二月 十日 戊寅

○ 禮曹啓曰, 濟州牧使封進, 去十二月令, 宗廟·永禧殿薦新乳柑·洞庭橘, 今始來到, 十一月令唐柚子, 所當先到, 而十二月令, 柑橘, 越次先到, 殊涉未便, 而海程風飄, 難容人力, 隨所到來, 十一日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禮曹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2월 10일(무인)

□ 제주(濟州)에서 올린 감귤 등을 도착한 순서대로 11일에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지난 12월령 종묘와 영희전(永禧殿)에 천신(薦新)하는 유감과 동정귤이 지금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11월령 당유자가 의당 먼저 도착하여야 하지만 12월령 감귤이 차례를 건너뛰어 먼저 도착하였으니 매우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뱃길에 부는 바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기에, 도착한 것에 따라 11일에 천진(薦進)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봉진, 천신, 천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二月 十三日 辛巳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大運曰, 濟州牧使李基夏, 以漂唐船事, 馳啓. 當爲回啓, 而論議不一, 久未決定, 敢此持文書稟達. 己巳年漂唐人朱漢源等, 解送北京, 則回咨內, 蓋以爲, 此後則勿爲從陸路解送, 只將人數物貨, 俟進貢便開報而已, 如或船隻破壞, 照常解送云云, 其意欲除我國之弊也. 今此漂唐人程乾順等, 船隻雖云片片破碎, 本板尙存, 破碎之板, 亦出置海邊, 則可以添木修補, 從海道還送, 比諸陸路解送, 其弊甚省矣. 黯曰, 回咨中末端, 雖有船隻破壞照常解送之語, 此出於除弊之意, 非必使陸路解送也. 況今漂唐船, 旣有本板, 與全然破壞者有間, 仍爲修補, 從海道還送, 事涉順便. 漂唐人等, 雖以不知海路爲言, 其中莊文煌, 係是前番出來之人, 似無不知之理矣. 其中赤脫者, 則令本州造給衣袴, 糧米亦從優覓給後, 會減, 俾無異國人狼狽之患. 金泰璜, 則不必令私相接見, 以此分付濟州牧使, 使之從速擧行. 名籍人貨, 後日使行開報事, 亦依咨文施行, 何如? 上曰, 己巳回咨, 旣出除弊之意, 今此漂唐人等船隻, 雖云破碎, 旣有本板, 可以仍補, 不必陸路解送. 修補其船隻, 自濟州直爲還送,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2월 13일(신사)

□ 인견할 때에 권대운(權大運)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정건순(程乾順) 등의 배를 보수하여 해로(海路)로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비국당상을 인견할 때에, 〈중략〉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기하(李基夏)가 표류해 온 중국 배의 일로 치계(馳啓) 하였습니다. 마땅히 회계(回啓)해야 하는데, 논의가 한결같지 않아서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감히 문서를 가지고 품달합니다. 기사년(1689)에 표류해 온 중국인 주한원(朱漢源) 등을 북경으로 풀어서 돌려보내니, 회답해 온 자문(咨文) 가운데, '이후로는 육로로 보내지 말고, 다만 인원의 수효와 화물을 가지고서 진공(進貢)하는 인편을 기다렸다가 보고하고, 만약에 배가 파괴되었다면 평상시와 같이 압송하라.'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우리나라의 폐단을 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표류해 온 중국인 정건순(程乾順) 등은 배가 비록 조각조각 부서졌다고는 하나 본판(本板)이 남아있고, 부서진 판자 또한 해변에 두었으니, 재목을 보태어 보수하여 해도(海道)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육로로 풀어 보내는 것에 비해 폐단이 적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회답해 온 자문 말단에, 비

록 배가 파괴되었더라도 평상시와 같이 압송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폐단을 없애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육로로 압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표류해 온 중국 배는 이미 본판이 있으니, 완전히 파괴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그대로 보수하여 해로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이 순편(順便)할 듯합니다. 표류해 온 중구인 등이 비록 해로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장문황(莊文煌)은 전번에 나왔던 사람이니 알지 못할 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들 가운데 벌거벗은 자는 본주(本州)로 하여금 옷을 지어 주고, 양식 또한 넉넉하게 지급한 후에 회감(會減)토록 하여 이국인에게 낭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황(金泰璜)은 사사로이 접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주목사에게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십시오. 명단과 물화를 후일 사행(使行)에 보고하는 일을 또한 자문(咨文)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사년에 해답해 온 자문은 폐단을 덜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금번 이 표류해 온 중국인 등의 배는 비록 부서졌다고는 하나 본판이 있어 그대로 보수할 수 있으니 육로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 배를 보수하여 제주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456] 【이상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권대운, 민암, 이기하, 주한원, 정건순, 장문황, 표류.

456) 《비변사등록》 1694년(숙종 20) 2월 1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숙종실록》 1694년(숙종 20) 2월 13일 기사에 이보다 간략하게 기술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二月 十三日 辛巳

○ 禮曹啓曰, 上年冬至, 濟州牧使李基夏封進方物中, 弓俗筒箇, 長廣, 不准於內下見樣, 故入啓推考, 而弓俗筒箇, 則因傳敎因爲捧入矣. 今年正朝, 本州所封方物, 弓俗筒箇四部,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 代結弓獐皮五張等物, 今始上來, 依例看品, 則其中弓俗長廣, 不准於見樣, 所當還爲退送, 而上年旣有軫念遐陬, 仍爲捧入之敎, 故仰體聖意, 今姑捧入, 而上年推考後, 申飭關文, 計其日子, 雖似不及到於正朝方物封進之前, 其連次違樣, 不謹之責, 在所難免. 濟州牧使李基夏,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2월 13일(신사)

□ 견양(見樣)에 어긋난 궁대(弓俗) 등을 봉진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기하(李基夏)를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해〔上年〕 동지(冬至)에 제주목사 이기하(李基夏)[457]가 봉하여 올린 특산물 가운데, 궁대(弓袋)와 통개(筒箇)의 길이와 넓이〔長廣〕는 내하(內下)[458] 겨냥〔見樣: 본보기〕에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글을 올려 추문하여 고찰하도록 하고, 궁대(弓袋)와 통개(筒箇)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거두어 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설날아침에 제주에서 봉하여 올린 특산물은 궁대(弓俗)와 통개(筒箇) 4부,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 10장, 동물의 털로 짠 말 장식〔織毛馬粧〕 1,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를 대신하는 것 5장 등의 물품은 지금 비로소 올라 와서, 전례에 따라 품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궁대(弓俗)의 길이와 넓이가 겨냥(본보기)에 맞지 않아서, 마땅히 도로 물리쳐 보내려 했으나 지난해 이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사정을 걱정하고 생각하여, 그대로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우러러 임금의 뜻을 본받아, 지금은 우선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추문하여 고찰한 뒤에 관문(關文)으로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였습니다. 그 날짜를 헤아리니, 비록 설날 아침의 특산품을 봉하여 올리기 전에 미처 도착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도 번번이 겨냥에 어긋나서, 불성실하게 근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주목사 이기하(李基夏)를 추문하여 고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

457) 이기하(1646~1718): 조선 중기의 무신.
458) 내하(內下): 내사(內賜).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는 일.

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기하, 궁대, 통개, 결궁장피, 직모마장.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三月 十三日 乙亥[辛亥]

○ 今日引見時, 咸鏡監司權歆, 今姑改差事, 及今此觀武才時, 除初試之類, 立芻勿爲擧案事, 榻前下敎. 濟州判官箇滿之代, 後日政, 差出事, 及副校理洪重鉉, 本職今姑改差, 永柔縣令仍任事, 榻前定奪.

❖ 숙종 20년(1694) 갑술년 3월 13일(을해[신해])

□ 인견(引見)시에 권흠(權歆)을 개차(改差)하는 일 등을 탑전에서 하교함

○ 오늘 관리를 만나 볼 때, 함경감사(咸鏡監司) 권흠(權歆)[459]을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는 일과, 이번에 무재(武才)를 살펴볼 때 초시(初試)를 없애는 것, 입추(立芻)[460]에서 거안(擧案)[461]하지 말 일 등에 대해서, 왕의 자리 앞에서 명령을 내렸다. 제주판관(濟州判官)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신할 사람은 후일의 정사(政事)에서 임명하여 뽑을 일과, 부교리(副校理) 홍중현(洪重鉉)의 본직(本職)을 지금 우선 갈아서 영유현령(永柔縣令)[462]을 그대로 맡게 하는 일 등은 어전에서 정탈(定奪)[463]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권흠, 제주판관.

---

459) 권흠(1644~1695): 조선 후기의 문신.

460) 입추(立芻): 짚이나 풀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길 좌우에 세워 두고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무예.

461) 거안(擧案):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상관에게 자신의 명함을 올리던 일. 또는 그 명함.

462) 영유현(永柔縣): 평안도에 있었던 현(縣) 이름으로, 지금 평안남도 평원군의 옛 이름. 영유현령(永柔縣令)은 영유현(永柔縣)에 두었던 으뜸 벼슬.

463) 정탈(定奪): 1) 임금의 재결(裁決). 2)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三月 二十五日 癸亥

○ 以李後晟爲黃州牧使, ……, 潘處濂爲大靜縣監.【以上吏曹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3월 25일(계해)

□ 반처렴(潘處濂)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후성(李後晟)을 황해목사(黃州牧使)로 〈중략〉 반처렴(潘處濂)[464]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하였다.【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반처렴, 대정현감.

464) 반처렴(?~?): 대정현감 재임기간은 1694년(숙종 20) 5월~1695년 4월. 당시의 제주목사로는 이기하(李基夏), 이익태(李益泰)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二日 己巳

○ 政院啓曰, 禁府方有時急擧行事, 不容少緩, 而判義禁柳尙運, 在外, 同義禁朴泰尙, 亦在郊外, 未及入來, 今已日暮, 而被謫人等, 尙未發配, 何以爲之? 敢稟. 傳曰, 閔黯, 濟州大靜縣絶島安置, 柳命賢, 全羅道羅州黑山島絶島安置, 鄭維岳, 珍島郡絶島安置, 睦林一, 慶尙道南海縣絶島安置, 李義徵巨濟縣絶島安置, 竝於當日內押送.【已上朝報】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2일(기사)

□ 민암(閔黯)을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절도안치함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금부(禁府)가 바야흐로 시급하게 거행해야 할 일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의금(判義禁) 유상운(柳尙運)이 궁궐 밖에 있고, 동의금(同義禁) 박태상(朴泰尙)도 교외(郊外)에 있어서, 미처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귀양 당한 사람〔被謫人〕들은 아직 유배지를 떠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민암(閔黯)[465]은 제주도 대정현 외딴섬에 안치하고, 유명현(柳命賢)은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 흑산도(黑山島) 외딴섬에 안치하고, 정유악(鄭維岳)은 진도군(珍島郡) 외딴섬에 안치하고, 목임일(睦林一)은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외딴섬에 안치하고, 이의징(李義徵)은 거제현(巨濟縣) 외딴섬에 안치하는데, 모두 당일(當日) 안에 압송(押送)하라."라고 하였다.[466]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민암, 피적인.

---

465) 민암(1636~169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장유(長孺), 호는 차호(叉湖). 지평, 승지,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등의 관직을 역임했던 당시 남인의 영수.

466) 『숙종실록』 26권 '1684년(숙종 20) 4월 2일(기사) 조에도 같은 기사가 있음.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三日 庚午

○ 備忘記, 大靜安置罪人閔黯, 賦性兇險, 樂禍無已, 每以一邊之人, 皆懷患失. 患失之極, 無所不至之意, 累次陳達, 其所謂無所不至者, 蓋指不軌也. 予心常痛惡, 略不動聽, 故末稍魚肉之計, 至于今日之密告, 而極矣. 黯與以完, 可謂一而二, 二而一者也, 決不可只令安置, 任其自在, 仍其配所, 嚴加栲棘.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3일(경오)

□ 민암(閔黯) 등을 천극(栲棘)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467]에, "대정현 안치죄인(安置罪人) 민암(閔黯)은 타고난 성질이 흉험(凶險)하고 화(禍)를 만들기를 좋아하여 머지않아서, 번번이 말하기를, '한 편 사람은 다 잃을세라 걱정하는데, 잃을세라 걱정하는 것이 극진하여 장차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대개 불궤(不軌)[468]를 가리킨 것이다. 내가 일찍이 몹시 미워하여 조금도 동요되어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오늘에 이르러 또 밀고(密告)하여 함부로 죽이려는 생각이 극진하였다. 민암(閔黯)과 함이완(咸以完)은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므로 안치(安置)만 하여 자유롭게 맡겨 둘 수 없으니, 배소(配所)에 엄하게 천극(栲棘)[469]을 더하라."라고 하였다.[470]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민암, 대정안치죄인.

---

467)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468) 불궤(不軌): 1)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함. 2) 반역을 꾀함.

469) 천극(栲棘):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470) 『숙종실록』 26권 1694년(숙종 20) 4월 3일(庚午) 기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十六日 癸未

○ 下直, 濟州判官盧三錫 …….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16일(계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노삼석(盧三錫) 등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노삼석(盧三錫) 등이 하직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노삼석.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十七日 甲辰

○ 午時, 上御宣政殿, 領議政南九萬留待引見入侍時, 同副承旨朴泰淳, 假注書柳鳳瑞, 記注官韓洸, 記事官金世鎬, 入侍. …… 南九萬曰, 臣昨到【缺】啓, 則本州漂漢人等, 必欲得路引後, 發【缺】奪分付事也, 而以廟堂無人之故, 不得趁卽回啓, 濟【缺】之中, 許多人累朔供饋甚難, 異國之人, 使之久留, 亦涉未便, 其路引, 似當依渠等所言, 卽爲成給發送, 今欲待備局堂上差出開坐後回啓, 則勢將遲延, 故敢此先爲仰達. 上曰, 令濟州成給路引, 卽爲發送, 可也. 南九萬曰, 小臣, 有待罪事矣, 自朝家出給戶牌, 中間見失於行路, 不敢私自造作. 國法, 無牌者有罪, 惶恐待罪. 上曰, 事勢如此, 何必待罪, 安心勿待罪. 朴泰淳曰, 三省罪人拿來已久, 而亦有金寅等廷獄. 只以大臣未及上來之故, 至今不得擧行, 極爲未安. 自今日設鞫, 何如? 上曰, 大臣不來, 故不得擧行, 今則大臣入來, 禁府堂上俱存, 自今日設鞫, 可也. 南九萬曰, 小臣在外, 不知事情矣. 推鞫重大, 處所, 亦當稟定, 而卽今僚相未備, 小臣獨當, 惶恐敢達. 上曰, 大臣備員, 而有故, 則固當待之矣. 今則獨有卿一人, 仍而行之, 可也. 南九萬曰, 臣在外之時, 備忘辭意, 則固已見而知之矣. 今入咫尺天威, 惶恐敢達. 臣與在京人, 有異, 實未知某事, 爲謀逆節次, 入於變書耶? 惶恐敢達. 上曰, 變書下於鞫廳, 則自當見之矣. 上曰, 永昭殿奠酌, 今月念間, 擇日以啓, 宣醞. 南九萬曰, 小臣本無酒量, 退出後, 且有擧行事, 酒不敢近口, 惶恐矣. 上曰, 隨量, 可也. 酒行六盞. 南九萬曰, 宣醞三盞之後, 又至四至六, 天恩感激, 盡量醉飽而已, 豈敢有所辭乎? 第臣酒量已盡, 惶恐更達. 上曰, 惟當隨量而已. 遂罷出. 【以上燼餘】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17일(갑진)

□ 인견(引見) 시에 남구만(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표한인(漂漢人)의 노인(路人) 성급 문제 등을 논의함

○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유대(留待)하여 관리들을 만나보기 위해 입시할 때, 도부승지(同副承旨) 박태순(朴泰淳), 가주서(假注書) 유봉서(柳鳳瑞), 기주관(記注官) 한광(韓洸), 기사관(記事官) 김세호(金世鎬) 등이 들어와서 임금을 뵈었다. 〈중략〉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신(臣)이 어제 도착한 【빠짐】의 계(啓)에, '곧 본주(제주)에 표류한 중국인〔漂漢人〕들은 반드시 노인(路引)[471]을 얻으려 한 뒤에,

471) 노인(路引):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병졸(兵卒)이나 보통 장사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에게 내주던

發【빠짐】奪 분부(分付)할 일입니다. 묘당(廟堂: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작에 회계(回啓)[472]를 얻지 못하여, 濟【빠짐】의 가운데 허다한 사람들이 여러 달을 음식을 주기가 매우 어려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일인데, 그 노인(路引)은 마땅히 저들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즉시 만들어 발급해주고 방송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차출(差出)하여 개좌(開坐)[473]한 뒤에 회계(回啓)하려 하니, 정세가 장차 지연(遲延)될 것이므로 감히 이것을 우선 우러러보고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노인(路引)을 작성하여 발급하고, 즉시 출발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조가(朝家: 조정)에서 호패(戶牌)를 내주면 중간에 가는 길에 잃어버릴 것이어서 감히 사사로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법〔國法〕은 호패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으므로 황공(惶恐)하게도 처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의 형세가 이와 같은데, 처벌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안심하고 처벌해 달라는 것을 물리라."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노인, 제주, 표한인.

여행권. 노인기(路人記)라고도 함.

472)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473) 개좌(開坐/開座): 벼슬아치들이 한데 모여서 사무를 보는 일.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二十日 丁亥

○ 朴泰淳啓曰, 濟州點馬別監趙世成狀啓, 來到本院, 今方捧入, 而外面承政院開坼, 臣着名, 謹封等項字, 皆不書. 此雖武人, 不閑規例之致, 不可無警責之道,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20일(정해)

□ 장계에 착명과 근봉 등의 글자를 써넣지 않은 제주(濟州) 점마별감 조세성(趙世成)의 추고를 청하는 박태순(朴泰淳)의 계

○ 박태순(朴泰淳)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점마별감(點馬別監)[474] 조세성(趙世成)이 임금에게 보고한 문서가 승정원에 와서 닿아서 방금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면(外面)에 '승정원 개탁(開坼)[475], 신(臣) 착명(着名)[476], 근봉(謹封)[477]' 등의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무인(武人)일지라도, 규례(規例)에 익숙하지 못한 소치이므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추문하여 고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점마별감, 점마별감, 조세성.

---

474) 점마별감(點馬別監):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으로 말을 검열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특별히 파견하던 벼슬아치.

475) 개탁(開坼): 봉한 편지나 서류 따위를 뜯어보라는 뜻으로, 주로 손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겉봉에 쓰는 말.

476) 착명(着名): 문안 따위에 이름을 적어 넣음.

477) 근봉(謹封): 삼가 봉한다는 뜻으로, 편지 겉봉의 봉한 자리에 쓰는 말.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二十六日 癸巳

○ 政院啓曰, 以合啓, 閔黯絶島圍籬安置事, 命下矣. 閔黯以咸以完獄事, 曾以濟州牧圍籬安置, 而方在拿問中. 今此圍置傳旨, 姑不得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26일(계사)

□ 민암(閔黯)이 현재 나문 중이므로 위치전지(圍置傳旨)를 봉입(捧入)할 수 없다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합계(合啓)[478]로써, 민암(閔黯)을 외딴섬〔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479]할 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암이 함이완(咸以完) 옥사(獄事)[480]로, 일찍이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죄인을 붙잡아다가 심문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위리안치하라는 전지(傳旨)[481]가 있어서, 잠시 거두어들이라는 뜻을 얻지 못하여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민암, 위리안치.

---

478) 합계(合啓): 조선 시대에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이 연명하여 계사를 올리던 일. 또는 그 계사.
479)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480) 옥사(獄事): 살인 따위의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 또는 그 사건.
481) 전지(傳旨):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四月 二十七日 甲午

○ 下直, 大靜縣監潘處濂.

❖ 숙종 20년(1694) 갑술년 4월 27일(갑오)

□ 대정현감(大靜縣監) 반처렴(潘處濂)이 하직함

○ 대정현감(大靜縣監) 반처렴(潘處濂)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반처렴.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五月 十九日 丙辰

○ 兵批, 判書病, 參判未差. …… 鄭希良爲濟州敎授 …….

❖ 숙종 20년(1694) 갑술년 5월 19일(병진)

□ 정희량(鄭希良)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병비(兵批)가 있었다. 병조판서 서문중(徐文重)은 병으로 빠졌으며, 병조참판은 아직 차임(差任)되지 않았다. 〈중략〉 정희량(鄭希良)을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희량, 제주교수.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五月 二十三日 庚申

○ 未時, 上御熙政堂. 引見鞫廳大臣以下領議政南九萬【缺八字】哲申汝哲, 知義禁尹趾善·李世白, 同義禁鄭載禧【缺八字】令金弘楨, 承旨金構, 假注書閔鎭遠, 記注官韓【缺七字】見善入侍. …… 九萬曰, 摠戎使, 今方有闕, 當爲差出, 而臣元來不識武弁【缺五六字】, 以罪久廢, 新進武士, 尤無相識者, 頃日兩次擬望之際【缺四五字】哲相議而擬入矣. 論以時望, 則金世翊可合一窠, 而世翊, 身【缺四字】重, 決難行公云. 故擬望之際, 雖不敢拔去, 而亦不能首擬【缺四五字】則當李基夏首擬, 而基夏, 方在濟州任所, 交代上來【缺四五字】爾未易, 以此人差出, 而待其上來耶? 若以久曠爲慮, 則【缺三四字】出耶? 上曰, 摠戎使, 異於三軍門交代, 雖不速出, 似無可慮之事, 且待李基夏上來, 可也. …….【以上燼餘】

❖ 숙종 20년(1694) 갑술년 5월 23일(경신)

□ 희정당에 남구만(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총융사(摠戎使) 임명 등에 대해 논의함

○ 미시(未時: 오후 1시~3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국청대신(鞫廳大臣) 이하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과 【8자가 빠짐】, 신여철(申汝哲) 등을 만나보았다. 지의금(知義禁) 윤지선(尹趾善)·이세백(李世白), 동의금(同義禁) 정재희(鄭載禧)【8자가 빠짐】 김홍정(金弘楨), 승지(承旨) 김구(金構), 가주서(假注書) 민진원(閔鎭遠), 기주관(記注官) 【7자가 빠짐】 등이 임금을 뵈었다. 〈중략〉 남구만이 아뢰기를, "총융사(摠戎使)는 방금 자리가 비었으니, 마땅히 임명하기 위해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臣)은 원래 무(武)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5~6자가 빠짐】, 죄를 지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진(新進) 무사(武士)는 더욱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頃日〕에 두 번에 걸쳐 의망(擬望)[482]할 때에【4~5자가 빠짐】 이 서로 의논하여 의입(擬入)[483]하였습니다. 논의할 때 추천해 올린 사람은 김세익(金世翊)인데, 합당한 일과(一窠)[484]일 듯합니다. 세익(世翊)은 【4자가 빠짐】, 결코 행공(行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망(擬望)할 때, 비록 감히 뽑지 못하였고, 또한 수의(首擬)[485]를 【4~5자가 빠짐】할 수 없었습니다. 곧 마땅히 이

---

482) 의망(擬望):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483) 의입(擬入): 후보자로 추천하여 올림.

484) 일과(一窠): 국가 기관의 직제에 소속된 정원의 한 자리.

485) 수의(首擬): 의망(擬望)의 삼망(三望) 중 맨 첫 망에 쓴 것을 말함. 관원을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능호(陵號)·전호(殿號) 등을 정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망(首望), 다음 것을 차망(次望), 그

기하(李基夏)를 수의(首擬)로 삼을 만한데, 이기하는 바야흐로 제주(濟州) 임소에 있다가, 교대하여 올라와서, 【4~5자가 빠짐】 쉽지 않으니, 이 사람으로서 차출(差出)하고,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래 비울 염려가 있으면 【3~4자가 빠짐】?"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총융사(摠戎使)는 삼군문(三軍門: 삼군영)[486]이 교대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속히 내지 않더라도 염려할 일이 없을 듯하다. 또한 이기하(李基夏)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총융사, 제주.

다음 것을 말망(末望)이라 하여, 임금이 셋 중에 뜻이 맞는 데에 낙점함.

486) 삼군문(三軍門): 조선 시대에 둔 세 군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이름. 삼군영(三軍營)·삼영(三營)·삼영문(三營門).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五月 二十六日 癸亥

○ 有政. 吏批, …… 李益泰爲濟州牧使. …….

❖ 숙종 20년(1694) 갑술년 5월 26일(계해)

□ 이익태(李益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이익태(李益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익태, 제주목사.

❖ 康熙 三十三年 甲戌 閏 五月 二日 戊辰

○ 南九萬所啓, 新除授摠戎使李基夏, 方在濟州任所, 濟州牧使李益泰, 急速促送, 以爲交代之地, 何如? 上曰, 李益泰, 催促, 使之急速下直, 可也. 南九萬曰, 御營大將李世選, 自摠戎使, 陞授本任, 新除授摠戎使未上來之間, 凡本廳循例擧行事, 使之兼察,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20년(1694) 윤 5월 2일(무진)

□ 남구만(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이기하(李基夏)를 속히 교대(交代)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새로 총융사(摠戎使)를 제수(除授)한 이기하(李基夏)가 바야흐로 제주(濟州) 임소(任所)에 있는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를 속히 보내어 임무를 교대(交代)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익태를 재촉하여 그로 하여금 속히 작별을 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남구만 아뢰기를, "어영대장(御營大將) 이세선(李世選)이 총융사(摠戎使)에서 본 임무를 올려서 주었는데, 새로 총융사(摠戎使)를 제수하여 올라오는 사이라서 아직 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본청(本廳)에서 전례에 따라 거행할 것을 그로 하여금 겸찰(兼察)[487]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이익태, 제주목사.

---

487) 겸찰(兼察): 1)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살핌. 2) 〈역사〉현임 대장(大將)이 임시로 다른 직무를 맡아보던 일.

❖ 康熙 三十三年 甲戌 閏 五月 八日 甲戌

○ 下直, 濟州牧使李益泰, 淳昌郡守趙泰期.

❖ 숙종 20년(1694) 갑술년 윤 5월 8일(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와 순창군수(淳昌郡守) 조태기(趙泰期) 등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태.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六月 八日 甲辰

○ 黃欽, 以義禁府言啓曰, 以司諫院啓辭, 定配罪人疊配於一縣者, 移配他所事, 允下矣. 全羅道珍島郡, 圍籬安置罪人金德遠, 移配濟州牧, 康津縣安置罪人柳命天, 移配慶尙道延日縣, 慶尙道巨濟縣定配罪人張炫, 移配全羅道扶安縣蝟島, 南海縣圍籬安置罪人李玄紀, 移配全羅道康津縣古今島, 南海縣定配罪人張燦, 移配黃海道長淵府白翎鎭, 咸鏡道富寧府定配罪人柳緯漢, 移配茂山府, 平安道江界府遠竄罪人金澍, 移配理山郡, 而依例發遣府都事·書吏, 押付移配所, 何如? 傳曰, 允.

❖ 숙종 20년(1694) 갑술년 6월 8일(갑진)

□ 김덕원(金德遠)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황흠(黃欽)이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로써, 정배죄인(定配罪人)을 한 현(縣)에 거듭 정배(定配)시킨 자는 타소(他所)로 이배(移配)할 것으로 윤허를 내렸습니다. 전라도 진도군(珍島郡)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김덕원(金德遠)[488]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강진현(康津縣)에 안치된 죄인 유명천(柳命天)은 경상도(慶尙道) 연일현(延日縣)으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경상도 거제현(巨濟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장현(張炫)을 전라도 부안현(扶安縣)의 위도(蝟島)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남해현(南海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이현기(李玄紀)를 전라도 강진현의 고금도(古今島)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남해현에 정배된 죄인 장찬(張燦)을 황해도 장연부(長淵府)의 백령진(白翎鎭)으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함경도 부령부(富寧府)에 정배된 죄인 유위한(柳緯漢)을 무산부(茂山府)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평안도 강계부(江界府)에 원찬(遠竄)된 죄인 김주(金澍)를 이산군(理山郡)으로 옮겨서 귀양 살게 하고, 전례에 따라 부사(府使)와 도사(都事), 서리(書吏) 등을 뽑아서 보내고, 옮겨서 귀양 살 장소로 압송하여 넘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위리안치, 김덕원, 제주목.

---

488) 김덕원(金德遠): 당시 영중추(領中樞: 영중추부사. 중추부의 으뜸벼슬)를 맡고 있었는데, 훈신(勳臣)을 모함한 죄로 벌을 받고 유배됨.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六月 十四日 庚戌

○ 又以摠戎廳言啓曰, 本廳所屬京外將官等, 今甲戌年春夏等褒貶等第, 當爲磨勘, 而新摠戎使臣李基夏, 方在濟州任所, 未及上來,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6월 14일(경술)

□ 이기하(李基夏)가 제주(濟州)에 있으므로 포폄(褒貶)을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총융청의 계

○ 또한 총융청(摠戎廳)의 말로써 아뢰기를, "본청(本廳) 소속의 경외(京外) 장관(將官)들이 올 갑술년 봄과 여름 등에 실시한 포폄(褒貶)[489]과 등제(等第)[490]에 대해서 마땅히 마감(磨勘)[491]해야 하는데, 새로 임명된 총융사 신(臣) 이기하(李基夏)가 바야흐로 제주(濟州) 임소에서 미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한 안에 마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제주.

489) 포폄(褒貶):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490) 등제(登第): 등과(登科). 과거에 급제하던 일.
491) 마감(磨勘):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六月 二十三日 己未

○ 朴世熽, 以義禁府言啓曰, 本府都事李纂, 濟州安置罪人金德遠押去, 都事趙近叟, 延日縣移配罪人柳命天押去, 都事任堕, 康津縣薪智島圍籬安置罪人睦來善押去, 而回還未易, 推鞫之坐, 亦在不遠, 出使都事三員, 令該曹, 依例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20년(1694) 갑술년 6월 23일(기미)

□ 김덕원(金德遠) 등을 압거하기 위해 나간 도사(都事)들의 한관환차(閑官換差)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박세준(朴世熽)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도사(都事) 이찬(李纂)은 제주(濟州)에 안치된 죄인 김덕원(金德遠)을 압송하여 가고, 도사(都事) 조근수(趙近叟)가 연일현(延日縣)으로 이배되는 죄인 유명천(柳命天)을 압송하여 가고, 도사(都事) 임방(任堕)을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에 위리안치되는 죄인 목래선(睦來善)을 압송하여 가는데,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국(推鞫)에 참석해야 하는 일 역시 멀지 않으니 사명(使命)을 받고 나간 도사 3원(員)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한가한 벼슬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박세준, 제주, 안치죄인.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七日 癸酉

○ 朴世熽, 以義禁府意啓曰, 旌義縣圍籬安置罪人李義徵押去啓目, 旣已啓下, 卽當定配次放送, 而臺諫, 方以亟正邦刑, 論啓, 不得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7일(계유)

□ 이의징(李義徵)은 대간에서 논계 중이므로 발배할 수 없다는 의금부의 계

○ 박세준(朴世熽)이 의금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旌義縣)에 위리안치 되는 죄인 이의징(李義徵)을 압송하여 가게 하는 계목(啓目)[492]은 이미 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즉시 정배(定配)하기 위해 감옥에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간(臺諫)[493]이 바야흐로 속히 나라의 형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논계(論啓)[494]하였으니, 죄인을 귀양살이할 곳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 위리안치, 이의징.

---

492) 계목(啓目): 임금에게 보이는 서류(書類)에 붙인 목록(目錄).
493) 대간(臺諫): 조선 시대에 대관과 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494) 논계(論啓):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十六日 壬午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上來初運, 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馬四十三匹, 合一百十一匹內, 三匹, 到海南病留, 一匹, 則興德病留, 一匹, 則平澤病留, 竝五匹計除, 實納馬一百六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16일(임오)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진상마를 화모색 등으로 분류하여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또한 사복시 관원이 제조[495]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초운(初運)[496]에,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匹), 삼명일 진상마(三名日進上馬) 64필, 흉구마(凶咎馬) 43필 등을 합하여 111필 안에, 3필은 전라도 해남(海南)에 이르러 병이 걸려 남겨두고, 1필은 흥덕(興德)에 이르러 병이 걸려 남겨두고, 1필은 평택(平澤)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져서 모두 5필을 계산하여 제외하니, 실제로 납부한 말 106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일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초운,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흉구마.

---

495) 제조(提調):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각 사(司) 또는 청(廳)의 우두머리가 아니면서 각 관아의 일을 다스리던 직책.

496) 초운(初運): 조선시대에 지방의 특산물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궁궐로 운반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운반한 것을 초운(初運)이라 함. 그 뒤에 운반하는 것을 이운(二運) 또는 재운(再運), 삼운(三運), 사운(四運) 등으로 부름.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十七日 癸未

○ 備忘記, 耽羅一域, 素產善馬, 而近來馬品, 漸至無形, 昨年不如往年, 今年不如昨年, 其在馬政, 極涉虛踈, 故前後推考警責, 非止一再矣. 今觀濟州三名日進上馬, 則擧皆體少無形, 三名日進上, 則與歲貢馬, 事體有別, 曾前擇封, 意有所在, 而苟充之弊, 乃至於此, 事之可駭, 莫此爲甚. 當該濟州牧使, 姑先從重推考.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17일(계미)

□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로 몸집이 왜소하고 생김새가 못생긴 말을 올려 보낸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탐라(耽羅) 한 구역은 본래부터 훌륭한 말[善馬]이 나는 곳인데, 근래에 말 품종이 점차 형체가 좋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지나간 해[往年]만 하지 못했고, 올해[今年]는 지난해만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마정(馬政)[497]에 달린 일인데, (마정이) 극히 허소(虛疏)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전후(前後)로 추고(推考)하고 경책(警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제주(濟州)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498]를 살펴보니, 거의 다 몸체가 작고 형체가 좋지 않았다. 삼명일 진상인 경우 세공마(歲貢馬)[499]와는 사체(事體)가 다름이 있는 것이다. 일찍이 전에 골라서 보내라고 했던 것은 뜻에 소재(所在)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구차히 충원하는 폐단이 여기에 이르렀다. 일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으니 해당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일단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 선마, 제주, 마정, 삼명일진상마, 세공마.

---

497) 마정(馬政):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498)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삼명절(임금의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의 세 명절)에 진상하는 말.
499) 세공마(歲貢馬): 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공물(貢物)로 바치던 말.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二十三日 己丑

○ 引見時, 領議政南九萬所啓, 前濟州牧使李喜龍, 曾任濟州時, 以罪人稟啓事被罪, 尙未蒙敍命. 當此乏人之時, 備局, 則例或以罷散人擬望, 而此人, 則自下不敢知罪, 亦不得議薦, 惶恐敢達. 上曰, 李喜龍, 在濟州時事, 雖甚無據, 已經累年, 擬薦無妨矣. …….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23일(기축)

□ 남구만(南九萬) 등이 입시하여 이희룡(李喜龍)의 의천(擬薦)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임금이 관리들을 만날 때,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前濟州牧使) 이희룡(李喜龍)이 일찍이 제주(濟州)에 재임할 때, 죄인을 품계(稟啓)한 일로 죄를 얻어서 여태까지 서명(敍命)[500]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이처럼 인재가 절핍한 때에 비국(備局: 비변사)에서는 전례에 혹 파산인(罷散人)[501]으로서 의망(擬望)하였었는데, 이 사람은 곧 자하(自下)[502]하여 감히 그 죄를 몰랐다고 하니, 또한 의논하여 천거할 수가 없어서, 황공하게도 감히 임금께 아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희룡이 제주에서 일을 볼 때, 비록 매우 증거를 삼을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나버려서 의천(擬薦)하는 것도 무방(無妨)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룡, 제주, 파산인, 의망.

---

500) 서명(敍命): 관리를 서용(敍用)·임명하라는 임금의 임명. 고려나 조선 시대에 관리의 임용이나 법령의 제정·개정에는 반드시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쳐야 했는데, 이는 왕권 견제의 제도적 장치였음.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용에 대간의 서명을 필요로 했던 고려 시대와 달리 조선 시대에는 서명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는데, 조선 초기 여러 차례의 논의와 개정 끝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5품 이하의 관리임용에만 서명이 적용되었음. 5품 이상의 경우 대간의 서명 없이 임금이 직접 관리임명의 명령을 내렸음.

501) 파산인(罷散人): 관직(官職)이 해면(解免)된 한산(閑散)한 사람.

502) 자하(自下): 자하거행. 윗사람의 승낙이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 나감.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二十四日 庚寅

○ 南弼星,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再運上來歲貢馬二百匹內, 三匹, 到淳昌病留, 一匹, 船中故失, 二匹, 到本寺病留, 二匹, 到沃川病留, 一匹, 到文義病留, 一匹, 到海南病留, 合十匹計除, 實納馬一百九十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24일(경인)

□ 제주(濟州)에서 재차 운송해 온 세공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남필성(南弼星)이 사복시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재운(再運)으로 올라온 세공마(歲貢馬) 200필 안에, 3필은 순창(淳昌)에 이르러 병으로서 남겨두고, 1필은 배 안에서 죽어서 없어지고, 2필은 본시(本寺: 사복시)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두고, 2필은 옥천(沃川)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1필은 문의(文義)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1필은 해남(海南)에 이르러 병으로서 남겨진 것을 합하여 10필을 계산하여 없앴다. 실제로 납부한 말 19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일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재운, 세공마.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七月 二十九日 乙未

○ 洪受疇,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三運上來駑駘馬二百十七匹內, 三匹, 到海南病留, 三匹, 到任實病留, 一匹, 到長興逃逸, 一匹, 至綾州故失, 一匹, 到錦山病留, 四匹, 船中故失, 二匹, 到文義病留, 八匹, 到本寺病留, 一匹故失, 合二十四匹, 計除, 實納馬一百九十三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0년(1694) 갑술년 7월 29일(을미)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노태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홍수주(洪受疇)가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삼운(三運)으로 올라온 노태마(駑駘馬)[503] 217필 안에, 3필은 해남(海南)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3필은 임실(任實)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1필은 장흥(長興)에 이르러 도망가서 잃고, 1필은 능주(綾州)에 이르러 사고로 잃고, 1필은 금산(錦山)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4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고, 2필은 문의(文義)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8필은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으로 남겨지고, 1필은 사고로 잃은 것을 합하여 24필을 계산하여 없앴다. 실제로 납부한 말 19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삼운, 노태마.

503) 노태마(駑駘馬): 걸음이 느리고 둔한 말.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八月 七日 壬寅

○ 府啓, 請罪人張希載, 亟命按律處斷. 請鞫廳罪人李義徵, 亟正邦刑. 統營, 是南服重鎭, 而比年以來, 累經匪人, 剝割軍民, 邊地騷然, 將至於莫可收拾之域, 豈不大可寒心者哉? 前統制使沈樸, 驟叨重任, 專事肥己, 貪饕網利之事, 有不可殫擧, 姑就其大者言之, 則退船, 例爲公用, 而樸, 以曾有負債於巨濟邸吏之故, 坐船一隻, 公然出給邸吏, 以其船載本縣田稅而樸, 又添載私物, 其數甚多, 私用退船, 旣是重罪, 稅船添載, 亦有國禁, 則樸之縱恣無忌, 其亦甚矣. 本營所屬漁磯之稅, 自前例以木疋, 分其高下而量捧矣, 自樸莅仕以後, 銀貨濫捧, 盡歸私用, 其貪婪不法之狀, 據此數款可知矣. 前統制使睦林奇, 憑藉形勢, 恣行非法, 其所貪婪縱恣, 視樸殆有甚焉. 盡括漁鹽之利, 厚招軍民之怨, 稱以貿易, 進上皮物, 多出物貨, 入送濟州, 盡買馬匹而來, 及其從弟林一之安置南海也, 載送白米四十餘石, 而他物稱是, 至於斫送材木, 大搆家舍, 載送之物, 固爲過濫, 此則猶可諉之於親戚相救之情, 而濱海之邑, 素有松禁, 自林奇到任之後, 禁令之嚴, 比前特甚, 使邊地之民, 不得斫一松木, 守令邊將之因此被罪者, 非止一二, 而林奇, 身自犯禁, 亂斫載送, 搆成家舍, 至於如此, 此而不懲, 武夫之受閫任而應重寄者, 將無以責勵警飭, 請前統制使沈樸·睦林奇, 竝邊遠定配. 答曰, 不允.

❖ 숙종 20년(1694) 갑술년 8월 7일(임인)

□ 전 통제사 심박(沈樸) 등을 변원정배(邊遠定配)하기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부계(府啓)[504]에,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법률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했고, 국청(鞫廳) 죄인 이의징(李義徵)을 속히 나라의 형벌을 다루기를 청했다. 통영(統營)은 남복(南服)[505]의 중진(重鎭)[506]인데, 근년 이래로 여러 차례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겪어서 군민(軍民)의 재물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변방 지역의 소란스러움이 장차 거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크게 한심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前) 통제사(統制使) 심박(沈樸)은 갑자기 중임(重任)에 외람되이 올랐으므로, 오로지 사욕을 채우는 것만 일삼고 재물을 탐내어 이익을 독차지한 일들을 이루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서 큰 것을 가지고 말

504) 부계(府啓):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의견을 올리던 일. 또는 그 의견.
505) 남복(南服): 왕기(王畿)의 남쪽 지방. 바꾸어 남쪽 지방을 뜻함. 복(服)은 오복(五服: 왕기 밖 500리마다 차례로 구역을 정해 5등으로 나누었던 지역).
506) 중진(重鎭): 병권(兵權)을 잡고 군사적 요충지를 지키는 사람.

해 보면, 퇴선(退船)은 공용하는 예가 있는데, 심박은 일찍이 거제(巨濟)의 저리(邸吏)[507]로 있을 때에 빚을 졌으므로, 좌선(坐船) 1척을 공공연히 저리(邸吏)에게 내주어, 그 배에 본현(本縣: 거제현)의 전세(田稅)[508]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심박은 또한 개인 물품을 추가로 싣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퇴선(退船)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엄중한 죄인데, 세선(稅船)[509]에 개인 물품을 실은 것 또한 바라의 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곧 심박은 방자하기가 그지없이 구는 것이 심하였습니다. 본영(本營: 거제현) 소속의 어기(漁磯: 낚시터)의 세(稅)를 전례대로 무명[木疋]으로써 그 고하(高下)에 따라 나누고 정량에 따라 받아들였습니다. 심박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난 뒤에도 은화(銀貨)를 함부로 받아들이고 전부 개인의 용도로 썼으니, 그 탐라(貪婪)하고 불법 상황은 이 두어 개의 근거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통제사 목임기(睦林奇)는 형세(形勢)에 의지하여, 불법한 짓을 자행(恣行)하고, 그의 탐욕스럽고 방자한 바가 심박에게서 본 것에 비해 심합니다. 어염(漁鹽: 어업과 제염)의 이익을 다 단속하여 군민(軍民)의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진상할 피물(皮物: 짐승 가죽)을 무역한다고 하고, 많은 물화를 내어 제주(濟州)로 들여보내 모조리 마필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급기야 사촌 아우 임일(林一)이 남해에 안치되어 있는데, 백미(白米) 40여 섬을 실어 보내면서 다른 물품이라고 하고, 재목(材木)을 베어 보내고 가사(家舍) 크게 짓는 등 실어 보내는 물품이 진실로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이는 곧 오히려 친척을 어려움에서 서로 구해 준 정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의 고을은 본래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듯이, 임기(林奇)가 도임한 뒤부터 금령(禁令)의 엄함이 전에 비해 특히 심해서,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그루의 소나무도 베어내지 못하게 했으니, 수령과 변장들이 이러 인해 죄를 입는 자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임기는 스스로 금법(禁法)을 범하여, 어지러이 나무를 베어 배에 실어 보내고 집을 짓는 등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무부(武夫)가 곤수(閫帥)[510]의 책임을 맡고서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장차 책려(責勵)하고 경칙(警飭)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통제사 심박과 목임기 모두를 변방 멀리 귀양을 보내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여

---

507) 저리(邸吏): 경저리(京邸吏: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하던 아전 또는 향리)와 영저리(營邸吏: 각 감영에 속하여 감영과 각 고을 사이의 연락을 취하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508) 전세(田稅): 1)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2)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전조(田租)를 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 전조의 약 1/10, 수확량의 약 1/100을 냄.

509) 세선(稅船): 예전에,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벼 따위를 실어 나르던 배.

510) 곤수(梱帥/閫帥): 조선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마필, 목임기, 심박.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九月 四日 己巳

○ 禁府啓目, 睦林奇議處云云. 濟州買馬事, 諉之於其軍官, 南海送米, 減其石數, 構成私舍事, 稱以撤毁舊材, 造成二間, 而出於飾辭, 元無顯然發明之端, 難免縱恣之罪, 以此參酌定配, 何如? 啓依允. 又啓曰, 沈樸議處云云. 肥己貪縱之狀, 縷縷發明, 至以其重記所付銀布, 鋪張其數, 欲免貪汚之罪, 以此參酌定配, 何如? 啓依允.

❖ 숙종 20년(1694) 갑술년 9월 4일(기사)

□ 목임기(睦林奇) 등의 정배(定配)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 계목(啓目)에 목임기(睦林奇)를 의처(議處) 운운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말을 산 일은 그 군관(軍官)에게 위탁하고, 남해(南海)에 쌀을 실어 보내면서 그 섬수[石數]를 줄여 개인 집을 지은 일은 훼철(撤毁)한 묵은 목재로 2칸을 조성했다고 일컫는데 이는 꾸며대는 언사 중에 나와 원래부터 뚜렷하게 발명(發明)하는 단서가 없어 방자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참작(參酌)하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길 심박(沈樸)을 의처(議處) 운운하기를, '자기 몸만 이롭게 하고 탐오하여 방자한[貪縱] 실상은 누누이 밝혀지고 드러나서 그 중기(重記)[511]로써 덧붙인 은포(銀布)에 이르고, 그 수를 포장(鋪張)하여 탐오(貪汚)한 죄를 면하려고 했으니, 이것으로써 참작하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목임기, 제주.

511) 중기(重記):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나 장부.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九月 十三日 戊寅

○ 引見時, 兵曹判書尹趾善所啓, 各道邊將取才, 以六兩·柳葉箭·片箭·騎芻四技入格者, 上送京中, 到京後以四技中三技入格者, 或直赴或除邊將矣. 頃年兪夏益, 爲平安監司時, 與兵使狀啓, 以西路武藝甚多, 而規矩太高, 多有落莫之嘆, 去一技, 只取三技, 以此定式矣. 卽今西路人入格上來者再試時, 有兩技各一中者, 而三技入格者再試之規, 曾每定式之事, 何以爲之乎? 上曰, 此則三技取二技矣. 尹趾善曰, 當初四技中去一技旣誤, 今此三技中取二技, 尤涉不可矣. 領議政南九萬曰, 科擧, 乃莫重之事, 人主之所當行, 非外方之所可設, 如濟州等邑, 則數十年內, 或以特恩設科, 而今此逐年試取直赴, 則事甚無謂. 臣嘗謫居江陵, 江陵是都會官, 故自京下去, 冒占其科者比比有之. 凡一道內各都會, 試取直赴, 極爲不當, 此規革罷, 宜矣. 尹趾善曰, 臣曾任南北守令, 熟知其用奸事矣. 今番試所試取時, 臣見武藝極多, 而五千餘人中, 猶不見沒技者, 而外方則出沒技, 連續啓聞, 事甚可訝. 上曰, 外方沒技之類, 必多虛僞之事, 此規革罷, 可也. 領相曰, 今番則是令前, 何以爲之? 上曰, 今番依前爲之, 此後則革罷, 可也. 尹趾善曰, 邊將取才, 竝革罷乎, 只罷直赴之規乎? 上曰, 只革直赴之流, 邊將取才, 則依前爲之. 尹趾善曰, 狀啓旣已來到者, 似當試取矣. 上曰, 此係令前, 試取, 可也.

❖ 숙종 20년(1694) 갑술년 9월 13일(무인)

□ 윤지선(尹趾善) 등이 입시하여 무과 입격에 관한 문제, 뽑힌 자를 변장(邊將)으로 또는 직부(直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을 불러서 만나볼 때, 병조판서(兵曹判書)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각도의 변장(邊將)[512]이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을 때 육량(六兩)[513]·유엽전(柳葉箭)[514]·편전(片箭)[515]·기추(騎芻)[516] 등 사기(四技)[517]에 입격(入格)한 자는

512) 변장(邊將):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513) 육량(六兩): 육량전(六兩箭). 무게가 엿 냥쭝인 표준형 화살. 싸리, 대, 쇠심, 꿩 깃, 복사나무 속껍질, 아교, 쇠로 만듦.
514) 유엽전(柳葉箭):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
515) 편전(片箭): 1) 아기살. 작고 짧은 화살. 2) 총통에 넣어서 쏘는, 하나로 된 화살.
516) 기추(騎芻): 조선 후기에 20보(步) 간격으로 세워 놓은 짚 인형 다섯 개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쏘아 맞히게 하던 일. 또는 그런 무과 시험 과목.
517) 사기(四技): 조선시대 무과(武科) 시험에서 행하던 열한 가지 기예 가운데서, 철전(鐵箭) 또는 육량전(六兩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 등의 네 가지 기예.

서울로 올려 보내고, 서울에 도착하여 사기(四技) 가운데 삼기(三技)에 입격한 자는 혹 직부(直赴)[518]하기도 하고, 혹 변장(邊將)으로 제수받기고 하였다. 근년[頃年]에 유하익(兪夏益)이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을 때, 병사(兵使)와 함께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서로(西路: 西道)[519]의 무예는 매우 많은데, 법규가 너무 엄하여 마음으로 쓸쓸한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일기(一技)를 없애고 다만 삼기(三技)를 시험보이는 것이 이 정식(定式)입니다. 즉금에 서도 사람[西路人]이 입격하여 서울로 올라온 자가 다시 시험을 보일 때, 양기(兩技) 각 하나에 적중한 자, 그리고 삼기에 입격한 자가 재시(再試)하는 규식은 일찍이 매번 격식으로 정한 일인데, 어찌 하오리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삼기 가운데 이기(二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지선이 아뢰기를, "당초에 사기 가운데 일기(一技)를 없앤 것은 이미 잘못이고, 이번에 삼기(三技) 가운데 이기(二技)를 시험한 것은 더욱 불가(不可)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과거는 곧 막중한 일로, 임금이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외방(外方)에서 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주(濟州) 등과 같은 고을에서는 수십 년 안에 혹 특별한 은택으로 설과(設科)했으나, 지금 이것은 거르지 않고 매해 시험을 보여 직부(直赴)에서 시험보아 뽑게 한 것이어서 매우 형편없는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강릉에서 귀양살이할 때, 강릉이 도회관(都會官)이라 하므로,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자주 있었습니다. 무릇 한 도(道) 안의 각 도회(都會)에서 직부(直赴)를 시험 보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이 구식은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윤지선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남북(南北)수령(守令)으로 부임했는데, 누가 간계를 썼는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금번 시소(試所)에서 시취(試取)할 때는 신(臣)이 무예(武藝)를 본 것이 극히 많아서 5천 여 인 가운데 오히려 몰기자(沒技者)[520]는 볼 수 없었고, 외방에서는 몰기가 나타나서, 연속으로 계문(啓聞)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에서 몰기(沒技)한 것은 반드시 허위(虛僞)의 일이 많다. 이 규식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영상(領相)이 아뢰기를, "이번은 이 열(令)이 있기 전이이어서 어떻게 해야

518) 직부(直赴): 1) 조선 시대에 전강(殿講)·절일제·황감제·응제·통독·외방 별과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문과의 복시 혹은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2) 조선 시대에 승보(陞補)·사학 합제·공도회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3) 조선 시대에 권무과·외방 별과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무과의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519) 서로(西路): 서도(西道).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520) 몰기(沒技): 조선 시대에 무과(武科) 시험에서 전 과목에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던 일. 특히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따위의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던 일을 이름.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은 전례에 따라서 하고, 이후부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윤지선이 아뢰기를, "변장이 무사의 재주를 시험 보는 것도 아울러 없애는 것입니까? 단지 직부(直赴)하는 구식만 없애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직부하는 소(流)만 없애는 것이다. 변장이 무사의 재주를 시험 보는 것은 전례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윤지선이 아뢰기를, "장계가 이미 내도했으니, 마땅히 시취(試取)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영(令)이 있기 전과 관계된 것이니 시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변장시취.

❖ 康熙 三十三年 甲戌 九月 十四日 己卯

○ 禮曹啓曰, 濟州牧使李益泰, 封進大殿誕日方物弓俗筒箇四部,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等物, 今始上來. 自臣曹依例看品, 則獐皮別無欠處, 依例捧入, 而其中弓俗, 不濊[校][準]於內下見樣, 其在享上之道, 殊無敬謹之意, 不可不警責. 牧使李益泰推考, 弓俗筒箇, 則還爲下送, 使之改備封進, 何如? 傳曰, 依啓. 此是海外, 特爲捧入.【以上禮曹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9월 14일(기묘)

□ 궁대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를 추고하고, 고쳐 다시 올리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가 봉진한, 대전 탄일 방물은 궁대(弓俗)와 통개(筒箇) 4부(部),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 10장(張),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를 대신하여 활에 매는 노루 가죽 5장(張) 등의 물품이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신이 예조의 전례에 따라서 간품(看品)하니, 노루 가죽은 특별하게 흠이 있는 것이 없어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 들였고, 그 가운데 궁대는 내하(內下)[521]의 겨냥[見樣]에 맞지 않아서, 향상(享上)의 도리로 보아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경계하여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이익태를 추문하여 살피고, 궁대와 통개는 도로 내려 보내고, 그로 하여금 고쳐 준비하여 봉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이곳(제주)은 바다 밖에 있으니, 특별하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태, 방물, 궁대, 통개, 결궁장피, 직모마장, 장피.

---

521) 내하(內下): 내사(內賜).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는 일.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十一月 七日 辛未

○ 參贊官金鎭龜所啓, 濟州民役之苦, 不一其端, 而其中牧子·格軍, 尤有所難堪, 蓋牧子則看養國屯所, 而屯所馬之致弊於雨雪者甚多, 所掌牧子, 若不能現納皮張, 則代立同色馬, 自是規例, 故鬻賣田土, 以充其價, 若有不足, 則雇其妻孥, 以副其直, 甚者至不能保其父母. 格軍則其涉海辛苦之狀, 已不可言, 而島中州縣, 若非貿易, 則官中所用, 亦不能成樣. 故逐年每船竝受官貿, 而及其催捧之際, 例多不免欠縮, 格軍之賣田土, 以充其數, 亦無異於牧子, 故本州之民, 圖免兩役, 如避死地, 粗習文字, 求爲下吏, 故本州吏胥之多, 不啻累百, 官府亦不勝其繁, 至分六番, 一月之內, 立役官門者, 不過五日, 而且當其立番之次, 若納米斗, 則全不立役, 許令閑遊, 事之無據, 莫此爲甚, 而牧子·格軍之闕額, 以此尤難充定, 今若就其下吏中, 直爲汰定牧子·格軍之役, 則渠輩亦必有稱冤騷擾之端, 若令牧子以下三邑守令, 自今爲始, 凡於下吏, 有闕勿補, 漸就減省, 則其於牧子·格軍充定之際, 旣無苟艱之弊, 且免偏苦之患, 故敢此仰達. 上曰, 令該曹稟處.【以上司僕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11월 7일(신미)

□ 김진구(金鎭龜)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목자(牧子)나 격군(格軍)에 대한 폐단을 아룀

○ 참찬관(參贊官) 김진구(金鎭龜)가 아뢰기를, "제주 민역(民役)의 괴로움은 그 단서를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목자(牧子)와 격군(格軍)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대개 목자인 경우 나라의 둔소(屯所)를 돌보는데 둔소의 말들 중에서 비와 눈에 치폐(致弊)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담당한 목자가 만약 피장(皮張)을 현납(現納)하지 못한다면, 대신 동색마(同色馬)를 세우는 것이 원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전토(田土)를 팔아 이로써 그 가격을 채우는데, 만약 부족하면 자신의 아내에게 품을 팔게 하고 이로써 그 값을 치릅니다. 심한 경우 자신의 부모조차 지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격군인 경우 바다를 건너는 신고(辛苦)의 참상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섬 안의 주(州)와 현(縣)인 경우 만약 무역이 아니라면 관아에 필요한 물자들 역시 모양을 갖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매번 배를 띄우고 아울러 관아의 무역을 받는데, 최봉(催捧)할 때에 미쳐서는 흠축(欠縮)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격군이 자신의 전토(田土)를 팔아 이로써 그 숫자를 채워야하는 것 역시 목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주(本州)의 백성들은 두 역[兩役;목자와 격군)을 면해보려 도모하는 것이 마치 사지(死地)를 피하듯 하여, 조악하게나마 문자라도 익혀 하리(下吏)됨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본주의 이서(吏胥)의 많음은 수백에 이를 뿐만 아니라, 관부(官府) 역시 그 번잡함을 이루 다하지 못하여 6번(番)으로 나누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안으로 관문(官門)에 입역(立役)하는 자가 5일을 넘기지 못하며, 또 입번(立番)의 차례를 당해도 만약 미두(米斗)를 납부하면 온전하게 입역하지 않게 되어 그로 하여금 한가하게 노닐게 해주니, 일의 근거 없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격군의 결원은 이 때문에 더욱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 하리들 중에서 바로 목자와 격군의 역을 골라 뽑겠다고 한다면, 저들은 역시 반드시 억울하다며 소요(騷擾)하는 단서가 있을 것이니, 목자 이하 삼읍(三邑)의 수령들에게 명을 내려 지금을 처음으로 삼아 무릇 하리인 경우 결원이 생겨도 채우지 말게 하면, 점차 인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자와 격군을 충원할 때, 드디어 구간(苟艱)의 폐해가 없어지고, 또한 편고(偏苦)의 걱정을 면하게 될 것이니,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에 명해 품처(稟處)하라."라고 하였다. 【이상 사복등록에 의함】[522]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진구, 제주, 목자, 격군, 입번.

52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48책 1694년(숙종 20) 11월 9일(음) 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들어있음.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十一月 八日 壬申

○ 晝講入侍時, 參贊官金鎭龜所啓, 臣偏荷朝家生成之澤, 特追刑章, 承譴海島, 仍蒙宥還, 得齒近侍, 玆以島中事, 不避煩猥而仰達. 濟州一島, 雖是三邑, 而地方旣狹, 人民且少, 民戶之數, 合僅八千八百五十餘戶, 民口之數, 合男女壯弱, 僅四萬四千八百二十餘口, 而還上元會付數, 乃三萬二千五百七十餘石. 且因曾前累年凶歉, 朝家以其海外遐氓, 別爲優恤, 故移轉還上之數, 又至一萬五千二百九十餘石之多, 若以元會付還上, 及移轉還上, 合以計之, 則其石數, 多於民口之數, 民口之中, 老弱具在, 而且土薄, 民雖力農, 所穫甚少, 凡陸邑之給還上, 則例不盡給, 有量宜留庫之事, 而本州則地氣卑濕, 穀物易致腐傷, 故不能久置, 逐其民戶, 每年盡給還上之數, 以此尤多, 至於民戶中不願受食者, 亦爲計口竝給, 而徵捧之際, 一併督促, 侵及隣族, 以些少民力, 決無備納之勢, 島民以此呼冤, 甚矣. 近日朝家, 有各邑舊還上, 限年條蕩減之令, 濟州之民, 亦當均被其澤, 而第本州還穀之數, 旣至此多, 民生困悴之狀, 又至此甚, 有非陸地他邑之比, 其在優恤遐氓之道, 似當有特施之恩, 若令廟堂, 問于本州, 使之詳陳其事狀, 然後各別施行, 使蕩減之數, 有加於他邑, 則一島民生, 庶有生活之望, 故敢此仰達. 上曰, 令廟堂稟處.
【以上備局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11월 8일(임신)

□ 김진구(金鎭龜)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오래된 환상(還上)를 탕감(蕩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523]에서 임금을 뵐 때, 참찬관(參贊官) 김진귀(金鎭龜)가 소계(所啓)하여 아뢰기를, "신(臣)은 부끄럽게도 조정에서 만들어준 은택으로 특별히 형장(刑章)을 피하고, 바다 섬[海島]에 보내지는 견책을 받았는데, 그대로 유환(宥還)[524]하는 은혜를 입어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섬 안의 일을 번거롭게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임금을 우러러보고 아뢰었습니다. 제주(濟州) 한 섬[一島]이 비록 세 고을[三邑]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이 협소한 데다 인민(人民)도 적다. 민호(民戶)의 수는 합하여 거의 8,850여 호에 이르고, 민구(民口)의 수는 남녀(男女)와 장약(壯弱)을 합하여 거의 44,820여 구

523) 주강(晝講): 조선 시대에, 경연특진관 이하가 오시(午時)에 임금을 모시고 법강(法講)을 행하던 일.
524) 유환(宥還): 귀양 갔던 죄인이 용서를 받고 돌아옴.

이나, 환자[還上][525]한 원(元) 회부(會付)[526]의 수는 32,570여 섬입니다. 또한 일찍이 번부터 여러 해에 걸친 흉겸(凶歉)[527]으로 인해서, 조정에서 바다 밖 멀리 있는 백성에게 특별하게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移轉)[528]하여 환자[還上]한 수 또한 15,290여 섬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만약 원(元) 회부(會付) 환자[還上]와 이전(移轉)한 환자[還上]를 합하여 계산하면 그 섬 수[石數]가 민구(民口)의 수보다 많습니다. 민구(民口) 가운데는 노약(老弱)자도 아울러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박해서, 백성들이 농사에 힘을 쏟으나 수확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무릇 육지 고을[陸邑]에서 준 환자[還上]는 전례대로 다 주지 않고, 양이 있다면 마땅히 창고에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본주(제주)는 땅의 바닥이 낮고 습기가 많아서 곡물에 쉬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보관할 수 없어서, 그 민호(民戶)를 좇아서 매년 환자[還上]로 다 나누어 주는데 그 수가 이와 같이 많습니다. 민호 가운데 먹을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또한 구 수(口數)를 헤아려서 모두에게 주고서는 거두어들일 때는 한꺼번에 아울러 독촉(督促)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隣族]에게까지 미쳐 사소한 민력(民力)으로서는 결단코 갖추어 낼 형세가 없으므로 섬 백성들이 이로써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심합니다. 가까운 날에 조정에서 각 고을의 묵은 환자[還上]를 햇수를 한정하여 탕감(蕩減)해주는 영을 내렸습니다. 제주 백성들 또한 마땅히 균등하게 그 혜택을 입고, 본주(제주) 환곡(還穀)의 수를 평정하였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곤췌(困悴)한 상황에 이른 것 또한 이와 같이 심하여, 육지 다른 고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특별히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묘당(廟堂: 의정부)에 영을 내려, 본주(제주)에 대해 물으니, 그로 하여금 그 사상(事狀)을 자세하게 진언합니다. 그런 뒤에 각별하게 시행하고 탕감(蕩減)한 수에 있어서는 다음 고을보다 더할 수 있게 하니, 한 섬의 백성들 삶이 거의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아룁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 의정부)에 영을 내려 품처(稟處)[529]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상은 비국등록(備

525) 환자(還子): 환곡(還穀).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526) 회부(會付): 특별 계정(特別計定)으로 집계하여 기장(記帳)하는 것. 또는 그렇게 기재한 것.
527) 흉겸(凶歉): 흉황(凶荒). 곡식 농사가 잘 안되어 농사가 결딴남.
528) 이전(移轉):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
529) 품처(稟處):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

局謄錄)에 따름.】[530]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진귀, 제주, 환상.

530)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48책 1694년(숙종 20) 11월 9일(음) 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들어있음.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十一月 十五日 己卯

○ 備邊司啓辭, 命下矣. 戊辰以上未收還上, 一倂蕩滌事, 旣已知委於諸道, 使之擧行, 則濟州亦當一體施行, 而今者筵臣所啓, 以濟州非陸地他邑之比, 似當有特施之恩云, 以此辭緣, 分付於本州, 自戊辰以後, 至癸酉冬年條未收, 使之抄出啓聞, 以爲量其多寡, 更爲稟處之地,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11월 15일(기묘)

□ 환자[還上]를 탕척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주(齊州)에 무진년 이후부터 계유년까지 걷지 못한 환자[還上]를 다시 품처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備邊司)의 계사(啓辭)[531]로 명령을 내렸다. "무진년(숙종 14년, 1688) 이상(以上)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환자[還上]를 한꺼번에 모두 탕감하여 없애준 일은 이미 여러 도(道)에 알려서, 그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주(濟州)에서도 마땅히 일체로 시행하였습니다. 요사이 연신(筵臣)[532]이 소계(所啓)로 아뢰기를, '제주는 육지 다른 고을에 비할 수가 없어서, 마땅히 특별하게 은택을 베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이 사연(辭緣)을 제주에 분부하니, 계유년(숙종 19년, 1683) 겨울에 연소(年條)를 거들어 들이지 못한 것에 이르러서도 그로 하여금 계문(啓聞)으로 초출(抄出)하게 하고,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환상.

---

531) 계사(啓辭): 1)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글. 2) 벼슬을 임명받거나 어떤 물건을 내어 준 데 대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려서 사양하던 일.

532) 연신(筵臣): 경연(經筵)에 관계하던 벼슬아치.

❖ 康熙 三十三年 甲戌 十一月 二十五日 己丑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十一月初八日晝講入侍〈時〉參贊官金鎭龜所啓, 臣於謫在濟州, 有日再見點馬之下去, 且見先正臣金尙憲爲御史時所著南槎之隅, 備知點馬之有弊, 故將此仰達. 朝家之差送點馬, 慮有可[校][所]在, 而但點馬之自京差送, 例在於秋間, 而渡海入去之際, 輒至十月之後, 山雪旣積, 而發一島之民, 驅彌山之馬, 其後實甚浩大, 且當寒往發驅之際, 不但人命馬匹之多數致斃, 馬匹之因此墮沈, 亦且不少, 故點馬往還之後, 則兒駒產出之數, 多減於前. 且點馬之於牧使, 職秩有殊, 以文官爲牧使, 則固不可言, 雖是武臣, 亦非點馬等列, 而且牧使, 則旣久任所, 點馬則一時往來, 故凡間[校][干]馬政, 未得詳諳, 例多聽從牧使之言, 點馬實無所輕重於其間, 而且海島遐氓, 畏憊官吏, 有倍他地, 故點馬所率下人之挾上司威勢, 而作弊於牧子輩者亦多, 點馬之於濟州, 無益而有害, 實如臣所目見者. 自朝家, 不爲差送點馬, 而令本州牧使, 每當式年, 專管點馬之役, 不必一時盡爲點驅, 而只趁秋收後雪深前, 觀勢從便, 量發民丁, 使之點驅, 至於御乘及國用之馬, 亦一委牧使, 擇出別養, 使之封進, 則似不至於有弊, 而亦或有益於馬, 故前頭點馬差送之期姑遠, 而敢此仰達. 上曰, 令太僕稟處事, 命下矣. 曾於庚寅年, 因濟州牧使狀啓, 停罷點馬之行, 令牧使, 盡心監牧之政, 年例進上及點馬時馬數, 一依封進事, 定式矣. 至辛酉年間, 還爲復設, 間五年一送者, 蓋以本州擧行凡事, 漸不差[校][着]實, 故不得已差送, 而不用三年一次之規, 以五年爲限, 慮本州有弊也. 今者筵臣, 謫之累年, 深知本州之弊, 如是陳達, 其在省弊之道, 誠不可無變通之政. 若有緊急差送之事, 則自當臨時稟旨擧行, 而至於年例點馬之行, 則一依庚寅年定式, 姑爲停罷, 凡干大小馬政, 一委牧使, 使之依舊例着實擧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以上兵曹謄錄】

❖ 숙종 20년(1694) 갑술년 11월 25일(기축)

□ 제주(濟州)에 점마(點馬)를 파견하지 말고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점마를 전담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11월 초8일 주강(晝講)에서 신하들을 만나볼 때, 참찬관(參贊官) 김진구(金鎭龜)가 소계(所啓)로서 아뢰기를, ‘신(臣)이 제주(濟州)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점마(點馬)를 위해 내려가는 것을 두어 번 보았던 적이 있으며, 또한 선정신(先正臣)[533] 김상헌(金尙

533) 선정신(先正臣): 유현(儒賢)으로서 학덕(學德)이 높았으나 현재는 작고한 신하를 말함.

憲)[534]이 어사(御史)가 되어 저술한 『남사록(南槎錄)』의 한 대목을 읽어보아 점마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갖추어 알았기에, 이 일을 앙달(仰達)하고자 합니다. 조정에서 점마[535]를 차송(差送)하면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만 점마(點馬)를 서울에서 차송하려면, 전례대로 가을 동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들어갈 때 문득 10월 이후가 되어, 산설(山雪)이 이미 쌓여서, 온 섬 백성들이 모두 움직여 산 속에 있는 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뒤의 실상은 심히 넓고 큽니다. 또한 마땅히 추운 날에 나가서 말을 몰 때 인명(人名)이나 마필(馬匹)의 많은 수가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필이 떨어지거나 빠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마하러 가서 돌아온 뒤에 어린 말[兒駒]을 낳은 수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점마는 목사보다도 벼슬의 등급[職秩]이 다르고 문관으로서 목사를 삼으니, 원래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무신 또한 점마 등의 예가 없고, 또한 목사가 이미 오랫동안 맡아온 임무입니다. 점마는 일시에 가서 오는 것이므로 무릇 마정(馬政)에 있어서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례도 많듯이 목사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점마는 실로 그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다 섬 멀리 있는 백성들이 관리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점마를 위해 부하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 상사(上司)의 위세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배(牧子輩)들에게 폐단을 일으키는 것도 많습니다. 제주에서 점마하는 것은 무익하고 해로움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실로 신하가 목격한 바입니다. 조정에서 점마를 차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주(本州: 제주) 목사에서 영을 내려, 매번 해당 식년에 오로지 점마하는 역을 관리하게 하고, 일시에 다 점구(點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수(秋收)한 뒤, 그리고 눈이 깊기 전에 바로 해야 합니다. 정세를 보건대, 편한 것을 좇아서 민정(民丁)을 헤아려 뽑고, 그로 하여금 말을 몰게 해서, 어승(御乘)과 국용(國用)의 말에 이르러서도 목사(牧使)에게 한꺼번에 일임하여, 골라내게 하고 특별하게 기르게 해서, 그로 하여금 봉진(封進)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혹 말에도 유익하므로 앞과 같이 점마를 차송하는 것을 기약하기에는 아직 멉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러러 주달(奏達)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복(太僕: 太僕寺)[536]에서 품처(稟處)할 일'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

534) 김상헌(1570~1652): 1601년 제주도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진상 조사와 수령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라는 임무를 띠고 어사로 파견됨.

535) 점마(點馬): 점마별성(點馬別星).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으로 말을 검열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특별히 파견하던 벼슬아치.

536) 태복시(太僕寺/大僕寺): 조선 시대에 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명칭이 사복시와 번갈아 여러 번 바뀌었음.

"일찍이 경인년(庚寅年: 효종 1년, 1650)에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점마하러 가는 것을 정지하고 없애는 것에 대해 목사에게 영을 내려, 진심을 다하여 감목(監牧)의 정사에 힘쓰고, 연례(年例)의 진상과 점마할 때의 말 수[馬數] 등을 한꺼번에 봉진할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게 했습니다. 신유년(숙종 7년, 1681) 사이에 이르러 도로 되돌려 설행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보내는 것이 자못 본주(제주)에서 거행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차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에 1번씩 하는 규식을 지키지 않고, 5년을 기한으로 했으니, 본주에 폐단이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근래에 연신(筵臣)이 여러 해 귀양살이를 가서 본주의 폐단을 깊이 알고 이와 같이 진달(陳達)하였습니다. 폐단을 살피는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변통하는 정사를 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차송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임시로 품지(稟旨)를 올려 거행하게 하고, 연례적인 점마를 시행하는 것도 한꺼번에 경인년의 정식에 따라 우선 멈추게 하십시오. 무릇 크고 작은 마정(馬政) 관계된 것을 한꺼번에 목사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구례(舊例)에 따라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병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마정, 제주목사, 점마.

역 주 자

김 일 우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장
문 숙 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 창 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홍 기 표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교정 · 교열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진 영 고문헌 번역가
임 승 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홍 기 표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1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Ⅲ

– 肅宗代 –

발행인 김 동 전
발행일 2019년 12월 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 (064) 726-5623 팩스 : (067)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 758-1500

ISBN : 979-11-90748-03-2 93090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